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VIII

－ 正祖代(1782~1786) －

(上)

발 간 사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왕실의 일상과 국정 운영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기록물입니다. 왕과 신하 사이에 오갔던 말과 일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 조선 사회의 움직임을 그날그날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조대는 조선후기 개혁 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로, 지방에 대한 통치와 관심도 두드러졌던 때입니다. 이 시기 제주에 대한 기록은 제주 지역의 행정과 민생,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그동안 제주의 입도조 현황 실태 조사를 비롯하여 지역의 1차 사료인 고문서 조사 연구 등 제주 지역사 정리에 힘써 왔습니다. 이번 《승정원일기》 정조대(1782-1794) 제주기사 자료집은 정조 6년부터 정조 18년까지의 제주 관련 기사 1,532건을 모아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주석을 달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단지 방대한 사료를 정리한 데 그치지 않습니다. 중앙기록물 속에서 지방, 특히 ‘섬’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제주가 어떻게 인식되고 통치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주는 단서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사 하나 하나는 당대 제주에서 일어난 행정적 조치, 인사 문제, 민원 처리, 재해 대응 등 구체적 삶의 흔적을 담아내고 있기에 더욱 가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려면 제주 안에서 남겨진 기록뿐 아니라, 중앙에서 남긴 제주 관련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승정원일기와 같은 정사(正史) 자료는 그런 점에서 반드시 먼저 찾아야 할 기초 자료입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 보다 많은 연구자와 독자들이 18세기 후반 제주 역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에도 자료집 발간을 위해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승정원일기 원문을 발췌하느라 애쓴 고수미, 노우정 선생님과 늘 어려운 번역 및 주석 작업에 힘써주신 문숙자, 백종진, 오창명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번역문과 주석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며 교정 및 교열하느라 애쓴 우리 센터 임승희, 김우리 연구원과 양미혜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출간하기까지 오랜 시간 편집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제주콤 출판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주학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승정원일기》 왕대별 제주기사 자료집 후속편 발간과 함께 정사(正史) 자료의 지속적인 발굴과 정리를 통해 제주사 연구의 기반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2025년 9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완 병

□ 일러두기

1.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역사 편찬사업>의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사업’의 결과물이다.
2.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사업’은 2016년부터 조선시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속 왕대별 제주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발간하고 있다.
3. 본서는 《승정원일기》 정조대(1782~1794) 제주기사를 수집하여 역주하였다.
4. 제주기사의 채록은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 추자(楸子), 탐라(耽羅)’의 5개 주제어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5. 역주 저본은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의 ‘원문 탈초본’으로 삼았다. 단, ‘탈초본’ 상의 한자에 의문이 생기거나 ‘결자(缺字)’ 등은 원문과 대교하여 이를 각주로 밝혔다.
6. 본문은 원문, 역주 연도, 표제문, 역주문, 주제어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7. 역주자 및 분담 역주 분량은 다음과 같다.
 - 1) 백종진: 1782년(정조 6) 1월 12일 ~ 1786년(정조 10) 3월 16일
 - 2) 문숙자: 1786년(정조 10) 4월 2일 ~ 1789년(정조 13) 11월 29일
 - 3) 오창명: 1790년(정조 14) 1월 10일 ~ 1794년(정조 18) 12월 30일

8. 《승정원일기》 정조대(1782~1794) 제주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각 주제어별 중복된 기사를 포함하면, 1,811건이나 279건의 중복된 기사를 제외하여 총 1,532건에 대해 역주하여 수록하였다.

• 분량: 총 1,532건

주제어	濟州	旌義	大靜	楸子	耽羅	합계	비고
건수	617건	85건	796건	255건	58건	1,532건	중복 기사 제외

• 시기별 기사 발췌 건수

※ () 안의 숫자는 주제어별 중복 기사 건수를 의미함

구분	濟州	旌義[旌義]	大靜	楸子	耽羅	합계
정조 6년 (1782)	60	6(6)	35(13)	25(10)	3(2)	129(31)
정조 7년 (1783)	56	6(4)	119(4)	121(73)	5(3)	307(84)
정조 8년 (1784)	27	7(4)	124(4)	88(54)	2(1)	248(63)
정조 9년 (1785)	47	4(3)	118(4)	2(1)	3(2)	174(10)
정조 10년 (1786)	53	4(3)	136(10)	10(2)	3(2)	206(17)
정조 11년 (1787)	41	5	68(2)	2(1)	4(2)	120(5)
정조 12년 (1788)	48	8(4)	15(4)	1	3	75(8)
정조 13년 (1789)	29	5(3)	125(1)	1	2(2)	162(6)
정조 14년 (1790)	37	3(1)	30(3)	2(1)/1	3(2)	75(7)
정조 15년 (1791)	35	6(4)	11(2)	1	2(1)	55(7)
정조 16년 (1792)	28	5(2)	3(1)	0	4(2)	40(5)
정조 17년 (1793)	48	20(7)	5(4)	1(1)/0	11(7)	85(19)
정조 18년 (1794)	108	6(5)	7(6)	1	13(6)	135(17)
소계	617	85(46)	796(58)	255(143)	58(32)	1,811(279) /1,532

목 차

발 간 사	i
해 제	iii
일러두기	iv

正祖

1782年

6年 1月 12日(己酉)	2
6年 1月 12日(己酉)	3
6年 1月 12日(己酉)	4
6年 1月 12日(己酉)	5
6年 1月 12日(己酉)	6
6年 1月 12日(己酉)	7
6年 1月 12日(己酉)	9
6年 1月 14日(辛亥)	17
6年 1月 15日(壬子)	33
6年 1月 15日(壬子)	35
6年 1月 15日(壬子)	36
6年 1月 17日(甲寅)	37
6年 1月 24日(辛酉)	38
6年 1月 24日(辛酉)	40
6年 1月 28日(乙丑)	41
6年 1月 28日(乙丑)	42
6年 1月 29日(丙寅)	43
6年 2月 4日(辛未)	44
6年 2月 5日(壬申)	45

6年 2月 5日(壬申)	46
6年 2月 5日(壬申)	47
6年 2月 6日(癸酉)	49
6年 2月 8日(乙亥)	50
6年 2月 8日(乙亥)	51
6年 2月 8日(乙亥)	52
6年 2月 10日(丁丑)	54
6年 2月 10日(丁丑)	56
6年 2月 18日(乙酉)	58
6年 2月 28日(庚寅)	59
6年 2月 26日(癸巳)	60
6年 2月 27日(甲午)	61
6年 3月 5日(壬寅)	62
6年 3月 12日(己酉)	64
6年 3月 13日(庚戌)	65
6年 3月 21日(戊午)	68
6年 3月 25日(壬戌)	70
6年 3月 29日(丙寅)	71
6年 3月 29日(丙寅)	72
6年 3月 29日(丙寅)	74
6年 4月 1日(丁卯)	78
6年 4月 5日(辛未)	79
6年 4月 5日(辛未)	80
6年 4月 5日(辛未)	83
6年 4月 22日(戊子)	88
6年 4月 22日(戊子)	89

7年 1月 10日(壬寅)	172	7年 3月 12日(癸卯)	208
7年 1月 14日(丙午)	173	7年 3月 20日(辛未[辛亥])	209
7年 1月 18日(庚戌)	174	7年 3月 20日(辛未[辛亥])	210
7年 1月 18日(庚戌)	175	7年 3月 20日(辛未[辛亥])	211
7年 1月 18日(庚戌)	176	7年 3月 21日(壬申[壬子])	212
7年 1月 22日(甲寅)	177	7年 3月 21日(壬申[壬子])	213
7年 1月 25日(丁巳)	178	7年 3月 21日(壬申[壬子])	214
7年 1月 26日(戊午)	180	7年 3月 22日(癸酉[癸丑])	215
7年 2月 3日(甲子)	181	7年 3月 22日(癸酉[癸丑])	216
7年 2月 5日(丙寅)	182	7年 3月 22日(癸酉[癸丑])	217
7年 2月 10日(辛未)	183	7年 4月 5日(甲申[乙丑])	218
7年 2月 10日(辛未)	186	7年 4月 8日(戊申)	219
7年 2月 10日(辛未)	189	7年 4月 11日(辛未)	221
7年 2月 11日(壬申)	190	7年 4月 13日(癸酉)	222
7年 2月 11日(壬申)	191	7年 4月 13日(癸酉)	223
7年 2月 11日(壬申)	192	7年 4月 13日(癸酉)	224
7年 2月 12日(癸酉)	193	7年 4月 16日(丙子)	225
7年 2月 12日(癸酉)	194	7年 4月 17日(丁丑)	226
7年 2月 12日(癸酉)	195	7年 4月 17日(丁丑)	227
7年 2月 13日(甲戌)	196	7年 4月 17日(丁丑)	228
7年 2月 13日(甲戌)	197	7年 4月 18日(戊寅)	229
7年 2月 13日(甲戌)	198	7年 4月 18日(戊寅)	230
7年 2月 19日(庚申)	199	7年 4月 20日(庚申)	232
7年 2月 20日(辛巳)	201	7年 4月 20日(庚申)	233
7年 2月 20日(辛巳)	202	7年 4月 21日(辛巳)	235
7年 2月 20日(辛巳)	203	7年 4月 22日(壬午)	237
7年 2月 21日(壬午)	204	7年 4月 23日(癸未)	238
7年 2月 21日(壬午)	205	7年 4月 24日(甲申)	240
7年 2月 25日(丙戌)	206	7年 4月 24日(甲申)	241
7年 2月 25日(丙戌)	207	7年 4月 24日(甲申)	242

7年 4月 25日(乙酉)	243	7年 6月 15日(乙亥)	276
7年 4月 25日(乙酉)	244	7年 6月 15日(乙亥)	277
7年 4月 25日(乙酉)	245	7年 6月 16日(丙子)	278
7年 4月 25日(乙酉)	246	7年 6月 16日(丙子)	279
7年 4月 25日(乙酉)	248	7年 6月 16日(丙子)	280
7年 4月 25日(乙酉)	249	7年 6月 17日(丁丑)	281
7年 4月 26日(丙戌)	250	7年 6月 20日(庚申)	282
7年 4月 26日(丙戌)	251	7年 6月 20日(庚申)	283
7年 4月 26日(丙戌)	252	7年 6月 20日(庚申)	284
7年 4月 26日(丙戌)	254	7年 6月 24日(甲申)	286
7年 4月 29日(己丑)	255	7年 6月 25日(乙酉)	288
7年 4月 29日(己丑)	256	7年 7月 2日(辛卯)	290
7年 4月 29日(己丑)	257	7年 7月 3日(壬辰)	292
7年 5月 4日(甲子[甲午])	258	7年 7月 3日(壬辰)	293
7年 5月 22日(壬子)	259	7年 7月 3日(壬辰)	294
7年 5月 22日(壬子)	260	7年 7月 5日(甲午)	295
7年 5月 22日(壬子)	261	7年 7月 11日(庚子)	296
7年 6月 6日(丙寅)	262	7年 7月 11日(庚子)	297
7年 6月 9日(己巳)	264	7年 7月 12日(辛丑)	298
7年 6月 11日(辛未)	265	7年 7月 14日(癸卯)	299
7年 6月 12日(壬申)	266	7年 7月 18日(丁未)	300
7年 6月 12日(壬申)	267	7年 7月 21日(庚戌)	301
7年 6月 12日(壬申)	268	7年 7月 25日(甲寅)	302
7年 6月 13日(癸酉)	269	7年 7月 26日(乙卯)	304
7年 6月 13日(癸酉)	270	7年 8月 2日(辛酉)	305
7年 6月 13日(癸酉)	271	7年 8月 2日(辛酉)	306
7年 6月 14日(甲戌)	272	7年 8月 2日(辛酉)	307
7年 6月 14日(甲戌)	273	7年 8月 3日(壬戌)	308
7年 6月 14日(甲戌)	274	7年 8月 5日(甲子)	309
7年 6月 15日(乙亥)	275	7年 8月 5日(甲子)	310

7年 8月 7日(丙寅)	311	7年 9月 29日(丁巳)	342
7年 8月 11日(庚午)	312	7年 9月 29日(丁巳)	343
7年 8月 23日(壬午)	313	7年 9月 30日(戊午)	344
7年 8月 27日(丙戌)	314	7年 10月 1日(己未)	346
7年 8月 27日(丙戌)	315	7年 10月 3日(辛酉)	347
7年 8月 28日(丁亥)	316	7年 10月 5日(癸亥)	348
7年 9月 1日(己丑)	317	7年 10月 6日(甲子)	349
7年 9月 5日(癸巳)	318	7年 10月 6日(甲子)	350
7年 9月 5日(癸巳)	319	7年 10月 8日(丙寅)	351
7年 9月 5日(癸巳)	320	7年 10月 8日(丙寅)	352
7年 9月 6日(甲午)	321	7年 10月 8日(丙寅)	353
7年 9月 6日(甲午)	322	7年 10月 8日(丙寅)	354
7年 9月 6日(甲午)	323	7年 10月 9日(丁卯)	355
7年 9月 9日(丁酉)	324	7年 10月 9日(丁卯)	357
7年 9月 10日(戊戌)	325	7年 10月 9日(丁卯)	358
7年 9月 17日(乙巳)	327	7年 10月 9日(丁卯)	359
7年 9月 17日(乙巳)	328	7年 10月 10日(戊申)	360
7年 9月 17日(乙巳)	329	7年 10月 10日(戊申)	361
7年 9月 20日(戊申)	330	7年 10月 10日(戊申)	362
7年 9月 20日(戊申)	331	7年 10月 12日(庚午)	364
7年 9月 20日(戊申)	332	7年 10月 12日(庚午)	365
7年 9月 21日(己酉)	333	7年 10月 12日(庚午)	366
7年 9月 21日(己酉)	334	7年 10月 13日(辛未)	367
7年 9月 21日(己酉)	335	7年 10月 13日(辛未)	368
7年 9月 25日(癸丑)	336	7年 10月 13日(辛未)	369
7年 9月 26日(甲寅)	337	7年 10月 13日(辛未)	370
7年 9月 28日(丙辰)	338	7年 10月 14日(壬申)	371
7年 9月 28日(丙辰)	339	7年 10月 15日(癸酉)	373
7年 9月 28日(丙辰)	340	7年 10月 15日(癸酉)	374
7年 9月 29日(丁巳)	341	7年 10月 15日(癸酉)	375

7年 10月 19日(丁丑)	376
7年 10月 20日(戊寅)	378
7年 10月 20日(戊寅)	379
7年 10月 20日(戊寅)	380
7年 10月 21日(己卯)	381
7年 10月 22日(庚申)	382
7年 10月 24日(壬午)	383
7年 10月 28日(丙戌)	384
7年 10月 29日(丁亥)	385
7年 11月 9日(丙申)	386
7年 11月 9日(丙申)	387
7年 11月 9日(丙申)	388
7年 11月 11日(戊戌)	389
7年 11月 11日(戊戌)	390
7年 11月 11日(戊戌)	391
7年 11月 12日(己亥)	392
7年 11月 12日(己亥)	393
7年 11月 12日(己亥)	394
7年 11月 12日(己亥)	395
7年 11月 19日(丙午)	397
7年 11月 23日(庚戌)	399
7年 11月 25日(壬子)	400
7年 12月 2日(己未)	401
7年 12月 5日(壬戌)	402
7年 12月 15日(壬申)	403
7年 12月 15日(壬申)	404
7年 12月 15日(壬申)	405
7年 12月 16日(癸酉)	406
7年 12月 19日(丙子)	408
7年 12月 20日(丁丑)	409

7年 12月 20日(丁丑)	411
7年 12月 21日(戊寅)	412
7年 12月 27日(甲申)	413

1784年

8年 1月 5日(辛卯)	416
8年 1月 5日(辛卯)	417
8年 1月 5日(辛卯)	420
8年 1月 7日(癸巳)	422
8年 1月 7日(癸巳)	423
8年 1月 7日(癸巳)	424
8年 1月 10日(丙申)	425
8年 1月 10日(丙申)	426
8年 1月 10日(丙申)	427
8年 1月 11日(丁酉)	428
8年 1月 13日(己亥)	430
8年 1月 16日(壬寅)	432
8年 1月 16日(壬寅)	433
8年 1月 16日(壬寅)	436
8年 1月 17日(癸卯)	438
8年 1月 28日(甲寅)	439
8年 2月 8日(甲子)	440
8年 2月 9日(乙丑)	442
8年 2月 12日(戊申)	443
8年 2月 12日(戊申)	444
8年 2月 12日(戊申)	445
8年 2月 13日(己巳)	446
8年 2月 17日(癸酉)	447
8年 2月 17日(癸酉)	448
8年 2月 20日(丙子)	449

8年 2月 20日(丙子)	450	8年 閏3月 11日(丙寅)	483
8年 2月 21日(丁丑)	452	8年 閏3月 12日(丁卯)	484
8年 2月 21日(丁丑)	454	8年 閏3月 16日(辛未)	485
8年 2月 22日(戊寅)	455	8年 閏3月 16日(辛未)	486
8年 2月 22日(戊寅)	456	8年 閏3月 16日(辛未)	487
8年 2月 22日(戊寅)	457	8年 閏3月 17日(壬申)	488
8年 2月 25日(辛巳)	458	8年 閏3月 17日(壬申)	489
8年 2月 26日(壬午)	459	8年 閏3月 17日(壬申)	490
8年 2月 27日(癸未)	460	8年 閏3月 18日(癸酉)	491
8年 2月 29日(乙酉)	461	8年 閏3月 18日(癸酉)	492
8年 3月 2日(丁亥)	462	8年 閏3月 18日(癸酉)	493
8年 3月 2日(丁亥)	463	8年 閏3月 19日(甲戌)	494
8年 3月 7日(壬辰)	464	8年 閏3月 25日(庚申)	496
8年 3月 7日(壬辰)	465	8年 閏3月 25日(庚申)	497
8年 3月 7日(壬辰)	466	8年 4月 17日(辛丑)	498
8年 3月 11日(丙申)	467	8年 4月 17日(辛丑)	499
8年 3月 11日(丙申)	468	8年 4月 17日(辛丑)	502
8年 3月 11日(丙申)	469	8年 4月 18日(壬寅)	504
8年 3月 12日(丁酉)	470	8年 4月 18日(壬寅)	505
8年 3月 13日(戊戌)	472	8年 4月 18日(壬寅)	506
8年 3月 13日(戊戌)	473	8年 4月 19日(癸卯)	507
8年 3月 15日(庚子)	474	8年 4月 19日(癸卯)	508
8年 3月 27日(壬子)	475	8年 4月 19日(癸卯)	509
8年 3月 28日(癸丑)	476	8年 4月 20日(甲辰)	510
8年 閏3月 7日(壬戌)	477	8年 4月 21日(乙巳)	511
8年 閏3月 10日(乙丑)	478	8年 4月 22日(丙午)	512
8年 閏3月 10日(乙丑)	479	8年 4月 22日(丙午)	513
8年 閏3月 10日(乙丑)	480	8年 4月 22日(丙午)	514
8年 閏3月 11日(丙寅)	481	8年 4月 22日(丁未)	515
8年 閏3月 11日(丙寅)	482	8年 4月 23日(丁未)	516

8年 4月 23日(丁未)	517	8年 6月 1日(甲申)	549
8年 4月 24日(戊申)	518	8年 6月 1日(甲申)	550
8年 4月 24日(戊申)	519	8年 6月 5日(戊子)	551
8年 4月 24日(戊申)	520	8年 6月 29日(壬子)	553
8年 4月 25日(己酉)	521	8年 6月 30日(癸丑)	554
8年 4月 25日(己酉)	522	8年 7月 19日(壬申)	555
8年 4月 25日(己酉)	523	8年 8月 3日(丙戌)	556
8年 4月 26日(庚戌)	524	8年 8月 3日(丙戌)	557
8年 4月 26日(庚戌)	525	8年 8月 3日(丙戌)	558
8年 4月 26日(庚戌)	526	8年 8月 3日(丙戌)	559
8年 4月 27日(辛亥)	527	8年 8月 10日(癸巳)	560
8年 4月 27日(辛亥)	528	8年 8月 14日(丁酉)	563
8年 4月 27日(辛亥)	529	8年 8月 19日(壬寅)	564
8年 4月 28日(壬子)	530	8年 8月 19日(壬寅)	565
8年 4月 28日(壬子)	531	8年 8月 19日(壬寅)	568
8年 4月 28日(壬子)	532	8年 8月 29日(壬寅[壬子])	570
8年 4月 29日(癸丑)	533	8年 9月 1日(癸丑)	571
8年 4月 29日(癸丑)	534	8年 9月 5日(丁巳)	572
8年 4月 29日(癸丑)	535	8年 9月 5日(丁巳)	573
8年 4月 30日(甲寅)	536	8年 9月 19日(辛未)	574
8年 5月 12日(丙寅)	538	8年 9月 19日(辛未)	575
8年 5月 12日(丙寅)	539	8年 9月 19日(辛未)	576
8年 5月 12日(丙寅)	540	8年 10月 10日(壬辰)	577
8年 5月 25日(己卯)	541	8年 10月 11日(癸巳)	579
8年 5月 27日(辛巳)	543	8年 10月 20日(壬寅)	580
8年 5月 27日(辛巳)	544	8年 10月 20日(壬寅)	581
8年 5月 27日(辛巳)	545	8年 10月 28日(庚戌)	582
8年 5月 28日(壬午)	546	8年 10月 28日(庚戌)	583
8年 5月 29日(癸未)	547	8年 10月 29日(辛亥)	584
8年 6月 1日(甲申)	548	8年 10月 29日(辛亥)	585

8年 11月 2日(癸丑)	586
8年 11月 2日(癸丑)	587
8年 11月 2日(癸丑)	588
8年 11月 2日(癸丑)	589
8年 11月 2日(癸丑)	590
8年 11月 3日(甲寅)	591
8年 11月 4日(乙卯)	594
8年 11月 6日(丁巳)	595
8年 11月 6日(丁巳)	596
8年 11月 9日(庚申)	597
8年 11月 19日(庚午)	598
8年 11月 22日(癸酉)	599
8年 11月 26日(丁丑)	600
8年 11月 26日(丁丑)	601
8年 11月 27日(戊寅)	603
8年 11月 27日(戊寅)	606
8年 11月 27日(戊寅)	607
8年 11月 28日(己卯)	608
8年 11月 28日(己卯)	609
8年 12月 1日(壬午)	610
8年 12月 1日(壬午)	611
8年 12月 9日(庚寅)	612
8年 12月 12日(癸巳)	614
8年 12月 14日(乙未)	616
8年 12月 15日(丙申)	617
8年 12月 16日(丁酉)	618
8年 12月 16日(丁酉)	620
8年 12月 17日(戊戌)	622
8年 12月 17日(戊戌)	623
8年 12月 18日(己亥)	624

8年 12月 18日(己亥)	625
8年 12月 19日(庚子)	626
8年 12月 19日(庚子)	627
8年 12月 20日(辛丑)	628
8年 12月 20日(辛丑)	629
8年 12月 21日(壬寅)	630
8年 12月 21日(壬寅)	631
8年 12月 22日(癸卯)	632
8年 12月 22日(癸卯)	633
8年 12月 26日(丁未)	634

1785年

9年 1月 4日(甲寅)	638
9年 1月 4日(甲寅)	640
9年 1月 6日(丙辰)	642
9年 1月 10日(庚申)	643
9年 1月 11日(丁酉[辛酉])	645
9年 1月 11日(丁酉[辛酉])	646
9年 1月 12日(壬戌)	649
9年 1月 13日(己亥[癸亥])	650
9年 1月 14日(甲子)	651
9年 1月 14日(甲子)	652
9年 1月 22日(戊申[壬申])	653
9年 1月 25日(乙亥)	654
9年 1月 27日(丁丑)	656
9年 2月 2日(壬午)	657
9年 2月 7日(丁亥)	658
9年 2月 7日(丁亥)	659
9年 2月 9日(己丑)	660
9年 2月 10日(庚寅)	661

9年 2月 11日(辛卯)	662	9年 4月 10日(己丑)	699
9年 2月 12日(壬辰)	664	9年 4月 10日(己丑)	700
9年 2月 15日(乙未)	665	9年 4月 12日(辛卯)	701
9年 2月 15日(乙未)	666	9年 4月 12日(辛卯)	702
9年 2月 17日(丁酉)	667	9年 4月 12日(辛卯)	703
9年 2月 19日(己亥)	668	9年 4月 13日(壬辰)	704
9年 2月 26日(丙午)	669	9年 4月 13日(壬辰)	705
9年 2月 26日(丙午)	670	9年 4月 18日(丁酉)	706
9年 3月 3日(壬子)	671	9年 4月 19日(戊戌)	707
9年 3月 3日(壬子)	673	9年 4月 25日(甲辰)	708
9年 3月 14日(癸亥)	675	9年 4月 26日(乙巳)	709
9年 3月 14日(癸亥)	676	9年 4月 28日(丁未)	710
9年 3月 15日(甲子)	677	9年 5月 1日(己酉)	711
9年 3月 15日(甲子)	678	9年 5月 2日(庚戌)	713
9年 3月 17日(丙寅)	679	9年 5月 2日(庚戌)	714
9年 3月 17日(丙寅)	681	9年 5月 11日(己未)	715
9年 3月 20日(己巳)	683	9年 5月 11日(己未)	716
9年 3月 20日(己巳)	684	9年 5月 12日(庚申)	717
9年 3月 21日(庚午)	685	9年 5月 12日(庚申)	718
9年 3月 21日(庚午)	686	9年 5月 12日(庚申)	721
9年 3月 22日(辛未)	687	9年 5月 12日(庚申)	725
9年 3月 22日(辛未)	688	9年 5月 12日(庚申)	726
9年 3月 27日(丙子)	689	9年 5月 12日(庚申)	728
9年 3月 27日(丙子)	690	9年 5月 25日(癸酉)	729
9年 3月 28日(丁丑)	691	9年 5月 29日(丁丑)	732
9年 3月 28日(丁丑)	692	9年 5月 29日(丁丑)	733
9年 4月 1日(庚申)	693	9年 6月 2日(己卯)	734
9年 4月 1日(庚申)	695	9年 6月 2日(己卯)	735
9年 4月 3日(壬午)	697	9年 6月 17日(甲午)	736
9年 4月 3日(壬午)	698	9年 6月 19日(丙午[丙申])	738

9年 6月 21日(戊申[戊戌])	739	9年 9月 10日(丙辰)	771
9年 6月 22日(己酉[己亥])	740	9年 9月 14日(庚申)	772
9年 6月 24日(辛丑)	741	9年 9月 17日(癸亥)	773
9年 6月 25日(壬子[壬寅])	742	9年 9月 20日(丙寅)	775
9年 6月 30日(丁巳[丁未])	743	9年 9月 20日(丙寅)	777
9年 7月 5日(壬子)	744	9年 9月 26日(壬申)	778
9年 7月 9日(丙辰)	745	9年 9月 27日(癸酉)	779
9年 7月 11日(戊午)	746	9年 9月 28日(甲戌)	780
9年 7月 13日(庚申)	747	9年 10月 11日(丁亥)	781
9年 7月 13日(庚申)	748	9年 10月 11日(丁亥)	782
9年 7月 16日(癸亥)	749	9年 10月 13日(己丑)	783
9年 7月 16日(癸亥)	750	9年 10月 13日(己丑)	784
9年 7月 29日(丙子)	751	9年 10月 14日(庚寅)	785
9年 7月 29日(丙子)	752	9年 10月 15日(辛卯)	786
9年 7月 30日(丁丑)	753	9年 10月 15日(辛卯)	787
9年 8月 1日(戊寅)	754	9年 10月 16日(壬辰)	788
9年 8月 3日(庚申)	756	9年 10月 20日(丙申)	789
9年 8月 4日(辛巳)	757	9年 10月 24日(庚子)	790
9年 8月 5日(壬午)	759	9年 10月 24日(庚子)	791
9年 8月 5日(壬午)	760	9年 10月 27日(癸卯)	792
9年 8月 10日(丁亥)	761	9年 10月 27日(癸卯)	793
9年 8月 10日(丁亥)	762	9年 11月 2日(戊申)	794
9年 8月 11日(戊子)	763	9年 11月 8日(甲寅)	795
9年 8月 15日(壬辰)	764	9年 11月 8日(甲寅)	796
9年 8月 15日(壬辰)	765	9年 11月 9日(乙卯)	797
9年 8月 21日(戊戌)	766	9年 11月 11日(丁巳)	798
9年 8月 27日(甲辰)	767	9年 11月 12日(戊午)	800
9年 8月 28日(乙巳)	768	9年 11月 12日(戊午)	801
9年 9月 5日(辛亥)	769	9年 11月 17日(癸亥)	802
9年 9月 5日(辛亥)	770	9年 11月 18日(甲子)	803

9年 11月 18日(甲子)	804	10年 1月 11日(丙辰)	835
9年 11月 18日(甲子)	805	10年 1月 14日(己未)	836
9年 11月 20日(丙寅)	806	10年 1月 14日(己未)	837
9年 11月 20日(丙寅)	807	10年 1月 15日(庚申)	838
9年 11月 20日(丙寅)	808	10年 1月 16日(辛酉)	840
9年 11月 21日(丁卯)	809	10年 1月 18日(癸亥)	841
9年 11月 21日(丁卯)	810	10年 1月 23日(戊申)	842
9年 11月 23日(己巳)	811	10年 1月 24日(己巳)	843
9年 11月 23日(己巳)	812	10年 1月 25日(庚午)	844
9年 11月 24日(庚午)	813	10年 1月 27日(壬申)	845
9年 11月 26日(壬申)	814	10年 2月 11日(乙酉)	846
9年 11月 27日(癸酉)	815	10年 2月 11日(乙酉)	847
9年 11月 29日(乙亥)	816	10年 2月 12日(丙戌)	848
9年 12月 1日(丙子)	817	10年 2月 12日(丙戌)	850
9年 12月 1日(丙子)	818	10年 2月 12日(丙戌)	851
9年 12月 2日(丁丑)	819	10年 2月 13日(丁亥)	852
9年 12月 2日(丁丑)	820	10年 2月 13日(丁亥)	853
9年 12月 2日(丁丑)	821	10年 2月 13日(丁亥)	854
9年 12月 10日(乙酉)	822	10年 2月 15日(己丑)	856
9年 12月 10日(乙酉)	823	10年 2月 18日(壬辰)	858
9年 12月 11日(丙戌)	824	10年 2月 18日(壬辰)	859
9年 12月 16日(辛卯)	826	10年 2月 19日(癸巳)	860
9年 12月 18日(癸巳)	827	10年 2月 19日(癸巳)	861
9年 12月 18日(癸巳)	828	10年 2月 21日(乙未)	862
9年 12月 27日(壬寅)	829	10年 2月 22日(丙申)	864
		10年 2月 23日(丁酉)	865
		10年 2月 24日(戊戌)	866
		10年 2月 26日(庚子)	867
		10年 2月 26日(庚子)	868
		10年 2月 26日(庚子)	869

1786年

10年 1月 10日(乙卯)	832
10年 1月 10日(乙卯)	833
10年 1月 11日(丙辰)	834

10年 2月 27日(辛丑)	870	10年 4月 5日(戊寅)	900
10年 2月 27日(辛丑)	871	10年 4月 8日(辛巳)	901
10年 2月 28日(壬寅)	872	10年 4月 8日(辛巳)	902
10年 2月 28日(壬寅)	873	10年 4月 12日(乙酉)	903
10年 2月 29日(癸卯)	874	10年 4月 15日(戊子)	904
10年 2月 29日(癸卯)	875	10年 4月 16日(己丑)	905
10年 2月 29日(癸卯)	876	10年 4月 17日(庚寅)	906
10年 2月 29日(癸卯)	877	10年 4月 19日(壬辰)	907
10年 2月 29日(癸卯)	878	10年 4月 20日(癸巳)	908
10年 2月 30日(甲辰)	879	10年 4月 21日(甲午)	909
10年 3月 3日(丁未)	880	10年 4月 22日(乙未)	910
10年 3月 4日(戊申)	881	10年 4月 22日(乙未)	911
10年 3月 6日(庚戌)	882	10年 4月 23日(丙申)	912
10年 3月 6日(庚戌)	883	10年 4月 23日(丙申)	913
10年 3月 7日(辛亥)	884	10年 4月 24日(丁酉)	914
10年 3月 7日(辛亥)	885	10年 4月 24日(丁酉)	915
10年 3月 9日(癸丑)	886	10年 4月 26日(己亥)	916
10年 3月 10日(甲寅)	887	10年 4月 26日(己亥)	917
10年 3月 11日(乙卯)	888	10年 4月 27日(庚子)	918
10年 3月 12日(丙辰)	889	10年 4月 27日(庚子)	919
10年 3月 12日(丙辰)	890	10年 4月 28日(辛丑)	920
10年 3月 14日(戊午)	891	10年 4月 28日(辛丑)	921
10年 3月 14日(戊午)	892	10年 5月 1日(癸卯)	922
10年 3月 16日(庚申)	893	10年 5月 1日(癸卯)	923
10年 4月 2日(乙亥)	894	10年 5月 2日(甲辰)	924
10年 4月 2日(乙亥)	895	10年 5月 2日(甲辰)	925
10年 4月 4日(丁丑)	896	10年 5月 27日(己巳)	926
10年 4月 4日(丁丑)	897	10年 5月 27日(己巳)	927
10年 4月 4日(丁丑)	898	10年 5月 27日(己巳)	928
10年 4月 4日(丁丑)	899	10年 6月 1日(癸酉)	929

10年 6月 1日(癸酉)	930	10年 7月 21日(壬戌)	960
10年 6月 2日(甲戌)	931	10年 7月 22日(癸亥)	961
10年 6月 2日(甲戌)	932	10年 7月 23日(甲子)	962
10年 6月 2日(甲戌)	933	10年 7月 23日(甲子)	963
10年 6月 3日(乙亥)	934	10年 7月 24日(乙丑)	964
10年 6月 3日(乙亥)	935	10年 7月 24日(乙丑)	965
10年 6月 5日(丁丑)	936	10年 7月 25日(丙寅)	966
10年 6月 5日(丁丑)	937	10年 7月 25日(丙寅)	967
10年 6月 6日(戊寅)	938	10年 7月 26日(丁卯)	968
10年 6月 6日(戊寅)	939	10年 7月 26日(丁卯)	969
10年 6月 11日(癸未)	940	10年 閏7月 4日(乙亥)	970
10年 6月 13日(乙酉)	941	10年 閏7月 5日(丙子)	971
10年 6月 14日(丙戌)	942	10年 閏7月 6日(丁丑)	972
10年 6月 14日(丙戌)	943	10年 閏7月 6日(丁丑)	973
10年 6月 29日(辛丑)	944	10年 閏7月 6日(丁丑)	974
10年 7月 12日(癸丑)	945	10年 閏7月 6日(丁丑)	975
10年 7月 12日(癸丑)	946	10年 閏7月 7日(戊寅)	976
10年 7月 13日(甲寅)	947	10年 閏7月 7日(戊寅)	977
10年 7月 13日(甲寅)	948	10年 閏7月 10日(辛巳)	978
10年 7月 14日(乙卯)	949	10年 8月 9日(己酉)	979
10年 7月 14日(乙卯)	950	10年 8月 9日(己酉)	980
10年 7月 15日(丙辰)	951	10年 8月 23日(癸亥)	981
10年 7月 15日(丙辰)	952	10年 8月 23日(癸亥)	982
10年 7月 16日(丁巳)	953	10年 8月 27日(丁卯)	983
10年 7月 16日(丁巳)	954	10年 8月 27日(丁卯)	984
10年 7月 17日(戊午)	955	10年 8月 27日(丁卯)	985
10年 7月 17日(戊午)	956	10年 9月 8日(戊寅)	986
10年 7月 18日(己未)	957	10年 9月 8日(戊寅)	987
10年 7月 19日(庚申)	958	10年 9月 13日(癸未)	989
10年 7月 20日(辛酉)	959	10年 9月 20日(庚寅)	990

10年 9月 29日(己亥)	991	10年 11月 29日(己亥)	1012
10年 10月 5日(乙巳)	992	10年 12月 2日(辛丑)	1013
10年 10月 13日(癸丑)	995	10年 12月 2日(辛丑)	1014
10年 10月 14日(甲寅)	996	10年 12月 3日(壬寅)	1015
10年 10月 15日(乙卯)	997	10年 12月 7日(丙午)	1016
10年 10月 16日(丙辰)	998	10年 12月 10日(己酉)	1017
10年 10月 18日(戊午)	999	10年 12月 10日(己酉)	1018
10年 10月 19日(己未)	1000	10年 12月 10日(己酉)	1020
10年 10月 20日(庚申)	1001	10年 12月 11日(庚戌)	1022
10年 10月 21日(辛酉)	1002	10年 12月 16日(乙卯)	1023
10年 11月 3日(癸酉)	1003	10年 12月 16日(乙卯)	1024
10年 11月 4日(甲戌)	1004	10年 12月 17日(丙辰)	1025
10年 11月 6日(丙子)	1005	10年 12月 17日(丙辰)	1026
10年 11月 9日(己卯)	1006	10年 12月 18日(丁巳)	1027
10年 11月 11日(辛巳)	1007	10年 12月 18日(丁巳)	1028
10年 11月 17日(丁亥)	1009	10年 12月 21日(庚申)	1029
10年 11月 17日(丁亥)	1010	10年 12月 21日(庚申)	1030
10年 11月 24日(甲午)	1011	10年 12月 26日(乙丑)	1031

1782年

(정조 6)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壬寅 一月 十二日 己酉

- 備忘記, 向者濟州御史差送, 豈直爲查案而已? 誠欲諮詢疾苦, 閱視才能, 俾島民知有朝廷撫摩之政也. 御史今既還朝, 而別單論列, 詳細纖悉, 若不別般裁處, 則是豈當初差遣之本意也? 元別般六度, 竝啓下廟堂, 後日次次對日持入, 自廟堂稟處者, 自該司稟處者, 各該攸司之臣, 分錄留記, 皆於登對時, 指一覆奏之意, 豫令知悉. 御史奉命後, 前後狀啓別單及覆奏學條, 有司堂上照管, 謄出一冊, 入啓事, 分付本司.

❖ 정조 6년(1782) 임인년 1월 12일(기유)

- 제주어사(濟州御史)의 장계와 별단 및 복주한 거조는 유사당상이 살펴보고 한 책에 베껴서 들이라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¹⁾에, “지난번 제주어사(濟州御史)를 차송(差送)한 것이 어찌 단지 사안(查案) 때문이었겠는가? 참으로 고통을 물어 의논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살살이 살펴보고 삼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에서 백성을 어루만져 달라는 정사가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해서였다. 어사가 지금 이미 조정으로 돌아왔는데, 별단(別單)에 논하여 열거한 것이 아주 자세하다. 특별히 재결하여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 어찌 당초에 차출하여 보낸 본래의 뜻이었겠는가? 본래 특별히 처리해야 할 6도(度)를 모두 묘당에 계하하여 뒤에 일차(日次)에 따라 차대(次對)할 때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고, 묘당에서 나에게 물어 처리할 것과 해사(該司)에서 나에게 물어 처리할 것을 해당 유사(攸司)의 신하가 나누어 기록하고, 모두 등대(登對)할 때 한 가지를 지적하여 복주(覆奏)하도록 미리 통지하라. 어사가 명을 받든 뒤 전후의 장계와 별단 및 복주 한 거조(擧條)를 유사당상(有司堂上)이 살펴보고 1책을 베껴 내어 입계(入啓)하도록 본사(本司)에 분부하라.”라고 하였다.²⁾

△ 주제어: 제주어사, 장계, 별단, 복주.

1) 비망기(備忘記): 임금이 명령이나 의견을 적어서 승지에게 전하던 문서.

2)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6년 1월 12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一月 十二日 己酉

- 以濟州御史別單, 傳于趙鼎鎮曰, 此則刑判既經道伯, 自廟堂下該曹, 使之仔細看閱, 與亞三堂的確停當, 同爲入侍稟處, 而次對日一體持入事, 知悉

❖ 정조 6년(1782) 임인년 1월 12일(기유)

- 제주어사(濟州御史)의 별단과 관련하여 형조판서에게 참판과 참의와 의논하여 품처하도록 하게 하라는 전교
- 제주어사(濟州御史)의 별단과 관련하여 조정진(趙鼎鎭)³⁾에게 전교하기를, “이것은 형조판서가 이미 도백(道伯)을 지냈으니 묘당에서 해당 조(曹)에 내려 자세히 열람하게 하여 참판과 참의와 정확하게 결정하고 함께 입시하여 나에게 물어 처리하되, 차대(次對)하는 날에 일체를 가지고 들어오도록 잘 알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어사, 별단.

3) 조정진(1732~1792): 본관 풍양(豐壤). 자 사수(士受). 1777년(정조 1) 문과 급제. 대사헌, 호조판서, 선혜청당상 역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一月 十二日 己酉

- 傳于沈有鎭曰, 濟州巡撫御史及輪對官入侍.

❖ 정조 6년(1782) 임인년 1월 12일(기유)

- 제주순무어사(濟州巡撫御史)와 윤대관(輪對官)을 입시하게 하라는 전교
- 심유진(沈有鎭)에게 전교하기를, “제주순무어사(濟州巡撫御史)와 윤대관(輪對官)을 입시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순무어사, 윤대관, 입시.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一月 十二日 己酉

- 李在學啓曰, 濟州儒生試取試券, 今已上來, 弘文提學李命植, 卽爲牌招科次, 而方帶臺職, 不得循例請牌. 藝文提學徐浩修, 卽爲牌招, 以爲科次之地, 何如? 傳曰, 允. 當於便殿科次矣, 該房知悉

❖ 정조 6년(1782) 임인년 1월 12일(기유)

- 제주(濟州) 유생의 시취시권(試取試券)에 대한 과차(科次)를 예문관 제학 서호수(徐浩修)가 하도록 청하는 이재학(李在學)의 계
- 이재학(李在學)⁴⁾이 아뢰기를, “제주(濟州) 유생의 시취시권(試取試券)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홍문관 제학 이명식(李命植)⁵⁾을 즉시 패초(牌招)하여 과차(科次)해야 하는데, 현재 대간의 직임을 맡고 있어 규례대로 패초를 청할 수 없습니다. 예문관 제학 서호수(徐浩修)⁶⁾를 즉시 패초하여 과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편전에서 과차할 것이니 해방(該房)은 잘 알고 있으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유생, 시취, 시권, 과차.

4) 이재학(1745~1806): 본관 용인(龍). 자 성중(聖中). 호 지포(芝浦). 시호 익헌(翼獻). 1770년(영조 46) 문과 급제. 대사간, 전라도관찰사, 형조판서 역임.

5) 이명식(1720~1800): 본관 연안(延安). 자 건중(健仲). 시호 문정(文貞). 1751년(영조 27) 문과 급제. 좌참찬, 평안도관찰사, 판돈녕부사 역임.

6) 서호수(1736~1799): 본관 대구(大邱). 자 양직(養直). 1765년(영조 41) 문과 급제. 홍문관 부교리, 대사성, 예조판서 역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一月 十二日 己酉

- 傳于李世奭曰, 試官持濟州試券科次入侍.

❖ 정조 6년(1782) 임인년 1월 12일(기유)

- 제주(濟州) 시권(試券)의 과차(科次)를 가지고 입시하라는 전교
- 이세석(李世奭)⁷⁾에게 전교하기를, “시관(試官)은 제주(濟州) 시권(試券)의 과차(科次)를 가지고 입시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시관, 시권, 과차.

7) 이세석(1654~1703): 본관 전주(全州). 자 주경(周卿). 1692년(숙종 18) 문과 급제. 사헌부 지평, 사헌부 집의 역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一月 十二日 己酉

- 壬寅正月十二日未時，上御誠正閣。輪對官·巡撫御史同爲入侍時，左副承旨李世奭，假注書趙衍德，記事官曹喜有·金鳳顯，中學訓導金就行，典獄主簿張弼漢，東活人別提玄啓桓，西活人別提金元甲，瓦署別提沈景喆，御史朴天衡，以次進伏訖。……上謂天衡曰，御史無事往還，甚可幸矣。別單外，有何可奏之事乎？天衡曰，已悉於別單，更無所奏矣。上曰，島中大體，何如？天衡曰，島中既經屢豐，人心頗勝於陸地矣。上曰，本道年事，果何如？天衡曰，大體則皆有穴農之歎，沿海則尤爲歉荒，而論其市直，則與豐年無異。且來頭麥農成熟，則似無顛連之患矣。上曰，濟州，自是王化稍遠之地，凡厥逆孽，能無後日之患耶？天衡曰，年至漸久，則姑未知何如，而今則三邑守令，各別操切，故罪人輩不得出戶外矣。上曰，御史差遣，今在年久之後，島民舉皆聳動乎？天衡曰，臣往宣恩諭，則民皆感泣欣悅矣。上曰，本州形便，何如？天衡曰，環海爲七百餘里，而四面皆是石角，故船所往來處外，更無着船處矣。上曰，前牧使，何當還來乎？天衡曰，凡於渡海，候風往來，故姑無定限，而新牧使則歲前當渡海矣。上曰，上來試券，何如是數少耶？天衡曰，本州人多從武，故收券如是略少矣。上曰，御史千里驅馳，必多勞攘，從今休息，以爲次對日入侍也。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6년(1782) 임인년 1월 12일(기유)

- 임금이 제주(濟州)에서 돌아와 입시한 순무어사(巡撫御史) 박천형(朴天衡)에게 제주의 형편에 대해 물음
- 임인년 1월 12일 미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윤대관과 순무어사(巡撫御史)가 함께 입시할 때 좌부승지 이세석(李世奭),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기사관 조희유(曹喜有)·김봉현(金鳳顯), 중학훈도 김취행(金就行), 전옥주부 장필한(張弼漢), 동활인별제 현계환(玄啓桓), 서활인별제 김원갑(金元甲), 와서별제 심경철(沈景喆), 어사 박천형(朴天衡)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박천형⁸⁾에게 말하기를, “어사가 무사히 다녀왔으니 매우 다행이다. 별단(別單) 외에 무슨 아될 만한 일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이미 별단에 다 나와 있으니 다시 아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섬 안은

8) 박천형(1737~?): 본관 밀양(密陽).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형조참의, 곡산현감, 충청도관찰사 역임. 제주순무어사로 1781(정조 5) 6월에 입도함.

대체로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섬 안이 이미 여러 차례 풍년이 들어 인심이 육지보다 제법 낫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도(本道)의 농사는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대체적으로는 모두 혈농(穴農)⁹⁾의 탄식이 있고, 연해(沿海)는 더욱 흉년이 들었지만 그 시가(市價)를 논하자면 풍년이 든 해와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리가 익으면 몹시 가난하여 어찌할 수 없는 근심은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는 본래 임금의 교화가 조금 먼 곳이라 무릇 역적의 자식으로 인한 후일의 근심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세월이 점점 오래 지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세 고을의 수령이 각별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문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를 차출하여 보낸 것이 지금 세월이 오래 된 후였는데, 섬 백성들 모두가 좋아하였는가?”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말하기를, “신이 가서 은혜로운 유지를 전하였더니, 백성들이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주(本州)의 형편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바다를 두른 것이 700여 리인데, 사면이 모두 석각(石角)이므로 배가 왕래하는 곳 외에는 다시 배를 붙일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 목사는 언제 돌아오는가?”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무릇 바다를 건널 때에는 바람을 기다려 왕래하기 때문에 우선 정한 기한이 없지만, 새 목사는 세전(歲前)에 바다를 건너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올라온 시권은 어찌하여 이처럼 숫자가 적은가?”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본주(本州) 사람은 대부분 무예에 종사하기 때문에 거둔 시권이 이와 같이 약소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는 천 리 길을 달려왔으니 필히 피로하여 어지러울 것이다. 지금부터 휴식을 취했다가 차대(次對)하는 날 입시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 주제어: 박천형, 어사, 시권.

9) 혈농(穴農): 농사 형편이 고르지 못하여 곳을 따라 풍작과 흉작이 갈지 않은 농사.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一月 十二日 己酉

- 壬寅正月十二日申時，上御誠正閣。科次入侍時，藝文提學徐浩修，一直提學沈念相，二直提學鄭志儉，直閣金載瓚，應教朴天行，副修撰洪文泳，左副承旨李世奭，假注書趙衍德，記事官曹喜有·金鳳顯，以次進伏訖。上曰，他承旨入侍。賤臣承命出，與李在學偕入進伏。上謂浩修曰，濟州道科前例，卿果考見乎？浩修曰，先朝乙酉年，皆爲直赴殿試矣。上曰，然則依古例爲之，可也。命考券，載瓚進讀試券考訖，親拆封。仍命書傳教曰，濟州儒生試取科次，三中幼學金墉，三下通德郎邊景祐，幼學康聖翊，竝依例直赴殿試。次上幼學金命獻，年近七十，文亦可觀，其在慰悅遐土之道，不可無激勸之政，紙三卷·筆五枝·墨五笏，賜給。紙筆墨，自本道題給之意，下諭于該道監司處。上曰，濟州御史今方入來，揆以人情，必有離索之懷，上番卽爲出直，以爲相見，可也。仍下教曰，彼兩玉堂，尙未陞品，亦可冤矣。浩修曰，然矣。上曰，本館有誰替直之人乎？天行曰，權以綱今方牌不進，李宗燮以親病受由，故姑無替直之人矣。上曰，若無替直之人，則以爲變通，好矣。天行曰，館官方多在外，番次近甚苟艱。在前如此之時，或有陳達變通之例，故敢此仰達矣。上曰，許遞，開政差出，可也。【出學條】……。

❖ 정조 6년(1782) 임인년 1월 12일(기유)

- 제주(濟州) 유생을 시취(試取)한 과차(科次)에서 김용(金墉), 변경우(邊景祐), 강성익(康聖翊)을 직부전시(直赴殿試) 하도록 하라는 등의 전교
- 임인년 1월 12일 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과차(科次)가 입시할 때 예문제학 서호수(徐浩修), 일직제학 심염상(沈念相), 이직제학 정지검(鄭志儉), 직각 김재찬(金載瓚), 응교 박천행(朴天行), 부수찬 홍문영(洪文泳), 좌부승지 이세석(李世奭),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기사관 조희유(曹喜有)·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른 승지는 입시하라.”라고 하였다. 천신이 명을 받들고 나가 이재학(李在學)과 함께 들어와서 나와 앞드렸다. 임금이 서호수에게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도과(道科) 전례를 경은 과연 살펴보았는가?”라고 하였다. 서호수가 아뢰기를, “선조(先朝) 을유년에 모두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옛 규례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고권(考券)을 명하니, 김재찬이 시권(試券)을 읽고 나서 봉미(封彌)를 뜯었다. 이어서 전교를 쓰라고 명하여 말하기를, “제주 유

생을 시취(試取)한 과차(科次)에서 삼중(三中) 유학 김용(金壙)¹⁰⁾, 삼하 통덕랑 변경우(邊景祐)¹¹⁾, 유학 강성익(康聖翊)¹²⁾은 모두 규례대로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라. 차상 유학 김명헌(金命獻)¹³⁾은 나이가 70에 가깝고 문장도 불만하니까 지방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도리로 볼 때 격려하는 정사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종이 3권(卷), 붓 5지(枝), 먹 5홀(笏)을 주도록 하되, 지필묵은 본도(本道)에서 제급(題給)하도록 해당 도의 감사에게 하유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어사가 방금 들어왔는데, 인정으로 헤아려 볼 때 반드시 친구를 떠나 홀로 쓸쓸히 생활한 회포가 있을 것이다. 상번(上番)은 즉시 출직(出直)하여 서로 만나 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저 두 옥당(玉堂)이 아직 품계가 올라가지 않았으니 또한 원통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서호수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관(本館)에 누가 대신 입직할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박천행이 아뢰기를, “권이강(權以綱)은 지금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이종섭(李宗燮)은 아버지의 병 때문에 말미를 받았습시다. 때문에 지금은 대신 입직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교체하여 입직할 사람이 없으면 변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박천행이 이르기를, “성균관 관원 대부분이 지방에 있어서 번차(番次)가 매우 구차하고 어렵습니다. 전에 이와 같은 때에는 간혹 진달하여 변통한 예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체차(遞差)하고 정사를 열어 차출하라.”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하락〉.

△ 주제어: 김용, 변성우, 강성익, 김명헌, 직부전시.

10) 김용(1744~1783): 본관 경주(慶州).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예조좌랑, 성균관전직, 전릉령 역임.

11) 변경우(1745~1836): 본관 원주(原州). 자 선재(善哉). 호 자연당(自然堂).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성균관전직, 사헌부장령, 고산도찰방 역임.

12) 강성익(1747~1819): 본관 신천(信川). 자 오응(五應). 호 명재(明齋).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사천현감, 비안현감 역임.

13) 김명헌(1714~1795): 본관 광산(光山). 1794년(정조 18) 제주어사 심낙수(沈樂洙)가 내도하여 시취할 때 특명으로 급제하였음.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一月 十四日 辛亥

○ 壬寅正月十四日辰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徐命善，右議政李徽之，行中樞府事具善復·洪樂性，戶曹判書李衍祥，知中樞府事鄭尙淳，兵曹判書鄭好仁，江華留守金煜，禮曹判書金魯鎮，右參贊鄭民始，刑曹判書徐有隣，漢城左尹李昌運，行副司直李柱國，兵曹參判徐有寧，禮曹參判鄭一祥，漢城右尹蔡弘履，吏曹參判金文淳，刑曹參判金尙集，刑曹參議李東馨，校理李顯模，左承旨李在學，同副承旨朴天衡，假注書趙衍德，記事官曹喜有，記注官金鳳顯，以次進伏訖。……上曰，見濟州御史書啓，果善爲之，誠可嘉矣。命善曰，觀其別單，則非但詳悉，其文字亦善作矣。上曰，大變正刑之事，雖出公憤，亦關後弊，終不可無警矣。命善曰，聖教誠然，而聞此亦有已例云矣。上曰，御史詳言其已例，可也。朴天衡曰，年前李壽鳳，以御史八島也，以罪人彝鼎之做作訛言，誑惑人心，果有擅刑之事矣。上曰，雖有已例，大變則與他罪人有異，卽一鞫囚之未結案者也。結案之前，不得行刑，自是法典，故逆如啓能，而猶未施法，況於大變，用以軍律，實是法外矣。在昔一將臣以爲，雖梟示罪人，亦當捧結案後正法，有所筵奏，其言誠得法意矣。命善曰，御史此事，雖因公憤，既違法意，宜有薄警矣。……命善曰，卽見濟州御史朴天衡別單，則其一，論水山·遮歸諸鎮之當罷，烽燧煙臺疊設之當減也。多置衙門，實爲巨瘼，於島中不緊鎮堡，固當稍減於其間，而當初排布，儘有商量，既設還革，亦豈無弊？此則置之。瞭望之烽燧，既已羅列，則不關之煙臺，所宜鐫除，而以幾年創行之規，有中間防塞之議，事貴持重，謀宜廣博，更令新牧使，論理啓聞後稟處，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上曰，烽煙臺，古所設置者，而今請減罷，有何意見耶？天衡曰，觀其形止，則五里三里之間，煙臺稠疊，當初設施，蓋爲荒唐船出沒之時，煙氣相應，以爲報警之地，而近來則全無報警之事，但有分守之苦，其中不緊處減罷，似無妨，故有所論及矣。命善曰，其一，論牙兵收米之弊，申明入場(防?)之法也。創置捍禦之親兵，以備緩急之緊用，顧其法意，本自嚴重，而行之未久，廢而不遵，惟利官府之供需，不念海防之疎虞，永罷輪番之制，忽變收米之規，事之無謂，孰甚於此？從今以往，亟加釐改，依初定式，輪回入防，而如或不體飭令，更用謬例，則當該牧使，繩以重律之意，申飭行會，何如？上曰，依爲之。二哨加設委折及年條，更令牧使，具由狀聞，可也。【出舉條】上曰，二哨加設，在於何年，而其所入防，以幾日爲限耶？天衡曰，未知加設之的在何年，而入番則以五日爲限矣。上曰，御將曾經濟牧，可知存罷之便否矣。昌運曰，加設入防，有弊無益，臣意則鐫罷，爲無妨矣。上曰，本牧操鍊之時，牙兵盡爲赴操耶？昌運曰，然矣。善復曰，本牧自是重地，而既係捍禦之備，則不可襲謬仍廢矣。天衡曰，外村牙兵，或居在百里之遠，故屢日入番，實有妨農之弊。然重地防守，不

可疎虞，罷其收米之謬規，申其入防之舊法，恐不可已矣。命善曰，其一，論六苦役之偏重，八斗之米太歇，酌量民力，平均物情也。貧賤之民，事役益繁，富實之人，供納漸輕，而例下之米，反爲吏胥之消融，平役之規，又致法久而弊生。到今民窮轉甚之時，宜有物極必變之道，查括冒托，代彼癯老，加捧身米，添給役夫，儘得停當之宜，實合損益之政，而御史既已知委州縣，定爲成式，依此遵行，毋或擅改之意，更加申飭，何如？上曰，依爲之。如是定式，而或有擅改之弊，事之無實，孰甚於此？自本司枚舉此意，行會湖南伯處，使之時送偏裨，考其遵行與否，此後違越事目之牧守·道臣，隨所聞，直請罷黜事，知委，可也。【出舉條】上曰，漁戶進排之弊，何如是難支也？予於御極之後，爲軫此弊，減省灰·全鰓之數，爲三千八百餘貼，而島民尚有難支之患，向所減給，亦無實惠而然耶？天衡曰，屢千餘貼減省，實爲島民莫大之惠，而灰鰓則三邑寺奴婢，分力擔當，故不至甚難。至於引鰓·槌鰓，則鮑作輩全數擔當，故尤以爲難矣。上曰，若又減貢，則引·槌鰓間，當減何種，爲便民之道乎？天衡曰，若減引鰓，則尤當爲好矣。命善曰，向來累千貼全減，既出於柔遠之盛德，今若又減常供，則非但有恩竭之慮，其在國體，亦涉如何矣。民始曰，此係土產之物，便是惟正之供，則豈可以些少民弊，每每減省乎？若此不已，則至於大同之稅，亦將有除減之弊，決不可輕議減貢矣。上曰，島民之弊，非不軫念，而土貢之每每減省，亦果爲難矣。命善曰，其一，論浦戶進排之難支，魚物別貿之無節也。詳定磨鍊，本自優厚，而出給價本之時，盡歸中間之消融，官家貿易，漸至繁多，而收斂督納之際，自致閭里之騷擾，漁村海夫之蕩殘蕭條，職由於此。御史即以不正名色，永爲革罷之意，成置節目，朝家之申禁，在所不已。此後復踵此習之守令，隨現重繩事，爲先嚴飭知委，何如？上曰，依爲之。此條定式，亦可永久遵行，一體行會湖南伯處，可也。【出舉條】命善曰，其一，論橘柚之勿侵私園，種樹之枚報京司也。數其結顆，竟徵自落之價，憫其索賂，至芟傍藥之枝，幾何，無橘之論，果是必至之勢。從今以往，惟以四十園所結之實，盡封二十運貢獻之果，若其橫斂之習，一切嚴禁。或當荒損之年，厚價和買，而每於歲末，摠計三邑種橘之數，修報備局，一如江都種枳之例，儘爲除民弊，養橘樹之方，依御史所請，定式施行，何如？上曰，依爲之。大抵橘柚之貢，上關薦獻之用，下係頒宣之需，則近年以來，應貢名色，不充恒式者，不啻十分之八九，此亦紀綱所在。況見御史別單，公園之物，盡歸消融，民間之果，每在橫侵，若不痛革此弊，公私受害，抑云不些？從後御史之行，更以民間菓果摘取事，有登聞之弊，則自時任牧使，繩以重律，斷不饒貸，自本司措辭，各別嚴飾，可也。【出舉條】上曰，橘柚之貢，昔則殆近萬顆，而挽近所貢，漸不如古，至於今年，不過數百餘顆，是何故也？天衡曰，私園橘柚，每被官家之橫侵，有計顆徵出之弊，故民以爲苦，至於芟去傍藥之枝，以是之故，橘柚漸不如前矣。命善曰，其一，論兩縣支供之勿許民斂，本牧匠料之還付該邑，一依辛酉

詳定，劃下州倉耗穀也。使客之需，無邑不有，民戶之徵，曾所未聞，創出名色，雖難輕議，各歸加耕，亦甚便宜。至於本牧匠料，既有詳定舊例，以其州倉耗穀，許令磨鍊區劃，而如是定式之後，兩縣或有如前民斂之弊，則摘發論罪，繩以重科事，分付，何如？上曰，依爲之。民斂一款，尙不釐改，豈非未遑之甚者也？此後一遵定式，無或撓改之意，嚴飭，可也。【出舉條】命善曰，其一，論三邑糴法之乖宜，大靜民役之偏苦也。居民之移去移來，容或有說，土着之籍彼籍此，他邑所無，土沃則耕其田，役苦則避其籍，此等謬風，若不釐正，則原籍之民，豈不獨被其害乎？自今爲始，一依時居，使之入籍，違越者抵罪之意，申明知委，何如？上曰，依爲之。此係牧守治蹟之能否，至於三邑守令之奉法，特在牧守一號令間事，以此意嚴飾，無或如前錯謬，可也。【出舉條】命善曰，其一，論貢作米之每患間斷，附近邑之更令區劃也。本牧之需用，最甚緊關，而遠郡之運輸，不免稽滯，羅州·海南，果有不足之患，則其他近邑，豈無推移之道？更爲從便變通，勿令島中受弊事，分付湖南道臣，何如？上曰，依爲之。蘇弊形止，使之狀聞，可也。【出舉條】命善曰，其一，論刷價木料理之弊，雇馬庫革罷之宜也。官長之殖利，已甚無謂，村駒之勒買，尤是不法，罷其庫而移其木，存其規而革其弊，御史之處置得當，朝家之勒禁宜申，行會本牧，使之依節目遵行，何如？上曰，依爲之。此亦依他條件，無或擅改之意，各別嚴飭。今番繡行，諸般定式，無論此事他事，設有未便之端，卽經筵稟，則自牧使，不可擅改，必須狀聞，待回下舉行事，一體分付，可也。【出舉條】命善曰，其一，論狀啓陪持，浮費多端，出送都會，轉付驛便也。海外之程途絕遠，專人之往來有弊，鱗次傳授，火速呈納，意則好矣，弊亦省矣，而但驛路之凋殘，莫甚於近日，本牧之威令，不行於陸地，因便出送之邊報，果能一一傳致否？更令湖南道臣，商量論啓後，稟處，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命善曰，其一，論羅舖運米倉吏，售奸涼臺定價，減省稱冤也。移粟賑飢，本爲島民之濟活，而色羶斛縮，徒歸倉吏之舞弊，實惠不究，受弊不貲。分付道臣，另加申飭，俾使島中，獲免無實之歎，涼價之次第減省，未知有何委折，一斗之更令復古，未知果無弊端，令道臣論理啓聞後稟處，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命善曰，卽見濟州御史朴天衡別單，則其一，論山屯築墻之有害無益，不可不毀撤也。再昨年金永綬之以築墻事，啓聞也，臣覆奏其失宜，仍以擅便之罪，先請問備，今繡啓所論，果如臣之賤見矣。當初築墻，既知其大段誤着，則劃卽毀撤，固是不可已之舉，而雖以繡啓見之，小民利其除弊，皆不願毀云。馬雖不健，民則除弊，不築之前，決不可議築，而既築之後，亦不可輕毀。臣更與御史，面議消詳，則御史之意又如此，而第聞御史之言，若毀針場內橫築，則民無難驅之弊，馬有廣牧之益，此則勿論大小民人，皆曰可毀云。分付該牧，先毀針場內橫築，其他築場，姑且仍置，更觀來頭，徐議處之，何如？上曰，依爲之。針場橫築處，斯速撤毀，舉行形止，使之狀聞，此後二場橫築處，繼撤便否，俱由狀聞，

可也。【出舉條】上曰，馬場周回，爲幾何？天衡曰，四十里矣。上曰，馬匹，爲幾何？天衡曰，原數爲二千餘匹，而一年故失，多至八百餘匹矣。上曰，何其故失之多也？天衡曰，內築甚狹，且無水草，故馬失其性，又無可吃，以致故失之多矣。上曰，場築，設於何處乎？天衡曰，俱是山底，而築以石子矣。命善曰，當初築場，爲除驅馬之弊，而一自橫築之後，馬之損失，如是夥然。大抵驅馬之弊小，而損馬之害多，論其輕重，撤毀內墻，宜矣。上曰，御將詳言其便否，可也。昌運曰，馬之爲物，上下山坂，吃草飲水，固其性也。今乃囚繫場內，反失其性，前牧之意，雖出難驅之弊，而言其馬政，極甚未便矣。上曰，訓將之意，何如？善復曰，臣以山馬事，將欲仰奏矣，今承下教，當仰陳矣。前則臣營所來之馬，數至百餘匹，而皆是駿馬，近年則舉多瘦瘠之駑駘，必是囚繫場內，不得順其性而然也。大抵我國馬政，專靠濟州，而拘繫飢敗，輒致損失，雖曰有難驅之弊，其在攻馬之政，豈可以些少民弊，不念故失之患乎？臣意則如前放牧，似好矣。上曰，摠戎使之意，何如？柱國曰，臣亦聞此弊，而築場養馬，實非其宜，卽令放牧，宜矣。上曰，築場養馬，殆同囚繫，已失其性，而春夏則雖有水草之食，秋冬則只在冰雪之中，馬安得不飢且死乎？所謂橫築，宜先撤毀矣。命善曰，果然矣。命善曰，其一，論山馬之逐年驅點，大爲民弊，依舊例每式年封進也。此亦金永綬狀請之事，而既以船隻之一時難運，元數之三年分貢爲言，故軫念邑瘼，覆奏許施矣。今繡啓所論如此，覓船之難，其弊也小，動民之煩，其弊也大，何拘銷刻之嫌，不思弛張之道乎？今年爲始，山屯馬，勿爲逐年分封，每於式年，依舊例準數封進事，分付，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命善曰，其一，論貢馬載運之船，復舊例，以陸地船運來，以除島民之弊也。雖以金永綬山馬分貢之請觀之，船隻之難得，可以推知，而繡啓所論又如此，一依甲戌以前之例，入送沿海邑船隻，載運以來，在島民，豈非省弊之大端，而第今湖南船隻之難得，殆甚於島中，莫重惟正之供，尙有難運之慮。況此載馬之船，恐無津遣之望，試令道臣，商量論啓後，稟處，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命善曰，其一，論牛馬監勸懲之政，一依丙寅御史書啓覆奏，申明舊制，遵而勿失也。牧養之勤慢，專在於勸懲，若使馬蓄蕃息，種落駿逸，則毋論京外職，何惜其調用，而如或不然，嚴刑遠配之律，決無饒貸之理。爲先另飭該牧，使之知委於牛馬監，俾令着意舉職，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命善曰，其一，論金萬鎰之世牧，不可遽罷，金商皓之加徵，未免爽實也。金永綬之言，有不可準信，故更令繡衣，詳探以聞矣。今此查啓，大段相左，金商皓論罪一款，置而勿問，所謂營裨李廷九受賂虛錄之罪，不可不嚴懲。令該曹查問稟處。金家箕裘之業，傳之幾世，遽議革罷，殊非賞功之義，此後牧官差出時，勿使其門長，自望以報。令本牧取其一門中可合人，各別擇差事，定式施行，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命善曰，其一，論場內起耕，另加嚴飭，俾勿如前狼藉也。牧場之設，所以牧養馬群，若使耕作於其中，則場地日縮，馬群無牧養

之所，此豈設置牧場之意乎？萬餘石所出之田，雖難一朝陳廢，繼自今更勿犯耕，隨現重究事，嚴立科條，各別申飾，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上曰，牧場爲幾處乎？天衡曰，爲十三場矣。命善曰，其一，論駟僮入海，駿駒出陸，島無良牡，種不如古也。島民之生涯轉艱，陸商之往來益繁，驂騑則舉皆牽出，驄鬣則隨即割取，近來馬種之孱劣，馬群之蕭條，良由於此。私馬買賣之弊，雖不可一切嚴禁，凡係爲害於馬政者，另加察飭，俾盡護養之方，佇收蕃息之效事，分付，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樂性曰，濟州御史朴天衡別單中，以濟州城內，去船所未滿十里，且是許多陸商之所都會處也。書信之往來，物貨之交通，職由於此。如貞喆·翼雲等罪人，此皆攀緣京洛之類，不可置之於濟州。以臣愚見，貞喆·翼雲，分配於大靜·旌義等縣，似爲得宜，令該府稟處爲請矣。本州之爲許多商賈都會處，誠如御史所陳，則逆擊之如貞喆·翼雲輩，締結陸商，交通京信，必有其弊。罪人貞喆，移配旌義縣，罪人翼雲，移配大靜縣，嚴飭各其配所官，另加檢束，以爲各別防守之地，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好仁曰，濟州御史朴天衡別單中，本道武科之曾經萬戶·千別將等人，從略搜取。觀其身手，試以弓馬，以略千人開錄，而今番新榜中，亦抄其身手出衆，弓馬超等者，唱榜上來時，以爲試才調用事爲請矣。本州以海島重防，比他自別，固當加意，島中武士，若有武藝超異，果如繡啓，則使之一向沈屈，恐有欠於柔遠之道。一依御史所請，拔其尤而次次收用，今番武科，亦待其唱榜，以爲隨窠調用之地，何如？上曰，依爲之。必須次第調用，俾無無實之歎。至於新榜人待唱第上來時，卿及各營將臣，招見其身手才藝之如何，亦皆收用，可也。【出舉條】上曰，濟州人亦有許薦之規耶？昌運曰，皆爲未副薦矣。好仁曰，濟州御史朴天衡別單中，軍校之屢年任事勤勞特著者，別爲啓聞，或給展力等資，或給兼司僕·內禁等帖，以爲激勸之地，故申飭各該邑鎮，擇其中仕多者，開錄于後，令該曹依例成給爲言矣。各道鄉將校仕滿五十朔者，以展力·兼司僕寺等帖，俾作酬勞之資，自是前例。今此各人等，既已準朔，依例帖文成給，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好仁曰，濟州御史朴天衡別單中，本道榮顯之任，卽千摠別將·明月萬戶·八鎮助防將也。閑良則資緣圖得，出身則得差無多，或至三四十年而空老。故探問物情，定其職窠，千摠二稟，別將一窠，助防將六窠，以出身差出，餘窠則分差閑良之積仕者，以爲疏通之道爲請矣。其所論列，果合物情，則宜有變通之道，依別單所請施行，而至於分窠當否，令本州成節目狀聞，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上曰，本牧邊將，何其閑良之多差也？天衡曰，富民則納賂得差，貧民則雖出身，不得爲之，故然矣。……好仁曰，濟州御史朴天衡別單中，本州寺奴車已弘，前後三次拯活人命之數，合爲七十八名之多。若不各別論賞，則無以激勸島俗，請令該曹稟處矣。取考前例，則拯活十五名以上者，施以加資之典，今此車已弘，三次所拯，既如是數多，所當依他例施賞，而既是寺奴，則許其免賤，載在法典，車已弘依法典免

賤，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魯鎮曰，觀此濟州御史朴天衡別單，則以旌義縣幼學金精旭妻金氏，以十七歲女子，爲夫殉節，臨葬自經，大靜縣幼學姜應周妻金氏，亦以及笄之女，能知殉夫之義，從容自裁，其節可嘉，俱以旌閭爲請矣。地是王化之所遠暨，事亦絕島之所罕聞，況其舍生取義之節，不宜湮沒而無稱，其在激勵之道，合施旌閭之典。至於濟州記官李弼完，養百歲之母，能盡其誠，當國恤之時，自效陵役，論其實行，合施嘉獎，而生前旌閭，不可輕議。弼完即以優老之典，得蒙加資之恩，假以僉樞之實銜，以聳一島之觀瞻，恐似得當，而事係恩典，臣曹不敢擅便，上裁，何如？上曰，旌義金氏·大靜金氏旌閭事，事在島中，至今埋沒無稱，豈非欠事？其在激勵之道，宜加旌閭之典，依施。濟州記官李弼完事，纔已加資，僉樞實銜，令該曹單付啓下。聞弼完，年滿九十云云，教旨今日內成送。給復一款，雖係疊賞，子姪收用，實合聳勸之政，本牧邊將，待窠卽爲差下後狀啓事，分付該牧使處，可也。【出舉條】……有隣曰，濟州御史朴天衡書啓別單中，濟州前牧使金永綬，前判官黃麟采，偏聽梁擎天之言，枉殺姜城事，有所論列矣。事係濫殺，宜有嚴勘，而永綬則以重罪安置，臺啓方張，今無可論，而麟采則係是朝官，移義禁府處之，何如？上曰，依爲之。本事不但枉殺人命，所謂姜城，既非奴隸，則在朝家伸理之政，不可無準律勘斷之舉。前牧使金永綬，令該府待用刑，拿來推問後稟處，可也。【出舉條】……文淳曰，卽伏見濟州巡撫御史朴天衡別單，則以爲一島蘇瘼之道，莫過於另擇牧使，申飭該曹，以文武中，有名望聲績之人擇差，三邑守令，絕海殘邑，無異居謫，若無償勞之典，鮮有盡職之心，亦令該曹，待其報瓜，文官則遞付京職，武官則陞遷外任，以爲激揚之方爲言矣。本州異於陸邑，牧伯尤宜另擇，自臣曹依所請，隨窠擇擬，而至於三邑守令遞付陞遷事，事係官方定式，臣不敢擅便，下詢大臣稟處，何如？上曰，大臣之意，何如？領議政徐命善曰，守令，若無偉績殊勞，則陞遷遞付，有不可輕許。海島居官，非不辛苦，而永作陞遷遞付之窠，則其在慎官方之義，恐未知如何矣。右議政李徽之曰，領相所奏，誠然矣。既無償功酬勞之事，而先定內遷陞品之式，恐非慎官方之道矣。上曰，無論陞遷與遞付，惟此銓曹差遣之如何，此後另加擇差，如以不能堪當之人，或有注擬，卿等隨現，當該銓官論罪，可也。【出舉條】文淳曰，卽伏見濟州巡撫御史朴天衡別單，則以本州前銜及新榜人，令該曹隨窠調用爲言矣。其在柔遠之道，固合收用，苟有沈屈之才，尤宜甄拔，毋論前銜與新榜，自臣曹觀其人而隨其窠，以爲次第檢擬之地，何如？上曰，已及於兵判舉條批旨，卿曹亦爲依此舉行，可也。【出舉條】……

❖ 정조 6년(1782) 임인년 1월 14일(신해)

□ 영의정 서명선이 입시하여 제주어사(濟州御史) 박천형(朴天衡)의 별단(別單)에서 거론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함

○ 임인년 1월 14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우의정 이휘지(李徽之), 행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홍낙성(洪樂性), 호조판서 이연상(李衍祥), 지중추부사 정상순(鄭尙淳), 병조판서 정호인(鄭好仁), 강화유수 김익(金燧), 예조판서 김노진(金魯鎭), 우참찬 정민시(鄭民始), 형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한성좌윤 이창운(李昌運),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병조참판 서유녕(徐有寧), 예조참판 정일상(鄭一祥), 한성우윤 채홍리(蔡弘履), 이조참판 김문순(金文淳), 형조참판 김상집(金尙集), 형조참의 이동형(李東馨), 교리 이현모(李顯模), 좌승지 이재학(李在學), 등부승지 박천형(朴天衡),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기사관 조희유(曹喜有), 기주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의 서계(書啓)를 보니 과연 잘 처리하였다. 참으로 가상하다.”라고 하였다. 서명선¹⁴⁾이 아뢰기를, “그 별단(別單)을 보니 자세할 뿐만 아니라 문장도 잘 지어졌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대섭(洪大燮)¹⁵⁾을 법대로 처형한 일은 비록 공분(公憤)에서 나온 것이지만 또한 훗날의 폐단에 관계되니, 끝내 경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옳은데, 듣건대 이 또한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가 그 전례를 자세히 말하라.”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몇 해 전에 이수봉(李壽鳳)¹⁶⁾이 어사로 섬에 들어갔을 때 죄인 이정(彝鼎)이 거짓말을 지어내어 인심을 현혹시켰기 때문에 과연 임의로 형벌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홍대섭은 다른 죄인과는 차이가 있으니, 바로 국청(鞠廳)에서 신문하는 중죄수로 결안(結案)하지 않은 자

14) 서명선(1728~1791): 본관 대구(大丘). 자 계중(繼仲). 호 귀천(歸泉)·동원(桐源). 시호 충문(忠文). 1763년(영조 39) 문과 급제. 사헌부지평, 사간원헌납, 홍문관응교 역임.

15) 홍대섭(?~?): 본관 남양(南陽). 1774년(영조 50) 소과 급제. 1777년(정조 1) 은전군(恩全君) 이찬(李讚)을 추대하려는 역모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역모에 연루되어 제주에 유배됨. 1780년(정조 4)에 유배지인 제주에서 도망을 쳤다가 1781년(정조 5)에 재차 체포됨.

16) 이수봉(1710~?): 본관 함평(咸平). 자 의숙(儀叔). 호 화천(花川). 헌납, 사간, 장령 역임. 1763년(영조 39) 7월 정의현에 유배된 심내복(沈來復)의 역모사건으로 인해 같은 해 10월 제주위유어사로 다녀갔음.

이다. 결안하기 전에는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본래 법전이다. 때문에 홍계능(洪啟能)¹⁷⁾과 같은 역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법을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홍대섭에게 군율을 적용하였으니 실로 법을 벗어난 것이다. 예전에 한 장신(將臣)이 비록 효시(梟示)될 죄인이라도 결안을 다짐을 받은 뒤에 법대로 처형해야 한다고 연석(筵席)에서 아뢰 바가 있었으니, 그 말이 참으로 법의 뜻을 얻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어사의 이 일이 비록 공분(公憤)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미 법의(法意)를 어긴 것이니, 의당 다소나마 경책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방금 제주어사 박천형의 별단을 보니 그 하나는, 수산진(水山鎭)과 차귀진(遮歸鎭)을 혁파해야 한다는 것과 봉수와 연대 중 중첩으로 설치된 것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논한 것입니다. 아문(衙門)을 많이 두는 것은 실로 큰 폐단이니, 섬 안에 긴요하지 않은 진보(鎭堡)는 실로 그 사이에서 조금 줄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 배치한 데는 참으로 헤아린 바가 있었을 것이니, 이미 설치했다가 다시 혁파하는 것 또한 어찌 폐단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두도록 하십시오. 먼 곳을 살피는 봉수가 이미 늘어서 있으니 상관없는 연대는 마땅히 줄여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처음 시행한 규례를 가지고 중간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의론이 있습니다. 일은 신중한 것을 귀히 여기니 폭넓게 모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새 목사로 하여금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게 한 뒤에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봉수대는 옛날에 설치한 것인데, 지금 줄이기를 청하니 무슨 의견인가?”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그 형편을 살펴보니 5리나 3리 사이에 연대가 거듭 중첩되었는데, 당초에 설행한 것은 대개 황당선(荒唐船)이 출몰할 때 연기로 서로 응하여 위급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위급한 사실을 알리는 일이 전혀 없고 다만 나누어 지키는 괴로움만 있을 뿐이니, 그 가운데 긴요하지 않은 곳을 줄여 혁파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때문에 논급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그 하나는 아병(牙兵)에게 쌀을 거두는 폐단과 입방(入防)하는 법을 거듭 밝히는 것을 논한 것입니다. 방어사(防禦使)의 친병(親兵)을 창설하여 위급할 때 긴요한 용도에 대비하려 한 것은 생각건대 그 법의(法意)가 본래 엄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7) 홍계능(?~1776): 본관 남양(南陽). 호 신계(莘溪). 1750년(영조 26) 우의정 정우량(鄭羽良)의 천거로 등용. 평안도도사, 지평, 집의 역임. 홍인한(洪麟漢)과 더불어 세손의 즉위를 반대하였다가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하옥되어 옥사함.

서 폐지하여 따르지 않고, 오직 관부(官府)의 공급과 수요만을 이롭게 여겨 해방(海防)을 소홀히 하여 일을 그르칠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윤번(輪番)하는 제도를 영구히 혁파하여 갑자기 쌀을 거두는 규정으로 바꾸었으니, 일이 이렇데 없기가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지금 이후로는 속히 바로잡아 처음 정한 규정대로 돌아가며 입방하게 하되, 만약에 칙령(飭令)을 체찰(體察)하지 않고 다시 잘못된 규례를 쓴다면 해당 목사를 무거운 형률로 다스리겠다는 뜻으로 신칙하여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대로 하라. 2초(哨)를 가설한 이유와 연도를 다시 목사로 하여금 사유를 갖추어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2초의 가설은 어느 해에 있었고, 그 입방하는 것이 며칠을 기한으로 하는가?”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가설한 것이 정확히 어느 해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번은 5일을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영대장이 존치와 폐지의 편부(便否)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창운(李昌運)¹⁸⁾이 아뢰기를, “가설하여 입방하는 것은 폐단만 있고 이로움은 없으니, 신의 생각에는 건파(鑄罷)해도 무방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목(本牧)에서 조련할 때 아병은 모두 습조(習操)에 하는가?”라고 하였다. 이창운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구선복¹⁹⁾이 아뢰기를, “본목은 본래 중요한 지역으로 이미 방어하는 대비에 관계되니, 잘못을 답습하여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외촌(外村)의 아병이 혹 100리 먼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여러 날 입번(入番)하여 실로 농사에 방해가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곳을 방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되니, 쌀을 거두는 잘못된 규례를 폐지하고 입방하는 옛 법을 신칙(申飭)하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그 하나는 여섯 가지 고역이 편중되어 있고, 8말의 쌀이 너무 험하니 백성들의 재력을 헤아려 형편을 고르게 할 것을 논한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은 사역(事役)이 더욱 번거로워지고, 부유한 사람은 바치는 것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데, 의례히 내려주는 쌀은 도리어 이서(吏胥)가 다 써버리고, 역사(役事)를 고르게 하는 규정 또한 법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어 폐단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백성의 곤궁함이

18) 이창운(1713~1791): 본관 함평(咸平). 자 성유(聖兪). 1739년(영조 15) 무과 급제. 어영대장, 총융사, 오위도총부도총관 역임.

19) 구선복(1718~1786): 본관 능성(綾城). 자 사초(士初). 충청도병마절도사, 병조판서, 형조판서 역임.

점차 심해지는 때에 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변경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허위 칭탁을 모조리 조사해 내고 병들고 늙은 사람 대신 내는 신미(身米)를 더 거두어 역부(役夫)에 보태서 지급하면 조금이나마 정당(停當)하게 되어 실로 덜고 보태는 정사에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사가 이미 주현(州縣)에 알려 규식으로 정하였으니, 이대로 준행하여 혹시라도 임의로 고치지 말라고 다시 신칙(申飭)을 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뉘대오 하라. 이와 같이 규식을 정하였는데 혹시라도 임의로 고치는 폐단이 있으면 일이 실속이 없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본사(本司)에서 이러한 뜻을 날날이 거론하여 전라도관찰사에게 통지하고, 때때로 편비(偏裨)를 보내어 준행 여부를 살피게 하고, 이후로 사목(事目)을 여기는 목수(牧守)·도신(道臣)은 듣는 대로 곧바로 파출(罷黜)을 청하도록 통지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어호(漁戶)가 진배(進排)하는 폐단이 어찌 이와 같이 지탱하기 어려운가? 내가 즉위한 뒤에 이와 같은 폐단을 진념(軫念)하여 회복(灰燼)과 전복(全鰻)의 수를 줄인 것이 3,800여 첩(貼)이 된다. 그런데 섬 백성들이 아직도 지탱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으니, 지난번에 감해준 것이 또한 실질적이 혜택이 없어서 그러한 것인가?”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수천여 첩을 줄인 것은 실로 섬의 백성에게 막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회복은 세 고을의 시노비(寺奴婢)가 힘을 나누어 담당하므로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복(引鰻)과 추복(槌鰻)의 경우에는 포작(鮑作) 무리가 모든 수량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또 공납(貢納)을 감해준다면 인복과 추복 중 어떤 종류를 감해야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방도가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인복을 줄인다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수천 첩을 전부 감한 것은 먼 곳을 회유하는 성대한 덕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만약 또 상공(常供)을 줄인다면 은혜가 끝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체모에 있어서도 관계된 바가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정민시²⁰⁾가 아뢰기를, “이는 토산물에 관계된 것으로 바로 정공(正供)이니, 어찌 사소한 민폐 때문에 매번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대동(大同)의 세(稅)에 대해서도 장차 덜어 주는 폐단이 생길 것이니, 결코 공(貢)을 줄이는 것을 가벼이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섬 백성의 폐단을 진념하지 않는 것은

20) 정민시(1745~1800): 본관 온양(溫陽). 자 회숙(會叔).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예조판서, 호조판서, 이조판서 역임.

아니지만 지방의 토산물을 매번 줄이는 것 또한 과연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그 하나는, 포호(蒲戶)가 바치는 것이 지탱하기 어렵고, 어물(魚物)을 별도로 무역하는 데 절도가 없음을 논한 것입니다. 상정가(詳定價)로 마련하므로 본래는 넉넉하고 후합니다만, 값을 내 줄 때는 모두 중간에 써서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관가의 무역은 점차로 번다해지고 있어 거둬들이고 바치기를 독촉할 때면 마을이 저절로 소란스러워지니, 어촌과 어부를 쓸어 없애 쓸쓸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사가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으나 영원히 혁파하는 뜻으로 절목을 만들어 두고 조정에서 거둬 금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풍습을 답습하는 수령은 드러나는 대로 중히 다스린다는 뜻으로 우선 엄중 신칙하라고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이 조목을 규칙으로 정하여 또한 영구히 준행하는 것이 좋겠으니 일체를 전라도관찰사에게 통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뱀] 서명선이 말하기를, “그 하나는, 굴과 유자는 개인의 과원을 침해하지 말고 심은 나무를 낱알이 중앙 관서에 보고하게 하자고 논한 것입니다. 그 맺힌 열매의 수를 헤아렸다가 끝내는 저절로 떨어진 것에 대해 값을 징수하는데, 그 틈에 뇌물을 요구할 것이 염려됩니다. 게다가 겉으로 싹이 난 가지를 잘라버리기까지 하면 얼마의 굴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는 필연의 형세입니다. 지금부터는 40개의 과수원에서 맺은 열매를 20운(運)으로 써서 봉하되, 바치는 과일을 불법으로 거두는 풍습을 모두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혹 흉년으로 손해를 보는 해에는 후한 값으로 사사로이 팔게 하고, 매번 연말에 세 고을에서 굴을 심은 수를 모두 계산해서 비변사에 보고하는 것을 한결같이 강도(江都)에 탕자를 심은 예와 같이 한다면, 다소 주민의 폐단을 제거하고 굴과 유자를 기르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사가 청한 대로 규칙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대체로 굴과 유자를 바치는 것은, 위로는 천헌(薦獻)의 사용에 관계 되고 아래로는 나누어 주는 수요에 관계된다. 근래 들어 당연히 바쳐야 할 명색으로서 일정한 규칙을 채우지 못한 것이 10분의 8, 9일 뿐만이 아니니, 이 또한 기강이 달린 문제이다. 하물며 어사의 별단을 보면 나라의 과수원에서 나오는 물건이 모두 없어지고 말아 민간의 과일을 매번 함부로 침해하니, 만약 이 폐단을 철저히 없애지 않으면 공사(公私)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한다. 지금부터는 어사가 나갔을 때 다시 민간의 과일을 따는 일로 보고가 올라오는 폐단이 있으면 당연히 시임(時任) 목사는 중률로 다스려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본사에서 글을

지어서 각별히 엄중 신칙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굴과 유자의 공물이 예전에는 거의 1만 개에 가까웠는데, 근
 래에 바치는 것이 점점 예전만 못해져서 금년의 경우에는 수백여 개에 불과하
 니, 이는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사원(私園)의 굴과
 유자가 매번 관가의 횡침(橫侵)을 입어 난알을 계산해 징출하는 폐단이 있습니
 다.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이 여겨 곁가지를 베어 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
 습니다. 이 때문에 굴과 유자가 점점 전만 못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서
 명선이 아뢰기를, “그 하나는, 두 현의 접대비용을 주민들로부터 거두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본목의 장료(匠料)를 해당 읍에 도로 돌려주는 일을 모두 신유년
 (辛酉年)에 상정가(詳定價)로 주창(州倉)의 모곡(耗穀)을 떼어준 예에 따르자고 논
 한 것입니다. 사신에 들어가는 수요(需要)가 없는 고을은 없으나, 민호(民戶)에서
 징수한다는 말은 일찍이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 만들어낸 명색을 가볍게 논의하
 기는 어렵지만, 각기 더 경작하는 데로 귀결되므로 역시 매우 편하고 좋겠습니
 다. 본목의 장료의 경우에는 이미 상정(詳定)한 구례(舊例)가 있으니, 그 주창의
 모곡을 가지고 마련하여 구획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을 정한 뒤에
 두 현에서 혹시라도 이전처럼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폐단이 있으면 적발하여
 죄를 논해 무거운 형률로 다스리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
 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일을 아직까지
 도 고쳐 바로잡지 않았으니, 어찌 겨를 없음이 심하지 아니한가? 이후로는 한결
 같이 정식(定式)을 따르고 혹시라도 요개(撓改)하지 말도록 엄히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서명선이 말하기를, “그 하나는, 삼읍의 환
 곡(還穀)에 관한 법이 사리에 어그러져 마땅하지 않아 대정현(大靜縣) 백성들의
 역(役)이 편중되어 괴로운 것을 논한 것입니다. 살고 있는 백성이 옮겨가고 옮겨
 오는 일은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토착민이 이곳 저곳에 적을 두는 것
 은 다른 읍에는 없는 일입니다. 땅이 기름지면 그 밭을 경작하면서도 역이 고달
 프면 그 적(籍)을 피하는데, 이런 잘못된 풍습을 개정하지 않으면 원적(原籍)의
 백성이 어찌 유독 그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한결같이 현재 거주
 하는 곳에 입적(入籍)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자는 법에 저촉된다고 자세히 밝혀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이
 것은 목사의 치적의 능부(能否)에 관계된다. 삼읍 수령이 법을 잘 받드는 것은
 오직 목사가 한번 호령하는 데 달려있다. 이러한 뜻으로 엄히 신칙하여 혹시라
 도 전과같은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서명

선이 아뢰기를, “그 하나는, 공작미(貢作米)가 매번 끊길 염려가 있으니, 부근 읍에서 다시 구획하도록 할 것을 논한 것입니다. 본목의 수용은 가장 긴요한데 멀리 떨어진 군(郡)에서 운반해 오면 지체됨을 면치 못합니다. 나주(羅州)와 해남(海南)에 과연 부족한 근심이 있다면 기타 가까운 읍으로 어찌 추이(推移)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시 편할 대로 변통해서 섬 안이 폐해를 받지 않도록 전라도관찰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대로 하라. 폐단이 다시 생겨나는 형편을 장계로 보고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서명선이 아뢰기를, “그 하나는 쇄가목(刷價木)을 요리하는 폐단과 고마고(雇馬庫) 혁파의 마땅함을 논한 것입니다. 관장(官長)의 식리(殖利)는 이미 심히 말이 안되고, 시골의 망아지를 강제로 사들이는 것은 더더욱 불법입니다. 고마고를 폐지하고 그 무명[木]을 옮기되 그 규정은 보존하고 그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어사의 처치는 마땅합니다. 조정에서 신칙(申飭)과 금지를 분명히 하고 본목(本牧)에 통지하여 절목에 의거하여 준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대로 하라. 이것 또한 다른 조목에 의거하여 혹사라도 임의로 고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칙하라. 금번 어사가 나갔을 때의 정한 제반 규칙은 이 일이나 다른 일을 막론하고 설사 편치 못한 단서가 있더라도 이미 연품(筵稟)²¹⁾을 거쳤으니 목사가 임의로 고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장계로 보고하여 회답이 내리기를 기다려 거행하도록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서명선이 아뢰기를, “그 하나는 장계 배지(陪持)²²⁾에 비용이 많이 드니 도회(都會)에 내보내어 역편(驛便)에 전달해서 부치는 것을 논한 것입니다. 바다 밖의 노적이 아주 멀어서 오로지 사람이 왕래하는 데 폐단이 있으니 차례대로 전해주어 신속하게 바친다면, 의미도 있고 폐단 또한 줄어든 것입니다. 다만 역로(驛路)의 조잔(凋殘)함이 근래보다 심한 적이 없어서 본목의 위령(威令)이 육지에서는 시행되지 않으니, 인편(因便)에 내보낸 변방의 보고가 과연 일일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다시 전라도관찰사에게 명하여 헤아리고 따져서 장계로 보고하게 한 뒤 아뢰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서명선이 아뢰기를, “그 하나는, 나리포(羅里鋪)에서 쌀을 운반하는 창고관리(倉吏)가 간교를 부려 양태(涼臺)의 정가를 줄이는 것에 대한

21) 연품(筵稟): 경연(經筵) 및 임금을 대하는 자리에서 임금에게 시사(時事) 혹은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아뢰는 것을 말함.

22) 배지(陪持): 지방 관아의 진상(進上)·장계(狀啓) 등을 가지고 서울에 가는 것.

백성들의 원통함을 논한 것입니다. 곡식을 옮겨다 굶주리는 백성을 진휼하는 것은 본래 섬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품질은 나쁘고 양은 줄어들어 한갓 창고 관리가 농간을 부리는 데로 돌아가 버려 실제 혜택이 다해지지 못해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전라도관찰사에게 분부하여 별도로 신칙을 가하여 섬 안의 백성들로 하여금 실속이 없다는 탄식을 면하게 해야 합니다. 양태 값을 점차 줄인 데에는 무슨 곡절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1말[斗]로 다시 예전처럼 복구하게 되면 과연 폐단이 없어질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관찰사로 하여금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한 뒤 아뢰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서명선이 아뢰기를, “지금 제주어사 박천형의 별단을 보니 그 하나는, 산둔(山屯)의 축장(築塙)이 유해무익하여 헐어 내어 건어버리는 것을 논한 것입니다. 재작년 김영수(金永綬)²³)가 축장의 일을 가지고 장계로 보고하였을 때 신은 그것이 마땅치 않음을 아뢰고, 이어서 임의로 처리한 죄를 가지고 먼저 조사하여 신문하기를 청하였는데, 지금 어사가 장계로 논한 바가 과연 신의 의견과 같습니다. 당초 축장이 대단히 잘못되었음을 알았다면 즉시 헐어내는 것은 참으로 그만둘 수 없는 일이지만 어사의 장계로 보더라도 미천한 백성들이 폐단을 제거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모두 헐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이 비록 건강하지는 않지만 백성들은 폐단을 제거하니, 쌓지 않기 전에는 결코 쌓는 것을 의논할 수 없지만 이미 축장한 후에는 또한 가볍게 헐어낼 수는 없습니다. 신이 다시 어사와 면대하여 의논해 보니, 어사의 뜻도 이와 같았습니다. 다만 어사의 말을 들으니, 만약에 침장(針場) 내의 횡축(橫築)을 헐어내면 백성들이 몰기 어려운 폐단이 없고, 말은 널리 방목하는 이익이 있으니, 이것은 대소 백성들이 모두 헐어낼 만하다고 합니다. 해당 목(牧)에 분부하여 먼저 침장 내 횡축을 헐어내고, 그 나머지 축장은 일단은 그대로 두고 다시 앞으로의 형편을 보면서 천천히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침장 내에 횡축한 곳은 속히 헐어내어 거행한 상황을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차후 두곳 목장에 횡축한 곳은 이어서 철거하는 것이 편한지의 여부를 사유를 갖추어 장계로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마장(馬場)의 주위는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40리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필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23) 김영수(1716~1786): 본관 안동(安東). 1744년(영조 20) 무과 급제. 남도 병마절도사, 제주목사(재임: 1778. 9.~1781. 2.) 역임.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원래의 수는 2,000여 필인데, 1년에 사고로 잃은 것이 무려 800여 필에 이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째서 사고로 잃은 것이 그렇게 많은가?”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내축(內築)은 매우 좁고 또한 물과 풀이 없습니다. 때문에 말이 그 본성을 잃고 또한 먹을 수가 없어서 사고로 잃은 것이 많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축(場築)은 어느 곳에 설치했는가?”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모두가 산 아래인데 작은 돌로 쌓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당초에 축장은 말을 모는 폐단을 없애고자 해서인데, 한번 횡축(橫築)한 후로는 말의 손실이 이와 같이 많습니다. 대저 말을 모는 폐단은 적고, 말을 잃는 폐해는 많으니 그 경중을 논하여 내장(內墻)을 헐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영대장은 그것이 편한지의 여부를 상세히 말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창운이 아뢰기를, “말이라는 생물은 산과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이 실로 그것이 본성입니다. 지금 장내(場內)에 갇혀서 도리어 그 본성을 잃었으니, 전 목사의 뜻이 비록 몰아내기 어려운 폐단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마정(馬政)으로 말한다면 매우 편치 못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훈련대장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구선복이 아뢰기를, “신은 산마(山馬)의 일로 장차 아뢰려고 했는데, 지금 하교를 받으니 의당 아뢰겠습니다. 전에 신이 올라온 말을 경영할 때 마필의 수가 백여 필이었는데, 모두가 준마(駿馬)였습니다. 근래는 대부분이 수척한 노태마(駑駘馬)인데, 필시 장내에 갇혀서 그 본성을 따르지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대저 우리 나라의 마정은 오로지 제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갇혀 굶주려 손실에 이르게 되니, 비록 몰기 어려운 폐단이 있다고는 하나 그 말을 공급하는 정사에 있어서 어찌 백성들의 폐단을 적게 하려고 사고로 잃는 우환을 염려하지는 않는 것입니까? 신의 뜻은 예전처럼 방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총융사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이주국²⁴⁾이 말하기를, “신 또한 이러한 폐단을 듣었는데, 축장(築場)하여 말을 기른다는 것은 실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즉시 방목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축장하여 말을 기르는 것은 거의 가두어 매는 것과 같아서 그 본성을 잃게 되었으니, 봄에는 비록 물과 풀이 있다고는 하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단지 얼음과 눈 사이에 있으니, 말이 어찌 굶주려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횡축이라고 말하

24) 이주국(1721~1798): 자 군언(君彦). 호 오백(梧栢). 1740년(영조 16) 무과 급제. 형조판서, 총융사, 훈련대장 역임.

는 것을 마땅히 먼저 혈어 내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그 하나는, 산마(山馬)를 해마다 구점(驅點)하는 것은 큰 민폐(民弊)가 되니 구례에 의거해서 매 식년(式年)마다 봉진(封進)하게 할 것은 논한 것입니다. 이 또한 김영수가 장계로 청한 일인데, 배를 일시에 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수(元數)를 3년에 나누어 공상(貢上)하게 할 것을 아뢰자 읍의 폐막을 염려하여 시행할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지금 어사가 장계로 논한 것이 이와 같아서 배를 구하는 어려움은 그 폐단이 작고, 백성들을 자주 동원하는 것은 그 폐단이 크니, 어찌 명령을 반복한다는 혐의에 구애되어 조절하는 방도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금년을 시작으로 산둔마(山屯馬)를 해마다 나누어 봉진하게 하지 말고, 매 식년에 구례 대로 숫자에 맞추어 봉진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서명선이 아뢰기를, “그 하나는, 공마(貢馬)를 실어 나르는 배를 구례대로 회복하여 육지의 배로 운반하여 섬 백성들의 폐해를 없애는 것을 논한 것입니다. 비록 김영수가 산마(山馬)를 나누어 공상(貢上) 하도록 청한 것으로 보더라도 선박을 구하기 어려운 것을 미루어 알 수 있고, 어사가 장계에서 논한 것도 이와 같으니, 한결같이 갑술년 이전의 예에 따라 연해 읍의 배를 들여보내 실어 운반해 오는 것이 섬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찌 폐단을 줄이는 큰 단서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호남의 선척을 얻기 어려운 것이 섬 안보다 심하여 막중한 정공(正供)을 오히려 운반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말을 싣는 배는 보낼 가망이 없을 듯합니다. 관찰사로 하여금 잘 헤아려 논제한 뒤에 아뢰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서명선이 아뢰기를, “그 하나는 우마감(牛馬監)의 권징(勸懲)의 정사를 한결같이 병인년 어사가 서계로 아뢴대로 옛 제도를 거듭 밝혀 준수하여 잃지 않기를 논한 것입니다. 목양(牧養)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오직 권징에 있으니, 만약에 말이 번식하고 종자가 뛰어나면 경직(京職)과 외직(外職)을 맡론하고 어찌 그 조용(調用)을 아끼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엄히 형신(刑訊)하여 먼 곳으로 유배보내는 형률을 결코 너그러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 해당 목사에게 특별히 신칙하여 우마감에게 통지하여 유의하여 직무를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서명선이 아뢰기를, “그 하나는, 김만일(金萬鎰)이 대대로 목마(牧馬)하는 것을 갑자기 파할 수 없고, 김상호(金商皓)가 더 징수한 것은 사실과 다

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논한 것입니다. 김영수의 말은 그대로 믿을 수 없으니 다시 어사로 하여금 자세히 탐문하게 하십시오. 이번 사계(査啓)는 크게 서로 어긋나니, 김상호의 죄를 논하는 한 가지는 그대로 두어 묻지 말고, 이른바 영비(營裨) 이정구(李廷九)가 뇌물을 받고 허록(虛錄)한 죄를 엄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어 처리하게 하십시오. 김씨 집안의 가업이 전해진 것이 몇 세대인데 갑자기 혁파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전혀 공로를 보상하는 의리가 아닙니다. 이후로 감목관을 차출할 때는 그 문장(門長)으로 하여금 자망(自望)하여 보고하지 말게 하고, 본목으로 하여금 한 문중에서 합당한 사람을 취하여 각별히 골라서 임명하도록 규식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서명선이 아뢰기를, “그 하나는, 목장 안에서 경작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엄히 신칙하여 예전처럼 낭자하게 하지 말도록 논한 것입니다. 목장의 설치하는 말들을 방목하여 기르기 위함인데 그 안에서 경작을 하게 한다면 장지(場地)가 날로 줄어들어 말들을 방목하여 기를 곳이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어찌 목장을 설치한 뜻이겠습니까? 만여 섬[石]을 소출하는 밭을 비록 하루 아침에 묵힌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다시는 침범하여 경작하지 말고 적발되는 대로 엄중히 사실을 조사하여 밝히도록 법령의 조목을 엄히 세워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목장은 몇 곳이 되는가?”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13곳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그 하나는, 거간꾼이 섬에 들어가서 좋은 말이 육지로 나와 섬에 좋은 숫말이 없어 종자가 옛날만 못한 것을 논한 것입니다. 섬의 백성들의 생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육지 상인의 왕래는 더욱 빈번해져서 좋은 말은 거의 모두가 끌려 나가고, 말총[驄鬣]은 곧바로 잘라 취해버립니다. 근래 말 종자들이 잔약하고 용렬하고, 말들이 쓸쓸해 진 것이 실로 여기에 연유합니다. 사마(私馬)를 매매하는 폐단 일체를 엄금할 수는 없지만 마정(馬政)에 해가 되는 것들은 특별히 자세히 살피고 단속하여 보호하고 기르는 방도를 다하여 번식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중략> 홍낙성(洪樂性)²⁵⁾이 아뢰기를, “제주어사 박천형의 별단 가운데 ‘제주성내(濟州城內)가 선소(船所)와의 거리가 10리가 안되고 또한 허다한 육

25) 홍낙성(1718~1798): 본관 풍산(豊山). 자 자안(子安). 호 항재(恒齋). 시호 효안(孝安). 1744년(영조 20) 문과 급제. 도승지, 병조판서, 좌의정 역임.

지 상인이 모두 모이는 곳이어서 서신의 왕래와 물화의 교통이 전적으로 여기에서 연유하니, 조정철(趙貞喆)²⁶⁾과 심익운(沈翼雲)²⁷⁾과 같은 죄인은 이들이 모두 서울에 의지하는 부류이니 제주에 둘 수가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조정철과 심익운을 대정현과 정의현 등에 나누어 정배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해당 부(府)로 하여금 임금께 아뢰어 처리하게 하십시오.’라고 청하였습니다. 본주가 허다한 장사꾼의 도회처가 되고, 실로 어사가 아뢴 바와 같다면, 조정철과 심익운과 같은 역적의 무리가 육지의 상인과 결탁하여 서울과 소식을 주고받게 된다면 반드시 그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죄인 조정철을 정의현으로 이배하고, 죄인 심익운을 대정현에 이배하여 각각 그 배소의 관원을 엄히 신칙하여 각별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중략〉 정호인(鄭好仁)이 아뢰기를, “제주어사 박천형의 별단 가운데, 본도(本道) 무과에 일찍이 만호(萬戶)와 천별장(千別將)을 지낸 자들을 대략 수취(搜取)하여 그 신주(身手)를 보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시험해서 약간의 사람을 개록(開錄)²⁸⁾하면서 이번에 새로 급제한 사람들 중에 또한 그 신수가 출중하고 활쏘기와 말타기가 뛰어난 자를 뽑아서 창방(唱榜)²⁹⁾이 올라올 때 시재(試才)하여 조용(調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본주(本州)는 해도(海島)의 중요한 방어지로 다른 곳에 비해 자별(自別)하니 진실로 특별히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섬 안의 무사가 만약에 무예가 뛰어난 것이 어사의 서계와 같다면 이들로 하여금 한결같이 침굴(沈屈)하게 하는 것은 먼 지방을 위유하는 도리에 흠이 될 듯합니다. 한결같이 어사가 청한 대로 우수한 자를 뽑아서 차례차례 수용하고, 금번 무과에도 창방을 기다렸다가 자리가 나는 대로 조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반드시 차례대로 조용하여 실속이 없다는 탄식이 없게 하라. 새로 급제한 사람이 창방을 기다려 차례로 올라올 때 경과 각영의 장신(將臣)은 그 신수와 재예가 어떠한지 불려서 보고 또한 모두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26) 조정철(?~?): 본관 양주(楊州). 자 성경(成卿). 호 정현(靜軒).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저서 《정현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27) 심익운(1734~?): 본관 청송(靑松). 자 봉여(鵬如). 호 지산(芝山). 1759년(영조 35) 문과 급제. 이조좌랑, 지평 역임. 1776년(영조 52) 패륜(悖倫)의 죄로 대사헌 박상로(朴相老)의 탄핵을 받고 대정(大靜)에 유배되었다. 저서 《백일집(百一集)》.

28) 개록(開錄): 장계(狀啓) 등 왕에게 올리는 문서의 말미에 보고 사항이나 의견 등을 열거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함.

29) 창방(唱榜): 방목(榜目)에 적힌 과거 급제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

냐]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사람도 천망(薦望)을 허락하는 규례가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창운이 아뢰기를, “모두가 말망(末望)과 부망(副望)으로 삼습니다.”라고 하였다. 정호인이 아뢰기를, “제주어사 박천형의 별단 가운데, ‘군교(軍校)로 여러 해 동안 일을 맡아 노고가 특별히 드러난 자를 별도로 계문(啓聞)하여 혹은 전력부위 등의 자급(資級)을 주고, 혹은 겸사복·내금 등의 직첩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권장하는 바탕을 삼습니다. 때문에 각 해당 읍진(邑鎭)에 신칙(申飭)하여 그 가운데 근무한 일수가 많은 자를 택하여 뒤에 개록(開錄)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규례대로 성급(成給)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각 도(道)의 향장교(鄕將校)로서 근무일수가 50개월이 찬 자는 전력과 겸사복시(兼司僕寺) 등의 첩으로써 노고에 보답하는 밑천으로 삼게 하는 것이 본래 전례입니다. 이번 각 사람들이 이미 개월수가 찼으니, 규례대로 체문(帖文)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냐] 정호인이 아뢰기를, “제주어사 박천형의 별간 가운데, ‘본도(本道)의 영화롭고 현달한 직임은 곧 천총(千摠), 별장(別將), 명월만호(明月萬戶), 8진(鎭)의 조방장(助防將)입니다. 한량은 연줄을 타서 자리 얻기를 도모하지만, 출신은 차임되는 것이 많지 않아 혹은 3, 4십년이 되도록 헛되이 늙어갑니다. 때문에 물정(物情)을 탐문하여 그 직과(職窠)를 정하여 천총은 2자리[窠], 별장은 1자리, 조방장은 6자리를 출신으로 차출하고, 나머지 자리는 한량으로 근무일수가 오래된 자를 나누어 차임하여 소통하는 방도로 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 논열(論列)한 바가 과연 물정에 합당하니 마땅히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별단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되, 자리를 나누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를 본주로 하여금 절목을 만들어 장계로 보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냐] 임금이 말하기를, “본목의 변장은 어찌 한량 중에서 많이 차임되는가?”라고 하였다. 박천형이 아뢰기를, “부유한 백성은 뇌물을 바쳐 차임되고, 가난한 백성은 출신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호인이 아뢰기를, “제주어사 박천형의 별단 가운데, ‘본주 시노(寺奴) 차이홍(車已弘)에 앞뒤로 세 차례에 걸쳐 인명을 구한 수가 합하여 78명이나 많습니다. 만약 각별히 논상(論賞) 하지 않는다면 섬의 풍속을 격려할 수 없으니 청컨대 해당 조(曹)하여 품처(稟處)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전례를 살펴보니 15명 이상을 구한 자는 가자(加資)하는 은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이 차이홍은 3차례에 걸쳐 구한 것이 이와 같이 많으니 마땅히 다른 예에 따라 시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노는 면천(免賤)을 허락하

는 것이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차이홍을 법전에 따라 면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김노진³⁰⁾이 말하기를, “제주어사 박천형의 별단을 보니, 정의현 유학 김정옥(金精旭)의 처 김씨(金氏)는 나이가 17세인 여자인데, 남편을 위하여 순절하여 장사에 임하여 스스로 목을 매었고, 대정현 유학 강응주(姜應周)의 처 김씨 또한 15세의 여자인데 남편을 위한 순절의 의리를 알아서 조용히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절개가 가상하니, 모두 정려(旌閭)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지방이 왕화(王化)가 멀리 미치는 곳이고 일 또한 절도(絶島)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한 데다가, 더구나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는 절개가 인멸(湮滅)되어 칭송됨이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격려하는 도리로 볼 때에 정려하는 은전을 시행함에 합당합니다. 제주 기관 이필완(李弼完)의 경우에는, 100세의 어머니를 봉양함에 그 정성을 다하였고, 국휼(國恤)을 당했을 때는 능역(陵役)을 스스로 바쳤으니, 그 실행(實行)을 논하면, 칭찬하고 장려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생전에 정려하는 것을 가벼이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완필을 우로전(優老典)으로 가자(加資)의 은혜를 주어 첨주(僉樞)의 실직을 가탁하여 온 섬이 우러러 보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만 일이 은전에 관계되니 본조(本曹)에서 감히 임의로 할 수 없으니 임금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의현 김씨와 대정현 김씨를 정려하는 일은 일이 섬안에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 매몰되어 칭송됨이 없으니 어찌 흠이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 격려하는 도리에 있어서 마땅히 정려의 은전을 더해야 할 것이니 그대로 시행하라. 제주 기관 이필완의 일은 이제 막 가자하였으니 첨주의 실직을 해당 조(曹)로 하여금 단부(單付)하여 계하(啓下) 받도록 하라. 듣건대 이완필의 나이가 90세가 되었다고 한다. 교지를 오늘 내에 작성해서 보내라. 급복(給復)하는 일은 비록 중첩하여 상을 주는 것이지만 자식과 조카를 거두어 쓰는 것은 실로 격려하는 정사에 합당하니, 본목의 변장(邊將)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차하(差下)한 뒤 장계로 보고하도록 해당 목사에게 분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중략〉 서유린³¹⁾이 아뢰기를, “제주어사 박천형이 서계(書啓)한 별단 가운데, 전 제주목사 김영수, 전 판관 황인채(黃麟采)³²⁾가 양경천(梁擎天)의 말만 듣고 강성(姜城)을

30) 김노진(1735~1788): 본관 강릉. 자 성첨(聖瞻). 1757년(영조 33) 문과 급제. 대사헌, 이조판서, 형조판서 역임. 저서 《강화부지(江華府誌)》.

31) 서유린(1738~1802): 본관 달성(達城). 자 원덕(元德). 호 영호(穎湖). 시호 문헌(文獻).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판의금부사, 한성부판윤, 수원부유수 역임.

억울하게 죽인 일에 대해 논열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일에 관계되니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김영수는 중죄로 안치(安置)하고, 대계(臺啓)³³⁾가 한창 진행 중이므로 지금 논할 수는 없지만, 황인채는 조관(朝官)이니 의금부로 옮겨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래의 사건은 인명을 잘못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이른바 강성은 이미 노예가 아니니 조정에서 신리(伸理)하는 정사에 있어서는 법에 따라 감단(勘斷) 하지 않을 수 없다. 전 목사 김영수는 해당 부(府)로 하여금 용형(用刑)을 기다리게 한 다음 잡아와서 추문(推問) 한 뒤에 나에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중략〉 김문순³⁴⁾이 아뢰기를, “방금 제주어사 박천형의 별단을 보니, ‘한 섬의 폐단을 제거하여 다시 소생시키는 방도로는 목사를 특별히 가려 뽑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해당 조(曹)에 신직하여 문무(文武) 중에 명망과 치적이 있는 사람을 가려 차임하게 하고, 세 고을의 수령은 절해(絶海)의 쇠잔한 고을으로 귀양살이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만약 공로를 보상하는 은전이 없으면 직분을 다하는 마음이 드물 것이니 또한 해당 조로 하여금 그가 임기가 찼다는 보고를 기다렸다가 문관은 체차하여 경직(京職)에 붙이고, 무관은 외직에 승직시켜 격양(激揚)하는 방도로 삼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본주는 육지 읍과 달라서 수령을 더욱 각별히 가려 뽑아야 하니, 본조에서 청한 대로 자리가 나는 대로 가려서 의망하고, 세 읍의 수령을 체차하여 붙이고 승직시키는 일은 관방(官方)의 규정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신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대신에게 하문하여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영의정 서명선이 아뢰기를, “수령이 뛰어난 공적과 특별한 공로가 없다면 승직시켜 벼슬을 갈아주는 것을 가벼이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해도(海島)의 관직에 있는 사람이 고생스럽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영구히 승직시켜 벼슬을 갈아주는 자리를 만들면 관방(官方)을 신중히 하는 뜻에 있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우의정 이휘지³⁵⁾가 아뢰기를, “영의정이 아뢴 바가 참으로 옳습니다. 공로에 보상하는 일은 없으니, 먼저 내직으로 옮기고

32) 황인채(1716~1799): 본관 창원(昌原). 자 국량(國亮)·계직(季則). 호 양몽재(養蒙齋). 1754년(영조 30) 문과 급제. 희릉별검, 종부시주부, 제주판관(재임: 1780. 3.~1781. 7.) 역임. 저서 《양몽재집》.

33) 대계(臺啓): 사헌부, 사간원의 관리들이 임금에게 올리는 계사(啓辭).

34) 김문순(1744~1811): 본관 안동(安東). 자 재인(在人). 1767년(영조 43) 문과 급제. 이조판서, 선혜청당상, 우참찬 역임.

35) 이휘지(1715~1785): 본관 전주(全州). 자 미경(美卿). 호 노포(老圃). 시호 문헌(文憲).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이조참의, 강화부유수, 우의정 역임.

품계를 올리는 규식을 정하는 것은 관방을 신중히 하는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승천(陞遷)이나 체부(遞付)를 막론하고 오직 전조(銓曹)에서 차견(差遣)하는 것이 어떠한가? 차후 각별히 가려 차임하되, 만약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혹시라도 주의(注擬)³⁶⁾하는 일이 있으면 경들이 드러나는 대로 해당 전관(銓官)을 논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김문순이 아뢰기를, “방금 제주순무어사 박천형의 별단을 보니, ‘본주의 전함(前銜) 및 신방목(新榜木)에 든 사람을 해당 조로 하여금 자리가 나는 대로 조용(調用)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먼 지방 사람을 회유하는 도리로 볼 때 실로 수용해야 마땅합니다. 만약에 침체된 인재가 있다면 더욱 가려 뽑아야 하니, 전함(前銜)이나 신방(新榜)을 막론하고 본조에서 그 사람을 살펴서 그 자리에 따라 차례로 살펴 의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판서의 거조에 대한 비답(批答)에 이미 언급하였으니, 병조도 이대로 거행하라.”라고 하였다.³⁷⁾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어사, 박천형, 수산진, 차귀진, 봉수대, 전복, 굴, 환곡, 공작미, 쇠가목, 고마고, 배지, 나리포, 산둔, 축장, 공마, 우마감, 조정철, 심익운, 군교, 정려, 김영수, 황인채.

36) 주의(注擬):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은 이조(吏曹), 무관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것.

37)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6년 1월 15일자 기사와 『정조실록』 권13, 정조 6년 1월 14일자 기사 등에 부분적으로 산견되어 보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一月 十五日 壬子

- (徐有防) 又以義禁府言啓曰, 全羅監司朴祐源狀啓據, 刑曹粘目內, 大靜前縣監崔宗信 · 權尙鎮 · 金鏐 · 宋益彩 · 李寬 · 安相徹 · 韓東岳 · 金道燐 · 金重玉, 濟州前判官沈洸等, 移本府處之事, 允下矣. 崔宗信, 時在黃海道安岳地, 權尙鎮, 前以他罪, 徒二年半定配於洪忠道忠州牧可興驛, 宋益彩, 時在全羅道興德地, 李寬, 時在咸鏡道安邊地, 金道燐, 以瑞山縣監, 時在任所云. 依例發遣府書吏 · 羅將, 竝拿來, 金鏐 · 安相徹 · 韓東岳 · 金重玉 · 沈洸等, 竝身故云, 勿論, 何如? 傳曰, 待待命拿囚.

❖ 정조 6년(1782) 임인년 1월 15일(임자)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최종신(崔宗信) 등을 서리와 나장을 보내어 잡아오게 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서유방³⁸⁾이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감사 박우원(朴祐源)의 장계에 의거한 형조의 점목(粘目)에,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최종신(崔宗信)³⁹⁾, 권상진(權尙鎮)⁴⁰⁾, 김영(金鏐)⁴¹⁾, 송익채(宋益彩)⁴²⁾, 이관(李寬)⁴³⁾, 안상철(安相徹)⁴⁴⁾, 한동악(韓東岳)⁴⁵⁾, 김도혁(金道燐)⁴⁶⁾, 김중옥(金重玉)⁴⁷⁾, 전 제주판관 심광(沈洸)⁴⁸⁾ 등을 본부로 옮겨 처리하도록 윤허를 내렸습니다. 최종신은 현재 황해도 안악(安

38) 서유방(1741~1798): 본관 달성(達城). 자 원례(元禮), 호 봉헌(奉軒). 시호 효간(孝簡). 1772년(영조 48) 문과 급제. 병조판서, 경기도관찰사, 강원도관찰사 역임.

39) 최종신(?~?): 대정현감으로 1762년(영조 38) 4월 도임하고 1763년 9월에 나거(拿去)됨.

40) 권상진(?~?): 대정현감으로 1763년(영조 39) 9월 도임하고 1765년(영조 41) 윤 2월에 떠났음.

41) 김영(?~?): 대정현감으로 1765년(영조 41) 윤 2월에 도임하고 1767년(영조 43) 4월에 파직되어 떠났음.

42) 송익채(?~?): 1767년(영조 43) 6월 대정현감에 도임하고 1770년(영조 46) 5월에 떠났음.

43) 이관(1713~?): 본관 평창(평창). 자 율향(율향). 1755년(영조 31) 문과 급제. 1770년(영조 46) 5월 대정현감으로 도임하고 1773년(영조 49) 4월 떠났음.

44) 안상철(?~?): 1773년(영조 49) 4월 대정현감으로 도임하고 1774년(영조 50) 11월 파직되어 떠났음.

45) 한동악(1726~?): 본관 청주(淸州). 자 사양(士仰). 1753년(영조 29) 문과 급제. 예조좌랑 역임. 1775년(영조 51) 4월 대정현감으로 도임하고 1776년(영조 52) 9월 떠났음.

46) 김도혁(?~?): 1776년(영조 52) 9월 대정현감으로 도임하고 1778년(정조 2) 7월에 떠났음.

47) 김중옥(1735~1780): 본관 안동(安東). 자 대옥(大玉). 1755년(영조 31) 문과 급제. 1778년(정조 2) 8월 대정현감으로 도임하고 1780년(정조 4) 2월 재임 중 사망함.

48) 심광(?~?): 1764년(영조 40) 4월 제주판관으로 도임하고 1766년(영조 42) 8월에 떠났음.

岳)에 있고, 권상진은 전에 다른 죄로 도이년반(徒二年半)으로 홍충도(洪忠道) 충주목(忠州牧)의 가흥역(可興驛)에 정배되었고, 송익채는 현재 전라도 흥덕(興德)에 있고, 이관은 현재 함경도 안변(安邊)에 있고, 김도혁은 서산현감(瑞山縣監)으로 현재 임소에 있다고 합니다. 규례대로 본부의 서리와 나장을 보내어 모두 잡아 오게 하고, 김영, 안상철, 한동악, 김중옥, 심광 등은 모두 죽었다고 하니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명(待命)하기를 기다려 잡아다 가두어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제주판관, 최종신, 권상진, 김영, 송익채, 이관, 안상철, 한동악, 김도혁, 김중옥, 심광.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一月 十五日 壬子

- (徐有防) 又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減死安置罪人貞喆, 移配旌義縣定配, 定配罪人翼雲, 移配大靜縣事, 舉條啓下矣. 罪人貞喆·翼雲等, 仍前罪目, 依例發遣府羅將, 自濟州牧執捉,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島中移配, 不必自京發差, 令該牧使別定將校, 押送各其配所, 可也.

❖ 정조 6년(1782) 임인년 1월 15일(임자)

-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安置)한 죄인 조정철(趙貞喆) 등을 각기 배소로 압송하겠단는 의금부의 초기
- 서유방(徐有防)이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安置)한 죄인 조정철(趙貞喆)을 정의현(旌義縣)에 이배하고, 정배된 죄인 심익운(沈翼雲)을 대정현(大靜縣)으로 이배하도록 거조(舉條)로 계하하였습니다. 죄인 조정철과 심익운을 이전의 죄목 그대로 하고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보내어 제주목에서 체포하여 각기 배소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섬 안에 이배하는 것은 서울에서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으니 해당 목사로 하여금 별도로 장교를 정하여 각각 그 배소로 압송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조정철, 심익운, 이배.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一月 十五日 壬子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御史朴天衡別單據, 刑曹判書徐有隣覈啓內, 濟州前判官黃麟采, 順天前府使任觀周等, 移本府處之事, 舉條啓下矣. 任觀周今方待命, 卽爲拿囚, 黃麟采, 時在慶尙道順興地云, 依例發遣府羅將, 拿來, 何如? 傳曰, 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1월 15일(임자)

-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황인채(黃麟采) 등을 전례대로 본부 나장을 잡아오겠다는 의금부의 계
-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 박천형(朴天衡)의 별단에 의거하여 형조판서 서유린(徐有隣)의 복계(覈啓)⁴⁹⁾에,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황인채(黃麟采), 전 순천부사 임관주(任觀周)⁵⁰⁾ 등을 본부로 옮겨 처리하도록 거조로 계하하였습니다. 임관주는 현재 대명(待命)하고 있으니 즉시 잡아 가두고, 황인채는 현재 경상도 순흥(順興)에 있다고 하니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보내어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황인채, 임관주.

49) 복계(覈啓): 일의 실상을 조사하여 임금에게 서면으로 보고함.

50) 임관주(1732~?): 본관 풍천(豐川). 자 숙빈(叔賓). 1756년(영조 32) 문과 급제. 지평, 정언 역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一月 十七日 甲寅

- (李在學)又以刑曹言啓曰, 因濟州御史朴天衡別單, 前前牧使金永綬, 裨將李廷九, 受賂虛錄之罪, 令該曹查問稟處事, 命下矣. 依傳教發刑差, 使之讖捕, 則廷九以洪忠道保寧人, 時在本縣云. 發關捉來, 嚴覈稟處, 何如? 傳曰, 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1월 17일(갑인)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綬)의 비장 이정구(李廷九)를 잡아와 엄히 조사하겠다는 형조의 계
- 이재학(李在學)이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 박천형(朴天衡)의 별단으로 인하여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綬)와 비장 이정구(李廷九)가 뇌물을 받고 허록(虛錄)한 죄를 해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품처하도록 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전교에 따라 형추하여 기찰(讖察)하여 체포하게 하였더니, 홍정구는 홍충도(洪忠道) 보령(保寧) 사람으로 현재 본현에 있다고 합니다. 관문(關文)을 보내어 잡아와 엄히 조사하여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영수, 비장, 이정구.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一月 二十四日 辛酉

- 壬寅正月二十四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議政徐命善, 行中樞府事具善復, 兵曹判書鄭好仁, 工曹判書徐有慶, 行副司直徐浩修, 禮曹判書金魯鎮, 右參贊鄭民始, 刑曹判書徐有隣, 漢城左尹李昌運, 行副司直李敬懋, 禮曹參判鄭一祥, 吏曹參判金文淳, 左承旨李在學, 假注書趙衍德, 事變假注書李顯道, 記事官曹喜有, 記注官金鳳顯, 以次進伏訟. …… 有隣曰, 頃因濟州御史朴天衡書啓, 以濟州記官姜城冤死事, 前前牧使金永綬, 前判官黃麟采, 罪狀已爲覆奏, 移送金吾, 而至於梁擎天事, 繡啓論列其罪狀, 仍請遠配於他道矣. 擎天之交通逆孽, 恐其綻露, 構誣姜城, 竟致枉死之罪, 渠旣自服, 則別無遲待永綬等推問而詳知者, 擎天依御史所請, 以他道遠地, 定配所押送之意, 分付該道道臣,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

❖ 정조 6년(1782) 임인년 1월 24일(신유)

- 제주(濟州)의 기관 강성(姜城)을 억울하게 죽인 죄를 범한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綬)를 먼곳으로 정배(定配)할 것을 청하는 서유린(徐有隣)의 계
- 임인년 1월 24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행 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병조판서 정호인(鄭好仁), 공조판서 서유경(徐有慶), 행 부사직 서호수(徐浩修), 예조판서 김노진(金魯鎭), 우참찬 정민시(鄭民始), 형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한성좌윤 이창운(李昌運), 행 부사직 이경무(李敬懋), 예조참판 정일상(鄭一祥), 이조참판 김문순(金文淳), 좌승지 이재학(李在學),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사변가주서 이현도(李顯道), 기사관 조희유(曹喜有), 기주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유린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제주어사 박천형(朴天衡)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제주(濟州)의 기관(記官) 강성(姜城)이 억울하게 죽은 일로 전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綬)와 전 판관 황인채(黃麟采)의 죄상을 이미 복주(覆奏)하여 의금부로 이송하였고, 양경천(梁擎天)의 일은 어사의 서계에 그 죄상을 논열한 다음 다른 도(道)에 원배(遠配)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양경천이 역적의 잔당과 교통한 것이 탄로 날까 두려워하여 강성을 무함하여 마침내 억울하게 죽는 죄를 범하였으니, 그가 이미 자복한 만큼 김영수 등의 추문(推問)을 기다렸다가 상세히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 양경천이 어사가 청한 대로 다

른 도(道)의 먼곳으로 배소를 정하여 압송하라는 뜻으로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락〉.

△ 주제어: 강성, 제주목사, 김영수, 정배.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一月 二十四日 辛酉

- 申應顯又以刑曹言啓曰, 罪人金世重等供辭啓日判付內, 罪人金世重, 特爲減死, 絶島爲奴, 今日內發配, 其餘罪人等, 分輕重考律勘處, 日前嚴囚首吏·首墨尺·首所由等, 考律徒配後, 草記事, 判下矣. 依判付, 罪人金世重, 全羅道靈巖郡楸子島定配所爲奴, 卽爲押送, …… 之意, 敢啓. 傳曰, 廷尉當是也者, 此之謂也. 依此律, 今日內舉行, 可也.

❖ 정조 6년(1782) 임인년 1월 24일(신유)

- 죄인 김세중(金世重) 등을 결장(決杖) 후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형조의 초기
- 신응현(申應顯)⁵¹⁾이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김세중 등의 공사(供辭)에 대한 판부(判付)⁵²⁾ 내에, 죄인 김세중(金世重)을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종으로 삼아서 오늘 안으로 배소(配所)로 보내고, 그 나머지 죄인들은 경중을 나누어 율문(律文)을 상고하여 감처하고, 일전에 엄히 수리(首吏)와 수묵(首墨), 수묵척(首墨尺), 수소유(首所由) 등을 율문(律文)을 상고하여 도배(徒配) 한 뒤 초기(草記) 하라고 판하(判下) 하였습니다. 판부대로 죄인 김세중을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배소를 정하여 종으로 삼아서 즉시 압송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위(廷尉)가 이것을 만났다고 한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다. 이 법률대로 오늘 안으로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세중, 추자도, 압송.

51) 신응현(1722~1797): 본관 평산(平山). 자 동보(同甫), 호 우현(愚軒). 1752년(영조 28) 문과 급제. 예조참의, 공조판서, 대사헌 역임.

52) 판부(判付): 상주(上奏)한 형사사건에 대한 임금의 재가(裁可).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一月 二十八日 乙丑

○ (黃昇源) 又以義禁府言啓曰, 大靜前縣監金道燾, 拿囚之意, 敢啓. 傳曰, 捧供以聞.

❖ 정조 6년(1782) 임인년 1월 28일(을축)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김도혁(金道燾)을 잡아다 가두겠다는 의금부의 계

○ 황승원(黃昇源)⁵³⁾이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김도혁(金道燾)⁵⁴⁾을 잡아다 가두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공초(供招)를 받아서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김도혁, 공초.

53) 황승원(1732~1807): 본관 장수(長水). 자 윤지(允之).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의정부우참찬, 홍문관제학, 판의금부사 역임.

54) 김도혁(1713~1784): 본관 강릉(江陵). 자 사장(士章). 1776년(영조 52) 9월 대정현감에 도임하고 1778년(정조 2) 7월 떠났음.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一月 二十八日 乙丑

○ (黃昇源) 又以義禁府言啓曰, 大靜前縣監權尙鎮, 拿囚之意, 敢啓. 傳曰, 捧供以聞.

❖ 정조 6년(1782) 임인년 1월 28일(을축)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권상진(權尙鎭)을 잡아다 가두겠다는 의금부의 계

○ 황승원(黃昇源)이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권상진(權尙鎭)⁵⁵⁾을 잡아다 가두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공초(供招)를 받아서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권상진, 공초.

55) 권상진(?~?): 1763년(영조 39) 9월 대정현감에 도임하고 1765년(영조 41) 윤 2월에 떠났다.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一月 二十九日 丙寅

- 又啓曰, 大靜前縣監權尙鎮·金道爌等, 原情云云, 問目內辭緣, 泛稱遲晚, 權尙鎮段, 刑推得情爲白乎旃, 金道爌段, 所當請刑是白乎矣, 年今七十, 法不當請刑, 上裁, 何如? 判付, 啓. 除刑推議處爲良如教. …….

❖ 정조 6년(1782) 임인년 1월 29일(병인)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권상진(權尙鎭)·김도혁(金道爌)을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알아내기를 청하는 의금부의 계목
- 또 계목에,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권상진(權尙鎭)·김도혁(金道爌) 등이 이러니 저러니 원정(原情)⁵⁶하면서 문목(問目) 내의 죄상에 대해 범범하게 자복을 하였습니다. 권상진은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캐내고, 김도혁은 형추를 청해야 합니다만 나이가 지금 70세이므로 법률로 볼 때 형추를 청해서는 안 되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하여 계하하기를, “형추는 그 만두고 의논하여 처리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권상진, 김도혁, 형추.

56) 원정(原情): 사연을 하소연함.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二月 四日 辛未

- 黃昇源, 以義禁府言啓曰, 濟州前判官黃麟采拿囚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2월 4일(신미)

-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황인채(黃麟采)를 잡아다 가두겠다는 의금부의 계
- 황승원(黃昇源)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황인채(黃麟采)를 잡아다 가둘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황인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二月 五日 壬申

- 以慶尙監司趙時俊, 濟州移配罪人寺奴世命, 巨濟府到配啓本, 傳于徐有大曰, 寺奴世命, 卽自本牧, 爲奴於大靜者也. 向因移配時判付中此漢名字, 混同書出, 至於移配嶺南之境. 島中流配, 元無出島外之例, 則因判付時誤書, 創此無前之例, 大關後弊. 卽令還配本縣, 伊時判付中, 或有似此誤配之類, 令新判堂取見文案, 詳考草記.

❖ 정조 6년(1782) 임인년 2월 5일(임신)

- 판부(判付)에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인해 섬 밖으로 유배된 제주(濟州) 이배(移配) 죄인 시노(寺奴) 세명(世命)을 대정현(大靜縣)으로 도로 정배하라는 전교
- 경상도관찰사 조시준(趙時俊)이 제주(濟州) 이배(移配) 죄인 시노(寺奴) 세명(世命)이 거제부(巨濟府) 배소(配所)에 도착하였다는 계본(啓本)과 관련하여 서유대(徐有大)에게 전교하기를, “시노 세명은 바로 본목(本牧)에서 대정(大靜)에 종이 된 자이다. 지난번에 이배 할 때 판부(判付)에 이 놈의 이름자를 혼동하여 써내어 영남으로 이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섬 중에서의 유배는 본래 섬 밖으로 내보낸 예가 없으니, 판부할 때 잘못 쓴 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전에 없던 전례를 만든 것은 뒷날의 폐단과 크게 관계가 될 것이다. 즉시 본현(本縣)으로 도로 정배하도록 하고, 그때 판부 중에 혹 이와 같이 잘못 정배된 부류가 있을 경우에는 신임 판윤으로 하여금 문안을 가져다 살펴보고 초기(草記)를 상세히 고찰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시노, 세명, 이배.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二月 五日 壬申

- 徐有大, 以義禁〈府〉言啓曰, 大靜前縣監李寬拿囚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2월 5일(임신)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이관(李寬)을 잡아다 가두겠다는 의금부의 계
- 서유대(徐有大)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 이관(李寬)을 잡아다 가둘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이관.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二月 五日 壬申

- 壬寅二月初五日辰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左議政洪樂性，右議政李福源，兵曹判書鄭好仁，江華留守金煜，漢城左尹李昌運，行都承旨嚴璫，行副司直李敬懋，禮曹參判鄭一祥，漢城左尹蔡弘履，吏曹參判金文淳，大司諫洪良浩，持平李顯默，校理洪文泳，行左承旨徐有大，同副承旨黃昇源，記事官李祖承，事變假注書李顯道，記注官金健修·金鳳顯，以次進伏訖。…… 樂性曰，頃因萬頃儒生李復性上疏，該邑抹弊之策，論理狀聞後，稟處之意，覆奏分付矣。卽見全羅監司朴祐源狀啓，則以爲，今若以金堤之二面劃付，則萬頃雖或蘇殘，金堤亦致疲弊，固不可論，而但該縣處於咸悅界首孔路之傍。右道水使虞候及濟州四長吏，其他大小公行之自內浦往來者，不由萬頃，直抵金堤事作爲定式，則可爲一分紓力之道，請令廟堂稟處矣。土地割付，既係重大，支用添給，亦難輕許，惟此驛路變通一事，足爲紓力之道，道臣論列，誠甚的當，依狀請許施之意，分付，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 정조 6년(1782) 임인년 2월 5일(임신)

- 제주(濟州)의 네 장리(長吏) 등이 내포(內浦)로부터 왕래할 경우 만경(萬頃)을 경유하지 않고 곧장 김제(金堤)에 닿도록 역로(驛路)를 변통하기를 청하는 좌의정 홍낙성(洪樂性)의 계
- 임인년 2월 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좌의정 홍낙성(洪樂性), 우의정 이복원(李福源), 병조판서 정호인(鄭好仁), 강화유수 김익(金煜), 한성좌윤 이창운(李昌運), 행도승지 엄숙(嚴璫), 행부사직 이경무(李敬懋), 예조참판 정일상(鄭一祥), 한성좌윤 채홍리(蔡弘履), 이조참판 김문순(金文淳), 대사간 홍양호(洪良浩), 지평 이현묵(李顯默), 교리 홍문영(洪文泳), 행좌승지 서유대(徐有大), 동부승지 황승원(黃昇源), 기사관 이조승(李祖承), 사변가주서 이현도(李顯道), 기주관 김건수(金健修)·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홍낙성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만경(萬頃)의 유생(儒生) 이복성(李復性)이 올린 상소로 인하여 해당 고을의 폐단을 바로잡을 방책을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한 뒤에 품처(稟處)하라고 복주(覆奏)하여 분부 하였습니다. 방금 전라감사 박우원(朴祐源)의 장계를 보니, ‘지금 만약 김제(金堤)의 2면(面)을 떼어 준다면, 만경이 비록 혹여 쇠잔한 상태에서 벗어나 그 전

대로 회복되더라도 김제가 또한 피해를 질 것이니 논할 것이 못됩니다. 다만 해당 현이 함열(咸悅)과 경계가 나뉘는 큰 길 가에 처해 있어 우도수사(右道水使) · 우후(虞候) 및 제주(濟州)의 네 장리(長吏)⁵⁷⁾ 및 기타 크고 작은 관청의 행차가 내포(內浦)로부터 왕래할 경우 만경을 경유하지 않고 곧장 김제에 닿도록 규칙으로 정한다면 조금이나마 민력을 펴는 방도가 될 수 있으니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토지를 떼어주는 주는 것은 이미 중대한 일에 속하고 경비를 보태주어야 하니 역시 가볍게 허락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이 역로(驛路)를 변통하는 한 가지 일만을 민력을 펴는 방도로 삼아 정한 감사의 논의는 참으로 매우 적절합니다.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을 허락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⁵⁸⁾ 【거조(擧條)를 냄】 〈하락〉.

△ 주제어: 만경, 김제, 역로, 변통, 장리.

57) 장리(長吏): 일반적으로 수령을 가리키는 말. 곧, 여기서는 제주목사·제주판관·정의현감·대정현감을 가리킴.

58)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6년 2월 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二月 六日 癸酉

- 黃昇源, 以刑曹言啓曰, 因慶尙監司趙時俊啓本, 巨濟府移配罪人寺奴世命, 還配本縣, 或有似此誤配之類, 取見文案草記事, 命下矣. 依傳教, 寺奴世命, 還配於大靜縣. 其外海南縣移配罪人士善, 以濟州國屯馬偷取罪, 定配於大靜縣, 而士善亦是本島人, 則不可異同. 一體還配於大靜縣之意, 分付各該道臣, 何如? 傳曰, 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2월 6일(계유)

- ☐ 죄인 시노(寺奴) 세명(世命) 등을 대정현(大靜縣)에 이배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형조의 초기
- 황승원(黃昇源)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경상감사 조시준(趙時俊)의 계본으로 인하여, 거제부(巨濟府)에 이배(移配) 한 죄인 시노(寺奴) 세명(世命)을 도로 본현(本縣)에 정배하고, 혹 이와 같은 정배(定配)된 부류가 있으면 문안(文案)의 초기(草記)를 가져다 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전교대로 시노 세명을 대정현(大靜縣)으로 도로 정배하였습니다. 그밖에 해남현(海南縣)에 이배한 죄인 사선(士善)이 제주의 둔마(屯馬)로 훔친 죄로 대정현에 정배하였는데, 사선도 본도(本島) 사람이니 달리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대정현에 도로 정배하도록 각 해당 관찰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시노, 세명, 사선, 대정현, 이배.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二月 八日 乙亥

- 黃昇源, 以義禁府言啓曰, 大靜前縣監宋益彩拿囚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2월 8일(을해)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송익채(宋益彩)를 잡아다 가두겠다는 의금부의 계
- 황승원(黃昇源)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송익채(宋益彩)를 잡아다 가두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송익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二月 八日 乙亥

- 義禁府啓目, 大靜前縣監宋益彩·李寬原情云云. 問目內辭緣, 泛稱遲晚, 所當請刑是白乎矣, 年今七十, 法不當請刑, 竝只上裁, 何如? 判付啓, 二囚年過七十, 所坐亦是微咎, 考律勘放後, 草記爲良如教.

❖ 정조 6년(1782) 임인년 2월 8일(을해)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송익채(宋益彩)를 잡아다 가두겠다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의 계목에,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송익채(宋益彩)와 이관(李寬) 등이 이리저리니 원정(原情)하면서 문목(問目) 내의 죄상에 대해 범범하게 자복하였으니 마땅히 형추(刑推)를 청해야 합니다만, 나이가 지금 70세이므로 법률로 볼 때 형추를 청해서는 안 되니, 아울러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하여 계하하기를, “두 죄수가 나이가 70이 넘었고 연좌된 바도 작은 죄이니 율문을 살펴 감치하여 풀어 준 뒤에 초기를 올리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송익채, 이관, 감처.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二月 八日 乙亥

- 鄭志儉, 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宋益彩·李寬等原情公事判付內, 二囚年過七十, 所坐亦是微眚, 考律勘放後, 草記事, 命下矣. 宋益彩·李寬等段, 濟州前牧使李養鼎狀啓內, 本州寺奴奉化, 以國屯馬殺食罪, 癸未年分, 爲奴定配於大靜縣矣. 旋則逃躲, 至於淪死, 而其時縣監崔宗信, 初不譏捕, 掩置不報, 雇人代點, 萬萬可駭. 其後守令之矇不覺察, 一任代點之罪, 亦不可不論罪. 取考律文, 則大明律徒流人逃條有曰, 主守及押解人不覺失囚者, 一名杖六十, 大典推斷條有曰, 犯私罪, 杖六十, 奪告身一等, 犯枉法受贓外, 笞杖竝收贖云矣. 宋益彩·李寬等, 各杖六十收贖, 奪告身一等, 放送, 何如? 傳曰, 允. 如有功議, 各減一等.

❖ 정조 6년(1782) 임인년 2월 8일(을해)

□ 죄인 송익채(宋益彩)와 이관(李寬)의 처리에 대한 의금부의 초기

- 정기검(鄭志儉)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시수죄인(時囚罪人) 송익채(宋益彩)와 이관(李寬) 등의 원정(原情)에 대한 공사(公事)와 관련한 판부(判付) 내에, 두 죄수의 나이가 70이 넘었고 연좌된 바가 작은 죄이니 올문을 상고하여 감처하여 풀어 준 뒤에 초기를 올리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송익채와 이관 등은 전 제주목사 이양정(李養鼎)⁵⁹⁾의 장계에, ‘본주(本州)의 시노(寺奴) 봉화(奉化)가 나라의 둔마(屯馬)를 잡아먹은 죄로 계미년에 종으로 삼아 대정현(大靜縣)에 정배되었는데 얼마 안되어 달아나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감 최종신(崔宗信)⁶⁰⁾은 애당초 기찰하여 체포하지 않고 덮어두어 보고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점고를 받게 했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그 뒤 수령이 흐리멍덩하여 알아차리지 못하고 한결같이 대신 점고 받게 한 죄에 대해서도 논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올문(律文)을 가져다 살펴보니, 대명률(大明律) 도유인도도망조(徒流人逃亡條)에, ‘주수(主守)와 압해인(押解人)이 죄수가 도망간 것을 알아채지 못한 자는 1명에 장(杖) 60대를 치고, 경국대전 추단조(推斷條)에는 사

59) 이양정(1739~?): 본관 전주(全州). 자 치공(稚功). 1770년(영조 46) 문과 급제. 승지, 대간, 동래부사 역임. 제주목사로 1781년 7월 도임하고 1782년 1월 떠났음.

60) 최종신(?~?): 대정현감으로 1762년(영조 38) 4월 도임하고 1763년(영조 39) 9월에 나거(拿去)되었음.

죄(私罪)를 범하면 장 60에 고신(告身) 1등을 추탈하고, 법을 어겨 뇌물을 받은 것 외에는 태(笞)와 장(杖)은 모두 속전(贖錢)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송익채(宋益彩)와 이관(李寬) 등은 각각 장 60은 속전을 받고, 고신 1등을 추탈하는 것으로 풀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공의(功議)⁶¹⁾가 있으면 각각 1등을 감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송익채, 이관, 이양정, 봉화.

61) 공의(功議): 평의(評議)에 의해 형벌을 감면하는 8가지 조건 중 국가에 큰 공훈을 세운 의공(議功).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二月 十日 丁丑

- 義禁府啓目, 濟州前判官黃麟采原情云云. 問目內辭緣, 泛稱遲晚, 刑推得情, 何如? 判付啓, 金永綬之罪, 可勝誅哉? 白地構誣, 戕殺人命, 究厥心腸, 寧慘甚矣. 至如別造訊杖, 一日二次用鞠廳治鞠囚之例, 尤何等罔赦之罪犯乎? 此獄若不償死, 死者之冤, 無以慰洩, 典則之法, 無以遵守. 永綬待用刑時, 卽爲拿來, 具格捧招, 按法處斷爲旃, 此囚段, 縱云爭難於訊推之時是如爲有乃, 既不能力挽, 又未免合坐, 孱劣之罪, 烏可道也? 各別重勘後, 草記爲旃, 大抵刑人殺人, 朝家猶不容隨意低仰. 況旃么麼守宰, 焉敢弄法至此? 近來法網漸弛, 金永綬濫殺無辜之罪, 呂龜周潛幻一律之跡, 次第登聞. 此外外邑, 必多似此無形之類, 豈非反隅之一端? 爲先枚舉此意, 令備局行會諸道, 監司之匿不以聞, 矇不覺察者, 從後隨現嚴繩, 當不後於犯者, 預令知悉. 另察管下列邑事, 文移備局爲良如教.

❖ 정조 6년(1782) 임인년 2월 10일(정축)

- 의금부의 계목에 대해, 무고한 사람을 죽인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영수(金永綬)를 즉시 잡아와 법에 따라 처단하라는 전교
- 의금부의 계목에,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황인채(黃麟采)가 이러니저리니 원정(原情)하면서 문목(問目) 내의 죄상에 대해 범범하게 자복하였으니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캐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김영수(金永綬)의 죄를 이루다 주별할 수 있겠는가? 터무니없이 무함하여 인명을 해쳤으니 그 심보를 따져보면 몹시 흉악하고 참혹하다. 심지어 별도로 신문하는 장(杖)을 만들어 하루에 두 차례 국청(鞠廳)에서 죄수를 다스리는 규례를 적용하였으니, 더더욱 얼마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인가? 이 옥사는 만약에 죽은 자의 목숨을 변상해 주지 않는다면 죽은 자의 원통함을 위로할 수 없고, 전칙(典則)의 법을 준수할 수가 없다. 김영수는 용형(用刑) 할 때를 기다렸다가 즉시 잡아 와서 격식을 갖추어 공초를 받고 법에 따라 처단해야 할 것이다. 이 죄수가 비록 신문할 때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힘껏 만류하지도 못하고 또 합좌(合坐)를 면치 못했으니 잔악하고 용렬한 죄를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각별히 엄중하게 처벌한 뒤에 초기(草記)를 올리도록 하라. 대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조정에서도 오히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

이다. 하물며 하찮은 수령이 어찌 감히 이렇게까지 법을 농락한단 말인가? 근래 법과 기강이 점차 해이해져 김영수가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인 죄와 여귀주(呂龜周)가 한 가지 형률을 몰래 범한 자취를 차례대로 보고 하였는데, 이 밖의 외읍(外邑)에도 필시 이와 같은 형편없는 무리가 많을 것이다. 어찌 한 구석을 보면 세 구석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아니겠는가? 우선 이 뜻을 낱낱이 열거하여 비변사로 하여금 모든 도(道)에 공문을 보내 알리게 하라. 감사가 숨기고 보고하지 않아 명칭하여 알아차리지 못한 자는 나중에 드러나는 대로 엄히 다스리고, 범한 자보다 형벌을 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잘 알게 하고, 관찰하는 여러 읍을 특별히 더 살피도록 비변사 공문을 보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⁶²⁾

△ 주제어: 황인채, 김영수, 처벌.

62)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6년 2월 11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二月 十日 丁丑

- 趙時偉, 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黃鱗采原情公事判付內, 各別重勘後, 草記事, 命下矣. 黃鱗采段, 濟州御史朴天衡別單內, 以姜城謂之構誣擎天, 報於永綬, 合坐捉入, 別造三省杖, 嚴刑一膝六十度, 翌日致死. 今此獄事, 既以交通罪人爲言, 則其關係亦非尋常, 而既不明查於罪人, 又不嚴覈於擎天, 率爾論斷, 直歸之於構誣者, 其罪狀合有重勘罪. 取考律文, 則大明律謀殺人條有曰, 凡謀殺人不加功者, 杖一百流三千里. 大典推斷條有曰, 犯私罪杖一百以上之罪, 決杖, 告身盡行追奪. 先朝受教內, 王府決杖者, 代以金贖矣. 黃鱗采段, 杖一百收贖, 告身盡行追奪, 慶尙道青松府, 流三千里定配, 而以御史別單內辭意,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如有功議, 各減一等.

❖ 정조 6년(1782) 임인년 2월 10일(정축)

□ 죄인 황인채(黃鱗采)의 처리에 대한 의금부의 초기

- 조시위(趙時偉)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시수죄인(時囚罪人) 황인채(黃鱗采)의 원정(原情)에 대한 공사(公事)와 관련한 판부(判付) 내에, 각별히 엄중히 해야 된 뒤에 초기(草記)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황인채는 제주어사 박천형(朴天衡)의 별단(別單) 내에, ‘강성위(姜城謂)가 경천(擎天)을 무고하여 김영수에게 보고하였고, 합좌(合坐)하여 잡아들여 별도로 삼성장(三省杖)을 만들어 한쪽 무릎에 장(杖) 60대를 엄형하여 다음날 죽게 했습니다. 이번 옥사는 이미 죄인과 교통한 것이라고 말하였으니 그 관계된 바가 보통이 아니고, 죄인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하지도 않은데다가 또 경천을 엄히 조사하지도 않고 경솔하게 논단하여 곧바로 무고로 몰아간 것은 그 죄상을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율문을 가져다 살펴보니, 대명률(大明律) 모살인조(謀殺人條)에 ‘살인 도모에 불가공(不加功)인 자는 장(杖) 100에 삼천리에 유배보낸다.’라고 하였고, 경국대전 추단조(推斷條)에는 ‘사죄(私罪)를 범하여 장 100 이상인 죄는 장을 치고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한다.’라고 하였으며, 선조(先朝)의 수교(受教)에는 ‘의금부에서 장을 칠 자는 대신 돈을 바쳐 속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황인채에 대해 장 100은 속전(贖錢)을 받고, 고신은 모두 추탈하여 경상도 청송부(靑松府)에 유삼천리(流三千里)로 정배되, 어사 별단의 내용으로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보내어 배소로 압송하는 것

이 어떨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공의(功議)가 있으면 각 각 1등을 감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황인채, 정배.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二月 十八日 乙酉

- 黃昇源, 以義禁府言啓曰, 頃因全羅監司朴祐源啓本刑曹粘目內, 大靜前縣監崔宗信, 以爲奴罪人奉化逃躲渰死之後, 初不譏捕, 雇人代點罪, 移本府處之事允下, 而崔宗信時在黃海道安岳地云, 故知委待命之意, 行會本道矣. 卽接黃海監司李敬養牒報, 則崔宗信, 去庚寅十二月分[八日], 已爲身故云, 勿論, 何如? 傳曰, 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2월 18일(을유)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최종신(崔宗信)의 처리에 관한 의금부의 초기
- 황승원(黃昇源)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지난번 전라감사 박우원(朴祐源)의 계본에 대한 형조의 점목(粘目)으로 인하여,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최종신(崔宗信)이 종이 된 죄인 봉화(奉化)가 도망가 물에 빠져 죽은 뒤에 처음부터 기찰하여 체포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점고하게 한 죄를 가지고 본부로 옮겨 처리하도록 윤허를 내렸습니다. 최종신이 당시 황해도 안악(安岳)에 있다고 하기에 통지하여 명을 기다리도록 본도(本道)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금 황해감사 이경양(李敬養)의 첩보를 보니, 최종신이 지난 경인년 12월 8일 이미 죽었다고 하니,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최종신.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二月 二十三日 庚寅

- 徐鼎修, 以刑曹言啓曰, 遠地定配罪人金應彦, 因臺啓更爲絶島定配事, 命下矣. 依傳教, 金應彦全羅道靈巖郡楸子島, 更定配, 卽爲押送, 待用刑, 令配所官嚴刑懲礪事, 分付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2월 28일(경인)

- 죄인 김응언(金應彦)의 처리에 대한 형조의 초기
- 서정수(徐鼎修)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원지(遠地)에 정배한 죄인 김응언(金應彦)을 대계(臺啓)⁶³로 인하여 다시 절도(絶島)에 정배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전교대로 김응언을 전라도 영암 추자도(楸子島)에 다시 정배하고 즉시 압송하여 형벌을 쓸 때를 기다려 배소의 관리로 하여금 엄히 형신하여 징계하도록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분부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응언, 추자도, 정배.

63) 대계(臺啓): 사헌부·사간원에서 왕에게 올리는 계본이나 계목.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二月 二十六日 癸巳

- 徐鼎修, 以吏曹言啓曰, 因政院啓辭, 今番守令薦舉中應薦不薦人, 令該曹察推事, 允下矣. …… 濟州牧使李文燦, …… 應薦不薦, 令政院依例捧傳旨, 臣亦在犯科中, 惶恐待罪之意, 敢啓. 傳曰, 知道. 係是法典所載, 卿亦理難獨免, 令政院一體捧傳旨.

❖ 정조 6년(1782) 임인년 2월 26일(계사)

- 수령 천거 중에 응당 천거해야 하는데 천거하지 않은 사람을 해당 조(曹)로 하여금 조사하여 밝혀내도록 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었으나 또한 과중(科中)을 범하였으므로, 대죄한다는 이조의 초기
- 서정수(徐鼎修)가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정원(政院)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금번 수령 천거 중에 응당 천거해야 하는데 천거하지 않은 사람을 해당 조(曹)로 하여금 조사하여 밝혀내도록 윤허하였습니다.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문혁(李文燦)⁶⁴ <중략> 등을 응당 천거해야 하는데 천거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에서 전지(傳旨)를 받들었으나 또한 과중(科中)을 범하였으므로, 황공하게 대죄한다는 뜻을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이는 법전에 실려 있고 경 또한 이치상 홀로 면하기 어려우니 정원으로 하여금 일체 전지를 받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문혁.

64) 이문혁(1754~?): 제주목사로 1782년(정조 6) 1월에 도임하고 1783년(정조 7) 4월에 떠났음.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二月 二十七日 甲午

- 李在學, 以義禁府言啓曰, 萬頃前縣監李光彬拿問嚴處事, 傳旨, 啓下矣. 李光彬時在濟州地云, 依例發遣府書吏拿來, 何如? 傳曰, 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2월 27일(갑오)

- 제주(濟州)에 있는 전전 만경현감(萬頃縣監) 이광빈(李光彬)을 잡아오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초기
- 이재학(李在學)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전 만경현감(萬頃縣監) 이광빈(李光彬)을 잡아다 신문하여 엄히 처리하도록 전지가 계하되었습니다. 이광빈이 현재 제주(濟州)에 있다고 하니, 규례대로 본부의 서리를 보내어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만경현감, 이광빈.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三月 五日 壬寅

- 刑曹啓曰, 奉常寺庫直韓廷哲等原情云云. 俱以遲晚, 所當自臣曹考律嚴勘是白乎矣. 既有捧直招入侍之命, 上裁, 何如? 判付啓, 渠輩雖曰, 蚩蚩之氓, 亦具一端省覺, 本陵享事所用物種捧上之際, 豈敢如是用情乎是旃, 至於熟設不精之罪, 尤甚無狀是如乎? 前後飭教, 不但截嚴, 纔以此事, 勘科未幾, 又有此執頃之舉. 其矣等情狀, 節節痛駭, 所謂庫直是如爲在, 鄭順國稱名漢, 熟手是如爲在, 全世榮稱名漢, 竝只照律遠配. 仍令配所官, 待用刑嚴刑懲勵後, 令道臣狀聞事, 行會爲旃, 陪進庫子及各種進排貢人等, 亦竝自本曹嚴加照律決處後, 草記爲旃, 典祀官姜鳳瑞聞是耽羅人云. 其不能事事, 勢所固然, 本陵典祀, 豈可以主簿差遣乎? 當初差遣之堂上, 爲先從重推考, 該寺公事提調罷職, 遣官攝祀, 方切如不祭之歎是隱則爲獻官爲陵官者, 乃敢如是泛忽, 事之寒心, 孰甚於此. 當該獻官罷職, 陵司拿問嚴處, 典祀官不可全然無罪. 依判官林鳳護例勘律事, 分付該府, 此後京外祀享, 更有此等之弊, 處分不止於此, 另加嚴飭該寺爲良如教.

❖ 정조 6년(1782) 임인년 3월 5일(임인)

- 능향(陵享)을 미진하게 한 고지기[庫直]와 숙수(熟手) 및 전사관(典祀官) 제주인 강봉서(姜鳳瑞)를 처벌하라는 전교
- 형조의 계목에 “봉상시 고지기[庫直] 한정철(韓廷哲) 등이 이러니저러니 원정(原情)하면서 모두 죄를 자백하였으니, 마땅히 본조에서 올문을 상고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사실 그대로 공초(供招)를 받아 입시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임금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그들이 비록 무지몽매한 백성이라고는 하나 또한 하나의 성각(省覺)을 갖추고 있으니, 본릉의 향사(享事)에 소용되는 물종(物種)을 봉상(捧上) 할 때 어찌 감히 이처럼 사정(私情)을 썼으며, 음식을 정(精)하게 잘 익히지 못한 죄에 이르러서는 더더욱 이처럼 형편이 없단 말인가? 앞뒤로 신칙한 하교가 매우 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이 일을 가지고 감과(勘科)한 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이러한 트집을 잡게 되었다. 저들의 정상이 통탄스럽고 놀랍다. 이른바 고지기라는 정순국(鄭順國稱)이라는 놈과 숙수(熟手)라는 전세영(全世榮)이라는 놈을 모두 법률에 의거해서 멀리로 유배 보내라. 그리고 배소의 관리로 하여금 용형(用刑)할 때를 기다려 엄히 형신하여 징계한 뒤에 관찰사로 하여금 장계로 보고하도록 공

문을 보내라. 배진(陪進)한 고자(庫子)와 각종 진배공인(進排貢人)들 또한 모두 본조에서 엄히 형률을 가하여 처벌한 뒤 초기(草記)하도록 하라. 전사관(典祀官) 강봉서(姜鳳瑞)⁶⁵)는 듣기에 이 이가 제주인이라고 한다. 그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형세상 당연한 것이니 본릉의 전사(典祀)에 어찌 주부(主簿)로 차출하여 보낸 것인가? 당초 차출하여 보낸 당상관을 우선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해당 시(寺) 공사제조(公事提調)를 파직하라.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섭행하게 하였는데, 지금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 같다는 탄식이 있으니 헌관(獻官)이라는 자와 능을 지키는 관리가 어찌 감히 이와 같이 소홀한 것인가?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해당 헌관을 파직하고, 능사(陵司)는 잡아다 신문하여 엄히 처단하라. 전사관이 전혀 죄가 없을 수 없다. 판관 임봉호(林鳳護)의 사례에 의거하여 형률을 적용하도록 해당 부(府)에 분부하라. 이후로 경외(京外)의 향사(享祀)에 다시 이러한 폐단이 있게 되면 처분이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특별히 해당 시(寺)에 엄히 신칙(申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전사관, 강봉서.

65) 강봉서(1746~1823): 본관 진주(晉州). 현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 출신.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오수찰방, 사헌부장령 역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三月 十二日 己酉

- 李惠祚啓曰, 卽伏見濟州牧使李文燦兩度啓本, 則旌義縣監李長益, 書以益長, 莫重奏御文字, 名字該書, 極涉不察, 所當還爲下送, 而越海之際, 遲滯可悶, 原啓本自本院修整入啓, 而事體所在, 不可無警, 該牧使李文燦推考, 何如? 傳曰, 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3월 12일(기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문혁(李文燦)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이해조(李惠祚)의 계
- 이해조(李惠祚)가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문혁(李文燦)의 2통의 계본을 보니, 정의현감 이장익(李長益)⁶⁶을 익장(益長)으로 썼습니다. 임금께 아뢰는 막중한 문자에 이름자의 해당 글씨가 지극히 불찰이므로 마땅히 도로 내려보내야 하지만 바다를 건널 때에 지체될까 염려가 됩니다. 원래의 계본을 본원에서 수정해서 입계(入啓)하였으나 일의 체모에 있어서 경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당 목사 이문혁을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문혁, 추고.

66) 이장익(?~?): 정의현감으로 1782년(정조 6) 2월에 도임하고 1784년(정조 8) 8월에 떠났음.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三月 十三日 庚戌

- 壬寅三月十三日辰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守令·邊將，同爲入侍時，領議政徐命善，左議政洪樂性，右議政李福源，行知中樞府事具善復，行戶曹判書金華鎮，行吏曹判書李命植，左參贊鄭尙淳，兵曹判書鄭好仁，江華留守金煜，工曹判書徐有慶，刑曹判書李性源，禮曹判書金魯鎮，行副司直鄭民始，漢城判尹鄭昌聖，漢城左尹李昌運，刑曹參判李柱國，行副司直李敬懋，兵曹參判蔡弘履，持平李泰永，校理徐有成，左承旨徐有防，假注書尹序東，事變假注書李顯道，記注官金鳳顯·金健修，果川縣監鄭東浚，牛峴僉使金光澤，助羅浦萬戶尹昌莘，以次進伏訖。…… 命善曰，頃因濟州御史朴天衡別單諸條中，可以釐革變通者，令道臣論理啓聞之意，覆奏，分付矣。卽見全羅監司朴祐源狀啓，則貢米事，以爲本道入送，歲爲二百石，而近因奴婢耗縮，貢米不足，故以均廳句管米，推移以送，或以高敞·興德區劃，以致遠輸之稽滯，此後必以附近邑，從便劃送云，陪持事，以爲道內各驛，近甚凋殘，幾至絕站，而今又創本州狀啓轉付之規，則實有難支之慮，且以本道事例言之，狀啓或以京房子，或以驛急走專人直呈，有異撥路之遞傳，轉付一款，有難創行云，羅鋪事，以爲自今運米時，必以精實準斛者擇送，自臣營發遣徧裨，眼同裝載，毋或如前作奸事，別爲定式，而至於涼臺八升之價，己丑節目，米一石定以三兩，涼臺一立，定以一錢六分，以此折計，則一立價爲八升，今若改定一斗，則涼價米直，太不相當，貿遷還作，實有不足之患云，而竝令廟堂，稟旨，分付爲請矣。貢米遠輸之弊，今既釐正，可免耽羅間斷之患，永爲定式，毋或違越之意，更加申飭道內，既無撥路遞傳之規，則轉付一款，非所可論置之，羅鋪運米，道臣既以送裨裝發，申明科條，則自此庶無從中作奸之慮，而涼臺之不得增加，事勢所拘，果難變通，依前節目施行事，分付，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 정조 6년(1782) 임인년 3월 13일(경술)

-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입시하여 전라감사 박천형(朴天衡)의 장계에서 거론한 공미(貢米), 배지(陪持), 나리포(羅里鋪)의 일에 대해 논의함
- 임인년 3월 13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고 수령과 변장이 함께 입시할 때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좌의정 홍낙성(洪樂性), 우의정 이복원(李福源),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이조판서 이명식(李命植), 좌참찬 정상순(鄭尙淳), 병

조판서 정호인(鄭好仁), 강화유수 김익(金煜), 공조판서 서유경(徐有慶), 형조판서 이성원(李性源), 예조판서 김노진(金魯鎭), 행부사직 정민시(鄭民始), 한성판윤 정창성(鄭昌聖), 한성좌윤 이창운(李昌運), 형조참판 이주국(李柱國), 행부사직 이경무(李敬懋), 병조참판 채홍리(蔡弘履), 지평 이태영(李泰永), 교리 서유성(徐有成), 좌승지 서유방(徐有防), 가주서 윤서동(尹序東), 사변가주서 이현도(李顯道), 기주관 김봉현(金鳳顯)·김건수(金健修), 과천현감 정동준(鄭東浚), 우현첨사 김광택(金光澤), 조라포만호 윤창신(尹昌莘)이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서명선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제주어사(濟州御事) 박천형(朴天衡)이 별단으로 올린 여러 조항 중에 고쳐서 변통할 만한 것을 관찰사로 하여금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도록 복주(覆奏)하여 분부하였습니다. 방금 전라감사 박우원(朴祐源)의 장계를 보니 공미(貢米)에 대해서는, ‘본도에서 들여보내는 것이 해마다 2백 섬인데 근래 들어 노비가 줄어들어 공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균역청에서 관할하는 쌀로 돌려넘겨 보내는데, 혹 고창(高敞)과 흥덕(興德)에서 구획할 경우 멀리서 수송하므로 지체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꼭 부근 읍에서 편할 대로 구획해 보내겠습니다.’라고 하였고, 배지(陪持)에 대해서는, ‘도내(道內) 각 역(驛)이 근래 매우 쇠잔하여 거의 역참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본주(本州)의 장계를 전달해 부치는 규정을 만들어낸다면 실로 버티기 어려울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본도(本道)의 사례로 말하더라도, 장계는 혹 경방자(京房子)⁶⁷⁾를 쓰거나 혹 역의 주졸(走卒)을 써서 사람이 전담해 직접 올리므로 파발로에서 이어서 전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전달해 부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내 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나리포(羅里舖)의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쌀을 운송할 때는 꼭 질이 좋고 곡(斛)을 준수한 것을 가려 보내겠습니다. 신의 감영에서 보낸 편비(褊裨)와 함께 짐을 꾸려 신게 해서 혹시라도 전처럼 간교한 짓을 못하도록 별도로 규정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태[涼臺]의 경우 8되의 값은, 기축년 절목에는 쌀 1섬을 3냥으로 정해 양태 1립(立)에 1전(錢) 6푼(分)으로 정했으니 이것으로 환산하면 1립 값이 8되입니다. 지금 만약 1말로 정하면 양태 값과 쌀값이 너무나 걸맞지 않아 사서 옮기고 바꾸는 데 실로 부족할 염려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공미를 멀리서 수송하는 폐단은 지금 이미 개정하여 제주에 끊길 염려를 면할 수 있게 되었으니 영구히 규정으로 정해 혹 어기지 말라고 다시

67) 경방자(京房子): 경저리(京邸吏)나 계수주인(界首主人)이 관할 읍에 발송하는 공문·통신 등을 전달하는 하인.

더 신칙해야 하겠습니다. 도내(道內)에는 이미 파발로로 이어 전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달해 부치는 사항은 논할 것이 없으니 그냥 두어야 하겠습니다. 나리포에서 운송하는 쌀은 도신이 이미 비장을 보내 꾸러오게 했으니 규정을 분명히 밝힌다면 앞으로는 도중에 간교한 짓을 할 염려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태를 늘릴 수 없는 것은 형편상 구애되어 정말로 변통하기 어려우니 예전 절목에 의해 시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⁶⁸⁾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어사, 박천형, 공미. 배지, 나리포.

68)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6년 3월 13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三月 二十一日 戊午

- 壬寅三月二十一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徐命善, 左議政洪樂性, 右議政李福源,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戶曹判書金華鎮, 行吏曹判書李命植, 右參贊鄭尙淳, 兵曹判書鄭好仁, 工曹判書徐有慶, 刑曹判書李性源, 禮曹判書金魯鎮, 司直徐有隣, 判尹鄭昌聖, 咸春君李昌運, 刑曹參判李柱國, 行副司直李敬懋, 禮曹參判徐有寧, 兵曹參判蔡弘履, 修撰李顯模, 同副承旨金履禧, 假注書趙衍德, 事變假注書李敬裕, 記注官金鳳顯, 別兼春秋李集斗, 以次進伏訖. …… 命善曰, 頃因濟州御史朴天衡別單, 歲貢馬載運時定送沿邑船隻便否, 商量論啓之意, 自司僕寺覆奏, 分付矣. 卽見全羅監司朴祐源狀啓, 則以本道船隻, 極甚苟艱, 兩稅輸運, 惟待京江船隻. 又創別岐船運之役, 恐是行不得之政. 且慣習水路, 閑熟御馬, 莫如濟人, 則莫重貢獻, 付諸生手, 亦非萬全之策, 莫若仍舊貫舉行之爲便, 請令廟堂稟旨, 分付矣. 覓船之難, 固已料得, 而除弊島中, 貽害沿邑, 果如道臣所論, 依前以本州船載運事, 分付濟州牧使,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

❖ 정조 6년(1782) 임인년 3월 21일(무오)

-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입시하여 전라감사 박천형(朴天衡)의 장계에서 거론한 세공마(歲貢馬)를 실어 운반할 때 연해 읍의 배를 정해 보내는 일에 대해 논의함
- 임인년 3월 21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좌의정 홍낙성(洪樂性), 우의정 이복원(李福源),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이조판서 이명식(李命植), 우참찬 정상순(鄭尙淳), 병조판서 정호인(鄭好仁), 공조판서 서유경(徐有慶), 형조판서 이성원(李性源), 예조판서 김노진(金魯鎭), 사직서유린(徐有隣), 판윤 정창성(鄭昌聖), 함춘군 이창운(李昌運), 형조참판 이주국(李柱國), 행부사직 이경무(李敬懋), 예조참판 서유녕(徐有寧), 병조참판 채홍리(蔡弘履), 수찬 이현모(李顯模), 동부승지 김이희(金履禧),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사변가주서 이경유(李敬裕),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별검춘추 이집두(李集斗)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명선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제주어사(濟州御史) 박천형(朴天衡)이 별단으로 올린 세공마(歲貢馬)를 실어 운반할 때 연해 읍의 배를 정해 보내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에 대해 헤아려 자세히 따져 보고하라고 사복

시에서 복주하여 분부하였습니다. 방금 전라감사 박우원(朴祐源)의 장계를 보니, ‘본도(本道)의 배는 매우 구차하여 두 가지 세(稅)를 운송하는 것도 경강(京江)의 배를 기다리는 형편이니 또 다른 갈래의 선운(船運)의 역을 창설하여 운송하는 일은 아마도 시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또한 물길에 익숙하고 말을 익숙하게 다루는 데는 제주인이 가장 나으니 막중한 공헌(貢獻)을 서툰 사람에게 넘기는 것 또한 안전한 계책이 아니므로 종전대로 거행하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다.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배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은 사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섬 안의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연해 읍에 해를 끼친다는 것은 과연 도신이 논한 대로입니다. 예전대로 제주의 배로 실어 운반하라고 제주목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⁶⁹⁾ 【거조(學條)를 냄】 〈하락〉.

△ 주제어: 제주어사, 박천형, 세공마, 운송.

69)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6년 3월 21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三月 二十五日 壬戌

- 金尙集啓曰, 新除授右副承旨李養鼎, 方在濟州任所, 斯速乘駟上來事, 下諭, 何如? 傳曰, 然則勿施, 前望單子入之.

❖ 정조 6년(1782) 임인년 3월 25일(임술)

- 우부승지에 제수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양정(李養鼎)을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게 할 것을 청하는 김상집(金尙集)의 계
- 김상집(金尙集)⁷⁰⁾이 아뢰기를, “새로 우부승지에 제수된 이양정(李養鼎)이 지금 제주(濟州) 임소에 있으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시행하지 말고 전망 단자(前望單子)⁷¹⁾를 들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양정.

70) 김상집(1723~?): 본관 강릉(江陵). 자 사능(士能). 1755년(영조 31) 문과 급제. 한성부판윤, 예조판서, 우참찬 역임.

71) 전망단자(前望單子): 어떤 관직의 후임을 뽑아야 할 때 새로 삼망(三望)을 갖추어 올리는 망단자가 아니라 바로 그 이전 그 관직의 망단자 그대로 올린 것을 말함.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三月 二十九日 丙寅

○ 傳于金尙集曰, 前濟州牧使李養鼎, 使之來待.

❖ 정조 6년(1782) 임인년 3월 29일(병인)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양정(李養鼎)을 대령하게 하라는 전교

○ 김상집(金尙集)에게 전교하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양정(李養鼎)을 와서 대령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양정.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三月 二十九日 丙寅

○ 傳于金尙集曰, 同副承旨, 與前濟州牧使入侍.

❖ 정조 6년(1782) 임인년 3월 29일(병인)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등을 입시하게 하라는 전교

○ 김상집(金尙集)에게 전교하기를, “동부승지와 전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입시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양정.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三月 二十九日 丙寅

○ 壬寅三月二十九日酉時，上御誠正閣。同副承旨與前濟州牧使入侍時，同副承旨奇彥鼎，假注書趙衍德，記注官金鳳顯，別兼春秋李集斗，前牧使李養鼎，以次進伏訖。上曰，前濟州牧使進前。養鼎進伏。上曰，昨年差送之時，適患乏人，且念以曾經經筵以上差送，即朝體苟艱，不得已落點，而深以爲慮，無事往來，殊可喜也。養鼎曰，區區報效之道，惟在於筋力奔走，況受命於島邑有事之時，惟恐僨事而獲罪，不敢念及於死生，而王靈攸暨，聖恩所被，去來俱得無事，區區惶感，不知所達矣。上曰，島中山川如何？養鼎曰，御史別單，已有詳陳，而大體濟州，古稱瀛洲，人或謂之神仙窟宅，而土石俱黑，山川巖惡，不知其爲佳山好水，況土地瘠薄，人民貧窶，生業甚蕭然矣。上曰，諸罪人防守之道近，果何如？養鼎曰，今番按查以後，諸罪人大加懲畏，且以聖上好生之德，渠輩罪宜誅戮，而生出獄門，莫不感祝，而按查雖已畢。臣之在任時，不敢弛心，定四鄰輪守操切，連加廉察，則姑無出入與外人相通之患矣。上曰，民弊，雖於御史書啓，略干釐革，而尚有未盡祛者，隨所見仰達，可也。養鼎曰，臣與御史，首尾五朔，採取民弊，相對講究，數十餘條，俱是目前切緊之弊，而皆蒙允俞，俱盡釐革，別無可以更爲煩達者矣。上曰，守臣官長，若能遵守，數三十年，庶或更無疾苦乎？養鼎曰，釐革非難，遵守甚難，若能遵守，似有實效矣。島民許多疾苦，今幾釐革，而第驅馬之役，爲島中第一痼弊，山馬場間牆，若皆撤毀，則其弊又當如前，此甚可悶矣。上曰，御史與牧使之意見，至於馬場事，則各異乎？養鼎曰，御史再次往見，臣亦詳審形便，而御史則以爲，漢拏山上遊養之馬，驅而納之於間牆之內，故馬不蕃殖，爲順馬性，欲撤間牆，而臣意則間牆之內，長廣爲百里，多有水草，且既通針牆，則上下山路，亦不阻隔，山上舊遊之馬，方可隨處往來，更無拘繫之患矣。臣於歸時，既聞民情之矜悶，故有此陳達矣。上曰，間牆已撤毀耶？養鼎曰，針牆則已撤，鹿山牆上牆，姑不撤毀，而新牧使，因朝令，方出見狀聞，以爲存撤之地，而御史既陳其可撤，故新牧使，不得立異云矣。上曰，濟州器具，何如？養鼎曰，軍制甚壯，島民之免於軍額者甚少，吏奴亦數多，外面器具，不可謂之全無，而官廩甚薄，着手無地，故在前長官之牟利剝割之弊，出於不得已云矣。至於軍器，則充溢庫舍，臣亦未盡看閱，而多有寶劍與火具之異常者，統營與各道兵水閫所無者，甚多矣。上曰，何其多也，而有何異常也？養鼎曰，俱是倭戰船所獲及流來別備云矣。上曰，島中人物，亦或有可用者云，然否？養鼎曰，島俗貴武而賤文，文士絕少，而今番御史別薦四五人，俱是島中翹楚矣。上曰，月前武兼復職者上來耶？養鼎曰，復職者即文祥富，而有八十餘歲老父，不得離捨，故自本州，以不得上去，報于該曹，而別薦中一人，今方上來矣。上曰，其人亦如何？養鼎曰，身手甚好，爲人亦勤幹矣。上曰，其名誰也？養鼎曰，

洪受寬矣. 上曰, 濟州之人, 何不求仕? 養鼎曰, 越海甚難, 與陸地有異, 一番受由下去, 則更無限內上來之勢, 故只知本州鎮將軍任之爲貴, 不知仕宦之榮矣. 上曰, 今番文科之人, 果是實才耶? 養鼎曰, 收券不過三十餘張, 可知業文者之甚少, 而壯元金墉者, 遊學京洛, 稍解文字, 之次邊景佑, 亦稱其中之實才, 之次康聖翊, 居在旌義, 而亦有文名云矣. 上曰, 內移之報, 何日得聞乎? 養鼎曰, 除拜在於十二月初五日, 而同月廿五日, 始伏承傳教矣. 上曰, 二十日之間, 能聞京報, 濟州亦云不遠矣. 養鼎曰, 若或卽遇順風, 十日之內, 亦聞京報, 而若不得順風, 則數三朔亦不免阻絕矣. 上曰, 果是絕域也. 李羽晉亦上來耶? 養鼎曰, 羽晉之登船, 先於臣一日, 故日昨已入城矣. 上曰, 聞有老親, 故特命內移矣. 養鼎曰, 羽晉內移之命, 追到於臣承命數日之後, 而以聖念及於老母, 對臣感泣攢祝矣. 上曰, 牧使宿於何地而入來乎? 養鼎曰, 昨自振威, 離發抵宿鷺梁, 今朝入來納符矣. 上曰, 大靜縣監居中後, 爲治稍勝耶? 養鼎曰, 臣交龜之後, 不知守令之治否, 但聞自歲後無病, 而不勤於邑事云矣. 仍命先退, 養鼎退出. …….

❖ 정조 6년(1782) 임인년 3월 29일(병인)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양정(李養鼎)이 입시하여 임금의 제주의 실정에 대한 물음에 아뢴

○ 임인년 3월 29일 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동부승지와 전 제주목사가 입시할 때 동부승지 기언정(奇彦鼎),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별검춘추 이집두(李集斗), 전 목사 이양정(李養鼎)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 제주목사는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작년에 차송(差送) 할 때에 마침 사람이 부족한 것을 근심하였고 또 생각건대, 일찍이 경연(經筵)을 거친 이상 차출하여 보낸 것은 조정의 체모가 구차하고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낙점한 것이다. 심히 염려하였는데 무사히 갔다왔으니 매우 기쁘다.”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구구한 신이 은혜에 보답하는 방도는 오직 온 힘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달려 있는데, 더구나 섬 고을에 일이 있는 때에 명을 받고 오직 일을 그르쳐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생사(生死)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선대 임금의 신령이 돌봐주고 임금님의 은혜를 입어 가고 옴에 무사할 수 있었으니 황감(惶感)하여 아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섬안의 산천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어사의 별단에 이미

상세히 아뢰었습니다만 대체로 제주는 옛날에는 영주(瀛洲)라 칭하였는데 사람들이 혹은 신선이 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흙과 돌이 모두 검고, 산천은 거칠고 험악하여 그곳이 산이 아름답고 물이 좋은 지는 알지 못하겠고, 더군다나 토지가 척박하여 백성들이 가난하고 생업은 매우 궁핍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죄인들을 지키는 도리는 근래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이번에 조사한 이후로 여러 죄인들을 크게 징계하였고, 또 임금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 저희들을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하는데도 살아서 옥문을 나왔으니 감축(感祝)하지 아니함이 없는데, 조사를 다 마쳤더라도 신이 재임할 때 감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방의 이웃을 정하여 돌아가며 단속하여 연이어 염찰(廉察)라게 하니, 아직은 출입하거나 외인(外人)과 서로 통하는 염려는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폐는 비록 어사의 서계(書啓)에 대해서는 대략 뜯어 고쳤지만 아직 다 제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소견에 따라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신과 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섯 달 동안 민폐를 조사하여 서로 마주 보며 강구하였는데, 수십여 조(條)는 모두 눈앞에 닥친 절실한 폐단이라서 모두 윤허를 받아 모두 개혁하였으니, 별도로 번거롭게 아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이 잘 준수한다면 수삼십 년 동안은 더 이상 고통이 없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뜯어 고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준수할 수 있다면 실효가 있을 듯합니다. 도민(島民)들의 허다한 고통은 지금 거의 뜯어 고쳤는데, 다만 구마(驅馬)하는 역(役)이 섬 안의 첫 번째 고질적 폐단이니, 산마장(山馬場) 사이의 담장을 만약 모두 철거한다면 그 폐단이 또 여전할 것이니, 이것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와 목사의 의견이 마장(馬場)의 일에 이르러서는 각기 다른가?”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어사가 재차 가서 보고 신 또한 형편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어사는 한라산에서 노닐며 기르던 말을 몰아서 간장(間牆) 안으로 들였기 때문에 말이 번식하지 못한 것이니 말의 본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간장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뜻은 간장 안은 길이와 너비가 100리가 되고 물과 풀이 많고 또한 이미 침장(針牆)을 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런즉 오르내리는 산길이 또한 막히지 않아서 산 위에서 옛날 노닐던 말이 바야흐로 곳에 따라 왕래하여 더 이상 간힐 염려가 없습니다. 신이 돌아올 때 백성들의 실정의 가여움을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뢰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간장은 훼손하였는가?”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침장은

이미 훼손하였고, 녹산장(鹿山塙)의 상장(上塙)은 일단 훼손하지 않고 새로운 목사가 조정의 명령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장계를 내보이면 존치할지 훼손할지 결정할 것인데, 어사가 이미 그것의 훼손을 아뢰었기에 새로운 목사가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의 기구(器具)는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군제(軍制)가 매우 장대하여 도민(島民) 중에 군액(軍額)을 면하는 자가 매우 적고, 아전과 노비 또한 숫자가 많아 외면(外面)의 기구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녹봉이 아주 박해서 손을 댈 곳이 없기에 전에 있던 수령이 이익을 꾀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폐단이 부득이한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군기(軍器)의 경우에는 창고에 가득 차서 신 또한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보검(寶劍)과 화구(火具) 중에 이상한 것들이 많고, 통영(統營)과 각 도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에게 없는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그리도 많고, 무슨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모두가 왜(倭)의 전선(戰船)에서 얻은 것과 전부터 전해 내려와서 별도로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섬 안의 인물들 중에도 혹 쓸 만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가?”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섬의 풍속은 무(武)를 귀하게 여기고 문(文)을 천하게 여겨서 문사(文士)가 매우 적은데, 이번에 어사가 특별히 추천한 4, 5인은 모두 섬 안에서 뛰어난 인물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달포 전에 무겸(武兼)으로 복직된 자는 올라왔는가?”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복직된 자는 바로 문상부(文祥富)인데, 80여 세 된 늙은 아버지가 있어 곁을 떠날 수 없으므로 본주(本州)에서 올라오지 못해서 해당 조(曹)에 보고하여 별천(別薦) 중 한 사람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또한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신수가 매우 좋고 사람됨도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홍수관(洪受寬)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사람들은 어찌하여 벼슬을 구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바다를 건너는 것이 매우 어려워 육지와는 다르니, 한 번 말미를 받아 내려가면 다시 기한 안에 올라올 형편이 안 됩니다. 때문에 단지 본주(本州) 진장(鎭將)의 군임(軍任)의 귀함만을 알고, 벼슬하는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에 문과에 급제한 사람은 과연 글재주가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거둔 시권(試券)이 30여 장에 불과하니 글을 업으로 삼는 자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장원한 김용(金壙)이라는 자가 서울에 유학하여 문자를 조금 이해하고, 다음 변경우(邊景佑) 또한 그 가운데 글재주가 있고, 그 다음 강성익(康聖翊)은 정의(旌義)에 살고 있는데 또한 문명(文名)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직(內職)으로 옮긴다는 소식은 언제 들었는가?”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제수된 것이 12월 5일인데, 같은 달 25일에 비로소 삼가 전교를 받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20일 사이에 서울 소식을 들을 수 있으니 제주 또한 멀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만약 즉시 순풍을 만난다면 열흘 안에 또한 서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만, 만약에 순풍을 얻지 못한다면 두세 달도 막히고 끊기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멀리 떨어진 지방이다. 이우진(李羽晉)⁷²도 올라왔는가?”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이우진이 배에 오른 것은 신보다 1일 앞섭니다. 때문에 어제 도성에 이미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늙은 부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특별히 내직으로 옮기라고 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이우진을 내직으로 옮기라는 명은 신이 명을 받든 지 며칠 뒤에 뒤따라 이르렀는데, 임금님의 생각이 노모에게 미치니, 신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모아 감축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목사는 어느 곳에 묵었다가 들어왔는가?”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어제 진위(振威)에서 출발하여 노량(鷺梁)에 이르러 묵었다가 오늘 아침에 들어와 부신(符信)을 반납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정현감은 중(中)을 맞은 뒤로 정치가 조금 나아졌는가?”라고 하였다. 이양정이 아뢰기를, “신이 인신(印信)을 인수인계 한 뒤에 수령이 잘 다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설을 쉰 뒤에 병이 없는데도 고을의 일에 부지런하지 않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먼저 물러가라고 명하니, 이양정이 물러 나갔다. <하략>.

△ 주제어: 군기, 별천, 김용, 변경우, 강성익, 이우진.

72) 이우진(1741~?): 본관 전주(全州). 자 성익(聖翼).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언, 홍문관부수찬 역임. 정의현감으로 1781년(정조 5) 도임하고 그해 12월에 떠났음.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四月 一日 丁卯

- 以全羅監司濟州牧罪人移配時船隻漂流狀啓，傳于奇彥鼎曰，許多人命之不識存沒，已極矜慘，其中移配罪人，或有漂到異國之事，則事之疎虞，孰甚於此？另加搜訪，更爲狀聞，卽令刑曹發關嚴飭道伯處。

❖ 정조 6년(1782) 임인년 4월 1일(정묘)

- 이배(移配)할 때 표류한 제주목(濟州牧)의 죄인을 각별히 찾아내어 장계로 보고하라는 전교
- 전라감사가 제주목(濟州牧)의 죄인을 이배(移配)할 때 선박이 표류한 일로 올린 장계와 관련하여 기언정(奇彦鼎)⁷³에게 전교하기를, “허다한 인명에 대해 생사를 모르는 것이 이미 지극히 불쌍하고 참혹한데, 그중에 이배된 죄인이 혹 표류하여 이국(異國)에 도착한 일이 있다면 일이 영성하기가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는가? 각별히 찾아내고 다시 장계로 보고도록 즉시 형조로 하여금 관문(關文)을 보내 관찰사에게 엄히 신칙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배, 죄인, 표류.

73) 기언정(1716~1797): 본관 행주(幸州). 자 국진(國鎭)·중화(仲和). 호 나와(懶窩). 시호 정간(靖簡). 1763년(영조 39) 문과 급제. 대사간, 대사헌, 공조판서 역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四月 五日 辛未

- 趙時偉, 以兵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李文燦牒報, 則本州居新除授武臣兼宣傳官文祥富, 以其老父, 今年八十八歲, 宿病沈痼, 轉側須人, 暫難離捨呈狀, 而顧其情勢, 實無起送之路云矣. 其情理既如此, 則不可強令上來, 改差, 何如? 傳曰, 旣命收用, 旋許改差, 豈非無實之甚乎? 聞同鄉人洪受寬來京云, 依朝筵下教, 此窠口傳擬入, 文祥富從後收用之意, 令政院捧承傳, 可也.

❖ 정조 6년(1782) 임인년 4월 5일(신미)

- 제주목(濟州牧) 무신 겸 선전관에 제수된 제주목 문상부(文祥富)를 개차(改差)할 것을 아뢰는 병조의 초기
- 조시위(趙時偉)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문혁(李文燦)의 첩보를 보니, ‘본주(本州)에 사는 새로 무신 겸 선전관에 제수된 문상부(文祥富)가 늙은 아버가 올해 88세인데 목은 병이 고질이 되어 돌아눕는 데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여 잠시도 곁을 떠나기가 어렵다고 소장(訴狀)을 올렸는데, 그 정세를 돌아보건대 실로 일으켜 보낼 길이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정세상 이치가 이미 이와 같다면 억지로 올라오게 해서는 안 되니, 개차(改差)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미 쓰라고 명하였다가 곧바로 개차를 허락하는 것이 어찌 무실(無實)이 심한 것 아니겠는가? 듣건대 동향인 홍수관(洪受寬)이 서울로 왔다고 하니, 조연(朝筵)에서의 하교대로 이 자리를 구전(口傳)으로 의망하여 들이고, 문상복을 차후에 거두어 쓸 뜻을 정원(政院)으로 승전(承傳)을 받들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문혁, 첩보, 문상부, 홍수관.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四月 五日 辛未

- 鄭志儉, 以左右捕盜廳言啓曰, 罪人白天湜·金助·文仁邦等, 勿限年絶島散配, 鄭純誠定配事, 命下矣. 罪人白天湜, 以行止陰祕, 心術凶譎, 締結無賴, 自作魁首, 造成土窟, 深居窮峽, 稱以六任占術, 誇其絶倫勇力, 譸張妖言, 誑惑人心罪, 全羅道靈巖郡楸子島, …… 竝具罪目, 各定配所, 卽爲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白天湜 …… 等, 姑勿發配, 明日開坐時, 一併上曹後, 渠輩處曉諭, 以渠輩之所犯萬戮猶輕, 一律何道, 而特因時當藏刑, 姑從寬典之寬典, 爲先減死定配, 到配之後, 若或不悛伎倆, 則當令地方官, 這這廉問隨現, 卽其地正法, 今茲之教, 蓋欲求生於必死之意也. 渠輩又如痛革舊習, 永作平民, 則亦當隨聞宥釋, 俾得歸尋故土, 以此意, 嚴<明>分付發配.

❖ 정조 6년(1782) 임인년 4월 5일(신미)

□ 백천식(白天湜) 등을 추자도(楸子島) 등으로 압송하겠다는 포도청의 초기

- 정지검(鄭志儉)⁷⁴이 좌우 포도청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백천식(白天湜) 등을 무기한으로 절도(絶島)에 분산하여 정배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백천식은 행동거지가 음험하고 심술(心術)이 흉악하여 무뢰배들과 결탁하여 스스로 괴수가 되어 토굴을 만들어 깊은 산골에 깊숙이 살면서 육임점술(六任占術)로 칭하면서 그 뛰어난 용력(勇力)을 자랑하고 요망한 말을 지어내어 인심을 현혹한 죄로 전라도 영감군 추자도(楸子島) 죄목을 갖추어 즉시 압송할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백천식 등은 우선 배소(配所)로 보내지 말고, 내일 개좌(開坐) 할 때 모두 상조(上曹)한 후에 저들에게 효유(曉諭)하도록 하라. 저들이 범한 바는 한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니 사형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특별히 장형(藏刑)할 때를 당해서 일단 너그러운 은전 중에도 너그러운 은전을 쫓아 우선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니, 배소에 도착한 후에 만약에 혹여 기량(伎倆)을 고치지 않는다면, 마땅히 지방관으로 하여금 날날이 염문(廉問)하여 드러나는 대로 즉시 그곳에서 사형에 처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하교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것에서 살리고자 하는 뜻이다. 저들이 또 옛날의 습관을 통렬히 고쳐서 영원히 평민이 된다면 또한 듣는 대로 용서하여 석방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74) 정지검(1737~1784): 본관 동래(東萊). 자 자상(子尙). 호 철재(澈齋). 1776년(영조 52) 문과 급제. 강화부유수, 부제학, 이조참판 역임.

수 있도록 할 것이니, 이러한 뜻으로 엄히 분부하여 배소로 보내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백천식, 추자도, 정배.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四月 五日 辛未

○ 壬寅四月初五日卯時，上御誠正閣。晝講次對，同爲入侍時，同知事金魯鎮，特進官鄭昌聖，參贊官柳誼，假注書趙衍德，記注官金健修，記事官金鳳顯，以次進伏訖。……上曰，卿見前濟州牧使，而邑弊酬酢，果何如？御史則以牧馬之幽於牆內，爲當毀之端，而牧使則以既築之後，今反毀撤，則其爲驅馬之弊不貲云，何其所見之各異也？命善曰，前牧使，臣尙未見，而雖有驅馬之弊，濟馬之性，往來山坂，養其駿逸之氣，而限於築牆，殆同幽繫，馬政亦大矣，臣意則不可不毀撤矣。當初金永綬之不報本寺，恣意築牆者，誠極怪駭矣。上曰，昨冬回啓時，將臣多以撤毀爲宜云矣。命善曰，然矣。上曰，前牧使亦云，既毀針牆，則雖不更撤外牆，有直通漢挈山絕頂之路，更不必撤毀云。且以枚舉民弊陳奏，既曰民弊，則不可不念，左右相之意，何如？樂性曰，更撤外牆，則雖有民弊，自古驅馬之役，民皆擔當，今何以此爲難便乎？馬政關係甚重，不可不念矣。福源曰，養馬之政亦大矣，不可以些少民弊，停其撤毀矣。上曰，當初創始築牆者甚不緊，而到今以民弊爲難，則亦不可不顧矣。然而馬之爲政，隨其水草，恣意飲齕，騰揚山坂，此是順物之性，而聞自築牆之後，殆同繫之維之，故瘦瘠轉甚，駿良絕罕云，是亦可悶矣。命善曰，果然矣。挽近以來，山馬之種子將絕矣。上曰，諸將臣各陳所見，可也。善復曰，馬者，國之重政，不可以些少弊端，有所放忽矣。且馬之上下山坂，自是性也，而今若築牆拘牧，則必失其性，驅馬之弊，雖或有之，所築之牆，必當毀之矣。昌運曰，驅馬點烙，果有民弊，故所以築場，而欲修馬政，則毀撤，然後可以養牧矣。柱國曰，撤牆放牧，誠得宜矣。敬懋曰，馬在牆內，則似失其性，而當初築場，既爲民弊云爾，則姑勿毀撤，差觀來頭，好矣。上曰，此言亦有理矣。然而兵難遙度，此等小事，該牧使既是目擊，則毀不毀間，不爲別白陳聞者，誠甚可怪矣。命善曰，果如聖教，其不指一啓聞，依違說去者，誠可駭矣。上曰，臺臣新自本島來，當知其事實矣。羽晉曰，臣方欲以所懷仰奏，今承下詢，當陳事狀矣。臣待罪島邑也，每當州城往來之路，輒由山馬場內，遍審形止，則間築之內，周回百餘里，茂林豐草，高峯流水，在在有之，優足於數千馬群之游養飲齕，且針牆橫築之外，又有外牆舊址，而前牧使李養鼎，纔毀橫築，新修舊牆，直接漢挈山上麓，則尤不妨於場馬之上下山坂，順養其性，何必復毀他牆乎？大抵驅馬之弊，爲三邑大弊，而臣聞間築前驅點時，大發軍丁，遍驅山馬，名雖三日之役，其中不善驅者，謂之逆走哨，經冬徂春，搜山索馬，顛連冰雪之間，其愁苦之狀，聞極矜惻，設令間築之毀撤，煞或略有利益於馬政，若是大不便於民情，則在聖朝不以畜害人之義，固不可計較利害，而況在馬無如毫之利，人有切己之害，臣以爲依前間築，勿復毀撤，實合兩便矣。上曰，既曰有民弊，而今以爲馬政毀撤，則是亦難矣。然而馬是有國之大政，固此失養，亦涉可悶，

大抵近來貢馬，比前劣小，殆無可觀矣。命善曰，前因濟州御使朴天衡別單回啓，針場橫築處，斯速撤毀，舉行形止，使之狀聞，此後二場橫築處，繼撤便否，具由狀聞事，批下矣。卽見濟州牧使李文燦狀啓，則馬政民情之輕重便否，初不仔細商量，的確論列，徒持兩端，語無歸屬，看審之守臣，模糊如此，則遠外事情，將何以料度而決定乎？該牧使從重推考，可毀不可毀之間，更爲指一狀聞事，分付，何如？上曰，觀其狀辭，依違說去，全欠別白，焉有此等狀啓之體？推考猶屬薄勘，而更觀前頭，當有處分，姑先以此意，自本寺嚴飭行會，可也。【出舉條】命善曰，卽見濟州牧使李文燦狀啓，則山馬監牧官金尙皓罷黜，代金萬鎰子孫中幼學金秀璜，依該寺事目，自本州直爲差定，職帖下送事，令該寺稟處爲請矣。金秀璜自本州旣已擇定，令該曹依例單望啓下後，成送帖文，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上曰，濟州初仕人文祥富，聞以親年之篤老，不能上來，而前牧使渡海時，帶來他武弁一人云，姓名爲誰？性源曰，臣姑未知矣。上曰，來人姓名知入。性源承命出回奏曰，洪受寬云，而文祥富，則果未上來云矣。上曰，文祥富旣在當遞，則以洪受寬付職，可也。……

❖ 정조 6년(1782) 임인년 4월 5일(신미)

-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의 목장 내 횡축(橫築)한 담의 훼손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함
- 임인년 4월 5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주강(晝講)의 차대(次對)에 함께 입시할 때, 동지사 김노진(金魯鎭), 특진관 정창성(鄭昌聖), 참찬관 유의(柳誼),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전 제주목사(濟州牧使)를 보았을 것인데 읍폐(邑弊)에 대한 응대가 과연 어떠한가? 어사는 목장의 말이 담장 안에 갇히게 된 것을 이유로 훼손해야 할 단서로 삼았는데 목사는 이미 쌓은 뒤에 지금 도리어 훼손한다면 구마(驅馬)의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어찌면 그리도 소견이 각각 다르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전 목사를 신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구마의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제주마의 성질이 산비탈을 왕래하면서 그 빼어난 기질을 기르는 것인데, 쌓아올린 담장 안에 한정된다면 가뉘 맨 것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마정(馬政)은 또한 큰 것입니다. 신의 뜻은 훼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김영수(金永綬)가 본시(本寺)에 보고하지 않고 방자하게 담장을 쌓은 것

은 참으로 괴이하고 놀랍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 겨울 회계(回啓)할 때 장신(將臣) 대부분이 훼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 제주목사가 말하기를, 이미 침장(針場)의 담장을 훼손하였으니 비록 다시 외장(外牆)을 훼손하지 않아도 곧바로 한라산 정상으로 통하는 길이 있으니 다시 훼손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민폐를 하나하나 들어 진술하였는데, 이미 민폐라고 하였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좌상과 우상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홍낙성이 말하기를, “다시 외장(外牆)을 철거하면 비록 민폐가 있을 것이지만 예로부터 구마(驅馬)하는 역은 백성들이 모두 담당하였으니, 지금 어찌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겠습니까? 마정(馬政)은 관계된 바가 매우 중대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복원⁷⁵⁾이 아뢰기를, “말을 기르는 정사는 또한 중대하니 사소한 민폐 때문에 훼손하는 것을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에 담장을 처음 쌓은 것이 그다지 긴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민폐가 되어 곤란하게 되었으니 또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말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물과 풀을 따라서 멋대로 먹고 마시며 산비탈을 오르게 하는 것이 사물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다. 듣건대 담장을 쌓은 뒤로는 거의 매어 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야위고 쇠약함이 갈수록 심해져 좋은 말이 매우 드물다고 하니, 이 또한 걱정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과연 그렇습니다. 몇 해 전부터 산마(山馬)의 종자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신(將臣)들은 각자의 소견을 말해 보거라.”라고 하였다. 구선복이 아뢰기를, “말은 나라의 중요한 정사이니 사소한 폐단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말이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담장을 쌓아 구속하여 기른다면 반드시 그 본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구마하는 폐단이 혹여 있더라도 쌓은 담장은 반드시 훼손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창운이 아뢰기를, “말을 몰아 낙인을 찍는 것이 과연 민폐가 있기 때문에 목장에 담장을 쌓아서 마정(馬政)을 정비하고자 한 것이니, 훼손한 뒤에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주국⁷⁶⁾이 아뢰기를, “담장을 거두고 방목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이경무⁷⁷⁾가 말하기를, “말이 담장

75) 이복원(1719~1792): 본관 연안(延安). 자 수지(綏之). 호 쌍계(雙溪). 시호 문정(文靖). 1754년(영조 30) 문과 급제. 공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역임.

76) 이주국(1721~1798): 본관 전주(全州). 자 군언(君彦). 호 오백(梧栢). 1740년(영조 16) 무과 급제. 형조판서, 총융사, 훈련대장 역임.

안에 있으면 그 본성을 잃을 듯한데, 당초에 목장에 담장을 쌓은 것이 민폐가 되었다고 하니, 우선 훼손하지 말고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이 또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병사(兵事)란 멀리 헤아리기 어려운데, 이러한 작은 일을 해당 목사가 이미 목격하였다면 훼손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 별도로 아뢰어 진술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과연 임금의 하교와 같이 하나를 지적하여 계문하지 않고 모호하게 말한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臺臣)이 새로 본도(本島)에서 왔으니 그 사실을 알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우진이 아뢰기를, “신이 막 소회를 아뢰고자 하였는데, 지금 하문을 받들었으니 일의 사정을 아뢰겠습니다. 신이 도움(島邑)을 맡았을 때 매번 주성(州城)을 왕래하는 길에 번번이 산마장(山馬場) 안을 경유하여 형지(形止)를 두루 살펴보았더니, 사이에 담장을 쌓은 목장 안이 주위가 100여 리나 되었는데, 우거진 숲에 풀이 풍부하고 높은 봉우리와 흐르는 물이 곳곳에 있어 수천 마리의 말떼가 노닐며 먹고 마시기에 넉넉하였습니다. 또한 침장(針場)에 담장을 횡축(橫築)한 밖으로 또 외장(外牆)의 옛 터가 있었는데, 전 제 주목사 이양정이 횡축한 것을 조금 헐어 새로 옛 담장을 수리하여 곧바로 한라산 상록(上麓)에 닿게 하였으니 말이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아서 그 본성을 기르는데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찌 굳이 다시 담장을 훼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저 구마의 폐단은 4읍의 커다란 폐단이 되는데, 신이 듣기로 중간에 담장을 쌓기 전에는 말을 몰아 점검할 때 크게 군정(軍丁)을 징발하여 산마(山馬)를 널리 퍼져 몰았는데, 말하기는 3일간의 역(役)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말을 잘 몰지 못한 자는 역주초(逆走哨)라고 하여 겨울이 지나고 봄에 이를 때까지 산을 뒤지며 말을 수색하며 눈과 얼음 사이에서 연이어 넘어지니, 그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형상을 들으니 참으로 불쌍하였습니다. 설령 사이에 쌓은 담장을 훼손하는 것이 혹여 마정에 조금의 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민정(民情)에 불편함이 커지고 있으니, 임금께서 가축으로써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의리에서 본다면 실로 이로움과 해로움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말에게는 털끝만큼의 이익이 없고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해로움이 있으니, 신은 예전대로 사이에 담장을 쌓아서 다시는 훼손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실로 양쪽 다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77) 이경무(1728~1799): 본관 전주(全州). 자 사직(士直). 시호 무숙(武肅). 1751년(영조 27) 무과 급제. 포도대장, 어영대장, 훈련대장 역임.

“이미 민폐가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마정(馬政)을 위하여 훼손한다면 이 또한 곤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말은 나라의 큰 정사이다. 실로 이것이 잘못 길러질까 또한 염려가 된다. 대저 근래 공마(貢馬)가 전에 비해 열소(劣小)하여 거의 볼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전에 제주어사(濟州御事) 박천형(朴天衡)의 별단(別單)에 대한 회계(回啓)로 인하여, 침장(針場)에 횡축(橫築)한 곳을 속히 철거하여 거행한 상황을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이후로 두 곳 목장의 횡축한 곳을 계속해서 훼손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사유를 갖추어 장계로 보고하도록 비답을 내렸습니다. 방금 제주목사 이문혁(李文燦)의 장계를 보니, 마정(馬政)과 민정(民情)의 경중(輕重)과 편부(便否)를 애당초 자세히 헤아려 정확히 논열하지 않고 단지 두 끝을 오락가락하면서 말이 귀속(歸屬)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아 살피는 수신(守臣)이 모호하게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먼 지방의 사정을 장차 어떻게 헤아려 결정하겠습니까? 해당 목사를 중중추고(從重推考)하고, 훼손할 만하지 훼손해서는 아니되는지 다시 하나를 지목하여 장계로 보고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장계의 내용을 보니 우물쭈물거리며 말하면서 전혀 명백하지 못하다. 어찌 이와같은 장계의 체모가 있겠는가? 추고하는 것도 오히려 가벼운 처벌에 속한다. 하지만 다시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 처분할 것이니 우선 이러한 뜻으로 본시(本寺)에서 엄히 신칙하여 알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서명선이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 이문혁의 장계를 보니, 산마감목관 김상호(金尙皓)를 파출(罷黜)하고, 대신 김만일(金萬鎰)의 자손 가운데 유학 김수황(金秀璜)을 해당 시(寺)의 사목(事目)에 따라 본주(本州)에서 곧바로 차정하여 직첩(職帖)을 내려 보내도록 해시(該寺)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김수황을 본주에서 이미 선정하였으니, 해조로 하여금 규례대로 단망(單望)으로 게하받게 한 뒤에 체문(帖文)을 만들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 초사인(初仕人) 문상부(文祥富)가 아버지의 나이가 매우 많아 올라올 수 없다고 하는데, 전 목사가 바다를 건널 때에 다른 무변(武弁)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성명은 무엇인가?”라고 하였다. 이성원(李性源)⁷⁸⁾이 아뢰기를,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온 사람의 성명을 알아서 들어오라.”라고 하였다. 이성원이 명을 받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뢰

78) 이성원(1725~1790): 본관 연안(延安). 자 선지(善之). 호 호은(湖隱). 시호 문숙(文肅). 1763년(영조 39) 문과 급제. 홍문관교리, 개성부유수, 좌의정 역임.

기를, “홍수원(洪受寬)이라고 하는데, 문상부는 과연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문상부가 이미 체차되었으니 홍수관을 관직에 붙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구마, 민폐, 마정, 침장, 횡축, 횡철.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四月 二十二日 戊子

- 有政. 吏批, 行判書李命植進, 參判鄭一祥進, 參議未差, 右副承旨趙鼎鎮進. 以李在協爲大司憲, …… 大靜縣監金尙堉 · 鄭汝坤 · 李長煜. [望筒勿施]

❖ 정조 6년(1782) 임인년 4월 22일(무자)

- ☐ 대정현감(大靜縣監)의 의망단자를 시행하지 말라는 전교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행 판서 이명식(李命植)이 나왔고, 참판 정일상(鄭一祥)이 나왔고, 참의는 아직 차정되지 않았고, 우부승지 조정진(趙鼎鎭)이 나왔다. 이재협(李在協)을 대사헌으로 삼고,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에 김상지(金尙堉) · 정여곤(鄭汝坤) · 이장욱(李長煜)을 의망(擬望)하였다. [의망단자(擬望單子)를 시행하지 말라.]

△ 주제어: 대정현감, 의망단자.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四月 二十二日 戊子

- 以大靜縣監望筒，傳于李亨元曰，本邑每以殘武差遣之故，莅任之後，渠亦認以更無餘望，專事肥己，虐害小民，聞於今番繡衣之回奏，益知爲弊之不些，奚特此之爲然？逆孽滿島，戢察任重，而不知東西之人，其可憚壓鎮撫乎？擇差之飭教，墨猶未乾，復以似此無勢之類，無難排擬，此果爲官擇人之意乎？銓官之意，殊覺莫曉，當該吏曹堂上，從重推考，此望筒勿施。

❖ 정조 6년(1782) 임인년 4월 22일(무자)

- 대정현감(大靜縣監) 의망단자에 대해 해당 이조당상을 종종추고하고 이 의망단자를 시행치 말라고 이형원(李亨元)에게 내린 전교
- 대정현감(大靜縣監)의 의망단자(擬望單子)와 관련하여 이형원(李亨元)⁷⁹⁾에게 전교하기를, “본읍은 매번 쇠잔한 무관을 차출하여 보냈기 때문에 부임한 뒤로 그도 더 이상 남은 희망이 없음을 알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것만을 일삼아 백성들을 학대한다. 이번에 어사가 돌아와 아뢴 말을 듣고 폐단이 적지 않다는 것을 더욱 잘 알았으니 어찌 단지 이것이 그러할 뿐이겠는가? 반역을 일으킨 무리가 섬에 가득하여 단속하여 살피는 직임이 중하니, 동서(東西)를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이 탄압(憚壓)하여 진무(鎭撫)할 수 있겠는가? 가려 차정하라는 칙교(飭敎)의 먹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처럼 세력없는 부류를 어렵지 않게 배치하여 의망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관직을 위해 사람을 택하는 뜻인가? 전관(銓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니 해당 이조당상을 종종추고(從重推考)하고 이 의망단자는 시행하지 말도록 하라.”

△ 주제어: 대정현감, 의망당자.

79) 이형원(1739~1798): 본관 전주(全州). 자 선경(善卿). 호 남계(南溪). 1761년(영조 37) 문과 급제. 대사간, 비변사제조, 경상도관찰사 역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四月 二十五日 辛卯

○ 吏曹口傳政事, 以柳誼爲洪州牧使, 朴載淵爲大靜縣監.

❖ 정조 6년(1782) 임인년 4월 25일(신묘)

□ 박재연(朴載淵)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이조가 구전정사(傳政事)를 하여 유의(柳誼)를 홍주목사(洪州牧使), 박재연(朴載淵)⁸⁰⁾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 주제어: 대정현감, 박재연.

80) 박재연(?~?): 대정현감으로 1782년(정조 6) 6월에 도임하고, 1784년(정조 8) 5월에 떠났음.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四月 二十五日 辛卯

○ 壬寅四月二十五日卯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議政徐命善, 左議政洪樂性, 右議政李福源,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戶曹判書金華鎮, 行吏曹判書李命植, 右參贊鄭尙淳, 知中樞府事鄭好仁, 禮曹判書金魯鎮, 行副司直鄭民始, 刑曹判書徐有隣, 漢城判尹鄭昌聖, 咸春君李昌運, 禮曹參判徐有寧, 吏曹參判鄭一祥, 兵曹參判蔡弘履, 大司憲李在協, 校理徐有成, 右承旨李亨元, 假注書趙衍德, 事變假注書李顯道, 記注官金健修·金鳳顯, 以次進伏訖. …… 上曰, 大靜縣監, 以守門將薦, 擬入, 何也? 命植曰, 此人曾是宣薦者矣. 近來武弁, 若經訓練副正, 當爲營將, 故實無可差之人, 果以此人擬入矣. 上曰, 本縣近多烏配之類, 如此冷武, 何能彈壓鎮服乎? 更以可堪任之人, 各別擇送, 可也. 上曰, 李亨默之見罷, 誠可矜矣. 善復曰, 亨默之降資, 尤爲矜憐矣. 上曰, 今番大靜縣監, 如李亨默者, 差出, 可也. 命書傳教曰, 洪州牧使望箇[望箇]勿施, 與大靜縣監勿施之代, 令該曹, 卽爲口傳擇差. …… (在協)又啓曰, …… 持平李亮載, 時在全羅道大靜縣任所, …… 請玆斯速乘駟上來事, 下諭. 上曰, 依啓. ……

❖ 정조 6년(1782) 임인년 4월 25일(신묘)

□ 대정현감(大靜縣監)을 각별히 가려 보내라는 전교

○ 임인년 4월 25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좌의정 홍낙성(洪樂性), 우의정 이복원(李福源),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이조판서 이명식(李命植), 우참찬 정상순(鄭尙淳), 지중추부사 정호인(鄭好仁), 예조판서 김노진(金魯鎭), 행부사직 정민시(鄭民始), 형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한성판윤 정창성(鄭昌聖), 함춘군 이창운(李昌運), 예조참판 서유녕(徐有寧), 이조참판 정일상(鄭一祥), 병조참판 채홍리(蔡弘履), 대사헌 이재협(李在協), 교리 서유성(徐有成), 우승지 이형원(李亨元),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사변가주서 이현도(李顯道), 기주관 김건수(金健修)·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대정현감을 수문장으로 천거하여 의망(擬望)하여 들인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하였다. 이명식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일찍이 선전관으로 천거되었던 자입니다. 근래 무변(武弁)이 훈련부정을 지냈다면 마땅히 영장(營將)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실로 차정할 사람이 없어서 과연 이 사람을 의망하여 들

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현에 근래 도배(島配)된 부류가 많은데 이와 같은 냉무(冷武)가 어떻게 통제하고 복종시킬 수 있겠는가? 다시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각별히 가려 보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형묵(李亨默)⁸¹이 파직당한 것은 참으로 가엾다.”라고 하였다. 구선복이 아뢰기를, “이형묵이 자급(資級)이 강등되었으니 더욱 불쌍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대정현감은 이형묵과 같은 자를 차출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홍주목사의 의망단자를 시행하지 말고 대정현감의 대임(代任)과 함께 해당 조로 하여금 즉시 구전정사(口傳政事)로 차출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이재협(李在協)이 또 아뢰기를, “<상략> 지평 이양재(李亮載)⁸²가 현재 전라도 대정현(大靜縣) 임소에 있으니 <중략> 모두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아뢰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감, 박재연, 이형묵, 이양재.

81) 이형묵(?~?): 제주판관으로 1781년(정조 5) 7월에 도입하고 1783년(정조 7) 2월에 떠났음.

82) 이양재(1731~?): 본관 한산(漢山). 자 양직(養直).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대정현감으로 1781년(정조 5) 7월에 도입하고 1782년(정조 6) 4월에 떠났음.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四月 二十五日 辛卯

- 壬寅四月二十六日辰時, 上御誠正閣. 晝講入侍時, 特進官韓光會, 知事鄭尙淳, 參贊官黃昇源, 侍讀官徐有成, 檢討官沈樂洙, 假注書趙衍德, 記注官金健修·金鳳顯, 宗臣安川君桂, 武臣行副護軍申大謙, 以次進伏訖. …… 上曰, 下直守令邊將入侍事, 分付. 健修, 承命出, 與 …… 大靜縣監朴載淵, …… 偕入進伏. …… 大靜縣監朴載淵進伏. 上曰, 曾經畿邑乎? 載淵曰, 只經長興府使矣. 上曰, 準瓜乎? 載淵曰, 以養厚餽問事, 罪罷矣. 上曰, 今於島邑, 又有如此之事乎? 載淵曰, 前既有以此被罪, 何敢更有此事乎? 命退, …….

❖ 정조 6년(1782) 임인년 4월 25일(신묘)

□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재연(朴載淵)이 하직함

- 임인년 4월 26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주장에 입시할 때 특진관 한광회(韓光會), 지사 정상순(鄭尙淳), 참찬관 황승원(黃昇源), 시독관 서유성(徐有成), 검토관 심낙수(沈樂洙),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기주관 김건수(金健修)·김봉현(金鳳顯), 종신 안천군 이계(李桂), 무신 행부호군 신대겸(申大謙)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하직할 수령과 변장(邊將)을 입시하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김건수가 명을 받들고 나가 대정현감 박재연(朴載淵) 〈중략〉 등과 함께 들어와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대정현감 박재연이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경기 고을을 거쳤는가?”라고 하였다. 박재연이 아뢰기를, “장흥부사(長興府使)만 지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임기는 찼는가?”라고 하였다. 박재연이 아뢰기를, “양후(養厚)에게 선물을 보내어 문안한 일로 죄를 지어 파직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섬 고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박재연이 아뢰기를, “전에 이미 이 일로 죄를 입었으니, 어찌 감히 다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명하여 물러가게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감, 박재연, 하직.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四月 三十日 丙申

- 壬寅四月三十日卯時, 上御誠正閣. 大臣 · 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議政徐命善, 左議政洪樂性, 右議政李福源,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戶曹判書金華鎮, 行吏曹判書李命植, 右參贊鄭尙淳, 知中樞府事鄭好仁, 工曹判書徐有慶, 禮曹判書金魯鎮, 刑曹判書徐有隣, 漢城判尹鄭昌聖, 咸春君李昌運, 行副司直李柱國 · 李敬懋, 禮曹參判徐有寧, 吏曹參判鄭一祥, 大司憲李在協, 校理徐有成, 右副承旨趙鼎鎮, 假注書李顯道, 事變假注書李敬行, 記注官金健修 · 金鳳顯, 以次進伏訖. …… 命善曰, 向因濟州御史朴天衡別單, 令新牧使, 覆啓邑弊矣, 今當稟處矣. 上曰, 以草記爲之, 可也. …….

❖ 정조 6년(1782) 임인년 4월 30일(병신)

- 제주(濟州)의 폐단에 대해 품처(稟處)할 것을 청하는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의 계
- 임인년 4월 30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좌의정 홍낙성(洪樂性), 우의정 이복원(李福源),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鎮), 행이조판서 이명식(李命植), 우참찬 정상순(鄭尙淳), 지중추부사 정호인(鄭好仁), 공조판서 서유경(徐有慶), 예조판서 김노진(金魯鎮), 형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한성판윤 정창성(鄭昌聖), 함춘군 이창운(李昌運),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 이경무(李敬懋), 예조참판 서유녕(徐有寧), 이조참판 정일상(鄭一祥), 대사헌 이재협(李在協), 교리 서유성(徐有成), 우부승지 조정진(趙鼎鎮), 가주서 이현도(李顯道), 사변가주서 이경행(李敬行),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었드렸다. <중략> 서명선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제주어사(濟州御史) 박천형(朴天衡)의 별단(別單)으로 인하여 신임 목사로 하여금 고을의 폐단을 복계(覆啓)하게 하였으니, 지금 품처(稟處)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초기(草記)로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어사, 박천형, 폐단, 품처.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五月 十一日 丁未

- 壬寅五月十一日午時，上御誠正閣。左承旨·同副承旨·輪對官同爲入侍時，行左承旨徐有大，同副承旨李時秀，假注書趙衍德，記注官金健修·金鳳顯，輪對官邊德淳等，以次進伏訖。…… 上曰，輪對官以次進前。…… 奉常主簿姜鳳瑞進伏。上曰，爾居何處乎？鳳瑞曰，居在濟州矣。上曰，有所懷乎？鳳瑞曰，無矣。命退，……。

❖ 정조 6년(1782) 임인년 5월 11일(정미)

- 임금이 제주인(濟州人) 봉상주부 강봉서(姜鳳瑞)에게 소회(所懷)를 물음
- 임인년 5월 11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좌승지·동부승지·윤대관이 함께 입시할 때 행좌승지 서유대(徐有大), 동부승지 이시수(李時秀),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기주관 김건수(金健修)·김봉현(金鳳顯), 윤대관 변덕순(邊德淳) 등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윤대관은 차례로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였다. <중략> 봉상주부 강봉서(姜鳳瑞)가 앞으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어느 곳에 사는가?”라고 하였다. 강봉서가 말하기를, “제주(濟州)에 삽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품고 있는 생각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강봉서가 아뢰기를,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명하여 물러가게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강봉서.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六月 二十八日 丙午[癸巳]

- 李時秀, 以義禁府言啓曰, 罪人李最中, 絶島荦棘, …… 事, 命下矣. 罪人李最中, 全羅道靈巖郡楸子島荦棘, 而卽爲發遣府都事, 押送配所, 與地方官眼同荦棘, …… 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6월 28일(병오[계사])

-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절도(絶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
- 이시수(李時秀)⁸³⁾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이최중(李最中)⁸⁴⁾을 절도(絶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이최중을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하되, 즉시 본부 도사를 파견하여 배소로 압송하고, 지방관과 함께 친극하게 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최중, 추자도, 위리안치.

83) 이시수(?~?): 본관 연안(延安). 자 치가(稚可). 호 급건(及健). 1773년(영조 50) 문과 급제.

84) 이최중(1715~1784): 본관 전주(全州). 자 인부(仁夫). 호 위암(韋菴). 시호 충정(忠正). 1751년(영조 27) 문과 급제. 호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역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六月 三十日 丙申[乙未]

- 兩司合啓, 大司諫申應顯, 司諫朴聖泰, 掌令魚錫齡, 持平李顯模·柳協基, 獻納李夔, 正言崔烜啓曰, 李最中與有白爲族親, 以澤徵爲狎客, 澤徵·有白, 迭投凶疏, 畢露逆節之後, 使最中, 雖無鞠招之援引, 難免一世之指點. 況疏事與知之說, 證左既具, 握手受托之情, 書札見捉, 平日心肚之糾結, 暗地謀議之綢繆, 不啻如泥中之鬪獸. 且以渠所輸款者言之, 問候一款, 最爲逆疏之肯綮, 而澤徵來言之日, 自以爲默無可否云, 此事之關係, 何如? 渠既立朝屢十年, 筵席事例, 豈有不知之理, 而曾無一言辨破, 其心所在, 已不可測. 況其所謂默無可否者, 乃出於死中求生之計, 則其爛漫酬酢, 勸成凶疏之狀, 灼然可知, 無論默與不默, 此爲渠斷案矣. 尤可痛者, 如澤·白卑微之類, 亦何足道哉? 蓋其平生, 甘作鷹犬, 潛售梟獍, 則今番凶疏之後, 先唱和, 豈渠自辨者乎? 必有指使者存, 愆憑者在, 而以今鞠案之現發者言之, 則左澤右白, 頤指氣使者, 最中是已. 渠以休致之身, 別無所求, 而以其姪義翊之廢枳, 陰懷怨懟, 粧出凶逆, 要爲誑惑一世之計, 澤徵所謂三疏勿捧之說, 有白所謂百歲公議之供, 決是最中之所造訛而教誘者也. 受嗾之澤·白, 已服不道之罪, 則指使之最中, 焉追同情之律? 凶逆窩窟, 未盡打破, 海島發配, 大拂輿情. 請楸子島荐棘罪人李最中, 亟令王府, 拿致設鞠, 期於得情, 夫正王法. 答曰, 不允. …….

❖ 정조 6년(1782) 임인년 6월 30일(병신[을미])

-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국청을 설치해 신문할 것을 청하는 양사(兩司)의 합계
- 양사(兩司)에서 합계(合啓)하였다. 대사간 신응현(申應顯), 사간 박성태(朴聖泰), 장령 어석령(魚錫齡), 지평 이현모(李顯模)·유협기(柳協基), 헌납 이기(李夔), 정언 최환(崔烜)이 아뢰기를, “이최중(李最中)은 이유백(李有白)⁸⁵⁾과 족친(族親)으로 이택징(李澤徵)⁸⁶⁾을 압객(狎客)으로 삼았으니, 이택징과 이유백이 번갈아 흉악한 상소를 올렸고, 역절(逆節)이 죄다 드러난 뒤에는 설령 이최중이 비록 국초(鞠招)의 원인(援引)이 없었다고 해도 일세(一世)의 지점(指點)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소사(疏事)를 참여하여 알았다는 이야기에 대한 증좌(證左)가 이미

85) 이유백(1722~?): 본관 광주(廣州). 자 경서(庚瑞).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86) 이택징(1715~1782): 본관 간성(杆城). 자 경민(景民). 호 자호재(自好齋). 1738년(영조 14) 문과 급제. 북청부사, 정언, 장령 역임. 저서 《자호재집》.

갖추어졌고 손을 잡고 부탁을 받은 정상이 서찰에서 현작(現捉)되었습니다. 평소에 마음으로 결탁하고 비밀리에 치밀하게 모의하였으니, 진흙 속에서 싸우는 짐승같은 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의 공초(供招)를 가지고 말하여 보더라도 문후(問候)에 관한 한 조항이 가장 역소(逆疏)의 긍정(肯綮)이 되는 것인데, 이택징이 와서 말하던 날 스스로 묵묵히 있으면서 가부(可否)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의 관계됨이 어떠합니까? 그가 이미 조정에 벼슬한 지가 수십년이니, 연석(筵席)의 사례(事例)를 어찌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소재를 이미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가 소위 묵묵히 있으면서 가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죽음 속에서 살기를 구하는 계책에서 나온 것인즉 난만히 수작(酬酌)하면서 흉소(凶疏)를 권하여 완성시킨 정상을 환히 알 수 있습니다. 침묵하였든 침묵하지 않았던지간에 이것이 그의 단안(斷案)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통탄할 만한 것은 이택징과 이유백과 같이 미천한 부류에 대해 또한 어찌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대개 그가 평소에 기꺼이 사냥개가 되어 몰래 올빼미같이 흉악한 짓을 행하였으니, 이번에 흉악한 상소를 올린 뒤에 먼저 창화(唱和)한 것이 어찌 그가 자변(自辨)한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지시한 자가 있고, 종용한 자도 있겠지만 지금 국안(鞫案)에서 드러난 자로 말하자면 왼쪽의 이택징과 오른쪽의 이유백을 마음대로 부린 자가 이최중인 것입니다. 그가 치사(致仕)한 몸으로 달리 요구할 것이 없는데, 그의 조카 이의익(李義翊)의 벼슬길을 막은 것 때문에 몰래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흉역(凶逆)을 꾸며내어 온 세상을 속이려는 계책으로 삼고자 하였으니, 이택징의 이른바 삼소물봉지설(三疏勿捧之說)과 이유백의 이른바 백세공의지공(百歲公議之供)은 분명 이것이 이최중이 거짓말을 지어내어 피어낸 것입니다. 부추김을 받은 이택징과 이유백이 이미 부도(不道)한 죄를 자복하였으니, 지사한 이최중을 어찌 동정(同情)한 형률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흉악한 역적의 와굴(窩窟)을 아직 다 타파(打破)하지 않았는데, 해도(海島)에 발배(發配)한 것은 크게 여정(輿情)을 거스른 것입니다.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⁸⁷⁾ <하략>.

△ 주제어: 이최중, 추자도, 위리안치, 국청.

87) 이상은 《정조실록》 권13, 정조 6년 6월 3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七月 四日 己亥

○ 壬寅七月初四日辰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判府事鄭存謙，領議政徐命善，判府事李徽之，左議政洪樂性，右議政李福源，知中樞府事具善復，行戶曹判書金華鎮，行吏曹判書李命植，右參贊鄭尙淳，兵曹判書金煜，工曹判書徐有慶，刑曹判書李性源，禮曹判書徐有隣，漢城判尹鄭昌聖，咸春君李昌運，開城留守鄭昌順，行訓練院都正李柱國，兵曹參判徐有寧，吏曹參判鄭一祥，漢城左尹蔡弘履，禮曹參判金文淳，大司憲金履素，大司諫申應顯，司諫朴聖泰，掌令魚錫齡，持平柳協基·李顯模，獻納李夔，副校理徐有成，正言崔烜，副修撰朴天行·沈樂洙，左副承旨金字鎮，假注書趙衍德，事變假注書馬思仁，記注官金鳳顯，別兼春秋金載瓚，以次進伏訖。…… 憲府金履素，諫院申應顯等啓曰，噫嘻，痛矣。亂臣賊子，從古何限，豈有若逆澤·逆白窮凶極惡？載籍以來，所未有所聞者，而若論其窩窟根柢，則最中是已。噫，釀成前茅之逆澤，執手申托者最中也，圖出後殿之凶白，合謀行貸者最中也。此疏獨知之說，賊澤之供，如執左契，謹悉書疏之札，夢獐之招，不啻分明，平日腸肚之糾結，暗地排布之綢繆，殆同泥中之鬪獸，而雖以渠鞬庭自服者言之，問候一款，最爲逆疏之肯綮，而酬酢爛熳，不敢掩諱。此又是渠主張之斷案，而乃於帳殿親問之時，狠毒悖慢之說，尤極憤惋。噫，彼最中，位至列卿，身且休退，國家何負於渠，而非但包藏之心，乘機闖發，以其姪義翊之廢棄，陰懷怨懟之志，潛售窮凶之計，左翊右直，前澤後白，頤指氣使，換面迭投，古今天下，寧有是耶？今此最中，卽是逆澤·逆白之窩窟根柢，而窩窟之中，自有窩窟，根柢之中，又有根柢，則亟加盤詰，趁今打破，惟在於最中之嚴鞫得情，而一經推問，遽下島配之命，王章未伸，輿憤益激。請楸子島荏棘罪人最中，更令王府，拿致設鞫，期於得情，夫正王法。上曰，不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7월 4일(기해)

□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국청을 설치해 신문할 것을 청하는 양사(兩司)의 합계

○ 임인년 7월 4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판부사 정존겸(鄭存謙),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판부사 이휘지(李徽之), 좌의정 홍낙성(洪樂性), 우의정 이복원(李福源), 지증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이조판서 이명식(李命植), 우참찬 정상순(鄭尙淳), 병조판서 김익(金煜), 공조판서 서유경(徐有慶), 형조판서 이성원

(李性源), 예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한성판윤 정창성(鄭昌聖), 함춘군 이창운(李昌運), 개성유수 정창순(鄭昌順), 행훈련원도정 이주국(李柱國), 병조참판 서유녕(徐有寧), 이조참판 정일상(鄭一祥), 한성좌윤 채홍리(蔡弘履), 예조참판 김문순(金文淳), 대사헌 김이소(金履素), 대사간 신응현(申應顯), 사간 박성태(朴聖泰), 장령 어석령(魚錫齡), 지평 유협기(柳協基) · 이현모(李顯模), 헌납 이기(李夔), 부교리 서유성(徐有成), 정언 최훤(崔烜), 부수찬 박천행(朴天行) · 심낙수(沈樂洙), 좌부승지 김우진(金字鎭),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사변가주서 마사인(馬思仁),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별검춘추 김재찬(金載瓚)이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사헌부의 김이소(金履素)⁸⁸⁾와 사간원의 신응현(申應顯) 등이 아뢰기를, “아, 애통합니다.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찌 역적 이택징과 역적 이유백 같이 흉악하기 그지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유사 이래로 들어보지도 못한 바인데, 그 소굴의 뿌리를 논하자면 이최중(李最中)입니다. 아, 앞잡이가 되는 역적을 빚어놓아 손을 잡고 거둬 부탁한 자가 이최중이고, 후전(後殿)의 흉악한 이유백(李有白)을 끌어내어 함께 모의하여 뇌물을 준 자가 이최중입니다. 이 상소를 홀로 알았다는 말은 역적 이택징의 공초에서 부신(符信)의 좌계(左契)⁸⁹⁾를 잡은 것처럼 확실하고, 서소(書疏)를 삼가 알았다는 서찰은 이몽린(李夢麟)의 공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평소에 마음으로 결탁하고 모르는 곳에서 계획한 치밀함은 거의 진흙 속에서 싸우는 짐승과 같습니다. 비록 그가 국정(鞫庭)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하자면, 문후(問候)하는 한 조항이 가장 역소(逆疏)의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인데, 수작이 난만(爛熳)하여 감히 가려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가 주장하는 단안(斷案)인데 장전(帳殿)에서 친문(親問)할 때 너무나도 독하고 어그러진 말은 더더욱 분통이 터집니다. 아, 저 이최중은 지위가 경(卿)의 반열에 올랐고 몸 또한 휴퇴(休退)하였는데, 국가가 그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오직 품었던 마음을 기회를 틈타 일어나 그 조카 이의익을 폐기한 것 때문에 몰래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비밀리에 지극히 흉악한 계책을 세우고, 왼쪽에는 익(翊) 오른쪽에는 직(直)과 앞에는 이택징과 뒤에는 이유백을 마음대로 부려 얼굴을 바꾸어 번갈아 상소를 올리게 하였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최중은 곧 역적 이택징과 역적 이유백의

88) 김이소(1735~1798): 본관 안동(安東). 자 백안(伯安). 호 용암(庸庵). 시호 익헌(翼憲). 1764년(영조 40) 문과 급제. 이조참판, 예조판서, 좌의정 역임.

89) 좌계(左契): 둘로 나눈 부신(符信) 가운데 왼쪽의 것으로 좌권(左券)과 같은 뜻인데, 여기서는 명확한 증거를 뜻함.

소굴의 뿌리입니다. 소굴 가운데 절로 소굴이 있고 뿌리 가운데 또한 뿌리가 있으니, 속히 캐물어 지금 타파하는 것은 오직 이최중을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캐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추문(推問)하고 갑자기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내렸으니, 왕법이 펴지지 못해서 여론이 더욱 격분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추자도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기어이 실정을 캐어내어 왕법(王法)을 흔쾌히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운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최중, 추자도, 국청, 이택징, 이유백.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七月 六日 辛丑

- 李亨元, 以刑曹言啓曰, 逆賊有白應坐諸人, 移文京兆, 詳考帳籍, 捧甘各部, 使之搜訪, 又令本道, 一一查出以報之意, 發關分付矣. 各處回移, 今纔齊到. 逆賊有白妻末喜, 子婦眞任, 同生弟有達, 姪子仁汲·吉孫·成孫, 捉囚於竹山府, 子仁叔上京, 同生兄有喆拿囚義禁府, 庶母小禮, 庶弟有源, 住接於西部里門洞, 而不入籍庶弟時福, 姪子仁涵, 下往文川地, 尙未上來. 小禮今年爲七十三, 依法典免坐, 有喆令該府舉行, 有源慶尙道巨濟府絕島散配, 自臣曹卽爲押送, 末喜全羅道濟州牧大靜縣, 眞任南海縣, 有達康津縣古今島, 仁汲靈巖郡楸子島, 吉孫珍島郡金甲島, 成孫黃海道豐川府椒島, 竝定配所, 令道臣卽爲押送事, 發關分付, 仁淑自臣曹多發刑吏, 一邊移文捕廳, 發甘五部, 今方譏捕, 時福·仁涵, 具容疤, 發關於沿路三道, 竝待其捉來, 定配所發配, 何如?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7월 6일(신축)

- 역적 이유백(李有白)에 연좌해야 할 사람들을 잡아다 산배(散配)하겠다는 형조의 초기
- 이형원(李亨元)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역적 이유백(李有白)에 연좌해야 할 사람들을 한성부에 공문을 보내 장적(帳籍)을 상세히 살펴 각 부(部)에 감결(甘結)을 보내 수색하게 하고, 또 본도(本道)로 하여금 일일이 조사해 보고하도록 관문(關文)을 보내 분부하였습니 다. 각처의 회답 공문이 지금 막 일제히 도착하였습니다. 역적 이유백(李有白)의 처 말희(末喜), 며느리 진임(眞任), 아우 유달(有達), 조카 인급(仁汲)·길손(吉孫)·성손(成孫)은 죽산부(竹山府)에 가두었고, 아들 인숙(仁叔)은 서울로 올라오고 있고, 형 유철(有喆)은 의금부에 잡아 가두었으며, 서모 소례(小禮)와 서제(庶弟) 유원(有源)은 서부 문리동에 거주하고 있고, 호적에 들이지 않은 서제 시복(時福)과 조카 인함(仁涵)은 문천(文川)에 내려가서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소례는 금년 나이 73세로 법전에 따라 연좌에서 제외하고, 유철은 해부(該府)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며, 유원은 경상도 거제부 절도에 정배하여 본조에서 즉시 압송하겠습니다. 말희는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 진임은 남해현에, 유달은 강진현 고금도에, 인급은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길손은 진도군 압도에, 성손은 황해도 풍천부 속도에 모두 배소를 정하

여 관찰사로 하여금 즉시 압송하도록 관문(關文)을 띄워 분부하되, 인숙은 본조에서 형리(刑吏)를 많이 보내고, 한편으로는 포도청에 공문을 보내고, 5부(五部)에 감결(甘結)을 보내어 지금 기찰하여 체포하고, 시복과 인함은 용파(容庖)⁹⁰⁾를 갖추어 연로(沿路)의 세 도(道)에 관문을 보내어 모두 잡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배소를 정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유백, 연좌.

90) 용파(容庖): 어떤 인물의 용모와 신체상의 특징을 적은 기록.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七月 十日 乙亥[乙巳]

- 李亨元,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歲貢馬二百匹內, 一匹船中故失, 二匹到海南故失, 一匹到衿川病留, 實納馬一百九十六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7월 10일(을해[을사])

- 제주(濟州)에서 세공(歲貢)한 말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이형원(李亨元)이 사복시 관원으로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 세공마(先運歲貢馬) 200필 내에서 1필은 배 안에서 죽고, 2필은 해남(海南)에 도착하여 죽고, 1필은 금천(衿川)에 이르러 병들어 남아서 실제로 바치는 말 196필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세공마, 별단.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七月 十四日 己酉

- (李亨元) 又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秀璜, 辛丑·壬寅兩年條, 封進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7월 14일(기유)

- 제주(濟州) 산마감목관 김수항(金秀璜)이 진상한 말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이형원(李亨元)이 또 사복시 관원으로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산마감목관 김수항(金秀璜)이 신축년과 임인년 두 해조 봉진마(封進馬) 2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면서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立養)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봉진마, 산마감목관, 김수항.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七月 十四日 己酉

- (李亨元) 又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 各樣進上馬八十八匹內, 一匹船中故失, 實納馬八十七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7월 10일(을사)

-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후운(後運) 각종 진상마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이형원(李亨元)이 또 사복시 관원으로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後運) 각종 진상마 88필 내에 1필은 배 안에서 죽어서 실제로 바치는 말 87필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봉진마, 산마감목관, 김수항.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八月 十三日 丁丑

- 李時秀, 以司僕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大靜前縣監李亮載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8월 13일(정축)

-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양재(李亮載)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이시수(李時秀)가 사복시 관원으로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양재(李亮載)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면서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立養)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이양재, 체임진상마.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八月 十四日 戊寅

- 傳于李在學曰, 諸囚既皆決處, 京外何異? …… 趙得豐·趙命稷, 論渠等罪犯, 萬戮猶輕, 當初捕將不得摘發, 反爲都憲風聞所執捉, 此等捕將無異偶人. 雖不追論罪罰, 若今此等捕將盤問, 難保其得情, 況造謀之夢麟減死, 則此兩漢宜無異同? 亦令移送刑曹, 濟州絕島中, 限己身爲奴事, 分付. …….

❖ 정조 6년(1782) 임인년 8월 14일(무인)

- 조득풍(趙得豐)과 조명직(趙命稷)을 제주(濟州)에 정배(定配)하고 종으로 삼으라는 등의 일에 관해 분부하라는 전교
- 이재학(李在學)에게 전교하기를, “죄수들을 모두 처결하였으니, 경외(京外)가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중략〉 조득풍(趙得豐)과 조명직(趙命稷)은 그들이 범한 죄를 논하자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데, 당초 포도대장이 적발하지 못하고 도리어 대사헌의 품문으로 잡혔으니, 이러한 포도대장은 우인(偶人)과 다를 것이 없다. 비록 뒤미처 논죄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와 같은 포도대장의 조사가 실정을 알아낼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다. 더구나 음모를 꾸민 이몽린(李夢麟)을 죽이지 않고 감형하여 주었으니 이 두 놈은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조로 이송하여 제주(濟州)의 절도(絶島)에서 죽을 때까지 노비로 삼도록 분부하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조득풍, 조명직, 제주, 노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八月 十五日 己卯

- 李時秀, 以刑曹言啓曰, 罪人申光謙絶島定配, …… 趙得豐 · 趙命稷濟州絶島中限己身爲奴事, 命下矣. …… 罪人趙得豐, 全羅道濟州牧大靜縣, 趙命稷, 旌義縣, 竝限己身爲奴定配, 使之押送于各其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8월 15일(기묘)

- 조득풍(趙得豐)과 신명직(趙命稷) 등을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형조의 초기
- 이시수(李時秀)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심광겸(申光謙)을 절도에 정배하고, 〈중략〉 조득풍(趙得豐) · 신명직(趙命稷)을 제주(濟州) 절도에 죽을 때까지 노비로 삼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중략〉 죄인 조득풍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 조명직을 정의현(旌義縣)에 모두 죽을 때까지 노비로 삼아서 정배하고, 각각 그 배소로 압송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조득풍, 신명직, 대정현, 정의현, 압송.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八月 二十三日 丁亥

- 傳于洪履健曰, 楸島以彈丸之地, 偏[編]配數多, 原居之民, 貽弊不些, 奴高老味·女松伊·李命銓·安道煥·奴戴旭, 與本島相近他島中, 罪人名數稍少處, 推移分配, 奴福伊·安處京·金世重·金應彦, 本郡島邊陸地散配, 崔三金移配濟州, 奴丕伊定配十餘年, 罪亦不至大段, 放送事, 令該曹卽各分付道臣, 配所則令道臣觀其罪犯, 且考各島地形, 便宜散配後狀聞.

❖ 정조 6년(1782) 임인년 8월 23일(정해)

-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최삼금(崔三金) 등을 제주(濟州) 등 다른 곳으로 배소를 옮기라는 전교
- 홍이건(洪履健)⁹¹⁾에게 전교하기를, “추자도는 탄환(彈丸) 같이 작은 곳인데, 유배된 자가 많아서 원래 거주하는 백성에게 끼치는 폐단이 적지 않다. 노(奴) 고노미(高老味)와 딸 송이(松伊)·이명전(李命銓)·안도환(安道煥)·노 대욱(戴旭)을 본도(本島)와 가까운 다른 섬 가운데 죄인의 수가 조금 적은 곳으로 옮겨 분배하라. 노 복이(福伊)·안처경(安處京)·김세중(金世重)·김응언(金應彦)은 본군(本郡)의 섬 주변 육지에 나누어 정배하라. 최삼금(崔三金)은 제주로 배소를 옮기고, 노 돌이(丕伊)는 정배한 지 10년이 되었고 죄가 또한 대단하지 않으니 풀어주도록 해조(該曹)로 하여금 즉시 관찰사에게 분부하도록 하라. 배소는 관찰사로 하여금 그 범죄를 보고 또 각기 섬의 지형을 살펴 편의대로 산배(散配)한 뒤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유배, 산배, 최삼금.

91) 홍이건(1745~?): 본관 남양(南陽). 자 자순(子順).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八月 二十四日 戊子

- 以濟州防禦使啓本山牧上場毀撤便否，指一論列，未免遲滯，惶恐待罪事，傳于徐有防曰，勿待罪事，回諭.

❖ 정조 6년(1782) 임인년 8월 24일(무자)

- 산장(山場) 목장의 상장(上場) 훼손과 관련하여 올린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의 장계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의 계본(啓本)에 산장(山場) 목장의 상장(上場)을 훼손하는 것이 편한지의 여부에 대해 한 기지를 지적하여 논열(論列)하는 것이 지체를 면하지 못했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한다고 한 일과 관련하여 서유방(徐有防)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산장, 상장, 훼손, 대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九月 二十七日 辛酉

- 刑曹啓曰, 濟州居閑良金光潤, 擊錙原情云云, 向前金光潤爲先放送是白在果 所供如此, 上裁, 何如? 判付啓, 雖未知訟理曲直, 海外之人, 上京呼冤, 必有切急之情而然, 分付該道臣, 嚴飭牧使, 使之從公決折後, 狀聞, 無或遲滯之意, 措辭行會爲良如教.

❖ 정조 6년(1782) 임인년 9월 27일(신유)

- 제주(濟州)에 사는 한량 김광윤(金光潤)이 격쟁(擊錙)한 것에 대해 제주목사에게 공정하게 판결한 뒤에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는 전교
- 형조의 계목에, “제주(濟州)에 사는 한량 김광윤(金光潤)이 격쟁(擊錙)하여 이러니 저리니 사연을 하소연하였습니다. 전에 김광윤을 풀어 주었거니와 공초한 바가 이와 같으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비록 송사의 심리 곡직(曲直)을 알지 못하겠지만 바다 밖의 사람이 상경하여 원통함을 호소함에는 반드시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해당 관찰사에게 분부하여 제주목사에게 엄히 신칙하여 공정하게 판결한 뒤에 장계로 보고하게 하여 혹시라도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광윤, 격쟁.

❖ 乾隆 四十七年 壬寅 九月 二十九日 癸亥

○ 壬寅九月二十九日辰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徐命善，左議政李福源，右議政金煜，行戶曹判書金華鎮，行兵曹判書李命植，禮曹判書鄭尙淳，刑曹判書鄭好仁，知中樞府事徐有慶，吏曹判書李性源，漢城判尹徐有隣，副司直李柱國·李敬懋，大司憲沈頤之，應教朴天行，右副承旨李時秀，假注書趙衍德，事變假注書馬思人[馬思仁]，記注官金健修·金鳳顯，以次進伏訖。…… 命善曰，此東萊府使李養鼎狀啓也。以爲濟州等邑漂民玄世坤等六名，到館所，更爲問情，則同騎一船者，二十七名內，淹沒者十名，得生者十七名。而罪人五名之俱入淹沒，誠極怪異，下陸後十名之不知去處，尤涉駭惑。反覆嚴覈，終不輸款，待用刑，加刑取服次，仍囚府獄。差倭齎來書契，姑令退却，從速搜還之意，嚴飭任譯，責諭差倭處，使之通報島中，而領來差倭，接待供給與否，請令廟堂，稟旨分付矣。大洋漂船之或溺或否，自是常有之事，則罪人五名之同入淹沒中，未必爲駭惑之端。登陸十名之不知去處，雖涉可怪，而各自圖生之際，無暇相尋，事勢或然，其所納供，似無隱情，而萬死一生，歸到本國，滯囚冷獄，一向盤問，誠甚可矜。玄世坤等六名，送還于原籍官，書契如或違格，則責諭退却，固有前例。而今以漂民之不爲搜還，竝與書契而退却，以至護送吾民之差倭，不爲接待，亦太埋沒。書契則許令順捧，差倭則依例接待事，分付東萊府使處，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上曰，今此漂民，萬死一生，僅得還歸，而卽以無情之事，年囚冷獄，亦屬可矜矣。命善曰，萊伯之若是盤詰，誠甚無怪，而至於書契之退却，太涉過矣。上曰，如是爭執之際，恐致生釁之端矣。命善曰，此則誠無爲慮矣。命善曰，此慶尙監司趙時俊狀啓也。因東萊府使李養鼎臚報，濟州漂人登陸後，十名之不知去處，跡涉駭惑，書契對馬島，跟探其實，恐不可已。請令廟堂，稟旨分付矣。海中淹沒者，雖難推尋，而至於登陸之十名，則毋論存沒，宜無不知去處之理，更加跟探，隨得送還之意，書契回答中，善爲措辭以送事，分付該曹，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 정조 6년(1782) 임인년 9월 29일(계해)

- ☐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입시하여 표류되었던 제주인(濟州人) 현세곤 등 6명을 원적관(原籍官)에게 송환하는 문제와 표류인을 데려온 차왜(差倭)를 대접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임인년 9월 29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

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좌의정 이복원(李福源), 우의정 김익(金燧), 행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병조판서 이명식(李命植), 예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형조판서 정호인(鄭好仁), 지중추부사 서유경(徐有慶), 이조판서 이성원(李性源), 한성판윤 서유린(徐有隣), 부사직 이주국(李柱國)·이경무(李敬懋), 대사헌 심이지(沈頤之), 응교 박천행(朴天行), 우부승지 이시수(李時秀),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사변가주서 마사인(馬思仁), 기주관 김건수(金健修)·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명선이 아뢰기를, “이는 동래부사 이양정(李養鼎)의 장계입니다. 그 내용에 ‘제주(濟州) 등 읍의 표류되었던 백성 현세곤(玄世坤) 등 6명이 관소(館所)에 당도하였기에 다시 실정을 물었더니, 한 배에 탔던 사람 27명 중에 빠져 죽은 사람이 10명이고 살아난 사람이 17명인데 죄인 5명이 모두 빠져죽었다고 하니, 참으로 괴이합니다. 육지에 내린 뒤에 10명의 거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 더욱 놀랍고 의혹스럽습니다. 반복해서 엄하게 캐물어 보아도 끝내 실토를 하지 않아 형장(刑杖)을 가하여 승복(承服)을 받으려고 우선 부옥(府獄)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차왜(差倭)⁹²⁾가 가지고 온 서계(書契)는 우선 물리치고 서둘러 조사해 돌려 보내라고 임역(任譯)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차왜에게 효유해서 섬에 통보하게 하였습니다만 데려온 차왜를 접대하고 공급하는 문제를 묘당에서 품지(稟旨)하여 분부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큰 바다에 표류하던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죄인 5명이 함께 물에 빠져 죽은 것은 의혹의 단서가 꼭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육지로 올라온 10명의 행방을 모르는 것은 괴이한 일이요, 각각 살기를 도모할 즈음에 서로 찾지 못하는 것은 사세로 보아 혹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공초한 내용에도 사실을 은폐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사일생하여 본국에 돌아왔는데 추운 옥에 가두어 두고서 계속 따져 묻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가엾은 일입니다. 현세곤 등 6명을 원적관(原籍官)에게 송환하고, 서계가 혹 격식에 어긋날 경우에 효유하고 물리치는 것은 실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표류했던 백성을 수사하여 송환하지 않아 서계와 함께 거부하였으나 우리 백성을 호송한 차왜까지 접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매몰차다 할 것입니다. 서계는 순순히 받아들이게 하고 차왜는 예에 의해 접대하라고 동래부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표류되었던 백성은 구사일

92) 차왜(差倭): 관백(關伯)이나 관백의 명을 받은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특별한 임무의 수행을 위해 파견한 왜인(倭人).

생으로 겨우 살아서 돌아왔는데, 실정이 없는 일을 가지고 차가운 옥에 가두었으니 또한 불쌍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동래부사가 이처럼 자세히 캐묻는 것은 참으로 괴이할 것이 없지만 서계를 물리치는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쟁집(爭執)하고 있을 때 틈이 생길 단서가 될까 걱정이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이것은 참으로 염려할 것이 못됩니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이는 경상감사 조시준(趙時俊)의 장계입니다. ‘동래부사 이양정의 등보(謄報)로 인하여 제주의 표류인이 육지로 올라온 뒤로 10명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마도(對馬島)로 서계(書契)를 보내서 그 실상을 조사하게 하는 일을 아무래도 그만 둘 수 없을 듯하니 묘당에서 품지해서 분부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자를 비록 추심(推尋)하기 어렵다고하나 육지로 올라온 10명은 생존 여부를 막론하고 간 곳을 모를 리가 없을 터이니 다시 탐문을 해서 찾는 대로 곧 송환(送還)하라고 서계(書契)의 회답 중에 말을 잘 꾸며서 보내라고 해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⁹³⁾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현세곤, 표류, 차왜, 대마도, 서계.

93)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6년 9월 29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月 七日 庚午

- 刑曹啓目, 楸子島卜成等移配一款, 竝姑置之, 何如? 判付啓, 徒流案謄置冊子中, 該島果有福伊之名, 而以乙未二月刑曹來懸錄罪名, 則橫叛上典, 拔劍肆惡是如乎? 曹上徒流案更良參考, 無論福伊或卜成, 到配年月, 罪名措語, 與此相準, 則移謄時, 必是漏書福字下一字之致, 原傳教中添書, 依初下教, 移配之意, 分付. 舉行形止, 草記爲良如教.

❖ 정조 6년(1782) 임인년 10월 7일(경오)

- 추자도(楸子島)에 유배된 복성(卜成)이 도류안(徒流案)에 기록된 복이(福伊)의 죄명과 도배된 날짜가 비슷하다면 이배하고 그 전말을 초기로 보고하라는 전교
- 형조의 계목(啓目)에, “추자도(楸子島)의 복성(卜成) 등을 이배하는 한 일은 모두 우선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도류안(徒流案)에 베껴 옮겨 써둔 책자 중에 해당 섬에 과연 복이(福伊)라는 이름이 있다. 을미년 2월에 형조가 와서 죄명을 기록하였는데, 상전을 제멋대로 배반하고 칼을 뽑아 악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형조가 올린 도류안을 다시 참고하여 복이 혹은 복성을 막론하고 배소에 도착한 연월과 죄명이 이것과 서로 비슷하다면 옮겨 베낄 때 필시 복(福)자 아래 한 글자를 누락하여 썼을 것이니, 원래의 전교 가운데 글자를 더 써넣어 처음 하교한 대로 이배하도록 분부하고, 거행한 전말을 초기(草記)로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복성, 복이, 도류안, 이배.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月 八日 辛未

○ 李世奭, 以刑曹言啓曰, 因全羅監司朴祐源啓, 本曹回啓判付內, 徒流案謄置冊子中, 該島果有福伊之名, 而以乙未二月刑曹來懸錄罪名, 則橫叛上典, 拔劍肆惡是如乎, 曹上徒流案, 更良參考, 無論福伊或卜成, 到配年月罪名措語, 與此相準, 則移謄時, 必是漏書福字下一字之致, 原傳教中, 依初下教移配之意, 分付. 舉行形止, 草記事判下矣. 依判下, 更考徒流案, 則奴卜成, 以橫叛上典, 拔劍肆惡罪, 乙未二月, 自本曹仍本役, 絕島定配於楸子島, 而當初徒流案謄書時, 卜成之成字, 必以伊字誤書之致, 其到配年月罪名措語, 既如是相合, 罪人奴卜成, 一體移配於本郡陸地事, 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10월 8일(신미)

□ 추자도(楸子島)에 유배된 복성(卜成)을 육지로 이배하겠다는 형조의 초기

○ 이세석(李世奭)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감사 박우원(朴祐源)의 보고로 인하여 본조(本曹)의 회계(回啓)를 판부(判付)한 내용 중에 도류안(徒流案)에 베껴 옮겨 써둔 책자 중에 해당 섬에 과연 복이(福伊)라는 이름이 있다. 을미년 2월에 형조가 와서 죄명을 기록하였는데, 상전을 제멋대로 배반하고 칼을 뽑아 악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형조가 올린 도류안을 다시 참고하여 복이 혹은 복성을 막론하고 배소에 도착한 연월과 죄명이 이것과 서로 비슷하다면 옮겨 베낄 때 필시 복(福)자 아래 한 글자를 누락하여 썼을 것이니, 원래의 전교 가운데 글자를 더 써넣어 처음 하교한 대로 이배하도록 분부하고, 거행한 전말을 초기(草記)로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판하(判下)한 대로 다시 도류안을 살펴보니, 노 복성(卜成)이 제멋대로 상전을 배반하고 칼을 뽑아 악행을 저질러 을미년 2월에 본조에서 본역(本役)에 계속 종사하도록 하여 추자도(楸子島)에 절도정배(絶島定配)하였습니다. 당초 도류안을 옮겨 쓸 때 복성의 성(成)자를 필시 이(伊)자로 잘못 쓴 소치입니다. 그가 배소에 도착한 연월과 죄명이 이와 같이 서로 부합하니, 노 복성을 일체 본군(本郡) 육지로 이배하도록 해당 도(道)의 관찰사에게 분부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복성, 이배.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月 二十四日 丁亥

- (李時秀)又以刑曹言啓曰, 捕廳在囚罪人中奴齡互, 減死遠地定配, 韓尙得, 最遠地絶島定配, 待用刑, 令該道監司, 嚴刑三次, …… 命下矣. 依傳教, …… 韓尙得, 全羅道濟州牧定配, 而待用刑時, 令該道臣, 各別嚴刑三次. …… 依法決杖後, 竝卽狀聞事, 發關分付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10월 24일(정해)

□ 죄인 한상득(韓尙得) 등의 처리에 관한 형조의 초기

- 이시수(李時秀)가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포도청에 갇혀있는 죄인 중 노(奴) 엇돌(齡互)은 사형을 감하여 원지(遠地)에 정배(定配)하고, 한상득(韓尙得)은 가장 먼 절도(絶島)에 정배하되 용형(用刑)할 때를 기다려 해당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세 차례 엄히 형추(刑推)하도록 <중략> 명을 내렸습니다. 전교대로 <중략> 한상득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하고, 용형할 때를 기다려 해당 관찰사로 하여금 각별히 세 차례 엄히 형벌하게 하였습니다. <중략> 법대로 장(杖)을 친 후에 모두 즉시 장계로 보고하도록 관문(關文)을 보내어 분부할 뜻을 감히 아뢴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한상득, 제주목, 정배.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月 二十五日 戊子

○ 壬寅十月二十五日辰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領府事·監印堂上·禮曹參議同爲入侍時，領府事金尙喆，領議政徐命善，左議政李福源，右議政金煜，兼刑曹判書具善復，行吏曹判書金華鎮，行禮曹判書鄭尙淳，戶曹判書李性源，知中樞府事徐有慶，行副司直鄭民始，兵曹判書徐有隣，行副司直鄭昌聖·李柱國，大司諫李秉模，掌令權職，校理李喆模，禮曹參議柳義養，同副承旨李時秀，假注書趙衍德，事變假注書崔雲翰，記注官曹喜有·金鳳顯，以次進伏訖。……命善曰，此濟州牧使李文燦狀啓也。山場橫築毀撤便否，今始持一論斷，而以爲山屯馬四百餘匹之故失，皆在山場橫築之後，則橫築之爲害，明白無疑。且廣詢民情，亦曰苟利於馬，則豈可以三年一次之役當毀而不毀云。上場鹿山場橫築毀撤，恐合事宜爲辭矣。向來繡衣之歸奏，既甚的確，而或慮民情之違拂，更命守臣之論列，至再至三，不憚煩複者，蓋出審慎之意也。今守臣之條陳，極其纖悉，揆以牧政，則關係如此，參以民情，則公論如彼，守臣既已請毀之後，更不必持疑，依狀請許施，而今已冬深，待明春舉行事，分付。大抵驅馬，島民之痼弊也。啓中所謂役民時歇與不歇，專在於伊時官長恤與不恤云者，果是切當之言。此後驅點之際，調發民丁，務從簡便，或令輪回，另加撫恤，永釐宿弊，毋致偏苦之意，一體申飭，何如？上曰，領府事·左·右相之意，何如？領府事金尙喆曰，當初橫築之舉，雖或出於爲民除弊之意，耽羅所重，馬政爲最，苟有害於馬政，則依狀請許施，恐似得宜矣。左議政李福源曰，橫築初非朝令，而御史歸奏，本牧狀聞，皆以爲當罷，則罷之似宜矣。右議政金煜曰，橫築之害，至於此甚，則毀築雖或有弊民之端，似不可不毀之矣。上曰，將臣之意，何如？訓練大將具善復曰，橫築事，臣前已陳白者，而山馬不能放逸其性，石角無水草，亦不能任意飲吃，橫築未滿數年，故失甚多。以此推之，其害已判，驅馬之時，雖或有弊，此不過一時之役，養馬之政，有國所重，撤築非難，許令毀之，誠得宜矣。御營大將李柱國曰，向者此事下詢時，有所仰達矣。耽羅橫築前，有山馬名色，而近則無之，此亦橫築之故也。馬政亦國之大政，些少之弊，有不暇顧，撤罷恐合似好矣。上曰，依爲之。【出舉條】上曰，當初築墻，既爲民弊，而今反毀之，則馬政雖曰有益，或恐民情之不便矣。命善曰，聖教誠然，而民情便否，不甚懸殊矣。命善曰，京兆方有舉行事，判尹有關，代政官牌招開政，卽爲差出，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

❖ 정조 6년(1782) 임인년 10월 25일(무자)

□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등이 입시하여 제주목(濟州牧) 녹산장(鹿山場)의 횡축(橫築)을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임인년 10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고 영부사·감인당상·예조참의가 함께 입시할 때, 영부사 김상철(金尙喆),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좌의정 이복원(李福源), 우의정 김익(金燧), 겸형조판서 구선복(具善復), 행이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예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호조판서 이성원(李性源), 지중추부사 서유경(徐有慶), 행부사직 정민시(鄭民始), 병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행부사직 정창성(鄭昌聖)·이주국(李柱國), 대사간 이병모(李秉模), 장령 권엄(權嚴), 교리 이철모(李喆模), 예조참의 유의양(柳義養), 동부승지 이시수(李時秀), 가주서 조연덕(趙衍德), 사변가주서 최운한(崔雲翰), 기주관 조희유(曹喜有)·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명선이 아뢰기를, “이것은 제주목사 이문혁(李文爌)의 장계입니다. 산장(山場)의 횡축(橫築)을 헐어 철거하는 것이 편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이제야 하나를 들어 논단(論斷)하기를, ‘산둔마(山屯馬) 4백 여 필이 고실(故失)한 것은 모두 산장을 횡축한 뒤에 있었으니, 횡축이 해가 됨은 명백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사정을 널리 물어보니, 또한 말하기를, “만약에 말에게 이롭다면 어찌 3년에 한 차례의 역사(役事)로 철거해야 할 것을 철거하지 않겠는가?”라고 합니다. 상장(上場) 녹산장(鹿山場)의 횡축을 헐어 철거하는 일이 사리에 합당할 듯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어사가 와서 상주한 것이 확실하였지만 백성들 사이에 말들이 있을까 우려하여 다시 제주목사에게 명하여 논열(論列)하게 한 것이 두 번 세 번 하면서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대개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제주목사가 조목조목 진달(陳達)한 것이 매우 자세하니 목축(牧畜)하는 정사에 비추어보면 관계되는 바가 이와 같고, 백성들의 사정을 헤아려보면 공론(公論)이 저와 같습니다. 제주목사가 이미 헐어내기를 청한 후이니 다시 주저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되, 지금은 이미 겨울이 깊었으니 내년 봄을 기다려 거행하도록 분부하십시오. 대저 말을 모는 일은 섬 백성들의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장계 가운데 이른바 ‘백성을 부릴 때 백성들의 수고가 덜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전적으로 당시 관장(官長)이 백성을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고 말한 것은 과연 적당한 말입니다. 이후로 말을 몰아 점

검할 때에는 민정(民丁)을 동원 할 경우 간편하게 하도록 힘쓰고, 혹 윤회(輪回)를 하게 할 때는 각별히 보살피 주어 묵은 폐단을 영구히 시정하여 치우쳐 고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부사와 좌상·우상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영부사 김상철⁹⁴⁾이 아뢰기를, “당초 횡축하도록 한 것이 비록 백성들을 위하여 폐해를 없애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탐라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마정(馬政)이 최우선이니, 만약에 마정에 해가 있다면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좌의정 이복원이 아뢰기를, “횡축은 애초에 조정에서 명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어서가 돌아와 아뢰고, 본주의 목사가 장계로 아뢴 것이 모두 헐파해야 한다고 하니 헐파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우의정 김익⁹⁵⁾이 아뢰기를, “횡축의 해가 이렇게 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횡축을 헐어내는 것이 비록 백성들에게 폐가 되는 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헐어내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신(將臣)의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훈련대장 구선복이 아뢰기를, “횡축에 관한 일은 신이 전에 이미 아뢰었던 것으로, 산마(山馬)는 그 성질대로 뛰놀 수 없으며, 석각(石角)에 물과 풀이 없어 마음대로 마시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횡축한 지 두어 해가 채 되지 않아 죽거나 고실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그 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을 몰 때 비록 폐단이 있다할지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역(役)에 불과합니다. 말을 기르는 정사가 나라에 있어 소중한 것이고, 횡축을 철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헐어내도록 허락하는 것이 실로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어영대장 이주국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이 일로 하문하였을 때 품달한 바가 있습니다. 탐라에 횡축이 있기 전에는 산마라는 명색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없으니, 이는 또한 횡축 때문입니다. 마정 또한 나라의 큰 정사이니, 사소한 폐단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철폐하여 헐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뉘대로 하라.”라고 하였다.⁹⁶⁾ 【거조(擧條)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 담을 쌓는 것이 백성의 폐단이 되었는데, 지금 도리어 헐게 된다면 마정에는 비록 유익함이 있을지라도 백

94) 김상철(1712~1791): 본관 강릉(江陵). 자 사보(士保). 호 화서(華西). 1736년(영조 12) 문과 급제. 충청도관찰사, 영의정 역임.

95) 김익(1723~1790). 본관 연안(延安). 자 광중(光仲). 호 죽하(竹下)·약현(藥峴). 시호 문정(文貞). 1763년(영조 39) 문과 급제. 예조판서, 우의정, 영의정 역임.

96)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6년 10월 2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성들의 사정이 불편한까 염려가 된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사정이 편리한지 아닌지는 그다지 현격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녹산장, 횡축, 철거.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月 二十七日 庚寅

- (李時秀)又以刑曹言啓曰, 罪人涵徵等十名自捕廳, 因傳教移送本曹矣. …… 文鉉全羅道濟州牧旌義縣定配所, 竝卽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10월 27일(경인)

- ☐ 죄인 문현(文鉉)을 정의현(旌義縣) 배소(配所)로 압송하겠다는 형조의 초기
- 이시수(李時秀)가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함징(涵徵) 등 10명을 포도청에서 전교에 따라 본조(本曹)로 이송하였습니다. <중략> 문현(文鉉)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배소(配所)를 정하고, 모두를 즉시 압송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문현, 정의현, 배소, 압송.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一月 八日 辛丑

- 李時秀, 以刑曹言啓曰, 卽接全羅監司朴祐源移文, 則濟州牧定配罪人韓尙得發配關文中, 待用刑令該道監司, 嚴刑三次事有傳教, 而罪人到配形止, 旣自同州馳啓, 則前頭刑推一款, 亦令同州舉行乎? 自本營捉來刑推乎? 詳細回移云矣. 遠島定配罪人, 爲其刑推舉行, 來往渡海之際, 似必有弊端令該牧使, 待用刑舉行, 卽爲狀聞之意, 發關分付, 何如? 傳曰, 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11월 8일(신축)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상득(韓尙得)에 대해 제주목사가 용형(用刑)을 거행하고 장계로 보고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형조의 초기
- 이시수(李時秀)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전라감사 박우원(朴祐源)의 이문(移文)⁹⁷⁾을 보니,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상득(韓尙得)을 배소(配所)로 보내는 관문(關文) 중에 용형(用刑)할 때를 기다려 해당 도의 감사로 하여금 세 차례 엄형을 가하라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죄인이 배소에 도착하는 상황을 이미 제주목에서 치계(馳啓)하였으니, 앞으로 형추(刑推)하는 한 조항도 또한 제주목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합니까? 아니면 본영(本營)에서 잡아와 형추합니까? 자세히 회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먼 섬에 정배하는 죄인을 형추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 오고 갈 때에 반드시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 해당 목사로 하여금 용형할 때를 기다려 거행하고 즉시 장계로 보고하라는 뜻으로 관문을 보내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정배, 한상득, 용형.

97) 이문(移文): 동등한 아문(衙門)에 보내는 공문서로 공이(公移)라고도 함. 2품 이상 중앙 관아 및 지방 관찰사 등 조선시대 최고의 관서 사이에 행정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였음.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一月 二十五日 戊午

- 徐有防, 以禮曹言啓曰, 卽接四館所牒報, 則庚子八月分製講入格進士李秉喆, …… 同年同月濟州道科入格幼學金墉, 通德郎邊景祐, 幼學康聖翊, …… 直赴殿試, …… 命下矣. 今番庭試, 依例分等許赴事報來, 進士李秉喆等十一人, 直赴殿試, …… 傳曰, 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11월 25일(무오)

□ 전시(殿試)에 관한 예조의 초기

- 서유방(徐有防)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사관소(四館所)⁹⁸⁾의 첩보(牒報)를 보니, 경자년 8월 제강(製講)에 입격한 진사 이병철(李秉喆)과 〈중략〉 같은 해 같은 달 제주(濟州) 도과(道科)⁹⁹⁾에 입격한 유학 김용(金墉)¹⁰⁰⁾, 통덕랑 변경우(邊景祐)¹⁰¹⁾, 유학 강성익(康聖翊)¹⁰²⁾을 〈중략〉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금번 정시(庭試)는 규례대로 등급을 나누어 응시하도록 보고해 왔으니 진사 이병철 등 11인을 직부전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도과, 김용, 변경우, 강성익, 직부전시.

98) 사관소(四館所): 성균관(成均館), 예문관(藝文館),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 등 사관(四館)의 관원들이 과거 시험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곳.

99) 도과(道科): 임금의 특별 지시에 따라 평안도, 함경도, 강화(江華) 등 특정 지역에서 시행하였던 과거로 외방별과(外方別科나 외방별시(外方別試라고도 함.

100) 김용(1744~1783): 본관 경주(慶州).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예조좌랑, 전릉령 역임.

101) 변경우(1745~1836): 본관 원주(原州). 자 선재(善哉). 호 자연당(自然堂).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성균관전적, 사헌부장령, 정의현감 역임.

102) 강성익(1747~1819): 본관 신천(信川). 자 오응(五應). 호 명재(明齋).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병조정랑, 이조정랑, 사간원정원 역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三日 乙丑

○ 壬寅十二月初三日申時, 上御誠正閣. 大臣 · 金吾 · 秋曹 · 吏兵曹疎決堂上入侍時, 領議政徐命善, 左議政李福源, 右議政金煜, 判義禁韓光會, 行吏曹判書金華鎮, 知義禁鄭昌聖, 刑曹判書鄭一祥, 同義禁任希曾, 兵曹參判尹師國, 刑曹參議李謙煥, 左副承旨金字鎮, 記事官趙衍德, 記注官金健修 · 金鳳顯, 以次進伏訖. …… 上曰, 當此舉國同慶之日, 宜施曠蕩之典, 關係惡逆者, 置之仍秩, 下此一等者, 竝欲疏放或減等矣. …… 身死未蒙放罪人全羅道康津鄭義達, 楸子島吳道鈺, 濟州趙峯, …… 竝放. …… 島配罪人全羅道楸子島趙嶠量移, …… 楸子島申尙春, …… 大靜丁潤慎 · 高益完, 濟州吳德三, …… 竝放. …… 楸子島白奉得, …… 楸子島李璟, …… 濟州寺奴次上 · 互山甫 · 必夫 · 成白中, 大靜世命 · 士善 · 鄭得彪, 濟州崔三金, …… 竝放. …… 全羅道濟州韓尙得出陸. ……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3일(음축)

□ 나라의 경사를 맞아 도배죄인(島配罪人) 등을 소결(疎決)하여 방송(放送)함

○ 임인년 12월 3일 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 · 의금부 · 형조 · 이조 · 병조의 소결(疎決)¹⁰³⁾할 당상이 입시할 때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좌의정 이복원(李福源), 우의정 김익(金煜), 판의금 한광회(韓光會), 행이조판서 김화진(金華鎮), 지의금 정창성(鄭昌聖), 형조판서 정일상(鄭一祥), 동의금 임희증(任希曾), 병조참판 윤사국(尹師國), 형조참의 이겸환(李謙煥), 좌부승지 김우진(金字鎮), 기사관 조연덕(趙衍德),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온 나라가 함께 경축하는 이러한 날에 널리 탕척(蕩滌)하는 은전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악역(惡逆)에 관계된 자는 그대로 둘 부류로 두고, 이보다 한 등급 아래인 자는 모두 소결하여 풀어주거나 감등(減等)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죽어서 방송(放送)하는 은전을 입지 못한 죄인으로 전라도 강진의 정의달, 추자도(楸子島)의 오도옥(吳道鈺), 제주(濟州)의 조완(趙峯)을 <중략> 모두 풀어주어라. <중략> 도배죄인(島配罪人) 전라도 추자도의 조우량(趙嶠量)을 이배하고, <중략> 추자도의 신상

103) 소결(疎決): 죄를 너그럽게 판결함.

춘(申尙春) 〈중략〉 대정(大靜)의 정윤신(丁潤愼) · 고익완(高益完), 제주의 오덕삼(吳德三)을 〈중략〉 모두 풀어주어라. 〈중략〉 추자도의 백봉득(白奉得) 〈중략〉 추자도의 이경(李璟) 〈중략〉 제주의 시노 차상(次上) · 돌산보(扈山甫) · 필부(必夫) · 성백중(成白中), 대정의 세명(世命) · 사선(士善) · 정득표(鄭得彪), 제주의 최삼금(崔三金)을 〈중략〉 모두 풀어주어라. 〈중략〉 전라도 제주의 한상득(韓尙得)을 육지로 이배하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소결, 방송, 도배죄인.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五日 丁卯

- 柳誼, 以義禁府言啓曰, 本府所管罪人放送與量移出陸減等撤籬者, 竝即依傳教舉行, 而其中 …… 全羅道靈巖郡楸子島定配罪人趙嶠等, 方有臺啓, …… 趙嶠等量移事, 竝不得舉行之意, 敢啓. 傳曰, 臺啓自臺啓, 赦典自赦典(自赦典), 斯速舉行.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5일(정묘)

□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嶠)를 속히 양이(量移)하라는 전교

- 유의(柳誼)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본부(本府)에서 소관하는 죄인에 대한 방송(放送)과 양이(量移)¹⁰⁴하여 출륙하거나 감등(減等)하여 율타리를 거두는 것을 모두 즉시 전교대로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략>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趙嶠) 등은 바야흐로 대개(臺啓)¹⁰⁵에 있습니다. <중략> 조우 등을 양이하는 일을 모두 거행할 수 없다는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개는 대개이고, 사면(赦免)의 은전은 사면의 은전이다. 속히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정배죄인, 조우, 양이.

104) 양이(量移): 섬이나 변방으로 멀리 유배되었던 사람의 죄를 참량(參量)하여 내지로 배소(配所)를 옮기는 것.

105) 대개(臺啓):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논죄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五日 丁卯

- 柳誼, 以義禁府言啓曰, 身死未蒙放罪人康津鄭義達, 楸子島吳道鈺, 濟州趙崐, …… 依傳教放送, 罪案爰周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5일(정묘)

- ☐ 죄인을 전교에 따라 방송(放送)하였으므로 죄안(罪案)에서 효주(爻周)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
- 유의(柳誼)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죽어서 방송(放送)의 은전을 받지 못한 죄인으로 강진의 정의달(鄭義達), 추자도(楸子島)의 오도옥(吳道鈺), 제주(濟州)의 조완(趙崐)을 〈중략〉 전교대로 방송하였기에 죄안(罪案)에서 효주(爻周)¹⁰⁶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오도옥, 조완, 죄안, 효주.

106) 효주(爻周): 문서나 장부에서 ‘爻’자 모양의 부호를 그어 내용을 지워버리는 일.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五日 丁卯

- 柳誼, 以義禁府言啓曰, …… 靈巖郡楸子島定配罪人趙嶠, 康津縣量移, 而仍前罪目, 依例發遣府書吏羅將, 仍令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5일(정묘)

-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嶠)를 강진현(康津縣)으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
- 유의(柳誼)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상략〉 영암군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嶠)를 강진현(康津縣)으로 양이(量移)하고, 이전 죄목에 따라 규례대로 본부의 서리와 나장을 보내어 그대로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정배죄인, 조우, 강진현, 압송.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六日 戊辰

- 柳誼, 以刑曹言啓曰, 依傳教, …… 楸子島申尙春, …… 大靜丁潤愼 · 高益完, 濟州吳德三竝放. …… 楸子島崔恒大 · 白奉得, …… 竝放. …… 楸子島李璟, …… 楸子島姜以白, …… 濟州寺奴次上 · 芑山甫 · 必夫 · 成白中, 大靜寺奴世命 · 士善 · 鄭得彪, 濟州崔三金竝放. …… 濟州韓尙得出陸, 而減等罪人竝徒三年改錄, 量移罪人及出陸罪人, 定配所移配後, 舉行形止, 卽爲狀聞事, 騎撥分付於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6일(무진)

□ 죄인 신상춘(申尙春) 등의 처리에 관한 형조의 초기

- 유의(柳誼)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교에 의하여 <중략> 추자도(楸子島)의 신상춘(申尙春) <중략> 대정(大靜)의 정윤신(丁潤愼) · 고익완(高益完), 제주(濟州)의 오덕삼(吳德三)을 모두 방송(放送)하였습니다. <중략> 추자도의 최항대(崔恒大) · 백봉득(白奉得)을 <중략> 모두 방송하였습니다. <중략> 추자도의 이경(李璟), <중략> 추자도의 강이백(姜以白), <중략> 제주의 시노 차상(次上) · 돌산보(芑山甫) · 필부(必夫) · 성백중(成白中), 대정의 시노 세명(世命) · 사선(士善) · 정득표(鄭得彪), 제주의 최삼금(崔三金)을 모두 방송하였습니다. <중략> 제주의 한상득(韓尙得)을 출륙시켰습니다. 감등죄인(減等罪人)을 모두 도 3년(徒三年)으로 개록(改錄)하고, 양이죄인(量移罪人) 및 출륙죄인(及出陸罪人)에 대해 정배소(定配所)로 이배한 후 거행한 전말을 즉시 장계로 보고하도록 기발(騎撥)로 해당 관찰사에게 분부하도록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죄인, 방송, 양이, 출륙.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十日 壬申

- 柳誼, 以禁衛營言啓曰, 鄉外武士, 令三軍門·兵曹, 至殿試日, 量宜給糧資事, 命下矣. 各道武士, 依兵曹分排, 全羅道武士十五人, 原春道武士二十二人, 咸鏡道武士二人, 濟州武士四十七人, 合八十六人, 今日爲始, 殿試日至糧資, 自本營量宜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10일(임신)

□ 각 도 무사에게 양식을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금위영의 초기

- 유의(柳誼)가 금위영의 말로 아뢰기를, “지방의 무사를 삼군문(三軍門)과 병조로 하여금 전시(殿試)를 치르는 날에 이르기까지 양식을 잘 헤아려 지급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각 도의 무사는 병조에서 분배한 대로 전라도 무사 15인, 원춘도(原春道) 무사 22인, 함경도 무사 2인, 제주(濟州)의 무사 47인 도합 86인인데, 오늘부터 전시에 이르기까지 양식을 본영에서 잘 헤아려 나누어 지급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금위영, 전시, 무사, 양식, 지급.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十日 壬申

- 朴天行, 以義禁府言啓曰, 卽接平安監司徐浩修, 黃海監司黃昇源牒報及成冊, 則大逆不道罪人仁邦, 應坐諸人, 查出以來矣. …… 子東伊, 年四, 以年未滿免絞, 靈巖郡楸子島爲奴, …… 而右罪人等, 時囚於谷山縣獄, 依例令刑曹押送于各其配所, 母元央, 年七十五云, 依法典免坐, 何如? 傳曰, 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10일(임신)

□ 죄인 문인방(文仁邦)의 처리에 대한 의금부의 초기

- 박천행(朴天行)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평안감사 서호수(徐浩修)와 황해감사 황승원(黃昇源)의 첩보(牒報) 및 성책(成冊)을 보니 대역부도(大逆不道)한 죄인 문인방(文仁邦)¹⁰⁷에 연좌해야 할 사람들을 조사해 내었습니다. <중략> 아들 동이(東伊)는 나이가 4살로 나이가 차지 않아 교형(絞刑)에서 면죄되어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노(奴)가 되었습니다. <중략> 위 죄인들이 지금 곡산현 옥에 갇혀있습니다. 규례대로 형조로 하여금 각기 배소로 압송하게 하고, 어미 원앙은 나이가 75세라고 합니다. 법전에 의해 면좌(免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죄인, 문인방, 연좌, 동이, 추자도.

107) 문인방(文仁邦): 1782년(정조 6)에 참서(讞書)를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이경래와 함께, 귀양 간 송덕상(宋德相)의 신원(伸冤)을 위해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반역을 도모했다가 대역부도(大逆不道)로 복주(伏誅)되었음.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十二日 甲戌

- 林錫喆,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大逆不道罪人仁邦妻大阿只, 全羅道康津縣古今島爲婢, 子東伊, 以年未滿免絞, 靈巖郡楸子島爲奴, …… 而令刑曹押送配所事, 命下矣. 罪人大阿只等, 時囚谷山獄云, 令道臣卽爲發配後啓聞事, 發關分付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12일(갑술)

□ 죄인 문인방(文仁邦)의 아들 등의 처리에 대한 형조의 초기

- 임석철(林錫喆)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의금부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대역부도(大逆不道)한 죄인 문인방(文仁邦)의 처 대아지(大阿只)는 전라도 강진현 고금도에 비(婢)가 되었고, 아들 동이(東伊)는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노(奴)가 되었습니다. <중략> 형조로 하여금 배소로 압송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대아지 등이 지금 곡산현 옥에 갇혀있다고 합니다. 관찰사로 하여금 즉시 배소로 보내게 한 후 장계로 보고하도록 관문(關文)의 보내어 분부하라는 뜻을 감히 아뢴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문인방, 아들, 추자도, 압송.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十六日 戊寅

○ 壬寅十二月十六日巳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徐命善，左議政李福源，右議政金煜，行吏曹判書金華鎮，行禮曹判書鄭尙淳，戶曹判書李性源，漢城判尹鄭昌聖，工曹判書徐有慶，知中樞府事鄭民始，兵曹判書徐有隣，刑曹判書嚴璫，咸春君李昌運，漢城右尹李柱國，行副司直李敬懋，大司憲李敬養，大司諫沈有鎮，應教徐有成，掌令柳翼之，持平金寅燮·李馨德，校理李喆模，修撰嚴思晚，副修撰吳泰賢，左承旨李在學，記事官趙衍德，事變假注書馬思人[馬思仁]，記注官金健修·金鳳顯，以次進伏訖。……璫曰，濟州定配罪人二萬，以先朝特教，初不入於放未放秩，今番亦難循例舉行矣。上曰，卿等之意，何如？命善曰，罪犯若是深重，實難放釋矣。福源曰，既有先朝下教，有難學論矣。璫曰，李滄配所傳書之羅望金，當初有待用刑刑配之教矣。今番赦典時，待用刑刑推事，有蕩滌之命，而定配之命則自在，似當依前教定配，而使望金傳書之李德華，今既蒙放，持去之望金，亦難遽然發配，何以爲之乎？上曰，蕩滌，可也。【出學條】……敬懋曰，今番直赴濟州學子，不爲上來矣。上曰，當此隆冬，勢難越海，故不得上來矣。……（敬養）又啓曰，噫嘻，痛矣。亂臣賊子，從古何限？豈有若逆澤·逆白窮凶極惡？載籍以來所未有所未聞者，而若論其窩窟根柢，則最中是已。噫，釀成前茅之逆澤執手申托者，最中也，圖出殿後之凶白，合謀行貨者，最中也。此疏獨知之說，賊澤之供，如執左契，謹悉書疏之札，夢獐之招，不啻分明，平日腸肚之糾結，暗地排布之綢繆，殆同泥中之鬪獸，而雖以渠鞠庭自服者言之，問候一款，最爲逆疏之肯綮，而酬酢爛熳，不敢掩諱，此又是渠主張之斷案，而乃於帳殿親問之時，狠毒勃慢之說，尤極憤惋。噫，彼最中，位至列卿，身且休退，國家何負於渠，而非但包藏之心，乘機闖發，以其姪義翊之廢棄，陰懷怨懟之志，潛售窮凶之計，左翊右直，前澤後白，頤指氣使，換面迭投，古今天下，寧有是耶？今此最中，即是逆澤·逆白之窩窟根柢，而窩窟之中，自有窩窟，根柢之中，又有根柢，則亟加盤詰，趁今打破，惟在於最中之嚴鞠得情，而一經推問，遽下島配之命，王章未伸，輿憤益激，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更令王府，拿致設鞠，期於得情，夫正王法。上曰，不允。府啓敬養等曰，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爛熳和通之狀，渠既明白納招，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今此酌處之命，雖出好生之德意，而三尺至嚴，不可島縣爲奴而止，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又啓曰，聖中之罪，可勝誅哉？包藏禍心主張凶論，敢托不敢言之地，倡出不忍聞之說作爲窩主，慫恿徒黨，故徐有臣·朴宗甲·李義駿輩，從而和之，交口讚引，噫嘻，痛矣。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而始仕於殿下，欲展蘊抱之說，尤極萬萬凶慘，且莫重義理，倚托怪鬼輩，欲售疑亂之計者，究厥心腸，與德師·載翰，一串貫來者也，不

仕於先大王朝者，卽先大王之逆臣，先大王之逆臣，卽殿下之逆臣，豈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而居謫以來，小[少]不畏縮，乃敢聚會學徒，通接官隸，至登繡啓，大臣筵白？雖卽移配絕島，而經年爭執，尙道王章，窮凶之節，無以嚴覈，亂賊之徒，無所懲畏，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又啓曰，趙嵎，以物故罪人峨之弟，今番諸逆之陰凶情節，萬無不知之理，而抵賴不服，端緒未究，遽有酌處之命，王章未伸，輿憤益切。請楸子島定配罪人趙嵎，亟寢酌處之命，仍令王府，設鞫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又啓曰，後樂，既以後翼爲弟，且以量·鎋爲黨，則凶謀逆節，必無不知之理，而親問之下，游辭漫漶，至以本不見重於其弟之說，肆然納供，究其情節，極爲叵測，不可以不了了極蠢蠢，而有所容貸，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亟令王府，更加嚴鞫，期於得情。上曰，依啓。……（敬養）又啓曰，噫嘻。李普行之罪，可勝誅哉？賦性妖邪，行己暗愎，脅肩諂笑，情態難掩，左右閃忽，伎倆漸巧，特一天生宵小之類耳。口蜜腹劍，林甫之後身，狐媚狼顧，京·惇之餘套，以渠處地爲人，幸際承乏，兜攬至此，則不思知分報效之心，敢生眩惑跳踉之計，其貽害世道，將不知至於何境，有識之憂歎，固已久矣。雖以今番事觀之，亦出於計較利害之心，外托懲討之義，內售嘗試之計，是可忍也，孰不可忍也？此於渠，猶屬細故，至於明義一部，是何等大義理，而渠之所論本事之外，乃敢攙及於有樹立之大臣，必欲漫漶義理，欺誣君父，包藏禍心，煽動一世，若此不已，則倫綱將至墜地，凶孽亦必生心。噫，彼普行，抑獨何意，循私負國，一至此哉？其心所在，有不可測，而此又渠卽一斷案，何幸聖明，俯燭其情狀，處分明快，滿庭臣僚，孰不欽仰，而若論其負犯，不可不一問，快正其罪，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亟令王府，拿鞫嚴問。上曰，不允。……院啓有鎮曰，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以么麼宦寺，交結士夫，終爲凶賊之根柢，而況其窮凶極惡之語，敢欲潛售亂逆之心，究厥罪惡，萬戮猶輕，情節未盡究覈，輿情莫不憤惋，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又啓曰，噫嘻，痛矣。聖中·有臣·宗甲·義駿等罪犯，尙何言哉？倡邪說而作爲窩窟，結凶徒而交相吹噓，暗地網繆，設計妖凶，敢欲疑亂於莫重之義理，至以十三年不着帽等說，肆然陳奏於筵席，究厥腸肚，實與德師·載翰輩，一串貫來者也。噫，彼諸賊，既皆伏法，則顧此群凶，獨可容貸耶？情跡既露，負犯至重，決不可一刻容貸，而況且聖中，居謫以來，不思畏縮，乃敢聚會學徒，通接官隸，至登繡啓，大臣筵白，雖卽移配絕島，而此輩久道王章，亂賊無以懲畏，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竝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16일(무인)

□ 죄인 이최중(李最中) 등을 국청을 설치해 신문할 것을 청하는 이경무(李敬懋) 등의 계

○ 임인년 12월 16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좌의정 이복원(李福源), 우의정 김익(金燧), 행이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예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호조판서 이성원(李性源), 한성판윤 정창성(鄭昌聖), 공조판서 서유경(徐有慶), 지중추부사 정민시(鄭民始), 병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형조판서 엄숙(嚴燾), 함춘군 이창운(李昌運), 한성우윤 이주국(李柱國), 행부사직 이경무(李敬懋), 대사헌 이경양(李敬養), 대사간 심유진(沈有鎭), 응교 서유성(徐有成), 장령 유익지(柳翼之), 지평 김인섭(金寅燮)·이형덕(李馨德), 교리 이철모(李喆模), 수찬 엄사만(嚴思晩), 부수찬 오탈현(吳泰賢), 좌승지 이재학(李在學), 기사관 조연덕(趙衍德), 사변가주서 마사인(馬思仁), 기주관 김건수(金健修)·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엄숙¹⁰⁸이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정배죄인(定配罪人) 2만명은 선조(先朝)의 특교(特敎)로 애당초 풀어 줄 부류와 풀어주지 않을 부류[放未放秩]에 들지 못하기에 금번 또한 규례에 따라 거행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범한 죄가 이와 같이 심히 중하다면 실로 풀어주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복원이 아뢰기를, “이미 선조(先朝)의 하교가 있으니 거론하기 곤란합니다.”라고 하였다. 엄숙이 아뢰기를, “이근(李謹)¹⁰⁹의 배소에 편지를 전한 나망금(羅望金)은 당초 용형(用刑)할 때를 기다린 후에 귀양을 보내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금번 사면의 은전이 있을 때 용형할 때를 기다렸다 형추(刑推)하는 일을 탕척(蕩滌)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배(定配)하라는 명이 절로 있으니, 마땅히 전의 하교에 의해 정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망금으로 하여금 편지를 전하게 한 이덕화(李德華)가 지금 이미 풀려났으니 편지를 가지고 간 망금 또한 갑자기 배소로 보내기는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

108) 엄숙(1716~1786): 본관 영월(寧越). 자 유문(儒文). 호 오서(梧西). 시호 숙헌(肅憲). 1757년(영조 33) 문과 급제. 대사간, 대사헌, 동지부사 역임. 저서 《연행록(燕行錄)》.

109) 이근(?~?): 정후겸(鄭厚謙)의 서얼 태생 처남으로 그의 손발이 되어 정조 즉위를 방해하는 일련의 행동을 함께했다. 정후겸이 정조 즉위 후 역적으로 사사(賜死)되자 그의 잔당들을 모두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근도 여기에 포함되어 원배(遠配)되는 형벌을 받았다.

를, “탕척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중략〉 이경무(李敬懋)가 아뢰기를, “금번 직부(直赴)된 제주 거자(學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한 엄동설한에 형세상 바다를 건너기 어렵기 때문에 올라올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경양(李敬養)¹¹⁰⁾이 또 아뢰기를, “아, 애통합니다.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마는, 어찌 역적 이택징(李澤徵)과 역적 이유백(李有白) 같이 흉악하기 그지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유사 이래로 들어보지도 못한 바인데, 그 소굴의 뿌리를 논하자면 이최중(李最中)입니다. 아, 앞잡이가 되는 역적을 빚어놓아 손을 잡고 거둬 부탄한 자가 이최중이고, 후전(後殿)의 흉악한 이유백을 끌어내어 함께 모의하여 뇌물을 준 자가 이최중입니다. 이 상소를 홀로 알았다는 말은 역적 이택징의 공초에서 부신(符信)의 좌계(左契)¹¹¹⁾를 잡은 것처럼 확실하고, 서소(書疏)를 삼가 알았다는 서찰은 이몽린(李夢麟)의 공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평소에 마음으로 결탁하고 모르는 곳에서 계획한 치밀함은 거의 진흙 속에서 싸우는 짐승과 같습니다. 비록 그가 국정(鞫庭)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하자면, 문후(問候)하는 한 조항이 가장 역소(逆疏)의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인데, 수작이 난만(爛熳)하여 감히 가려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가 주장하는 단안(斷案)인데 장전(帳殿)에서 친문(親問)할 때 너무나도 독하고 어그러진 말은 더더욱 분통이 터집니다. 아, 저 이최중은 지위가 경(卿)의 반열에 올랐고 몸 또한 휴퇴(休退)하였는데, 국가가 그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오직 품었던 마음을 기회를 틈타 일어나 그 조카 이의익을 폐기한 것 때문에 몰래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비밀리에 지극히 흉악한 계책을 세우고, 왼쪽에는 익(翊) 오른쪽에는 직(直)과 앞에는 이택징과 뒤에는 이유백을 마음대로 부려 얼굴을 바꾸어 번갈아 상소를 올리게 하였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최중은 곧 역적 이택징과 역적 이유백의 소굴의 뿌리입니다. 소굴 가운데 절로 소굴이 있고 뿌리 가운데 또한 뿌리가 있으니, 속히 캐물어 지금 타파하는 것은 오직 이최중을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캐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추문(推問)하고 갑자기 도배(鳥配)하라는 명을 내렸으니, 왕법이 퍼지지 못해서 여론이 더욱 격분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추자도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

110) 이경양(1734~?): 본관 경주(慶州). 자 성호(聖浩). 호 가와(可窩). 1772년(영조 48) 문과 급제.

111) 좌계(左契): 둘로 나눈 부신(符信) 가운데 왼쪽의 것으로 좌권(左券)과 같은 뜻인데, 여기서는 명확한 증거를 뜻함.

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기어이 실정을 캐어내어 왕법(王法)을 흔쾌히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¹¹²⁾ 사헌부의 계사(啓辭)에 이경양 등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¹¹³⁾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경양 등이 또 아뢰기를, “노성중(盧聖中)¹¹⁴⁾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화심(禍心)을 품고 흉론(凶論)을 주장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의탁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앞장서서 내어 와주(窩主)가 되어 도당(徒黨)을 종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유신(徐有臣)·박종갑(朴宗甲)·이의준(李義駿)의 무리가 따라서 화답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선대왕(先大王) 때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전하에게 벼슬하여 재주와 포부를 펼치려 했다는 말은 더욱더 흉악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한 막중한 의리를 괴귀(怪鬼)의 무리에게 맡겨 의심하여 소란을 피우려는 계책을 부리고자 한 것은 그 심보를 따져보면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¹¹⁵⁾과 더불어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선대왕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로 바로 선대왕의 역신(逆臣)이고, 선대왕의 역신은 바로 전하의 역신인데, 어찌 잠시라도 천지 사이에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해를 넘겨 쟁집(爭執)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법을 면하고 있으니,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을 엄히 조사할 수 없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

112) 이상은 《정조실록》 권13, 정조 6년 6월 3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113) 김수현(?~?):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살던 용동궁(龍洞宮)에서 일을 주관하는 내시.

114) 노성중(1724~?): 본관 광주(光州). 자 양능(養能). 1753년(영조 29) 문과 급제.

115)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사도세자의 일로 영조를 무욕(誣辱)한 사건이 일어나 이덕사, 조재한 등이 복주(伏誅)되고 환관 김수현(金壽賢)과 이흥록(李興祿) 등이 귀양갔음.

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경양 등이 또 아뢰기를, “죄인 조우(趙岫)는 물고(物故)가 난 죄인 조성(趙誠)의 아우로, 지금 역적들의 음흉한 정절(情節)을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버티면서 승복하지 않아서 단서를 아직 캐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니, 왕법이 펴지지 않아 여론의 분개가 더욱 간절합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조우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경양 등이 또 아뢰기를, “한후락(韓後樂)은 한후익(韓後翼)이 아우가 되고, 또한 홍양해(洪量海)·심혁(沈鑠)과 무리를 이루었으니,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을 필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 직접 신문하는데도 근거 없는 말을 지루하게 늘어놓으며 심지어는 본래 그 아우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말로 방자하게 공초(供招)하였습니다. 그 정절(情節)을 따져보면 지극히 해아리기 어려우니, 혈혈단신이 아닌 몸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상을 캐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뉘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이경양이 또 아뢰기를, “아! 이보행(李普行)의 죄를 이루다 별할 수 있겠습니까? 타고난 성품이 요사스럽고 몸가짐이 교만하여 어깨를 움츠리며 아양을 떠니 정태(情態)를 가리기 어렵고, 이리저리 변화무쌍하여 기량이 점점 교묘해지니 단지 하나의 타고난 간사하고 소견이 좁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뱃속에는 칼을 지녔으니 임보(林甫)의 후신(後身)이고, 여우의 눈썹을 하고 이리처럼 돌아보니 경(京)·돈(惇)의 여투(餘套)입니다. 그의 처지로써 사람이 되어 요행히 승핍(承乏)¹¹⁶⁾을 만나 두람(兜攬)이 여기에 이르렀다면 분수를 알아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현혹하여 날뛰려는 계책을 내었으니, 그가 세도(世道)에 해를 끼치는 것이 장차 어느 지역에 이르게 될지 알 수 없어 식자(識者)들이 근심하고 탄식한 것이 실로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보더라도 또한 이해를 따지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겉으로는 징토(懲討) 하는 의리를 핑계 대고 안으로는 떠보려는 계책을

116) 승핍(承乏): 인제가 없어서 재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 벼슬을 함.

꾸몄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그에게는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하겠지만 의리를 밝히는 한 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리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논한 본사(本事) 외에는 감히 수립(樹立)한 것이 있는 대신(大臣)을 끌어넣었으니, 필시 의리를 모호하게 하고 군부(君父)를 속이며 화심(禍心)을 감추고 한 세상을 선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그치게 하지 않는다면 윤강(倫綱)이 장차 땅에 떨어질 것이고 흉열(凶孽) 또한 반드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아, 저 이보행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사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저버린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릴 수 없지만 이것 또한 그의 한 단안(斷案)입니다만 얼마나 다행인지 성명(聖明)이 그 정상(情狀)을 굽어살펴 처분을 명쾌하게 하였으니, 온 조정의 신료들이 누군들 흠양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범한 죄를 논하자면 한 번 신문하여 꽤히 그 죄를 바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의 계사에 심유진이 아뢰기를, “대정현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아, 통탄스럽습니다. 노성중·유신·종갑·의준 등의 범죄에 대해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筵席)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조재한의 무리와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아 저 역적들은 이미 모두 복주(伏誅) 되었으니, 이 무리들의 흉악함을 돌아보건대 유독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또한 노성중의 경우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이 연석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에 이배되었지만, 이 무리들이 국법을 면하고 있어 난적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한후락, 이보행.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十七日 己卯

- 以濟州牧定配罪人後樂嚴鞠傳旨，傳于柳誼曰，公議伸，此傳旨置之.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17일(기묘)

-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후락(韓後樂)을 국문하라는 전지를 그만 내버려 두라는 전지
-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한 죄인 한후락(韓後樂)을 엄히 국문하라는 전지(傳旨)와 관련하여 유의(柳誼)에게 전교하기를, “공의(公議)가 펴졌으니, 이 전지를 내버려 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죄인, 한후락, 국문.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十九日 辛巳

- 正言李亮載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噫嘻, 痛矣. 聖中·有臣·宗甲·義駿等罪犯, 尙何言哉? 倡邪說而作爲窩窟, 結凶徒而交相吹噓, 暗地綢繆, 設計妖凶, 敢欲疑亂於莫重之義理, 至以十三年不着帽等說, 肆然陳奏於筵席, 究厥腸肚, 實與德師·載翰輩, 一串貫來者也. 噫, 彼諸賊, 幾皆伏法則顧此群凶, 獨可容貸耶? 情跡既露, 負犯至重, 決不可一刻容貸, 而況且聖中, 居謫以來, 不思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此輩久追王章, 亂賊無以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19일(신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양재(李亮載)의 계

- 정언 이양재(李亮載)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노성중(盧聖中)·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의 범죄에 대해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획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筵席)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의 무리와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아 저 역적들은 이미 모두 복주(伏誅) 되었으니, 이 무리들의 흉악함을 돌아보건대 유독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

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또한 노성중의 경우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이 무리들이 국법을 면하고 있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二十一日 癸未

- 掌令尹長烈, 持平申禹相, 獻納金翊休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21일(계미)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윤장렬(尹長烈) 등의 계
- 장령 윤장렬(尹長烈), 지평 신우상(申禹相)¹¹⁷, 헌납 김익휴(金翊休)¹¹⁸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117) 신우상(1730~?): 본관 고령(高靈). 자 선보(善甫)·백익(伯益).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사간원정언, 사헌부집의 역임.

118) 김익휴(1724~1802): 본관 청풍(淸風). 자 형보(衡甫). 1761년(영조 37) 문과 급제. 행호군, 공조판서, 이조판서 역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二十一日 癸未

- 持平申禹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岬,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曰, 不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21일(계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신우상(申禹相)의 계

- 지평 신우상(申禹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岬)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조우,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二十一日 癸未

- 獻納金翊休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21일(계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김익휴(金翊休)의 계
- 헌납 김익휴(金翊休)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二十二日 己卯[甲申]

- 朴天行, 以漢城府言啓曰, 今此壬寅年獻民數時, 京中及八道元戶人口摠數抄錄入啓, 而濟州三邑民數, 迄未上來, 海島遲速, 未可預料. 故京外已磨勘戶口摠數, 爲先入錄, 濟州三邑, 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22일(기묘[갑신])

- 임인년 경중(京中) 및 8도의 원호(元戶) 인구총수를 초록(抄錄)하여 입계하면서 제주 삼읍은 추후에 첨록(添錄)하겠다는 한성부의 초기
- 박천행(朴天行)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임인년에 백성의 숫자를 바칠 때 경중(京中) 및 8도의 원호(元戶) 인구총수를 초록(抄錄)하여 입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주 삼읍 백성의 숫자는 지금까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섬에서 언제 올라올지 헤아릴 수 없으니, 경외(京外)의 이미 마감한 호구총수를 우선 입록(入錄)하고, 제주 삼읍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추후에 첨록(添錄)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인구총수, 제주.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二十二日 己卯[甲申]

- 掌令宋銓, 持平申禹相, 獻納金翊休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22일(기묘[갑신])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송전(宋銓) 등의 계
- 장령 송전(宋銓)¹¹⁹, 지평 신우상(申禹相), 헌납 김익휴(金翊休)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119) 송전(1741~1814): 본관 은진(恩津).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덕천군수, 대사간, 우참찬 역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二十二日 己卯[甲申]

- 掌令宋銓, 持平申禹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曰, 不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22일(기묘[갑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송전(宋銓) 등의 계
- 장령 송전(宋銓), 지평 신우상(申禹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二十二日 己卯[甲申]

- 獻納金翊休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22일(기묘[갑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김익휴(金翊休)의 계
- 헌납 김익휴(金翊休)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고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二十五日 丁亥

- 正言李秀夏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25일(정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수하(李秀夏)의 계
- 정언 이수하(李秀夏)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고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二十七日 己丑

- 壬寅十二月二十七日酉時，上御誠正閣。承旨入侍時，左承旨李在學，左副承旨金字鎮，右副承旨徐鼎修，記事官李祖承，兼春秋金健修·金鳳顯，以次進伏訖。……又命書傳教曰，煥億配所，以濟州三邑中磨鍊，草記一邊書入，一邊發配，而仍其地荊棘，沿路嚴禁雜人事，下去都事處嚴飭，與亨夏等諸賊之下本道者，無或一時竝行事，亦爲嚴飭。…….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27일(기축)

- 송환억(宋煥億)을 제주(濟州) 삼읍 중에 정배하여 위리안치하라는 전교
- 임인년 12월 27일 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가 입시할 때 좌승지 이재학(李在學), 좌부승지 김우진(金字鎭), 우부승지 서정수(徐鼎修), 기사관 이조승(李祖承), 겸춘추 김건수(金健修)·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또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송환억(宋煥億)¹²⁰의 배소는 제주 삼읍 중에 마련하고, 초기(草記)를 한편으로 써서 들고 한편으로 배소로 떠나보내어 그대로 그곳에 위리안치하되 연로(沿路)에서 잡인을 엄히 금하도록 내려간 도사에게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라. 신형하(申亨夏) 등 역적 중에 본도(本道)로 내려가는 자와 일시에 모두 가는 일이 없도록 또한 엄히 경계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송환억, 제주, 위리안치.

120) 송환억(1741~?): 본관 은진(恩津). 자 대년(大年).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二十八日 庚寅

- 徐鼎修, 以義禁府言啓曰, 罪人煥億絶島定配所, 以濟州三邑中磨鍊, 仍其地荐棘事, 命下矣. 罪人煥億, 全羅道濟州牧大靜縣荐棘, 而以判付內辭意, 具罪目, 發遣假都事李潤集, 押送配所, 與地方官眼同荐棘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28일(경인)

- 죄인 송환억(宋煥億)의 처리에 대한 의금부의 초기
- 서정수(徐鼎修)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송환억(宋煥億)의 절도(絶島) 정배소를 제주(濟州) 삼읍 중에 마련하고 그곳에 위리안치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송환억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하고, 판부(判付)의 내용으로 죄목을 갖추어 가도사 이윤집(李潤集)을 보내어 배소로 압송하고, 지방관과 함께 위리안치하게 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송환억, 대정현, 위리안치.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二十八日 庚寅

- 大司憲洪檢, 大司諫李度默, 司諫尹長烈, 持平姜垣, 正言李宗燮啓曰, …… 請楸子島 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決正王法. 答兩司曰, 不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28일(경인)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헌 홍검(洪檢) 등의 계
- 대사헌 홍검(洪檢)¹²¹, 대사간 이도묵(李度默), 사간 윤장렬(尹長烈), 지평 강원(姜垣), 정언 이종섭(李宗燮)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鞠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양사에 답사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121) 홍검(1721~?): 본관 남양(南陽). 자 성오(省吾). 1761년(영조 37) 문과 급제. 대사간, 대사성, 한성부판윤 역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二十八日 庚寅

- 持平姜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28일(경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강원(姜垣)의 계

- 지평 강원(姜垣)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 정배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조우,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二十八日 庚寅

- 正言李宗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28일(경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이종섭(李宗燮)의 계
- 정언 이종섭(李宗燮)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신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二十九日 辛卯

○ 都政. 吏批, 判書金華鎮, 參判鄭昌順, 參議趙鼎鎮進. …… 金再郁爲濟州判官, …….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29일(신묘)

□ 김재욱(金再郁)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하였다. 이비에 판서 김화진(金華鎭), 참판 정창순(鄭昌順), 참의 조정진(趙鼎鎭)이 나왔다. <증략> 김재욱(金再郁)¹²²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김재욱, 제주판관.

122) 김재욱(1722~?): 본관 연안(延安). 호 문백(文伯). 1753년(영조 29) 문과 급제. 제주판관(재임: 1783.2.~1785.7.) 역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三十日 壬辰

- 行大司憲李垺, 大司諫林蓍喆, 掌令李延伋, 持平韓晚裕啓曰, …… 請楸子島蓍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30일(임진)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청하는 행대사헌 이곤(李垺) 등의 계
- 행대사헌 이곤(李垺), 대사간 임시철(林蓍喆), 장령 이연급(李延伋)¹²³, 지평 한만유(韓晚裕)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123) 이연급(?~?): 본관 연안(延安). 자 군미(君美). 1763년(영조 39) 문과 급제. 예문관 검열 역임.

❖ 乾隆 四十七年 壬寅 十二月 三十日 壬辰

- 掌令李延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行王府, 拿鞫嚴問. 請物故罪人國榮, 亟施孥籍之典. …… 答曰, 不允. …….

❖ 정조 6년(1782) 임인년 12월 30일(임진)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이종섭(李宗燮)의 계
- 장령 이연급(李延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 정배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조우, 이보행, 국청.

1783年

(정조 7)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一月 五日 丁酉

○ 癸卯正月初五日辰時，上御仁政門。朝參入侍時，行都承旨尹塾，左承旨李在學，右承旨趙時偉，左副承旨林錫喆，同副承旨李夔，記事官李祖承，假注書李崑秀，記注官金健修·金鳳顯，以次侍立。……（行大司憲鄭一祥，大司諫林蕃喆，掌令李延伋，持平尹致性·韓晚裕，校理洪仁浩，副校理金翊休·尹曠，正言魚錫齡·李亮載，修撰李度謙·徐美修，副修撰金履正·尹得孚）又啓曰，噫嘻，痛矣。亂臣賊子，從古何限，豈有若逆澤逆白？窮凶極惡，載籍以來所未有所聞者，而若論其窩窟根柢，則最中是已。噫，釀成前茅之逆澤，執手申托者最中也。圖出殿後之凶白，合謀行貨者最中也。此疏獨知之說，賊澤之供，如執左契，謹悉書疏之札，夢麟之招，不啻分明。平日腸肚之糾結暗地，排布綢繆，殆同泥中之鬪獸。而雖以渠鞬庭自服者言之，問候一款，最爲逆疏之肯綮，而酬酢爛漫，不敢掩諱，此又是渠主張之斷案，而乃於帳殿親問之時，狠毒勃慢之說，又極憤惋。噫，彼最中，位至列卿，身且休退，國家何負於渠，而非但包藏之心，乘機闖發，以其侄義翊之廢棄，陰懷怨懟之志，潛售窮凶之計。左翊右直，前澤後白，頤指氣使，換面迭投。古今天下，寧有是耶？今此最中，卽是逆澤逆白之窩窟根柢，而窩窟之中，自有窩窟，根柢之中，又有根柢，則亟加盤詰，趁今打破，惟在於最中之嚴鞫得情，而一經推問，遽下島配之命。王章未伸，輿憤益激。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更令王府，拿致設鞫，期於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又啓曰，煥億之罪，可勝誅哉，性既妖邪，行且陰譎，勢之所使，甘心附賊，利之所在，不憚賣叔，手勢倏忽，設施陰巧。或有議論之相通，則甘爲紹介於國榮，或有謀計之排布，則一聽國榮之指揮，當國榮沮遏大計之日，四字凶言之疏，受之於國榮者，煥億是已。傳之於德相者，煥億是已，論其負犯，實有浮於德相，而況其疏草初本下語，尤極凶慘，有倍於四字者乎？及其罪惡彰露之日，渠敢生漫漶網縫[彌縫]之計，註釋四字，誑惑群心，勸其疏舉之說，既發於湖獄諸囚之招，海西群不逞之輩，又從而響應，轉相煽動，爲其漸染，以至前日澤·白，今日仁·京之窮凶極逆，而腸肚相連，脈絡相貫。若論其根柢窩窟，一則煥億，二則煥億。昨日嚴訊之下，抵賴不服者，究厥情狀，萬萬巧惡。不可不嚴加刑訊，一一取服，而平日平問之餘，反下酌處之命，揆以獄體寧有是理。請亟寢煥億島配之命，仍令王府，加刑得情，快施王章。上曰，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월 5일(정유)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청하는 행대사헌 정일상(鄭一祥) 등의 계

○ 계묘년 1월 5일 진시에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으로 나아갔다. 조참(朝參)에 입시할 때 행도승지 윤숙(尹塾), 좌승지 이재학(李在學), 우승지 조시위(趙時偉), 좌부승지 임석철(林錫喆), 동부승지 이기(李夔), 기사관 이조승(李祖承), 가주서 이곤수(李崑秀),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 이봉현(金鳳顯)이 차례로 시립(侍立)하였다. <중략> 행대사헌 정일상(鄭一祥), 대사간 임시철(林蓍喆), 장령 이정급(李延伋), 지평 윤치성(尹致性) · 한만유(韓晩裕), 교리 홍인호(洪仁浩), 부교리 김익휴(金翊休) · 윤호(尹護)¹²⁴, 정언 어석령(魚錫齡) · 이양재(李亮載), 수찬 이도겸(李度謙)¹²⁵ · 서미수(徐美修), 부수찬 김이정(金履正) · 윤득부(尹得孚)가 또 아뢰기를, “아, 애통합니다.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찌 역적 이택징과 역적 이유백 같이 흉악하기 그지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유사 이래로 들어보지도 못한 바인데, 그 소굴의 뿌리를 논하자면 이최중(李最中)입니다. 아, 앞잡이가 되는 역적을 빚어놓아 손을 잡고 거둬 부탁한 자가 이최중이고, 후전(後殿)의 흉악한 이유백(李有白)을 끌어내어 함께 모의하여 뇌물을 준 자가 이최중입니다. 이 상소를 홀로 알았다는 말은 역적 이택징의 공초에서 부신(符信)의 좌계(左契)¹²⁶를 잡은 것처럼 확실하고, 서소(書疏)를 삼가 알았다는 서찰은 이몽린(李夢麟)의 공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평소에 마음으로 결탁하고 모르는 곳에서 계획한 치밀함은 거의 진흙 속에서 싸우는 짐승과 같습니다. 비록 그가 국정(鞫庭)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하자면, 문후(問候)하는 한 조항이 가장 역소(逆疏)의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인데, 수작이 난만(爛熳)하여 감히 가려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가 주장하는 단안(斷案)인데 장전(帳殿)에서 친문(親問)할 때 너무나도 독하고 어그러진 말은 더더욱 분통이 터집니다. 아, 저 이최중은 지위가 경(卿)의 반열에 올랐고 몸 또한 휴퇴(休退)하였는데, 국가가 그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오직 품었던 마음을 기회를 틈타 일어나 그 조카 이의익을 폐기한 것 때문에 몰래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비밀리에 지극히 흉악한 계책을 세우고, 왼쪽에는 익(翊) 오른쪽에는 직(直)과 앞에는 이택징과 뒤에는

124) 윤호(1731~?): 본관 파평(坡平).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교리, 대사간 역임.

125) 이도겸(1750~?): 본관 연안(延安). 1778년(정조 2) 문과 급제.

126) 좌계(左契): 둘로 나눈 부신(符信) 가운데 왼쪽의 것으로 좌권(左券)과 같은 뜻인데, 여기서는 명확한 증거를 뜻함.

이유백을 마음대로 부려 얼굴을 바꾸어 번갈아 상소를 올리게 하였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최중은 곧 역적 이택징과 역적 이유백의 소굴의 뿌리입니다. 소굴 가운데 절로 소굴이 있고 뿌리 가운데 또한 뿌리가 있으니, 속히 캐물어 지금 타파하는 것은 오직 이최중을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캐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추문(推問)하고 갑자기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내렸으니, 왕법이 펴지지 못해서 여론이 더욱 격분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추자도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기어이 실정을 캐어내어 왕법(王法)을 흔쾌히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송환억(宋煥億)의 죄를 이루 다 주벌할 수 있겠습니까? 송환억은 성품이 요사스럽고 행실도 또한 음흉하여 세력있는 자의 부림을 받아 역적에 붙는 것을 달게 여기고,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숙부를 파는 것도 꺼리지 않아서 수세(手勢)에 돌연 음흉한 간교를 계획하였습니다. 혹 의론이 서로 통하는 것이 있으면 홍국영(洪國榮)¹²⁷에게 기꺼이 소개하였고, 혹 모계(謀計)를 꾸밈에 있어서는 한번 홍국영의 지휘를 듣고는 홍국영이 대계(大計)를 막아서 못하게 하던 날에 네 글자의 흉언(凶言)의 상소를 홍국영에게 받은 자가 송환억뿐이고, 이것을 송덕상(宋德相)¹²⁸에게 전한 자가 송환억뿐이었으니, 그 범한 죄를 논하자면 실로 송덕상보다 더한 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소의 초본 아래의 말은 더욱 흉악하고 참혹하니 네 글자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의 최악이 탄로난 날에 이르러서는 그가 감히 애매하게 미봉하는 계책을 내어 주석(註釋) 네 글자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습니다. 그가 상소를 올리기를 권하였다는 말이 이미 호옥(湖獄)¹²⁹의 죄수들의 공초에서 나왔고, 해서(海西)의 불령(不逞)한 무리들이 또 따라서 호응하며 서로 선동한 것이 점차 물들어 전일 이택징(李澤徵)·이유백(李有白)과 금일 인(仁)·경(京)의 극도로 흉악한 역적들에 이르면서 심보가 서로 연결되고 맥라이 서로 꿰어있습니다. 그 뿌리와 소굴을 논하자면 첫째도 송환억이고, 둘째도 송환억입니다. 어제 엄히 신문하였는데도 버티면서 자복하지 않은 것은 그 정상(情狀)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교묘하고 악독합니다. 엄히 형신(刑訊)

127) 홍국영(1748~1781): 자(字) 덕로(德老). 도승지 역임.

128) 송덕상(?~1783): 본관 은진(恩津). 자 숙함(叔咸). 호 과암(果菴). 사헌부지평, 한성부좌윤, 이조판서 역임.

129) 호옥(湖獄): 홍국영의 역모에 동참했다는 죄로 송덕상(宋德相)이 삼수부(三水府)로 안치되자, 그의 추종 세력들이 구명운동을 펼치다가 적발된 옥사를 말함.

을 가하여 일일이 자복을 받아내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반나절을 평문(平問)한 뒤에 도리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렸으니 옥사의 체모에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송환역을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형을 가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이최중, 송환역, 도배,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一月 九日 辛丑

- 以濟州牧使, 罪人韓尙得到配啓本, 傳于李時秀曰, 島中罪人之名數甚多, 移配他道事, 分付.

❖ 정조 7년(1783) 계묘년 1월 9일(신축)

- ☐ 죄인 한상득(韓尙得)이 배소에 도착했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계본에 대해 섬에 죄인의 수가 많으니 다른 도(道)로 이배하도록 분부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죄인 한상득(韓尙得)이 배소에 도착했다고 올린 계본(啓本)과 관련하여 이시수(李時秀)에게 전교하기를, “섬 안에 죄인의 수가 심히 많으니 다른 도(道)로 이배(移配)하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계본, 한상득, 이배.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一月 九日 辛丑

- 以濟州牧使, 閑良金光潤山訟, 從公決折事啓本, 傳于李時秀曰, 似此查啓, 前所未見, 渾淪模糊, 全失訟理之體, 特教行會之意, 果安在哉, 該牧使爲先緘辭, 從重推考, 令道臣嚴飭, 更爲指一狀聞, 後復如許, 何恤迎送之弊? 雖以道臣言之, 若能嚴明, 分付. 牧使所爲, 必不如是庸劣, 該道臣, 亦爲推考.

❖ 정조 7년(1783) 계묘년 1월 9일(신축)

- 한량 김광윤(金光潤)의 산송(山訟)을 모호하게 판결한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한량 김광윤(金光潤)의 산송(山訟)을 공무로 판결한 일과 관련하여 이시수(李時秀)에게 전교하기를, “이와 같은 조사 계본은 전에 보지 못한 것으로, 혼돈스럽고 모호하여 송사(訟事)를 처리하는 체모를 완전히 잃었으니, 특교(特教)로 행회(行會)¹³⁰⁾하게 한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해당 목사를 우선 함사(緘辭)¹³¹⁾하여 종중추고(從重推考)¹³²⁾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다시 하나로 결론지어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뒤에도 다시 이와 같다면 어찌 영송지폐(迎送之弊)를 구휼할 수 있겠는가? 비록 관찰사로 말하자면 만약에 엄격하고 명백하게 분부하였다면 목사가 한 일이 필시 이처럼 용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당 관찰사를 또한 추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계본, 김광윤, 산송, 종중추고.

130) 행회(行會): 각 관아의 관장(官長)이 조정의 새로운 명령 내용을 관아에 속한 아랫사람들에게 통지하는 것.

131) 함사(緘辭): 벼슬아치 중에 과오를 범한 자가 있을 때 대관(臺官)이 서독(書牘)으로 힐문하는 것.

132) 종중추고(從重推考): 관리의 업무상 과실이나 근무 태만, 책임 회피 등에 대한 주의와 경계를 목적으로 하는 처벌.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一月 九日 辛丑

- 金字鎭, 以賑恤廳言啓曰, 因傳教, 濟州貢果人十九名, 各米三斗式, 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7년(1783) 계묘년 1월 9일(신축)

- 제주공과인(濟州貢果人)에게 쌀을 분급(分給)하겠다는 진휼청의 초기
- 김우진(金字鎭)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전교에 따라서 제주공과인(濟州貢果人) 19명에게 각각 쌀 3말씩을 분급(分給)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공과인, 쌀, 분급.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一月 十日 壬寅

- 李時秀, 以刑曹言啓曰, 因濟州牧定配罪人韓尙得到配啓本, 島中罪人之名數甚多, 移配他島事, 命下矣. 罪人韓尙得昨年十二月初五日疎決時, 以未至配所抄入, 雖已出陸, 而依傳教, 移配他道事發關, 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7년(1783) 계묘년 1월 10일(임인)

□ 죄인 한상득(韓尙得)의 처리에 대한 형조의 초기

- 이시수(李時秀)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한상득(韓尙得)이 배소(配所)에 도착했다는 계본(啓本)에 따라서 섬 안의 죄인 수가 아주 많으니 다른 섬으로 이배(移配) 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한상득은 작년 12월 5일 소결(疎決)¹³³할 때 아직 배소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초입(抄入)하였습니다. 비록 이미 출륙하였지만 전교대로 다른 도(道)로 이배(移拜)하도록 하는 관문(關文)을 보내어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분부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한상득, 이배.

133) 소결(疎決):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흉한, 무더위, 가뭄이 있을 때 은전(恩典)을 베풀 목적으로 실시하는 특별 재판.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一月 十日 壬寅

- 李時秀, 以刑曹言啓曰, 卽伏見濟州牧使李文燦啓本, 則罪人金國祥, 以金光潤父葬, 私掘未至棺罪, 昨年十一月二十一日, 徒三年, 到配於大靜縣矣. 此是赦前到配, 又係徒年, 則所當依他例請放, 而今因金光潤山訟查啓, 有該牧使緘辭, 從重推考, 令道臣嚴飭, 更爲指一狀聞之命, 則更查之前, 有難遽然放送, 姑待結末稟處, 何如? 傳曰, 允. 訟理自訟理, 赦典自赦典, 特爲放送事, 分付.

❖ 정조 7년(1783) 계묘년 1월 10일(임인)

- 무덤을 파내고 관(棺)에 이르지 않은 죄로 대정현(大靜縣)에 정배된 김국상(金國祥)을 풀어주라는 전교
- 이시수(李時秀)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삼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문혁(李文燦)의 계본(啓本)을 보니, 죄인 김국상(金國祥)이 김광윤(金光潤)의 아버지를 장사지낸 것 때문에 사사로이 무덤을 파내고 관(棺)에 이르지 않은 죄로 작년 11월 21일 도(徒) 3년으로 대정현(大靜縣)에 배소로 갔습니다. 이것은 사면령이 내려지기 전에 배소에 도착한 것으로 또 도년(徒年)이니 마땅히 다른 사례에 의거하여 풀어주기를 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광윤의 산송(山訟)을 조사한 계본으로 인하여 해당 목사를 함사(緘辭)하여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다시 하나로 결론지어 장계로 보고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다시 조사하기 전에 갑자기 풀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결말을 기다려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송리(訟理)¹³⁴는 송리이고, 사면의 은전은 사면의 은전이니 특별히 풀어주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문혁, 김국상, 김광윤, 산송.

¹³⁴ 송리(訟理): 소송의 사유.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一月 十四日 丙午

- 司諫金翊休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월 14일(병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김익휴(金翊休)의 계
- 사간 김익휴(金翊休)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一月 十八日 庚戌

- 行大司憲鄭好仁, 執義李濟萬, 掌令安鼎大, 掌令申致權, 持平金孝眞, 持平徐配修, 正言申大尹, …… 請楸子島荏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亟寢煥億島配之命, 仍令王府, 加刑得情, 快施王章.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월 18일(경술)

- 죄인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헌 정호인(鄭好仁) 등의 계
- 행대사헌 정호인(鄭好仁)¹³⁵, 집의 이제만(李濟萬)¹³⁶, 장령 안정대(安鼎大)¹³⁷, 장령 신치권(申致權)¹³⁸, 지평 김효진(金孝眞), 지평 서배수(徐配修)¹³⁹, 정언 신대윤(申大尹)¹⁴⁰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청컨대 송환억(宋煥億)을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형을 가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시행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송환억, 국청.

135) 정호인(1728~?): 본관 영일(迎日). 자 중유(仲儒).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136) 이제만(1738~1810): 본관 전의(全義). 자 겸지(兼之). 호 수와(守窩).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이조정랑, 좌부승지, 병조참의 역임.

137) 안정대(安鼎大): 본관 죽산(竹山). 자 성보(成甫). 호 청헌(淸軒). 1756년(영조 32) 문과 급제.

138) 신치권(1722~?): 본관 고령(高靈). 자 이중(而中).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139) 서배수(1743~1796): 본관 대구(大丘). 자 양여(養汝). 1777년(정조 1) 문과 급제.

140) 신대윤(1739~?): 본관 평산(平山). 자 형백(衡伯).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一月 十八日 庚戌

- 執義李濟萬，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亟令王府，拿鞫嚴問. …… 答府曰，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월 18일(경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이제만(李濟萬)의 계
- 집의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一月 十八日 庚戌

- 正言申大尹,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월 18일(경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신대윤(申大尹)의 계
- 정언 신대윤(申大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一月 二十二日 甲寅

- 正言韓用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월 22일(갑인)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한용구(韓用龜)의 계
- 정언 한용구(韓用龜)¹⁴¹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141) 한용구(1747~1828): 본관 청주(淸州). 자 계형(季亨). 호 만오(晩悟). 1772년(영조 48) 문과 급제. 우의정, 판중추부사, 영의정 역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一月 二十五日 丁巳

- 李在學, 以義禁府言啓曰, 卽接平安監司徐浩修狀啓, 則以爲, 大逆不道罪人天湜, 旣已承服正刑, 其父母·妻妾·子女·祖孫·兄弟姊妹·子之妻妾·伯叔父·兄弟之子年歲姓名存沒居住, 詳查牒報于義禁府計料, 令該府考律, 分付, 以爲舉行之地. 籍沒家產·破家瀦澤·降邑號·罷守令等事, 令各該司, 奉承傳知委事啓下, 而大逆不道罪人天湜應坐諸人, 亦自本道, 查出以來矣. 天湜父士顯, 年六十九, 而自本營, 已爲捉囚云, 依例發遣府都事, 與地方官眼同處絞. 兄天有, 慶尙道巨濟府, 天煥, 全羅道靈光郡荏子島, 竝爲奴. …… 籍沒家產·破家瀦澤·降邑號·罷守令等事, 纔已草記矣. 待批下, 令各該司奉承傳舉行, 何如? 傳曰, 允. 士顯推問之時, 尙不杖斃乎? 問于該監營, 更令狀問後, 草記, 他餘應坐, 依草記施行. 其中稍有知覺人, 勿拘此草記, 直定配所於濟州事, 分付, 道臣押去之際, 別定將差, 無或亂雜之意, 一體嚴飭.

❖ 정조 7년(1783) 계묘년 1월 25일(정사)

- 대역부도 죄인 백천식(白天湜)에 대한 연좌를 각 해당 관사에 명하여 승전을 받들어 거행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초기(草記)에 대해 지각이 있는 자는 이 초기에 구애되지 말고 곧장 제주(濟州)에 배소를 정하도록 하라는 전교
- 이재학(李在學)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평안감사 서호수(徐浩修)의 장계를 보니, ‘대역부도 죄인 백천식(白天湜)이 이미 승복하여 사형에 처해졌으니, 그 부모·처첩·자녀·조손·형제자매·아들의 처첩·백부와 숙부·형제의 아들의 나이, 성명, 생몰 여부, 거주지를 상세히 조사하여 의금부에 첩보(牒報)하였습니다. 해당 부로 하여금 율문(律文)을 상고하여 분부하여 이를 거행할 바탕으로 삼게 하십시오. 가산을 적몰하고 집을 헐어 못을 만들고 읍호(邑號)를 강등하고 수령을 파직하는 등의 일은 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승전(承傳)을 받들어 통지하라고 계하(啓下)하였는데, 대역부도 죄인 천식(天湜)에 연좌해야 할 사람들은 본도(本道)에서 조사해 내왔습니다. 천식의 아버지 사현(士顯)은 나이가 69세로 본영(本營)에서 이미 잡아다 가두었다고 합니다. 규례대로 본부의 도사를 파견하여 지방관과 함께 참석한 곳에서 교수형을 집행하겠습니다. 형 천유(天有)는 경상도 거제부에, 천환(天煥)은 전라도 영광군 임자도에 모두 노비로 삼겠습니다. 〈중략〉 가산을 적몰하고 집을 헐어 못을 만들고 읍호를 강등하고 수령을 파직하는

등의 일은 이미 초기(草記)하였습니다. 비답이 내리기를 기다려 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승전을 받들어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사현(士顯)을 추문(推問)할 때 아직 장(杖)을 맞고 죽지 않았는가? 해당 감영에 물어 다시 장계로 보고하게 한 뒤에 초기하고, 기타 연좌해야 하는 일은 초기대로 시행하라. 그중에 조금 지각이 있는 자는 이 초기에 구애되지 말고 곧장 제주(濟州)에 배소를 정하도록 분부하라. 관찰사가 압송해 갈 때 별도로 나장(羅將)과 차사(差使)를 정하여 혹시라도 난잡한 뜻이 없도록 일체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백천식, 연좌, 제주, 배소.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一月 二十六日 戊午

- 李獻慶, 以刑曹言啓曰, 卽因義禁府啓辭, 大逆不道罪人, 天湜兄天有, 慶尙道巨濟府, 天俊, 全羅道靈光郡荏子島, 竝爲奴, …… 官稍有知覺人, 勿拘此草記, 直定配所於濟州事, 分付道臣, 押去之際, 別定將差, 無或亂雜之意, 一體嚴飭事, 命下矣. 罪人天有等, 依傳教別定勤幹將差, 押送於各其配所, 而押去之際, 另加檢束, 俾無亂雜事, 嚴飭發關, 分付於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7년(1783) 계묘년 1월 26일(무오)

- ☐ 대역부도 죄인 백천식(白天湜)과 연좌된 사람 중 관직에 조금이라도 지각(知覺)이 있는 자를 제주(濟州)의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형조의 초기
- 이헌경(李獻慶)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의금부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대역부도 죄인 백천식(白天湜)의 형 천유(天有)를 경상도 거제부, 천준(天俊)은 전라도 광령군에 모두 노(奴)로 삼았습니다. <중략> 관직에 조금이라도 지각(知覺)이 있는 사람은 이 초기(草記)에 구애받지 말고 곧바로 제주(濟州)에 배소를 정하도록 관찰사에게 분부하고, 압송해 갈 때 별도로 나장(羅將)과 차사(差使)를 정하여 혹시라도 난잡한 뜻이 없도록 일체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천유 등을 전교대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나장과 차사를 정하여 각기 배소로 압송하되, 압송해 갈 때 특별히 단속하여 난잡함이 없도록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도록 관문(關文)을 보내어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분부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백천식, 연좌, 제주, 배소.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三日 甲子

- 正言韓用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3일(갑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한용구(韓用龜)의 계
- 정언 한용구(韓用龜)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五日 丙寅

- 癸卯二月初五日辰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左議政李福源，右議政金煜，行知中樞府事具善復，行司直金華鎮，行禮曹判書鄭尙淳，戶曹判書李性源，工曹判書徐有慶，知中樞府事鄭民始，行副司直徐有隣，行副司直鄭一祥，刑曹判書嚴璫，咸春君李昌運，漢城左尹李柱國，開城留守徐有防，副校理沈基泰，正言韓用龜，行都承旨尹塾，記事官趙衍德，事變假注書成種仁，記注官金健修，記事官李崑秀，諸臣以次進伏訖。……璫曰，德相兩孫，定配所單子尙未下，故仍囚本曹矣。上曰，今當下之矣。璫曰，當初兩罪人配所，以黑山島·旌義縣爲定矣。今則德相子，定配於近島，何以爲之乎？上曰，改定配所，可也。……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5일(병인)

- 흑산도와 정의현(旌義縣)으로 정해졌던 송덕상(宋德相)의 두 손자에 대한 배소를 고쳐 정하라는 전교

- 계묘년 2월 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좌의정 이복원(李福源), 우의정 김익(金煜),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사직 김화진(金華鎭), 행예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호조판서 이성원(李性源), 공조판서 서유경(徐有慶), 지중추부사 정민시(鄭民始), 행부사직 서유린(徐有隣), 행부사직 정일상(鄭一祥), 형조판서 엄숙(嚴璫), 함춘군 이창운(李昌運), 한성좌윤 이주국(李柱國), 개성유수 서유방(徐有防), 부교리 심기태(沈基泰), 정언 한용구(韓用龜), 행도승지 윤숙(尹塾), 기사관 조연덕(趙衍德), 사변가주서 성종인(成種仁),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이곤수(李崑秀) 등 신하들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엄숙이 아뢰기를, “송덕상(宋德相)의 두 손자에 대한 배소를 정하는 단자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본조(本曹)에 갇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마땅히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엄숙이 아뢰기를, “당초 두 죄인의 배소는 흑산도와 정의현(旌義縣)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송덕상의 아들이 가까운 섬에 정배되었으니 어찌합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배소를 고쳐 정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송덕상, 손자, 배소.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十日 辛未

○ 執義呂善亨，司諫李濟萬，掌令魚錫齡，正言韓用龜啓曰，…… 噫嘻，痛矣。亂臣賊子，從古何限，而豈有若逆澤·白窮凶極惡？載籍以來，所未有所未聞者，而若論其窩窟根柢，則最中是已。噫，釀成前茅之逆澤，執手申托者最中也。圖出後殿之凶白，合謀行貨者最中也。此疏獨知之說，賊澤之供，如執左契，謹悉書疏之札，夢獐之招，不啻分明，平日腸肚之糾結，暗地排布之綱繆，殆同泥中之鬪獸，而雖以渠鞬庭自服者言之，問候一款，最爲逆疏之肯綮，而酬酢爛熳，不敢掩諱。此又是渠主張之斷案，而乃於帳殿親問之時，狠毒勃慢之說，尤極憤惋。噫，彼最中，位至列卿，身且休退，國家何負於渠，而非但包藏之心，乘機闖發，以其姪義翊之廢棄，陰懷怨懟之志，潛售窮凶之計，左翊右直，前澤後白，頤旨氣使，換面迭投，古今天下，寧有是耶？今此最中，即是逆澤逆白之窩窟根柢，而窩窟之中，自有窩窟，根柢之中，又有根柢，則亟加盤詰，趁今打破，惟在於最中之嚴鞫得情，而一經推問，遽下島配之命，王章未伸，輿憤益激。請楸子島荏棘罪人最中，更令王府，拿致設鞫，期於得情，決正王法。煥億之罪，可勝誅哉？性既妖邪，行且陰譎，勢之所使，甘心附賊，利之所在，不憚賣叔，手勢倏忽，設施陰巧，或有議論之相通，則甘爲紹介於國榮，或有謀計之排布，則一聽國榮之指揮，當國榮沮遏大計之日，四字凶言之疏，受之於國榮者，煥億是已，傳之於德相者煥億是已。論其負犯，實有浮於德相，而況其疏草，初本下語，尤極凶慘，有倍於四字者乎？及其罪惡彰露之日，渠敢生漫漶彌縫之計，註釋四字，誑惑群心，勸其疏舉之說，既發於湖獄諸囚之招，海西群不逞之輩，又從而響應，轉相煽動，爲其漸染，以至前日澤·白，今日仁·京之窮凶劇逆，而腸肚相連，脈絡相貫。若論其根柢窩窟，一則煥億，二則煥億。昨日嚴訊之下，抵賴不服者，究厥情狀，萬萬巧惡，不可不嚴加刑訊，一一取服，而半日平問之餘，反下酌處之命，揆以獄體，寧有是理？請亟寢煥億島配之命，仍令王府，加刑得情，決施王章。…… 答兩司曰，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10일(신미)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집의 여선형(呂善亨) 등의 계

○ 집의 여선형(呂善亨)¹⁴², 사간 이제만(李濟萬), 장령 어석령(魚錫齡), 정언 한용구

142) 여선형(?~?): 본관 함양(咸陽). 자 군회(君會). 1751년(영조 27) 문과 급제. 호조참판 역임.

(韓用龜)가 아뢰기를, “〈상략〉 아, 애통합니다.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찌 역적 이택징과 역적 이유백 같이 흉악하기 그지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유사 이래로 들어보지도 못한 바인데, 그 소굴의 뿌리를 논하자면 이최중(李最中)입니다. 아, 앞잡이가 되는 역적을 빚어놓아 손을 잡고 거둬 부탁한 자가 이최중이고, 후전(後殿)의 흉악한 이유백(李有白)을 끌어내어 함께 모의하여 뇌물을 준 자가 이최중입니다. 이 상소를 홀로 알았다는 말은 역적 이택징의 공초에서 부신(符信)의 좌계(左契)를 잡은 것처럼 확실하고, 서소(書疏)를 삼가 알았다는 서찰은 이몽린(李夢麟)의 공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평소에 마음으로 결탁하고 모르는 곳에서 계획한 치밀함은 거의 진흙속에서 싸우는 짐승과 같습니다. 비록 그가 국정(鞫庭)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하자면, 문후(問候)하는 한 조항이 가장 역소(逆疏)의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인데, 수작이 난만(爛熳)하여 감히 가려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가 주장하는 단안(斷案)인데 장전(帳殿)에서 친문(親問)할 때 너무나도 독하고 어그러진 말은 더더욱 분통이 터집니다. 아, 저 이최중은 지위가 경(卿)의 반열에 올랐고 몸 또한 휴퇴(休退)하였는데, 국가가 그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오직 품었던 마음을 기회를 틈타 일어나 그 조카 이의익을 폐기한 것 때문에 몰래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비밀리에 지극히 흉악한 계책을 세우고, 왼쪽에는 익(翊) 오른쪽에는 직(直)과 앞에는 이택징과 뒤에는 이유백을 마음대로 부려 얼굴을 바꾸어 번갈아 상소를 올리게 하였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최중은 곧 역적 이택징과 역적 이유백의 소굴의 뿌리입니다. 소굴 가운데 절로 소굴이 있고 뿌리 가운데 또한 뿌리가 있으니, 속히 캐몰어 지금 타파하는 것은 오직 이최중을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캐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추문(推問)하고 갑자기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내렸으니, 왕법이 펴지지 못해서 여론이 더욱 격분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추자도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기어이 실정을 캐내어 왕법(王法)을 흔쾌히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 송환억(宋煥億)의 죄를 이루 다 주벌할 수 있겠습니까? 송환억은 성품이 요사스럽고 행실도 또한 음흉하여 세력있는 자의 부림을 받아 역적에 붙는 것을 달게 여기고,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속부를 파는 것도 꺼리지 않아서 수세(手勢)에 돌연 음흉한 간교를 계획하였습니다. 혹 의론이 서로 통하는 것이 있으면 홍국영(洪國榮)에게 기꺼이 소개하였고, 혹 모계(謀計)를 꾸밈에 있어서는 한번 홍국영의 지휘를 듣고는 홍국영이 대계(大計)를 막아서 못하게 하던 날에 네 글자의 흉언(凶言)의 상소를 홍국영에게 받은 자가

송환역뿐이고, 이것을 송덕상(宋德相)에게 전한 자가 송환역뿐이었으니, 그 범한 죄를 논하자면 실로 송덕상보다 더한 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소의 초본 아래의 말은 더욱 흉악하고 참혹하니 네 글자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의 죄악이 탄로난 날에 이르러서는 그가 감히 애매하게 미봉하는 계책을 내어 주석(註釋) 네 글자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습니다. 그가 상소를 올리기를 권하였다는 말이 이미 호옥(湖獄)의 죄수들의 공초에서 나왔고, 해서(海西)의 불령(不逞)한 무리들이 또 따라서 호응하며 서로 선동한 것이 점차 물들어 전일 이택징(李澤徵)·이유백(李有白)과 금일 인(仁)·경(京)의 극도로 흉악한 역적들에 이르면서 심보가 서로 연결되고 맥라이 서로 껴어있습니다. 그 뿌리와 소굴을 논하자면 첫째도 송환역이고, 둘째도 송환역입니다. 어제 엄히 신문하였는데도 버티면서 자복하지 않은 것은 그 정상(情狀)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교묘하고 악독합니다. 엄히 형신(刑訊)을 가하여 일일이 자복을 받아내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반나절을 평문(平問)한 뒤에 도리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렸으니 옥사의 체모에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송환역을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형을 가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최중, 송환역, 도배,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十日 辛未

○ 執義呂善亨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聖中之罪, 可勝誅哉? 包藏禍心, 主張凶論, 敢托不敢言之地, 倡出不忍聞之說, 作爲窩主, 慫恿徒黨, 故徐有臣·朴宗甲·李義駿輩, 從而和之, 交口讚引. 噫嘻, 痛矣. 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且莫重義理, 倚托怪鬼輩, 欲售疑亂之計者, 究厥心腸, 與德師·載翰, 一串貫來者也. 不仕於先大王朝者, 卽先大王之逆臣, 先大王之逆臣, 豈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 而居謫以來, 小不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經年爭執, 尙追王章, 窮凶之節, 無以嚴覈, 亂賊之徒, 無所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噫嘻, 李普行之罪, 可勝誅哉? 賦性妖邪, 行已暗復賁[脅]肩諂笑, 情態難掩, 左右閃忽, 伎倆漸巧, 特一天生宵小之類耳. 口蜜腹劍, 林甫之後身, 狐媚狼顧, 京·惇之餘套, 以渠處地爲人, 幸際承乏, 兜攬至此則不思知分報效之心, 敢生眩惑跳踉之計, 其貽害世道, 將不知至於何境. 有識之憂歎固已久矣. 雖以今番事觀之, 亦出於計較利害之心, 外托懲討之義, 內售嘗試之計,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此於渠, 猶屬細故, 至於明義一部, 是何等大義理, 而渠之所論本事之外, 乃敢攙及於有樹立之大臣, 必欲漫漶義理, 欺瞞君父, 包藏禍心. 煽動一世, 若此不已, 則倫綱將至墜地, 凶孽亦必生心. 噫, 彼普行, 抑獨何意, 循私負國, 一至此哉? 其心所在, 有不可測, 而此又渠卽一斷案, 何幸聖明俯燭其情狀, 處分明快, 滿庭臣僚, 孰不欽仰? 而若論其負犯, 不可不一問, 快正其罪.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10일(신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여선형(呂善亨)의 계

○ 집의 여선형(呂善亨)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

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화심(禍心)을 품고 흉론(凶論)을 주장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의탁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앞장서서 내어 와주(窩主)가 되어 도당(徒黨)을 종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유신(徐有臣)·박종갑(朴宗甲)·이의준(李義駿)의 무리가 따라서 화답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선대왕(先大王) 때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전하에게 벼슬하여 재주와 포부를 펼치려 했다는 말은 더욱더 흉악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한 막중한 의리를 괴귀(怪鬼)의 무리에게 맡겨 의심하여 소란을 피우려는 계책을 부리고자 한 것은 그 심보를 따져보면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과 더불어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선대왕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로 바로 선대왕의 역신(逆臣)이고, 선대왕의 역신은 바로 전하의 역신인데, 어찌 잠시라도 천지 사이에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해를 넘겨 쟁집(爭執)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법을 면하고 있으니,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을 엄히 조사할 수 없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아! 이보행(李普行)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타고난 성품이 요사스럽고 몸가짐이 교만하여 어깨를 움츠리며 아양을 떠니 정태(情態)를 가리기 어렵고, 이리저리 변화무쌍하여 기량이 점점 교묘해지니 단지 하나의 타고난 간사하고 소견이 좁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뱃속에는 칼을 지녔으니 임보(林甫)의 후신(後身)이고, 여우의 눈썹을 하고 이리처럼 돌아보니 경(京)·돈(惇)의 여투(餘套)입니다. 그의 처지로써 사람이 되어 요행히 승핍(承乏)¹⁴³⁾을 만나 두람(兜攬)이 여기에 이르렀다면 분수를 알아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현혹하여 날뛰려는 계책을 내었으니, 그가 세도(世道)에 해를 끼치는 것이 장차 어느 지역에 이르게 될지 알 수 없어 식자(識者)들이 근심하고 탄식한 것이 실로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보더라도 또한 이해를

143) 승핍(承乏): 인제가 없어서 재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 벼슬을 함.

따지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겉으로는 징토(懲討)하는 의리를 핑계 대고 안으로는 떠보려는 계책을 꾸몄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그에게는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하겠지만 의리를 밝히는 한 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리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논한 본사(本事) 외에는 감히 수립(樹立)한 것이 있는 대신(大臣)을 끌어넣었으니, 필시 의리를 모호하게 하고 군부(君父)를 속이며 화심(禍心)을 감추고 한 세상을 선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그치게 하지 않는다면 윤강(倫綱)이 장차 땅에 떨어질 것이고 흉열(凶孽) 또한 반드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아, 저 이보행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사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저버린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릴 수 없지만 이것 또한 그의 한 단안(斷案)입니다만 얼마나 다행인지 성명(聖明)이 그 정상(情狀)을 굽어살펴 처분을 명쾌하게 하였으니, 온 조정의 신료들이 누군들 흠양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범한 죄를 논하자면 한 번 신문하여 꽤히 그 죄를 바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十日 辛未

- 正言韓用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府. …… 答院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10일(신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한용구(韓用龜)의 계
- 정언 한용구(韓用龜)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十一日 壬申

- 執義呂善亨, 司諫李濟萬, 掌令魚錫齡, 正言韓用龜啓曰, ……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11일(임신)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여선형(呂善亨) 등의 계
- 집의 여선형(呂善亨), 사간 이제만(李濟萬), 장령 어석령(魚錫齡), 정언 한용구(韓用龜)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十一日 壬申

- 掌令魚錫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11일(임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장령 어석령(魚錫齡)의 계
- 장령 어석령(魚錫齡)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十一日 壬申

- 司諫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11일(임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사간 이제만(李濟萬)의 계
- 사간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十二日 癸酉

- 執義呂善亨，司諫李濟萬，掌令魚錫齡，正言韓用龜啓曰，……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更令王府，拿致設鞫，期於得情，夫正王法。…… 答兩司曰，不允。【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12일(계유)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여선형(呂善亨) 등의 계
- 집의 여선형(呂善亨), 사간 이제만(李濟萬), 장령 어석령(魚錫齡), 정언 한용구(韓用龜)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十二日 癸酉

- 執義呂善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12일(계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여선형(呂善亨)의 계
- 집의 여선형(呂善亨)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十二日 癸酉

- 正言韓用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12일(계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한용구(韓用龜)의 계
- 정언 한용구(韓用龜)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十三日 甲戌

- 執義呂善亨，司諫李濟萬，掌令魚錫齡，正言韓用龜啓曰，……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更令王府，拿致設鞫，期於得情，夫正王法。請亟寢煥億島配之命，仍令王府，加刑得情，夫施王章。…… 答兩司曰，不允。【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13일(갑술)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여선형(呂善亨) 등의 계
- 집의 여선형(呂善亨), 사간 이제만(李濟萬), 장령 어석령(魚錫齡), 정언 한용구(韓用龜)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기어이 실정을 캐어내어 왕법(王法)을 흔쾌히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 청컨대 송환억(宋煥億)을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형을 가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시행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송환억.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十三日 甲戌

- 掌令魚錫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13일(갑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어석령(魚錫齡)의 계
- 장령 어석령(魚錫齡)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十三日 甲戌

- 司諫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13일(갑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이제만(李濟萬)의 계
- 사간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十九日 庚辰

- 癸卯二月十九日午時，上御誠正閣。召對入侍，宗簿提調·校正堂上·諸臺臣同爲入侍時，參贊官沈有鎮，侍讀官沈基泰，檢討官林道浩，閣臣李崑秀，假注書沈晉賢，編修官林鳳護，記事官金星甲，宗簿提調鄭一祥，校正堂上李潁，大司諫趙英鎮，掌令安鼎大，以次進伏訖。…… 鼎大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出學條】…… 鼎大曰，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設鞠嚴問，期於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出學條】…… 鼎大曰，請楸子島定配罪人趙嶠，亟寢酌處之命，仍令王府，設鞠得情，快正王法。上曰，向因赦典，既已酌處，今以故紙謄奏，殆失照檢矣。【出學條】…… 鼎大曰，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亟令王府，拿鞠嚴問。上曰，不允。【出學條】……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19일(경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계묘년 2월 19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소대(召對) 입시에 종부제조·교정당상·대신(臺臣)들이 함께 입시할 때 참찬관 심유진(沈有鎮), 시독관 심기태(沈基泰), 검토관 임도호(林道浩), 각신 이곤수(李崑秀), 가주서 심진현(沈晉賢), 편수관 임봉호(林鳳護), 기사관 김성갑(金星甲), 종부제조 정일상(鄭一祥), 교정당상 이양(李潁), 대사간 조영진(趙英鎮),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안정대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중략〉 안정대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중략〉 안정대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 정배죄인 조우(趙嶠)에 대해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사전(赦典)으로 인하여 이미 참작하여 처리하였으니, 지금 옛 종이를 베껴서 아되는 것은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중략〉

안정대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조우,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二十日 辛巳

- 行大司憲嚴璫, 掌令安鼎大, 正言韓光植啓曰, ……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20일(신사)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헌 엄숙(嚴璫) 등의 계
- 행대사헌 엄숙(嚴璫), 장령 안정대(安鼎大), 정언 한광식(韓光植)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二十日 辛巳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20일(신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二十日 辛巳

- 正言韓光植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20일(신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한광식(韓光植)의 계
- 정언 한광식(韓光植)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二十一日 壬午

- 行大司憲嚴璫, 掌令安鼎大, 正言韓光植·申大尹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決正王法.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請物故罪人國榮, 亟施孥籍之典. 請李義翊, 更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 答府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21일(임오)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헌 엄숙(嚴璫) 등의 계
- 행대사헌 엄숙(嚴璫), 장령 안정대(安鼎大), 정언 한광식(韓光植)·신대윤(申大尹)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장령 안정대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二十一日 壬午

- 正言申大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21일(임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신대윤(申大尹)의 계
- 정언 신대윤(申大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二十五日 丙戌

- 持平許啞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25일(병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허질(許啞)의 계
- 지평 허질(許啞)¹⁴⁴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144) 허질(1734~?): 본관 양천(陽川).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二月 二十五日 丙戌

- 癸卯二月二十五日辰時，上御誠正閣。備局堂上・校正堂上引見入侍時，知中樞府事具善復，行禮曹判書金華鎮，行副司直鄭尙淳・鄭民始，戶曹判書李性源，漢城判尹鄭昌聖，兵曹判書鄭好仁，刑曹判書徐有隣，行副司直鄭一祥，行大司憲嚴璫，副司直李昌運・李敬懋，掌令魚錫齡，校理李太亨，正言申大尹，行左承旨徐有大，假注書尹行任，事變假注書柳憲周，記注官金健修，記事官李崑秀，以次進伏訖。……璫等曰，請楸子島荏棘罪人最中，更令王府，拿致設鞫，期於得情，夫正王法。上曰，不允。【措語見上】璫等曰，請亟寢煥億島配之命，仍令王府，加刑得情，夫施王章。上曰，不允。【措語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2월 25일(병술)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헌 엄숙(嚴璫) 등의 계

- 계묘년 2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비국당상과 교정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예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부사직 정상순(鄭尙淳)・정민시(鄭民始), 호조판서 이성원(李性源), 한성판윤 정창성(鄭昌聖), 병조판서 정호인(鄭好仁), 형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행부사직 정일상(鄭一祥), 행대사헌 엄숙(嚴璫), 부사직 이창운(李昌運)・이경무(李敬懋), 장령 어석령(魚錫齡), 교리 이태형(李太亨), 정언 신대윤(申大尹), 행좌승지 서유대(徐有大), 가주서 윤행임(尹行任), 사변가주서 유헌주(柳憲周),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이곤수(李崑秀)가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엄숙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 엄숙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송환억(宋煥億)을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형을 가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이최중, 송환억,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三月 十二日 癸卯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3월 12일(계묘)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 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三月 二十日 辛未[辛亥]

- 大司諫金履禧, 執義呂善亨, 掌令安鼎大, 持平李錫夏, 正言李彥祐 · 洪秉益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決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3월 20일(신미[신해])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김이희(金履禧) 등의 계
- 대사간 김이희(金履禧)¹⁴⁵, 집의 여선형(呂善亨), 장령 안정대(安鼎大), 지평 이석하(李錫夏), 정언 이언호(李彦祐) · 홍병익(洪秉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145) 김이희(1727~?): 안동(安東). 자 치응(稚膺). 1759년(영조 35) 문과 급제. 김해부사, 대사성, 대사간 역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三月 二十日 辛未[辛亥]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3월 20일(신미[신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三月 二十日 辛未[辛亥]

- 正言李彦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3월 20일(신미[신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언호(李彦祐)의 계
- 정언 이언호(李彦祐)¹⁴⁶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146) 이언호(1736~?): 본관 용인(龍仁).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三月 二十一日 壬申[壬子]

- 掌令安鼎大, 正言洪秉益·李彦祐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3월 21일(임신[임자])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안정대(安鼎大) 등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 정언 홍병익(洪秉益)·이언호(李彦祐)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三月 二十一日 壬申[壬子]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正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3월 21일(임신[임자])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안정대(安鼎大) 등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三月 二十一日 壬申[壬子]

- 正言洪秉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下諭事, 依啓.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3월 21일(임신[임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홍병익(洪秉益)의 계
- 정언 홍병익(洪秉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三月 二十二日 癸酉[癸丑]

- 掌令安鼎大, 正言洪秉益·李彦祐啓曰, …… 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3월 22일(계유[계축])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안정대(安鼎大) 등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 정언 홍병익(洪秉益)·이언호(李彦祐)가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三月 二十二日 癸酉[癸丑]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3월 22일(계유[계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안정대(安鼎大) 등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三月 二十二日 癸酉[癸丑]

- 正言李彦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3월 22일(계유[계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언호(李彦祐)의 계
- 정언 이언호(李彦祐)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五日 甲申[乙丑]

- 以濟州牧使罪人汶倜·汶赫到配事啓本, 傳于鄭存中曰, 此等罪人, 各別嚴飭, 萬一疎虞, 自卿難免重勘, 惕念舉行事, 回諭.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5일(갑신[을축])

- 제주목사가 죄인 문척(汶倜)과 문혁(汶赫)이 배소에 도착했다고 올린 계본(啓本)에 대해 죄인에 대한 경계를 유념하여 거행하도록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가 죄인 문척(汶倜)과 문혁(汶赫)이 배소에 도착했다고 올린 계본(啓本)과 관련하여 정존중(鄭存中)¹⁴⁷에게 전교하기를, “이러한 죄인은 각별이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소홀히 하여 일을 그르친다면 경부터 중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도록 회유(回諭)¹⁴⁸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문척, 문혁, 배소, 제주목사, 계본.

147) 정존중(1721~1798): 본관 동래(東萊). 자 사정(士靜). 1780년(정조 4) 문과 급제. 대사간, 지의금부사, 공조판서 역임.

148) 회유(回諭): 회답하는 유지(諭旨).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八日 戊辰

- 三司合啓, 行大司憲徐有慶, 大司諫朴天行, 執義權職, 司諫李一曾, 掌令權坪·魚錫齡, 持平韓用龜·李秀夏, 副校理李魯春, 正言李彥祐, 修撰姜職·林道浩, 副修撰李泰永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 司諫李一曾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府啓, 持平韓用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8일(무진)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삼사(三司)의 계

- 삼사(三司)에서 합계(合啓)하였다. 행대사헌 서유경(徐有慶), 대사간 박천행(朴天行)¹⁴⁹, 집의 권엄(權職), 사간 이일증(李一曾)¹⁵⁰, 장령 권평(權坪)·어석령(魚錫齡), 지평 한용구(韓用龜)·이수하(李秀夏), 부교리 이노춘(李魯春)¹⁵¹, 정언 이언호(李彦祐), 수찬 강엄(姜職)·임도호(林道浩), 부수찬 이태영(李泰永)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사간 이일증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지평 한용구(韓用龜)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

149) 박천행(1730~1791): 본관 밀양(密陽). 자 여건(汝健).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정언, 지평, 대사간 역임.

150) 이일증(1730~?): 본관 고성(固城). 자 성유(聖唯). 1754년(영조 30) 문과 급제.

151) 이노춘(1752~?): 본관 덕수(德水). 자 군정(君正). 1780년(정조 4) 문과 급제. 이조참의, 강원도 관찰사, 대사성 역임.

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十一日 辛未

- 三司合啓, …… 兩司合啓, ……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曰, 不允. 府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11일(신미)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삼사(三司)의 계

- 삼사(三司)에서 합계(合啓)하였다. 〈중략〉 양사(兩司)에서 합계하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사헌부에게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十三日 癸酉

- 兩司合啓, 執義李濟萬, 司諫呂善亨, 掌令申致權 · 安鼎大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決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13일(계유)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양사(兩司)의 계
- 양사(兩司)에서 합계(合啓)하였다. 집의 이제만(李濟萬), 사간 여선형(呂善亨), 장령 신치권(申致權) ·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十三日 癸酉

- 府啓,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13일(계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十三日 癸酉

- 院啓, 司諫呂善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13일(계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뢰었다. 사간 여선형(呂善亨)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十六日 丙子

- 李亨元, 以備邊司言啓曰, 濟州牧使李文燦, 以其身病, 連呈辭狀矣. 實恙既若是難強, 則海島重任, 不可一向相持, 許遞, 其代, 令該曹各別擇送, 何如? 傳曰, 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16일(병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문혁(李文燦)의 체임을 요청하는 비변사의 초기
- 이형원(李亨元)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문혁(李文燦)이 신병을 이유로 연이어 사직 상소를 올렸습니다. 실제 병이 이처럼 억지로 하기 어렵다면 해도(海島)의 중임(重任)을 한결같이 고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체임을 허락하고, 그 대신에 해당 조(曹)로 하여금 각별히 걱정하여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문혁, 체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十七日 丁丑

- 以濟州牧使望筒，傳于尹塾曰，有資歷人，更爲各別擇擬以入.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17일(정축)

- ☐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자급(資級)과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 의망하여 들이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망단자(望單子)와 관련하여 윤숙(尹塾)에게 전교하기를, “자급(資級)과 경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각별히 가려 의망하여 들이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망단자, 의망.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十七日 丁丑

- 有政. 吏批, 判書俞彦鎬受由在外, 參判李敬養牌不進, 參議趙鼎鎭進, 右承旨金字鎭進. …… 以朴天行爲濟州牧使, …….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17일(정축)

- ☐ 박천행(朴天行)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유언호(兪彦鎬)는 말미를 받아 지방에 있고, 참판 이경양(李敬養)은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참의 조정진(趙鼎鎭)이 나왔고, 우승지 김우진(金字鎭)이 나왔다. <중략> 박천행(朴天行)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박천행.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十七日 丁丑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17일(정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十八日 戊寅

- 林錫喆, 以禮曹言啓曰, 卽接四館所所報, 則壬寅年濟州直赴殿試人幼學金鏞[壩], 通德郎邊景祐, 幼學姜聖翊, 今已上來, 依例許赴於殿試事報來矣. 依所報許赴於今番增廣文科殿試, 何如? 傳曰, 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18일(무인)

- 제주(濟州)의 직부전시인 김용(金鏞) 등의 전시 응시 허락을 요청하는 예조의 초기
- 임석철(林錫喆)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사관소(四館所)의 보고를 보니, 임인년에 제주(濟州)에서 직부전시(直赴殿試) 하도록 한 유학 김용(金鏞), 통덕랑 변경우(邊景祐), 유학 강성익(姜聖翊)이 지금 이미 올라왔으므로 규례대로 전시(殿試)에 응시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보고한 대로 이번 증광문과 전시에 응시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전시직부, 김용, 변경우, 강성익.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十八日 戊寅

- 癸卯四月十八日辰時, 上御誠正閣. 晝講入侍, 軍士房承旨, 詣臺臺臣, 同爲入侍時, 特進官洪良浩, 同知事趙時俊, 參贊官林錫喆, 侍讀官趙興鎮, 檢討官李鼎運, 假注書李翼晉, 記事官李崑秀·尹行任, 宗臣西清君煜, 武臣宋載岳, 右承旨金字鎮, 掌令安鼎大, 正言申大尹, 以次進伏訖. …… (鼎大·興鎮·大尹·鼎運等)又啓曰,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鞠, 期於得情, 決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 鼎大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鼎大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 鼎大曰,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鞠嚴問. 【措辭見上】 上曰, 不允. …… 大尹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 大尹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18일(무인)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안정대(安鼎大) 등의 계
- 계묘년 4월 18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주강(晝講) 입시에 군사방승지와 대각(臺閣)에 나온 대신(臺臣)이 함께 입시할 때 특진관 홍양호(洪良浩), 동지사 조시준(趙時俊), 참찬관 임석철(林錫喆), 시독관 조흥진(趙興鎭), 검토회 이정운(李鼎運), 가주서 이익진(李翼晉),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 종신 서청군 이성(李煜), 무신 송재악(宋載岳), 우승지 김우진(金字鎭), 장령 안정대(安鼎大), 정언 신대윤(申大尹)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안정대·조흥진¹⁵²⁾·신대윤·이정운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안정대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

152) 조흥진(1748~1814): 본관 풍양(豐壤). 자 수보(秀甫).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시호 숙정(肅靜), 충헌(忠獻). 의주부윤, 병조참판, 한성부우윤 역임.

다.”라고 하였다. 〈중략〉 안정대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안정대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신대운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신대운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日 庚辰

- 有政. 吏批, 判書俞彦鎬在外, 參議趙鼎鎭試所進, 參判李敬養進, 承旨林錫喆進. ……
以南玄老爲濟州牧使, …….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0일(경진)

- ☐ 남현로(南玄老)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유언호(兪彦鎬)는 지방에 있고, 참의 조정진(趙鼎鎭)은 시소(試所)에 나아갔고, 참판 이경양(李敬養)이 나왔고, 승지 임석철(林錫喆)이 나왔다. 〈중략〉 남현로(南玄老)¹⁵³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남현로, 제주목사.

153) 남현로(?~?): 본관 의령(宜寧). 자 동보(同甫). 1756년(영조 32) 문과 급제. 승지, 대사성 역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日 庚辰

○ 癸卯四月二十日辰時，上御仁政殿。親臨文武科殿試入侍時，左承旨李亨元，右承旨金字鎮，左副承旨徐鼎修，右副承旨林錫喆，同副承旨吳大益，假注書金良倜·張志默，記注官金鳳顯，記事官尹行任，讀券官鄭存謙·黃景源·朴祐源，對讀官金憲·趙鼎鎮·洪明浩，考官洪樂性·鄭尙淳·李敬懋，參考官鄭東俊·南玄老·李潤慶·洪和輔，以次序立訖。…… 上曰，濟州學子招入。學子進伏。上曰，入格者幾人，未入格者幾人？敬懋曰，三十人中，入格者六人也。上曰，入格者立後班，未入格者立前班。學子等以次進伏。上曰，遯矣海島之人，涉海遠來，今番若不入格，則何以更來乎？七技中尙餘三技，汝輩之所長何技耶？學子等各言長技。上曰，汝輩能讀兵書否？學子等四五人外，咸曰，未能讀矣。上曰，日尙未中，盡日力而學得，則足可通一篇。行首宣傳官，熟習兵書，汝等往而學之。末端進講學子等退出。…… 命書傳教曰，以御使·牧使弟兄之年年入島，事面極爲苟艱。濟州牧使朴天行改差，今日政，各別擇擬。……。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0일(경진)

- 임금이 제주거자(濟州學子)를 불러 미입격자에게 병서 읽기를 익히도록 하고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천행(朴天行)을 개차(改差)함
- 계묘년 4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으로 나아갔다. 친임 문과전시에 입시할 때 좌승지 이형원(李亨元), 우승지 김우진(金字鎮), 좌부승지 서정수(徐鼎修), 우부승지 임석철(林錫喆), 동부승지 오대익(吳大益), 가주서 김양척(金良倜)·장지묵(張志默),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윤행임(尹行任), 독권관 정존겸(鄭存謙)·황경원(黃景源)·박우원(朴祐源), 대독관 김희(金憲)·조정진(趙鼎鎮)·홍명호(洪明浩), 고관 김락성(洪樂性)·정상순(鄭尙淳)·이경무(李敬懋), 참고관 정동준(鄭東俊)·남현로(南玄老)·이윤경(李潤慶)·홍화보(洪和輔)가 차례로 시립(侍立)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거자(濟州學子)를 불러들여라.”라고 하였다. 거자가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입격자는 몇 인이고, 미입격자는 몇 인인가?”라고 하였다. 이경무가 아뢰기를, “30인 중에 입격자는 6인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입격자는 후반(後班)에 서고, 미입격자는 전반(前班)에 서라.”라고 하였다. 거자들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먼해도(海島)의 사람이 바다를 건너 멀리서 왔는데 지금 만약에 입격하지 못한다

면 어찌 다시 오겠는가? 7기(技) 중에 아직 3기가 남았는데, 너희들이 잘하는 것은 어떤 기예인가?”라고 하였다. 거자들이 각기 잘하는 기예를 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병서를 읽는 것에 능한가?”라고 하였다. 거자들 4, 5인 외에 모두 말하기를, “아직 읽는 것에 능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해가 아직 중천이 아니니 하루종일 힘을 내어 배우면 족히 1편은 통할 수 있을 것이다. 행수선전관이 병서를 익숙하게 배웠으니 너희들은 가서 배워라.”라고 하였다. 말단의 진강거자(進講擧子)들이 물러나갔다. <중략> 쓰라고 전교하여 말하기를, “어사와 목사로 형제가 해마다 섬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의 체모에 있어 극히 구차스럽다.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천행(朴天行)을 개차(改差)하고 오늘 정사에서 각별히 택정하여 의망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거자, 제주목사, 박천행, 개차.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一日 辛巳

- 大司憲鄭好仁, 大司諫尹承烈, 執義李濟萬, 掌令申致權·安鼎大, 持平徐配修·金孝眞, 校理趙興鎭·姜儉, 副修撰李鼎運, 正言申大尹·姜垣啓曰, 請黜置罪人鄭致達妻爲先還配海島, 仍令王府, 快正典刑, 以洩神人之憤. …… 大司憲鄭好仁, 大司諫尹承烈, 執義李濟萬, 掌令申致權·安鼎大, 持平徐配修·金孝眞, 正言申大尹·姜垣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鞠, 期於得情, 快定王法. 請亟寢煥億島配之命, 仍令王府, 加刑得情. 快施王章, …… 答曰, 不允.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鞠嚴問. …… 答曰, 不允. 正言姜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1일(신사)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정호인(鄭好仁) 등의 계
- 대사헌 정호인(鄭好仁), 대사간 윤승렬(尹承烈), 집의 이제만(李濟萬), 장령 신치권(申致權)·안정대(安鼎大), 지평 서배수(徐配修)·김효진(金孝眞), 교리 조흥진(趙興鎭)·강인(姜儉), 부수찬 이정운(李鼎運), 정언 신대운(申大尹)·강원(姜垣)이 아뢰기를, “내쫓아 안치한 죄인 정치달의 처를 우선 도로 해도(海島)에 정배하고 이어 의금부로 하여금 속히 전형(典刑)을 바꾸어 귀신과 사람의 울분을 씻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대사헌 정호인(鄭好仁), 대사간 윤승렬(尹承烈), 집의 이제만(李濟萬), 장령 신치권(申致權)·안정대(安鼎大), 지평 서배수(徐配修)·김효진(金孝眞), 정언 신대운(申大尹)·강원(姜垣)¹⁵⁴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청컨대 송환억(宋煥億)을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형을 가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시행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장령 안정대가 아뢰기를, “청컨

154) 강원(1717~?): 본관 진주(晉州). 1780년(정조 4) 문과 급제.

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정언 강원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최중, 송환억, 김수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二日 壬午

- 癸卯四月二十二日辰時，上詣仁政殿。親臨放榜入侍時，行都承旨沈頤之，左承旨李亨元，右承旨徐鼎修，左副承旨林錫喆，右副承旨吳大益，同副承旨黃昇源，假注書金良倜·鄭良翰，記事官李崑秀·尹行任，以次進伏。……景祐進前。上曰，汝是濟州壯元乎？景祐曰，壯元則金墉也。上命頤之書傳教曰，濟州文武科，再明日謁聖後，皆令來待，仍命新榜分館，皆令一兩日內爲之。【出楊教】……。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2일(임오)

- 제주(濟州)의 문무과(文武科) 입격자를 알성(謁聖) 한 뒤에 대령하게 하라는 전교
- 계묘년 4월 22일 진시에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으로 나아갔다. 방방(放榜)의 친림에 입시하였을 때 행도승지 심이지(沈頤之), 좌승지 이형원(李亨元), 우승지 서정수(徐鼎修), 좌부승지 임석철(林錫喆), 우부승지 오대익(吳大益), 동부승지 황승원(黃昇源), 가주서 김양척(金良倜)·정양한(鄭良翰),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변경우(邊景祐)가 앞으로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가 제주(濟州)의 장원인가?”라고 하였다. 변경우가 아뢰기를, “장원은 김용(金墉)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심이지에게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제주의 문무과(文武科) 입격자를 모레 알성(謁聖) 한 뒤에 모두 와서 대령하게 하고, 이어 신방(新榜)을 분관(分館)¹⁵⁵⁾ 하도록 명하며, 모두 하루 이를 내에 거행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어전에서 하교를 냄】 <하략>

△ 주제어: 변경우, 김용.

155) 분관(分館): 문과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에 나누어 소속시키는 것.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三日 癸未

- 大司憲鄭好仁, 司諫李福徽, 執義李濟萬, 掌令安鼎大·申致權, 持平徐配修·金孝眞, 校理趙興鎭·姜儼, 副修撰金載人·李鼎運, 正言申大尹·姜垣啓曰, 請黜置罪人鄭致達妻爲先還配海島, 仍令王府, 快正典刑, 以洩神人之憤. ……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亟寢煥億島配之命, 仍令王府, 加刑得情, 快施王章. …… 答曰, 不允. 掌令申致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曰, 不允. 正言姜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3일(계미)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정호인(鄭好仁) 등의 계

- 대사헌 정호인(鄭好仁), 사간 이복휘(李福徽), 집의 이제만(李濟萬), 장령 안정대(安鼎大)·신치권(申致權), 지평 서배수(徐配修)·김효진(金孝眞), 교리 조흥진(趙興鎭)·강인(姜儼), 부수찬 김재인(金載人)·이정원(李鼎運), 정언 신대윤(申大尹)·강원(姜垣)이 아뢰기를, “내쫓아 안치한 죄인 정치달의 처를 우선 도로 해도(海島)에 정배하고 이어 의금부로 하여금 속히 전형(典刑)을 바꾸어 귀신과 사람의 울분을 씻어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청컨대 송환억(宋煥億)을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속히 멈추고 의금부로 하여금 형을 가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시행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장령 신치권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정언 강원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최중, 송환억,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四日 甲申

- 行大司憲鄭好仁, 執義李濟萬, 司諫李福徽, 掌令安鼎大·申致權, 持平金孝眞·徐配修, 正言姜垣·申大尹啓曰, ……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三司曰, 不允.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4일(갑신)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헌 정호인(鄭好仁) 등의 계
- 행대사헌 정호인(鄭好仁), 집의 이제만(李濟萬), 사간 이복휘(李福徽), 장령 안정대(安鼎大)·신치권(申致權), 지평 김효진(金孝眞)·서배수(徐配修), 정언 강원(姜垣)·신대윤(申大尹)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삼사(三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四日 甲申

- 掌令申致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4일(갑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신치권(申致權)의 계
- 장령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四日 甲申

- 正言姜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措辭竝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4일(갑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강원(姜垣)의 계
- 정언 강원(姜垣)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모두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五日 乙酉

- 以濟州牧使薦望，傳于尹承烈曰，首擬之人，纔自絕塞還朝，旋令往赴絕域，則此非曲諒於朴天行之本意，其在一視之政，不欲行斑駁之舉，更以無故人另擇擬薦之意，言于廟堂.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5일(을유)

- 제주목사(濟州牧使)를 별다른 사정이 없는 사람으로 가려 천망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천망(薦望)과 관련하여 윤승렬(尹承烈)에게 전교하기를, “수망(首望)으로 의망된 사람을 이제 막 절새(絕塞)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절역(絕域)으로 부임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박천행(朴天行)의 본뜻을 곡진히 헤아린 것이 아니다. 일시(一視)의 정사에 있어서 뒤섞는 거조를 하고 싶지 않다. 다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사람을 특별히 가려 뽑아 천망하도록 묘당에게 말하여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천망.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五日 乙酉

○ 備邊司薦望, 嚴思晩爲濟州牧使.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5일(을유)

□ 엄사만(嚴思晩)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비변사가 천망(薦望)하여 엄사만(嚴思晩)¹⁵⁶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 주제어: 제주목사, 엄사만.

156) 엄사만(1729~?): 본관 영월(寧越). 자 과회(寡悔).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제주목사(재임: 1783. 6.~1785. 5.) 역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五日 乙酉

- 尹承烈, 以兵曹言啓曰, 依傳教, 濟州子弟武舉人, 越薦後轉報事, 分付三廳矣. 卽接宣傳官廳·部將廳·守門將廳牒報, 則新及第吳聖準·姜聖煒·丁德九·姜渭祥·元世赫·金重連·文仁奎·金鼎豪·金聲顯·李景哲·丁德七·康允文·趙光泗·尹光宗·金慶礎等十五人部薦越薦, 朴師悌·朴時中·金光瑞·宋廷顯·宋弼完·李大成·金應泰·李景勳·李元芳·白重朝·吳命濟·吳彥邦·金貴澤·金成殷·李成胤等十五人守薦越薦, 而宣薦則無越薦人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5일(을유)

- 제주자제(濟州子弟)로 무과에 합격한 사람을 월천(越薦)한 뒤에 보고하는 병조의 초기
- 윤승렬(尹承烈)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교대로 제주자제(濟州子弟)로 무과에 합격한 사람을 월천(越薦)¹⁵⁷한 뒤 전하여 보고하도록 삼청(三廳)에 분부하였습니니다. 방금 선전관청·부장청·수문장청의 첩보를 보니 새로 급제한 오성준(吳聖準)·강성위(姜聖煒)·정덕구(丁德九)·강위상(姜渭祥)·원세혁(元世赫)·김중연(金重連)·문인규(文仁奎)·김정호(金鼎豪)·김성현(金聲顯)·이경철(李景哲)·정덕칠(丁德七)·강운문(康允文)·조광사(趙光泗)·윤광종(尹光宗)·김경초(金慶礎) 등 15인은 부천(部薦)¹⁵⁸에 월천하였고, 박사제(朴師悌)·박시중(朴時中)·김광서(金光瑞)·송정현(宋廷顯)·송필완(宋弼完)·이대성(李大成)·김응태(金應泰)·이경훈(李景勳)·이원방(李元芳)·백중조(白重朝)·오명제(吳命濟)·오언방(吳彦邦)·김귀택(金貴澤)·김성은(金成殷)·이성운(李成胤) 등 15인이 수천(守薦)¹⁵⁹에 월천하였는데, 선천(宣薦)¹⁶⁰에는 월천한 사람이 없다는 뜻을 감히 아뢰니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자제, 무과, 월천, 부천, 수천.

157) 월천(越薦): 선천(宣薦) 또는 다른 관직에 대한 천거를 통과하는 경우에 쓰이는 말.

158) 부천(部薦): 무과 출신으로서 부장(部將)에 천거된 것.

159) 수천(守薦): 수문관(守門官)으로 천거된 것.

160) 선천(宣薦): 선전관(宣傳官)으로 천거된 것.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五日 乙酉

- 癸卯四月二十五日卯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左議政洪樂性, 左參贊金華鎮, 兵曹判書鄭尙淳, 右參贊鄭昌聖, 禮曹判書徐浩修, 刑曹判書鄭民始, 戶曹判書徐有隣, 工曹判書李埤, 咸春君李昌運, 行副司直趙時俊, 大司諫金履禧, 執義李濟萬, 掌令安鼎大, 持平徐配修, 正言姜垣·申大尹, 校理姜儔, 副修撰金載人, 行都承旨沈頤之, 假注書李敬五, 事變假注書金熙朝, 記注官金鳳顯, 記事官李崑秀, 以次進伏訖. …… 樂性曰, 濟州牧使南玄老, 自來虛脆, 近又衰病, 強令赴任於瘴海之地, 則實有難言之慮云, 宜有朝家軫念之道矣. 今姑改差, 其代, 令該曹口傳各別擇差,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 (履禧·濟萬·鼎大·配修·垣·大尹) 又曰, 請楸子島荏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濟萬·鼎大·配修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又曰,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 履禧·垣·大尹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5일(을유)

- 제주목사(濟州牧使) 남현로(南玄老)를 개차(改差)하고,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김이희(金履禧) 등의 계
- 계묘년 4월 25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때 좌의정 홍낙성(洪樂性), 좌참찬 김화진(金華鎭), 병조판서 정상순(鄭尙淳), 우참찬 정창성(鄭昌聖), 예조판서 서호수(徐浩修), 형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공조판서 이갑(李埤), 함춘군 이창운(李昌運), 행부사직 조시준(趙時俊), 대사간 김이희(金履禧), 집의 이제만(李濟萬), 장령 안정대(安鼎大), 지평 서배수(徐配修), 정언 강원(姜垣)·신대운(申大尹), 교리 강인(姜儔), 부수찬 김재인(金載人), 행도승지 심이지(沈頤之),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사변가주서 김희조(金熙朝),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이곤수(李崑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홍낙성이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남현로

(南玄老)가 본래 허약한데다 근래에 또 쇠약해져 억지로 장기(瘴氣)가 있는 바닷가에 부임하게 한다면 실로 말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의당 조정에서 마음을 써서 근심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단 개차(改差)하고, 그 대신 해당 조(曹)로 하여금 구전정사(口傳政事)로 각별히 가려 차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중략〉 김이희·이제만·안정대·서배수·강원·신대윤이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제만·안정대·서배수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이희·강원·신대윤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남현로, 개차,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五日 乙酉

- 癸卯四月二十五日午時，上御誠正閣。右副承旨入侍時，右副承旨吳大益，假注書李敬五，記事官金龍倪，記注官金鳳顯，以次進伏訖。……又命書傳教曰，耽羅絕域也，素稱海防重鎮，體任之非輕，視萊·灣無異，較之南城隋城，反有加焉。彼四窠則用廟剎，獨於此地，委之銓曹，政格也，官方也，俱無所據，今後濟州牧使，自廟堂議薦事，定式施行。仍命退，承史以次出。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5일(을유)

-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의정부에서 추천하여 임명하게 하라는 전교
- 계묘년 4월 25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우부승지가 입시할 때 우부승지 오대익(吳大益),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기사관 김용현(金龍倪), 기주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또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제주(濟州)는 외딴 지역이므로 평소 바다 방어의 중진(重鎭)으로 일컬어져 왔으니, 임무의 중요함이 가볍지 않아서 동래(東萊)·의주(義州)에 비교해 볼 때 다름이 없고 남성(南城)이나 수성(隋城)에 비교해 보면 도리어 더 중요하다. 저 네 자리는 의정부의 추천으로 등용하였는데, 유독 이 자리만 전조(銓曹)에다 위임하고 있으니, 정사의 격식에서나 관방(官方)에서나 모두 근거할 데가 없다. 앞으로 제주목사(濟州牧使)는 의정부에서 추천하여 임명하게 하되, 규식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¹⁶¹⁾ 이어서 물러가도록 명하니,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나갔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의정부, 추천.

161) 이상은 《정조실록》 권15, 정조 7년 4월 2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五日 乙酉

- 癸卯四月二十五日申時, 上御誠正閣. 右承旨持公事入侍時, 右承旨林錫喆, 假注書李敬五, 記注官金鳳顯, 記事官李崑秀, 檢校直閣鄭東浚,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牧使薦望催促. 賤臣承命出, 持望筒入. 上命書榻教曰, 濟州牧使改望以入. 賤臣承命出, 持改望入. 上曰, 此改望還給後, 以似此小事, 屢勤飭教, 慨然之意, 發牌備郎, 傳于左相, 而酉前望筒未及, 則備郎當棍汰矣. 仍命退, 諸臣以次出.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5일(을유)

- 제주목사(濟州牧使)를 개망(改望)하라는 전교

- 계묘년 4월 25일 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우승지가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할 때 우승지 임석철(林錫喆),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이곤수(李崑秀), 검교직각 정동준(鄭東浚)이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천망(薦望)을 재촉하라.”라고 하였다. 천신이 명을 받들고 나가 망단자(望單子)를 가지고 들어왔다. 임금이 쓰라고 명하여 어전에서 하교하기를, “제주목사를 개망(改望)하여 들여라.”라고 하였다. 천신이 명을 받들고 나가 개망단자를 가지고 들어왔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개망단자를 도로 내준 후에 이와같은 작은 일로 여러 차례 수고롭게 신척하는 하교를 내리니 개탄스럽게 여긴다는 뜻을 비변사 낭청에게 패(牌)를 보내어 좌의정에게 전하고, 유시(酉時) 이전에 망당자가 미치지 않는다면 비변사 낭청을 마땅히 곤장을 쳐서 파면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물러가도록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나갔다.

△ 주제어: 제주목사, 개망.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六日 丙戌

- 黃昇源, 以兵曹言啓曰, 依傳教, 濟州武科人中部薦人, 部將仕滿一窠代, 擬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6일(병술)

- 제주(濟州) 무과급제자 중에 부천인(部薦人)을 사만(仕滿)한 부장(部將)의 한 자리에 대신하여 의망하여 들이겠다는 병조의 초기
- 황승원(黃昇源)¹⁶²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교대로 제주(濟州) 무과급제자 중 부천인(部薦人)을 부장(部將)으로 사만(仕滿)한 한 자리를 대신하여 의망하여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무과급제, 부천인, 부장, 의망.

162) 황승원(1732~1807): 본관 장수(長水). 자 윤지(允之). 시호 문헌(文獻).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판의금부사, 우참찬, 이조판서 역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六日 丙戌

- 李在學, 以備邊司言啓曰, 廟薦則雖罷職不敘, 備擬與否, 草記事, 命下矣. 廟薦則罷職及罷職不敘人, 不拘擬望, 曾有已例, 故昨日濟州牧使望, 乃敢援例擬入矣. 受點後請敘, 例自銓曹舉行, 而銓曹時無行公堂上, 不得舉行云. 新除授濟州牧使嚴思晩, 敘用何如? 傳曰, 允. 若此則同時坐勘之人, 竝當一體敘用乎? 係是科試事, 乍罷旋敘, 亦不無遽然之嫌乎? 卿其參量, 指一論理, 草記稟處, 可也.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6일(병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의 서용을 요청하는 비변사의 초기
- 이재학(李在學)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의정부의 추천은 비록 파직불서용(罷職不敘用)이라도 의망(擬望)의 여부를 초기(草記)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의 추천은 파직 및 파직불서용의 사람을 구애하지 말고 의망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망(望)에 감히 전례를 원용하여 의망하여 들였던 것입니다. 낙점을 받은 뒤에 서용하기를 청하는 것은 으레 전조(銓曹)에서 거행하는 것인데, 전조에 지금 공무를 행할 당상이 없어 거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 제수된 제주목사 엄사만(嚴思晩)을 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여한다. 이와같다면 동시에 처벌받은 사람들도 모두 일체 서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과시(科試)에 관계된 일로 잠시 파직되었다가 곧바로 서용되는 것 또한 경솔하다는 혐의가 없지 않겠는가? 경은 참작하여 한 가지 논리를 가지고 초기(草記)로 품처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엄사만, 서용.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六日 丙戌

- 癸卯四月二十六日卯時, 上御宣政殿. 抄啓文臣親試入侍時, 左承旨李在學, 右承旨林錫喆, 假注書李敬五, 記事官金龍倪, 記注官金鳳顯,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子弟, 使之入侍. 上命書傳教曰, 西北道科時, 文出身之上京者, 特命出六調用, 蓋出綏遠人之意. 況耽羅, 地是絕域, 在朝家軫念之道, 豈可不用兩道已例? 濟州文科出身邊景祐·金墉·康聖翊, 竝令該曹, 六品遷轉, 郎署窠隨卽調用, 武出身三十人, 亦依西北例, 令兵曹及各營收用後, 草記. 其中自願留京人外, 乞還本鄉之類, 相當窠今日內, 次次檢擬事, 分付. 民始曰, 濟州出身, 今將輪差, 本廳哨官李洺·宋載瑗, 今姑改差,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6일(병술)

- 과거에 급제한 문무과 출신의 제주자제(濟州子弟)를 조용(調用)하게 하라는 전교
- 계묘년 4월 26일 묘시에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으로 나아갔다. 초계문신(抄啓文臣)¹⁶³의 친시(親試)에 입시할 때 좌승지 이재학(李在學), 우승지 임석철(林錫喆),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기사관 김용현(金龍倪), 기주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자제(濟州子弟)를 입시하게 하라.” 라고 하였다. 임금이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평안도와 함경도의 도과(道科)를 설행할 때 문과 출신으로 상경한 자를 특명으로 6품으로 올려 조용(調用)하는 것은 먼 지방의 사람을 편안히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더군다나 제주 지역이 절역(絶域)으로 조정에서 돌보아 걱정하여 생각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두 도(道)의 전례를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주(濟州) 문과 출신 변경우(邊景祐)·김용(金墉)·강성익(康聖翊)을 모두 해당 조(曹)로 하여금 6품으로 벼슬자리를 옮겨 낭관(郎官)의 자리가 나는데로 즉시 조용하게 하라. 무과 출신 30인 또한 평안도와 함경도의 사례에 의거해서 병조 및 각 영(營)으로 하여금 수용하게 한 후에 초기(草記)하라. 그 가운데 서울에 머물기를 자원하는 사람 외에 본향(本鄉)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는 부류는 걸맞는 자리를 오늘 안으로 차례차례 살

163) 초계문신(抄啓文臣): 초계는 정조 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37세 이하의 당하문신(堂下文臣)을 뽑아서 규장각에 소속시켜 공부하게 하는 한편 매달 강경(講經)과 제술(製述)로 시험 보이던 일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소속된 신하를 초계문신(抄啓文臣)이라 함.

퍼 의망하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제주 출신을 지금 윤차(輪差)하려고 하니 본청의 초관 이명(李潁)·송재원(宋載瑗)을 지금 일단 개차(改差)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락〉.

△ 주제어: 제주자제, 변경우, 김용, 강성익, 조용.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六日 丙戌

- 癸卯四月二十六日未時，上御誠正閣。吏房承旨入侍時，右承旨林錫喆，記事官尹行任，記注官金鳳顯，記事官李崑秀，以次進伏訖。……上曰，近日國體，可謂寒心。濟州牧使望，至於七改，今以嚴思晚爲擬受點，而頃以試官事，方在罷職不敘中。廟堂事，亦甚苟艱，發牌備邊郎，詳問以啓。上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6일(병술)

- 파직불서용(罷職不敘用) 중에 있는 엄사만(嚴思晩)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의망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보고하여 아뢰라는 전교
- 계묘년 4월 26일 미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이방승지가 입시할 때 우승지 임석철(林錫喆), 기사관 윤행임(尹行任),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이곤수(李崑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나라의 체모가 한심하다고 할 만하다. 제주목사(濟州牧使)의 망(望)이 일곱 번이나 바뀌어 지금 엄사만(嚴思晩)으로 의망하여 낙점을 받았는데, 지난번 시관(試官)의 일로 지금 파직불서용(罷職不敘用) 중에 있다. 의정부의 일이 또한 심히 구차하니, 비변사 낭청에게 패(牌)를 보내어 자세히 물어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물러가라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갔다.

△ 주제어: 제주목사, 엄사만, 파직불서용, 의망.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九日 己丑

- 吏批啓曰, 判書兪彥鎬受由在外, 參判未差,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只出緊任. …… 以嚴思晩單付濟州牧使, …… 承傳.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9일(기축)

□ 엄사만(嚴思晩)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단부(單付)함

- 이비(吏批)가 아뢰기를, “판서 유언호(兪彦鎬)는 말미를 받아 지방에 있고, 참판은 아직 차정되지 않아서 소신이 혼자 정사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니 어찌합니까?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긴요한 직임만 차출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엄사만(嚴思晩)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단부(單付)하라는 <중략> 전교를 받들었다.

△ 주제어: 엄사만, 제주목사.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九日 己丑

- 癸卯四月二十九日未時，上御誠正閣。同副承旨入侍時，同副承旨尹承烈，假注書李儒修，記注官金健修，記事官尹行任，以次進伏訖。……上命書傳教曰，政官牌招開政，濟州文科六人，今日政，皆令調用。……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9일(기축)

- 제주(濟州) 문과 6인을 모두 조용(調用)하도록 하라는 전교
- 계묘년 4월 29일 미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동부승지가 입시할 때 동부승지 윤승렬(尹承烈), 가주서 이유수(李儒修),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정관(政官)을 패초(牌招)하여 정사를 열고 제주(濟州) 문과 6인을 오늘 정사(政事)에서 모두 조용(調用)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문과, 조용.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四月 二十九日 己丑

- 癸卯四月二十九日申時，上御誠正閣。坐直承旨持公事入侍時，檢校直提學鄭民始，左承旨李在學，假注書朴命燮，記事官李崑秀·尹行任，以次進伏訖。……上曰，濟州文官作窠付職事，何以爲之？知入。賤臣承命出，自上有所敍之命，而吏曹無首堂，故亞堂不得舉行事，微稟。上曰，斯速擬入。賤臣承命出，政事望筒捧入。命退，諸臣退出。

❖ 정조 7년(1783) 계묘년 4월 29일(기축)

□ 제주(濟州) 출신 문관의 조용(調用)을 재촉하는 전교

- 계묘년 4월 29일 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좌직승지가 공사를 가지고 입시할 때 검교직제학 정민시(鄭民始), 좌승지 이재학(李在學), 가주서 박명섭(朴命燮),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출신 문관에 대해 빈 자리를 만들어 관직에 붙이도록 한 일은 어찌되었는가? 알아보고 오라.”라고 하였다. 천신이 명을 받들고 나갔다. 임금께서 승진시켜 서용하라는 명이 있었지만 이조에 수석 당상이 없기 때문에 아당(亞堂)이 거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의망하여 들이게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이 명을 받들고 나가서 정사(政事)의 망단자(望單子)를 봉입(捧入)하였다. 임금이 물러가라 명하니 신하들이 물러나갔다.

△ 주제어: 제주 출신, 문관, 의망, 망단자.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五月 四日 甲子[甲午]

- 洪履健,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之意啓曰, 濟州前判官李亨默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7년(1783) 계묘년 5월 4일(갑자[갑오])

-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이형묵(李亨默)의 체임진상마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홍이건(洪履健)이 사복시 관원으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이형묵(李亨默)의 체임진상마 3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면서 전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立養)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이형묵, 체임진상마.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五月 二十二日 壬子

○ 傳于黃昇源曰, 濟州牧使留待.

❖ 정조 7년(1783) 계묘년 5월 22일(임자)

□ 제주목사(濟州牧使)를 대령하게 하라는 전교

○ 황승원(黃昇源)에게 전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를 머물러 대령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대령.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五月 二十二日 壬子

- 備忘記, 濟州牧使嚴思晩下直, 長弓一張, 長箭一部, 片箭一部, 筒兒一箇, 賜給.

❖ 정조 7년(1783) 계묘년 5월 22일(임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에게 장궁(長弓) 등을 사급(賜給)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¹⁶⁴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이 하직하니, 장궁(長弓) 1장, 장전(長箭) 1부, 편전(片箭) 1부, 통아(筒兒) 1개를 사급(賜給)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엄사만, 사급.

164) 비망기(備忘記): 임금이 명령이나 의견을 적어서 승지에게 전하던 문서.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五月 二十二日 壬子

- 癸卯五月二十二日卯時，上御誠正閣。諸承旨持公事入侍時，行都承旨沈豐之，左承旨李在學，右承旨趙鼎鎮，左副承旨黃昇源，右副承旨李時秀，同副承旨李重馥，檢校直閣徐龍輔，假注書朴能源，記事官李崑秀·尹行任，以次進伏訖。上曰，濟州牧使入侍。賤臣承命出，與濟州牧使嚴思晚偕入。…….

❖ 정조 7년(1783) 계묘년 5월 22일(임자)

- ☐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입시(入侍)하게 하라는 전교
- 계묘년 5월 22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사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도승지 심풍지(沈豐之), 좌승지 이재학(李在學), 우승지 조정진(趙鼎鎭), 좌부승지 황승원(黃昇源), 우부승지 이시수(李時秀), 동부승지 이중복(李重馥), 검교직각 서용보(徐龍輔), 가주서 박능원(朴能源),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입시(入侍)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이 명을 받들고 나가 제주목사 엄사만(嚴思晩)과 함께 들어왔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엄사만, 입시.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六日 丙寅

- 癸卯六月初六日卯時，上御宣政殿。常參·次對同爲入侍時，領議政鄭存謙，判府事徐命善·鄭弘淳，右議政李福源，漢城判尹具善復，行兵曹判書李命植，左參贊金華鎮，吏曹判書徐浩修，右參贊鄭昌聖，行司直徐有慶·鄭民始，戶曹判書徐有隣，刑曹判書鄭一祥，行大司憲李垺，行副司直李柱國，訓練都正李敬懋，護軍徐有大，行副司直趙時俊，大司諫洪明浩，執義洪文泳，掌令李魯春·趙興鎮，持平申耆·李百亨，正言李顯默·趙恒鎮，校理李太亨，副修撰林道浩，行都承旨鄭昌順，左承旨尹勉升，右承旨李在學，左副承旨林錫喆，右副承旨金憲，同副承旨尹尙東，假注書朴能源·李敬五，記事官李崑秀·尹行任，以次進伏訖。…… 三司進前合啓曰，……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更令王府，拿致設鞫，期於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 府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亟令王府，拿鞫嚴問。上曰，不允。…… 院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竝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快正王法。上曰，亟停勿煩。……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6일(병인)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삼사(三司)의 계

- 계묘년 6월 6일 묘시에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으로 나아갔다. 상참(常參)과 차대(次對)가 함께 입시할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판부사 서명선(徐命善)·정홍순(鄭弘淳), 우의정 이봉원(李福源), 한성판윤 구선복(具善復), 행병조판서 이명식(李命植), 좌참찬 김화진(金華鎮), 이조판서 서호수(徐浩修), 우참찬 정창성(鄭昌聖), 행사직 서유경(徐有慶)·정민시(鄭民始),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형조판서 정일상(鄭一祥), 행대사헌 이갑(李垺),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호군 서유대(徐有大), 행부사직 조시준(趙時俊), 대사간 홍명호(洪明浩), 집의 홍문영(洪文泳), 장령 이노춘(李魯春)·조흥진(趙興鎮), 지평 신기(申耆)·이백형(李百亨), 정언 이현묵(李顯默)·조항진(趙恒鎮), 교리 이태형(李太亨), 부수찬 임도호(林道浩), 행도승지 정창순(鄭昌順), 좌승지 윤면승(尹勉升), 우승지 이재학(李在學), 좌부승지 임석철(林錫喆), 우부승지 김희(金憲), 동부승지 윤상동(尹尙東), 가

주서 박능원(朴能源)·이경오(李敬五),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엮드렸다. <중략> 삼사(三司)가 앞으로 나와 합계(合啓)하여 이르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九日 己巳

- 司諫沈基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9일(기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심기태(沈基泰)의 계
- 사간 심기태(沈基泰)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十一日 辛未

- 持平洪聖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措辭見上】 …….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11일(신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홍성연(洪聖淵)의 계
- 지평 홍성연(洪聖淵)¹⁶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165) 홍성연(1741~?): 본관 남양(南陽). 자 사광(士廣).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대사간, 동지의금부사, 병조참판 역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十二日 壬申

- 行大司憲李埤, 大司諫洪明浩, 執義洪文泳, 持平申耆·洪聖淵, 正言趙恒鎭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12일(임신)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헌 이갑갑(李岬) 등의 계
- 행대사헌 이갑(李岬)¹⁶⁶, 대사간 홍명호(洪明浩)¹⁶⁷, 집의 홍문영(洪文泳)¹⁶⁸, 지평 신기(申耆)·홍성연(洪聖淵), 정언 조항진(趙恒鎭)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鞠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166) 이갑(?~?): 본관 연안(延安). 자 신경(信卿). 1769년(영조 45) 문과 급제. 호조참판, 함경도관찰사, 황해도관찰사 역임.

167) 홍명호(1736~1819): 본관 풍산(豊山). 자 공서(公舒).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예조판서, 한성부판윤, 판의금부사 역임.

168) 홍문영(1732~?): 본관 남양(南陽). 자 숙장(叔章). 1777년(정조 1) 문과 급제. 대사간, 병조참의, 승지 역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十二日 壬申

- 持平申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12일(임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신기(申耆)의 계

- 지평 신기(申耆)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十二日 壬申

- 正言趙恒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12일(임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조항진(趙恒鎭)의 계
- 정언 조항진(趙恒鎭)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十三日 癸酉

- 行大司憲李埤, 大司諫洪明浩, 持平申耆 · 洪聖淵, 獻納申致權, 正言趙恒鎭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13일(계유)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헌 이갑(李埤) 등의 계
- 행대사헌 이갑(李埤), 대사간 홍명호(洪明浩), 지평 신기(申耆) · 홍성연(洪聖淵),
헌납 신치권(申致權), 정언 조항진(趙恒鎭)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鞠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十三日 癸酉

- 持平洪聖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措辭見上】 …….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13일(계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홍성연(洪聖淵)의 계
- 지평 홍성연(洪聖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十三日 癸酉

- 正言趙恒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13일(계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조항진(趙恒鎭)의 계
- 정언 조항진(趙恒鎭)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十四日 甲戌

- 行大司憲李埤, 大司諫洪明浩, 持平申耆 · 洪聖淵, 獻納申致權, 正言趙恒鎭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14일(갑술)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헌 이갑(李埈) 등의 계
- 행대사헌 이갑(李埈), 대사간 홍명호(洪明浩), 지평 신기(申耆) · 홍성연(洪聖淵), 헌납 신치권(申致權), 정언 조항진(趙恒鎭)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鞠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十四日 甲戌

- 持平申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14일(갑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신기(申耆)의 계
- 지평 신기(申耆)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十四日 甲戌

- 正言趙恒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14일(갑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조항진(趙恒鎭)의 계
- 정언 조항진(趙恒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十五日 乙亥

- 行大司憲李埤, 大司諫洪明浩, 持平申耆 · 洪聖淵, 獻納申致權, 正言趙恒鎭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決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15일(을해)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헌 이갑(李埈) 등의 계
- 행대사헌 이갑(李埈), 대사간 홍명호(洪明浩), 지평 신기(申耆) · 홍성연(洪聖淵), 헌납 신치권(申致權), 정언 조항진(趙恒鎭)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十五日 乙亥

- 持平洪聖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15일(을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홍성연(洪聖淵)의 계
- 지평 홍성연(洪聖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十五日 乙亥

- 正言趙恒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15일(을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조항진(趙恒鎭)의 계
- 정언 조항진(趙恒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十六日 丙子

- 行大司憲李埤, 大司諫洪明浩, 持平申耆 · 洪聖淵, 獻納申致權, 正言趙恒鎭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決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16일(병자)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헌 이갑(李埈) 등의 계
- 행대사헌 이갑(李埈), 대사간 홍성호(洪明浩), 지평 신기(申耆) · 홍성연(洪聖淵), 헌납 신치권(申致權), 정언 조항진(趙恒鎭)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十六日 丙子

- 持平申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16일(병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신기(申耆)의 계
- 지평 신기(申耆)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十六日 丙子

- 正言趙恒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16일(병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조항진(趙恒鎭)의 계
- 정언 조항진(趙恒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十七日 丁丑

- 禁府啓曰, 分軍部將鄭泰曾原情云云. …… 持平申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鞠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17일(정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신기(申耆)의 계
- 의금부의 계목(啓目)에 “군사를 배정하는 부장 정태증의 원정(原情) 운운하고, 〈하략〉”라고 하였다. 〈중략〉 지평 신기(申耆)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二十日 庚辰

- 李鼎揆, 以義禁府言啓曰, 慶尙道巨濟南海定配罪人及爲奴婢罪人別單中, 巨濟府處絞罪人燾子仁得, 逆律罪人儀之妻甲意, 逆賊翰申妻應伊, 永屬官婢罪人五德, 逆賊天湜兄天有, 南海縣逆賊寅濟妻彭伊, 逆賊壽垣孫女孝任, 逆賊鳳星孫二夢, 逆賊鳳煥子莫大, 處絞罪人燾子善得, 逆賊弘範妾時丹·女月乙郎, 逆賊榮得庶姪現得, 永屬爲婢罪人連伊等竝移配, 而相考刑曹徒流案後, 更爲分定配所草記事, 命下矣. …… 右罪人等, 俱是島配罪人, 以絕島分排, 而濟州三邑及黑山·秋子·珍島等處, 則罪人數多, 故不爲磨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20일(경진)

- 도배죄인(島配罪人)을 절도(絶島)에 분배했으나 제주(濟州)의 삼읍과 흑산도·추자도·진도 등은 죄인의 수가 많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의금부의 초기
- 이정규(李鼎揆)¹⁶⁹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경상도 거제 남해 정배죄인 및 노비로 삼은 죄인의 별단(別單) 중에 교형(絞刑)에 처한 죄인 이당(李燾)의 아들 인득(仁得), 역률죄인 의(儀)의 처 갑의(甲意), 역적 한신(翰申)의 처 응이(應伊), 관비(官婢)에 영속(永屬)한 죄인 오덕(五德), 역적 천식(天湜)의 형 천유(天有), 남해현 역적 인제(寅濟)의 처 팽이(彭伊), 역적 수원(壽垣)의 손녀 효임(孝任), 역적 봉성(鳳星)의 손자 이몽(二夢), 역적 봉황(鳳煥)의 아들 막대(莫大), 교형에 처한 죄인 이당의 아들 선득(善得), 역적 홍범(弘範)의 첩 시단(時丹)·여월을랑(女月乙郎), 역적 영득(榮得)의 서질 현득(現得), 비(婢)에 영속한 죄인 연이(連伊) 등을 이배(移配)하되, 형조의 도류안(徒流案)을 대조한 후에 다시 배소를 분정(分定)한 후 초기(草記)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중략> 위 죄인들은 모두 도배죄인(島配罪人)이어서 절도(絶島)에 분배하였는데, 제주 삼읍 및 흑산도·추자도·진도 등에는 죄인의 수가 많아서 배소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도배죄인, 삼읍, 추자도.

169) 이정규(?~?): 본관 여주(驪州). 1768년(영조 44) 문과 급제. 도승지 역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二十日 庚辰

- 李鼎揆, 以刑曹言啓曰, 慶尙道巨濟府南海縣定配罪人別單, …… 金後文移配濟州, …… 命下矣. …… 金後文, 濟州牧, …… 別定將差, 嚴飭押送各其配所官, …… 分付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20일(경진)

- 김후문(金後文)을 제주목(濟州牧)으로 이배하겠다는 형조의 초기
- 이정규(李鼎揆)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경상도 거제부 남해현 정배죄인 별단(別單)에 〈중략〉 김후문(金後文)을 제주(濟州)로 〈중략〉 이배(移配)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중략〉 김후문을 제주목(濟州牧)에 〈중략〉 나장(羅將)과 차사(差使)를 별도로 정하여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배소관(配所官)으로 압송할 것을 〈중략〉 관찰사에게 분부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후문, 제주목, 이배.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二十日 庚辰

○ 癸卯六月二十日卯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鄭存謙，行兵曹判書李命植，行司直鄭尙淳，右參贊鄭昌聖，吏曹判書徐浩修，工曹判書鄭民始，戶曹判書徐有隣，刑曹判書鄭一祥，行副司直嚴璫，禮曹判書李在協，行副司直李柱國，行訓練都正李敬懋，行副司直徐有大，行大司憲李埤，戶曹參判趙時俊，大司諫洪明浩，持平申耆，校理林道浩，副修撰沈基泰，行右承旨朴祐源，假注書朴能源，事變假注書沈銖，記注官金健修(記注官金健修)，記事官李祖承，以次進伏訖。…… (明浩·耆)又曰，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更令王府，拿致設鞫，期於得情，決正王法。上曰，不允。…… 耆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又曰，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決正王法。上曰，不允。…… 又曰，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亟令王府，拿鞫嚴問。上曰，不允。…… 明浩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 又曰，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竝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決正王法。上曰，亟停勿煩。……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20일(경진)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홍명호(洪明浩) 등의 계

○ 계묘년 6월 20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행병조판서 이명식(李命植), 행사직 정상순(鄭尙淳), 우참찬 정창성(鄭昌聖), 이조판서 서호수(徐浩修), 공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형조판서 정일상(鄭一祥), 행부사직 엄숙(嚴璫), 예조판서 이재협(李在協),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행훈련도정 이경무(李敬懋), 행부사직 서유대(徐有大), 행대사헌 이갑(李埤), 호조참판 조시준(趙時俊), 대사간 홍명호(洪明浩), 지평 신기(申耆), 교리 임도호(林道浩), 부수찬 심기태(沈基泰), 행우승지 박우원(朴祐源), 가주서 박능원(朴能源), 사변가주서 심수(沈銖),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이조승(李祖承)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홍명호·신기가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신기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

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홍명호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二十四日 甲申

○ 三司合啓, …… 兩司合啓, 大司諫尹行元, 執義沈基泰, 掌令金宗鐸, 持平李書九, 正言宋民載·趙弘鎭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鞠, 期於得情, 決正王法. …… 答曰, 不允. 府啓, 掌令金宗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鞠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鞠嚴問. …… 答曰, 不允. …… 院啓, 正言趙弘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設鞠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24일(갑신)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양사(兩司)의 계

○ 삼사(三司)에서 합계(合啓)하였다. 〈중략〉 양사(兩司)에서 합계하였다. 대사간 윤행원(尹行元)¹⁷⁰, 집의 심기태(沈基泰)¹⁷¹, 장령 김종탁(金宗鐸)¹⁷², 지평 이서구(李書九)¹⁷³, 정언 송민재(宋民載)¹⁷⁴·조홍진(趙弘鎭)¹⁷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장령 김종탁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170) 윤행원(1732~?): 본관 파평(坡平). 자 백춘(伯春).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대사간, 우승지, 대사성 역임.

171) 심기태(1728~?): 본관 청송(靑松). 자 선여(善與).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172) 김종탁(1728~?): 본관 청송(靑松). 1776년(정조 즉위년) 문과 급제.

173) 이서구(1754~1825): 본관 전주(全州). 자 낙서(洛瑞). 호 강산(薑山)·척재(惕齋)·소완정(素玩亭)·석모산인(席帽山人). 호조판서, 대제학, 우의정 역임. 저서 《강산집》, 《척재집》.

174) 송민재(1734~?): 본관 여산(礪山). 자 득이(得而).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175) 조홍진(1743~1821): 본관 풍양(豐壤). 자 관보(寬甫).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이조좌랑, 사간원사간, 승지 역임.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서 아뢰었다. 정언 조흥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六月 二十五日 乙酉

- 癸卯六月二十五日卯時，上御宣政殿。常參次對，同爲入侍時，領議政鄭存謙，判府事徐命善，行知中樞府事具善復，行司直鄭尙淳，右參贊鄭昌聖，漢城判尹鄭好仁，行副司直徐有慶，工曹判書鄭民始，戶曹判書徐有隣，刑曹判書鄭一祥，行副司直嚴璫，禮曹判書李在協，延豐君李埤，行副司直李柱國，行訓練院都正李敬懋，行副司直徐有大，戶曹參判趙時俊，漢城右尹鄭志儉，刑曹參判沈豐之，吏曹參判李敬養，兵曹參判柳義養，大司諫尹行元，執義沈基泰，司諫洪彦喆，掌令李運彬·金宗鐸，校理鄭在信，副校理林道浩，正言宋民載·趙弘鎭，修撰洪文泳·吳泰賢，檢校待教李崑秀，待教尹行任，行都承旨鄭昌順，行左承旨閔鍾顯，右承旨李在學，左副承旨李亨元，右副承旨徐龍輔，同副承旨趙興鎭，假注書徐滢修·申大龜，記注官金健修，記事官李祖承，以次進伏訖。……府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又曰，請大靜縣爲奴罪人聖中，亟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決正王法。上曰，不允。……又曰，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亟令王府拿鞫嚴問。上曰，不允。……院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又曰，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竝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決正王法。上曰，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6월 25일(을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양사(兩司)의 계

- 계묘년 6월 25일 묘시에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으로 나아갔다. 상참(常參)과 차대(次對)가 함께 입시할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판부사 서명선(徐命善),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사직 정상순(鄭尙淳), 우참찬 정창성(鄭昌聖), 한성판윤 정호인(鄭好仁), 행부사직 서유경(徐有慶), 공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형조판서 정일상(鄭一祥), 행부사직 엄숙(嚴璫), 예조판서 이재협(李在協), 연풍군 이갑(李埤),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행훈련원도정 이경무(李敬懋), 행부사직 서유대(徐有大), 호조참판 조시준(趙時俊), 한성우윤 정사검(鄭志儉), 형조참판 심풍지(沈豐之), 이조참판 이경양(李敬養), 병조참판 유의양(柳義養), 대사간 윤행원(尹行元), 집의 심기태(沈基泰), 사간 홍언철(洪彦喆), 장령 이운빈(李運彬)·김종탁(金宗鐸), 교리 정재신(鄭在信), 부교리 임도호(林道浩), 정언 송민재(宋民載)·조홍진(趙弘鎭), 수찬 홍문영(洪文泳)·오테현(吳泰賢), 검교대교

이곤수(李崑秀), 대교 윤행임(尹行任), 행도승지 정창순(鄭昌順), 행좌승지 민중현(閔鍾顯), 우승지 이재학(李在學), 좌부승지 이형원(李亨元), 우부승지 서용보(徐龍輔), 동부승지 조흥진(趙興鎭), 가주서 서형수(徐滢修)·신대귀(申大龜),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이조승(李祖承)이 차례로 나와 엮드렸다. <중략>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七月 二日 辛卯

- 癸卯七月初二日卯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鄭存謙，行知中樞府事具善復，行左參贊金華鎮，行司直鄭尙淳，右參贊鄭昌聖，行大司憲鄭好仁，吏曹判書徐浩修，工曹判書鄭民始，戶曹判書徐有隣，刑曹判書鄭一祥，行副司直嚴璫，禮曹判書李在協，行副司直李柱國，漢城左尹李敬懋，行副司直徐有大，行右承旨鄭志儉，刑曹參判朴祐源，行都承旨沈豐之，同副承旨趙興鎮，假注書徐滢修，事變假注書金良倜，記事官李崑秀·尹行任，以次進伏訖。…… 好仁等曰，楸子島荏棘罪人最中，更令王府，拿致設鞫，期於得情，決正王法。【措語見上】上曰，不允。…… 好仁等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措語見上】上曰，不允。…… 好仁等曰，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決正王法。…… 好仁等曰，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亟令王府，拿鞫嚴問。【措語見上】上曰，不允。…… 彥喆等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措語見上】上曰，不允。…… 彥喆等曰，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竝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決正王法。【措語見上】上曰，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7월 2일(신묘)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헌 정호인(鄭好仁) 등의 계
- 계묘년 7월 2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항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좌참찬 김화진(金華鎭), 행사직 정상순(鄭尙淳), 우참찬 정창성(鄭昌聖), 행대사헌 정호인(鄭好仁), 이조판서 서호수(徐浩修), 공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형조판서 정일상(鄭一祥), 행부사직 엄숙(嚴璫), 예조판서 이재협(李在協),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한성좌윤 이경무(李敬懋), 행부사직 서유대(徐有大), 행우승지 정지검(鄭志儉), 형조참판 박우원(朴祐源), 행도승지 심풍지(沈豐之), 동부승지 조흥진(趙興鎭), 가주서 서형수(徐滢修), 사변가주서 김양척(金良倜),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정호인 등이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

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호인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호인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정호인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홍언철(洪彦喆)¹⁷⁶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홍언철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176) 홍언철(1729~?): 본관 남양(南陽). 자 치명(稚明). 1763년(영조 39) 문과 급제.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七月 三日 壬辰

- 行大司憲鄭好仁, 執義沈基泰, 司諫洪彦喆, 掌令李運彬 · 金宗鐸, 持平權裕, 正言宋民載 · 洪聖淵啓曰, ……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決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7월 3일(임진)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헌 정호인(鄭好仁) 등의 계
- 행대사헌 정호인(鄭好仁), 집의 심기태(沈基泰), 사간 홍언철(洪彦喆), 장령 이운빈(李運彬)¹⁷⁷ · 김종탁(金宗鐸), 지평 권유(權裕)¹⁷⁸, 정언 송민재(宋民載) · 홍성연(洪聖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177) 이운빈(1730~?): 본관 여주(驪州). 자 성광(聖光).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사간원사간, 사헌부집의, 제주목사(재임: 1791. 8.~1792. 3.) 역임.

178) 권유(1730~1804): 본관 안동(安東). 자 성수(聖垂). 호 국포(菊圃). 1769년(영조 45) 문과 급제. 공조판서, 좌참찬, 대사헌 역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七月 三日 壬辰

- 持平權裕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7월 3일(임진)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권유(權裕)의 계
- 지평 권유(權裕)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七月 三日 壬辰

- 正言宋民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7월 3일(임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송민재(宋民載)의 계
- 정언 송민재(宋民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七月 五日 甲午

- 持平權裕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答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7월 5일(갑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권유(權裕)의 계
- 지평 권유(權裕)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七月 十一日 庚子

- 持平權裕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7월 11일(경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권유(權裕)의 계
- 지평 권유(權裕)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七月 十一日 庚子

- 癸卯七月十一日巳時，上御誠正閣。時原任大臣入侍時，領中樞府事金尙喆，領議政鄭存謙，判府事徐命善·鄭弘淳·李徽之·洪樂性，領敦寧金煜，觀象監提調尹東暹，戶曹判書徐有隣，禮曹判書李在協，京畿監司沈頤之，右副承旨柳誼，假注書沈晉賢，記事官李崑秀·尹行任，以次進伏訖。……命善曰，春間陳賀時，閣臣馬帖，何以爲之乎？上曰，爲慮本寺馬之不敷，姑令置之矣。以今番濟州貢馬賜給，可也。……

❖ 정조 7년(1783) 계묘년 7월 11일(경자)

- 봄에 진하(陳賀)할 때 규장각 관리들의 마첩(馬帖)을 금번 올라오는 제주(濟州) 공마로 사급(賜給)하게 하라는 전교
- 계묘년 7월 11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시임대신(時任大臣)과 원임대신(原任大臣)이 입시할 때 영중추부사 김상철(金尙喆),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판부사 서명복(徐命善)·정홍순(鄭弘淳)·이휘지(李徽之)·홍낙성(洪樂性), 영돈녕 김익(金煜), 관상감제조 윤동섭(尹東暹),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예조판서 이재협(李在協), 경기감사 심이지(沈頤之), 우부승지 유익(柳誼), 가주서 심진현(沈晉賢),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명선이 아뢰기를, “봄에 진하(陳賀)할 때 규장각 관리들의 마첩(馬帖)¹⁷⁹⁾은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시(本寺)의 말이 부족할까 염려되니 우선 그대로 두게 하고, 금번 올라오는 제주(濟州) 공마로 사급(賜給)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규장각, 마첩, 제주 공마.

179) 마첩(馬帖): 댓가 또는 상사(賞賜)로 주는 말 대신으로 주는 증서.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七月 十二日 辛丑

- 金峙默, 以司僕寺言啓曰, 濟州前牧使李文燦, 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其中騮馬一匹, 瘦病特甚. 莫重進上, 以病馬苟充封進, 事極駭然, 當該前牧使, 不可無警, 推考, 何如? 傳曰, 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7월 12일(신축)

- 병든 말을 봉진(封進)한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문혁(李文燦)을 추고(推考)할 것을 아뢰는 사복시의 초기
- 김치묵(金峙默)이 사복시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문혁(李文燦)의 체임진상마 3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고 전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立養)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마(騮馬)¹⁸⁰ 1필이 야위어 병든 것이 아주 심합니다. 막중한 진상을 병든 말로 구차하게 채워서 봉진(封進)한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전 목사를 경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문혁, 체임진상마, 추고.

180) 유마(騮馬): 갈기는 검고 배는 흰 말.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七月 十四日 癸卯

- 趙興鎭, 以司僕寺言啓曰, 濟州出來後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歲貢馬二百匹, 合二百六十八匹內, 一匹到康津故失, 二匹到興德故失, 一匹到大興故失, 三匹到衿川病留, 實納馬二百六十一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7년(1783) 계묘년 7월 14일(계묘)

- 제주(濟州) 진상마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조흥진(趙興鎭)이 사복시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後運) 연례 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三名日) 진상마 60필, 세공마(歲貢馬) 200필, 도합 268필 가운데 1필은 강진(康津)에 도착하여 죽었고, 2필은 흥덕(興德)에 도착하여 죽었고, 1필은 대흥(大興)에 도착하여 죽었고, 3필은 금천(衿川)에 도착하여 병들어 남겨 두어 실제로 들인 말 261필에 대한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상마, 세공마, 별단.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七月 十八日 丁未

- 朴祐源, 以司僕寺言啓曰, 濟州出來先運別御乘馬二十匹, 差備進上馬八十匹, 山屯馬六十匹, 凶咎驚駘馬二十匹, 合一百八十匹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7년(1783) 계묘년 7월 18일(정미)

- 제주(濟州) 진상마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박우원(朴祐源)이 사복시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先運) 별어승마(先運別御乘馬) 20필, 차비 진상마(差備進上馬) 80필, 산둔마(山屯馬) 60필, 흥구노태마(凶咎驚駘馬) 20필 도합 180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어승마, 진상마, 산둔마, 노태마, 별단.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七月 二十一日 庚戌

- 濟州牧使狀啓, 今六月朔所封烏賊魚, 節序差早, 限內不得封進, 惶恐待罪事, 傳于李亨達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7년(1783) 계묘년 7월 21일(경술)

- ☐ 기한 내에 오징어를 봉진(封進)할 수 없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이번 6월에 봉진하는 오징어는 절기가 조금 일러 기한 내에 봉진(封進)할 수 없으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한다고 한 일과 관련하여 이형규(李亨逵)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오징어, 봉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七月 二十五日 甲寅

- 癸卯七月二十五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鄭存謙,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左參贊金華鎮, 行司直鄭尙淳, 江華留守金魯鎮, 右參贊鄭昌聖, 行副司直鄭好仁, 吏曹判書徐浩修, 工曹判書鄭民始, 戶曹判書徐有隣, 行副司直嚴璫, 禮曹判書李在協, 兵曹判書李垺, 行副司直李柱國·徐有大, 戶曹參判趙時俊, 大司憲洪良浩, 持平李秀夏, 李壽咸, 修撰李錫河, 左承旨李在學, 假注書金孝建, 記事官李祖承·尹行任, 以次進伏訖. …… 良浩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良浩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上曰, 不允. …… 良浩曰,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7월 25일(갑인)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홍양호(洪良浩)의 계

- 계묘년 7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좌참찬 김화진(金華鎮), 행사직 정상순(鄭尙淳), 강화유수 김노진(金魯鎮), 우참찬 정창성(鄭昌聖), 행부사직 정호인(鄭好仁), 이조판서 서호수(徐浩修), 공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행부사직 엄숙(嚴璫), 예조판서 이재협(李在協), 병조판서 이갑(李垺),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서유대(徐有大), 호조참판 조시준(趙時俊), 대사헌 홍양호(洪良浩), 지평 이수하(李秀夏)·이수감(李壽咸), 수찬 이석하(李錫河), 좌승지 이재학(李在學), 가주서 김효건(金孝建), 기사관 이조승(李祖承)·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홍양호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홍양호¹⁸¹⁾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181) 홍양호(1724~1802): 본관 풍산(豊山). 자 한사(漢師). 호 이계(耳溪). 시호 문헌(文獻). 1752년 (영조 28) 문과 급제. 평안도관찰사, 이조판서, 대제학 역임.

하였다. 〈중략〉 홍양호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七月 二十六日 乙卯

- 持平李壽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7월 26일(을묘)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수감(李壽咸)의 계
- 지평 이수감(李壽咸)¹⁸²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182) 이수감(?~?): 본관 여주(驪州).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호조참판 역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八月 二日 辛酉

- 大司憲洪良浩, 持平李秀夏·李壽咸, 正言李思祚啓曰, ……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8월 2일(신유)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홍양호(洪良浩) 등의 계
- 대사헌 홍양호(洪良浩), 지평 이수하(李秀夏)·이수감(李壽咸), 정언 이사조(李思祚)¹⁸³⁾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183) 이사조(1729~?): 본관 전주(全州). 자 자급(子伋). 1764년(영조 40) 문과 급제.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八月 二日 辛酉

- 持平李秀夏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8월 2일(신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수감(李壽咸)의 계
- 지평 이수하(李秀夏)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八月 二日 辛酉

- 正言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8월 2일(신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사조(李思祚)의 계
- 정언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八月 三日 壬戌

- 持平李秀夏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8월 3일(임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수하(李秀夏)의 계
- 지평 이수하(李秀夏)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八月 五日 甲子

- 大司憲洪良浩, 持平李秀夏·李壽咸, 正言李思祚啓曰, ……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8월 5일(갑자)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홍양호(洪良浩) 등의 계
- 대사헌 홍양호(洪良浩), 지평 이수하(李秀夏)·이수감(李壽咸), 정언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八月 五日 甲子

- 正言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8월 5일(갑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사조(李思祚)의 계
- 정언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八月 七日 丙寅

- 趙尙鎮, 以刑曹言啓曰, 因左右捕盜廳啓辭, 罪人大圭等配所, 卽刻磨鍊以入事, 命下矣. 依傳教, 罪人大圭, 全羅道羅州牧黑山島, 美圭, 旌義縣, 各定配所, 卽爲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7년(1783) 계묘년 8월 7일(병인)

- 죄인 미규(美圭)를 정의현(旌義縣)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형조의 초기
- 조상진(趙尙鎭)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좌우 포도청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죄인 대규(大圭) 등의 배소(配所)를 즉각 마련하여 들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전교대로 죄인 대규는 전라도 나주목 흑산도에, 미규(美圭)는 정의현(旌義縣)에 각각 배소를 정하여 즉시 압송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미규, 정의현, 배소, 압송.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八月 十一日 庚午

- 司諫金和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8월 11일(경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김화중(金和中)의 계
- 사간 김화중(金和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八月 二十三日 壬午

- 大司憲洪良浩, 掌令洪周萬, 獻納申致權, 正言李尙度啓曰, ……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8월 23일(임오)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홍양호(洪良浩) 등의 계
- 대사헌 홍양호(洪良浩), 장령 홍주만(洪周萬), 헌납 신치권(申致權), 정언 이상도(李尙度)¹⁸⁴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184) 이상도(?~?): 본관 광주(廣州). 1777년(정조 1) 문과 급제. 춘천부사 역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八月 二十七日 丙戌

- 大司憲洪良浩, 大司諫趙尙鎮, 持平鄭在信啓曰, ……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三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8월 27일(병술)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홍양호(洪良浩) 등의 계
- 대사헌 홍양호(洪良浩), 대사간 조상진(趙尙鎭), 지평 정재신(鄭在信)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삼사(三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八月 二十七日 丙戌

- 持平鄭在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8월 27일(병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정재신(鄭在信)의 계
- 지평 정재신(鄭在信)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八月 二十八日 丁亥

- 持平鄭在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8월 28일(정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정재신(鄭在信)의 계
- 지평 정재신(鄭在信)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一日 己丑

- 持平林道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1일(기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임도호(林道浩)의 계
- 지평 임도호(林道浩)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五日 癸巳

- 大司憲鄭昌順, 執義洪文泳, 正言李思祚啓曰, ……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決定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5일(계사)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¹⁸⁵, 집의 홍문영(洪文泳), 정언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185) 정창순(1727~?): 본관 온양(溫陽). 자 기천(祈天). 호 사어(四於). 1757년(영조 33) 문과 급제. 경상도관찰사, 예조판서, 판중추부사 역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五日 癸巳

- 執義洪文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5일(계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홍문영(洪文泳)의 계
- 집의 홍문영(洪文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五日 癸巳

- 正言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5일(계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이사조(李思祚)의 계
- 정언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六日 甲午

- 大司憲鄭昌順, 行大司諫李亨達, 執義洪文泳, 掌令洪宗蠶, 持平洪秉益, 正言李思祚,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6일(갑오)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여선형(呂善亨) 등의 계
-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행대사간 이형규(李亨達), 집의 홍문영(洪文泳), 장령 홍종신(洪宗蠶), 지평 홍병익(洪秉益), 정언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六日 甲午

- 掌令洪宗蓋, 持平洪秉益,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施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6일(갑오)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홍종신(洪宗薰) 등의 계
- 장령 홍종신(洪宗薰), 지평 홍병익(洪秉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六日 甲午

- 正言李思祚,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6일(갑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사조(李思祚)의 계
- 정언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九日 丁酉

- 持平洪聖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9일(정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홍성연(洪聖淵)의 계
- 지평 홍성연(洪聖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十日 戊戌

○ 癸卯九月初十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 · 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議政鄭存謙, 知中樞府事具善復, 行司直李命植, 右參贊鄭昌聖, 兵曹判書李埤, 漢城左尹李柱國, 行副司直徐有大, 禮曹參判趙時俊, 吏曹參判沈豐之, 大司憲鄭昌順, 行大司諫李亨達, 執義洪文泳, 掌令洪宗薰, 持平洪秉益, 校理沈基泰, 左副承旨李亨元, 假注書朴能源, 事變假注書李敬五, 記事官李崑秀 · 尹行任, 以次進伏訟. …… (昌順 · 亨達 · 文泳 · 宗薰 · 秉益 · 基泰) 又曰,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決正王法. 上曰, 不允, …… 府進前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上曰, 不允. …… 又曰,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 院進前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10일(무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등의 계

○ 계묘년 9월 1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사직 이명식(李命植), 우참찬 정창성(鄭昌聖), 병조판서 이갑(李埤), 한성좌윤 이주국(李柱國), 행부사직 서유대(徐有大), 예조참판 조시준(趙時俊), 이조참판 심풍지(沈豐之), 대사헌 정창순(鄭昌順), 행대사간 이형규(李亨達), 집의 홍문영(洪文泳), 장령 홍종신(洪宗薰)¹⁸⁶, 지평 홍병익(洪秉益), 교리 심기태(沈基泰), 좌부승지 이형원(李亨元), 가주서 박능원(朴能源)¹⁸⁷, 사변가주서 이경오(李敬五)¹⁸⁸, 기사관 이곤수(李崑秀)¹⁸⁹ · 윤행임(尹行任)¹⁹⁰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정

186) 홍종신(1734~?): 본관 남양(南陽). 자 공필(公弼). 1768년(영조 44) 문과 급제.

187) 박능원(1738~?): 본관 반남(潘南). 자 치백(稚百).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승정원 주서 역임.

188) 이경오(1740~?): 본관 경주(慶州). 자 사관(士寬). 호 묵와(默窩).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189) 이곤수(1762~1788): 본관 연안(延安). 자 성서(星瑞). 호 수재(壽齋). 1782년(정조 6) 문과 급제. 규장각 대교, 시강원 설서, 평안도어사 역임. 저서 《일득성어록(日得聖語錄)》.

190) 윤행임(1762~?): 본관 남원(南原). 자 성보(聖甫). 1782년(정조 6) 문과 급제. 예문관 검열,

창순·이형규·홍문영·홍종신·홍병익·심기태가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鞠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가 앞으로 나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十七日 乙巳

- 司諫兪彥脩, 持平李泰永·洪秉益, 獻納申致權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17일(을사)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유언수(兪彦脩) 등의 계
- 사간 유언수(兪彦脩), 지평 이태영(李泰永)·홍병익(洪秉益), 헌납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十七日 乙巳

- 持平李泰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17일(을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태영(李泰永)의 계
- 지평 이태영(李泰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十七日 乙巳

- 獻納申致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17일(을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신치권(申致權)의 계
- 헌납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二十日 戊申

- 執義洪文泳，掌令洪宗蠶，持平李泰永·洪秉益，司諫兪彥脩，獻納申致權啓曰，……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更令王府，拿致設鞫，期於得情，快正王法。…… 答兩司曰，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20일(무신)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홍문영(洪文泳) 등의 계
- 집의 홍문영(洪文泳)，장령 홍종신(洪宗蠶)，지평 이태영(李泰永)·홍병익(洪秉益)，사간 유언수(兪彦脩)，헌납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二十日 戊申

- 執義洪文泳, 掌令洪宗薰, 持平李泰永 · 洪秉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20일(무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홍문영(洪文泳) 등의 계
- 집의 홍문영(洪文泳), 장령 홍종신(洪宗薰), 지평 이태영(李泰永) · 홍병익(洪秉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二十日 戊申

- 司諫兪彥脩，獻納申致權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鞠嚴問，依律處斷。……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竝令王府，設鞠嚴問，期於得情，快正王法。…… 答院曰，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20일(무신)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유언수(兪彦脩) 등의 계
- 사간 유언수(兪彦脩), 헌납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二十一日 己酉

- 執義洪文泳, 司諫兪彥脩, 掌令洪宗蠹, 持平李泰永·洪秉益, 獻納申致權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21일(기유)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홍문영(洪文泳) 등의 계
- 집의 홍문영(洪文泳), 사간 유언수(兪彦脩)¹⁹¹, 장령 홍종신(洪宗蠹), 지평 이태영(李泰永)·홍병익(洪秉益), 헌납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상락〉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191) 유언수(1725~?): 본관 기계(杞溪). 자 덕이(德而). 1759년(영조 35) 문과 급제. 장령, 헌납, 집의 역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二十一日 己酉

- 掌令洪宗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21일(기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홍종신(洪宗薰)의 계
- 장령 홍종신(洪宗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二十一日 己酉

- 獻納申致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21일(기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신치권(申致權)의 계
- 헌납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二十五日 癸丑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25일(계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二十六日 甲寅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又啓曰,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26일(갑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 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二十八日 丙辰

- 大司諫南玄老, 執義洪文泳, 掌令洪宗蠹·安鼎大, 持平李泰永·洪秉益, 正言崔守魯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28일(병진)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등의 계
-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집의 홍문영(洪文泳), 장령 홍종신(洪宗蠹)·안정대(安鼎大), 지평 이태영(李泰永)·홍병익(洪秉益), 정언 최수로(崔守魯)¹⁹²⁾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192) 최수로(1735~?): 본관 전주(全州). 1777년(정조 1) 문과 급제. 낭청, 지평 역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二十八日 丙辰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28일(병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二十八日 丙辰

- 正言崔守魯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28일(병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최수로(崔守魯)의 계
- 정언 최수로(崔守魯)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二十九日 丁巳

- 行大司憲鄭一祥, 大司諫南玄老, 執義洪文泳, 掌令洪宗蠱·安鼎大, 持平李泰永·洪秉益, 正言崔守魯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29일(정사)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헌 정일상(鄭一祥) 등의 계
- 행대사헌 정일상(鄭一祥),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집의 홍문영(洪文泳), 장령 홍종신(洪宗蠱)·안정대(安鼎大), 지평 이태영(李泰永)·홍병익(洪秉益), 정언 최수로(崔守魯)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鞠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二十九日 丁巳

- 持平洪秉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鞠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29일(정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홍병익(洪秉益)의 계
- 지평 홍병익(洪秉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二十九日 丁巳

- 正言崔守魯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府.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29일(정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최수로(崔守魯)의 계
- 정언 최수로(崔守魯)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九月 三十日 戊午

- 癸卯九月三十日卯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鄭存謙, 行知中樞府事具善復, 大提學黃景源, 行司直李命植, 左參贊金華鎮, 右參贊鄭昌聖, 禮曹判書徐有隣, 行副司直鄭好仁, 行副司直徐有慶, 工曹判書鄭民始, 刑曹判書嚴璫, 漢城判尹金履素, 行副司直徐有大, 吏曹參判趙時俊, 大司諫南玄老, 執義洪文泳, 掌令安鼎大, 持平李泰永, 正言崔守魯, 副校理林濟遠, 副修撰林道浩, 行都承旨沈豐之, 記事官李祖承, 事變假注書沈銖, 記注官金健修·金鳳顯, 以次進伏訖. 上曰, 近來紀綱, 雖曰掃地, 何時臨殿, 而臺臣則今始詣閣. 以諸宰言之, 先詣閣外, 以待大臣之詣閣, 古例則然. 今日諸宰之詣閣, 亦皆後於大臣, 古人待漏之義, 固難責之於今之具僚, 而身在閣外咫尺之地, 而不卽來詣, 引見下教, 因以遲滯, 臺臣之規正百司之責, 果安在哉? 至於諫長, 向除濟州, 稱以地遠而不赴, 今者臺廳之於閣門, 亦以爲遠, 而未卽來待耶? 臺廳比諸濟州, 孰近而孰遠乎? 雖不念紀綱之掃地, 今日之舉措, 誠甚慨然矣. 存謙曰, 似此之事, 莫非臣不能董正之致, 實爲惶悚矣. 上曰, 過矣. …….

❖ 정조 7년(1783) 계묘년 9월 30일(무오)

- 임금이 대신(臺臣)의 헤이해진 기강을 거론하면서 지방이 멀다고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부임하지 않은 대사간의 사례를 언급함
- 계묘년 9월 30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대제학 황경원(黃景源), 행사직 이명식(李命植), 좌참찬 김화진(金華鎭), 우참찬 정창성(鄭昌聖), 예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행부사직 정호인(鄭好仁), 행부사직 서유경(徐有慶), 공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형조판서 엄숙(嚴璫), 한성판윤 김이소(金履素), 행부사직 서유대(徐有大), 이조참판 조시준(趙時俊),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집의 홍문영(洪文泳), 장령 안정대(安鼎大), 지평 이태영(李泰永), 정언 최수로(崔守魯), 부교리 임제원(林濟遠), 부수찬 임도호(林道浩), 행도승지 심풍지(沈豐之), 기사관 이조승(李祖承), 사변가주서 심수(沈銖), 기주관 김건수(金健修)·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기강이 비록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하나 전(臨)에 임한 것이 언제인데 대신(臺臣)은 지금에야 전에 이른 것인가? 재신(宰臣)들로 말을 하자면, 먼저 합문(閣門)¹⁹³⁾ 밖에 이르러서

대신(大臣)이 합문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고례(古例)에는 그러하였다. 현재는 재신들이 합문에 이르는 것이 또한 모두가 대신보다 뒤에 하고 있다. 옛사람들이 대궐문이 열리기까지 기다리는 의리를 가지고 실로 오늘날의 관료들을 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몸이 대궐문 밖 지척의 거리에 있으면서 즉시 이르지 않아 인견하여 하교할 때 지체가 되니 대신(臺臣)이 백관(百官)을 규찰하는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대사간의 경우 지난번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되었을 때 지방이 멀다고 핑계대어 부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청(臺廳)¹⁹⁴이 합문(閣門)에 비해서 또한 멀다고 생각하여 즉시 와서 대령하지 않는 것인가? 대청이 제주(濟州)에 비해서 어느 곳이 가깝고 어느 곳이 먼 것인가? 비록 기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거조(擧措)는 참으로 매우 개탄스럽다.”라고 하였다. 정존겸이 아뢰기를, “이와 같은 일은 신이 능히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황송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나치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대사간, 기강, 제주목사.

193) 합문(閣門): 편전(便殿)의 앞문.

194) 대청(臺廳):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臺諫)이 상주(上奏)할 일이 있을 때 모이는 궁중의 청사.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一日 己未

- 李得臣, 以漢城府言啓曰, 今癸卯式年, 京中及八道戶口摠數, 依定式區別書入, 而濟州三邑帳冊, 亦爲趁期上來, 本道元戶口中, 同爲磨勘, 昨年獻民數時, 濟州三邑民數, 未及上來, 故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草記, 蒙允矣. 今纔上來, 獻民數冊中, 添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1일(기미)

- 제주(濟州) 삼읍 백성의 수를 기록한 장책(帳冊)을 올린다는 한성부의 초기
- 이득신(李得臣)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계묘년 식년(式年)의 서울과 팔도 호구의 총수를 정식대로 구별하여 써서 들고, 제주(濟州) 삼읍의 장책(帳冊)도 기일에 맞춰 올라왔으므로 본도(本道)의 원래 호구 가운데 함께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백성의 수를 바칠 때 제주 삼읍 백성의 수가 미처 올라오지 못하였으므로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추후에 추가로 기록하겠다는 내용으로 초기(草記)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이제 막 올라왔으니, 백성의 수를 바치는 장책 가운데 덧붙여 기록하여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삼읍, 호구, 장책.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三日 辛酉

- 掌令洪宗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3일(신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홍종신(洪宗薰)의 계
- 장령 홍종신(洪宗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五日 癸亥

- 癸卯十月初五日申時，上御誠正閣。有司堂上入侍時，有司堂上徐有隣·趙時俊，同副承旨趙興鎮，假注書金孝建，記注官金健修·金鳳顯，以次進伏訖。…… 上曰，原春道沿海邑，以貢獻魚膳，爲弊不小，在朝家不甚關緊，在小民大爲弊癘者，東伯下去時，予欲諭而減之，而至於濟州，孰鰓越海歲貢？實爲巨弊，故予於御極以後，使之蠲罷，統營貢鰓，亦無限節，故如非不得不用處，未嘗卜定，蓋不欲以口腹之累，爲生民貽弊故也，未知實惠之有無也。時俊曰，臣待罪嶺藩時，聞統營之言，則其爲德澤於民，不些云矣。…….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5일(계해)

- 유사당상이 입시할 때 임금이 즉위 후 제주(濟州)의 전복 세공(歲貢)을 건파(蠲罷)한 이유에 대해 언급함
- 계묘년 10월 5일 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유사당상이 입시할 때 유사당상 서유린(徐有隣)·조시준(趙時俊), 동부승지 조흥진(趙興鎭), 가주서 김효건(金孝建), 기주관 김건수(金健修)·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강원도 연해읍에서 공헌(貢獻)하는 어선(魚膳)의 폐단이 적지 않은데, 조정으로서는 그다지 긴요하지 않고 소민(小民)들에게는 크게 폐단이 되는 것이어서 강원도 관찰사가 내려갈 때 내가 유시(諭示)하여 줄이고자 하였다. 제주(濟州)의 경우는 누가 전복을 바다를 건너 세공(歲貢)하게 한 것인가? 실로 큰 폐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즉위한 이후 건파(蠲罷)하도록 하였다. 통영(統營)의 공복(貢鰓)도 한정이 없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아니라면 공물 외에는 강제로 바치게 하지 않았으니, 이는 구복(口腹)에 얽매어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조시준이 아뢰기를, “신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통영의 말을 들으니, 그 덕택이 백성들에게 적지 않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전복, 세공, 건파.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六日 甲子

- 趙興鎭, 以武二所差備官, 以試官意啓曰, 臣所所付舉子元數九十八人內, 及第三人, 濟州五人未上來, 原春道三人全羅道二人平安道一人無緣不呈單子, 合十四人除, 實八十四人, 今日平明開場, 先自木箭試取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6일(갑자)

- 무과 시취(試取)에 대해 여쭙는 무이소(武二所)의 초기
- 조흥진(趙興鎭)이 무이소(武二所)¹⁹⁵⁾ 차비관이 전하는 시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신이 붙인 거자(舉子) 원수(元數) 98인 가운데 급제 3인, 제주(濟州) 5인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강원도 3인 · 전라도 2인 · 평안도 1인은 이유 없이 단자를 올리지 않아서 도합 14인을 제외한 실제 84인을 오늘 아침에 해가 떠서 개장(開場)하면 먼저 목전(木箭)부터 시취(試取)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무과, 시취, 무이소.

195) 무이소(武二所): 과거의 응시자를 두 곳에 나누어 수용할 경우 무과의 둘째 시험장.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六日 甲子

- 趙興鎭, 以武一所差備官, 以試官意啓曰, 本所應付舉子元數九十七人內, 今番庭試, 及第三人, 不呈單子全羅道二人, 黃海道八人, 咸鏡道七人, 濟州三人, 合二十三人除, 實應試七十四人內, 木箭自天字至地字入格, 六十八人, 未入格六人矣. 今已畢試, 鐵箭鱗次試取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6일(갑자)

- ☐ 무과 시취(試取)에 대해 여쭙는 무일소(武一所)의 초기
- 조흥진(趙興鎭)이 무일소(武一所) 차비관이 전하는 시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소에 붙여야 할 거자(舉子) 원수(元數) 97인 가운데 금번 정시(庭試)에 급제한 3인, 단자를 올리지 않은 전라도 2인 · 황해도 8인 · 함경도 7인, 제주(濟州) 3인 포함 23인을 제외하고 실제 과거에 응시한 74인 가운데 목전(木箭)에서 처자(天字)에서 지자(地字)까지 입격한 자는 68인이고, 6인은 입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취(試取)를 마쳤고, 철전(鐵箭)을 잇달아 시취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무과, 시취, 무일소.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八日 丙寅

- 掌令李延伋, 獻納申致權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8일(병인)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연급(李延伋) 등의 계
- 장령 이연급(李延伋), 헌납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八日 丙寅

- 掌令李延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8일(병인)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이제만(李濟萬)의 계
- 집의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八日 丙寅

- 獻納申致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8일(병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신치권(申致權)의 계
- 헌납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八日 丙寅

- 癸卯十月初八日酉時，上御誠正閣。同副承旨入侍時，同副承旨趙興鎮，假注書金孝建，記注官金鳳顯，記事官尹行任，以次進伏訖。…… 有隣等曰，近年以來，蠲減物種，非止一二，而至於今番，則耽羅之產蠶，藥院之貢竹，亦皆停退，惠澤之浹人肥骨[肌骨]者，於斯至矣，實無加惠之道矣。…….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8일(병인)

- 제주(濟州)의 말갈기 공납 기한을 늦추어 준 것에 대한 서유린(徐有隣) 등의 계
- 계묘년 10월 8일 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동부승지가 입시할 때 동부승지 조흥진(趙興鎭), 가주서 김효건(金孝建),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서유린(徐有隣) 등이 아뢰기를, “근년 이래로 물종(物種)을 견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제주의 말갈기와 약원(藥院)의 공죽(貢竹) 또한 모두 기한을 늦추어 주었습니다. 혜택이 사람들의 살과 뼈에 스며든 것이 이에 이르렀으니, 실로 은혜를 더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말갈기, 공납, 기한.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九日 丁卯

- 李在學, 以禮曹言啓曰, 巨濟府漆川島民金奉伊等, 黃澗縣黑牛上納時情債事, 上言查啓回啓判付內, 依回啓, 兩道道臣處, 措辭嚴飭, 典牲署所管牛隻之分授列邑, 不止巨濟之漆川一島, 此則卿取考分授數爻, 仍又參量遠近道里, 如有可以釐正之事, 具意見論理草記事, 命下矣. 嶺南·湖西兩道道臣處, 依下教各別措辭嚴飭, 典牲署所管黑牛分授成冊, 取來相考, 又爲詳問於該吏處, 則一年出來黑牛, 合爲四十五隻, 而四十隻則自濟州牧, 來納於恩津縣, 五隻則自巨濟府, 來納於黃澗, 而自兩縣各各分授於湖西道內諸邑, 本署留養黑牛三十隻內, 因祭享所用有闕, 則次次取來, 以準三十隻之數云矣. 濟州則以朝家柔遠加恤之致, 外邑官吏, 不敢侵困, 黑牛來納時, 略干梳子外, 別無情債之費, 分授時則或因肥瘦之去取, 不無些少情債, 而以其事在道內, 不至於大段爲弊, 到今別無可以釐正之事, 而此是臣按道時所聞見, 其後六年, 一向如前, 有未可知. 伏況今此下教, 寔出於反三隅·軫一視之德意, 上納時濟州差人之舊例外, 濫費, 分授時, 各邑下屬之例給外人情, 另加詳察, 各別禁斷之意, 發關嚴飭於該道道臣. 濟州牧領來差人, 不必盡用於恩津, 而憑藉上納, 收斂牧民之弊, 亦難保其必無, 雖在梳子之微物, 所入數爻, 詳探恩津, 曉諭牧場, 俾無彼此濫雜之弊事, 一體, 分付於湖南道臣, 何如? 傳曰, 允. 措辭行會, 仍令道臣, 論理狀聞.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9일(정묘)

- 제주목(濟州牧)에서 흑우를 상납할 때의 정채(情債)에 대한 폐단 단속 등을 각별히 금단하라는 뜻으로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관문(關文)을 보내어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였다는 예조의 초기
- 이재학(李在學)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거제부(巨濟府) 칠천도(漆川島)의 백성 김봉이(金奉伊) 등이 황간현(黃澗縣)의 흑우를 상납할 때의 정채(情債)¹⁹⁶에 관한 일과 관련하여 상언(上言)의 내용을 조사하여 아뢴 것에 대한 회계(回啓)를 판부(判付)한 내용 중에 ‘회계한 대로 두 도(道)의 관찰사에게 말을 만들어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고, 전생서(典牲署) 소관의 우척(牛隻)으로 열읍(列邑)에 나누어 준 것은 거제부 칠천도 한 섬에 그치지 않으니, 이것은 경이 나누어 준 수효

196) 정채(情債): 관청이나 해당 담당자에게 서류 등을 제출할 때 인정상 주던 수수료에 상당하는 돈.

를 가져다 살피고 이어 원근의 도리(道里)를 참작하여, 만일 바로잡을 만한 일이 있으면 의견을 갖추어 사리를 논하여 초기(草記)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영남과 호서 두 도의 관찰사에게는 하교한 대로 각별히 말을 만들어 엄히 타일러 경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생서 소관 흑우를 나누어 준 성책(成冊)을 가져와 상고하고 또 해당 관리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1년에 나온 흑우(黑牛)가 도합 45마리였는데 40마리는 제주목(濟州牧)에서 은진현(恩津縣)으로 들인 것이고, 5마리는 거제부에서 황간현으로 들인 것이었습니다. 두 현에서 호서의 도내 제읍(諸邑)에 각각 나누어 주고, 본서에 남겨두고 기르고 있는 흑우 30마리 가운데 제향에 쓰이는 것에 결원이 생기면 차차 가져와서 30마리의 숫자에 맞추겠다고 하였습니다. 제주는 조정에서 먼 곳의 백성을 돌봐 주고 구휼하는 일 때문에 외읍(外邑)의 관리가 감히 침해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흑우를 와서 납부할 때 약간의 빗[梳子] 외에는 별도로 정채의 비용이 없고, 나누어 줄 때 흑은 더러 비척(肥瘠)의 거취(去取)으로 인하여 사소한 정채(情償)가 없지 않지만, 그 일이 도내(道內)에 있어서는 대단한 폐단이 되지는 않으므로 지금 달리 바로잡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이 도(道)를 안찰할 때 보고 들은 것으로 그 후 6년 동안 계속해서 여전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의 하교는 실로 반삼우(反三隅)·진일시(軫一視)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납할 때 제주 차인(差人)이 구례(舊例) 외에 험하게 쓴 것과 나누어줄 때 각읍 하속(下屬)이 관례상 지급하는 것 외의 인정을 별도로 자세히 살피서 각별히 금단하라는 뜻으로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관문(關文)을 보내어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였습니다. 제주목에서 거느리고 온 차인을 은진현에서 다 쓸 필요는 없고, 상납을 빙자하여 목민(牧民)을 거두어들이는 폐단 또한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려우니, 비록 머리를 빗는 하찮은 물건이라도 들어가는 수효를 은진현에 상세히 물어서 목장을 효유(曉諭)하여 피차간에 난잡해지는 폐단이 없도록 일체를 호남의 관찰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말을 만들어 행회(行會)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사리를 논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흑우, 차인, 정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九日 丁卯

- 掌令李延伋, 獻納申致權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9일(정묘)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연급(李延伋) 등의 계
- 장령 이연급(李延伋), 헌납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九日 丁卯

- 掌令李延伋啓曰, 請大靜爲奴罪人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9일(정묘)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연급(李延伋)의 계
- 장령 이연급(李延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九日 丁卯

- 正言洪樂恒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9일(정묘)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홍낙항(洪樂恒)의 계
- 정언 홍낙항(洪樂恒)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十日 戊辰

- 掌令李延伋, 獻納申致權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10일(무진)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연급(李延伋) 등의 계
- 장령 이연급(李延伋), 헌납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十日 戊辰

- 掌令李延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10일(무진)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연급(李延伋)의 계
- 장령 이연급(李延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十日 戊辰

- 癸卯十月初十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鄭存謙,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司直李命植, 左參贊金華鎮, 右參贊鄭昌聖, 禮曹判書徐有隣, 工曹判書鄭民始, 行副司直鄭一祥, 刑曹判書嚴璫, 兵曹判書李埤, 判尹金履素, 左尹李柱國, 行副司直徐有大, 吏曹參判趙時俊, 行都承旨沈豐之, 行左承旨朴祐源, 記事官李祖承, 事變假注書崔雲翰, 兼春秋金健修·金鳳顯, 副校理林濟遠, 掌令李延伋, 以次進伏訖. …… 存謙曰, 此全羅監司趙時偉災實分等狀啓也. 全州等十五邑, 置之尤甚, 綾州等二十八邑, 置之之次, 潭陽等十邑, 置之稍實, 仍又備陳農形被災之狀, 講究來春設賑之策, 目下懷保之方, 一二蠲免之請, 開錄于左, 仰冀稟處爲辭矣. 分等依狀請施行, 所請九條, 有關於紓民力者, 皆蒙一一允許, 而道臣之未及思不敢請者, 亦無不曲察而先施之, 以至於名曰方物, 耽羅貢馬, 竝賜停退, …… 上曰, 依爲之.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10일(무진)

- 호남의 흉년으로 인해 제주(濟州)의 공마(貢馬) 등에 대한 정퇴(停退)를 요청하는 영의정 정존겸(鄭存謙)의 계
- 계묘년 10월 1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사직 이명식(李命植), 좌참찬 김화진(金華鎭), 우참찬 정창성(鄭昌聖), 예조판서 서유린(徐有隣), 공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행부사직 정일상(鄭一祥), 형조판서 엄숙(嚴璫), 병조판서 이갑(李埤), 판윤 김이소(金履素), 좌윤 이주국(李柱國), 행부사직 서유대(徐有大), 이조참판 조시준(趙時俊), 행도승지 심풍지(沈豐之), 행좌승지 박우원(朴祐源), 기사관 이조승(李祖承), 사변가주서 최운한(崔雲翰), 검춘추 김건수(金健修)·김봉현(金鳳顯), 부교리 임제원(林濟遠), 장령 이연급(李延伋)이 차례로 나와 었드렸다. <중략> 정존겸이 아뢰기를, “이것은 전라도관찰사 조시위(趙時偉)가 재실(災實)의 등급을 나누어 보고한 장계입니다. 전주 등 15개 읍은 우심(尤甚)에 두고, 능주 등 28개 읍은 지차(之次)에 두고, 담양 등 10개 읍은 초실(稍實)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또 농사 형편이 피해를 입은 상황을 갖추어 아뢰면서 내년 봄에 진휼을 설행할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당장 백성들을 품어 보호하는 방도로 한두 가지를 면제해 달라는 청을 아래에 개록(開錄)하여 품

처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등급을 나눈 것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고, 요청한 9가지 조항은 백성의 힘을 펴는 데에 관계되는 것으로 모두 하나 하나 윤택하십시오. 관찰사가 생각하지 못하여 청하지 못한 것 또한 자세히 살펴서 먼저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일방물(名日方物)과 제주(濟州)의 공마(貢馬)를 모두 정퇴(停退)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 된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호남, 흥년, 제주, 공마, 정퇴.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十二日 庚午

- 大司諫南玄老, 掌令李延伋, 持平林道浩·李百亨, 獻納申致權, 正言洪樂恒·李錫夏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12일(경오)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등의 계
-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장령 이연급(李延伋), 지평 임도호(林道浩)·이백형(李百亨)¹⁹⁷, 헌납 신치권(申致權), 정언 홍낙항(洪樂恒)·이석하(李錫夏)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197) 이백형(?~?): 본관 전주(全州). 자 사능(士能). 1777년(정조 1) 문과 급제.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十二日 庚午

- 持平李百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設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12일(경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지평 이백형(李百亨)의 계
- 지평 이백형(李百亨)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十二日 庚午

- 正言李錫夏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12일(경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석하(李錫夏)의 계
- 정언 이석하(李錫夏)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十三日 辛未

- 李邦榮, 以刑曹言啓曰, 因本曹別單, 全羅道尤甚邑定配罪人中, …… 楸子島景行, 於蘭處景, 移配島邊遠邑罪人所無處. …… 命下矣. 臣謹取配案, 詳細考閱, 則本道稍實邑潭陽等十邑中, 罪人所無處, 不過茂朱·淳昌·錦山·高山四邑, 他島中罪人所無處, 亦不過防踏一島, 數多罪人, 無以分排, 且稍實邑與罪人配所本地皆遠, 實無附近處移定之路, 故不得已, 就其稍實邑罪人數少處, 罪犯之輕重, 道里之遠近, 略加區別. …… 景行寶城郡 …… 竝移定配所, 卽爲押送各其配所 …… 分付道臣, 何如? 傳曰, 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13일(신미)

- ☐ 추자도(楸子島)의 경행(景行)을 보성군(寶城郡)으로 이배(移配)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형조의 초기
- 이방영(李邦榮)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본조에서 올린 별단(別單)으로 인하여 전라도 우심읍(尤甚邑)에 정배한 죄인 중에 <중략> 추자도(楸子島)의 경행(景行)과 어란도의 처경을 섬 주변의 먼 읍으로 죄인이 없는 곳으로 이배(移配)하라고 <중략> 명을 내렸습니다. 신이 삼가 배안(配案)을 가져다 자세히 살펴보니, 본도(本道)의 초실읍(稍實邑)인 담양 등 10개 읍 중에 죄인이 없는 곳은 무주·순창·금산·고산 등 4개 읍에 불과하고, 다른 섬 중에 죄인이 없는 곳 또한 방답도 1곳에 불과하여 수많은 죄인을 분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초실읍과 죄인의 배소가 있는 본지(本地)가 모두 멀어 실로 부근에 이배할 길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부득이 초실읍 중에 죄인의 수가 적은 곳, 범죄의 경중, 도리(道里)의 원근을 따져 대략 구별을 하였습니다. <중략> 경행을 보성군(寶城郡)으로 배소를 정하여 즉시 배소로 압송하도록 <중략> 관찰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정배, 경행, 이배, 보성군.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十三日 辛未

- 大司諫南玄老, 掌令李延伋, 持平林道浩 · 李百亨, 正言洪樂恒 · 李錫夏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13일(신미)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등의 계
-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장령 이연급(李延伋), 지평 임도호(林道浩) · 이백형(李百亨), 정언 홍낙성(洪樂恒) · 이석하(李錫夏)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十三日 辛未

- 持平李百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13일(신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백형(李百亨)의 계
- 지평 이백형(李百亨)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十三日 辛未

- 正言李錫夏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13일(신미)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석하(李錫夏)의 계
- 정언 이석하(李錫夏)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十四日 壬申

- 癸卯十月十四日辰時，上御宣政殿。常參·次對，同爲入侍時，領議政鄭存謙，右議政李福源，判府事徐命善·鄭弘淳·洪樂性，領敦寧金煜，禮曹判書徐有隣，戶曹判書鄭一祥，右參贊李在簡，漢城判尹金履素，吏曹參判趙時俊，錦城尉朴明源，茂林君塘，知中樞府事具善復，行司直鄭尙淳，行副司直鄭好仁·徐有慶，工曹判書鄭民始，刑曹判書嚴璫，兵曹判書李垺，知敦寧府事李養，漢城左尹李柱國，行副司直李敬懋·徐有大，僉知中樞府事林濟遠，大司諫南玄老，掌令李延伋，持平林道浩，正言李百亨·李錫夏，修撰李太亨，吏曹佐郎李集斗，戶曹佐郎金佐顯，禮曹佐郎李甲龍，監察趙雲履，兵曹正郎趙時謙，刑曹佐郎尹哲東，工曹正郎宋守淵，行都承旨沈豐之，行左承旨徐有防，行右承旨朴祐源，左副承旨李得臣，右副承旨李邦榮，同副承旨吳大益，假注書李翼晉·朴能源，事變假注書崔雲翰，記注官金健修·金鳳顯，以次陞殿，…… 璫曰，今番三南尤甚邑定配罪人等移配時，…… 楸子島罪人景行，卽凶逆聖國子也，決不可出陸移配。此則竝仍置，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兩司)又曰，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更令王府，拿致設鞫，期於得情，決正王法。上曰，不允。…… 府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又曰，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決正王法。上曰，不允。…… 又曰，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亟令王府，拿鞫嚴問。上曰，不允。…… 院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又曰，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竝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決正王法。上曰，亟停勿煩。……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14일(임신)

- 추자도(楸子島) 죄인 경행(景行)을 이배(移配)하지 말 것과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엄숙(嚴璫) 등의 계
- 계묘년 10월 14일 진시에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으로 나아갔다. 상참과 차대가 함께 입시할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우의정 이복원(李福源), 판부사 서명선(徐命善)·정홍순(鄭弘淳)·홍낙성(洪樂性), 영돈녕 김익(金煜), 예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호조판서 정일상(鄭一祥), 우참찬 이재간(李在簡), 한성판윤 김이소(金履素), 이조참판 조시준(趙時俊), 금성위 박명원(朴明源), 무임군 이당(李塘),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사직 정상순(鄭尙淳), 행부사직 정호인(鄭好仁)·서유경(徐有慶), 공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형조판서 엄숙(嚴璫), 병조판서 이갑(李垺), 지돈녕부사

이양(李養), 한성좌윤 이주국(李柱國), 행부사직 이경무(李敬懋)·서유대(徐有大), 첨지중추부사 임제원(林濟遠),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장령 이연급(李延伋), 지평 임도호(林道浩), 정언 이백형(李百亨)·이석하(李錫夏), 수찬 이태형(李太亨), 이조 좌랑 이집두(李集斗), 호조좌랑 김좌현(金佐顯), 예조좌랑 이갑룡(李甲龍), 감찰 조운이(趙雲履), 병조정랑 조시겸(趙時謙), 형조좌랑 윤철동(尹哲東), 공조정랑 송수연(宋守淵), 행도승지 심풍지(沈豐之), 행좌승지 서유방(徐有防), 행우승지 박우원(朴祐源), 좌부승지 이득신(李得臣), 우부승지 이방영(李邦榮), 동부승지 오대익(吳大益), 가주서 이익진(李翼晉)·박능원(朴能源), 사변가주서 최운한(崔雲翰), 기주관 김건수(金健修)·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전에 올라왔다. <중략> 엄숙이 아뢰기를, “금번 삼남(三南)의 우심읍(尤甚邑)에 정배된 죄인들을 이배(移配)할 때 <중략> 추자도(楸子島) 죄인 경행(景行)은 바로 흥역 성국(聖國)의 아들로, 절대로 육지로 이배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뉘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중략> 양사(兩司)에서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경행, 이배,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十五日 癸酉

- 大司諫南玄老, 司諫李濟萬, 掌令李延伋·姜儉, 持平林道浩·李百亨, 獻納申致權, 正言洪樂恒·李錫夏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15일(계유)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등의 계
-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사간 이제만(李濟萬), 장령 이연급(李延伋)·강인(姜儉), 지평 임도호(林道浩)·이백형(李百亨), 헌납 신치권(申致權), 정언 홍낙항(洪樂恒)·이석하(李錫夏)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十五日 癸酉

- 掌令李延伋·姜儼, 持平林道浩·李百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鞠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15일(계유)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연급(李延伋) 등의 계
- 장령 이연급(李延伋)·강인(姜儼), 지평 임도호(林道浩)·이백형(李百亨)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十五日 癸酉

- 大司諫南玄老, 司諫李濟萬, 正言洪樂恒 · 李錫夏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15일(계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등의 계
-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사간 이제만(李濟萬), 정언 홍낙항(洪樂恒) · 이석하(李錫夏)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十九日 丁丑

- 癸卯十月十九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鄭存謙, 右議政李福源, 左參贊金華鎮, 行司直鄭尙淳, 禮曹判書徐有隣, 行司直鄭好仁, 行司直徐浩修, 工曹判書鄭民始, 戶曹判書鄭一祥, 刑曹判書嚴璫, 兵曹判書李埤, 右參贊李在簡, 判尹金履素, 左尹李柱國, 刑曹參判李亨達, 行副司直李敬懋, 行副司直徐有大, 吏曹參判趙時俊, 行左承旨徐有防, 行副司直鄭志儉, 行副司直朴祐源, 行大司成沈豐之, 大司諫南玄老, 獻納申致權, 持平李百亨, 副校理林濟遠, 修撰李太亨, 左副承旨李在學, 假注書李翼晉, 事變假注書崔雲翰, 記注官金健修, 記事官尹行任, 以次進伏訖. …… 玄老等曰, 請楸子島荏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百亨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百亨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百亨曰,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 玄老·致權等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玄老等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19일(정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등의 계
- 계묘년 10월 19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할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우의정 이복원(李福源), 좌참찬 김화진(金華鎮), 행사직 정상순(鄭尙淳), 예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행사직 정호인(鄭好仁), 행사직 서호수(徐浩修), 공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호조판서 정일상(鄭一祥), 형조판서 엄숙(嚴璫), 병조판서 이갑(李埤), 우참찬 이재간(李在簡), 판윤 김이소(金履素), 좌윤 이주국(李柱國), 형조참판 이형규(李亨達), 행부사직 이경무(李敬懋), 행부사직 서유대(徐有大), 이조참판 조시준(趙時俊), 행좌승지 서유방(徐有防), 행부사직 정지겸(鄭志儉), 행부사직 박우원(朴祐源), 행대사성 심풍지(沈豐之),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헌납 신치권(申致權), 지평 이백형(李百亨), 부교리 임제원(林濟遠), 수찬 이태형(李太亨), 좌부승지 이재학(李在學), 가주서 이익진(李翼晉), 사변가주서 최운한(崔雲翰),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엮드렸다. <중략> 남현로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백형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백형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백형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남현로·신치권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남현로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二十日 戊寅

- 掌令李延伋, 持平林道浩, 獻納申致權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置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20일(무인)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연급(李延伋) 등의 계
- 장령 이연급(李延伋), 지평 임도호(林道浩), 헌납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鞠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二十日 戊寅

- 持平林道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20일(무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임도호(林道浩)의 계
- 지평 임도호(林道浩)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二十日 戊寅

- 獻納申致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20일(무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신치권(申致權)의 계
- 헌납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二十一日 己卯

- 持平李百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21일(기묘)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백형(李百亨)의 계
- 지평 이백형(李百亨)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二十二日 庚辰

- 癸卯十月二十二日申時, 上御誠正閣. 時·原任大臣·備局有司堂上入侍時, 領議政鄭存謙, 判府事徐命善, 判府事鄭弘淳, 判府事李徽之, 右議政李福源, 行司直徐浩修, 吏曹參判趙時俊, 行都承旨鄭昌順, 假注書李翼晉, 記注官金健修, 記事官尹行任, 以次進伏訖. …… 上曰, 當此無前之災, 民情易於騷動, 朝家則姑勿浮動, 只以某樣抹活爲事, 而茫無計策, 若又悠泛度日, 或致一民之捐瘠, 則此將奈何? …… 命善曰, 分養馬及濟州貢馬事, 誠大惠矣. 上曰, 湖南竹木之停供, 卽前例外事, 而其他則皆停退, 非蕩減矣. 未知實惠之及民也否?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22일(경진)

- 흥년으로 인한 제주(濟州) 공마(貢馬) 정퇴(停退)의 타당함을 아뢰는 판부사 서명선(徐命善)의 계

- 계묘년 10월 20일 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시임과 원임대신 및 비국 유사당상이 입시할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판부사 서명선(徐命善), 판부사 정홍순(鄭弘淳), 판부사 이휘지(李徽之), 우의정 이복원(李福源), 행사직 서호수(徐浩修), 이조참판 조시준(趙時俊), 행도승지 정창순(鄭昌順), 가주서 이익진(李翼晉),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이처럼 그전에 없던 재해(災害)를 당했으니, 민간의 사정이 소요되기 쉬울 것이다. 조정에서는 우선 부화뇌동하지 말고 오직 어떤 방법으로든 구제하여 살리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아득히 아무 계책도 없이 만일에 또 그러저럭 날만 보내다가 혹시 하나의 민생이라도 굶주리다 버려져 죽게 된다면, 장차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략>”라고 하였다. <중략> 서명선이 아뢰기를, “분양마(分養馬)와 제주공마(濟州貢馬)의 일은 실로 큰 은혜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호남에서 바치는 대나무와 나무를 멈추게 한 것은 전례 밖의 일이다. 하지만 그밖의 모든 것은 정퇴(停退)하였지 탕감한 것은 아니다. 실지 혜택이 백성들에게 미쳤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재해, 공마, 정퇴.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二十四日 壬午

- 掌令李延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24일(임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연급(李延伋)의 계

- 장령 이연급(李延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二十八日 丙戌

- 大司諫南玄老, 執義李福徽, 司諫李濟萬, 掌令李延伋, 持平林道浩·李百亨, 獻納申致權, 正言李錫夏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決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28일(병술)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등의 계
-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집의 이복휘(李福徽), 사간 이제만(李濟萬), 장령 이연급(李延伋), 지평 임도호(林道浩)·이백형(李百亨), 헌납 신치권(申致權), 정언 이석하(李錫夏)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月 二十九日 丁亥

- 濟州牧使嚴思晩狀啓. 十月內封進柑子, 今年節序差晚, 各種橘果, 姑未入黃, 恐未免過限, 惶悚待罪事, 傳于李得臣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7년(1783) 계묘년 10월 29일(정해)

- ☐ 귤과 봉진과 관련하여 올린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의 장계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이 장계로, ‘10월 안에 봉진(封進)하는 감자(柑子)가 올해 절기가 조금 늦어 각종 귤과(橘果)가 아직 누렇게 익지 않아서 기한이 지나는 것을 면치 못할 듯하니 황송하여 대죄합니다.’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이득신(李得臣)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엄사만, 귤과, 봉진, 대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一月 九日 丙申

- 大司諫南玄老, 執義李福徽, 司諫李濟萬, 掌令李延伋, 持平林道浩·李百亨, 獻納申致權, 正言洪樂恒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決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1월 9일(병신)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등의 계
-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집의 이복휘(李福徽), 사간 이제만(李濟萬), 장령 이연급(李延伋), 지평 임도호(林道浩)·이백형(李百亨), 헌납 신치권(申致權), 정언 홍낙항(洪樂恒)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一月 九日 丙申

- 持平李百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1월 9일(병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백형(李百亨)의 계
- 지평 이백형(李百亨)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一月 九日 丙申

- 正言洪樂恒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1월 9일(병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홍낙항(洪樂恒)의 계
- 정언 홍낙항(洪樂恒)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一月 十一日 戊戌

- 大司諫南玄老, 司諫李濟萬, 掌令李延伋, 持平林道浩 · 李百亨, 獻納申致權, 正言洪樂恒 · 洪聖淵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1월 11일(무술)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등의 계
-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사간 이제만(李濟萬), 장령 이연급(李延伋), 지평 임도호(林道浩) · 이백형(李百亨), 헌납 신치권(申致權), 정언 홍낙항(洪樂恒) · 홍성연(洪聖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一月 十一日 戊戌

- 持平林道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1월 11일(무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임도호(林道浩)의 계
- 지평 임도호(林道浩)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一月 十一日 戊戌

- 正言洪聖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1월 11일(무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홍성연(洪聖淵)의 계
- 정언 홍성연(洪聖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一月 十二日 己亥

- 大司諫南玄老, 司諫李濟萬, 掌令李延伋, 持平林道浩 · 李百亨, 獻納申致權, 正言洪樂恒 · 洪聖淵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1월 12일(기해)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등의 계
- 대사간 남현로(南玄老), 사간 이제만(李濟萬), 장령 이연급(李延伋), 지평 임도호(林道浩) · 이백형(李百亨), 헌납 신치권(申致權), 정언 홍낙항(洪樂恒) · 홍성연(洪聖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一月 十二日 己亥

- 掌令李延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1월 12일(기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연급(李延伋)의 계
- 장령 이연급(李延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一月 十二日 己亥

- 獻納申致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1월 12일(기해)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신치권(申致權)의 계
- 헌납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一月 十二日 己亥

- 癸卯十一月十二日辰時, 上御誠正閣. 禮房承旨入侍時, 行左承旨徐有防, 假注書徐澄修, 記事官李崑秀·尹行任, 以次進伏訖. …… 上曰, 字恤典則編成之意, 蓋欲使無告之赤子各得其保育之所, 而不至於填[顛]連丘壑, 則宜令廣布閭巷, 塗人耳目, 隨其聞見, 各盡拯濟之方, 可也. 內而各司, 外而郡邑, 自當按例賜給, 而自夫兩班官員, 以及面里坊曲, 亦必一一頒, 寧濫無簡, 然後咸悉朝家之德意, 庶有博濟之實效. 承旨須取官案及各處所騰來案簿, 一一點檢, 俾無遺漏之弊, 可也. …… 命書傳教曰, 字恤典則頒賜件, …… 濟州牧使, 判官, …… 大靜縣監, 旌義縣監, 各不粧白綿紙一件. …… 濟州監牧官, …… 各粧橫白綿紙一件.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1월 12일(기해)

□ 제주(濟州)의 수령 등에게 자휼전칙(字恤典則)을 반사(頒賜)하라는 전교

- 계묘년 11월 12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예방승지가 입시할 때 행좌승지 서유방(徐有防), 가주서 서형수(徐澄修),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자휼전칙(字恤典則)¹⁹⁸을 엮어서 만드는 뜻은 대개 하소연할 곳 없는 적자(赤子)들로 하여금 각자 보육(保育)하는 곳을 얻어서 언덕과 고랑에 나뒹구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즉 여항(閭巷)에 널리 퍼뜨려 사람들의 귀와 눈에 칠해져서 듣고 보는 것에 따라서 각각 구제하는 방도를 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안으로는 각사(各司)에, 밖으로는 군읍(郡邑)에 마땅히 규례를 살펴 사급(賜給)하고, 양반 관원으로부터 면리(面里)와 방곡(坊曲)에 이르기까지 또한 반드시 일일이 인쇄하여 반포하고, 차라리 넘칠지언정 간략하지 않은 뒤에야 모두가 조정의 덕의(德意)를 잘 알아서 널리 구제하는 실효가 있을 것이다. 승지는 관안(官案) 및 각처에서 베껴 온 문서의 장부를 가져다가 일일이 점검하여 누락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자휼전칙을 반사(頒賜)하는 건(件)으로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제주판관(濟州判官),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정의현감(旌義縣監)에게 각기 불장백면지(不粧白綿紙) 1건, <중

198) 자휼전칙(字恤典則): 정조 7년(1783) 계묘년에 흥년 때 구걸하는 10세 이하의 어린이와 3세 이하의 기아(棄兒)에 대한 구휼 대책을 강구하여 그에 대한 규정을 수록한 책.

략〉 제주감목관(濟州監牧官)에게 〈중략〉 장황백면지(粧潢白綿紙) 1건을 반사하
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제주판관, 대정현감, 정의현감, 감목관, 반사, 자휼전칙.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一月 十九日 丙午

- 癸卯十一月十九日初更, 上御誠正閣. 在院承旨與詣臺三司入侍時, 行左承旨徐有防, 右承旨沈有鎮, 左副承旨安聖彬, 右副承旨洪秉纘, 同副承旨鄭宇淳, 假注書徐澄修, 記事官李崑秀·尹行任, 持平李正薰, 正言李顯默, 校理洪文泳, 修撰沈基泰, 以次進伏訖. …… 正薰·顯默等曰,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王王法. 【措語見上】 上曰, 不允. …… 正薰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措語見上】 上曰, 不允. …… 正薰曰,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措語見上】 上曰, 不允. 顯默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語見上】 上曰, 不允. …… 顯默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措語見上】 上曰, 亟停勿煩.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1월 19일(병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정훈(李正薰) 등의 계

- 계묘년 11월 19일 초경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재원승지와 대각(臺閣)에 나온 삼사(三司)가 입시할 때 행좌승지 서유방(徐有防), 우승지 심유진(沈有鎮), 좌부승지 안성빈(安聖彬), 우부승지 홍병찬(洪秉纘), 동부승지 정우순(鄭宇淳), 가주서 서형수(徐澄修),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 지평 이정훈(李正薰), 정언 이현묵(李顯默), 교리 홍문영(洪文泳), 수찬 심기태(沈基泰)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정훈과 이현묵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정훈¹⁹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정훈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 임

199) 이정훈(1740~?): 본관 평창(平昌). 자 원직(元直).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현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현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이보행,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一月 二十三日 庚戌

- 安聖彬, 以義禁府言啓曰, 大逆不道罪人澤徵應坐諸人, 已自本道查出以來矣. 澤徵庶子偶得, 年十三, 松得年十, 老得年六歲云, 俱以年未滿, 偶得全羅道濟州牧旌義縣, 松得康津縣薪智島, 老得興陽縣蛇渡, 竝免絞爲奴, …… 而時囚於原州牧云, 令刑曹, 依例押送于各其配所, ……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7년(1783) 계묘년 11월 23일(경술)

- ☐ 택징(澤徵)의 연좌 죄인을 배소(配所)로 압송하기를 요청하는 의금부의 초기
- 안성빈(安聖彬)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대역부도 죄인 택징(澤徵)에 연좌된 죄인들을 본도(本道)에서 조사해 내어 왔습니다. 택징의 서자 우득(偶得)은 13세, 송득(松得)은 10세, 노득(老得)은 6세라고 합니다. 모두 나이가 차지 않아서 우득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송득은 강진현 신지도에, 노득은 흥양현 사도에 모두 교수형을 면해 노(奴)로 삼았습니다. <중략> 현재 원주목(原州牧)에 갇혀 있다고 하니 형조로 하여금 규례대로 각기 배소(配所)로 압송하게 하십시오. <중략>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택징, 연좌, 우득, 정의현, 배소.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一月 二十五日 壬子

- 癸卯十一月二十五日申時, 上御誠正閣. 坐直承旨入侍時, 同副承旨趙興鎭, 假注書金孝建, 記事官李崑秀·尹行任, 以次進伏訖. 上曰, 濟州進上貢獻之人, 方在何處, 數爲幾何, 令院隸問入. 賤臣承命出問後還入, 以二十三名上來, 方在明洞旅舍之意, 仰奏. 命退, 承史以次退出.

❖ 정조 7년(1783) 계묘년 11월 25일(임자)

- 제주(濟州)에서 진상을 공헌(貢獻)하기 위해 온 사람의 수와 머무는 곳을 알아보고 오라는 임금의 하교
- 계묘년 11월 25일 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좌직승진(坐直承旨)가 입시할 때 동부승지 조흥진(趙興鎭), 가주서 김효건(金孝建)²⁰⁰,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에서 진상을 공헌(貢獻)하기 위해 온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고, 수는 얼마가 되는지 승정원의 하례(下隸)에게 명하여 물어 들어오게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가 물어본 후 도로 들어와서 23명이 올라왔고, 지금 명동여사(明洞旅舍)에 있다는 뜻으로 아뢰었다. 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 나왔다.

△ 주제어: 진상, 공헌.

200) 김효건(1752~1815): 본관 광산(光山). 자 자중(子中).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태천현감, 좌부승지, 대사간 역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二月 二日 己未

- 徐龍輔, 以漢城府言啓曰, 今此癸卯年, 獻民數時, 京中及八道元戶人口摠數, 抄錄入啓, 而濟州三邑民數, 迄未上來. 海島遲速, 未可預料, 故京外已磨勘戶口摠數, 爲先入錄, 濟州三邑, 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7년(1783) 계묘년 12월 2일(기미)

- 계묘년 제주(濟州) 삼읍의 호구총수를 추후에 첨록(添錄)하겠다는 한성부의 초기
- 서용보(徐龍輔)²⁰¹가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금년 계묘년의 백성수를 바칠 때 서울과 8도의 원호(元戶)의 인구총수를 초록(抄錄)하여 입계하였는데, 제주(濟州) 삼읍 백성의 수는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섬이라서 더디고 빠름을 미리 헤아릴 수 없으니, 서울과 지방에서 이미 마감한 호구총수를 우선 입록(入錄)하고, 제주 삼읍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추후에 첨록(添錄)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삼읍, 호구총수.

201) 서용보(?~?): 본관 달성(達城). 자 여중(汝中). 호 심재(心齋). 시호 익헌(翼憲).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영중추부사, 영의정 역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二月 五日 壬戌

- 安聖彬,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大逆不道罪人澤徵庶子, 偶得年十三, 松得年十, 老得年六歲云, 俱以年未滿. 偶得, 全羅道濟州牧旌義縣, 松得, 康津縣薪智島, 老得, 興陽縣蛇島, 竝免絞爲奴. …… 令刑曹押送事, 命下矣. 罪人等, 時囚於原春道原州牧云, 自本道別定將校, 押送於各其配所事, 發關, 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逆屬之散配, 不容泛忽, 無或一時發配, 必須間數日次次押送之意, 知委該道道臣處, 可也.

❖ 정조 7년(1783) 계묘년 12월 5일(임술)

- 대역부도 죄인 택징(澤徵)의 서자 우득(偶得) 등을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형조의 초기
- 안성빈(安聖彬)²⁰²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의금부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대역부도 죄인 택징(澤徵)의 서자 우득(偶得)은 13세, 송득(松得)은 10세, 노득(老得)은 6세로 모두 나이가 차지 않아서 우득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송득은 강진현 신지도에, 노득은 홍양현 사도에 모두 교수형을 면하여 노(奴)로 삼고 <중략> 형조로 하여금 압송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들이 지금 원춘도 원주목(原州牧)에 갇혀있다고 합니다. 본도(本道)에서 별도로 장교를 정하여 각기 배소로 압송하도록 관문(關文)을 보내어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분부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역속(逆屬)을 여러 장소로 흩어서 귀양보내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한꺼번에 배소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며칠 간격으로 차례차례 압송하도록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통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택징, 우득, 정의현, 압송.

202) 안성빈(1732~?): 본관 순흥(順興). 자 질보(質父). 1763년(영조 39) 문과 급제. 함평현감, 승지, 대사간 역임.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二月 十五日 壬申

- 大司憲金夏材, 掌令尹曠, 持平李度謙·李益運, 正言林道浩·趙弘鎮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2월 15일(임신)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김하재(金夏材) 등의 계
- 대사헌 김하재(金夏材), 장령 윤호(尹曠), 지평 이도겸(李度謙)·이익운(李益運), 정언 임도호(林道浩)·조홍진(趙弘鎭)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二月 十五日 壬申

- 持平李度謙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2월 15일(임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도겸(李度謙)의 계
- 지평 이도겸(李度謙)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二月 十五日 壬申

- 正言林道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2월 15일(임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임도호(林道浩)의 계
- 정언 임도호(林道浩)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二月 十六日 癸酉

- 癸卯十二月十六日辰時, 上御涵仁亭. 儒生講製入侍時, 行都承旨沈豐之, 行左承旨朴祐源, 右承旨林錫喆, 左副承旨安聖彬, 右副承旨李時秀, 同副承旨趙興鎮, 假注書徐澄修·朴能源, 記事官李祖承·尹行任, 一直提學鄭志儉, 二直提學徐有防, 檢校直閣徐龍輔, 待教李崑秀, 以次進伏訖. …… (益運·弘鎮)又曰,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決正王法. 上曰, 不允. …… 益運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上曰, 不允. …… 又曰,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 弘鎮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7년(1783) 계묘년 12월 16일(계유)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이익운(李益運) 등의 계

- 계묘년 12월 16일 진시에 임금이 함인정(涵仁亭)으로 나아갔다. 유생들의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에 입시할 때 행도승지 심풍지(沈豐之), 행좌승지 박우원(朴祐源), 우승지 임석철(林錫喆), 좌부승지 안성빈(安聖彬), 우부승지 이시수(李時秀), 동부승지 조흥진(趙興鎮), 가주서 서형수(徐澄修)·박능원(朴能源), 기사관 이조승(李祖承)·윤행임(尹行任), 일직제학 정지검(鄭志儉), 이직제학 서유방(徐有防), 검교직각 서용보(徐龍輔), 대교 이곤수(李崑秀)가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이익운(李益運)과 조흥진(趙弘鎮)이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익운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조흥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二月 十九日 丙子

- 大司憲金夏材, 持平李度謙, 正言林道浩啓曰, ……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措辭見上】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2월 19일(병자)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김하재(金夏材) 등의 계
- 대사헌 김하재(金夏材), 지평 이도겸(李度謙), 정언 임도호(林道浩)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二月 二十日 丁丑

- 安聖彬, 以備邊司言啓曰, 濟州牧使嚴思晩, 災實分等狀啓, 有草記稟處之命矣. 卽見其狀本, 則以爲, 今年穡事, 最被早霜之災, 未免爲慘歉, 而本州則稍實十二里, 之次二十五里, 尤甚四十二里, 大靜則稍實一里, 之次二里, 尤甚十九里, 旌義則稍實四里, 之次十二里, 尤甚二十一里, 而依所下綸音, 舊還則爲先停退, 新還則亦許代捧, 而若夫尤甚里之尤甚民, 則雖許代捧, 當此歉荒, 期於準徵, 實有難支之慮. 三邑之尤甚里中, 尤甚戶當捧條折米二千五百六十一石十一斗七升內, 五百十二石五斗三升四合, 待明年姑爲退捧, 各寺奴身貢米, 每口二斗內, 依近例折半減捧, 男丁大同米, 每口五升內, 減一升捧上, 以示朝家值災優恤之惠澤, 軍兵操鍊, 裹糧赴操之弊, 亦甚不小, 姑令停退, 待明春從附近哨司鍊, 而凡干舉行, 固宜登聞, 恭俟處分, 而候風往來, 動費數朔, 故蠲減停退等事, 敢援前例, 先此舉行, 事涉擅便, 極爲惶恐, 竝令廟堂稟處矣. 新還之停退, 各寺奴身貢米·大同米之減捧, 軍兵操鍊之停退, 災年應行之事, 而先爲舉行, 從後狀聞, 亦有前例, 依狀請施行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2월 20일(정축)

- 凶年으로 인해 제주(濟州) 삼읍 신환(新還)의 정퇴(停退) 등을 시행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초기
- 안성빈(安聖彬)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이 재실(災實)의 등급을 나누어 보고하는 장계에 대해 초기(草記)하여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방금 그 장본(狀本)을 보니, ‘금년 농사가 가뭄과 서리로 가장 피해를 입어 참혹한 흉작을 면치 못하였는데, 본주(本州)는 초실(稍實)이 12리(里), 지차(之次) 25리, 우심(尤甚) 42리이고, 대정(大靜)은 초실 1리, 지차 2리, 우심 19리이며, 정의는 초실 4리, 지차 12리, 우심 21리입니다. 내려진 윤음(綸音)에 따라 구환(舊還)은 우선 정퇴(停退)하였고, 신환(新還) 또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바치게 하되, 우심리(尤甚里)의 우심민(尤甚民) 같은 경우는 비록 다른 것으로 바꾸어 바치게 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흉년을 당하여 기필코 징수한다면 실로 살아가기 어려운 염려가 있습니다. 삼읍의 우심리 중에 우심호(尤甚戶)에서 받아들여야 할 절미(折米) 2,561섬 11말 7되 안에서 512섬 5말 3되 4홉은 내년을 기다려 일단 물려 바치게 하고, 각 시노(侍奴)의 신공미(身貢米)는

1구(口)당 2말 안에서 최근 사례에 따라 절반을 감하여 바치게 하고, 남정 대동미(大同米)는 1구당 5되 안에서 1되를 감하여 봉상(捧上)하여 조정에서 재해를 만나 넉넉히 구휼해 주는 혜택을 보여주십시오. 군병의 조련(操鍊)은 양식을 싸가지고 조련에 나아가는 폐단이 또한 심히 적지 않으니 우선 정퇴하여 내년 봄을 기다렸다가 부근의 초사(哨司)를 따르도록 하되, 거행하는 모든 일은 마땅히 보고하여 처분을 기다리게 하십시오. 바람을 기다려서 왕래하는 데에 몇 개월이 소비되므로 견감하고 정퇴하는 등의 일은 감히 전례를 원용하여 이에 앞서 거행합니다.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지극히 황공합니다. 모두 의정부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신환의 정퇴, 각 시노의 신공미와 대동미의 감봉(減捧), 군병 조련의 정퇴는 재해가 심한 해에 응당 행해야 하는 일로서 먼저 거행하고 뒤에 장계로 보고하는 것은 또한 전례가 있습니다.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엄사만, 재실, 흉년, 정퇴.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二月 二十日 丁丑

- 癸卯十二月二十日辰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鄭存謙，右議政李福源，行司直鄭尙淳，行副司直徐有隣·鄭好仁·徐有慶·徐浩修，工曹判書鄭民始，戶曹判書鄭一祥，行副司直嚴璫，吏曹判書李在簡，漢城判尹金履素，右尹李敬懋，行副司直徐有大，大司憲金夏材，行副司直徐有防，江華留守鄭志儉，行都承旨沈豐之，持平李度謙，校理姜儼，正言林道浩，副修撰李錫夏，左副承旨安聖彬，假注書李敬五，事變假注書沈銖，記事官李祖承·尹行任，以次進伏訖。……(浩啓曰)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更令王府，拿致設鞫，期於得情，決正王法。上曰，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2월 20일(정축)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부사직 서호수(徐浩修)의 계

- 계묘년 12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우의정 이복원(李福源), 행사직 정상순(鄭尙淳), 행부사직 서유린(徐有隣)·정호인(鄭好仁)·서유경(徐有慶)·서호수(徐浩修), 공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호조판서 정일상(鄭一祥), 행부사직 엄숙(嚴璫), 이조판서 이재간(李在簡), 한성판윤 김이소(金履素), 우윤 이경무(李敬懋), 행부사직 서유대(徐有大), 대사헌 김하재(金夏材), 행부사직 서유방(徐有防), 강화유수 정지겸(鄭志儉), 행도승지 심풍지(沈豐之), 지평 이도겸(李度謙), 교리 강인(姜儼), 정언 임도호(林道浩), 부수찬 이석하(李錫夏), 좌부승지 안성빈(安聖彬),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사변가주서 심수(沈銖), 기사관 이조승(李祖承)·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었드렸다. <중략> 서호수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二月 二十一日 戊寅

- 大司憲金夏材, 持平李益運 · 李度謙, 正言林道浩 · 成鼎鎭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措辭見上】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2월 21일(무인)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김하재(金夏材) 등의 계
- 대사헌 김하재(金夏材), 지평 이익운(李益運) · 이도겸(李度謙), 정언 임도호(林道浩) · 성정진(成鼎鎭)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鞠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八年 癸卯 十二月 二十七日 甲申

- 大司諫李益炆, 掌令權坪啓曰, ……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措辭見上】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7년(1783) 계묘년 12월 27일(갑신)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이익선(李益炆) 등의 계
- 대사간 이익선(李益炆)²⁰³, 장령 권평(權坪)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鞠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203) 이익선(1722~?): 본관 전주(全州). 자 자선(子宣). 1761년(영조 37) 문과 급제. 정언, 지평, 대사간 역임.

1784年

(정조 8)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一月 五日 辛卯

- 執義徐有成, 司諫兪彥脩, 掌令李延伋, 獻納李運彬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월 5일(신묘)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서유성(徐有成) 등의 계
- 집의 서유성(徐有成), 사간 유언수(兪彦脩), 장령 이연급(李延伋), 헌납 이운빈(李運彬)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一月 五日 辛卯

○ 掌令李延伋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之狀, 渠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聖中之罪, 可勝誅哉? 包藏禍心, 主張凶論, 敢托不敢言之地, 倡出不忍聞之說, 作爲窩主, 慫恿徒黨, 故徐有臣·朴宗甲·李義駿輩, 從而和之, 交口讚引. 噫嘻, 痛矣. 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且莫重義理, 倚托怪鬼輩, 欲售疑亂之計者, 究厥心腸, 與德師·載翰, 一串貫來者也. 不仕於先大王朝者, 卽先大王之逆臣, 先大王之逆臣, 卽殿下之逆臣, 豈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 而居譎以來, 小[少]不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經年爭執, 尙道王章, 窮凶之節, 無以嚴覈, 亂逆之徒, 無所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噫嘻, 李普行之罪, 可勝誅哉? 賦性妖邪, 行己暗愎, 脅肩諂笑, 情態難掩, 左右閃忽, 伎倆漸巧, 特一天生宵小之類耳. 口蜜腹釗[口蜜腹劍], 林甫之後身, 狐媚狼顧京惇之餘套, 以渠處地爲人, 幸際承乏, 兜攬至此, 則不思知分報效之道, 敢生眩惑跳踉之計, 其貽害世道, 將不知至於何境, 有識之憂歎, 固已久矣. 雖以今番事觀之, 亦出於計較利害之心, 外托懲討之義, 內售嘗試之計,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此於渠, 猶屬細故, 至於明義一部, 是何等大義理, 而渠之所論本事之外, 乃敢纔[攙]及於有樹立之大臣, 必欲漫漶義理, 欺謾君父, 包藏禍心, 煽動一世, 若此不已, 則倫綱將至墜地, 凶孽亦必生心. 噫, 彼普行, 抑獨何意, 循私負國, 一至此哉? 其心所在, 有不可測, 而此又渠卽一斷案, 何幸聖明? 俯燭其情狀, 處分明快, 滿庭臣僚, 孰不欽仰, 而若論其負犯, 不可不一問, 快正其罪.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1월 5일(신묘)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연급(李延伋)의 계

○ 장령 이연급(李延伋)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

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화심(禍心)을 품고 흉론(凶論)을 주장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의탁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앞장서서 내어 와주(窩主)가 되어 도당(徒黨)을 종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유신(徐有臣)·박종갑(朴宗甲)·이의준(李義駿)의 무리가 따라서 화답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선대왕(先大王) 때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전하에게 벼슬하여 재주와 포부를 펼치려 했다는 말은 더욱더 흉악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한 막중한 의리를 괴귀(怪鬼)의 무리에게 맡겨 의심하여 소란을 피우려는 계책을 부리고자 한 것은 그 심보를 따져보면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²⁰⁴과 더불어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선대왕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로 바로 선대왕의 역신(逆臣)이고, 선대왕의 역신은 바로 전하의 역신인데, 어찌 잠시라도 천지 사이에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해를 넘겨 쟁집(爭執)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법을 면하고 있으니,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을 엄히 조사할 수 없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아! 이보행(李普行)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타고난 성품이 요사스럽고 몸가짐이 교만하여 어깨를 움츠리며 아양을 떠니 정태(情態)를 가리기 어렵고, 이리저리 변화무쌍하여 기량이 점점 교묘해지니 단지 하나의 타고난 간사하고 소견이 좁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뱃속에는 칼을 지녔으니 임보(林甫)의 후신(後身)이고, 여우의 눈썹을 하고 이리처럼 돌아보니 경(京)·돈(惇)의 여투(餘套)입니다. 그의 처지로써 사람이 되어 요행히 승핍(承乏)²⁰⁵을 만나 두람(兜攬)이 여기에 이르렀다면 분수를 알아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현혹하여 날뛰려는 계책을 내었으니, 그가 세도(世道)에

204)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사도세자의 일로 영조를 무욕(誣辱)한 사건이 일어나 이덕사, 조재한 등이 복주(伏誅)되고 환관 김수현(金壽賢)과 이흥록(李興祿) 등이 귀양갔음.

205) 승핍(承乏): 인재가 없어서 재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 벼슬을 함.

해를 끼치는 것이 장차 어느 지역에 이르게 될지 알 수 없어 식자(識者)들이 근심하고 탄식한 것이 실로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보더라도 또한 이해를 따지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겉으로는 징토(懲討)하는 의리를 핑계 대고 안으로는 떠보려는 계책을 꾸몄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그에게는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하겠지만 의리를 밝히는 한 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리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논한 본사(本事) 외에는 감히 수립(樹立)한 것이 있는 대신(大臣)을 끌어넣었으니, 필시 의리를 모호하게 하고 군부(君父)를 속이며 화심(禍心)을 감추고 한 세상을 선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그치게 하지 않는다면 윤강(倫綱)이 장차 땅에 떨어질 것이고 흉열(凶孽) 또한 반드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아, 저 이보행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사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저버린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릴 수 없지만 이것 또한 그의 한 단안(斷案)입니다만 얼마나 다행인지 성명(聖明)이 그 정상(情狀)을 굽어살펴 처분을 명쾌하게 하였으니, 온 조정의 신료들이 누군들 흠양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범한 죄를 논하자면 한 번 신문하여 시원하게 그 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一月 五日 辛卯

- 獻納李運彬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噫嘻, 痛矣. 聖中·有臣·宗甲·義駿等罪犯, 尙何言哉? 倡邪說而作爲窩窟, 結凶徒而交相吹噓, 暗地綢繆, 設計妖凶, 敢欲疑亂於莫重之義理, 至以十三年不着帽等說, 肆然陳奏於筵席, 究厥腸肚, 實與德師·載翰輩, 一串貫來者. 噫, 彼諸賊, 既皆法伏[伏法], 則顧此群兇, 獨可容貸耶? 情迹既露, 負犯至重, 決不可一刻容貸, 而況且聖中, 居謫以來, 不思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此輩久遁王章, 亂賊無以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1월 5일(신묘)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이운빈(李運彬)의 계
- 헌납 이운빈(李運彬)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노성중(盧聖中)·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의 범죄에 대해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筵席)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의 무리와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아 저 역적들은 이미 모두 복주(伏誅)되었으니, 이 무리들의 흉악함을 돌아보건대 유독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또한 노성중의 경우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이 무리들이 국법을 면하고 있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一月 七日 癸巳

- 司諫兪彥脩, 掌令李延伋, 獻納李運彬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월 7일(계사)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유언수(兪彦脩) 등의 계
- 사간 유언수(兪彦脩), 장령 이연급(李延伋), 헌납 이운빈(李運彬)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一月 七日 癸巳

- 掌令李延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1월 7일(계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연급(李延伋)의 계
- 장령 이연급(李延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一月 七日 癸巳

- 司諫兪彥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1월 7일(계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유언수(兪彦脩)의 계
- 사간 유언수(兪彦脩)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一月 十日 丙申

- 行大司憲金魯鎭, 行大司諫沈豐之, 執義李頤祥, 持平鄭萬始·趙濟魯, 正言成種仁·李翼晉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월 10일(병신)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헌 김노진(金魯鎭) 등의 계
- 행대사헌 김노진(金魯鎭), 행대사간 심풍지(沈豐之), 집의 이이상(李頤祥)²⁰⁶, 지평 정만시(鄭萬始)·조제로(趙濟魯), 정언 성종인(成種仁)·이익진(李翼晉)²⁰⁷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206) 이이상(1732~?): 본관 연안(延安).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동래부사, 대사간, 강계부사 역임.

207) 이익진(1747~1819): 본관 전주(全州). 자 치명(禪明). 1782년(정조 6) 문과 급제. 호조참의, 대사간 역임.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一月 十日 丙申

- 持平趙濟魯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1월 10일(병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조제로(趙濟魯)의 계
- 지평 조제로(趙濟魯)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一月 十日 丙申

- 正言李翼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
曰, 不允. …… 【措辭見上】

❖ 정조 8년(1784) 갑진년 1월 10일(병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익진(李翼晉)의 계
- 정언 이익진(李翼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一月 十一日 丁酉

○ 甲辰正月十一日辰時, 上御仁政門. 朝參入侍時, 行都承旨尹塾, 行左承旨徐有防, 右承旨林錫喆, 左副承旨李養鼎, 右副承旨安聖彬, 同副承旨李時秀, 假注書李敬五·朴能源, 事變假注書金孝建, 記注官金健修·金鳳顯, 記事官李崑秀, 以次侍立. …… (魯鎮·有防·頤祥·濟遠·集斗·濟魯·萬始·翼晉·種仁) 又曰, 請楸子島荏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決正王法. 上曰, 不允. …… 魯鎮·頤祥·濟魯·萬始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上曰, 不允. …… 又曰,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 有防·濟遠·集斗·翼晉·種仁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

❖ 정조 8년(1784) 갑진년 1월 11일(정유)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김노진(金魯鎭) 등의 계

○ 갑진년 1월 11일 진시에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으로 나아갔다. 조참(朝參)에 입시할 때 행도승지 윤숙(尹塾), 행좌승지 서유방(徐有防), 우승지 임석철(林錫喆), 좌부승지 이양정(李養鼎), 우부승지 안성빈(安聖彬), 동부승지 이시수(李時秀), 가주서 이경오(李敬五)·박능원(朴能源), 사변가주서 김효건(金孝建), 기주관 김건수(金健修)·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이곤수(李崑秀)가 차례로 시립(侍立)하였다. 〈중략〉 김노진(金魯鎭)·서유방·이이상(李頤祥)·임제원(林濟遠)·이집두(李集斗)·조제로(趙濟魯)·정만시(鄭萬始)·이익진(李翼晉)·성종인(成種仁)이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노진·이이상·조제로·정만시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말하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서유방·조제로·이집두·이익진·성종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一月 十三日 己亥

- 甲辰正月十三日辰時，上御誠正閣。晝講・次對追後入侍時，知事鄭一祥，特進官趙時俊，參贊官朴祐源，侍讀官林道浩，檢討官李泰永，宗臣雲峯君杔，武臣李達洙，假注書朴能源，記事官李祖承・李崑秀，以次進伏訖。……(魯鎮等)又曰，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更令王府，拿致設鞫，期於得情，夫正王法。……魯鎮等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又曰，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夫正王法。上曰，不允。……又曰，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亟令王府，拿鞫嚴問。上曰，不允。……集斗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又曰，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竝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夫正王法。上曰，亟停勿煩。……

❖ 정조 8년(1784) 갑진년 1월 13일(기해)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김노진(金魯鎭) 등의 계

- 갑진년 1월 13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주강(晝講)과 차대(次對)가 추후에 입시할 때 지사 정일상(鄭一祥), 특진관 조시준(趙時俊), 참찬관 박우원(朴祐源), 시독관 임도호(林道浩), 검토관 이태영(李泰永), 종신 운봉군 이심(李杔), 무신 이달수(李達洙), 가주서 박능원(朴能源), 기사관 이조승(李祖承)・이곤수(李崑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노진(金魯鎭) 등이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기어이 실정을 캐어내어 왕법(王法)을 흔쾌히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김노진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집두(李集斗)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

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一月 十六日 壬寅

- 司諫李兢淵, 掌令宋銓, 持平洪聖淵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월 16일(임인)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송전(宋銓) 등의 계
- 사간 이금연(李兢淵), 장령 송전(宋銓), 지평 홍성연(洪聖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一月 十六日 壬寅

○持平洪聖淵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聖中之罪, 可勝誅哉? 包藏禍心, 主張凶論, 敢托不敢言之地, 倡出不忍聞之說, 作爲窩主, 慫慂徒黨, 故徐有信·朴宗甲·李義駿輩, 從而和之, 交口讚引. 噫嘻, 痛矣. 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且莫重義理, 倚托怪鬼輩, 欲售疑亂之計者, 究厥心腸, 與德師·載翰, 一串貫來者也. 不仕於先大王朝者, 卽先大王之逆臣, 先大王之逆臣, 卽殿下之逆臣. 豈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 而居謫以來, 少不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經年爭執, 尙追王章, 窮凶之節, 無以嚴覈, 亂賊之徒, 無所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噫嘻, 李普行之罪, 可勝誅哉? 賦性妖邪, 行已暗懷負[脅]肩諂笑, 情態難掩, 左右閃忽, 伎倆漸巧, 特一天生宵小之類耳. 口蜜腹劍, 林甫之後身, 狐媚狼顧, 京·惇之餘套, 以渠處地爲人, 幸際承乏, 兜攬至此則不思知分報效之心, 敢生眩惑跳踉之計, 其貽害世道, 將不知至於何境. 有識之憂歎固已久矣. 雖以今番事觀之, 亦出於計較利害之心, 外托懲討之義, 內售嘗試之計,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此於渠, 猶屬細故, 至於明義一部, 是何等大義理, 而渠之所論本事之外, 乃敢攙及於有樹立之大臣, 必欲漫漶義理, 欺瞞君父, 包藏禍心. 煽動一世, 若此不已, 則倫綱將至墜地, 凶孽亦必生心. 噫, 彼普行, 抑獨何意, 循私負國, 一至此哉? 其心所在, 有不可測, 而此又渠卽一斷案, 何幸聖明俯燭其情狀, 處分明快, 滿庭臣僚, 孰不欽仰? 而若論其負犯, 不可不一問, 快正其罪.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第四件·五件·九件·十件事, 亟停勿煩, 下諭事, 依啓.

❖ 정조 8년(1784) 갑진년 1월 16일(임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홍성연(洪聖淵)의 계

○ 지평 홍성연(洪聖淵)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

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화심(禍心)을 품고 흉론(凶論)을 주장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의탁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앞장서서 내어 와주(窩主)가 되어 도당(徒黨)을 종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유신(徐有臣)·박종갑(朴宗甲)·이의준(李義駿)의 무리가 따라서 화답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선대왕(先大王) 때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전하에게 벼슬하여 재주와 포부를 펼치려 했다는 말은 더욱더 흉악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한 막중한 의리를 괴귀(怪鬼)의 무리에게 맡겨 의심하여 소란을 피우려는 계책을 부리고자 한 것은 그 심보를 따져보면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과 더불어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선대왕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로 바로 선대왕의 역신(逆臣)이고, 선대왕의 역신은 바로 전하의 역신인데, 어찌 잠시라도 천지 사이에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해를 넘겨 쟁집(爭執)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법을 면하고 있으니,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을 엄히 조사할 수 없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아! 이보행(李普行)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타고난 성품이 요사스럽고 몸가짐이 교만하여 어깨를 움츠리며 아양을 떠니 정태(情態)를 가리기 어렵고, 이리저리 변화무쌍하여 기량이 점점 교묘해지니 단지 하나의 타고난 간사하고 소견이 좁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뱃속에는 칼을 지녔으니 임보(林甫)의 후신(後身)이고, 여우의 눈썹을 하고 이리처럼 돌아보니 경(京)·돈(惇)의 여투(餘套)입니다. 그의 처지로써 사람이 되어 요행히 승핍(承乏)²⁰⁸⁾을 만나 두람(兜攬)이 여기에 이르렀다면 분수를 알아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현혹하여 날뛰려는 계책을 내었으니, 그가 세도(世道)에 해를 끼치는 것이 장차 어느 지역에 이르게 될지 알 수 없어 식자(識者)들이 근심하고 탄식한 것이 실로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보더라도 또한 이해를

208) 승핍(承乏): 인제가 없어서 재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 벼슬을 함.

따지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겉으로는 징토(懲討) 하는 의리를 핑계 대고 안으로는 떠보려는 계책을 꾸몄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그에게는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하겠지만 의리를 밝히는 한 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리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논한 본사(本事) 외에는 감히 수립(樹立)한 것이 있는 대신(大臣)을 끌어넣었으니, 필시 의리를 모호하게 하고 군부(君父)를 속이며 화심(禍心)을 감추고 한 세상을 선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그치게 하지 않는다면 윤강(倫綱)이 장차 땅에 떨어질 것이고 흉열(凶孽) 또한 반드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아, 저 이보행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사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저버린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릴 수 없지만 이것 또한 그의 한 단안(斷案)입니다만 얼마나 다행인지 성명(聖明)이 그 정상(情狀)을 굽어살펴 처분을 명쾌하게 하였으니, 온 조정의 신료들이 누군들 흠양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범한 죄를 논하자면 한 번 신문하여 시원하게 그 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一月 十六日 壬寅

- 司諫李兢淵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噫嘻, 痛矣. 聖中·有臣·宗甲·義駿等罪犯, 尙何言哉? 倡邪說而作爲窩窟, 結凶徒而交相吹噓, 暗地綢繆, 設計妖凶, 敢欲疑亂於莫重之義理, 至以十三年不着帽等說, 肆然陳奏於筵席, 究厥腸肚, 實與德師·載翰輩, 一串貫來者也. 噫, 彼諸賊, 既皆伏法, 則顧此群凶, 獨可容貸耶? 情跡既露, 負犯至重, 決不可一刻容貸, 而況且聖中, 居謫以來, 不思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此輩久遁王章, 亂賊無以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第三件·五件·十五件事, 亟停勿煩, 下諭事, 依啓.

❖ 정조 8년(1784) 갑진년 1월 16일(임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이금연(李兢淵)의 계

- 사간 이금연(李兢淵)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노성중(盧聖中)·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의 범죄에 대해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筵席)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의 무리와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아 저 역적들은 이미 모두 복주(伏誅)되었으니, 이 무리들의 흉악함을 돌아보건대 유독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또한 노성중의 경우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이 무리들이 국법을 면하고 있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一月 十七日 癸卯

- 掌令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1월 17일(계묘)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송전(宋銓)의 계
- 장령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一月 二十八日 甲寅

- 持平洪聖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1월 28일(갑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홍성연(洪聖淵)의 계
- 지평 홍성연(洪聖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八日 甲子

○ 甲辰二月初八日辰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右議政金煜，行知中樞府事具善復，行司直鄭尙淳，行副司直金魯鎭，吏曹判書徐有隣，仁陵君李在協，行副司直徐有慶，戶曹判書鄭一祥，禮曹判書嚴璫，兵曹判書李埤，行副司直李在簡，漢城判尹金履素，工曹判書趙時俊，知敦寧徐有寧，大司憲李亨達，咸春君李昌運，行副司直徐有大，吏曹參判金夏材，漢城右尹蔡弘履，同敦寧金文淳，行左承旨徐有防，行都承旨沈豐之，執義李頤祥，掌令宋銓·安鼎大，持平金寅燮·洪聖淵，校理林濟遠，正言申耆，修撰李鼎運，右承旨柳誼，同副承旨金載瓚，假注書李敬五，事變假注書申大龜，記注官金健修·金鳳顯，以次進伏訖。……（亨達·頤祥·銓·鼎大·寅燮·聖淵·耆合啓曰）請楸子島荏棘罪人最中，更令王府，拿致設鞫，期於得情，決正王法。上曰，不允。……亨達·頤祥·銓·鼎大·寅燮·聖淵前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決正王法。上曰，不允。……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亟令王府，拿[設]鞫嚴問。上曰，不允。……耆前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竝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決正王法。上曰，亟停勿煩。……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8일(갑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이형규(李亨達) 등의 계

○ 갑진년 2월 8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우의정 김익(金煜),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사직 정상순(鄭尙淳), 행부사직 김노진(金魯鎭), 이조판서 서유린(徐有隣), 인능군 이재협(李在協), 행부사직 서유경(徐有慶), 호조판서 정일상(鄭一祥), 예조판서 엄숙(嚴璫), 병조판서 이갑(李埤), 행부사직 이재간(李在簡), 한성판윤 김이소(金履素), 공조판서 조시준(趙時俊), 지돈녕 서유녕(徐有寧), 대사헌 이형규(李亨達), 함춘군 이창운(李昌運), 행부사직 서유대(徐有大), 이조참판 김하재(金夏材), 한성판윤 채홍리(蔡弘履), 동돈녕 김문순(金文淳), 행좌승지 서유방(徐有防), 행도승지 심풍지(沈豐之), 집의 이이상(李頤祥), 장령 송전(宋銓)·안정대(安鼎大), 지평 김인섭(金寅燮)·홍성연(洪聖淵), 교리 임제원(林濟遠), 정언 신기(申耆), 수찬 이정

운(李鼎運), 우승지 유의(柳誼), 동부승지 김재찬(金載瓚),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사변가주서 신대구(申大龜), 기주관 김건수(金健修)·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었드렸다. <중략> 이형규·이이상·송전·안정대·김인섭·홍성연·신기가 전계(前啓)를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형규·이이상·송전·안정대·김인섭·홍성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신기가 전계(前啓)를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九日 乙丑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9일(을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十二日 戊辰

- 大司憲李亨達, 掌令安鼎大, 獻納兪岳柱, 正言崔守魯啓曰, ……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鞠, 期於得情, 快正王法. …….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12일(무진)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이형규(李亨達) 등의 계
- 대사헌 이형규(李亨達), 장령 안정대(安鼎大), 헌납 유악주(兪岳柱)²⁰⁹⁾, 정언 최수로(崔守魯)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209) 유악주(1737~?): 본관 기계(杞溪). 자 중진(仲鎭). 1767년(영조 43) 문과 급제. 예문관검열, 사헌부장령 역임.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十二日 戊辰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12일(무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 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十二日 戊辰

- 正言崔守魯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 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12일(무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최수로(崔守魯)의 계
- 정언 최수로(崔守魯)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十三日 己巳

- 獻納俞岳柱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13일(기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유악주(兪岳柱)의 계
- 헌납 유악주(兪岳柱)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十七日 癸酉

- 以濟州防禦使狀啓，當捧還上，分數停退，不能審慎，有犯擣〈擅〉便，惶恐待罪事，傳于洪仁浩曰，勿待罪事，回諭。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17일(계유)

- 환자(還子) 처리와 관련하여 올린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의 장계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고 전교함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의 장계에, ‘마땅히 받아야 할 환자(還上)를 수량을 나누어 정퇴(停退)하였습니다. 신중히 살피지 못하여 마음대로 처리하였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합니다.’라고 한 일과 관련하여 홍인호(洪仁)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환자, 정퇴, 대죄.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十七日 癸酉

- 甲辰二月十七日未時，上御觀物軒。軍士房承旨入侍時，右副承旨趙興鎮，二直提學徐有防，假注書朴能源，記事官李崑秀·尹行任，以次進伏訖。…… 又命書傳教曰，今番嶺南運穀，數過屢萬包，俱得利運，言念民事，萬萬幸甚。此概御史誠心督運之力，況關東·湖西兩道轉運之一時竝舉，前所罕有，朝家獎勞之政，豈下於耽羅轉運？慶尙道督運御史金載人，特爲加資，今日政下批。……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17일(계유)

- 관동과 호서 두 도에 무탈하게 곡물을 운반한 경상도 독운어사(督運御史) 김재인(金載人)에 대해 제주(濟州)로 운반한 것과 대등하게 노고를 장려하여 정사(政事)에 하비(下批)하라는 전교
- 갑진년 2월 17일 미시에 임금이 관물헌(觀物軒)으로 나아갔다. 군사방승지가 입시할 때 우부승지 조흥진(趙興鎭), 이직제학 서유방(徐有防), 가주서 박능원(朴能源),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또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이번에 영남의 곡식을 운반하는 수량이 수만 포(包)가 넘는데, 모두 잘 운반하였다.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매우 다행이다. 이는 어사가 성심으로 운반을 감독한 노력 때문으로, 더군다나 관동과 호서 두 도로 운반하는 것이 동시에 거행된 것이니 전에는 드문 일이다. 조정에서 노고를 장려하는 정사(政事)를 어찌 제주(濟州)로 운반하는 것보다 아래로 할 수 있겠는가? 경상도 독운어사(督運御史) 김재인(金載人)을 특별히 가자하고, 오늘 정사에 하비(下批)²¹⁰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독운어사, 김재인, 가자, 하비.

210) 하비(下批): 삼망(三望)을 갖추지 않고 한 사람만 적어 올려서 임금이 임명하던 일.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二十日 丙子

- 以濟州牧使啓本, 大靜縣監朴載淵等論賞, 令廟堂稟處事, 傳于洪仁浩曰, 以草記稟處.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20일(병자)

-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재연(朴載淵) 등의 논상(論賞)에 대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계본(啓本)에 대해 의정부로 하여금 초기(草記)로 품처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계본(啓本)에,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재연(朴載淵)²¹¹⁾ 등의 논상(論賞)을 의정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십시오.’라고 한 일과 관련하여 홍인호(洪仁浩)에게 전교하기를, “초기(草記)로 품처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계본, 대정현감, 박재연, 논상.

211) 박재연(?~?): 대정현감(재임: 1782. 6.~1784. 5.) 역임.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二十日 丙子

- 大司諫金思穆, 執義姜儉, 副應教李兢淵, 掌令李鼎運, 持平宋民載, 獻納兪岳柱, 校理林濟遠, 副校理林道浩, 正言崔守魯·申耆, 修撰李謙彬啓曰, …… 大司諫金思穆, 執義姜儉, 掌令李鼎運, 持平宋民載, 獻納兪岳柱, 正言崔守魯·申耆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持平宋民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正言崔守魯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20일(병자)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김사목(金思穆) 등의 계

- 대사간 김사목(金思穆), 집의 강인(姜儉), 부응교 이금연(李兢淵), 장령 이정운(李鼎運), 지평 송민재(宋民載), 헌납 유악주(兪岳柱), 교리 임제원(林濟遠), 부교리 임도호(林道浩), 정언 최수로(崔守魯)·신기(申耆), 수찬 이경빈(李謙彬)이 아뢰었다. <중략> 대사간 김사목²¹²⁾, 집의 강인, 장령 이정운, 지평 송민재, 헌납 유악주, 정언 최수로·신기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지평 송민재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정언 최수로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

212) 김사목(?~?): 본관 경주(慶州). 자 백심(伯深). 호 운소(雲巢). 1772년(영조 48) 문과 급제. 판의금부사, 우의정, 좌의정 역임.

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二十一日 丁丑

- 趙興鎭, 以備邊司言啓曰, 以濟州牧使嚴思晩牧場馬點閱後, 大靜縣監朴載淵等褒賞事狀啓, 有草記稟處之命矣. 卽見其狀本, 則以爲, 各牧場馬, 親自點閱, 則大靜縣監朴載淵所管牧馬, 照準前籍摠數, 剩爲一百十八匹, 旌義縣監李長益所管牧馬, 照準前籍摠數, 剩爲二百七十三匹, 宜有別般褒賞, 以爲激勸之地爲辭矣. 馬政, 國之重務, 而近漸解弛, 舉有耗縮之弊, 未聞蕃息之效, 不可無申明激勵之道, 而今此大靜縣監朴載淵, 馬籍元摠七百三十三匹, 而剩爲一百十八匹, 旌義縣監李長益, 馬籍元摠一千五百六十二匹, 而剩爲二百七十三匹. 牧官之通考連等, 滿五十匹以上者論賞, 載在經國大典, 而千匹之馬, 縮至八十匹, 則該守令論罪, 剩爲百匹, 則該守令陞敘, 且有判下事目, 兩邑守令, 依事目特許陞敘, 以爲激勸之地, 何如? 傳曰, 允. 該牧使狀辭旣如此, 此等守令, 依事目, 別加論賞, 然後可爲勸後之道. 待限滿遞來後, 陞敘承傳, 趁卽施行之意, 申飭銓曹, 可也.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21일(정축)

-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재연(朴載淵) 등을 포상하는 일에 대한 비변사의 초기
- 조흥진(趙興鎭)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이 목장의 말을 점열(點閱)한 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재연(朴載淵) 등을 포상하는 일로 장계를 올린 것에 대하여 초기(草記)하여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방금 그 장본(狀本)을 보니, ‘각 목장의 말을 직접 점열해 보니 대정현감 박재연 소관의 목장마는 전적(前籍)의 총수와 대조하면 남는 것이 118필이고, 정의현감 이장익(李長益)²¹³⁾ 소관의 목장마는 전적의 총수와 대조하면 남는 것이 273필입니다. 마땅히 별도로 포상하여 격려하고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정(馬政)은 나라의 중무(重務)인데, 근래 점점 해이해져서 대개 줄어드는 폐단만 있고 번식을 하는 효과는 들어보지 못했으니 거듭 격려하고 권장하는 도리를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정현감 박재연의 경우 마적(馬籍)의 원래 총수는 733필이고, 남는 것은 118필이며, 정의현감 이장익의 경우 마적의 원래 총수는 1,562필이고, 남는 것은 273필입니다. 목장을 관리함에 있어 통고

213) 이장익(?~?): 정의현감(재임: 1782. 2.~1784. 8.) 역임.

(通考)의 연등(連等)이 50필 이상인 자는 논상하는 것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실려있는데, 1천 필의 말에서 80필이 줄어들면 해당 수령은 논죄(論罪)를 하고, 남는 것이 100필이면 해당 수령을 승서(陞敘)하는 것이 또한 판하(判下)의 사목(事目)에 있습니다. 두 읍의 수령을 사목에 의하여 특별히 승서를 허락하여 격려하고 권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해당 목사가 올린 장계의 내용이 이와 같으니 이들 수령을 사목에 의하여 별도로 논상한 연후에야 후일을 권장하는 도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임기가 차서 체직(遞職)되어 오기를 기다린 후에 승서할 것을 승전(承傳)으로 곧바로 시행하라는 뜻을 전조(銓曹)에 신칙(申飭)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²¹⁴⁾

△ 주제어: 마정, 대정현감, 박재연, 정의현감, 이장익, 승서.

214)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8년 2월 21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二十一日 丁丑

- 大司諫金思穆, 執義姜儉, 副應教李兢淵, 掌令李鼎運, 持平宋民載, 獻納俞岳柱, 校理林濟遠, 副校理林道浩, 正言崔守魯·申耆, 修撰李謙彬啓曰, …… 請楸子島荏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掌令李鼎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獻納俞岳柱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三司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21일(정축)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김사목(金思穆) 등의 계
- 대사간 김사목(金思穆), 집의 강인(姜儉), 부응교 이금연(李兢淵), 장령 이정운(李鼎運), 지평 송민재(宋民載), 헌납 유악주(俞岳柱), 교리 임제원(林濟遠), 부교리 임도호(林道浩), 정언 최수로(崔守魯)·신기(申耆), 수찬 이겸빈(李謙彬)²¹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장령 이정운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헌납 유악주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삼사(三司)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215) 이겸빈(1742~?): 본관 덕수(德水). 자 성익(聖益). 1765년(영조 41) 문과 급제. 홍문관교리, 대사간, 양양부사 역임.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二十二日 戊寅

- 大司諫金思穆, 執義姜儼, 掌令李鼎運, 持平宋民載, 獻納兪岳柱, 正言崔守魯 · 申耆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22일(무인)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김사목(金思穆) 등의 계
- 대사간 김사목(金思穆), 집의 강인(姜儼), 장령 이정운(李鼎運), 지평 송민재(宋民載), 헌납 유악주(兪岳柱), 정언 최수로(崔守魯) · 신기(申耆)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二十二日 戊寅

- 執義姜儼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22일(무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강인(姜儼)의 계
- 집의 강인(姜儼)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二十二日 戊寅

- 正言申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22일(무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신기(申耆)의 계
- 정언 신기(申耆)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二十五日 辛巳

- 洪仁浩, 以漢城府言啓曰, 昨年獻民數時, 濟州三邑民數, 未及上來, 故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草記, 蒙允矣. 今始上來, 獻民數冊中, 添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25일(신사)

- 제주(濟州) 삼읍 백성의 수를 첨록(添錄)하여 들이겠다는 한성부의 초기
- 홍인호(洪仁浩)가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작년 백성의 수를 바칠 때 제주(濟州) 삼읍 백성의 수가 미쳐 올라오지 않아서 그것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추 후에 첨록(添錄)할 뜻으로 초기(草記)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지금 비로소 올라왔으니 백성의 수를 바치는 책 가운데 첨록하여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삼읍, 백성의 수, 첨록.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二十六日 壬午

- 執義林濟遠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26일(임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임제원(林濟遠)의 계
- 집의 임제원(林濟遠)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二十七日 癸未

- 甲辰二月二十七日辰時，上御宣政殿。晝講入侍時，知事李性源，特進官金夏材，參贊官鄭昌順，侍讀官趙濟魯，檢討官申耆，掌令安鼎大，假注書李敬五，記注官金鳳顯，記事官李崑秀，宗臣鶴林君煥，武臣護軍白東俊，以次進伏訖。……（鼎大啓曰）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亟令王府，拿鞠嚴問。上曰，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27일(계미)

- ☐ 추자도(楸子島)에 안치된 죄인 이보행(李普行)의 처벌을 임금과 대신들이 논의함
- 갑진년 2월 27일 진시에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으로 나아갔다. 주장에 입시할 때 지사 이성원(李性源), 특진관 김하재(金夏材), 참찬관 정창순(鄭昌順), 시독관 조제로(趙濟魯), 검토회 신기(申耆), 장령 안정대(安鼎大),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이곤수(李崑秀), 종신 학림군 이육(李燾), 무신 호군 백동준(白東俊)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안정대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二月 二十九日 乙酉

- 正言權儔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2월 29일(을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권빈(權儔)의 계
- 정언 권빈(權儔)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三月 二日 丁亥

- 金思穆, 以義禁府言啓曰, …… 靈巖郡楸子島爲奴罪人相定, …… 移左島. …… 俱是逆賊緣坐罪人, 依例令刑曹, 押送于各其配所, 而勿令一時竝發, 次次押付, 俾無紛拏之弊事, 分付, 何如? 傳曰, 允. 爲慮災邑民弊, 有此移配之舉, 府屬下去反有弊端, 勿爲發送, 嚴飭道臣, 別定將校, 鱗次押送于移定配所. …….

❖ 정조 8년(1784) 갑진년 3월 2일(정해)

- 추자도(楸子島)에 노(奴)로 삼은 죄인 상정(相定) 등을 배소(配所)로 압송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초기
- 김사목(金思穆)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상략〉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노(奴)로 삼은 죄인 상정(相定)을 좌도(左島)로 〈중략〉 이배(移配)하였습니다. 〈중략〉 모두가 역적에 연좌된 죄인이니 규례에 따라 형조로 하여금 각기 배소로 압송하게 하고, 동시에 떠나보내지 말고 차례차례 압송하여 넘겨 뒤엎키는 폐단이 없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재해를 입은 읍의 민폐가 염려가 된다. 이렇게 이배를 시행할 때 본부의 하속(下屬)이 내려가면 도리어 폐단이 있을 것이니 보내지 말고 관찰사를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별도로 장교를 정하여 옮겨 정한 배소로 차례대로 압송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상정, 이배.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三月 二日 丁亥

- 金思穆, 以刑曹言啓曰, 全羅道定配罪人中, …… 楸子島景行等, 移配左島, …… 康津韓後良, 楸子島移配, 康津林鶴來, 濟州移配, …… 命下矣. …… 景行蛇渡, …… 竝定配所, 仍前罪目, 卽爲押送. 韓後良·林鶴來……等, 亦依書下配所, 卽爲押送事, 一體發關, 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依俄下草記批旨, 舉行, 可也.

❖ 정조 8년(1784) 갑진년 3월 2일(정해)

- ☐ 추자도(楸子島)의 경행(景行) 등을 배소(配所)로 압송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형조의 초기
- 김사목(金思穆)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도 정배 죄인 중에 추자도(楸子島)의 경행(景行) 등을 좌도(左島)로 이배(移配)하고, <중략> 강진의 한후량(韓後良)을 추자도로 이배하고, 강진의 임학래(林鶴來)를 제주(濟州)로 이배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중략> 경행을 사도진(蛇渡鎭)으로 배소를 정하여 전 죄목대로 즉시 압송하고, 한후량·임학래 <중략> 또한 써서 내린 배소에 따라 즉시 압송하도록 일체 관문(關文)을 보내어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분부할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조금 전에 내린 초기(草記)에 대한 비지(批旨)대로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경행, 한후량, 임학래, 배소, 압송.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三月 七日 壬辰

- 司諫安廷玪, 掌令安鼎大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3월 7일(임진)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안정현(安廷玪) 등의 계
- 사간 안정현(安廷玪),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三月 七日 壬辰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3월 7일(임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三月 七日 壬辰

- 司諫安廷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3월 7일(임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안정현(安廷玹)의 계
- 사간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三月 十一日 丙申

- 行大司諫沈豐之，執義林濟遠，司諫安廷玪，持平安策，掌令安鼎大，正言李延伋啓曰，……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更令王府，拿致設鞫，期於得情，快正王法。…… 答兩司曰，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3월 11일(병신)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간 심풍지(沈豐之) 등의 계
- 행대사간 심풍지(沈豐之)，집의 임제원(林濟遠)，사간 안정현(安廷玪)，지평 안책(安策)，장령 안정대(安鼎大)，정언 이연급(李延伋)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三月 十一日 丙申

- 持平安策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3월 11일(병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안책(安策)의 계
- 지평 안책(安策)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三月 十一日 丙申

- 正言李延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3월 11일(병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연급(李延伋)의 계
- 정언 이연급(李延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三月 十二日 丁酉

- 甲辰三月十二日辰時, 上御讌華堂. 晝講. 詣臺臺臣同爲入侍時, 知事李在簡, 特進官洪秀輔, 參贊官金思穆, 侍讀官李翼晉, 檢討官尹序東, 持平安策, 正言李延伋, 假注書李敬五, 記注官金健修, 記事官尹行任, 宗臣雲峯君杔, 武臣同知中樞府事任崐, 以次進伏訖. …… (策·延伋合啓曰)請楸子島荏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上曰, 不允. …… 策前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 延伋前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3월 12일(정유)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연급(李延伋)의 계

- 갑진년 3월 12일 진시에 임금이 연화당(讌華堂)으로 나아갔다. 주강에 대각(臺閣)에 나온 대신(臺臣)이 함께 입시할 때 지사 이재간(李在簡), 특진관 홍수보(洪秀輔), 참찬관 김사목(金思穆), 시독관 이익진(李翼晉), 검도관 윤서동(尹序東), 지평 안책(安策), 정언 이연급(李延伋),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윤행임(尹行任), 종신 운봉군 이심(李杔), 무신 동지중추부사 임률(任崐)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안책·이연급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안책이 전계(前啓)를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연급이 전계(前啓)를 아뢰기를, “청컨대 대

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三月 十三日 戊戌

- 安聖彬, 以禮曹言啓曰, 卽接光陵參奉所報, 則本陵令康聖翊, 以濟州人, 受由下鄉, 今已八朔, 終不還仕. 今當寒食祭享, 兩官不可不備員云, 本陵令之受由過限已久, 而吏曹, 以其絕海之人, 不卽出代, 每當祭享, 輒以假官代行者, 事極未安. 本陵令康聖翊, 今姑改差, 其代, 卽令該曹口傳差出, 以爲備員將事之地, 何如? 傳曰, 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3월 13일(무술)

- 광릉령(光陵令) 강성익(康聖翊)을 대신할 인원을 구전차출(口傳差出)할 것을 아뢰는 예조의 초기
- 안성빈(安聖彬)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광릉참봉(光陵參奉)의 보고를 보니, 본 광릉령 강성익(康聖翊)이 제주사람으로서 말미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간 지 지금 이미 8개월이 되었는데 끝내 돌아와 벼슬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식 제향(寒食祭享)을 당하여 양관(兩官)의 인원을 갖추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본 룡의 영(令)이 말미를 받은 기한이 지난 지 이미 오래인데도 이조에서는 그가 절해(絶海)의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 후임을 차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번 제향을 할 때마다 가관(假官)²¹⁶으로 대행하는 것은 일이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본 룡 영 강성익을 지금 우선 개차(改差)하고 그 후임을 즉시 해조(該曹)로 하여금 구전차출(口傳差出)²¹⁷하게 하여 인원을 갖추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광릉, 강성익, 개차.

216) 가관(假官): 특별한 임무나 사정이 있을 때 임시로 임명하는 관원의 통칭.

217) 구전차출(口傳差出):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 후보자 세 사람을 뽑아 계문(啓聞)하여 윤희하는 낙점(落點)을 받는 것이 상례이나, 긴급을 요할 경우 이조(吏曹)에서 단독으로 추천, 승정원에 직송(直送)하여 낙점을 받아 임명하는 것.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三月 十三日 戊戌

- 持平李祖承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3월 13일(무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조승(李祖承)의 계
- 지평 이조승(李祖承)²¹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218) 이조승(1754~1805): 본관 연안(延安). 자 순여(順汝).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공조판서, 경기도관찰사, 병조판서 역임.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三月 十五日 庚子

- 甲辰三月十五日辰時，上御宣政殿。朝講入侍時，領事金燧，特進官徐有隣·鄭好仁，同知事趙時俊，副提學趙尙鎮，檢討官鄭萬始，參贊官洪仁浩，行大司諫沈豐之，執義林濟遠，假注書朴能源，記注官金健修·金鳳顯，以次進伏訖。…… 廷珪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又曰，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竝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夫正王法。上曰，亟停勿煩。……

❖ 정조 8년(1784) 갑진년 3월 15일(경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안정현(安廷珪)의 계

- 갑진년 3월 15일 진시에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으로 나아갔다. 조강에 입시할 때 영사 김익(金燧), 특진관 서유린(徐有隣)·정호인(鄭好仁), 동지사 조시준(趙時俊), 부제학 조상진(趙尙鎮), 검토관 정만시(鄭萬始), 참찬관 홍인호(洪仁浩), 행대사간 심풍지(沈豐之), 집의 임제원(林濟遠), 가주서 박능원(朴能源), 기주관 김건수(金健修)·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안정현(安廷珪)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신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三月 二十七日 壬子

- 持平李祉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鞠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3월 27일(임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지영(李祉永)의 계

- 지평 이지영(李祉永)²¹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219) 이지영(1730~?): 본관 연안(延安). 호 임하(林下).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저서 《오례통편(五禮通編)》.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三月 二十八日 癸丑

- 持平申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命王府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3월 28일(계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신기(申耆)의 계
- 지평 신기(申耆)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七日 壬戌

- 掌令李壽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7일(임술)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수함(李壽咸)의 계
- 장령 이수함(李壽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十日 乙丑

- 大司憲蔡弘履, 持平申耆, 獻納金履鏞, 正言成種仁啓曰, ……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10일(을축)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등의 계
- 대사헌 채홍리(蔡弘履)²²⁰, 지평 신기(申耆), 헌납 김이용(金履鏞), 정언 성종인(成種仁)이 아뢰기를, “〈상락〉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220) 채홍리(1737~1806): 본관 평강(平康). 자 사술(士述). 호 기천(岐川).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형조판서, 공조판서, 강화유수 역임.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十日 乙丑

- 持平申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府[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10일(을축)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신기(申耆)의 계
- 지평 신기(申耆)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十日 乙丑

- 獻納金履鏞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10일(을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김이용(金履鏞)의 계
- 헌납 김이용(金履鏞)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十一日 丙寅

- 大司憲蔡弘履, 持平申耆, 獻納金履鏞, 正言成種仁啓曰, ……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11일(병인)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등의 계
-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지평 신기(申耆), 헌납 김이용(金履鏞), 정언 성종인(成種仁)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十一日 丙寅

- 持平申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府[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11일(병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신기(申耆)의 계
- 지평 신기(申耆)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十一日 丙寅

- 獻納金履鏞啓曰, 請大靜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11일(병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김이용(金履鏞)의 계
- 헌납 김이용(金履鏞)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十二日 丁卯

- 掌令成鼎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12일(정묘)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성정진(成鼎鎭)의 계
- 장령 성정진(成鼎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 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十六日 辛未

- 行大司憲鄭好仁, 司諫安廷玪, 掌令成鼎鎭 · 李壽咸, 正言權儐啓曰, …… 請楸子島蓐棘罪人最中, 更令王府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16일(신미)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헌 정호인(鄭好仁) 등의 계
- 행대사헌 정호인(鄭好仁), 사간 안정현(安廷玪), 장령 성정진(成鼎鎭) · 이수함(李壽咸), 정언 권빈(權儐)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十六日 辛未

- 掌令李壽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鞠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鞠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16일(신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수함(李壽咸)의 계
- 장령 이수함(李壽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十六日 辛未

- 正言權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16일(신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권빈(權儐)의 계
- 정언 권빈(權儐)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十七日 壬申

- 行大司憲鄭好仁, 司諫安廷玪, 掌令成鼎鎭 · 李壽咸, 正言權儐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17일(임신)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헌 정호인(鄭好仁) 등의 계
- 행대사헌 정호인(鄭好仁), 사간 안정현(安廷玪), 장령 성정진(成鼎鎭) · 이수함(李壽咸), 정언 권빈(權儐)이 아뢰기를,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十七日 壬申

- 掌令成鼎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鞠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17일(임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성정진(成鼎鎭)의 계
- 장령 성정진(成鼎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 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十七日 壬申

- 司諫安廷玟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17일(임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안정현(安廷玟)의 계
- 사간 안정현(安廷玟)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十八日 癸酉

- 行大司憲鄭好仁, 司諫安廷玪, 掌令成鼎鎭 · 李壽咸, 正言權儐啓曰, …… 請楸子島蓐棘罪人最中, 更令王府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18일(계유)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헌 정호인(鄭好仁) 등의 계
- 행대사헌 정호인(鄭好仁), 사간 안정현(安廷玪), 장령 성정진(成鼎鎭) · 이수함(李壽咸), 정언 권빈(權儐)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十八日 癸酉

- 掌令李壽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鞠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18일(계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수함(李壽咸)의 계
- 장령 이수함(李壽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十八日 癸酉

- 正言權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18일(계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권빈(權儐)의 계
- 정언 권빈(權儐)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十九日 甲戌

- 甲辰閏三月十九日辰(時), 上御讌華堂. 晝講, 詣臺臺臣同爲入侍時, 同知事鄭昌順, 特進官尹師國, 參贊官俞恒柱, 侍講官李魯春, 檢討官李錫夏, 記事官沈晉賢, 記注官金鳳顯, 記事官尹行任, 宗臣安昌君燦, 武臣李邦鵬, 司諫安廷玪, 掌令成鼎鎮, 以次進伏訖. …… 廷玪·鼎鎮曰,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出學條】 …… 鼎鎮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出學條】 …… 鼎鎮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出學條】 …… 鼎鎮曰,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拿鞫嚴問. 上曰, 不允. 【出學條】 …… 廷玪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出學條】 ……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19일(갑술)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안정현(安廷玪) 등의 계
- 갑진년 윤3월 19일 진시에 임금이 연화당(讌華堂)으로 나아갔다. 주강에 대각(臺閣)에 나온 대신(臺臣)이 함께 입시할 때 동지사 정창순(鄭昌順), 특진관 윤사국(尹師國), 참찬관 유항주(俞恒柱), 시강관 이노춘(李魯春), 검토관 이석하(李錫夏), 기사관 심진현(沈晉賢),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윤행임(尹行任), 종신 안창균 이경(李燦), 무신 이방봉(李邦鵬), 사간 안정현(安廷玪), 장령 성정진(成鼎鎮)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안정현과 성정진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중략> 성정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又 <중략> 성정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중략> 성정진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

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중략〉 안정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二十五日 庚辰

- 有政. 吏批, 判書李在簡進, 參判金夏材牌不進, 參議趙鼎鎮進, 行都承旨洪秀輔進.
…… 朴尙春爲大靜縣監 …….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25일(경진)

- ☐ 박상춘(朴尙春)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이재간(李在簡)이 나왔고, 참판 김하재(金夏材)는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참의 조정진(趙鼎鎭)이 나왔고, 행도승지 홍수보(洪秀輔)가 나왔다. <중략> 박상춘(朴尙春)²²¹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정사, 박상춘, 대정현감.

221) 박상춘(1731~?): 본관 밀양(密陽). 자 군실(君實). 1782년(정조 6) 문과 급제. 대정현감(재임: 1784. 5.~1786. 3.) 역임.

❖ 乾隆 四十九年 甲辰 閏三月 二十五日 庚辰

- 甲辰閏三月二十五日辰時，上御誠正閣。備局有司堂上入侍時，行司直金華鎮，兵曹判書徐有隣，吏曹判書李在簡，刑曹判書趙時俊，行都承旨洪秀輔，左副承旨徐龍輔，假注書朴能源，記事官李昆秀·尹行任，以次進伏訖。……又命書傳教曰，大靜縣監有闕之代，今日政差出。在簡奏曰，今日既有開政之命，祿都目仍爲兼行，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

❖ 정조 8년(1784) 갑진년 윤3월 25일(경진)

- 대정현감(大靜縣監)의 후임을 오늘 정사(政事)에서 차출하라는 전교
- 갑진년 윤3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비국 유사당상이 입시할 때 행사직 김화진(金華鎭), 병조판서 서유린(徐有隣), 이조판서 이재간(李在簡), 형조판서 조시준(趙時俊), 행도승지 홍수보(洪秀輔), 좌부승지 서용보(徐龍輔), 가주서 박능원(朴能源), 기사관 이곤수(李昆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또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비어있는 대정현감(大靜縣監)의 후임을 오늘 정사(政事)에서 차출하라.”라고 하였다. 이재간이 아뢰기를, “오늘 이미 정사를 열라는 명이 있었으니 녹도목정사(祿都目政事)²²²를 그대로 겸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대정현감, 정사, 차출.

222) 녹도목정사(祿都目政事): 일정한 기간 교대로 근무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한하여 녹봉을 받는 체아직(遞兒職)에 대하여 해마다 네 차례 행하는 도목정사.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十七日 辛丑

- 大司憲蔡弘履, 執義姜儉, 司諫申致權, 掌令李碩九·姜垣, 持平韓用龜, 獻納李祖承, 正言洪樂淵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17일(신축)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등의 계
-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집의 강인(姜儉), 사간 신치권(申致權), 장령 이석구(李碩九)·강원(姜垣), 지평 한용구(韓用龜), 헌납 이조승(李祖承), 정언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十七日 辛丑

○ 掌令姜垣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聖中之罪, 可勝誅哉? 包藏禍心, 主張凶論, 敢托不敢言之地, 倡出不忍聞之說, 作爲窩主, 慫恿徒黨, 故徐有臣·朴宗甲·李義駿輩, 從而和之, 交口讚引. 噫嘻, 痛矣. 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且莫重義理, 倚托怪鬼輩, 欲售疑亂之計者, 究厥心腸, 與德師·載翰, 一串貫來者也. 不仕於先大王朝者, 卽先大王之逆臣, 先大王之逆臣, 卽殿下之逆臣. 豈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 而居謫以來, 小不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經年爭執, 尙追王章, 窮凶之節, 無以嚴覈, 亂賊之徒, 無所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噫嘻, 李普行之罪, 可勝誅哉? 賦性妖邪, 行已暗懷賁[脅]肩諂笑, 情態難掩, 左右閃忽, 伎倆漸巧, 特一天生宵小之類耳. 口蜜腹劍, 林甫之後身, 狐媚狼顧, 京·惇之餘套, 以渠處地爲人, 幸際承乏, 兜攬至此則不思知分報效之心, 敢生眩惑跳踉之計, 其貽害世道, 將不知至於何境. 有識之憂歎固已久矣. 雖以今番事觀之, 亦出於計較利害之心, 外托懲討之義, 內售嘗試之計,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此於渠, 猶屬細故, 至於明義一部, 是何等大義理, 而渠之所論本事之外, 乃敢攙及於有樹立之大臣, 必欲漫漶義理, 欺瞞君父, 包藏禍心. 煽動一世, 若此不已, 則倫綱將至墜地, 凶孽亦必生心. 噫, 彼普行, 抑獨何意, 循私負國, 一至此哉? 其心所在, 有不可測, 而此又渠卽一斷案, 何幸聖明俯燭其情狀, 處分明快, 滿庭臣僚, 孰不欽仰? 而若論其負犯, 不可不一問, 快正其罪.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17일(신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강원(姜垣)의 계

○ 장령 강원(姜垣)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

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화심(禍心)을 품고 흉론(凶論)을 주장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의탁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앞장서서 내어 와주(窩主)가 되어 도당(徒黨)을 종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유신(徐有臣)·박종갑(朴宗甲)·이의준(李義駿)의 무리가 따라서 화답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선대왕(先大王) 때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전하에게 벼슬하여 재주와 포부를 펼치려 했다는 말은 더욱더 흉악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한 막중한 의리를 괴귀(怪鬼)의 무리에게 맡겨 의심하여 소란을 피우려는 계책을 부리고자 한 것은 그 심보를 따져보면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과 더불어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선대왕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로 바로 선대왕의 역신(逆臣)이고, 선대왕의 역신은 바로 전하의 역신인데, 어찌 잠시라도 천지 사이에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해를 넘겨 쟁집(爭執)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법을 면하고 있으니,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을 엄히 조사할 수 없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아! 이보행(李普行)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타고난 성품이 요사스럽고 몸가짐이 교만하여 어깨를 움츠리며 아양을 떠니 정태(情態)를 가리기 어렵고, 이리저리 변화무쌍하여 기량이 점점 교묘해지니 단지 하나의 타고난 간사하고 소견이 좁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뱃속에는 칼을 지녔으니 임보(林甫)의 후신(後身)이고, 여우의 눈썹을 하고 이리처럼 돌아보니 경(京)·돈(惇)의 여투(餘套)입니다. 그의 처지로써 사람이 되어 요행히 승핍(承乏)을 만나 두람(兜攬)이 여기에 이르렀다면 분수를 알아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현혹하여 날뛰려는 계책을 내었으니, 그가 세도(世道)에 해를 끼치는 것이 장차 어느 지역에 이르게 될지 알 수 없어 식자(識者)들이 근심하고 탄식한 것이 실로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보더라도 또한 이해를 따지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겉으로는 징토(懲討) 하는 의리를 핑계 대고 안으로는 떠보려는 계책을 꾸몄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그에게는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하겠지만 의리를 밝히는 한 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리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논한 본사(本事) 외에는 감히 수립(樹立)한 것이 있는 대신(大臣)을 끌어넣었으니, 필시 의리를 모호하게 하고 군부(君父)를 속이며 화심(禍心)을 감추고 한 세상을 선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그치게 하지 않는다면 윤강(倫綱)이 장차 땅에 떨어질 것이고 흉열(凶孽) 또한 반드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아, 저 이보행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사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저버린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릴 수 없지만 이것 또한 그의 한 단안(斷案)입니다만 얼마나 다행인지 성명(聖明)이 그 정상(情狀)을 굽어살펴 처분을 명쾌하게 하였으니, 온 조정의 신료들이 누군들 흠양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범한 죄를 논하자면 한 번 신문하여 왜 그 죄를 바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게 하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十七日 辛丑

- 司諫申致權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噫嘻, 痛矣. 聖中·有臣·宗甲·義駿等罪犯, 尙何言哉? 倡邪說而作爲窩窟, 結凶徒而交相吹噓, 暗地綢繆, 設計妖凶, 敢欲疑亂於莫重之義理, 至以十三年不着帽等說, 肆然陳奏於筵席, 究厥腸肚, 實與德師·載翰輩, 一串貫來者也. 噫, 彼諸賊, 幾皆伏法則顧此群凶, 獨可容貸耶? 情跡既露, 負犯至重, 決不可一刻容貸, 而況且聖中, 居謫以來, 不思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此輩久追王章, 亂賊無以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17일(신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신치권(申致權)의 계
- 사간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노성중(盧聖中)·유신(有臣)·종갑(宗甲)·의준(義駿) 등의 범죄에 대해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筵席)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의 무리와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아 저 역적들은 이미 모두 복주(伏誅)되었으니, 이 무리들의 흉악함을 돌아보건대 유독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또한 노성중의 경우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이 무리들이 국법을 면하고 있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과 방축죄인(放逐罪人) 유신·종갑·의준 등을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十八日 壬寅

- 大司憲蔡弘履, 執義姜儉, 司諫申致權, 掌令李碩九·姜垣, 持平韓用龜, 獻納李祖承, 正言洪樂淵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18일(임인)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등의 계
-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집의 강인(姜儉), 사간 신치권(申致權), 장령 이석구(李碩九)·강원(姜垣), 지평 한용구(韓用龜), 헌납 이조승(李祖承), 정언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十八日 壬寅

- 掌令李碩九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18일(임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석구(李碩九)의 계
- 장령 이석구(李碩九)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조우,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十八日 壬寅

- 正言洪樂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18일(임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홍낙연(洪樂淵)의 계
- 정언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十九日 癸卯

- 大司憲蔡弘履, 執義姜儉, 司諫申致權, 掌令李碩九·姜垣, 持平韓用龜, 獻納李祖承, 正言洪樂淵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19일(계묘)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등의 계
-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집의 강인(姜儉), 사간 신치권(申致權), 장령 이석구(李碩九)·강원(姜垣), 지평 한용구(韓用龜), 헌납 이조승(李祖承), 정언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十九日 癸卯

- 執義姜儼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19일(계묘)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강인(姜儼)의 계
- 집의 강인(姜儼)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十九日 癸卯

- 司諫申致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第三件事·第五件事·第十五件事, 亟停勿煩. 【措辭見上】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19일(계묘)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신치권(申致權)의 계
- 사간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고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6건과 제7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日 甲辰

- 掌令李碩九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0일(갑진)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석구(李碩九)의 계
- 장령 이석구(李碩九)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一日 乙巳

- 持平韓用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措辭見上】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1일(을사)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한용구(韓用龜)의 계
- 지평 한용구(韓用龜)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二日 丙午

- 執義姜儼, 司諫申致權, 掌令李碩九·姜垣, 持平韓用九[韓用龜], 正言洪樂淵·李尙度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2일(병오)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강인(姜儼) 등의 계
- 집의 강인(姜儼), 사간 신치권(申致權), 장령 이석구(李碩九)·강원(姜垣), 지평 한용구(韓用龜), 정언 홍낙연(洪樂淵)·이상도(李尙度)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二日 丙午

- 執義姜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2일(병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강인(姜儔)의 계
- 집의 강인(姜儔)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二日 丙午

- 正言洪樂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措辭見上】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2일(병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정언 홍낙연(洪樂淵)의 계
- 정언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三日 丁未

- 執義姜儼, 司諫申致權, 掌令李碩九·姜垣, 持平韓用龜, 正言洪樂淵·李尙度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3일(정미)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강인(姜儼) 등의 계
- 집의 강인(姜儼), 사간 신치권(申致權), 장령 이석구(李碩九)·강원(姜垣), 지평 한용구(韓用龜), 정언 홍낙연(洪樂淵)·이상도(李尙度)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三日 丁未

- 掌令姜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3일(정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강원(姜垣)의 계
- 장령 강원(姜垣)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三日 丁未

- 正言李尙度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措辭見上】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3일(정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상도(李尙度)의 계
- 정언 이상도(李尙度)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四日 戊申

- 執義姜儼, 司諫申致權, 掌令李碩九·姜垣, 持平韓用龜, 正言洪樂淵·李尙度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4일(무신)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강인(姜儼) 등의 계
- 집의 강인(姜儼), 사간 신치권(申致權), 장령 이석구(李碩九)·강원(姜垣), 지평 한용구(韓用龜), 정언 홍낙연(洪樂淵)·이상도(李尙度)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四日 戊申

- 掌令李碩九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4일(무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석구(李碩九)의 계
- 장령 이석구(李碩九)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四日 戊申

- 正言洪樂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措辭見上】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4일(무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홍낙연(洪樂淵)의 계
- 정언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五日 己酉

- 大司憲蔡弘履, 執義姜儼, 司諫申致權, 掌令李碩九·姜垣, 持平韓用龜, 正言洪樂淵·李尙度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5일(기유)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등의 계
-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집의 강인(姜儼), 사간 신치권(申致權), 장령 이석구(李碩九)·강원(姜垣), 지평 한용구(韓用龜), 정언 홍낙연(洪樂淵)·이상도(李尙度)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五日 己酉

- 執義姜儼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5일(기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강인(姜儼)의 계
- 집의 강인(姜儼)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五日 己酉

- 司諫申致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措辭見上】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5일(기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신치권(申致權)의 계
- 사간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六日 庚戌

- 大司憲蔡弘履, 執義姜儼, 司諫申致權, 掌令李碩九·姜垣, 持平韓用龜, 正言洪樂淵·李尙度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6일(경술)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등의 계
-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집의 강인(姜儼), 사간 신치권(申致權), 장령 이석구(李碩九)·강원(姜垣), 지평 한용구(韓用龜), 정언 홍낙연(洪樂淵)·이상도(李尙度)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六日 庚戌

- 執義姜儼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6일(경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강인(姜儼)의 계
- 집의 강인(姜儼)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六日 庚戌

- 正言李尙度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措辭見上】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6일(경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상도(李尙度)의 계
- 정언 이상도(李尙度)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죄인,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七日 辛亥

- 大司憲蔡弘履, 執義姜寅, 司諫申致權, 掌令李碩九·姜垣, 持平韓用龜, 正言李尙度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7일(신해)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등의 계
-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집의 강인(姜寅), 사간 신치권(申致權), 장령 이석구(李碩九)·강원(姜垣), 지평 한용구(韓用龜), 정언 이상도(李尙度)가 아뢰기를, “〈상락〉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운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七日 辛亥

- 掌令姜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7일(신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강원(姜垣)의 계
- 장령 강원(姜垣)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七日 辛亥

- 正言李尙度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措辭見上】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7일(신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상도(李尙度)의 계
- 정언 이상도(李尙度)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八日 壬子

- 大司憲蔡弘履, 執義姜儼, 司諫申致權, 掌令李碩九·姜垣, 持平韓用龜, 正言李尙度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8일(임자)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등의 계
-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집의 강인(姜儼), 사간 신치권(申致權), 장령 이석구(李碩九)·강원(姜垣), 지평 한용구(韓用龜), 정언 이상도(李尙度)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八日 壬子

- 掌令李碩九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8일(임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석구(李碩九)의 계
- 장령 이석구(李碩九)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八日 壬子

- 司諫申致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措辭見上】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8일(임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신치권(申致權)의 계
- 사간 신치권(申致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九日 癸丑

- 大司憲蔡弘履, 司諫申致權, 掌令李碩九·姜垣, 持平韓用龜, 正言李尙度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9일(계축)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등의 계
-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사간 신치권(申致權), 장령 이석구(李碩九)·강원(姜垣), 지평 한용구(韓用龜), 정언 이상도(李尙度)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九日 癸丑

- 掌令姜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9일(계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강원(姜垣)의 계
- 장령 강원(姜垣)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추자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二十九日 癸丑

- 正言李尙度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措辭見上】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29일(계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상도(李尙度)의 계
- 정언 이상도(李尙度)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四月 三十日 甲寅

- 甲辰四月三十日卯時, 上御宣政殿.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鄭存謙, 左議政李福源, 右議政金煜, 行司直金華鎮·鄭尙淳, 行副司直金魯鎮, 開城留守鄭昌聖, 兵曹判書徐有隣, 行副司直鄭好仁·徐有寧, 戶曹判書鄭一祥, 禮曹判書嚴璫, 吏曹判書李在簡, 行副司直尹塾, 刑曹判書趙時俊, 咸春君李昌運, 行副司直李敬懋, 訓練都正徐有大, 同敦寧金文淳, 行副司直朴祐源, 應教李魯春, 修撰曹允大, 持平韓用龜, 正言李尙度, 左副承旨李重馥, 記事官沈晉賢, 事變假注書任希鐸, 記事官金鳳顯·李崑秀, 以次進伏訖. …… 用龜·尙度曰,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決正王法. 上曰, 不允. 【出擧條】 …… 用龜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出擧條】 …… 用龜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上曰, 不允. 【出擧條】 …… 用龜曰,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出擧條】 …… 尙度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出擧條】 …… 尙度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出擧條】 ……

❖ 정조 8년(1784) 갑진년 4월 30일(갑인)

-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한용구(韓用龜) 등의 계
- 갑진년 4월 30일 묘시에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좌의정 이복원(李福源), 우의정 김익(金煜), 행사직 김화진(金華鎭)·정상순(鄭尙淳), 행부사직 김노진(金魯鎭), 개성유수 정창성(鄭昌聖), 병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행부사직 정호인(鄭好仁)·서유녕(徐有寧), 호조판서 정일상(鄭一祥), 예조판서 엄숙(嚴璫), 이조판서 이재간(李在簡), 행부사직 윤숙(尹塾), 형조판서 조시준(趙時俊), 함춘군 이창운(李昌運), 행부사직 이경무(李敬懋), 훈련도정 서유대(徐有大), 동돈녕 김문순(金文淳), 행부사직 박우원(朴祐源), 응교 이노춘(李魯春), 수찬 조윤대(曹允大), 지평 한용구(韓用龜), 정언 이상도(李尙度), 좌부승지 이중복(李重馥), 기사관 심진현(沈晉賢), 사변가주서 임희탁(任希鐸),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이곤수(李崑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한용구와 이상도가 아뢰기를, “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

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중략〉 한용구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중략〉 한용구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중략〉 한용구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중략〉 한상도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중략〉 한상도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五月 十二日 丙寅

- 大司憲蔡弘履, 掌令李集斗, 獻納金東淵啓曰, ……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5월 12일(병인)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등의 계
-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장령 이집두(李集斗), 헌납 김동연(金東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鞠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왕법(王法)을 바로 잡게 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五月 十二日 丙寅

- 掌令李集斗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5월 12일(병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집두(李集斗)의 계
- 장령 이집두(李集斗)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五月 十二日 丙寅

- 獻納金東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措辭見上】

❖ 정조 8년(1784) 갑진년 5월 12일(병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김동연(金東淵)의 계
- 헌납 김동연(金東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五月 二十五日 己卯

○ 甲辰五月二十五日卯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李福源, 右議政金煜,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司直金華鎮·鄭尙淳·金魯鎮, 兵曹判書徐有隣, 行副司直鄭好仁·徐有慶, 右參贊徐浩修, 戶曹判書鄭一祥, 禮曹判書嚴璫, 延豐君李埤, 吏曹判書李在簡, 行副司直金履素·李柱國·尹塾, 刑曹判書趙時俊, 知敦寧徐有寧, 咸春君李昌運, 訓練都正徐有大, 兵曹參判金文淳, 掌令李集斗, 獻納金東淵, 副校理曹允大, 正言徐有鍊·閔慶世, 修撰申耆, 右副承旨李文源, 假注書李敬五, 事變假注書安邁權, 記注官金健修, 記事官李崑秀, 以次進伏訖. …… (合啓曰)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集斗前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 東淵·有鍊·慶世等前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亟停勿煩. ……

❖ 정조 8년(1784) 갑진년 5월 25일(기묘)

□ 이최중(李最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집두(李集斗) 등의 계

○ 갑진년 4월 30일 묘시에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좌의정 이복원(李福源), 우의정 김익(金煜),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사직 김화진(金華鎭)·정상순(鄭尙淳)·김노진(金魯鎭), 병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행부사직 정호인(鄭好仁)·서유경(徐有慶), 우참찬 서호수(徐浩修), 호조판서 정일상(鄭一祥), 예조판서 엄숙(嚴璫), 연풍군 이갑(李埤), 이조판서 이재간(李在簡), 행부사직 김이소(金履素)·이주국(李柱國)·윤숙(尹塾), 형조판서 조시준(趙時俊), 지돈녕 서유녕(徐有寧), 함춘군 이창운(李昌運), 훈련도정 서유대(徐有大), 병조참판 김문순(金文淳), 장령 이집두(李集斗), 헌납 김동연(金東淵), 부교리 조운대(曹允大), 정언 서유련(徐有鍊)·민경세(閔慶世), 수찬 신기(申耆), 우부승지 이무원(李文源),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사변가주서 안매권(安邁權),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이곤수(李崑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합계(合啓)하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

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집두가 전계(前啓)를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동연·서유련·민경세 등이 전계를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최중,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五月 二十七日 辛巳

- 執義李兢淵, 正言閔慶世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5월 27일(신사)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이금연(李兢淵) 등의 계
- 집의 이금연(李兢淵), 정언 민경세(閔慶世)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五月 二十七日 辛巳

- 執義李兢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5월 27일(신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이금연(李兢淵)의 계
- 집의 이금연(李兢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五月 二十七日 辛巳

- 正言閔慶世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5월 27일(신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민경세(閔慶世)의 계
- 정언 민경세(閔慶世)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五月 二十八日 壬午

- 正言閔慶世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5월 28일(임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민경세(閔慶世)의 계
- 정언 민경세(閔慶世)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五月 二十九日 癸未

- 正言閔慶世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5월 29일(계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민경세(閔慶世)의 계
- 정언 민경세(閔慶世)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六月 一日 甲申

- 持平愼師稷, 獻納金東淵, 正言閔慶世 · 徐有鍊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6월 1일(갑신)

-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신사직(愼師稷) 등의 계
- 지평 신사직(愼師稷)²²³, 헌납 김동연(金東淵), 정언 민경세(閔慶世) · 서유련(徐有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223) 신사직(1746~?): 본관 거창(居昌).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六月 一日 甲申

- 持平愼師稷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6월 1일(갑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신사직(愼師稷)의 계
- 지평 신사직(愼師稷)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六月 一日 甲申

- 正言閔慶世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措辭見上】

❖ 정조 8년(1784) 갑진년 6월 1일(갑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민경세(閔慶世)의 계
- 정언 민경세(閔慶世)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六月 五日 戊子

- 甲辰六月初五日卯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鄭存謙, 右議政金煜, 行判中樞府事具善復, 行司直金華鎮, 漢城判尹金魯鎮, 兵曹判書徐有隣, 行副司直鄭好仁, 戶曹判書鄭一祥, 禮曹判書嚴璫, 延豐君李埤, 吏曹判書李在簡, 行副司直金履素, 行副司直李柱國, 刑曹判書趙時俊, 知敦寧徐有寧, 咸春君李昌運, 訓練院都正徐有大, 兵曹參判蔡弘履, 行左承旨徐有防, 行右承旨朴祐源, 行都承旨沈豐之, 副修撰朴廣源, 右副承旨趙鼎鎮, 假注書李敬五, 事變假注書安邁權, 記事官李崑秀·尹行任, 以次進伏訖. …… 彦脩前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亟令王府, 拿鞫嚴問. 上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6월 5일(무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유언수(兪彦脩)의 계

- 갑진년 6월 5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우의정 김익(金煜), 행판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사직 김화진(金華鎭), 한성판윤 김노진(金魯鎭), 병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행부사직 정호인(鄭好仁), 호조판서 정일상(鄭一祥), 예조판서 엄숙(嚴璫), 연풍군 이갑(李埤), 이조판서 이재간(李在簡), 행부사직 김이소(金履素),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형조판서 조시준(趙時俊), 지돈녕 서유녕(徐有寧), 함춘군 이창운(李昌運), 훈련원도정 서유대(徐有大), 병조참판 채홍리(蔡弘履), 행좌승지 서유방(徐有防), 행우승지 박우원(朴祐源), 행도승지 심풍지(沈豐之), 부수찬 박광원(朴廣源), 우부승지 조정진(趙鼎鎭),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사변가주서 안매권(安邁權),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유언수(兪彦脩)가 전계(前啓)를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

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
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六月 二十九日 壬子

- 親臨都政. 吏批, 判書趙時俊 · 參判李敬養 · 參議黃昇源, 行都承旨李崇祐進, 正郎曹允大, 佐郎趙濟魯 · 李度謙, 假郎廳金潭 · 任希鐸 · 林孝源 · 金珍恪 · 李松心 · 金良倬進. …… 李甲龍爲旌義縣監, …….

❖ 정조 8년(1784) 갑진년 6월 29일(임자)

- 이갑룡(李甲龍)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도정(都政)에 친림하였다. 이비(吏批)에 판서 조시준(趙時俊) · 참판 이경양(李敬養) · 참의 황승원(黃昇源), 행도승지 이승호(李崇祐)가 나왔고, 정랑 조윤대(曹允大), 좌랑 조제로(趙濟魯) · 이도겸(李度謙), 가낭청 김담(金潭) · 임희탁(任希鐸) · 임효원(林孝源) · 김진각(金珍恪) · 이송심(李松心) · 김양척(金良倬)이 나왔다. <중략> 이갑룡(李甲龍)²²⁴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이갑룡, 정의현감.

224) 이갑룡(1734~1799): 본관 성주(星州). 자 우린(于麟). 1762년(영조 38) 문과 급제. 정의현감(재임: 1784. 8.~1787. 7.) 역임.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六月 三十日 癸丑

- 甲辰六月三十日卯時， 上御誠正閣。 守令・邊將復職初入仕入侍時， 行左承旨徐有防，
…… 旌義縣監李甲龍，…… 以次進伏訖。 …….

❖ 정조 8년(1784) 갑진년 6월 30일(계축)

- ☐ 정의현감(旌義縣監) 이갑룡(李甲龍) 등이 입시(入侍)함
- 갑진년 6월 30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수령과 변장으로 복직하거나 처음 입사(入仕)하는 사람이 입시할 때 행좌승지 서유방, <중략> 정의현감(旌義縣監) 이갑룡(李甲龍)이 <중략>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하략>.

△ 주제어: 정의현감, 이갑룡.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七月 十九日 壬申

- 朴祐源, 以司僕寺言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秀璜, 癸卯・甲辰兩年條封進馬二匹及旌義縣監李長益遞任進上馬二匹, 合四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8년(1784) 갑진년 7월 19일(임신)

- 제주산마감목관(濟州山馬監牧官) 김수항(金秀璜)의 봉진마와 정의현감(旌義縣監) 이장익(李長益)의 체임진상마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올리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박우원(朴祐源)이 사복시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산마감목관(濟州山馬監牧官) 김수항(金秀璜)의 계묘면과 갑진년 두 해 조(條) 봉진마 2필 및 정의현감(旌義縣監) 이장익(李長益)의 체임진상마 2필, 도합 4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고 전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立養) 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산마감목관, 김수항, 봉진마, 정의현감, 이장익, 체임진상마.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八月 三日 丙戌

- 具明謙,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靈巖郡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 …… 等出陸, …… 命下矣. 李普行 …… 等, 罪名深重, 且臺啓方張, 不得舉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

❖ 정조 8년(1784) 갑진년 8월 3일(병술)

-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에 대한 출륙의 명을 거행할 수 없다는 의금부의 초기
- 구명겸(具明謙)²²⁵⁾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 〈중략〉 등을 출륙하도록 〈중략〉 명을 내렸습니다. 이보행 〈중략〉 등의 죄명은 심히 중하고, 또한 대각(臺閣)의 논계가 한창 일어나고 있으니 거행할 수 없다는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이보행, 출륙.

225) 구명겸(1737~1786): 본관 능성(綾城). 황해도별마절도사, 좌포도대장, 삼도수군통제사 역임.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八月 三日 丙戌

- 具明謙,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旌義縣圍籬安置罪人柱翼出陸, …… , 命下矣. …… 柱翼, 康津縣出陸, …… 而仍前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8월 3일(병술)

-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홍주익(洪柱翼)을 강진현(康津縣)으로 출륙시키겠다는 의금부의 초기
- 구명겸(具明謙)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홍주익(洪柱翼)²²⁶을 출륙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중략〉 홍주익을 강진현(康津縣)으로 출륙하되 〈중략〉 전 죄목에 따라서 규례대로 본부 나장을 보내어 각기 배소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위리안치, 홍주익, 강진현, 출륙.

226) 홍주익(1756~1789): 본관 남양(南陽). 자 몽서(夢瑞). 호 수백재(守白齋). 1778년(정조 2) 문과 급제. 정언 역임. 저서 《수백재유고(守白齋遺稿)》.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八月 三日 丙戌

- 吳大益, 以刑曹言啓曰, 因本曹別單, 全羅道定配罪人中, …… 楸子島韓後良, …… 濟州奴二萬, 大靜康隆華, 旌義文鉉, …… 竝放送, …… 命下矣. 依傳教, 蒙放罪人, 竝即放送, …… 發關 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卽爲舉行之意, 三懸鈴行會.

❖ 정조 8년(1784) 갑진년 8월 3일(병술)

□ 죄인 한후량(韓後良) 등의 처리에 관한 형조의 초기

- 오대익(吳大益)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본조 별단에 따라서 전라도 정배죄인 중 〈중략〉 추자도(楸子島) 한후량(韓後良), 〈중략〉 제주목(濟州牧)의 노(奴) 이만(二萬), 대정현(大靜縣)의 강응화(康隆華), 정의현(旌義縣)의 문현(文鉉)을 〈중략〉 모두 방송(放送)하도록 〈중략〉 명을 내렸습니다. 전교대로 석방된 죄인을 모두 풀어주도록 하고, 〈중략〉 관문(關文)을 보내어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분부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즉시 거행하라는 뜻으로 삼현령(三懸鈴)²²⁷으로 공문을 보내어 알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배죄인, 한후량, 이만, 강응화, 문현, 방송.

227) 삼현령(三懸鈴): 공문의 급한 정도에 따라 공문의 봉투 겉면에 동그라미를 찍는데, 가장 급히 발송해야 할 경우 세 개를 찍는 일.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八月 三日 丙戌

- 甲辰八月初三日巳時, 上御宣政殿. 進箋入侍時, 左承旨沈基泰, 右承旨李頤祥, 左副承旨李謙彬, 右副承旨金履正, 同副承旨金樂洙, 假注書李敬五·金孝建, 記注官金健修, 記事官金鳳顯, 以次進伏訖. …… 上曰, 皇天祖宗默祐篤棐, 昨日成禮, 今日頒赦, 宗社億萬年無疆之休, 自今日始矣. 所以仰答之意, 在予一人, 繼此祈永之命, 亦在予一人. 故昨以百姓蠲恤之意, 有此傳教, 此實誠小民之義, 而祈永誠民之本, 亦惟在於貽謨. 所以貽謨者, 卽此傳教是耳. …… 仍命書傳教曰, …… 旌義洪柱翼, 出陸. …….

❖ 정조 8년(1784) 갑진년 8월 3일(병술)

□ 죄인 홍주익(洪柱翼)을 출륙(出陸)시키라는 전교

- 갑진년 8월 3일 사시에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으로 나아갔다. 진전(進箋)²²⁸을 위해 입시할 때 좌승지 심기태(沈基泰), 우승지 이이상(李頤祥), 좌부승지 이겸빈(李謙彬), 우부승지 김이정(金履正), 동부승지 김낙수(金樂洙), 가주서 이경오(李敬五)·김효건(金孝建),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황천(皇天)과 조종(祖宗)이 가만히 도와주고 어제 예식을 치르고 오늘 사면령을 반포하니, 종사의 억만년 무궁한 복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다. 우리러 답한 뜻이 나 한 사람에게 달려 있고, 이것을 이어서 영원하기를 비는 명 또한 나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 때문에 어제 백성을 전휼(蠲恤)²²⁹하는 뜻으로 이 전교를 내리는 것이니, 이는 실로 백성을 화동(和同)하는 의리이다. 그리고 백성이 영원히 화동하기를 바라는 근본 또한 오직 이모(貽謨)²³⁰에 있는 것이다. 이모하는 방법은 곧 이 전교뿐이다. <하략>”라고 하였다. 이어서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상략> (죄인) 정의현(旌義縣)의 홍주익(洪柱翼)²³¹을 출륙(出陸)시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홍주익, 출륙.

228) 진전(進箋): 국왕 등에게 올리는 축하문. 대전(大殿)의 탄일(誕日)·정조(正朝)·동지(冬至)와 나라에 경사가 있을 경우 지방의 관찰사나 절도사 등 2품 이상의 관원들이 축하문을 올렸음.

229) 전휼(蠲恤): 조세 따위를 가볍게 털어 주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함.

230) 이모(貽謨): 선존가 후손을 위하여 남겨준 계책.

231) 홍주익(1756~1789): 본관 남양(南陽). 자 몽서(夢瑞). 호 수백재(守白齋). 1778년(정조 2) 문과 급제. 정언 역임. 저서 《수백재유고》.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八月 十日 癸巳

○ 甲辰八月初十日卯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鄭存謙，左議政李福源，判中樞府事具善復，行工曹判書鄭尙淳，行兵曹判書李在協，行禮曹判書金魯鎮，行副司直徐有隣，咸春君李昌運，行副司直徐有大，行左承旨李文源，假注書李敬五，事變假注書車信用，記事官金鳳顯·尹行任，以次進伏訖。……存謙曰，濟州牧使嚴思晚狀啓，以爲辛丑年，因御史朴天衡狀請，山馬三場之內間牆，有竝爲毀撤之命，而前牧使李文燦，未及舉行矣。民情皆以勿毀間牆，來訴，本道所重在於馬政，不可拘牽於民情，而姑觀前頭牧馬剩縮，明知利害，然後議其毀撤，亦似未晚，令廟堂稟處爲辭矣。山馬場，卽屢百年放牧之場，金永綬之不稟朝家，徑先築牆於四十里周圍者，事極駭妄。永綬則方在罪謫，更不論勘，而其後繡啓，以爲築牆之後，山馬將至絕種云，故使之毀撤間牆，其時歷詢時原任大臣及諸將臣，而有此處分矣。前牧使在任之時，成命之下，不爲舉行，又無具由狀聞之事，其在事體，不可無飭，前牧使李文燦罷職。今此狀啓，又有此姑待前頭之請，漸至遷就者，殊甚未安，當該牧使嚴思晚，推考，使之依前判下，舉行之意，分付，何如？上曰，將臣之意，何如？訓鍊大將具善復曰，馬政，有國所重，關係不輕，屢百年所無之間牆，金永綬爲有民弊，不稟朝家，任自築牆，萬萬輕率，不得不毀撤者。臣意則非但濟州各牧場，近來隨其土品之膏油，水草之豐盛處，則竝皆起耕，當其嚴冬，多有饑斃之事，嚴飭各牧場，好矣。守御使鄭尙淳曰，馬政，國之重事，間場毀撤，不可以民弊爲拘矣。摠戎使李昌運曰，臣意則與訓將同，別無可達之事矣。禁衛大將徐有大曰，當初間牆之築，旣非朝令，且有妨於牧馬之政，不可以些少民弊，有所拘掣，毀撤爲宜矣。上曰，依爲之。【出學條】……。

❖ 정조 8년(1784) 갑진년 8월 10일(계사)

□ 산마장(山馬場)의 간장(間牆) 철거를 요청하는 영의정 정존겸(鄭存謙)의 계

○ 갑진년 8월 10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좌의정 이복원(李福源), 판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공조판서 정상순(鄭尙淳), 행병조판서 이재협(李在協), 행예조판서 김노진(金魯鎭), 행부사직 서유린(徐有隣), 함춘군 이창운(李昌運), 행부사직 서유대(徐有大), 행좌승지 이문원(李文源),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사변가주서 차신용(車信用),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

렸다. <중략> 정존겸이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의 장계에, ‘신축년에 어사 박천형(朴天衡)의 장청(狀請)으로 인하여 산마장(山馬場) 3곳 안의 간장(間牆)을 모두 철거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전 제주목사 이문혁(李文爌)이 미처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뜻은 모두 간장을 훼손하지 말라고 와서 호소합니다. 본도(本道)에서 중한 바는 마정(馬政)에 있으니 백성들의 뜻에 구애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앞으로 목마(牧馬)가 불거나 줄어드는 것을 보고 이로운 지 해로운 지를 분명히 안 뒤에 그것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는 것 또한 늦지 않을 듯하니 의금부로 하여금 품처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산마장은 곧 수백 년 동안 방목하는 목장으로 김영수(金永綬)가 조정에 품의하지도 않고 앞질러 40리 주위에 담장을 쌓은 것이니 일이 매우 해괴하고 망령됩니다. 김영수는 지금 귀양가 있으니 논죄할 수 없는데, 그 후에 어사가 서계에서, ‘담장을 쌓은 뒤에 산마(山馬)가 종자가 끊길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간장을 철거하도록 하였는데, 그 당시 시임과 원임 대신 및 여러 장신(將臣)들에게 물어보고 이러한 처분이 있었습니다. 전 제주목사 재임시에도 명이 있었지만 거행하지 않았고, 또한 사유를 갖추어 장계로 보고한 일도 없었으니 일의 체모에 있어서 경칙(警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제주목사 이문혁을 파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장계도 또한 일단 앞으로의 일을 기다려 보자고 청하며 점점 미루어 나가려고 하니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해당 목사 엄사만을 추고(推考)하고, 전에 판하(判下)한 대로 거행할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신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훈련대장 구선복이 아뢰기를, “마정은 국가에서 귀중히 여기는 바로 관계됨이 가깝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없었던 간장이 김영수가 민폐가 있다고 하여 조정에 품의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담장을 쌓았으니 아주 경솔한 일로 철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은 제주의 각 목장뿐만 아니라 근래 그 토질이 기름지거나 풀이 풍성한 곳은 모두 개간되어 (말들이) 엄동설한을 만나면 굶어 죽는 일이 많으니 각 목장에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수어사 정상순이 아뢰기를, “마정은 나라의 중대한 일로 간장을 철거하는 것은 민폐 때문에 구애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총융사 이창운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은 훈련대장과 같아서 따로 아뢴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금위대장 서유대가 아뢰기를, “당초 간장을 쌓은 것은 조정의 명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목마(牧馬)의 정사(政事)에 구애됨이 있으니 사소한 민폐로 구애되는 바

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²³²⁾ 【거조(擧條)를 냄】 〈하락〉.

△ 주제어: 마정, 산마장, 김영수, 간장, 철거.

232)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8년 8월 12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八月 十四日 丁酉

- 趙興鎭,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大靜前縣監朴載淵, 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8년(1784) 갑진년 8월 14일(정유)

-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재연(朴載淵)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조흥진(趙興鎭)이 사복시 관원으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재연(朴載淵)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면서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立養)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박재연, 체임진상마.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八月 十九日 壬寅

- 大司憲李聖圭, 大司諫李度默, 掌令李迪喆, 持平沈晉賢, 正言李翼晉啓曰, …… 請楸子島荐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8월 19일(임인)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등의 계
- 대사헌 이성규(李聖圭)²³³, 대사간 이도묵(李度默), 장령 이적철(李迪喆), 지평 심진현(沈晉賢), 정언 이익진(李翼晉)이 아뢰기를, “〈상락〉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233) 이성규(1732~1799): 본관 전주(全州). 자 석보(錫甫). 시호 효정(孝貞). 1753년(영조 29) 문과 급제. 사헌부지평, 이조정랑, 좌참찬 역임.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八月 十九日 壬寅

○ 大司憲李聖圭, 掌令李迪喆, 持平沈晉賢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聖中之罪, 可勝誅哉? 包藏禍心, 主張凶論, 敢托不敢言之地, 倡出不忍聞之說, 作爲窩主, 慫恿徒黨, 故徐有臣·朴宗甲·李義駿輩, 從而知之, 交口讚引. 噫嘻, 痛矣. 先大王朝, 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且莫重義理, 倚托怪鬼輩, 欲售疑亂之計者, 究厥心腸, 與德師·載翰一串貫來者也. 不仕於先大王朝者, 卽先大王之逆臣, 先大王之逆臣, 卽殿下之逆臣, 豈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 而居謫以來, 小不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經年爭執, 尙追王章, 窮凶之節, 無以嚴覈, 亂賊之徒, 無所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噫嘻, 李普行之罪, 可勝誅哉? 賦性妖邪, 行己暗愎, 脅肩諂笑, 情態難掩, 左右閃忽, 伎倆漸巧, 特一天生宵小之類耳. 口蜜腹劍, 林甫之後身, 狐媚狼顧, 京惇之餘套, 以渠處地爲人, 幸際承乏, 兜攬至此, 則不思知分報效之心, 敢生眩惑跳踉之計, 其貽害世道, 將不知止於何境, 有識之憂歎, 固已久矣. 雖以今番事觀之, 亦出於計較利害之心, 外托懲討之義, 內售嘗試之計,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此於渠, 猶屬細故, 至於明義一部, 是何等大義理, 而渠之所論本事之外, 乃敢攙及於有樹立之大臣, 必欲漫漶義理, 欺瞞君父, 包藏禍心, 煽動一世, 若此不已, 則倫綱將至墜地, 凶孽亦必生心. 噫, 彼普行, 抑獨何意, 循私負國, 一至此哉? 其心所在, 有不可測, 而此又渠卽一斷案, 何幸聖明, 俯燭其情狀, 處分明快, 滿庭臣僚, 孰不欽仰, 而若論其負犯, 不可不一問, 扶正其罪, 故拿鞫之請, 迄今未已. 乃者出陸之命, 遽在意想之外, 此固出於我聖上遇慶肆赦之盛意, 而如此之類, 亦豈可視同一例, 遽從輕典乎? 請還寢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出陸之命, 仍令王府, 拿鞫嚴問. …… 答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8월 19일(임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등의 계

○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장령 이적철(李迪喆), 지평 심진현(沈晉賢)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화심(禍心)을 품고 흉론(凶論)을 주장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의탁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앞장서서 내어 와주(窩主)가 되어 도당(徒黨)을 종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유신(徐有臣)·박종갑(朴宗甲)·이의준(李義駿)의 무리가 따라서 화답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선대왕(先大王) 때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전하에게 벼슬하여 재주와 포부를 펼치려 했다는 말은 더욱더 흉악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한 막중한 의리를 괴귀(怪鬼)의 무리에게 맡겨 의심하여 소란을 피우려는 계책을 부리고자 한 것은 그 심보를 따져보면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과 더불어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선대왕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로 바로 선대왕의 역신(逆臣)이고, 선대왕의 역신은 바로 전하의 역신인데, 어찌 잠시라도 천지 사이에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해를 넘겨 쟁집(爭執)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법을 면하고 있으니,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을 엄히 조사할 수 없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아! 이보행(李普行)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타고난 성품이 요사스럽고 몸가짐이 교만하여 어깨를 움츠리며 아양을 떠니 정태(情態)를 가리기 어렵고, 이리저리 변화무쌍하여 기량이 점점 교묘해지니 단지 하나의 타고난 간사하고 소견이 좁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뱃속에는 칼을 지녔으니 임보(林甫)의 후신(後身)이고, 여우의 눈썹을 하고 이리처럼 돌아보니 경(京)·돈(惇)의 여투(餘套)입니다. 그의 처지로써 사람이 되어 요행히 승핍(承乏)을 만나 두람(兜攬)이 여기에 이르렀다면 분수를 알아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현혹하여 날뛰려는 계책을 내었으니, 그가 세도(世道)에 해를 끼치는 것이 장차 어느 지역에 이르게 될지 알 수 없어 식자(識者)들이 근심하고 탄식한 것이 실로 이미 오

래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보더라도 또한 이해를 따지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겉으로는 징토(懲討) 하는 의리를 핑계 대고 안으로는 떠보려는 계책을 꾸몄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그에게는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하겠지만 의리를 밝히는 한 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리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논한 본사(本事) 외에는 감히 수립(樹立)한 것이 있는 대신(大臣)을 끌어넣었으니, 필시 의리를 모호하게 하고 군부(君父)를 속이며 화심을 감추고 한 세상을 선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그치게 하지 않는다면 윤강(倫綱)이 장차 땅에 떨어질 것이고 흉열(凶孽) 또한 반드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아, 저 이보행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사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저버린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릴 수 없지만 이것 또한 그의 한 단안(斷案)입니다만 얼마나 다행인지 성명(聖明)이 그 정상(情狀)을 굽어살펴 처분을 명쾌하게 하였으니, 온 조정의 신료들이 누군들 흠양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범한 죄를 논하자면 한 번 신문하여 왜 그 죄를 바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잡아다 국청하라는 요청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출륙(出陸)의 명이 갑자기 뜻밖에 있었습니다. 이는 실로 임금께서 경사를 만나 사면하는 성대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류를 또한 어찌 한 가지 예로 동일시하여 갑자기 경전(輕典)²³⁴⁾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을 출륙(出陸)시키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출륙, 국청.

234) 경전(輕典): 가벼운 법률.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八月 十九日 壬寅

- 大司諫李度默, 正言李翼晉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噫嘻, 痛矣. 聖中之罪, 可勝誅哉? 倡邪說而作爲窩主, 結凶徒而交相吹噓, 暗地綢繆, 設計妖凶, 至於先大王朝, 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究厥心腸, 實與德師·載翰輩, 一串貫來者也. 情跡既露, 負犯至重, 決不可一刻容貸, 而況渠居謫以來, 不思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久道王章, 輿情益激.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8월 19일(임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이도묵(李度默) 등의 계
- 대사간 이도묵(李度默), 정언 이익진(李翼晉)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筵席)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의 무리와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

(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오래도록 국법을 피하고 있어 여론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八月 二十九日 壬寅[壬子]

- 甲辰八月二十九日卯時，上詣眞殿展拜。仍御仁政門，行朝參入侍時，行左承旨朴祐源，行右承旨李在學，左副承旨柳誼，右副承旨權禪，假注書金孝建·李敬五，記注官金健修，記事官金鳳顯，一提學金鍾秀，二提學吳載純，一直提學鄭志儉，檢校直提學徐有防，原任直閣金字鎮·金載瓚，檢校直閣徐龍輔，原任直閣鄭東浚，待教李崑秀，檢校待教尹行任，以次侍立。……濟遠進前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請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亟令王府，拿鞠嚴問。上曰，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8월 29일(임인[임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임제원(林濟遠)의 계

- 갑진년 8월 29일 묘시에 임금이 진전(眞殿)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이어 인정문(仁政門)으로 나아가 조참(朝參)을 행하기 위해 입시할 때 행좌승지 박우원(朴祐源), 행우승지 이재학(李在學), 좌부승지 유의(柳誼), 우부승지 권엄(權禪), 가주서 김효건(金孝建)·이경오(李敬五),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김봉현(金鳳顯), 일제학 김종수(金鍾秀), 이제학 오재순(吳載純), 일직제학 정지검(鄭志儉), 검교직제학 서유방(徐有防), 원임직각 김우진(金字鎮)·김재찬(金載瓚), 검교직각 서용보(徐龍輔), 원임직각 정동준(鄭東浚), 대교 이곤수(李崑秀), 검교대교 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시립(侍立)하였다. <중략> 임제원(林濟遠)이 앞으로 나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이보행,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九月 一日 癸丑

- 持平李尙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 請還寢楸子島安置罪人李普行出陸之命, 仍令王府, 拿鞠嚴問. …… 答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9월 1일(계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상재(李尙載)의 계
- 지평 이상재(李尙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李普行)을 출륙(出陸) 시키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출륙,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九月 五日 丁巳

- 大司憲洪良浩, 大司諫鄭趾煥, 執義林濟遠, 持平李秀夏啓曰, …… 請楸子島荦棘罪人最中, 更令王府, 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9월 5일(정사)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홍양호(洪良浩) 등의 계
- 대사헌 홍양호(洪良浩), 대사간 정지환(鄭趾煥)²³⁵, 집의 임제원(林濟遠), 지평 이수하(李秀夏)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235) 정지환(1730~1763): 본관 영일(迎日). 자 원미(元美). 호 국옹(菊翁).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九月 五日 丁巳

- 持平李秀夏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9월 5일(정사)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수하(李秀夏)의 계
- 지평 이수하(李秀夏)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隆 四十九年 甲辰 九月 十九日 辛未

- 司諫李身晦, 掌令李壽咸啓曰, …… 請楸子島荇棘罪人最中, 更令王府拿致設鞫,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9월 19일(신미)

- 이최중(李最中)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이신회(李身晦) 등의 계
- 사간 이신회(李身晦)²³⁶, 장령 이수함(李壽咸)이 아뢰기를, “〈상락〉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최중(李最中)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청을 설치해서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위리안치, 이최중, 국청.

236) 이신회(1725~1799): 본관 전의(全義). 자 회지(晦之). 호 가촌(佳邨). 1759년(영조 35) 문과 급제. 성균관전적, 승정원승지, 형조참판 역임. 저서 《가촌문집》.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九月 十九日 辛未

- 掌令李壽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9월 19일(신미)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수함(李壽咸)의 계
- 장령 이수함(李壽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九月 十九日 辛未

- 司諫李身晦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9월 19일(신미)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이신회(李身晦)의 계
- 사간 이신회(李身晦)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月 十日 壬辰

- 甲辰十月初十日辰時, 上御儀宸門外, 方物看品入侍時, 行左承旨李在學, 左副承旨李祖承, 右副承旨徐龍輔, 記事官朴能源, 事變假注書金孝建, 記注官金健修, 記事官金鳳顯, 二提學吳載純, 檢校直提學徐有防, 二直提學朴祐源, 原任直閣金字鎮, 待教李崑秀, 偕入進伏訖. …… 載純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上曰, 不允. …… 晉賢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 정조 8년(1784) 갑진년 10월 10일(임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이재학 오재순(吳載純) 등의 계

- 갑진년 10월 10일 진시에 임금이 의신문(儀宸門) 밖으로 나아가 방물(方物) 간품(看品)을 위해 입시할 때 행좌승지 이재학(李在學), 좌부승지 이조승(李祖承), 우부승지 서용보(徐龍輔), 기사관 박능원(朴能源), 사변가주서 김효건(金孝建),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김봉현(金鳳顯), 이재학 오재순(吳載純), 검교직제학 서유방(徐有防), 이직제학 박우원(朴祐源), 원임직각 김우진(金字鎭), 대교 이곤수(李崑秀)가 함께 들어와 나와 앞드렸다. <중략> 오재순²³⁷⁾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심진현(沈晉賢)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237) 오재순(1727~1792): 자 문경(文卿). 호 순암(醇庵)·우불급재(愚不及齋). 대사헌, 대제학, 판중추부사 역임. 저서 《주역회지(周易會旨)》, 《독서기의(讀書起疑)》, 《순암집》.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月 十一日 癸巳

- 正言沈晉賢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0월 11일(계사)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심진현(沈晉賢)의 계
- 정언 심진현(沈晉賢)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月 二十日 壬寅

- 掌令姜垣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0월 20일(임인)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강원(姜垣)의 계
- 장령 강원(姜垣)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月 二十日 壬寅

- 獻納俞岳柱, 正言沈鏗等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0월 20일(임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유악주(兪岳柱) 등의 계
- 헌납 유악주(兪岳柱), 정언 심갱(沈鏗)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月 二十八日 庚戌

- 大司憲蔡弘履, 掌令李思祚·姜垣, 持平李祉永·尹載命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10월 28일(경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등의 계
-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장령 이사조(李思祚)·강원(姜垣), 지평 이지영(李祉永)·윤재명(尹載命)²³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238) 윤재명(1729~?): 본관 파평(坡平).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月 二十八日 庚戌

- 大司諫安聖彬, 獻納兪岳柱, 正言沈鏗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10월 28일(경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안성빈(安聖彬) 등의 계
- 대사간 안성빈(安聖彬), 헌납 유악주(兪岳柱), 정언 심갱(沈鏗)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月 二十九日 辛亥

- 執義趙榮弼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0월 29일(신해)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조영필(趙榮弼)의 계
- 집의 조영필(趙榮弼)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月 二十九日 辛亥

- 正言愼師稷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0월 29일(신해)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신사직(愼師稷)의 계
- 정언 신사직(愼師稷)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二日 癸丑

- 李兢淵, 以戶曹言啓曰, 因傳教濟州人十三人, 各米一斗, 依例上下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2일(계축)

- ☐ 제주인(濟州人)에게 쌀 1말씩을 지급하겠다는 호조의 초기
- 이금연(李兢淵)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교로 인하여 제주인(濟州人) 13인에게 각각 쌀 1말을 규례대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인, 쌀.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二日 癸丑

- 李兢淵,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教, 濟州貢果領來人十三名處, 回糧米各二斗・襦衣一領式題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2일(계축)

- 제주(濟州)에서 공과(貢果)를 가지고 온 13명에게 쌀과 저고리를 지급하겠다는 진휼청의 초기
- 이금연(李兢淵)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한 대로 제주(濟州)에서 공과(貢果)를 가지고 온 13명에게 돌아갈 때 쓸 쌀 각 2말과 저고리 1벌씩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인, 공과, 쌀, 저고리.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二日 癸丑

- 持平尹載命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2일(계축)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윤재명(尹載命) 등의 계
- 지평 윤재명(尹載命)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二日 癸丑

- 正言愼師稷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2일(계축)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신사직(愼師稷)의 계
- 정언 신사직(愼師稷)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二日 癸丑

- 甲辰十一月初二日辰時，上御重熙堂。右承旨入侍時，行右承旨李在學，記事官朴能源，記注官金健修，記事官李崑秀，以次進伏訖。上曰，濟州人幾名待令乎？注書出去，知入，可也。賤臣承命出問，以十一人待令之意，回奏。上曰，遠人以東宮柚子進上上來，此冊禮後初有之事，予甚嘉之，特給衣資及米，戶曹考例舉行，可也。又下教曰，兼春秋出去，問其年事豐凶，弊瘼有無以奏，可也。健修承命出問，回奏曰，年事則僅爲免凶，所告弊瘼，皆是濫雜之事矣。上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2일(계축)

- 동궁(東宮)에 유자(柚子)를 진상하는 일로 올라온 제주인(濟州人)에게 옷감과 쌀을 지급하라는 등의 전교
- 갑진년 11월 2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우승지가 입시할 때 행우승지 이재학(李在學), 기사관 박능원(朴能源),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이곤수(李崑秀)가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인은 몇 명이나 대령하고 있는지 주서(注書)가 나가 알아보고 들어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가서 물어보고는 11인이 대령하고 있다는 뜻으로 돌아와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먼 지방의 사람이 동궁(東宮)에 유자(柚子)를 진상하는 일로 올라온 것은 이 책례(冊禮)²³⁹⁾ 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내가 심히 가상히 여겨 특별히 옷감과 쌀을 지급하는 것이니 호조는 규례를 참고하여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겸춘추는 나가서 그곳 농사의 풍흉과 폐막의 유무를 물어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김건수가 명을 받들고 나가 물어보고 돌아와 아뢰기를, “농사는 겨우 흉년을 면했고, 보고하는 폐막은 모두가 남잡(濫雜)한 일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물러가라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갔다.

△ 주제어: 유자, 진상, 제주인, 쌀, 옷감, 지급.

239) 책례(冊禮): 왕세자를 책봉(冊封)하는 예식.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三日 甲寅

○ 甲辰十一月初三日辰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徐命善，左議政洪樂性，行判中樞府事具善復，行司直鄭尙淳，行戶曹判書鄭一祥，知中樞府事徐有隣，刑曹判書鄭好仁，兵曹判書李在簡，行副司直李柱國，禮曹判書鄭昌順，咸春君李昌運，刑曹參判沈頤之，行副司直徐有大，行左承旨徐有防，行副司果朴祐源，大司憲蔡弘履，執義趙榮弼，掌令李思祚·姜垣，持平尹載命，正言沈鏗·慎師稷，副校理李鼎運，承旨洪仁浩，假注書李敬五，事變假注書金商雨，記事官金鳳顯·尹行任，以次進伏訖。……命善曰，濟州牧使嚴思晚，經年瘴海，病勢沈重，累呈辭狀，乞遞不已，出自侍從，行將及瓜，而身病又如此，則有難強令察任，今姑改差，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載命曰，聖中之罪，可勝誅哉？包藏禍心，主張凶論，敢托不敢言之地，倡出不忍聞之說，作爲窩主，慫恿徒黨，故徐有臣·朴宗甲·李義駿輩，從而和之，交口讚引。噫嘻，痛矣。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而始仕於殿下，欲展蘊抱之說，尤極萬萬凶慘，且莫重義理，倚托怪鬼輩，欲售疑亂之計者，究厥心腸，與德師·載翰一串貫來者也。不仕於先大王朝者，卽先大王之逆臣，先大王之逆臣，卽殿下之逆臣，豈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而居謫以來，小不[少不]不畏縮，乃敢聚會學徒，通接官隸，至登繡啓，大臣筵白，雖卽移配絕島，而經年爭執，尙道王章，窮凶之節，無以嚴覈，亂賊之徒，無所懲畏。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設鞠嚴問，期於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正言沈鏗·慎師稷曰，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以么麼宦寺，交結士夫，終爲凶賊之根柢，而況其窮凶極惡之語，敢欲潛售亂逆之心，究厥罪惡，萬戮猶輕，情節未盡究覈，輿情莫不憤惋。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鞠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鏗等曰，噫嘻，痛矣。聖中之罪，可勝誅哉？倡邪說而作爲窩主，結凶徒而交相吹噓，暗地綢繆，設計妖凶，至於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而始仕於殿下，欲展蘊抱之說，尤極萬萬凶慘，究厥心腸，實與德師·載翰輩一串貫來者也。情迹既露，負犯至重，決不可一刻容貸，而況渠居謫以來，不思畏縮，乃敢聚會學徒，通接官隸，至登繡啓，大臣筵白，雖卽移配絕島，而久道王章，輿情益激。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設鞠嚴問，期於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3일(갑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의 개차(改差)를 요청하는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의 계와 노성중(盧聖中)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윤재명(尹載命) 등의 계

- 갑진년 11월 3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좌의정 홍낙성(洪樂性), 행판 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사직 정상순(鄭尙淳), 행호조판서 정일상(鄭一祥), 지 중추부사 서유린(徐有隣), 형조판서 정호인(鄭好仁), 병조판서 이재간(李在簡), 행 부사직 이주국(李柱國), 예조판서 정창순(鄭昌順), 함춘군 이창운(李昌運), 형조참 판 심이지(沈頤之), 행부사직 서유대(徐有大), 행좌승지 서유방(徐有防), 행부사과 박우원(朴祐源),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집의 조영필(趙榮弼), 장령 이사조(李思祚)·강원(姜垣), 지평 윤재명(尹載命), 정언 심갱(沈鏗)·신사직(愼師稷), 부교리 이정운(李鼎運), 승지 홍인호(洪仁浩),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사변가주서 김상우(金商雨),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명선이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이 장기(瘴氣) 낀 바다에서 해를 보내며 병세가 위중해졌습니다. 때문에 여러 차례 사직 상소를 올려 체임되기를 바라 마지않고 있습니다. 시종신으로 나가서 장차 임기가 다 되어가는데, 신병이 또한 이와 같으니 억지로 직임을 살피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우선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뉘대 로 하라.”라고 하였다.²⁴⁰⁾ 【거조(擧條)를 냄】 <중략> 윤재명이 아뢰기를,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화심(禍心)을 품고 흉론(凶論)을 주장 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의탁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앞장서서 내어 와주(窩主)가 되어 도당(徒黨)을 종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유신(徐有臣)·박종갑(朴宗甲)·이의준(李義駿)의 무리가 따라서 화답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선대왕(先大王) 때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전하에게 벼슬하여 재주와 포부를 펼치려 했다는 말은 더욱더 흉악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한 막중한 의리를 괴귀(怪鬼)의 무리에게 맡겨 의심하여 소란을 피우려는 계책을 부리고자 한 것은 그 심보를 따져보면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과 더불어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선대왕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로 바로 선대왕의 역신(逆臣)이고, 선대왕의 역신은 바로 전하의 역신인데, 어찌 잠시라도 천지 사이에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

240)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8년 11월 3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되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해를 넘겨 쟁집(爭執)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법을 면하고 있으니,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을 엄히 조사할 수 없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언 심갱·신사직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심갱 등이 아뢰기를, “아, 통탄스럽습니다. 노성중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조재한의 무리와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이 연석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에 이배되었지만, 오래도록 국법을 피하고 있어 여론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엄사만, 개차,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四日 乙卯

- 洪仁浩, 以義禁府言啓曰, 罪人李東彬減死絶島定配事, 承傳啓下矣. 罪人東彬, 全羅道靈巖郡楸子島, 減死定配,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卽爲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4일(을묘)

- 정배죄인 이동빈(李東彬)을 추자도(楸子島)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
- 홍인호(洪仁浩)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이동빈(李東彬)을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도록 승전(承傳)²⁴¹⁾으로 계하(啓下)²⁴²⁾ 하였습니다. 죄인 이동빈을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되, 승전안의 내용으로 죄목을 갖추어 즉시 본부 나장을 보내어 배소로 압송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동빈, 추자도, 배소, 압송.

241) 승전(承傳): 임금의 뜻을 전달하는 것.

242) 계하(啓下): 임금의 재가(裁可).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六日 丁巳

○ 備邊司, 以白師闇爲濟州牧使.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6일(정사)

□ 비변사가 백사은(白師闇)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천망(薦望)함

○ 비변사가 백사은(白師闇)²⁴³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천망(薦望)하였다.

△ 주제어: 백사은, 제주목사, 천망.

243) 백사은(1732~?): 본관 수원(水原). 자 경부(敬夫). 1776년(정조 즉위년) 문과 급제. 장령, 대사간, 승지 역임.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六日 丁巳

○ 備邊司薦望, 以白師闇爲濟州牧使.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6일(정사)

□ 비변사가 백사은(白師闇)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천망(薦望)함

○ 비변사가 백사은(白師闇)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천망(薦望)하였다.

△ 주제어: 백사은, 제주목사, 천망.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九日 庚申

- 有政. 吏批, 判書金鍾秀受由在外, 參判宋載經進, 參議黃昇源差祭, 承旨李致中進.
…… 濟州牧使單白師闇, …….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9일(경신)

- ☐ 백사은(白師闇)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단부(單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김종수(金鍾秀)는 말미를 받아 지방에 있고, 참판 송재경(宋載經)이 나왔고, 참의 황승원(黃昇源)은 제관에 임명되었고, 승지 이치중(李致中)이 나왔다.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백사은(白師闇)을 단부(單付)하였다. <하략>.

△ 주제어: 백사은, 제주목사.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十九日 庚午

- 掌令李性吾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19일(경오)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성오(李性吾)의 계
- 장령 이성오(李性吾)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二十二日 癸酉

- 掌令李性吾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22일(계유)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이성오(李性吾)의 계
- 장령 이성오(李性吾)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二十六日 丁丑

- 李兢淵,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教, 濟州貢果領來人三十名處, 回糧米各二斗, 襦衣一領式, 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26일(정축)

- 제주(濟州)에서 공과(貢果)를 가지고 온 13명에게 쌀과 저고리를 지급하겠다는 진휼청의 초기
- 이금연(李兢淵)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한 대로 제주(濟州)에서 공과(貢果)를 가지고 온 30명에게 돌아갈 때 쓸 쌀 각 2말과 저고리 1벌씩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인, 공과, 쌀, 저고리.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二十六日 丁丑

- 甲辰十一月二十六日午時，上御誠正閣。都承旨入侍時，行都承旨宋載經，假注書洪義浩，記注官金健修，記事官尹行任，以次進伏訖。上命右副承旨入侍。賤臣承命出，與洪仁浩偕入進伏。上曰，濟州貢獻物種都啓目所下處，終未查得耶？仁浩曰，遍考各司謄錄，且詢院中老吏，而終無可據之文跡矣。上曰，然則或如祇受啓本之爲政院休紙而然耶？且問於曾經濟牧人許，有狀啓謄錄者，知入事，令右承旨查奏，可也。賤臣承命出傳，命都承旨先退，仍命有司堂上催促入侍。賤臣承命出，與沈頤之偕入進伏。上曰，濟州牧啓本，卿亦得見耶？頤之曰，臣則未及見之，而徐有隣方粘尾以進云矣。上曰，監賑御史當送與否及穀物區劃事，往議大臣後，登對稟處好矣。……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26일(정축)

- 제주(濟州)에서 공물을 바친 물종도계목(物種都啓目)이 내려간 곳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전교와 제주에 감진어사(監賑御史)을 보내야 할지의 여부와 곡물을 구획하는 일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한 후 품처하라는 전교
- 갑진년 11월 26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도승지가 입시할 때 행도승지 송재경(宋載經), 거주서 홍의호(洪義浩),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우부승지를 입시하도록 명했다. 천신(賤臣)을 명을 받들고 나가 홍인호(洪仁浩)와 함께 들어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에서 공물을 바친 물종도계목(物種都啓目)이 내려간 곳을 끝내 조사해 내지 못했는가?”라고 하였다. 홍인호가 아뢰기를, “각사등록(各司謄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승정원의 노리(老吏)에게 물었는데, 끝내 근거할 만한 문적(文跡)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받은 계본이 승정원의 휴지가 되어서 그러한 것인가? 또한 일찍이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지낸 사람에게 물어서 장계의 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들어오도록 우승지에게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이 명을 받들고 나가서 전했다. 도승지에게 먼저 물러가라 명하였고, 이어서 유사당상(有司堂上)에게 재촉하여 입시하게 하였다. 천신이 명을 받들고 나가 심이지(沈頤之)와 함께 들어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목(濟州牧)의 계본을 경도 보았는가?”라고 하였다. 심이지가 아뢰기를, “신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유

린(徐有隣)이 막 말미에 점련(粘連)²⁴⁴하여 올렸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감진어사(監賑御史)을 보내야 할지의 여부와 곡물을 구획하는 일에 대해 가서 대신들과 의논한 후 어전에 나와 품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물종도계목, 감진어사, 곡물.

244) 점련(粘連): 관아에 제출하는 서면에 관계되는 서류를 덧붙임.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二十七日 戊寅

○ 備邊司, 濟州牧使請賑狀啓回啓判付內, 分等事, 停退事, 白給事, 減捧事, 停操事, 防債事, 竝依回啓, 施行爲旆, 賑還不足米請得事, 大抵羅里設倉, 今爲六十五年之久, 而遺儲每未免苟簡, 一自庚寅定式之後, 便歸名存而實[實]無是如乎? 倉內正穀, 免[既]云不敷, 勢將辦出於沿邑, 而茲[荐]饑之餘, 又今傳[轉]輸, 豈非難慎處乎? 然島民仰哺之情, 亦不可不軫念乙仍于, 昨因前儒[伯]登筵, 詳問本倉事情, 米面[麪]雖曰數少, 正租則有若干庫在, 外此牟穀, 亦足相當云. 旣聞頗領之狀, 若不準請許施, 甚非所以懷柔之本意, 元巡六千餘石, 別巡二千石除, 零數準八千之數, 特爲許施爲旆. 乙未則繡衣下去, 督運監賑, 而戊子·己丑·庚寅, 此三年已例, 俱無別遣繡衣之例旣除良, 且聞筵臣, 定繡衣下去, 則反有令出多門之嫌. 且考己丑年傳教聖意, 亦有以仰認是如乎, 今番段置, 依戊子等年例, 令道臣別定差使員, 分歲前後, 從便分半運輸, 萬有一不謹督運, 穀不精實, 舟不完固, 當遵戊子年先朝傳教, 當該差員重勘, 甚者卽其地定配. 斷不饒貸, 不飭之道臣, 亦豈無罰? 以此意, 分付該道監司, 仍又措辭行會. 該守臣待穀物入去, 悉心接濟, 俾無一或捐瘠之患爲旆, 賑賑之政, 難付生手, 前牧使嚴思晚, 限麥秋仍任, 以責成效爲旆. 昨年諸道之歉, 特捐供御之物, 以補賑資, 在朝家一視之意, 島陸奚間? 自判付祇受日, 限明年秋成, 薦新菓果及祭享所用黑牛外, 各殿朔膳物膳, 三名日方物及內局進上藥材, 京外各衙門·各營門進排物種, 內司及各司·各宮房所管奴婢身貢, 特竝蕩減, 以補賑資. 至於貢馬, 關係戎政旣除良, 禁軍馬兵之給馬, 專靠於此, 進獻亦在麥秋後, 雖不必一例蕩減. 今年停退條之明年竝納, 在所當蠲, 只以今年停退條, 明秋使之來納, 明年條仍許停退事, 一體, 分付爲旆. 涼臺事, 亦爲依回啓, 施行爲有矣, 愆期出送, 豈但該牧之過? 種種奸弊, 該道亦不防戢而然是如乎? 此後段如前除良, 道伯各別嚴束, 無或泛忽之意, 嚴飭爲良如教. 仍傳曰, 免[既]承慈教, 慈殿宮方物物膳·朔膳, 亦依昨年設賑諸道例, 勿爲封進. 以爲仰承慈旨之道, 而慈殿宮進上, 則待畢賑, 先卽封進之意, 分付.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27일(무인)

-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진휼을 청하여 올린 장계에 대한 임금의 판부(判付)
- 비변사에서 올린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진휼을 청하는 장계에 대한 회계(回啓)의 판부(判付) 내용 중에, “분등사(分等事), 정퇴사(停退事), 백급사(白給事), 감봉사

(減捧事), 정조사(停操事), 방채사(防債事)는 모두 회계(回啓)대로 시행하라. 진환 부족미청득사(賑還不足米請得事)는 대체로 나리창(羅里倉)을 설창(設倉)한 것이 지금 65년이나 오래되었는데, 남은 곡식이 늘 구차함을 면치 못한다. 한번 경인년(庚寅年)에 정식(定式)한 뒤로 문득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다. 창고 내에 정곡(正穀)이 이미 부족하다고 하니 형세상 장차 연읍(沿邑)에서 변통해서 마련해 내야 하는데, 기근이 겹친 뒤라 또 지금 전수(轉輸)하는 것을 어찌 어렵게 여겨 조심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섬 백성들이 우리러 먹여주기를 바라는 사정 또한 진념(軫念)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전 관찰사가 등연(登筵)²⁴⁵⁾하였기에 본창(本倉)의 사정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니 쌀과 밀은 비록 수량이 적지만 정조(正租)는 약간 창고에 있고, 이것 외에 모곡(牟穀) 또한 족히 상당량이 있다고 하였다. 이미 몹시 굶주린 정황을 들었는데 만약에 청한 것에 준하여 요구한 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면 심히 먼 지방의 백성들을 끌어안는 본의가 아닐 것이다. 원순미(元巡米) 6,000여 석과 별순미(別巡米) 2,000여 석 도합 8,000석에 준하여 특별히 요구한 대로 허락한다. 을미년에는 어사가 내려가서 운송과 진흥을 감독했는데, 무자년과 기축년, 경인년 이 3년은 기왕의 사례대로 모두 어사를 별도로 파견한 예가 없을뿐더러 또한 연신(筵臣)에게서 들으니 어사를 정하여 내려보내면 도리어 명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혐의가 있다고 한다. 또한 기축년의 전교한 성의(聖意)를 상고하여 역시 우리러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무자년 등의 사례대로 관찰사로 하여금 차사원(差使員)을 별도로 정하여 세전(歲前)과 세후(歲後)로 나눠서 편할 대로 반씩 나눠 운송하고, 만에 하나라도 운송을 독려하는 것이 근실하지 못하거나, 곡물이 정실(精實)하지 못하거나, 배가 완고하지 못하면 마땅히 무자년 선조(先朝)의 전교에 의거해서 해당 차사원을 중벌로 처단할 것이며, 심한 자는 즉시 그곳에 정배(定配)하여 결단코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지 않은 관찰사 또한 어찌 별하지 않겠는가? 이 뜻으로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분부하고, 이어 또 말을 꾸며 행회(行會)하라. 해당 수령은 곡물이 들어가기를 기다려 마음을 다하여 구휼할 방도를 세워 하나라도 혹여 연척(捐瘠)²⁴⁶⁾하는 근심이 없게 하라. 진흥하는 정사는 익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맡기기 어렵기에 전 제주목사 엄사만(嚴思晩)은 맥추(麥秋)까지를 기한으로 직무를 계속 맡아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라. 작년 여러 도(道)

245) 등연(登筵): 관원이 일을 위해 임금에게 나가 뵈는 것.

246) 연척(捐瘠): 방치되어 굶주리다가 쇠약해지는 것.

의 흥년으로 특별히 어공(御供)하는 물종을 없애어 진흙하는 물자에 보탠 것은 조정이 일시동인(一視同仁)하는 뜻에 있는 것이다. 섬과 육지가 어찌 차이가 있겠는가? 판부(判付)를 공경히 받는 날로부터 내년 추성(秋成)까지를 기한으로 천신(薦新)하는 과과(菓果) 및 제향에 소용되는 흑우(黑牛) 외에 각전(各殿)의 삭선(朔膳) 물선(物膳), 삼명일(三名日) 방물 및 내국(內局) 진상약재, 경외 각아문·각영문 진배물종, 내사(內司) 및 각사(各司)·각궁방(各宮房) 소관 노비신공을 특별히 모두 탕감하여 진자에 보태도록 하라. 공마(貢馬)의 경우는 군정(軍政)에 관계될뿐더러 금군(禁軍)의 마병(馬兵)에게 말을 공급하는 것이 오로지 이에 의지한다. 진헌(進獻) 또한 맥추 뒤에 있으니, 아무리 한낱 전례로 탕감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금년의 정퇴조(停退條)를 내년에 모두 바치게 하여 마땅히 견감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금년 정퇴조는 내년 가을에 와서 바치도록 하고, 내년 조는 그대로 정퇴하도록 일체 분부하도록 하라. 양태[涼臺]의 일은 또한 회계(回啓)대로 시행하되 기일을 어겨 내보내는 것이 어찌 단지 해당 목사의 잘못이겠는가? 종종 있는 간폐(奸弊)는 해당 관찰사가 또한 막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후로는 전과 같이 관찰사가 각별히 엄히 단속하여 혹여 소홀한 뜻이 없도록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기왕에 자교(慈敎)를 받았으니 자전궁(慈殿宮)의 방물물선(方物物膳)·삭선(朔膳) 또한 작년에 설진(設賑)한 제도(諸道)의 사례에 따라 봉진하지 말아서 아울러 자전의 뜻을 받들고, 자전궁의 진상은 진정(賑政)이 끝나기를 기다려 먼저 즉시 봉진할 뜻으로 분부하라.”라고 하였다.²⁴⁷⁾

△ 주제어: 제주목사, 엄사만, 진흙, 나리창, 정퇴.

247)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8년 11월 3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二十七日 戊寅

- 甲辰十一月二十七日巳時, 上御誠正閣. 大臣·有司堂上入侍時, 領議政徐命善, 有司堂上徐有隣·沈頤之, 行左承旨李在學, 假注書朴蓍壽, 記注官金健修, 記事官金鳳顯, 以次進伏訖. …… 頤之曰, 昨接濟州牧使狀本, 饑饉之色, 莫此爲甚, 請穀太多, 伏未〈知〉何以則爲好矣. 命善曰, 臣亦聞此言久矣, 而頃者濟州牧使狀啓, 便有書於小臣, 而亦以請穀事, 有所多言矣. 上曰, 何以則爲善處耶? 濟州入穀, 前例爲幾年, 而石數爲幾石乎? 頤之對曰, 戊子年一萬石, 己丑一千石入去, 而其前則未及詳考矣. 有隣曰, 臣之居湖南伯時入穀數, 爲一萬七千餘石矣. 上曰, 依昨年北關例, 下送御史, 何如? 命善曰, 今則勢將以督運下送矣. 蓋欲安頓, 則仍任牧使, 事有少益矣. …….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27일(무인)

□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의 진휼에 대해 논의함

- 갑진년 11월 27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유사당상이 입시할 때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유사당상 서유린(徐有隣)·심이지(沈頤之), 행좌승지 이재학(李在學), 가주서 박시수(朴蓍壽),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심이지가 아뢰기를, “어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본(狀本)을 보니 기근의 기색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고, 곡식을 청한 것이 아주 많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신 또한 이 말을 들은 지 오래되었는데, 지난번 제주목사의 장계를 보니 소신에게 글을 쓴 것이 있는데 또한 곡물을 청하는 일로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잘 처리하는 것인가? 제주(濟州)에 들어간 곡식은 전례에 몇 년이며 석수(石數)는 몇 석이나 되는가?”라고 하였다. 심이지가 대답하기를, “무자년은 10,000석, 기축년은 1,000석이 들어갔습니다. 그 전은 미처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서유린이 아뢰기를, “신이 전라도관찰사로 있을 때 들어간 곡식의 수는 17,000여 석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작년 북관(北關)의 사례대로 어사를 내려보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지금은 형세상 운반을 독촉하여 내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대개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제주목사를 영임(仍任)하는 것이 일에 있어 다소 이로움이 있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진휼, 제주목사, 영임.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二十七日 戊寅

- 甲辰十一月二十七日未時，上御重熙堂。禮房承旨與有司堂上入侍時，有司堂上徐有隣，稟事閣臣徐有防，右承旨趙興鎮，假注書朴蓍壽，記事官李崑秀·尹行任，以次進伏訖。上曰，戊子·己丑·庚寅·乙未四年謄錄與濟州御史往來謄錄以入。賤臣承命持入。上曰，左副承旨入侍。賤臣承命出，與李祖承偕入進伏。上曰，柑製以圓點到記設行之年，問于成均館以入。命退，承史以次退出。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27일(무인)

- 제주어사(濟州牧使)의 왕래등록(往來謄錄)을 들이라는 임금의 전교
- 갑진년 11월 27일 미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예방승지와 유사당상이 입시할 때 유사당상 서유린(徐有隣), 품사각신 서유방(徐有防), 우승지 조흥진(趙興鎭), 가주서 박시수(朴蓍壽),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자·기축·경인·을미 4년간의 등록(謄錄)과 제주어사(濟州牧使)의 왕래등록(往來謄錄)을 들여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을 명을 받들고 가지고 들어왔다. 임금이 말하기를, “좌부승지는 입시하라.”라고 하였다. 천신이 명을 받들고 나가 이조승(李祖承)이 함께 들어와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감제(柑製)²⁴⁸가 원점도기(圓點到記)²⁴⁹로 설행한 해를 성균관에 물어보고 들어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 나왔다.

△ 주제어: 제주어사, 등록, 감제.

248) 감제(柑製): 황감제(黃柑製). 해마다 제주도에서 귤을 진상하면 임금이 이를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들에게 내리고 실시하던 과거.

249) 원점도기(圓點到記): 성균관 유생들의 출석과 결석을 점검하기 위하여 유생이 식당(食堂)에 들어갈 때 부책(簿冊)에 점을 찍는데, 그 부책을 도기라 하고 점찍는 것을 원점 또는 권점이라 함.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끼를 1점으로 하여 50점에 이르면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됨.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二十八日 己卯

- 趙興鎭, 以禮曹言啓曰, 今十一月初十日, 冬至諸道所封〈進〉方物中, 濟州牧使封進物種, 則以海外未及上來, 原啓本中, 懸註以入矣. 今者本牧使嚴思晩所封, 大殿方物弓帑筒箇四部, 結弓獐皮十張, 織毛馬粧一部代, 結弓獐皮五張等物, 今始上來, 依例看品內入, 而世子宮所封方物, 織毛馬粧一部代, 結弓獐皮五張, 無端闕封, 揆以事體, 誠極未安, 當該牧使嚴思晩, 從重推考, 當宮所封結弓獐皮五張, 急速封進事, 分付, 何如? 傳曰, 勿推. 各殿進上, 旣命待明秋封進, 此亦不必追封, 以此知悉舉行, 可也.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28일(기묘)

- 세자궁에 봉진하는 결궁장피(結弓獐皮)를 봉진에서 빠뜨린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예조의 초기
- 조흥진(趙興鎭)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11월 10일 동지에 여러 도(道)에서 봉진(封進)하는 방물(方物) 중에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하는 물종(物種)은 바다 밖에서 미처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의 계본 안에 주(註)를 달아서 들였었습니다. 지금 본 목사 엄사만(嚴思晩)이 봉진한 바 대전(大殿)의 방물인 궁대(弓帑)와 통개(筒箇) 4부(部), 결궁장피(結弓獐皮)²⁵⁰⁾ 10장(張), 직모마장(織毛馬粧) 1부 대신 결궁장피 5장 등의 물종이 지금 비로소 올라왔기에 규례대로 간품(看品)하여 대내(大內)에 들였습니다. 그런데 세자궁에 봉진하는 방물로 직모마장 1부 대신 결궁장피 5장을 이유 없이 봉진에서 빠뜨렸으니 일의 체모를 헤아려 볼 때 실로 아주 온당치 못합니다. 해당 목사 엄사만을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해당 궁에 봉진하는 결궁장피 5장을 속히 봉진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추고하지 말라. 각 전(殿)에 진상하는 것을 내년 가을을 기다려 봉진하도록 명하였으니, 이 또한 추봉(追封)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잘 알아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엄사만, 세자궁, 봉진, 추고.

250) 결궁장피(結弓獐皮): 활에 매는 노루 가죽.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一月 二十八日 己卯

- 正言趙恒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8년(1784) 갑진년 11월 28일(기묘)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조항진(趙恒鎭)의 계
- 정언 조항진(趙恒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一日 壬午

- 趙興鎭, 以漢城府言啓曰, 今此甲辰年獻民數時, 京中及八道元戶口摠數, 抄錄入啓, 而濟州三邑民數, 迄未上來, 海島遲速, 未可預料. 故京外已磨勘戶口摠數, 爲先入錄, 濟州三邑, 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1일(임오)

- 갑진년 경중(京中) 및 8도의 원호(元戶) 인구총수를 초록(抄錄)하여 입계하면서 제주(濟州) 삼읍은 추후에 첨록(添錄)하겠다는 한성부의 초기
- 조흥진(趙興鎭)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갑진년에 백성의 수를 바칠 때 경중(京中) 및 8도의 원호(元戶) 인구총수를 초록(抄錄)하여 입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주(濟州) 삼읍 백성의 숫자는 지금까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섬에서 언제 올라올지 헤아릴 수 없으니, 경외(京外)의 이미 마감한 호구총수를 우선 입록(入錄)하고, 제주 삼읍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추후에 첨록(添錄)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인구총수, 제주.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一日 壬午

- 濟州牧使狀啓, 莫重節果進上, 未免代捧, 品甚劣少, 惶恐待罪事, 傳于趙興鎮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1일(임오)

- 진상과 관련하여 올린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막중한 진상(進上)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바치게 하는 것을 면치 못했고, 품질이 매우 용렬하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한다고 한 일과 관련하여 조흥진(趙興鎭)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진상, 대죄.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九日 庚寅

- 洪仁浩, 以備邊司言啓曰, 全羅監司趙時偉狀啓, 有草記稟處之命矣. 取見狀本, 則以爲濟州劃送元巡賑穀六千石內, 以米一千石及米五千石代, 皮牟一萬石, 分劃沿邑, 定差員入送, 而本島諸般停減, 皆歸補賑, 則厥數不貲. 至於別巡二千石, 或過分數, 則徒貽陸民之弊, 姑勿入送, 而關問該牧, 如不可已, 則追後入送, 亦云非晚. 當此耽羅移轉之時, 今番身米布, 折半蕩減代, 備局軍作米二千九百二十二石, 待明春上納, 則實爲沿民難支之端, 軍作米上納一款, 特賜停寢事, 竝令廟堂稟處云矣. 別巡二千石追送事, 當初本司回啓, 已有所論列, 而今此道臣意見, 與本司回啓, 無甚異同. 蓋島民救荒, 雖云時急, 陸民貽弊, 亦所當念, 姑令依狀請, 更觀本島賑資之足不足, 量宜舉行. 蕩減代軍作米事, 非不知沿民之受弊, 而身米布蕩減, 係是無前之惠澤, 自非逐年上納之比, 且就新捧中, 另擇裝發, 則其所爲弊, 似不大段. 依前關從沿邑平均分排, 待春上納之意, 分付, 何如? 傳曰, 軍作米轉輸, 在常年係是疊護[疊役], 況今番本道, 有羅里鋪運穀事, 豈可重勞? 此護[役]雖以京廳言之, 既有嶺南儲留米五千石條, 至於本道軍作米二千石上送, 已之無妨, 依狀請施行事, 分付, 可也.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9일(경인)

- 제주(濟州)에 진곡(賑穀)을 획송(劃送)하는 일에 대한 비변사의 초기
- 홍인호(洪仁浩)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감사 조시위(趙時偉)의 장계로 인하여 초기(草記)하여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장본(狀本)을 가져다 보니, ‘제주(濟州)에 획송(劃送)할 원순진곡(元巡賑穀) 6,000석 안에 쌀 1,000석과 쌀 5,000석 대신 피모(皮牟) 10,000석을 연읍(沿邑)에 나누어 획정하고 차사원(差使員)을 들여보냈는데, 본도(本島)의 제반 정감(停減)이 모두 진홀하는 데에 보태어져서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별순곡(別巡穀) 2,000석의 경우는 혹 분수에 지나치면 한갓 육지 백성에게 폐를 끼치니 우선은 들여보내지 말고 관문(關文)을 보내어 해당 목사에게 물어봐서 그칠 수 없다고 하면 추후에 들여보내는 것 또한 늦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탐라(耽羅)로 이전할 때를 당하여 금번 신미포(身米布)를 절반 탕감하는 대신 비변사의 군작미(軍作米) 2,922석을 내년 봄을 기다려 상납하게 하면 실로 연읍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되니 군작미 상납 한 조항은 특별히 정침(停寢) 하도록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품처해 주십시오.”

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별순곡 2,000석을 추후에 들여보내는 일은 당초 본사(本公司)의 회계(回啓)에 이미 논열한 바가 있고, 지금 이 관찰사의 의견이 본사의 회계와 심히 다를 게 없습니다. 대개 섬 백성들을 구휼하는 것이 비록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육지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단 또한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다시 본도(本島) 진자(賑資)의 족함과 부족함을 살펴보고 해야 할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탕감한 대신의 군작미는 연읍 백성들이 폐해를 받을 것을 모르지 않지만 신미포의 탕감은 전에 없던 혜택이니 해마다 상납하는 것과 견줄 바가 아닙니다. 또한 새로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에서 특별히 가려 실려 보낸다면 그 폐해되는 바가 대단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전 공문대로 연읍에서 평균으로 분배해서 봄을 기다려 상납하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군작미를 전수(轉輸)하는 것은 상년(常年)에 있어서는 첩역(疊役)이다. 하물며 이번 전라도 나리포(羅里鋪)로 운곡하는 일로 어찌 수고로움을 가중시킬 수 있겠는가? 이 사역은 비록 경청(京廳)에서 말한 것으로 이미 영남에 저장된 쌀 5,000석이 있고 본도에서 군작미 2,000석을 올려 보내면 그만되도 무방하니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²⁵¹⁾

△ 주제어: 제주, 탐라, 진휼, 진곡, 별순곡.

251)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8년 12월 9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十二日 癸巳

- 甲辰十二月十二日午時，上御誠正閣。兩司諸臺入侍時，大司憲閔鍾顯，行大司諫金頤柱，司諫洪文泳，持平洪樂恒·李尙度，行都承旨金尙集，行右承旨沈有鎮，右副承旨徐有成，假注書李敬五，記注官金健修，記事官李崑秀，以次進伏訖。……鍾顯·樂恒·尙度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決正王法。上曰，不允。……頤柱·文泳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決正王法。上曰，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12일(계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민중현(閔鍾顯) 등의 계

- 갑진년 12월 12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양사(兩司)와 여러 대신(臺臣)들이 입시할 때 대사헌 민중현(閔鍾顯), 행대사간 김이주(金頤柱), 사간 홍문영(洪文泳), 지평 홍낙항(洪樂恒)·이상도(李尙度), 행도승지 김상집(金尙集), 행우승지 심유진(沈有鎭), 우부승지 서유성(徐有成),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이곤수(李崑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민중현²⁵²⁾·홍낙항·이상도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이주²⁵³⁾·홍문영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

252) 민중현(1745~1798): 본관 여흥(驪興). 자 공기(公紀). 호 한계(寒溪). 시호 문목(文穆). 1766년 (영조 42) 문과 급제. 대사성, 대사헌, 이조판서 역임.

253) 김이주(?~1795): 본관 경주(慶州). 호 옥포(玉圃). 시호 정헌(靖憲). 대사간, 대사헌, 형조판서 역임.

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十四日 乙未

- 金履正, 以義禁府言啓曰, 兪岳柱亟施島配之典事, 承傳, 啓下矣. 兪岳柱全羅道靈光郡楸子島絶島定配,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14일(을미)

- 유악주(兪岳柱)를 추자도(楸子島)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
- 김이정(金履正)²⁵⁴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유악주(兪岳柱)에게 속히 도배(島配)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승전(承傳)으로 계하(啓下) 하였습니다. 유악주를 전라도 영광군 추자도(楸子島)로 절도정배(絶島定配)하되 승전의 내용으로 죄목을 갖추어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보내어 배소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유악주, 정배, 추자도, 압송.

254) 김이정(1735~1792): 본관 안동(安東). 자 군방(君方). 호 벽산거사(碧山居士).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예조참의, 대사간, 승지 역임.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十五日 丙申

- 司諫洪文泳, 持平洪樂恒 · 李尙度, 副修撰曹允大, 副校理趙弘鎮, 正言申禹相 · 尹行履啓曰, …… 持平洪樂恒 · 李尙度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正言申禹相 · 尹行履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15일(병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홍문영(洪文泳) 등의 계
- 사간 홍문영(洪文泳), 지평 홍낙항(洪樂恒) · 이상도(李尙度), 부수찬 조윤대(曹允大), 부교리 조홍진(趙弘鎭), 정언 신우상(申禹相) · 윤행리(尹行履)²⁵⁵가 아뢰기를, <중략> 지평 홍낙항 · 이상도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정언 신우상 · 윤행리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255) 윤행리(1741~?): 본관 남원(南原). 1776년(정조 즉위년) 문과 급제. 헌납, 사간, 집의 역임.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十六日 丁酉

- 持平洪樂恒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聖中之罪, 可勝誅哉? 包藏禍心, 主張凶論, 敢托不敢言之地, 倡出不忍聞之說, 作爲窩主, 慫慂徒黨, 故徐有臣·朴宗甲·李義駿輩, 從而和之, 交口讚引. 噫嘻, 痛矣. 先大王朝, 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且莫重義理, 倚毗怪鬼輩, 欲售疑亂之計者, 究厥心腸, 與德師·載翰, 一串貫來者也. 不仕於先大王朝者, 卽先大王之逆臣, 先大王之逆臣, 卽殿下之逆臣, 豈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 而居謫以來, 小不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經年爭執, 尙追王章, 窮凶之節, 無以嚴覈, 亂賊之徒, 無所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16일(정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홍낙항(洪樂恒)의 계
- 지평 홍낙항(洪樂恒)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별할 수 있겠습니까? 화심(禍心)을 품고 흉론(凶論)을 주장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의탁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앞장서서 내어 와주(窩主)가 되어 도당(徒黨)을 종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유신(徐有臣)·박종갑(朴宗甲)·이의준(李義駿)의 무리가 따라서 화답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선대왕(先大王) 때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전하에게 벼슬하여 재주와 포부를 펼치려 했다는 말은 더욱더 흉악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한 막중한 의리를 괴귀(怪鬼)의 무리에게 맡겨 의심하여 소란을 피우려는 계책을 부리고자 한 것은 그 심보를 따져보면 이덕사

(李德師)·조재한(趙載翰)과 더불어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선대왕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로 바로 선대왕의 역신(逆臣)이고, 선대왕의 역신은 바로 전하의 역신인데, 어찌 잠시라도 천지 사이에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해를 넘겨 쟁집(爭執)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법을 면하고 있으니,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을 엄히 조사할 수 없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十六日 丁酉

- 正言尹行履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逆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噫嘻, 痛矣. 聖中之罪, 可勝誅哉? 倡邪說而作爲窩主, 結凶徒而交相吹噓, 暗地綢繆, 設計妖凶, 至於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究厥心腸, 實與德師·載翰輩一串貫來者也. 情迹既露, 負犯至重, 決不可一刻容貸, 而況渠居謫以來, 不思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久道王章, 輿情益激,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16일(정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윤행리(尹行履)의 계

- 정언 윤행리(尹行履)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筵席)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의 무리와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

配)되었지만, 오래도록 국법을 피하고 있어 여론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대정헌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헌,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十七日 戊戌

- 持平洪樂恒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17일(무술)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홍낙항(洪樂恒)의 계
- 지평 홍낙항(洪樂恒)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十七日 戊戌

- 正言申禹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17일(무술)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신우상(申禹相)의 계
- 정언 신우상(申禹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十八日 己亥

- 持平洪樂恒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18일(기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홍낙항(洪樂恒)의 계
- 지평 홍낙항(洪樂恒)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十八日 己亥

- 正言尹行履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18일(기해)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윤행리(尹行履)의 계
- 정언 윤행리(尹行履)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十九日 庚子

- 持平洪樂恒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19일(경자)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홍낙항(洪樂恒)의 계
- 지평 홍낙항(洪樂恒)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十九日 庚子

- 正言申禹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19일(경자)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신우상(申禹相)의 계
- 정언 신우상(申禹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二十日 辛丑

- 持平朴長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20일(신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박장설(朴長嵩)의 계
- 지평 박장설(朴長嵩)²⁵⁶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256) 박장설(1729~?): 본관 밀양(密陽). 자 치교(稚敎). 호 분서(汾西).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사헌부집의, 통례원상례, 대사간 역임.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二十日 辛丑

- 司諫洪周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20일(신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홍주만(洪周萬)의 계
- 사간 홍주만(洪周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二十一日 壬寅

- 掌令宋益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21일(임인)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송익중(宋益中)의 계
- 장령 송익중(宋益中)²⁵⁷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257) 송익중(1719~?): 본관 홍주(洪州). 자 중집(仲執). 1753년(영조 29) 문과 급제.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二十一日 壬寅

- 正言尹行履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21일(임인)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윤행리(尹行履)의 계
- 정언 윤행리(尹行履)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二十二日 癸卯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22일(계묘)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二十二日 癸卯

- 正言申禹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22일(계묘)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신우상(申禹相)의 계
- 정언 신우상(申禹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四十九年 甲辰 十二月 二十六日 丁未

- 甲辰十二月二十六日辰時, 上御涵仁殿. 親臨都政入侍時, 行都承旨尹坊, 行左承旨朴祐源, 右承旨李時秀, 左副承旨趙興鎭, 右副承旨李祖承, 同副承旨徐龍輔, 檢校直閣鄭東浚, 假注書魚用謙·金孝建, 記事官李崑秀·尹行任, 行吏曹判書李命植, 參判徐有防, 參議趙鼎鎭, 正郎曹允大, 假郎廳韓相肇·承膺祚·朴大良, 兵曹判書李在簡, 參判申大升, 參議權禰, 參知金履正, 正郎崔守魯·李百亨·吳翼煥·鄭觀輝, 佐郎金鳳顯·尹九宗·金遇國·車亨衢, 以次進伏訖. …… 又命書傳教曰, 今番都政, 守·部初仕十二窠, 京武三人, 六道武弁, 濟州·松都武弁各一人, 咸鏡南北關武弁各一人點下. 惟關東·沁都, 未免獨漏, 殊非一視之意, 關東則雖得照擬, 以低望之故, 未得受點, 沁都則雖無見擬, 年前都政, 一銓長亦有筵稟, 更爲取才之例矣. …….

❖ 정조 8년(1784) 갑진년 12월 26일(정미)

- 임금이 도정에서 수문장과 부장의 초사(初仕) 자리에 낙점되지 못한 관동과 강화도의 조치에 대한 전교를 내리면서 금번 도정에서 수문장과 부장에 낙점된 제주(濟州) 출신 무사 1인을 포함한 인원수를 언급함
- 갑진년 12월 26일 진시에 임금이 함인전(涵仁殿)으로 나아갔다. 도정(都政)²⁵⁸에 친림하여 입시할 때 행도승지 윤방(尹坊), 행좌승지 박우원(朴祐源), 우승지 이시수(李時秀), 좌부승지 조흥진(趙興鎭), 우부승지 이조승(李祖承), 동부승지 서용보(徐龍輔), 검교직각 정동준(鄭東浚), 가주서 어용겸(魚用謙)·김효건(金孝建),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 행이조판서 이명식(李命植), 참판 서유방(徐有防), 참의 조정진(趙鼎鎭), 정랑 조운대(曹允大), 가낭청 한상조(韓相肇)·승응조(承膺祚)·박대양(朴大良), 병조판서 이재간(李在簡), 참판 신대승(申大升), 참의 권엄(權禰), 참지 김이정(金履正), 정랑 최수로(崔守魯)·이백형(李百亨)·오익환(吳翼煥)·정관휘(鄭觀輝), 좌랑 김봉현(金鳳顯)·윤구종(尹九宗)·김우국(金遇國)·차형구(車亨衢)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또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금번 도정에 수문장과 부장의 초사(初仕) 12자리에 서울 출신의 무관은 3인, 6도(道)의 무관으로 제주(濟州)와 송도의 무관 각 1인, 함경도의 남관(南關)과 북관

258) 도정(都政): 해마다 설달에 벼슬아치의 성적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벼슬자리를 떼어 버리거나 더 좋은 데로 올리거나 하던 일. 도목정사(都目政事) 또는 도목정(都目政)이라고도 함.

(北關) 무관 각 1인에 대해 낙점이 내려졌다. 오직 관동(關東)과 강화도만이 홀로 누락됨을 면치 못하였으니 차별없이 동일하게 보는 뜻이 아니다. 관동은 비록 조의(照擬)를 하였지만 낮은 순위의 의망(擬望)인 까닭에 낙점을 얻지 못했고, 강화도는 비록 의망을 받지는 못했지만 몇 해 전 도정에서 이조판서가 또한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다시 취재(取才)한 예가 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도정, 수문장, 부장, 초사, 낙점.

1785年

(정조 9)



❖ 乾隆 五十年 乙巳 一月 四日 甲寅

- 持平李永穆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 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聖中之罪, 可勝誅哉? 包藏禍心, 主張凶論, 敢托不敢言之地, 倡出不忍聞之說, 作爲窩主, 慫慂徒黨, 故徐有臣·朴宗甲·李義駿輩, 從而和之, 交口讚引, 噫嘻, 痛矣, 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邁萬凶慘, 且莫重義理, 倚毗怪鬼輩, 欲售疑亂之計者, 究厥心腸, 與德師·載翰, 一串貫來者也. 不仕於先大王朝者, 卽先大王之逆臣, 先大王之逆臣, 卽殿下之逆臣, 豈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 而居謫以來, 小不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經年爭執, 尙追王章, 窮凶之節, 無以嚴覈, 亂賊之徒, 無所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월 4일(갑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영목(李永穆)의 계
- 지평 이영목(李永穆)²⁵⁹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화심(禍心)을 품고 흉론(凶論)을 주장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의탁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앞장서서 내어 와주(窩主)가 되어 도당(徒黨)을 종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유신(徐有臣)·박종갑(朴宗甲)·이의준(李義駿)의 무리가 따라서 화답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선대왕(先大王) 때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전하에게 벼슬하여 재주와 포부를 펼치려 했다는 말

259) 이영목(1733~?): 본관 한산(韓山).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지제교 역임.

은 더욱더 흉악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한 막중한 의리를 괴귀(怪鬼)의 무리에게 맡겨 의심하여 소란을 피우려는 계책을 부리고자 한 것은 그 심보를 따져보면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과 더불어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선대왕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로 바로 선대왕의 역신(逆臣)이고, 선대왕의 역신은 바로 전하의 역신인데, 어찌 잠시라도 천지 사이에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해를 넘겨 쟁집(爭執)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법을 면하고 있으니,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을 엄히 조사할 수 없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하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一月 四日 甲寅

○ 正言尹翊東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逆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噫嘻, 痛矣, 聖中之罪, 可勝誅哉? 倡邪說而作爲窩主, 結凶徒而交相吹噓, 暗地綢繆, 設計妖凶, 至於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究厥心腸, 實與德師·載翰輩, 一串貫來者也. 情迹既露, 負犯至重, 決不可一刻容貸, 而況渠居謫以來, 不思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久道王章, 輿情益激.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월 4일(갑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윤익동(尹翊東)의 계

○ 정언 윤익동(尹翊東)²⁶⁰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筵席)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의 무리와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260) 윤익동(?~?): 본관 해평(海平). 자 의숙(儀叔).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오래도록 국법을 피하고 있어 여론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一月 六日 丙辰

- 獻納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1월 6일(병진)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송전(宋銓)의 계
- 헌납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一月 十日 庚申

- 李集斗, 以刑曹言啓曰, 昨年十二月將鬼薦取才時, 濟州居出身俞德純, 使谷山居閑良金龍甲代射現捉, 自兵曹移送本曹, 故嚴查其委折, 則德純行賂於訓練院勤仕奉事池泰成, 募得龍甲, 恣意弄奸, 借射代射之罪, 俱已遲晚. 金龍甲, 令兵曹充定水軍, 俞德純乃是出身, 移義禁府, 依律處之. 至於池泰成, 身爲訓練奉事, 受賂[賂]於遐方愚駭之徒, 居間指揮, 莫重取才, 肆然幻弄之狀, 萬萬痛駭, 而及其事發, 逃避不現, 歷屢日, 始爲捉來, 與德純·龍甲等, 一處對質, 則泰成之主謀作奸, 綻露無餘, 而一直抵賴, 終不吐實, 究厥情狀, 尤極巧惡. 其在懲奸習杜後弊之道, 不可尋常處之, 事當嚴杖窮覈, 而既是出身, 臣曹無以施杖, 移義禁府, 嚴問得情, 照法重勘, 何如? 傳曰, 允. 懲憑遠方武士, 至於干科, 無非渠輩紹介之罪. 未發覺之許多罪犯, 雖不窮查, 此事綻露無餘也, 渠饑蝨[蟣蝨]之類, 何必移義禁府? 訓練奉事池泰成, 移送龍虎營, 令兵判限直招, 嚴棍取招後充軍. 所謂濟州出身俞德純, 雖極無狀, 絕域之人, 宜有一分參量, 亦不必移義禁府, 直自本曹照律, 島中地方充軍, 可也.

❖ 정조 9년(1785) 을사년 1월 10일(경신)

- 취재(取才)할 때 활쏘기를 대신 해 달라고 부탁한 제주(濟州) 출신(出身) 유덕순(俞德純) 등의 처벌을 청하는 형조의 초기
- 이집두(李集斗)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작년 12월 장귀천(將鬼薦)²⁶¹ 취재(取才)할 때 제주(濟州)에 사는 출신(出身) 유덕순(俞德純)이 곡산(谷山)에 사는 한량 김용갑(金龍甲)을 시켜 무과에서 대사(代射)²⁶²하게 하였다가 현장에서 잡혀 병조에서 본조로 이송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곡절을 엄히 조사하였더니, 유순덕이 훈련원 근사봉사(勤仕奉事) 지태성(池泰成)에게 뇌물을 주어 김용갑을 구하여 얻고 멋대로 농간을 부려 활쏘기를 대신 해 달라고 부탁한 것과 대신 활쏘기한 죄를 모두 이미 자복하였습니다. 이에 김용갑은 병조로 하여금 수군(水軍)에 충정(充定)하게 하였고, 유덕순은 출신으로 의금부에 이송하여 법대로 처리하였습

261) 장귀천(將鬼薦): 내삼청의 선전관천(宣傳官薦), 부장천(部將薦), 수문장천(守門將薦)에 통과된 사람들로, 이들을 병조 판서가 도총부 및 훈련원 당상과 함께 시취(試取)하였음. 입격하면 의망하여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함. 정조대 이후로는 선전관천을 통과한 사람들은 내금위(內禁衛) 취재를 따로 받아 관직에 나아갔고, 부장천과 수문장천을 통과한 사람들만 장귀천 취재를 받았음.

262) 대사(代射): 무과의 시재(試才)를 남이 대신 치르게 하던 일, 또는 그런 부정행위.

니다. 지태성의 경우는 훈련원봉사의 신분으로 먼 지방의 어리석고 놀라운 무리에게 뇌물을 받아 중간에서 지휘하여 막중한 취재를 멋대로 농간을 부린 정상이 너무나도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각되자 도피하여 나타나지 않고 여러 날이 지나서야 비로소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유덕순과 김용갑 등과 한 곳에서 대질하니, 지태성이 주모하여 간악한 짓을 한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버티면서 끝내 실토하지 않으니 그 정상을 따져보면 더욱 지극히 교묘하고 악독합니다. 간사한 습속을 징계하고 훗날의 폐단을 막는 도리로 볼 때 보통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엄히 곤장을 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출신이므로 신조(臣曹)에서는 장을 칠 수가 없으니, 의금부로 이송하여 엄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법에 비추어 중벌로 처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먼 지방의 무사를 종용(慫恿)하여 죄를 범하는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그들이 소개한 죄이다. 발각되지 않은 허다한 죄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더라도 이 일이 남김없이 드러났으니, 저 서캐와 이와 같은 무리를 어찌 의금부로 이송할 필요가 있겠는가? 훈련원봉사 지태성을 용호영(龍虎營)으로 이송하여 병조판서로 하여금 바른대로 공초하게 하여 엄히 곤장을 쳐서 공초를 받은 후에 충군(充軍)하도록 하라. 이른바 제주 출신 유덕순은 비록 지극히 형편이 없지만 절역(絶域)의 사람으로 마땅히 일분(一分) 참작하여 헤아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의금부로 이송할 필요는 없고 바로 본조에서 조율(照律)하여 섬 안의 지방으로 충군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취재, 출신, 유덕순, 대사, 충군.

❖ 乾隆 五十年 乙巳 一月 十一日 丁酉[辛酉]

- 朴天衡, 以兵曹言啓曰, 刑曹草記, 昨年十二月將鬼薦取才時, 濟州居出身俞德純, 借射, 受賂作奸, 訓練奉事池泰成, 移義禁府處之事, 批旨內允, 懲憑遠方武士, 至於干科, 無非渠輩紹介之罪, 未發覺之許多罪犯, 雖不窮查, 此事綻露無餘, 如渠饑蝨[蟣蝨]之類, 何必移義禁府? 訓練奉事池泰成, 移送龍虎營, 令兵判限直招, 嚴棍取服後, 充軍事, 命下矣. 依下教, 訓練奉事池泰成捉致, 嚴棍十五度, 受賂作奸, 今已遲晚, 罪人池泰成, 咸鏡道慶興府造山浦充軍, 定驛子押付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9년(1785) 을사년 1월 11일(정유[신유])

- 제주(濟州) 출신(出身) 유덕순(俞德純)을 종용(懲憑)하여 취재(取才)할 때 활쏘기를 남에게 부탁하게 한 훈련원봉사 지태성(池泰成)을 충군(充軍)하여 압송하겠다는 병조의 초기
- 박천형(朴天衡)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형조의 초기에 작년 12월 장귀천(將鬼薦) 취재(取才)할 때 제주(濟州)에 사는 출신(出身) 유덕순(俞德純)이 시재에 활쏘기를 대신 해 달라고 남에게 부탁하도록 뇌물을 받아 간악한 짓을 한 훈련원봉사 지태성(池泰成)을 의금부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일과 관련하여 비지(批旨)에 ‘윤희한다. 먼 지방의 무사를 종용(懲憑)하여 죄를 범하는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그들이 소개한 죄이다. 발각되지 않은 허다한 죄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더라도 이 일이 남김없이 드러났으니, 저 서캐와 이와 같은 무리를 어찌 의금부로 이송할 필요가 있겠는가? 훈련원봉사 지태성을 용호영(龍虎營)으로 이송하여 병조판서로 하여금 바른대로 공초하게 하여 엄히 곤장을 쳐서 공초를 받은 후에 충군(充軍)하도록 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하교한 대로 훈련원봉사 지태성을 잡아다가 엄하게 곤장 15대를 쳤고, 뇌물을 받아 간악한 짓을 한 것은 지금 이미 자복하였습니다. 죄인 지태성을 함경도 경흥부 조산포(造山浦)에 충군하여 역자(驛子)를 정하여 압송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취재, 출신, 유덕순, 지태성, 충군.

❖ 乾隆 五十年 乙巳 一月 十一日 丁酉[辛酉]

○ 乙巳正月十一日辰時，上詣仁政門。朝參入侍時，行都承旨洪秀輔，行左承旨徐有防，右承旨趙鼎鎮，左副承旨李祖承，右副承旨李集斗，同副承旨李兢淵，記事官朴能源，假注書李德鉉，記事官李崑秀·尹行任，原任直提學徐浩修，直閣徐龍輔·鄭東俊，以次侍立。……大司憲洪檢，掌令鄭濡，持平申耆等曰，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漫爛和通之狀，渠既明白納招，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今此酌處之命，雖出好生之德意，而三尺至嚴，不可島縣爲奴而止，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檢等曰，聖中之罪，可勝誅哉？包藏禍心，主張凶論，敢托不敢言之地，倡出不忍聞之說，作爲窩主，慫恿徒黨，故徐有臣·朴宗甲·李義駿輩，從而和之，交口讚引，噫嘻，痛矣。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而始仕於殿下，欲展蘊抱之說，尤極萬萬凶慘。且莫重義理，倚托怪鬼輩，欲售疑亂之計者，究厥心腸，與德師·載翰，一串貫來者也，不仕於先大王朝者，卽先大王之逆臣，先大王之逆臣，卽殿下之逆臣，豈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而居謫以來，小不畏縮，乃敢聚會學徒，通接官隸，至登繡啓，大臣筵白，雖卽移配絕島，而經年爭執，尙追王章，窮凶之節，無以究覈，亂逆之徒，無所懲畏。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大司諫鄭啓淳曰，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以么麼宦寺，交結士夫，終爲凶賊之根柢，而況其窮凶極惡之語，敢欲潛售亂逆之心，究厥罪惡，萬戮猶輕。情節未盡究覈，輿情莫不憤惋，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啓淳曰，噫嘻，痛矣。聖中之罪，可勝誅哉？倡邪說而作爲窩主，結凶徒而交相吹噓，暗地綢繆，設計妖凶，至於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而始仕於殿下，欲展蘊抱之說，尤極萬萬凶慘。究厥心腸，實與德師·載翰輩，一串貫來者也。情跡既露，負犯至重，決不可一刻容貸，而況渠居謫以來，不思畏縮，乃敢聚會學徒，通接官隸，至登繡啓，大臣筵白，雖卽移配絕島，而久追王章，輿情益激。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快正王法。上曰，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1월 11일(정유[신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홍검(洪檢) 등의 계

○ 을사년 1월 11일 진시에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으로 나아갔다. 조참(朝參)에 입시할 때 행도승지 홍수보(洪秀輔), 행좌승지 서유방(徐有防), 우승지 조정진(趙鼎

鎭), 좌부승지 이조승(李祖承), 우부승지 이집두(李集斗), 동부승지 이금연(李兢淵), 기사관 박능원(朴能源), 거주서 이덕현(李德鉉),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 원임직제학 서호수(徐浩修), 직각 서용보(徐龍輔)·정동준(鄭東俊)이 차례로 시립(侍立)하였다. <중략> 대사헌 홍검(洪檢), 장령 정유(鄭濡), 지평 신기(申耆) 등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홍검 등이 아뢰기를,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화심(禍心)을 품고 흉론(凶論)을 주장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의탁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앞장서서 내어 와주(窩主)가 되어 도당(徒黨)을 종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유신(徐有臣)·박종갑(朴宗甲)·이의준(李義駿)의 무리가 따라서 화답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선대왕(先大王) 때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전하에게 벼슬하여 재주와 포부를 펼치려 했다는 말은 더욱더 흉악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한 막중한 의리를 괴귀(怪鬼)의 무리에게 맡겨 의심하여 소란을 피우려는 계책을 부리고자 한 것은 그 심보를 따져보면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과 더불어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선대왕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로 바로 선대왕의 역신(逆臣)이고, 선대왕의 역신은 바로 전하의 역신인데, 어찌 잠시라도 천지 사이에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해를 넘겨 쟁집(爭執)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법을 면하고 있으니,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을 엄히 조사할 수 없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사간 정계순(鄭啓淳)²⁶³이 아

263) 정계순(1729~1789): 본관 동래(東萊). 자 옥여(沃汝). 1777년(정조 1) 문과 급제. 대사간, 초산부사, 청송군수 역임.

퇴기를,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 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계순이 아뢰기를, “아, 통탄스럽습니다. 노성중의 죄를 이루다 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조재한의 무리와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이 연석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에 이배(貶)되었지만, 오래도록 국법을 피하고 있어 여론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一月 十二日 壬戌

- 掌令鄭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월 12일(임술)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정유(鄭濡)의 계
- 장령 정유(鄭濡)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一月 十三日 己亥[癸亥]

- 持平申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월 13일(기해[계해])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신기(申耆)의 계
- 지평 신기(申耆)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一月 十四日 甲子

- 掌令鄭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之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1월 14일(갑자)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정유(鄭濡)의 계
- 장령 정유(鄭濡)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一月 十四日 甲子

- 獻納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1월 14일(갑자)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이사조(李思祚)의 계
- 헌납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一月 二十二日 戊申[壬申]

- 持平愼師稷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월 22일(무신[임신])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신사직(愼師稷)의 계
- 지평 신사직(愼師稷)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一月 二十五日 乙亥

- 乙巳正月二十五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徐命善, 左議政洪樂性, 行吏曹判書李命植, 行司直鄭尙淳, 仁陵君李在協, 行戶曹判書鄭一祥, 行副司直鄭昌聖, 行副司直徐有隣, 兵曹判書李在簡, 行副司直李柱國, 刑曹判書趙時俊, 禮曹判書鄭昌順, 咸春君李昌運, 行副司直徐有大, 漢城右尹蔡弘履, 右承旨安聖彬, 持平慎師稷, 獻納柳雲羽, 副校理洪文泳, 假注書金孝建, 事變假注書洪義浩, 記事官金鳳顯·李崑秀, 以次進伏訖. …… 師稷進奏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啓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上曰, 不允. …… 雲羽進奏院前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又啓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월 25일(을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양사(兩司)의 계

- 을사년 1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좌의정 홍낙성(洪樂性), 행이조판서 이명식(李命植), 행사직 정상순(鄭尙淳), 인능군 이재협(李在協), 행호조판서 정일상(鄭一祥), 행부사직 정창성(鄭昌聖), 행부사직 서유린(徐有隣), 병조판서 이재간(李在簡),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형조판서 조시준(趙時俊), 예조판서 정창순(鄭昌順), 함춘군 이창운(李昌運), 행부사직 서유대(徐有大), 한성우윤 채홍리(蔡弘履), 우승지 안성빈(安聖彬), 지평 신사직(愼師稷), 헌납 유운우(柳雲羽), 부교리 홍문영(洪文泳), 가주서 김효건(金孝建), 사변가주서 홍의호(洪義浩),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이곤수(李崑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신사직이 앞으로 나와 사헌부의 계사(啓辭)를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유운우²⁶⁴)가 앞으로 나와 사간원의

계사를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264) 유운우(1730~?): 본관 진주(晉州). 자 봉지(鳳之).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 乾隆 五十年 乙巳 一月 二十七日 丁丑

- 掌令宋益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1월 27일(정축)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송익중(宋益中)의 계
- 장령 송익중(宋益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二月 二日 壬午

- 持平崔顯重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2월 2일(임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최현중(崔顯重)의 계
- 지평 최현중(崔顯重)²⁶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265) 최현중(1745~?): 본관 삭녕(朔寧). 자 치회(稚會).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지평, 수찬, 함양군사정어사 역임.

❖ 乾隆 五十年 乙巳 二月 七日 丁亥

- 以全羅監司狀啓，濟州移轉穀差使員康津縣監申鴻周，殫竭效勞，趁速利運[移運]事，傳于李文源曰，羅里浦穀物，趁期到泊，無一民一船之頃報，極爲萬幸。且觀狀辭，尾陳差員誠勤，亦足可尙。若以繡衣差出，則復命之後，勢將加資，今豈可異同？況守令領運，係是格外？當該差使員，令該曹，今日政陞資調用。

❖ 정조 9년(1785) 을사년 2월 7일(정해)

- 제주(濟州)에 곡물을 탈없이 조속하게 운송한 강진현감 신흥주(申鴻周)를 자급을 올려 조용(調用)하게 하라는 전교
- 전라감사의 장계에 제주(濟州)에 곡물을 이전(移轉)하는 차사원(差使員) 강진현감(康津縣監) 신흥주(申鴻周)가 온 힘을 다해 조속히 이롭게 운반한 일과 관련하여 이문원(李文源)²⁶⁶에게 전교하기를, “나리포(羅里浦)의 곡물이 기일에 맞추어 도착하였고, 한 사람도 한 척의 배도 탈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니 매우 다행이다. 또 장계의 내용을 보건대, 후미에 차사원의 성실과 근면을 진술하였으니 또한 가상히 여길 만하다. 만약 어사로 차출하였다면 복명(復命) 한 뒤에 가자(加資)해야 했을 것이니, 지금 어찌 차이를 둘 수 있겠는가? 더구나 수령의 영운(領運)은 격식을 벗어나는 일이다. 해당 차사원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오늘 정사에서 자급을 올려 조용(調用)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곡물, 운송, 강진현감, 신흥주, 조용.

266) 이문원(1740~1794): 본관 연안(延安). 자 사질(士質).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병조판서, 판의금부사, 예조판서 역임.

❖ 乾隆 五十年 乙巳 二月 七日 丁亥

- 乙巳二月初七日初更, 上御誠正閣. 召對入侍時, 參贊官權臚, 檢討官申耆, 閣臣李崑秀, 假注書朴著壽, 編修官吳錫齡, 記注官金健修, 以次進伏訖. …… 敬養俯伏奏曰, 臣謂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宜矣. 上曰, 不允. 【出學條】 …… 敬養曰, 臣謂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宜矣. 上曰, 不允. 【出學條】 …… 延伋曰, 臣謂大靜縣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宜矣. 上曰, 不允. 【出學條】 …… 延伋曰, 臣謂大靜縣爲奴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宜矣. 上曰, 不允. 【出學條】 …….

❖ 정조 9년(1785) 을사년 2월 7일(정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이경양(李敬養) 등의 계

- 을사년 2월 7일 초경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소대(召對)에 입시할 때 참찬관 권엄(權臚), 검토관 심기(申耆), 각신 이곤수(李崑秀), 가주서 박시수(朴著壽), 편수관 오석령(吳錫齡), 기주관 김건수(金健修)가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이경양(李敬養)이 앞드려 아뢰기를, “신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중략> 이경양이 아뢰기를, “신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중략> 이연급(李延伋)이 아뢰기를, “신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二月 九日 己丑

- 乙巳二月初九日巳時，上御重熙堂。禮房承旨入侍時，右副承旨徐龍輔，假注書朴蓍壽，記事官李崑秀·尹行任，以次進伏訖。上命在闕有司堂上入侍。賤臣承命出，與徐有隣偕入進伏。有隣曰，昨日所下上言十度中，……濟州幼學梁擎天上言，三姓廟賜額事，亦依下教，議于大臣後稟處。……。

❖ 정조 9년(1785) 을사년 2월 9일(기축)

- 제주(濟州) 유학 양경천(梁擎天)이 상언(上言)한 삼성묘(三姓廟)에 대해 사액(賜額)하는 일을 대신(大臣)에게 의논한 후에 품처(稟處)하겠다는 유사당상 서유린(徐有隣)의 계
- 을사년 2월 9일 사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예방승지가 입시할 때 우부승지 서용보(徐龍輔), 가주서 박시수(朴蓍壽),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대궐에 있는 유사당상을 입시하도록 명했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와 서유린(徐有隣)과 함께 들어가 앞으로 나와 엎드렸다. 서유린이 아뢰기를, “어제 내린 상언(上言) 10도(度) 중 <중략> 제주(濟州) 유학 양경천(梁擎天)²⁶⁷이 상언한 삼성묘(三姓廟)에 대해 사액(賜額)하는 일은 또한 하교한 대로 대신(大臣)에게 의논한 후에 품처(稟處)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양경천, 상언, 삼성묘, 사액.

267) 양경천(1732~1794): 본관 제주(濟州). 1785년(정조 9) 귀양지 함경도 길주(吉州)에서 풀려나는 길에 삼성묘(三姓廟)에 사액(賜額)해 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얻었음.

❖ 乾隆 五十年 乙巳 二月 十日 庚寅

- 乙巳二月初十日初更, 上御重熙堂. 坐直承旨入侍時, 左副承旨李祖承, 假注書朴蓍壽, 記事官李崑秀·尹行任, 以次進伏訖. …… 上曰, 今日所收上言, 竝讀奏. …… 讀奏濟州幼學梁擎天, 三姓廟賜額事. 命書判付曰, 此事不可以猥濫拔之, 卿就議大臣, 後日入侍時稟處. …… 讀奏濟州武科金潤玉, 以嫡爲庶, 呼冤事. 命書判付曰, 無論事實之如何, 以嫡爲庶, 足爲呼冤之端, 況是絕域之人, 不必下該曹, 卿其詳問, 具意見草記. …….

❖ 정조 9년(1785) 을사년 2월 10일(경인)

- 제주(濟州)의 유학 양경천(梁擎天)과 무과 김윤옥(金潤玉)의 상언(上言)에 대해 내린 전교
- 을사년 2월 10일 초경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좌직승지(坐直承旨)가 입시할 때 좌부승지 이조승(李祖承), 가주서 박시수(朴蓍壽),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거둔 상언(上言)을 모두 읽어 아뢰어라.”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濟州) 유학 양경천(梁擎天)이 삼성묘(三姓廟)를 사액(賜額)하는 일을 읽어 아뢰었다. 쓰라고 명하여 판부(判付)하기를, “이 일은 외람된다고 해서 빼버릴 수는 없다. 경은 대신(大臣)에게 가서 논의하고, 후일 입시할 때 품처(稟處)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 무과 김윤옥(金潤玉)이 적자(嫡子)를 서자(庶子)로 만들어서 원통함을 호소한 일을 읽어 아뢰었다. 쓰라고 명하여 판부하기를, “사실이 어떠한지를 막론하고 적자를 서자로 만들었다면 족히 원통함을 호소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는 절역(絶域)의 사람이다. 해조(該曹)에 내릴 필요없이 경이 상세히 물어 의견을 갖추어 초기(草記)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상언, 양경천, 삼성묘, 사액, 김윤옥.

❖ 乾隆 五十年 乙巳 二月 十一日 辛卯

- 洪文泳, 以刑曹言啓曰, 全羅道濟州居金潤玉上言, 以爲其祖瑞鏡生時, 具禮成婚, 生其父鎭兌, 世襲嫡派, 而入島始祖世系未詳, 故曾未修譜, 癸卯年同宗金命獻等, 相謂曰, 以世系修譜, 則世族永傳云云, 而初正譜本, 暗地幻錄, 指其父, 謂以庶子, 其黠昧舉措, 適出於不聞不見之地, 故專昧其譌, 而至於譜冊輸示之時, 始乃目擊, 心憤, 果削庶字矣. 命獻反以庶字下子字, 竝爲潛削, 發單鄉中, 永絕同宗, 使不廁人類, 誣人一款, 伸理歸正之地云云. 無論事實之如何, 以嫡爲庶, 足爲呼冤之端. 況是絕域之人, 不必下該曹, 卿其詳問, 出意見草記事, 命下矣. 招問潤玉, 則其所爲說, 與上言無異, 而既不兩造, 又不考見文蹟, 渠輩之曰嫡曰庶, 有難遙度而直決. 且鄉居寒微者, 初不嚴於嫡·庶之界限, 故若年老而無子, 則雖是妾子, 使其妻養之, 仍爲承嫡, 以嫡行世者, 間或有之. 京兆帳籍中, 其祖瑞鏡, 雖以文爲妻, 亦難的知其潤玉父之爲嫡產與庶產. 第水·陸二千里外之人, 裹足來訴, 則抑或有可冤之端而然, 分付道臣, 使該牧使, 詳查公決後, 具由狀聞, 何如? 傳曰, 如無切至之情懇, 豈有涉險呼籲? 自本曹, 卽爲行會濟牧守臣處, 從公決拾[決給]後狀聞, 俾無更訴之弊, 可也.

❖ 정조 9년(1785) 을사년 2월 11일(신묘)

- 제주(濟州) 무과 김윤옥(金潤玉)의 상언(上言)한 일의 처리에 관한 형조의 초기
- 홍문영(洪文泳)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도 제주(濟州)에 거주하는 김윤옥(金潤玉)의 상언(上言)에, ‘조부 김서경(金瑞鏡)이 살아있을 때, 예를 갖추어 성혼(成婚)하여 아버지 김진태(金鎭兌)를 낳아 적파(嫡派)를 세습하였습니다. 입도(入島) 시조의 세계(世系)는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일찍이 족보를 찬수(纂修)한 적이 없었는데, 계묘년에 동종(同宗) 김명헌(金命獻) 등이 서로 일러 말하기를, “세대로써 족보를 찬수한다면 세족(世族)을 영구히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고는 처음으로 보본(譜本)을 바꾸면서 암지(暗地)에서 환록(幻錄)하여 아버지를 가리켜 서자라 하였습니다. 그 어두운 거조가 다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속임수를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보책(譜冊)을 보내어 보여줄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목격하고는 마음이 분하여 마침내 서자(序字)를 삭거(削去)하였습니다. 그런데 김명헌은 도리어 서자 아래 자자(子字)도 모두 몰래 삭거하여 향중(鄉中)에 단자를 보내어 영원히 동종(同宗)을 끊어 사람 축에 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남을 무함하는 이 한 가지 일에 대해 원통함을 풀어 다스려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이 어떠한 지를 막론하고 적자를 서자로 만들었다면 족히 원통함을 호소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는 절역(絶域)의 사람이다. 해조(該曹)에 내릴 필요없이 경이 상세히 물어 의견을 갖추어 초기(草記)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김윤옥을 불러 물어보니 그가 말하는 것이 상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쪽 당사자가 이른 것도 아니고, 또한 문적(文蹟)을 살펴볼 수 없으니, 그들이 “적자다” “서자다” 하는 것을 먼 곳에서 헤아려 바로 결정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골에 사는 한미(寒微)한 자들은 애초에 적서(嫡庶)의 경계가 엄격하지 않아서 만약에 연로하여 아들이 없으면 비록 첩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처로 하여금 기르게 하여 그대로 적자가 되게 하여 적자로써 행세하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한성부의 장적(帳籍) 가운데 그 조부 김서경이 비록 문씨[文]로 처를 삼았다고 되었지만 또한 김윤옥의 아버가 적자의 소생인지 서자의 소생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록 2천 리 밖의 사람이 먼 길을 걸어와서 호소를 하니, 혹 원통할 만한 단서가 있어서 그러한 것일 겁니다. 관찰사에게 분부하여 해당 목사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공정하게 판결한 후에 사유를 갖추어 장계로 보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찌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호소하겠는가? 본조(本曹)에서 즉시 제주목사에게 통지하여 공정하게 판결해 준 후에 장계로 보고하여 다시 호소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상언, 김윤옥, 적자, 서자.

❖ 乾隆 五十年 乙巳 二月 十二日 壬辰

- 安聖彬, 以備邊司言啓曰, 因濟州幼學梁擎天上言, 高浮良三姓廟賜額事, 依下教, 就議于大臣則領議政徐命善, 左議政洪樂性, 領敦寧府事鄭存謙, 行判中樞府事李福源, 皆以爲賜額事體, 不輕而重, 而第高浮良三姓, 既是耽羅開荒之人, 則與他院宇有異. 且島中民人, 慕其遺澤, 廟焉而祭之久矣. 特頒三字之璇額, 以副一域之群情, 實合綏遠之道云. 領中樞府事金尙喆, 行判中樞府事金煜, 病不得收議云矣. 諸大臣之議, 既如此, 所當依所請許施, 而係關恩典, 上裁, 何如? 傳曰, 依諸大臣議施行, 可也.

❖ 정조 9년(1785) 을사년 2월 12일(임진)

- 삼성묘(三姓廟)의 사액(賜額)에 대한 임금의 재가를 요청하는 비변사의 초기
- 안성빈(安聖彬)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유학 양경천(梁擎天)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고부양 삼성묘(三姓廟)를 사액(賜額)하는 일을 하교한 대로 대신(大臣)에게 나아가 의논하였더니,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좌의정 홍낙성(洪樂性), 영돈녕부사 정존겸(鄭存謙), 행판중추부사 이복원(李福源) 모두가 ‘사액하는 일의 체모는 가볍지 않고 중한 것입니다. 다만 고부양 삼성은 탐라(耽羅)를 개황(開荒)한 사람으로 다른 원우(院宇)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섬 중의 백성들은 그 유택(遺澤)을 흠모하여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특별히 세 글자를 사액하여 한 지역의 백성들의 마음에 부응하는 것은 실로 먼 지방을 편안하게 하는 방도에 합당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중추부사 김상철(金尙喆), 행판중추부사 김익(金煜)은 병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 대신의 의론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요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되, 은전(恩典)에 관계된 것이니 임금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여러 대신들이 의논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양경천, 상언, 삼성묘, 사액.

❖ 乾隆 五十年 乙巳 二月 十五日 乙未

- 洪檢, 以司饗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濟州牧所封二月令進上, 今日來到本院, 而開櫝看品, 則各殿所封物種中, 青橘, 太半腐傷, 雖是越海之物, 莫重進上, 循例捧入, 極涉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捧入.

❖ 정조 9년(1785) 을사년 2월 15일(을미)

-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한 청귤(靑橘) 태반이 썩어 어떻게 할지 여쭙는 사옹원의 초기
- 홍검(洪檢)이 사옹원 관원이 전하는 감선제조(監膳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封進)한 2월령 진상(進上)이 오늘 본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 간품(看品)하니 각 전(殿)에 봉진하는 물종 가운데 청귤(靑橘)은 태반이 썩어 손상되었습니다. 비록 바다를 건너온 물건이라 하더라도 막중한 진상품을 관례에 따라 봉입(捧入)하는 것이 매우 온당치 못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봉입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청귤, 진상.

❖ 乾隆 五十年 乙巳 二月 十五日 乙未

- 洪檢, 以禮曹言啓曰, 因濟州幼學梁擎天上言, 高浮良三姓廟賜額事, 令廟堂, 議大臣草記, 傳曰, 依諸大臣議施行, 可也事, 命下矣. 三姓廟賜額時, 祭文及額號, 令藝文館撰出, 何如? 傳曰, 知道.

❖ 정조 9년(1785) 을사년 2월 15일(을미)

- ☐ 삼성묘(三姓廟)를 사액할 때 제문과 액호(額號)를 예문관으로 하여금 지어내기를 요청하는 예조의 초기
- 홍검(洪檢)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유학 양경천(梁擎天)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고양부 삼성묘(三姓廟)에 사액(賜額)하는 일을 의정부로 하여금 대신(大臣)에게 수의(收議)하게 한 초기(草記)에 대해 전교하기를, ‘여러 대신의 의논대로 시행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삼성묘를 사액할 때 제문과 액호(額號)를 예문관으로 하여금 지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삼성묘, 사액, 제문, 액호, 예문관.

❖ 乾隆 五十年 乙巳 二月 十七日 丁酉

- 趙時偉, 以禮曹言啓曰, 濟州三姓廟賜額致祭事, 已爲啓下矣. 祭物, 令本牧進排, 祭官, 亦令本牧所管三邑守令, 差定事知委, 而本曹郎廳, 依例受香祝進去, 以爲隨時宣額之地, 何如? 傳曰, 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2월 17일(정유)

- 삼성묘(三姓廟)를 사액할 때 제물 마련과 제관 차정(差定) 등에 관한 방안을 여쭙는 예조의 초기
- 조시위(趙時偉)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삼성묘(三姓廟)를 사액(賜額)하고 치제(致祭)하도록 이미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제물은 본목(本牧)으로 하여금 진배(進排)하게 하고, 제관 또한 본목이 관할하고 있는 삼읍의 수령을 차정(差定)하도록 통지하되, 본조(本曹)의 낭청이 규례대로 향축(香祝)을 받아 나아가서 수시(隨時)로 선탁(宣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삼성묘, 사액, 제문, 액호, 예문관.

❖ 乾隆 五十年 乙巳 二月 十九日 己亥

- 備邊司啓目, 前因濟州牧使嚴思晩狀啓, 白米不足條四百石, 裝載入送之意, 覆啓, 分付矣. 一依前區劃數爰入送, 分付道臣, 何如? 判付啓, 依回啓施行爲旆, 舉行形止, 卽令狀聞爲良如教.

❖ 정조 9년(1785) 을사년 2월 19일(기해)

- 제주(濟州)에 백미(白米) 부족조(不足條) 400석(石)을 들여보내도록 관찰사에게 분부하기를 요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의 계목(啓目)에, “전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의 장계로 인하여 백미(白米)의 부족조(不足條) 400석(石)을 배에 실어 들여보내는 것에 대해 복계(覆啓)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전에 구획(區劃)한 수효대로 들여보내도록 관찰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회계(回啓)한 대로 시행하되 거행 상황을 즉시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엄사만, 장계, 백미, 부족조.

❖ 乾隆 五十年 乙巳 二月 二十六日 丙午

- 持平李庚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2월 26일(병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경운(李庚運)의 계
- 지평 이경운(李庚運)²⁶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268) 이경운(1745~1821): 본관 함평(咸平). 자 중거(仲擧). 호 우곡(愚谷). 1782년(정조 6) 문과 급제.

❖ 乾隆 五十年 乙巳 二月 二十六日 丙午

- 獻納李延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2월 26일(병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이연급(李延伋)의 계
- 헌납 이연급(李延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三月 三日 壬子

- 洪仁浩, 以義禁府言啓曰, 咸鏡監司李命植狀啓內, 甲山府定配罪人雲亨·樂彬·謹·福海等, 俱以叵測之類, 自犯罔赦之罪, 得保首領, 視息覆載, 在渠輩之道, 所當杜門屏息, 而或潛奸府妓, 買宅以居, 陰結外人, 作爲使喚, 馱物牟利, 縱奴行惡. 甚至縛柱拔鬢, 立馬行獵, 豪橫放恣, 究厥心腸, 萬萬凶悖, 若復仍置此地, 漸肆凶肚, 則將不知何樣禍端, 不止一邑之貽害而已. 竝移配絕島, 嚴加防束, 永絕外人相通之路, 令該府稟處事, 啓下矣. 罪人雲亨·樂彬·謹·福海等之負犯, 俱是一刻難容於覆載之間, 而當初減死定配之命, 特出於好生之德意, 則在渠等之道, 固當縮伏屏息之不暇, 而恣意跳踉, 蔑法行惡, 究厥腸肚, 誠萬萬凶獐, 其在嚴隄防杜後弊之道, 不可仍置. 依狀請竝移配絕島, 而雲亨全羅道靈巖郡楸子島, 樂彬濟州牧旌義縣, 謹濟州牧大靜縣, 福海羅州牧黑山島分配, 前罪目中, 以狀啓內辭意添書, 依例發遣府書吏羅將, 自甲山府執捉, 仍令押送于各其配所, 而嚴飭於該道道臣及新定配所官, 另加防禁, 俾絕無窮之慮, 何如? 傳曰, 移配不可, 惟在嚴飭防守之如何, 以此申飭, 可也.

❖ 정조 9년(1785) 을사년 3월 3일(임자)

- 정배죄인 조운형(趙雲亨) 등을 추자도(楸子島) 등 절도(絶島)에 이배(移配)할 것을 요청하는 의금부의 초기
- 홍인호(洪仁浩)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함경감사 이명식(李命植)의 장계 내에, ‘갑산부(甲山府) 정배죄인 조운형(趙雲亨)·홍낙빈(洪樂彬)²⁶⁹·이근(李謹)·이복해(李福海) 등은 모두 불측한 무리들로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지만 목숨을 보전하여 이 세상에서 보고 숨쉬며 살아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도리로는 마땅히 문을 닫아걸고 숨죽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몰래 부기(府妓)와 간통하고, 집을 사서 거처하고, 몰래 외부인과 결탁하여 사환(使喚)을 만들어 보잘 것 없는 물건으로 이익을 꾀하고, 종을 풀어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기둥에 묶어 머리털을 뽑고, 역마(驛馬)로 사냥을 하였으니 횡포를 부리며 방자하게 굴었으니 그 심보를 따져보면 너무나도 흉패(凶悖)합니다. 만약에 다시 이 곳에 그대로 두어 점점 흉계를 부린다면 장차 어떤 모양의 화근이 될

269) 홍낙빈(1732~?): 본관 풍산(豊山). 자 계문(季文). 1778년(정조 2) 문과 급제. 병조참지, 경상도 관찰사 역임.

지 알 수 없고, 한 고을에 해를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절도(絶島)로 이배(移配)하고 엄히 방속(防束)하여 외인(外人)과 서로 통하는 길을 영원히 끊어 버리고, 해부(該府)로 하여금 품쳐해 주십시오.’라고 한 일에 대해 계하(啓下) 하였습니다. 죄인 조운형·홍낙빈·이근·이복해 등이 지은 죄는 모두 한 순간도 천지 사이에서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초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라는 명은 특별히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인즉 그들은 도리로 볼 때 진실로 몸을 웅크리고 앞드려 숨쉴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제멋대로 날뛰며 법을 무시하고 악행을 행했으니, 그 심보를 따져보면 참으로 매우 흉악합니다. 훗날의 폐단을 엄히 막는 방도로 볼 때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절도에 이배하되, 조운형은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 홍낙빈은 제주목 정의현(旌義縣), 이근은 제주목 대정현(大靜縣), 이복해는 나주목 흑산도로 나누어 정배하고, 전 죄목 가운데 장계의 내용을 첨서(添書)하여 규례대로 본부 서리와 나장을 보내어 갑산부에서 잡아서 그대로 각 배소로 압송하게 하고, 해당 도의 관찰사 및 새 정배소의 관리에게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별도로 방금(防禁)을 가하여 그치지 않는 염려가 없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배는 불가하다. 오직 엄하게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방수(防守)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으니 이대로 단단히 타일러 경계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조운형, 홍낙빈, 이근, 이복해, 절도, 이배.

❖ 乾隆 五十年 乙巳 三月 三日 壬子

- 洪仁浩, 以刑曹言啓曰, …… 坡州盧建星原情, 憑藉傳訃云云, 殊甚訝惑, 元供辭亦自本曹節該草記事, 判下矣. 取考其原情, …… 盧建星父聖中, 定配於大靜縣, 而其祖父彦益, 辛丑作故, 其父在絕海, 邦禁莫重, 隻字片信, 無由相通, 臺啓方張之時, 雖不敢援例請暇歸葬, 而通訃一事, 朝家初無禁令, 故伊時呈禁府, 則推諉本道, 本道推諉於禁府, 屢次哀乞, 終不得回. 昨春以前後事狀, 呈訴禁府, 始得許題, 仍受道臣題辭, 往付康津, 方爲候風之際, 濟州牧使李文燦, 不問公文之有無, 移文康津, 直爲逐送, 終至虛還, 今則喪期已盡, 而上司公文, 亦未免阻撓, 通訃一事, 永無可望矣. 父年過六十, 旣在罔赦之科, 則實無生還之期, 特許矣身, 涉海通訃云矣. …… 盧建星等原情, 依判下節該書入, …… 盧建星渠父聖中之罪犯, 關係何如, 而稱以通訃, 敢請躬自涉海云者, 放恣無嚴, 莫此爲甚. 其在嚴隄防杜後弊之道, 不可尋常處之, 自臣曹移文該道, 竝爲捉來, 各別嚴勘, 何如? 傳曰, …… 其中盧哥事, 不必以此爲罪, …….

❖ 정조 9년(1785) 을사년 3월 3일(임자)

- 대정현(大靜縣)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에게 부고를 전달하려 했던 아들 노건성(盧建星)의 처리에 대한 형조의 초기
- 홍인호(洪仁浩)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상략〉 파주(坡州) 노건성(盧建星)의 원정(原情)에 부고(訃告)를 전하였다고 빙자하며 운운한 것은 아주 의아스러우니 원래의 공사(供辭)를 또한 본조(本曹)에서 절해(節該)²⁷⁰를 초기(草記)하도록 판하(判下) 하였습니다. 그 원정을 가져다 살펴보니 〈중략〉 노건성의 아버지 노성중(盧聖中)은 대정현(大靜縣)에 정배되었고, 그 조부 노언익(盧彦益)은 신축년에 작고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절해(絶海)에 있는데, 나라의 금령(禁令)이 막중하여 짧은 편지도 서로 통할 길이 없었고, 대계(臺啓)가 한창일 때라 비록 감히 규례를 끌어다 말미를 청하여 돌아가 장사를 치를 수도 없었지만, 부고를 알리는 한 가지 일은 조정에 애당초 금령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 의금부에 올리니 본도(本道)에 미루고, 본도는 의금부에 미루었는데, 여러 차례 애걸하니 끝내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봄에 전후 사정을 가지고 의금부에 정소(呈訴)하여 비로소 하

270) 절해(節該): 공문서(公文書)의 해당 귀절(句節)을 간추려 기재(記載)하는 것.

락하는 제사(題辭)를 받고, 이어서 관찰사의 제사를 받고는 강진(康津)에 가서 후풍(候風)하고 있을 때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문혁(李文爌)이 공문의 유무를 묻지 않고 강진에 공문을 보내어 곧바로 쫓아보내어 끝내 허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기(喪期)기 이미 다했고, 상사(上司)의 공문 또한 조당(阻撓)을 면하지 못하니 부고를 전하는 한 가지 일은 영원히 가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60세가 넘었고,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 특별히 이 몸이 바다를 건너 부고를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노건성 등의 원정은 판하한 대로 절해를 써서 들었습니다. <중략> 노건성은 그 아버지 노성중(盧聖中)의 죄가 관계된 바가 어떠한데, 부고라고 일컬으면서 감히 몸소 바다를 건너자고 청하였으니, 방자하고 무엄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엄히 방지하고 뒷날의 폐단을 막는 도리로 볼 때 보통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신조(臣曹)에서 해당 도(道)에 공문을 보내어 잡아와서 각별히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상략> 노가(盧哥)의 일은 이것으로 죄를 삼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성중.

❖ 乾隆 五十年 乙巳 三月 十四日 癸亥

- 掌令朴長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3월 14일(계해)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박장설(朴長謫)의 계
- 장령 박장설(朴長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三月 十四日 癸亥

- 司諫姜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3월 14일(계해)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강인(姜儉)의 계
- 사간 강인(姜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三月 十五日 甲子

- 掌令沈興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3월 15일(갑자)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심흥영(沈興永)의 계
- 장령 심흥영(沈興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三月 十五日 甲子

- 正言柳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3월 15일(갑자)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유경(柳畊)의 계
- 정언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三月 十七日 丙寅

- 持平鄭觀輝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聖中之罪, 可勝誅哉? 包藏禍心, 主張凶論, 敢托不敢言之地, 倡出不忍聞之說, 作爲窩主, 慫慂徒黨, 故徐有臣·朴宗甲·李義駿輩, 從而和之, 交口讚引. 噫嘻, 痛矣. 先大王朝, 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且莫重義理, 依托怪鬼輩, 欲售疑亂之計者, 究厥心腸, 與德師·載翰, 一串貫來者也. 不仕於先大王朝者, 卽先大王之逆臣, 卽先大王之逆臣, 卽殿下之逆臣, 豈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 而展謫以來, 少不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經年爭執, 尙追王章, 窮凶之節, 無以嚴覈, 辭[亂]賊之徒, 無所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3월 17일(병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정관휘(鄭觀輝)의 계
- 지평 정관휘(鄭觀輝)²⁷¹)가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화심(禍心)을 품고 흉론(凶論)을 주장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의탁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앞장서서 내어 와주(窩主)가 되어 도당(徒黨)을 종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유신(徐有臣)·박종갑(朴宗甲)·이의준(李義駿)의 무리가 따라서 화답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선대왕(先大王) 때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전하에게 벼슬하여 재주와 포부를 펼치려 했다는 말

271) 정관휘(1744~?): 제주목사(재임: 1799. 12.~1802. 3.) 역임.

은 더욱더 흉악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한 막중한 의리를 괴귀(怪鬼)의 무리에게 맡겨 의심하여 소란을 피우려는 계책을 부리고자 한 것은 그 심보를 따져보면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과 더불어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선대왕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로 바로 선대왕의 역신(逆臣)이고, 선대왕의 역신은 바로 전하의 역신인데, 어찌 잠시라도 천지 사이에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해를 넘겨 쟁집(爭執)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법을 면하고 있으니,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을 엄히 조사할 수 없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三月 十七日 丙寅

- 正言柳畊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噫嘻, 痛矣. 聖中之罪, 可勝誅哉? 倡邪說而作爲窩主, 結凶徒而交相吹噓, 暗地綢繆, 設計妖凶, 至於先大王朝, 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究厥心腸, 實與德師·載翰輩, 一串貫來者也. 情迹既露, 負犯至重, 決不可一刻容貸, 而況渠居謫以來, 不思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久追王章, 輿情益激.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3월 17일(병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유경(柳畊)의 계

- 정언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筵席)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의 무리와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오래도록 국법을 피하고 있어 여론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
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
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三月 二十日 己巳

- 持平李永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3월 20일(기사)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영목(李永穆)의 계
- 지평 이영목(李永穆)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三月 二十日 己巳

- 正言柳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3월 20일(기사)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유경(柳畊)의 계
- 정언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三月 二十一日 庚午

- 掌令朴長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3월 21일(경오)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박장설(朴長謫)의 계
- 장령 박장설(朴長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三月 二十一日 庚午

- 獻納李勉兢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3월 21일(경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이면공(李勉兢)의 계
- 헌납 이면공(李勉兢)²⁷²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272) 이면공(1753~?): 본관 전주(全州). 자 대림(大臨). 1768년(영조 44) 문과 급제.

❖ 乾隆 五十年 乙巳 三月 二十二日 辛未

- 掌令沈興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3월 22일(신미)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심흥영(沈興永)의 계
- 장령 심흥영(沈興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三月 二十二日 辛未

- 正言柳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3월 22일(신미)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유경(柳畊)의 계
- 정언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三月 二十七日 丙子

- 持平鄭觀輝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3월 27일(병자)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정관휘(鄭觀輝)의 계
- 지평 정관휘(鄭觀輝)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운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三月 二十七日 丙子

- 正言柳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3월 27일(병자)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유경(柳畊)의 계
- 정언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三月 二十八日 丁丑

- 持平李永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3월 28일(정축)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영목(李永穆)의 계
- 지평 이영목(李永穆)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三月 二十八日 丁丑

- 獻納李勉兢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3월 28일(정축)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이면금(李勉兢)의 계
- 헌납 이면금(李勉兢)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四月 一日 庚辰

○ 掌令朴長高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聖中之罪, 可勝誅哉? 包藏禍心, 主張凶論, 敢托不敢言之地, 倡出不忍聞之說, 作爲窩主, 慫慂徒黨, 故徐有臣·朴宗甲·李義駿輩, 從而和之, 交口讚引. 噫嘻, 痛矣. 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且莫重義理, 倚托怪鬼輩, 欲售疑亂之計者, 究厥心腸, 與德師·載翰, 一串貫來者也. 不仕於先大王朝者, 卽先大王之逆臣, 先大王之逆臣, 卽殿下之逆臣, 豈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 而居謫以來, 小[少]不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經年爭執, 尙道王章, 窮凶之節, 無以嚴覈, 亂賊之徒, 無所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4월 1일(경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박장설(朴長高)의 계

○ 장령 박장설(朴長高)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熳)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별할 수 있겠습니까? 화심(禍心)을 품고 흉론(凶論)을 주장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의탁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앞장서서 내어 와주(窩主)가 되어 도당(徒黨)을 종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유신(徐有臣)·박종갑(朴宗甲)·이의준(李義駿)의 무리가 따라서 화답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선대왕(先大王) 때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전하에게 벼슬하여 재주와 포부를 펼치려 했다는 말은 더욱더 흉악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한 막중한 의리를 괴귀(怪鬼)의 무리에게 맡겨 의심하여 소란을 피우려는 계책을 부리고자 한 것은 그 심보를 따져보면 이덕사

(李德師)·조재한(趙載翰)과 더불어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선대왕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로 바로 선대왕의 역신(逆臣)이고, 선대왕의 역신은 바로 전하의 역신인데, 어찌 잠시라도 천지 사이에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해를 넘겨 쟁집(爭執)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법을 면하고 있으니,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을 엄히 조사할 수 없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四月 一日 庚辰

- 正言柳畊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噫嘻, 痛矣. 聖中之罪, 可勝誅哉? 倡邪說而作爲窩主, 結凶徒而交相吹噓, 暗地綢繆, 設計妖凶, 至於先大王朝, 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究厥心腸, 實與德師·載翰輩, 一串貫來者也. 情迹既露, 負犯至重, 決不可一刻容貸, 而況渠居謫以來, 不思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久追王章, 輿情益激.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4월 1일(경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유경(柳畊)의 계

- 정언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筵席)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의 무리와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오래도록 국법을 피하고 있어 여론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
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
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四月 三日 壬午

- 掌令朴長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4월 3일(임오)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박장설(朴長謫)의 계
- 장령 박장설(朴長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四月 三日 壬午

- 政言[正言]柳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4월 3일(임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유경(柳畊)의 계
- 정언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四月 十日 己丑

- 持平李崇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4월 10일(기축)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승운(李崇運)의 계
- 지평 이승운(李崇運)²⁷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273) 이승운(1729~?): 본관 함평(咸平). 자 사진(士鎭). 1759년(영조 35) 문과 급제.

❖ 乾隆 五十年 乙巳 四月 十日 己丑

- 正言白師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9년(1785) 을사년 4월 10일(기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백사근(白師謹)의 계
- 정언 백사근(白師謹)²⁷⁴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274) 백사근(1732~?): 본관 수원(水原). 자 경부(敬夫). 1776년(정조 즉위년) 문과 급제. 장령, 대사간, 승지 역임.

❖ 乾隆 五十年 乙巳 四月 十二日 辛卯

○ 備邊司薦望, 以尹得達爲濟州牧使.

❖ 정조 9년(1785) 을사년 4월 12일(신묘)

□ 윤득규(尹得達)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비변사가 천망(薦望)하여 윤득규(尹得達)²⁷⁵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 주제어: 윤득규, 제주목사.

275) 윤득규(?~?): 제주목사(재임: 1785. 5.~1786. 4. 파직) 역임.

❖ 乾隆 五十年 乙巳 四月 十二日 辛卯

- 乙巳四月十二日辰時，上御誠正閣。右承旨·右副承旨入侍時，右承旨趙鼎鎮，右副承旨金載瓚，記事官朴能源，記注官金健修，記事官金鳳顯，以次進伏訖。…… 又命書傳教曰，麥嶺已屆，民事自此可以就緒，若待狀本來到，拖至深夏，濟州牧使嚴思晚，許遞，其代另擇擬薦之意，言于廟堂。…….

❖ 정조 9년(1785) 을사년 4월 12일(신묘)

- ☐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의 체임을 허락하는 전교
- 을사년 4월 12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우승지와 우부승지가 입시할 때 우승지 조정진(趙鼎鎮), 우부승지 김재찬(金載瓚), 기사관 박능원(朴能源),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또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보릿고개가 이미 이르렀으니 백성들의 농사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인데, 만약에 장본(狀本)이 도착하기를 기다린다면 한여름까지 늦춰질 것이다.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의 체임을 허락하고, 그 대신에 특별히 가려 천망(薦望)하도록 의금부에 말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엄사만, 체임.

❖ 乾隆 五十年 乙巳 四月 十二日 辛卯

- 乙巳四月十二日酉時，上御重熙堂。左承旨入侍時，行左承旨朴祐源，假注書李敬五，記注官金健修，記事官李崑秀，以次進伏訖。……以濟州牧使望單子，命書傳教曰，首望方在閩任，若待其交龜上來，舊牧使其將再準瓜，更擬以入之意，言于廟堂。仍命退，承史以次退出。

❖ 정조 9년(1785) 을사년 4월 12일(신묘)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의망(擬望)을 다시 들이도록 하라는 전교
- 을사년 4월 12일 유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좌승지가 입시할 때 행좌승지 박우원(朴祐源),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이곤수(李崑秀)가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의 망단자(望單子)에 대해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수망(首望)이 지금 곤임(閩任)²⁷⁶에 있으니, 만약에 인수 인계를 하여 올라올 때를 기다린다면 구 목사가 두 차례나 임기를 맡는 것이니, 다시 의망(擬望)하여 들이도록 의정부에 말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어서 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 나왔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의망.

276) 곤임(閩任): 병사(兵使)나 수사(水使)의 직임.

❖ 乾隆 五十年 乙巳 四月 十三日 壬辰

- 掌令崔景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4월 13일(임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최경악(崔景岳)의 계
- 장령 최경악(崔景岳)²⁷⁷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277) 최경악(1727~1804): 본관 전주(全州). 자 사양(士仰). 호 만성(晩醒). 1759년(영조 35) 문과 급제. 사헌부 장령, 충청도 수군절도사, 충청도 병마절도사 역임.

❖ 乾隆 五十年 乙巳 四月 十三日 壬辰

- 正言李敏采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4월 13일(임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민채(李敏采)의 계
- 정언 이민채(李敏采)²⁷⁸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278) 이민채(1740~?): 본관 한산(韓山). 자 치행(稚行). 1777년(정조 1) 문과 급제. 헌납, 승지, 양주 목사 역임.

❖ 乾隆 五十年 乙巳 四月 十八日 丁酉

- 有政. 吏批, 判書李命植, 參判李敬養進, 參議黃昇源式暇, 行都承旨尹蓍東進. ……
濟州牧使單尹得達.

❖ 정조 9년(1785) 을사년 4월 18일(정유)

- ☐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윤득규(尹得逵)를 단부(單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이명식(李命植), 참판 이경양(李敬養)이 나왔고, 참의 황승원은 식가(式暇)²⁷⁹이고, 행도승지 윤시동(尹蓍東)이 나왔다.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윤득규(尹得逵)를 단부(單付)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윤득규.

279) 식가(式暇): 관원에게 주는 규정된 휴가.

❖ 乾隆 五十年 乙巳 四月 十九日 戊戌

○ 乙巳四月十九日申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敦寧府事鄭存謙, 判中樞府事徐命善·李徽之, 左議政洪樂性, 判中樞府事李福源·金煜, 判中樞府事具善復, 行吏曹判書李命植, 仁陵君李在協, 行戶曹判書趙琰, 行副司直金履素, 判尹徐有寧, 行副司直李柱國, 兵曹判書趙時俊, 行副司直李昌運·徐有大, 執義洪周萬, 掌令崔景岳, 持平李崇運, 正言李敏采·白師謹, 校理林道浩, 修撰成種仁, 右副承旨洪仁浩, 假注書朴蓍壽, 事變〈假〉注書宋祥濬, 記注官金健修, 記事官李崑秀, 以次進伏訖. …… 周萬等, 進奏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周萬等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4월 19일(무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헌부의 계

○ 을사년 4월 19일 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가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돈녕부사 정존겸(鄭存謙), 판증추부사 서명선(徐命善)·이휘지(李徽之), 좌의정 홍낙성(洪樂性), 판증추부사 이복원(李福源)·김익(金煜), 판증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이조판서 이명식(李命植), 인능군 이재협(李在協), 행호조판서 조준(趙琰), 행부사직 김이소(金履素), 판윤 서유녕(徐有寧),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병조판서 조시준(趙時俊), 행부사직 이창운(李昌運)·서유대(徐有大), 집의 홍주만(洪周萬), 장령 최경악(崔景岳), 지평 이승운(李崇運), 정언 이민채(李敏采)·백사근(白師謹), 교리 임도호(林道浩), 수찬 성종인(成種仁), 우부승지 홍인호(洪仁浩), 가주서 박시수(朴蓍壽), 사변가주서 송상준(宋祥濬),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이곤수(李崑秀)가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홍주만 등이 나와 사헌부의 계사를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홍주만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四月 二十五日 甲辰

- 備忘記, 濟州牧使尹得達下直, 長弓一張 · 長箭一部 · 片箭一部 · 筒兒一箇賜給.

❖ 정조 9년(1785) 을사년 4월 25일(갑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윤득규(尹得逵)에게 장궁(長弓) 등을 사급(賜給)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윤득규(尹得逵)가 하직하니, 장궁(長弓) 1장, 장전(長箭) 1부, 편전(片箭) 1부, 통아(筒兒) 1개를 사급(賜給)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윤득규, 사급.

❖ 乾隆 五十年 乙巳 四月 二十六日 乙巳

- 以慶尙監司啓本罪人金亮基咸鏡道明川府定配事，傳于閔台燦曰，移配濟州事，回諭.

❖ 정조 9년(1785) 을사년 4월 26일(을사)

- ☐ 김양기(金亮基)를 제주(濟州)로 이배(移配)하도록 회유(回諭)하라고 전교함
- 경상감사의 계본에 죄인 김양기(金亮基)를 함경도 명천부에 정배(定配)한다는 일과 관련하여 민태혁(閔台燦)²⁸⁰⁾에게 전교하기를, “제주(濟州)로 이배(移配)하도록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량기, 제주, 정배.

280) 민태혁(1746~1806): 본관 여흥(驪興). 자 자삼(子三). 1779년(정조 3) 문과 급제. 전라도관찰사, 판의금부사, 우참찬 역임.

❖ 乾隆 五十年 乙巳 四月 二十八日 丁未

- 乙巳四月二十八日卯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洪樂性,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戶曹判書趙琰, 行副司直鄭昌聖, 漢城判尹徐有寧, 行副司直金履素, 兵曹判書趙時俊, 行副司直蔡弘履, 判敦寧金鍾秀, 校理申耆, 持平權中憲, 左承旨李祖承, 假注書金孝建, 事變假注書金載翼, 記注官金健修, 記事官金鳳顯, 以次進伏訖. …… 中憲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中憲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4월 28일(정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권중헌(權中憲)의 계
- 을사년 4월 28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좌의정 홍낙성(洪樂性),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호조판서 조준(趙琰), 행부사직 정창성(鄭昌聖), 한성판윤 서유녕(徐有寧), 행부사직 김이소(金履素), 병조판서 조시준(趙時俊), 행부사직 채홍리(蔡弘履), 판돈녕 김종수(金鍾秀), 교리 신기(申耆), 지평 권중헌(權中憲), 좌승지 이조승(李祖承), 가주서 김효건(金孝建), 사변가주서 김재익(金載翼),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권중헌²⁸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권중헌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아뢰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281) 권중헌(1746~?): 본관 안동(安東).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 乾隆 五十年 乙巳 五月 一日 己酉

- 乙巳五月初一日辰時，上御誠正閣。都承旨與領敦寧入侍時，領敦寧鄭存謙，行都承旨尹蓍東，假注書韓興裕，記事官金鳳顯·李崑秀，諸臣，以次進伏訖。…… 蓍東曰，臣於院中，見濟州人梁擎天稱以上策，而投呈一紙於前月謁聖試券中者，語極荒雜，間多干恩，島俗本來癡頑，妄恃朝家軫恤之恩，輒有格外猥越之事，此而不懲，此等之類，必將接迹而起，此人又或有更犯罪過之慮。令該曹照法嚴處，若以無足深責，不施當律，則當令押送該牧，決罰示懲，且以曉諭島中，使之相與警勵戢畏，後勿犯科，恐爲得宜，惶恐敢達。上曰，依爲之。下送本牧決處可也。【出學條】 蓍東曰，臣待罪廚院，又因濟州事而有仰達者矣。濟州柑橘，實爲國中之珍果，厥包來庭遠傲荊楊之錫，貢果凡十二種，而柚子·柑子·山橘·青橘之外，八種則味極馨爽矣。而領來之漢，每多寧頑，候風遷就，固是公罪，而渡海之後，中路逗留，甚至於要得襦衣，挨到極寒，故每致凍傷，全失本味，至煩稟啓，充數以入，而領納者則輒免罪罰，故習而爲常，漫不知敬，貢獻事體，何等至重，而屑越如此，寧不寒心，臣以爲分付道臣及守臣，渡海之後，各其地方官，無論康津·海南，計其日字，定將校罔夜押領以納，俾免路上遷就從中作奸之弊，恐爲得宜，敢此仰達。上曰，自該院往復道臣，從便處置，可也。【出學條】 …….

❖ 정조 9년(1785) 을사년 5월 1일(기유)

- 알성시(謁聖試)의 시권(試券)에 은혜를 범한 말을 한 제주인(濟州人) 양경천(梁擎天)을 징계할 것과 제주(濟州)의 감귤(柑橘)을 운반하여 가지고 오는 자들의 농간을 막기 위해 강진(康津)이나 해남(海南)의 지방관이 장교를 정하여 밤을 새워 운반하여 바치게 할 것을 요청하는 행도승지 윤시동(尹蓍東)의 계
- 을사년 5월 1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도승지와 영돈녕이 입시할 때 영돈녕 정존겸(鄭存謙), 행도승지 윤시동(尹蓍東), 가주서 한흥유(韓興裕),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이곤수(李崑秀) 등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나와 옆드렸다. <중략> 윤시동이 아뢰기를, “신이 승정원에서 제주인(濟州人) 양경천(梁擎天)이 상책(上策)으로 핑계대어 지난달 알성시(謁聖試)의 시권(試券) 가운데 들어 바친 종이 한 장을 보았는데, 말이 매우 황잡(荒雜)하고, 사이에 은혜를 범한 것이 많았습니다. 섬의 풍속이 본래 어리석고 미련합니다만 망령되게 조정에서 가엽게 여기는 은혜를 믿고 격(格)에서 벗어나서 외람된 일을 하였으니, 이를 징

계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부류가 반드시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필시 이 사람이 또 혹여 다시 죄과를 범할 염려가 있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법에 비추어 엄히 처리하되, 만약에 깊이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여 해당 형률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의당 해당 목(牧)으로 압송하여 형벌을 결정하여 징계함을 보이고, 또한 섬 안을 효유(曉諭)하여 서로 경계하고 면려하여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본목(本牧)으로 내려 보내어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윤시동이 아뢰기를, “신이 사옹원에 직임을 맡고 있는데, 또한 제주의 일로 인하여 아뢴 것이 있습니다. 제주(濟州)의 감귤(柑橘)은 실로 나라 안의 진과(珍果)로, 그것을 싸서 조정에 바치는 것은 멀리 형주(荊州)와 양주(楊州)가 바치는 것을 모방한 것으로 공과(貢果)는 무릇 12종으로 유자(柚子)·감자(柑子)·산귤(山橘)·청귤(靑橘) 외에 8종은 맛이 매우 향기롭고 상큼합니다. 그런데 운반하여 가지고 오는 자들은 매번 모질고 완악한 자가 많아서 후풍(候風)에 기일이 지체되는 것은 실로 공죄(公罪)인데, 바다를 건넌 후에 중로(中路)에서 머물고, 심지어는 저고리를 얻기 위해 아주 추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문에 매번 공과가 동상을 당하여 모두가 본래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번거롭게 품계(稟啓)하여 수를 채워서 들이는데, 운반하고 와서 바치는 자들은 문득 형벌을 면합니다. 때문에 습관이 되어 일상적이 되고, 만연하게 공경함을 알지 못합니다. 공헌(貢獻)하는 일이 체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설월(屑越)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은 관찰사와 수신(守臣)에게 분부하여 바다를 건넌 뒤에 각기 지방관이 강진(康津)이나 해남(海南)을 막론하고 그 날짜를 헤아려서 장교를 정하여 밤을 새워 운반하여 바치게 하여 길에서 지체하여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폐단을 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감히 이렇게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해당 원(院)에서 관찰사와 주고받으며 편의에 따라 처치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윤시동, 양경천, 징계, 감귤, 운반, 폐단.

❖ 乾隆 五十年 乙巳 五月 二日 庚戌

- 持平申馥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5월 2일(경술)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신복(申馥)의 계
- 지평 신복(申馥)²⁸²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282) 신복(?~?): 본관 평산(平山). 자 영백(英伯).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 乾隆 五十年 乙巳 五月 二日 庚戌

- 獻納李延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5월 2일(경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이연급(李延伋)의 계
- 헌납 이연급(李延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五月 十一日 己未

- 以慶尙監司狀啓，罪人金亮基濟州牧移配事，傳于呂善亨曰，嚴飭將差，斯速捉來移配事，令刑曹星火分付.

❖ 정조 9년(1785) 을사년 5월 11일(기미)

- 김양기(金亮基)를 제주목(濟州牧)으로 속히 이배(移配)하도록 형조에 분부하라는 전교
- 경상감사의 장계에 죄인 김양기(金亮基)를 제주목(濟州牧)으로 이배한다고 한 일과 관련하여 여선형(呂善亨)에게 전교하기를, “엄히 장차(將差)를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속히 잡아와서 이배(移配)하도록 형조로 하여금 급히 분부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양기, 제주목, 이배.

❖ 乾隆 五十年 乙巳 五月 十一日 己未

- 司僕寺啓目, 粘大靜前縣監朴載淵馬籍, 元摠八百八匹內, 縮至九十二匹, 則雖已遞歸, 依事目勘罪, 在所不已, 令該府拿問處之. 濟州判官金再郁, 旌義前縣監李長益, 時縣監李甲龍等, 其所欠縮, 雖未及事目之數, 而亦甚夥然, 不可無飭, 姑先推考, 當該守臣, 亦難免不能檢飭之責. 濟州前牧使嚴思晚, 推考警責, 何如? 判付啓, 馬政所關, 如何? 況昨年貢駒, 既命停捧, 理當比前倍加藩息, 而觀此回啓, 該牧事極爲駭然, 牧使門備事, 依回啓, 施行爲旆, 該縣監朴載淵拿問, 加等勘律, 他餘條件, 依回啓, 施行爲良如教.

❖ 정조 9년(1785) 을사년 5월 11일(기미)

- 원총수(元摠數)보다 말의 수가 줄어든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재연(朴載淵) 등의 죄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의 계목(啓目)에, “첨부한 전 대정현감 박재연(朴載淵)의 마적(馬籍)에 원총수(元摠數) 808필 안에 92필이 줄었습니다. 비록 이미 체귀(遞歸)하였다 하더라도 사목(事目)대로 죄주는 것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신문하여 처리하게 하십시오.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재욱(金再郁),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이장익(李長益), 현 정의현감 이갑룡(李甲龍)은 모자란 것이 비록 사목의 수효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또한 심히 많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먼저 추고(推考)하십시오. 해당 수령 또한 검칙(檢飭)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晚)을 추고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마정(馬政)이 관계된 바가 어떠한 것인가? 더군다나 작년 공마(貢馬)는 정봉(停捧)을 명하였으니, 이치상 당연히 전에 비하여 번식이 배가 되었을 것이다. 이 회계(回啓)를 보건대 해당 목(牧)의 일이 매우 놀랍다. 목사를 문비(問備)²⁸³하는 일을 회계대로 시행하며 해당 현감 박재연을 잡아다 신문하여 무거운 등급으로 형률을 정하고, 기타 나머지 조건은 회계대로 시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마적, 대정현감, 박재연, 죄.

283) 문비(問備): 죄과가 있는 벼슬아치에 대하여 사헌부의 관원이 서면으로 심문하는 말에 답변하는 일.

❖ 乾隆 五十年 乙巳 五月 十二日 庚申

- 以濟州牧使啓本, 金潤王上言內辭緣查啓事, 傳于柳誼曰, 今日以草記回啓.

❖ 정조 9년(1785) 을사년 5월 12일(경신)

- ☐ 김윤옥(金潤王)이 상언(上言)에서 말한 내용을 조사하여 초기(草記)로 회계(回啓)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계본에 김윤옥(金潤王)이 상언(上言)에서 말한 내용을 조사하여 아뢰도록 한 일과 관련하여 유의(柳誼)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초기(草記)로 회계(回啓)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윤옥, 상언, 초기, 회계.

❖ 乾隆 五十年 乙巳 五月 十二日 庚申

- 柳誼, 以備邊司言啓曰, 因坡州前牧使柳誼所啓, 本司啓目判付, 本牧, 卽畿輔之扶風也. 不設防營則已, 已設之後, 其所差遣, 必當十分審擇, 況處在孔道, 冠蓋如織, 須使地望稍重者坐鎮之, 可責彈壓之效, 回啓中所引西北防營云云. 雖似然矣, 朝家則以爲, 本牧事面尤有重焉云爾, 然於武弁官方, 或無掣肘之端乎? 卿等就議大臣, 仍與西銓長 · 三營將臣爛商, 明日草記稟處事, 命下矣. 卽爲就議於大臣, 仍與兵曹判書及三營將臣, 往復相議, 則左議政洪樂性, 以爲坡州雖是關防, 與廣州 · 水原, 殺有間焉. 不必廟薦, 雖自銓曹差送, 若果得人, 則亦何遜於廟薦, 又欲稍尊官秩則防禦使, 比於他守令, 已爲稍尊, 而今若以曾經閩帥差送, 雖似尊重, 視他防禦使, 不無官制斑駁之嫌, 申飭銓曹, 各別擇差, 恐合事宜云. 訓練大將具善復, 以爲水原則控扼三南, 軍數八千, 素稱外都監, 廟薦, 良以此也. 坡州雖兩西要衝, 制置與長湍時無異, 且曾經閩任之人, 不欲着意居官, 自銓曹各別擇人, 隨品差除似好云, 兵曹判書趙時俊, 以爲昨於粘啓中, 已有所陳論云. 御營大將李柱國, 禁衛大將徐有大, 以爲當初以亞將差送, 而因其厭避, 仍爲變通, 今又以亞將差除, 則非但難保其無弊. 且曾經亞將, 極爲苟簡, 今若稍重官秩, 復作廟薦, 以曾經閩帥之人擇差, 如濟州牧使之例則似好云. 諸臣之議略有參差, 而大抵遴簡之政, 雖不在於廟刻銓擬之別, 剴理之才, 亦不係於官秩高下之間, 而若欲藉其威重, 俾有彈壓, 則稍重其薦制, 又取其地望, 以示差異於西北防營之例, 亦足爲重畿輔之道, 至於武弁之失一履歷窠, 乃是細故, 不必爲拘, 亞將差送, 既有已試之弊, 今若以曾經閩帥以上人, 自廟堂薦擬以送, 則似爲得宜, 而大臣及訓練大將之議如此, 上裁, 何如? 傳曰, 諸議歧貳, 難以適從, 姑且仍舊貫, 更商好道理, 可也.

❖ 정조 9년(1785) 을사년 5월 12일(경신)

- 파주목(坡州牧)에 설치한 방영(防營)의 책임자를 차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사례와 같이 곤수(閩帥)를 지낸 자를 차출하여 보내자는 어영대장 · 금위대장의 의견 등을 아뢰고 임금의 재가를 청하는 비변사의 초기
- 유의(柳誼)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전 파주목사 유의가 아뢴 바로 인하여 본사(本司)의 계목(啓目)에 판부(判付)하기를, ‘본목(本牧)은 곧 기보(畿輔)²⁸⁴의

284) 기보(畿輔): 기내(畿內)와 같은 말로, 제왕이 직접 통치하는 사방 천 리의 근기(近畿) 지방을 이룸. 여기서는 경기(京畿) 지역을 일컫음.

부풍(扶風)²⁸⁵이다. 방영(防營)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그만이지만 이미 설치한 후에는 그 차견(差遣)하는 바를 반드시 십분 살펴 가려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큰 길가에 처해 있어 높은 벼슬아치들의 행차가 이어지니 지위와 명망이 조금 중한 자로 하여금 주재하여 지키게 해야 탄압의 효과를 책임지울 수 있을 것이다. 회계(回啓) 중에 서북방영(西北防營)을 인용하여 운운한 것은 비록 그럴듯 하지만 조정에서는 본목의 사체(事體)가 더욱 중함이 있다고 할 뿐이다. 하지만 무관의 관방(官方)²⁸⁶을 혹 방해하는 단서가 없지는 않겠는가? 경들은 대신(大臣)에게 나아가 의논하고, 이어서 병조판서와 삼영(三營)의 장신(將臣)과 충분히 의논하여 내일 초기(草記)로 품처(稟處)하도록 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즉시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고, 이어서 병조판서 및 삼영장신과 더불어 오고가며 상의한 즉 좌의정 홍낙성(洪樂性)은, ‘파주가 비록 관방(關防)이기는 하지만 광주(廣州)·수원(水原)과는 심히 차이가 있으니 의정부에서 추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전조(銓曹)에서 차출하여 보내더라도 만약 적임자를 얻는다면 또한 어찌 의정부에서 추천하는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또한 관질(官秩)을 조금 높이고자 한다면 방어사(防禦使)가 다른 수령에 비해 이미 조금 높은데, 지금 만약 일찍이 곤수(閫帥)를 지낸 자로 차출하여 보낸다면, 비록 높이는 것 같지만 다른 방어사와 비교하여 관제(官制)가 뒤죽박죽이라는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 전조(銓曹)를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각별히 가려 차정하는 것이 일에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훈련대장 구선복(具善復)은, ‘수원은 삼남(三南)을 휘어잡아 통제하면서 군사의 수가 8,000명으로, 평소 외도감(外都監)으로 일컬어지니, 의정부에서 추천하는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파주는 비록 양서(兩西)의 요충지이기는 하지만 제도는 장단(長端)과 현재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일찍이 곤임(閫任)을 지낸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관직에 있고자 하지 않으니 전조(銓曹)에서 각별히 사람을 가려 품계에 따라 제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병조판서 조시준(趙時俊)은, ‘어제 점계(粘啓)²⁸⁷에 이미 아뢰어 논한 바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영대장 이주국(李柱國)과 금위대장 서유대(徐有大)는, ‘당초에는 아장(亞將)²⁸⁸을 차출하여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혐(厭避)으로 인하여 그대로

285) 부풍(扶風): 한(漢)나라 때 도성인 장안 부근에 둔 행정 구역인 경조(京兆), 풍익(馮翊), 부풍(扶風) 중의 하나. 여기서는 한양 인근의 행정 구역을 뜻함.

286) 관방(官方): 관리를 임명하는 것.

287) 점계(粘啓): 증거나 참고될 만한 문서를 덧붙여 아뢰는 것.

288) 아장(亞將): 포도대장(捕盜大將)·용호별장(龍虎別將)·훈련도감중군(訓練都監中軍)·금위중군(禁衛中軍)·어영중군(御營中軍)을 통칭하는 말.

변통(變通)하였는데, 지금 또 아장으로 임명한다면 폐단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아장을 지낸 사람은 매우 구차합니다. 지금 만약 관질을 조금 높이고 다시 의정부에서 추천하게 하여 일찍이 곤수를 지낸 자를 가려 차출하는 것을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사례와 같게 한다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신하의 의견이 대략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저 인재를 선발하는 정사가 비록 묘첨(廟薦)과 전의(銓擬)의 구별에 있지 않고, 다스리는 재주가 또한 관질의 고하와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그 위중(威重)에 의뢰하여 탄압함이 있게 하고자 한다면 그 천제(薦制)를 조금 무겁게 하고, 또한 그 지위와 명망을 취하여 서북방영의 사례에 대해 차이를 보이는 것 또한 족히 기보(畿輔)를 중히 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무관이 하나의 이력과(履歷案)을 잃는 것은 작은 일이니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장을 차출하여 보내는 것은 이미 시행의 폐단이 있었으니 지금 만약 곤수 경력 이상인 사람으로 의정부에서 추천하여 보낸다면 마땅할 듯합니다. 대신과 훈련대장의 뜻이 이와 같으니 임금께서 재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견이 분분하여 따르기 어려우니 우선은 예전대로 그대로 두고 다시 좋은 방법을 상의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방어사, 제주목사, 곤수, 차출.

❖ 乾隆 五十年 乙巳 五月 十二日 庚申

○ 柳誼，以備邊司言啓曰，頃因金潤玉嫡庶辨別事上言，自刑曹草記行會矣。卽見濟州前牧使嚴思晚啓本，則以爲，金潤玉之爲父訟冤，專出於以嫡爲庶之伸暴，而潤玉之祖瑞鏡，初娶高氏，謂有可去之罪，呈官得題，改娶文氏，既有婚狀則文氏子孫，自處正嫡者，不是異事，而文氏入來之後，產得一女於高氏，瑞鏡父母之喪，高氏依例服喪，則亦不可謂黜妻，而高氏喪出之時，文氏所生子鎮兌，以前母喪・黜母喪之說，訴于官家，則官家許以黜母之喪，至於屢經官辨矣。丙申御史入島時，考其立旨，明是僞造，卽地燒火，鎮兌則刑推，而以其婚狀與帳籍見之，則文氏亦爲瑞鏡妻，可知矣。既承查啓之命，則固當指一論稟，而莫重倫紀，有非守土之臣，所可擅斷者。請令廟堂稟處，而有今日以草記回啓之命矣。黜妻改娶，國法之所不許，則瑞鏡之呈官得題者，莫曉其委折矣。以違法之官題，豈可作憑後之左契乎？當初高氏之被黜當歸，瑞鏡之私自告絕，而況既黜改娶，旋又好合，至於產女，又使服其舅姑之喪，則其在高氏，不可以被黜論也。一室之內，率畜兩妻者是瑞鏡之罪而及當高氏之喪，瑞鏡之改娶所生子鎮兌，訴官而服黜母之服，其父之妻，卽渠之母也。始雖黜之，末乃還畜，則謂之前母，可也。何敢待以黜母乎？海外荒僻，固難責以禮節，而此等處，亦不可置而勿論，鎮兌訴官短喪之罪，使之嚴治，而高・文兩女之於瑞鏡，俱有婚狀，俱以妻載之帳籍，可謂此亦妻彼亦妻，毋論前後，而妻之所生，當爲嫡子，鎮兌庶名，特爲伸理之意，分付本牧，何如？傳曰，逃矣絕域，氓俗雖雖[蚩]，有妻又娶妻，在法當禁，況呈官黜妻，亦得許題，該牧之不徒不禁，乃反許施，既非常憲，又關後弊，當該牧使，分付該牧使，使卽指名現告，待報來自本司草記論罪，高女則見黜而還畜，此亦妻也。文女則待聘而往嫁，此亦妻也。謂之前妻・後妻則尙然，稱以黜母・庶母則不可。且國朝無改嫁之制，前母之服，實係變禮，如渠不識禮者，難責處變合禮，然倫常之際，風化所關，務宜申複曉譬，俾島俗知禮防之至重，文女子金鎮兌，自可爲嫡產，而失禮持服之罪，令該牧參量懲治，此蓋不教而刑也。疑禮最難解，禮家之訟，無已時，若非參經考據之資，又將於何考乎？特領疑禮問解・禮疑類輯各一帙，令本牧藏于鄉校，使民士服習，咸識朝家扶名教牖[牖]迷蒙之意，可也。

❖ 정조 9년(1785) 을사년 5월 12일(경신)

- ☐ 김윤옥(金潤玉)이 적서(嫡庶)를 판별하는 일로 상언(上言)한 일의 처리에 관한 비변사의 초기

○ 유의(柳誼)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지난번 김윤옥(金潤玉)이 적서(嫡庶)를 판별하는 일로 상언(上言)한 일로 인하여 형조에서 초기(草記)하여 행회(行會)²⁸⁹⁾ 하였습니다. 방금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의 계본(啓本)을 보니, ‘김윤옥이 아버를 위하여 원통함을 호소한 것은 오로지 적자(嫡子)를 서자(庶子)로 한 것을 하소연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김윤옥의 조부 김서경(金瑞鏡)은 처음에 고씨(高氏)에게 장가들었는데, 내쫓을만한 죄가 있다고 하여 관아에 소장(訴狀)을 내어 제사(題辭)를 받았고, 문씨(文氏)에게 다시 장가들었습니다. 이미 혼장(婚狀)이 있으면 문씨의 자손이 정적(正嫡)을 자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씨가 들어온 후에 고씨에게서 딸 하나를 얻었고, 김서경의 부모의 상에 고씨가 규례대로 복상을 하였으니 또한 출처(黜妻)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씨의 상이 낮을 때 문씨의 소생 김진태(金鎭兌)가 전모(前母)²⁹⁰⁾의 상과 출모(黜母)의 상이라는 설(說)을 가지고 관가에 호소하니 관가는 출모상으로 허락하여 여러 차례 관가에서 변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병신년에 어사가 섬에 들어갔을 때 그 입지(立旨)를 살펴보고 이것이 위조된 것임을 밝혀 즉석에서 불태웠고, 김진태를 형추(刑推)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혼장과 장적(帳籍)으로 본다면 문씨 또한 김서경의 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하여 아뢰라는 명을 받들었으니 실로 마땅히 하나를 지적하여 여쭙어야 하겠지만 막중한 윤기(倫紀)를 지방의 수령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의금부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고, 오늘 초기로 회계(回啓)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처를 내치고 다시 장가드는 것은 국법이 허락하지 않는 바인데 김서경이 관아에 소장을 들여 제사(題辭)를 받았다는 것은 그 곡절을 알 수 없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관가의 제사를 어찌 훗날의 증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고씨가 내침을 당하여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고, 김서경이 사사로이 스스로 끝났음을 고하였으면서 더군다나 처를 내치고 장가를 다시 들었다가 곧바로 다시 좋아하여 딸을 낳고 또 그 시부모의 상에 복을 입게 하였으니 고씨의 경우는 내침을 당한 것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한 집안에 두 처를 거느린 것은 김서경의 죄인데, 고씨의 상을 당하여 김서경이 다시 장가들어 낳은 아들 김진태가 관아에 호소하여 내친 어머니의 복을 입었으니, 그 아버지의 처는 곧 그의 어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록 내쳐졌다 하더라도 끝에는 곧 도로 들어와서 부양을

289) 행회(行會): 각 관아의 관장(官長)이 조정의 새로운 명령 내용을 관아에 속한 아랫사람들에게 통지하는 것을 뜻함.

290) 전모(前母): 후취(後娶)의 자식이 그 아버지의 전취(前娶)를 이르는 말.

하였다면 전모(前母)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감히 출모(黜母)로 대우하는 것입니까? 바다 밖의 궁벽한 곳이라서 실로 예절을 가지고 나무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또한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김진태가 관아에 호소하여 단상(短喪)²⁹¹한 죄를 엄히 다스리게 하고, 고씨와 문씨 두 여인은 김서경에게 모두 혼장(婚狀)이 있고 모두 처로써 장적에 실려 있으니 이 또한 처이고 저 또한 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후를 막론하여 처의 소생은 마땅히 적자가 되어야 합니다. 김진태의 서명(庶名)을 특별히 신리(伸理)²⁹²하라는 뜻으로 본목(本牧)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²⁹³,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백성들의 풍속이 비록 어리석다 하더라도 처가 있으면서 또 처를 취했으니 법으로 볼 때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관아에 호소하여 처를 내치고 또한 허가하는 제사를 받았으니, 해당 목사가 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요구하는 대로 허락해 주었다. 떳떳한 법이 아니고 또한 훗날의 폐단에 관계된다. 당시의 목사를 해당 목사에게 분부하여 즉시 이름을 지목하여 알리도록 하고, 보고해 오기를 기다려 본사(本司)에서 초기(草記)하여 논죄하라. 고씨는 내침을 당했지만 도로 부양하였으니 이 또한 처이다. 문씨는 병례(聘禮)를 기다려 시집을 갔으니 이 또한 처이다. 전처, 후처로 일컫는 것은 오히려 그렇다 하더라도 출모(黜母), 서모(庶母)로 칭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나라에는 개가(改嫁)하는 제도가 없다. 전모(前母)의 복(服)은 실로 변례(變禮)에 관계된다. 그가 예를 모르는 자라면 변례에 처하여 예에 합당했는가를 꾸짖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윤상(倫常)의 경우는 풍속의 교화와 관계된 것으로 마땅히 거듭 효유(曉諭)하여 섬의 풍속으로 하여금 예법으로써 그릇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지극히 중함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다. 문씨의 아들 김진태가 스스로 적자의 소생이 될 만한데도 예를 잃고 상중에 상복을 입은 죄를 해당 목사로 하여금 참작하여 징계하여 다스리게 하는 것은 미리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의례(疑禮)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가(禮家)의 송사가 그칠 때가 없으니, 만약에 경서에서 근거를 참고하지 않는다면 또한 무엇을 참고할 것인가? 특별히 《의례문해(疑禮問解)》와 《예의유집(禮疑類輯)》 각 1절을 내려서 본목으로 하여금 향교에 소장하게 하여 사민(士民)으

291) 단상(短喪): 거상(居喪)의 기간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는 이일역월제(以日易月制)로, 상기를 짧게 마치는 것.

292) 신리(伸理):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펴서 다스림.

293) 이상은 《정조실록》 권20, 정조 9년 5월 12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로 하여금 익혀 모두가 조정이 명교(名敎)를 부식(扶植)하고 어리석음을 인도하는 뜻을 알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윤옥, 적서, 상언, 출모, 서모.

❖ 乾隆 五十年 乙巳 五月 十二日 庚申

- 柳誼, 以義禁府言啓曰, 因濟州前牧使嚴思晩啓本, 司僕寺覆啓判付內, 該縣監朴載淵拿問, 加等減[勘]律事, 命下矣. 大靜前縣監朴載淵, 既已身故云. 勿論, 何如? 傳曰, 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5월 12일(경신)

-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재연(朴載淵)에 대한 죄를 논하지 말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초기
- 유의(柳誼)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의 계본으로 인하여 사복시의 복계(覆啓)에 대한 판부(判付)에서 해당 현감 박재연(朴載淵)을 잡아다 신문하여 무거운 등급으로 형률을 정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재연이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박재연.

❖ 乾隆 五十年 乙巳 五月 十二日 庚申

- 賑恤廳啓目, 粘濟州判官金再郁, 旌義縣監李甲龍等段, 拮据辦穀, 雖不滿百, 奔走效力, 亦係職分, 而島中薄廩, 莫於陸地, 論其勢勩, 有不可全然泯沒者, 通政寺奴高取善段, 不憚乘危, 出陸貿米, 不惜家產, 逐戶恤貧, 通計米租合爲二百餘石之多, 出人高義, 有足嘉尙, 竝令該曹稟處爲白乎旆, 米租及牟麥三分二, 涼藿換貿三分一, 留作土還事, 竝依狀請施行, 而涼藿段, 申飭諸邑, 趁限出送, 俾無如前遲滯, 便致消融[融]之弊事, 分付該牧使處, 何如? 判付啓, 依回啓, 施行爲旆, 判官金再郁, 旌義縣監李甲龍等段, 殘廩自備, 若是夥然, 極爲可嘉, 合施褒獎, 再郁準職除授, 甲龍四品職除授竝待準瓜, 內外職中調用, 銓曹看作例教, 或令無故作散則其時銓堂, 自政院捧現告以入事, 使之書付院壁爲旆, 通政高取善段, 涉海貿米, 傾貲濟貧, 計包過屢百餘數, 全活又不知幾人, 陸民富戶, 尙亦難辦, 是豈荒陬儉嗇之俗, 所能容易措置者, 此等人, 必須別般施賞, 可以聳動島中, 免賤加資, 仍令援例陞遷事, 分付道臣牧使處爲良如教.

❖ 정조 9년(1785) 을사년 5월 12일(경신)

- 진흥청의 계목(啓目)에 대해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재욱(金再郁)과 정의현감(旌義縣監) 이갑룡(李甲龍) 및 시노(寺奴) 고취선(高取善)을 포상하라는 전교
- 진흥청의 계목(啓目)에, “첨부한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재욱(金再郁)과 정의현감(旌義縣監) 이갑룡(李甲龍) 등은 부지런히 마련한 곡식이 비록 백(百)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분주하게 힘쓴 것도 직분에 관계되는 것이고, 섬 안의 박한 녹봉은 육지에 비할 바가 아니니 그 형세의 수고로움을 논하자면 온전히 없어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통정(通政) 시노(寺奴) 고취선(高取善)은 위험을 무릎쓰고 육지로 나가 쌀을 사들이는 것에 가산을 아끼지 않았고, 집집마다 빈민을 구제하였는데 미조(米租)를 통틀어 계산하면 200여 석이나 많습니다. 두드러진 높은 의리는 가상히 여길 만합니다. 모두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십시오. 미조(米租) 및 모맥(牟麥) 3분의 2와 양곽(涼藿)으로 맞바꾼 3분의 1을 토환(土還)으로 삼게 하는 일은 모두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되, 양곽은 제읍(諸邑)에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기한 내에 내보내어 전에 처럼 지체되어 다 써 없애버리는 폐단에 이르지 않도록 해당 목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회계(回啓)대로 시행하라. 판관 김재욱과 정

의현감 이갑룡 등은 보잘 것 없는 녹봉에 스스로 갚춘 것이 이와 같이 많으니 매우 가상하다. 모두 포상을 시행하되, 김재육은 품계에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고, 이갑룡은 4품직에 제수하여 모두 임기가 차기를 기다렸다가 내외직 중에 조용(調用)하라. 전조(銓曹)에서 예교(例敎)로 간주하여 혹 무고작산(無故作散)²⁹⁴하게 한다면 그때의 전조의 당상관은 승정원에서 현고(現告)를 받아 들이도록 이를 승정원의 벽에 써붙이도록 하라. 통정 고취선은 바다를 건너 쌀을 사서 재물을 털어 가난한 자를 구제함에 포수(包數)를 계산하면 수백 여 포가 되고, 온전히 살아난 자가 또한 몇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육지의 부호도 오히려 또한 마련하기 어려운데 이 어찌 변방의 검소한 풍속이 능히 쉽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별도로 시상하여야 섬 안을 용동(聳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면천(免賤)하여 가자(加資)하고, 이어서 전례를 끌어다 승천(陞遷)²⁹⁵하도록 관찰사와 목사에게 분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김재육, 정의현감, 이갑룡, 고취선, 포상.

294) 무고작산(無故作散): 사고 없이 현직을 해임당하고 산관(散官)에 임명됨.

295) 승천(陞遷): 승직(陞職). 직위가 오름. 또는 직위를 올림.

❖ 乾隆 五十年 乙巳 五月 十二日 庚申

- 乙巳五月十二日未時，上御重熙堂。吏房承旨入侍時，右承旨趙興鎮，假注書李敬五，記事官金鳳顯·尹行任，以次進伏訖。……上命書傳教曰，觀此耽羅狀本，賙救已畢，民事就緒，誠萬萬幸甚，若別遣御史，則還朝後，例當加資，昨年特命牧使替行者，專爲島民，牧使誠心救濟，島民得免填壑，豈靳有例之賞典，濟州牧使嚴思晚加資，今日政下批。仍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9년(1785) 을사년 5월 12일(경신)

- 진흙을 잘 마친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을 가자하라는 전교
- 을사년 5월 12일 미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이방승지가 입시할 때 우승지 조흥진(趙興鎭),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이 탐라의 장본(狀本)을 보건대 진흙이 이미 끝났고, 민사(民事)는 실마라기 잡혔다. 실로 심히 다행이다. 만약에 어사를 별도로 파견했다면 조정에 돌아온 후에 으레 가자(加資)해야 할 것이다. 작년에 목사에게 특별히 명하여 대신 행하게 한 것은 오직 섬 백성들을 위해서였다. 목사가 성심으로 구제하여 섬 백성들이 구렁에 매워지는 것을 면했으니 어찌 으레 있는 상전(賞典)을 아낄 것인가?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을 가자하여 오늘 정사(政事)에 하비(下批)²⁹⁶⁾ 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²⁹⁷⁾ 이어서 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 나왔다.

△ 주제어: 진흙, 제주목사, 엄사만, 가자.

296) 하비(下批): 삼망(三望)을 갖추지 않고 한 사람만 적어 올려서 임금이 임명하던 일.

297) 이상은 《정조실록》 권20, 정조 9년 5월 12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年 乙巳 五月 二十五日 癸酉

○ 大司憲蔡弘履，行大司諫南玄老，司諫李思祚，持平閔昌燾，正言李東稷·李晴避嫌曰，…… 持平閔昌燾啓曰，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爛熳和通之狀，渠既明白納招，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今此酌處之命，雖出於好生之德意，而三尺至嚴，不可島縣爲奴而止，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聖中之罪，可勝誅哉？包藏禍心，主張凶論，敢托不敢言之地，倡出不忍聞之說，作爲窩主，慫恿徒黨，故徐有臣·朴宗甲·李義駿輩，從而和之，交口讚引。噫嘻，痛矣。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而始事[仕]於殿下，欲展蘊袍[蘊抱]之說，尤極萬萬凶慘，且莫重義理，倚托怪鬼輩，欲售疑亂之計者，究厥心腸，與德師·載翰，一串貫來者也。不仕於先大王之逆臣，先大王之逆臣，即殿下之逆臣，豈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而居謫以來，小不畏縮，乃敢聚會學徒，通接官隸，至登繡啓，大臣筵白，雖即移配絕島，而經年爭執，尙追王章，窮凶之節，無以嚴覈，亂賊之徒，無所懲畏，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夫正王法。…… 正言李晴啓曰，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以么麼宦寺，交結士夫，終爲凶賊之根柢，而況其窮凶極惡之語，敢欲潛售亂逆之心，究厥罪惡，萬戮猶輕，情節未盡究覈，輿情莫不憤惋，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 噫嘻，痛矣。聖中之罪，可勝誅哉？倡邪說而作爲窩主，結凶徒而交相吹噓，暗地綢繆，設計妖凶，至於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而始仕於殿下，欲展蘊袍之說，尤極萬萬凶慘，究厥心腸，實與德師·載翰輩，一串貫來者也。情迹既露，負犯至重，決不可一刻容貸，而況渠居謫以來，不思畏縮，乃敢聚會學徒，通接官隸，至登繡啓，大臣筵白，雖即移配絕島，而久追王章，輿情益激，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亟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夫正王法。…… 答院曰，不允。第十五件事，第十六件事，亟停勿煩。

❖ 정조 9년(1785) 을사년 5월 25일(계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민창혁(閔昌燾) 등의 계

○ 대사헌 채홍리(蔡弘履)，행대사간 남현로(南玄老)，사간 이사조(李思祚)，지평 민창혁(閔昌燾)，정언 이동직(李東稷)·이청(李晴)이 피혐(避嫌)하면서 아뢰기를，〈중략〉 지평 민창혁(閔昌燾)²⁹⁸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298) 민창혁(?~?): 본관 여흥(驪興). 승지, 대사간, 병조참판 역임.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별할 수 있겠습니까? 화심(禍心)을 품고 흉론(凶論)을 주장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의탁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앞장서서 내어 와주(窩主)가 되어 도당(徒黨)을 종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유신(徐有臣)·박종갑(朴宗甲)·이의준(李義駿)의 무리가 따라서 화답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선대왕(先大王) 때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전하에게 벼슬하여 재주와 포부를 펼치려 했다는 말은 더욱더 흉악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한 막중한 의리를 괴귀(怪鬼)의 무리에게 맡겨 의심하여 소란을 피우려는 계책을 부리고자 한 것은 그 심보를 따져보면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과 더불어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선대왕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로 바로 선대왕의 역신(逆臣)이고, 선대왕의 역신은 바로 전하의 역신인데, 어찌 잠시라도 천지 사이에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가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해를 넘겨 쟁집(爭執)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법을 면하고 있으니,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을 엄히 조사할 수 없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정언 이청(李晴)이 아뢰기를, “대정현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조재한의 무리와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는 거적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를 모으고 관례와 통접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에 이배되었지만, 오래도록 국법을 피하고 있어 여론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五月 二十九日 丁丑

- 大司憲蔡弘履, 執義洪周萬,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5월 29일(정축)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등의 계
- 대사헌 채홍리(蔡弘履), 집의 홍주만(洪周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五月 二十九日 丁丑

- 行大司諫南玄老, 正言李東稷·李晴,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5월 29일(정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대사간 남현로(南玄老) 등의 계
- 행대사간 남현로(南玄老), 정언 이동직(李東稷)²⁹⁹·이청(李晴)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299) 이동직(1749~?): 본관 전주(全州).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대사간, 대사헌, 관찰사 역임.

❖ 乾隆 五十年 乙巳 六月 二日 己卯

- 以濟州防禦使狀啓, 今年夏捧各班除番米一斗式, 姑令停退, 事涉擅便, 惶恐待罪事, 傳于李祖承曰, 勿待罪事回諭.

❖ 정조 9년(1785) 을사년 6월 2일(기묘)

- 각반제번미(各班除番米)를 정퇴(停退)한 일과 관련하여 올린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의 장계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가 장계로, ‘금년 여름에 거둬들이는 각반제번미(各班除番米) 1말씩을 일단 정퇴(停退)하도록 하였는데,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황공하여 대죄합니다.’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이조승(李祖承)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번미, 정퇴, 제주방어사, 대죄.

❖ 乾隆 五十年 乙巳 六月 二日 己卯

- 乙巳六月初二日午時，上御重熙堂。右副承旨入侍時，右副承旨李祖承，假注書李德鉉，記注官金健修，記事官金鳳顯，以次進伏訖。……上曰，注書出去，各道各司褒貶入來之數，問于政院以入，可也。賤臣承命出問，回奏曰，問于政院，則濟州褒貶外，皆不入來云矣。上命書傳教曰，新除授承旨，牌招察任。命退，承史以次退出。

❖ 정조 9년(1785) 을사년 6월 2일(기묘)

- ☐ 각도(各道)와 각사(各司)의 포폄(褒貶)에 제주(濟州)의 포폄 외에 들어온 것이 없다는 가주서 이덕현(李德鉉)의 계
- 을사년 6월 2일 오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우부승지가 입시할 때 우부승지 이조승(李祖承), 가주서 이덕현(李德鉉),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주서(注書)는 나가서 각도(各道)와 각사(各司)의 포폄(褒貶)에 들어온 숫자를 승정원에 게 물어 들어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가 물어보고 돌아와 아뢰기를, “승정원에 물어보니 제주(濟州)의 포폄 외에는 모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포폄.

❖ 乾隆 五十年 乙巳 六月 十七日 甲午

- 乙巳六月十七日申時, 上御誠正閣. 同副承旨與監印郎廳入侍時, 同副承旨金蓍耆, 假注書李敬五, 記注官承膺祚·金健修, 副司果李家煥, 以次進伏訖. …… 上曰, 前濟州牧使入侍. 【出榻教】 賤臣承命出, 與嚴思晚偕入進伏. 上曰, 絕域歉歲, 幸免捐瘠, 雖已加資, 豈云酬勞? 島中農形果何如? 思晚曰, 秋牟有登熟之望矣. 四五日[月]熏風[薰風], 黃蠡熾盛, 未免失稔, 秋農則五月十四日, 始得甘露, 次次播種, 而雨頗支離, 或有愆期之慮, 而姑未知如何矣. 上曰, 沿路所見, 何如? 思晚曰, 全羅一道, 無論高燥, 已盡秧苗, 而望雨方切, 今若得雨, 則將爲無前之豐矣. 上曰, 邑弊民瘼, 陳之, 可也. 思晚曰, 島中有六苦役, 而因前後御史之行, 多有革祛者, 今無弊端之可達矣. 上曰, 灰鰓已罷之乎? 思晚曰, 已罷, 而鮑作之役, 比他稍歇矣. 上曰, 何以稍歇也. 思晚曰, 鮑作輩搥鰓進上, 自二月爲始, 終於九月, 而全鰓一箇, 出搥鰓三葉, 而鮑作額數, 殆近百餘人, 分力爲之, 故爲役不至苦重矣. 上曰, 移轉諸舶, 一時齊泊, 而無臭載之患. 此殆前後所無, 而予以謂, 因卿有福而致此, 今番加資, 未必不由於此矣. 思晚曰, 此莫非聖上軫念而然. 臣何力焉? 上曰, 來時風勢, 何如? 思晚曰, 一日內渡海矣. 上曰, 可謂利泊矣. 島中習俗, 何如? 思晚曰, 能知先公而後私, 民習可貴矣. 仍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9년(1785) 을사년 6월 17일(갑오)

- 임금이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을 입시하게 하여 제주(濟州)의 농사형편, 읍폐(邑弊)와 민막(民瘼) 등에 대해 물음
- 을사년 6월 17일 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동부승지와 감인 낭청이 입시할 때 동부승지 김시구(金蓍耆),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기주관 승응조(承膺祚)·김건수(金健修), 부사과 이가환(李家煥)이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입시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어전에서 하교를 냄】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가 엄사만(嚴思晩)과 함께 들어와 앞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절역(絕域)이 흉년에 다행히 굶어 죽는 일을 면하였으니, 비록 이미 가자(加資)하였다고는 하나 어찌 노고에 보답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섬 안의 농사형편은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엄사만이 아뢰기를, “가을보리는 풍년이 들 가망이 있습니다. 4, 5월 훈풍(薰風)이 불어 메뚜기가 치성(熾盛)하여 흉작을 면치 못하였는데, 가을농사는 5월 14일에 비로소 단비가

내려 차례로 파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자못 오래 계속되어 혹 시기를 놓칠 염려가 있어서 아직 어떨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연로(沿路)에서 본 바는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엄사만이 아뢰기를, “전라도 한 도는 땅이 높고 메마른 것을 막론하고 이미 모내기를 다하여 비를 바라는 것이 바야흐로 간절합니다. 지금 만약 비가 내린다면 장차 전에 없는 풍년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음폐(邑弊)와 민막(民瘼)을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엄사만이 아뢰기를, “섬 안에는 육고역(六苦役)이 있는데, 전후 어사의 행차로 인하여 혁파된 것이 많이 있어 지금은 폐단이라고 아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회복(灰鰓)은 이미 혁파되었는가?”라고 하였다. 엄사만이 아뢰기를, “이미 혁파되어서 포작(鮑作)의 역(役)은 다른 것에 비해 조금 덜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조금 덜하다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엄사만이 아뢰기를, “포작배(鮑作輩)의 추복(槌鰓) 진상은 2월부터 시작하여 9월에 끝나는데, 전복(全鰓) 1개에서 추복 3엽(葉)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작의 숫자는 거의 100여 인에 가깝고 분력(分力)하여 이것을 합니다. 때문에 역이 고되고 무거움에 이르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선박들을 이전(移轉)하면서 동시에 일제히 정박하게 하여 취재(臭載)³⁰⁰하는 근심이 없었다. 이는 자못 전후에 없던 바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경이 복이 있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번의 가자(加資)는 반드시 여기에서 연유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엄사만이 아뢰기를, “이는 성상께서 진념(軫念)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올 때 풍세(風勢)는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엄사만이 아뢰기를, “하루 안에 바다를 건넜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잘 닳았다고 이를 만하다. 섬의 풍속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엄사만이 아뢰기를, “능히 선공후사(先公後私)를 아니 백성들의 습속이 뛰어납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왔다.

△ 주제어: 제주목사, 엄사만, 농사형편, 음폐, 민막.

300) 취재(臭載): 배에 실은 짐이 제 때에 목적지에 닿지 못하고 오래 되어 상하여 냄새가 나고 못 쓰게 됨. 짐을 실은 배가 뒤집어져 가라앉음.

❖ 乾隆 五十年 乙巳 六月 十九日 丙午[丙申]

- 持平李羽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6월 19일(병오[병신])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우진(李羽晉)의 계
- 지평 이우진(李羽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六月 二十一日 戊申[戊戌]

- 執義洪宗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6월 21일(무신[무술])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홍종신(洪宗薰)의 계
- 집의 홍종신(洪宗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六月 二十二日 己酉[己亥]

- 執義洪宗蓋, 持平李羽晉, 獻納洪樂淵啓曰, …… 執義洪宗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獻納洪樂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6월 22일(기유[기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홍종신(洪宗薰)의 계

- 집의 홍종신(洪宗薰), 지평 이우진(李羽晉), 헌납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중략> 집의 홍종신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헌납 홍낙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을 <중략>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六月 二十四日 辛丑

○ 親政. 吏批, 以朴錕爲兵曹佐郎, …… 鄭鍊爲濟州判官, …….

❖ 정조 9년(1785) 을사년 6월 24일(신축)

□ 정련(鄭鍊)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친정(親政)하였다. 이비(吏批)에 박황(朴錕)을 병조좌랑으로 삼았고, <중략> 정련(鄭鍊)³⁰¹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정련.

301) 정련(?~?): 제주판관(재임: 1785. 7.~1788. 1.) 역임.

❖ 乾隆 五十年 乙巳 六月 二十五日 壬子[壬寅]

○ 乙巳六月二十五日卯時, 上御誠正閣. 藥房都提調, 吏·兵房承旨, 與守令·邊將, 詣臺臺臣入侍時, 都提調徐命善, 行都承旨李敬養, 行左承旨李秉模, 右承旨李亨元, 左副承旨趙興鎮, 右副承旨李祖承, 同副承旨閔台燦, 假注書朴蓍壽·李德鉉, 記事官金鳳顯·尹行任, 以次進伏訖. …… 執義洪周萬, 持平鄭景祚·朴鏡等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周萬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6월 25일(임자[임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홍주만(洪周萬) 등의 계

○ 을사년 6월 25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도제조와 이·병방승지가 수령·변장, 예대대신과 입시할 때 도제조 서명선(徐命善), 행도승지 이경양(李敬養), 행좌승지 이병모(李秉模), 우승지 이형원(李亨元), 좌부승지 조흥진(趙興鎭), 우부승지 이조승(李祖承), 동부승지 민태혁(閔台燦), 가주서 박시수(朴蓍壽)·이덕현(李德鉉),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집의 홍주만(洪周萬), 지평 정경조(鄭景祚)³⁰²·박황(朴鏡)³⁰³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홍주만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302) 정경조(1739~?): 본관 해주(海州).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303) 박황(1737~?): 본관 울산(蔚山). 1777년(정조 1) 문과 급제.

❖ 乾隆 五十年 乙巳 六月 三十日 丁巳[丁未]

- 乙巳六月三十日辰時，上御誠正閣。都承旨入侍時，行都承旨金尙集，假注書李德鉉，記事官金鳳顯·承膺祚，以次進伏訖。上命守令入侍。賤臣承命出，與慶州府尹金履容等偕入進伏。…… 上命守令次次進前。…… 濟州判官鄭鍊進前奏職姓名。上曰，下去善爲之。…….

❖ 정조 9년(1785) 을사년 6월 30일(정사[정미])

□ 제주판관(濟州判官) 정련(鄭鍊) 등 수령들이 입시함

- 을사년 6월 3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도승지가 입시할 때 행도승지 김상집(金尙集), 가주서 이덕현(李德鉉),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승응조(承膺祚)가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임금이 수령을 입시하게 명했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와 경주부윤 김이용(金履容) 등과 함께 들어와 나와 앞드렸다. <중략> 임금이 수령을 차례대로 앞으로 나오라 명했다. <중략> 제주판관(濟州判官) 정련(鄭鍊)이 앞으로 나와 직임과 성명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려가거든 정사를 잘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정련, 입시.

❖ 乾隆 五十年 乙巳 七月 五日 壬子

- 持平朴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7월 5일(임자)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박황(朴晃)의 계
- 지평 박황(朴晃)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七月 九日 丙辰

- 洪仁浩,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前牧使嚴思晩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9년(1785) 을사년 7월 9일(병진)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의 체임진상마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홍인호(洪仁浩)가 사복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의 체임진상마 3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고 전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立養) 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엄사만, 체임진상마, 별단.

❖ 乾隆 五十年 乙巳 七月 十一日 戊午

- 執義洪宗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7월 11일(무오)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홍종신(洪宗薰)의 계
- 집의 홍종신(洪宗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七月 十三日 庚申

- 持平白師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7월 13일(경신)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백사근(白師謹)의 계
- 지평 백사근(白師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七月 十三日 庚申

- 正言趙雲紀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7월 13일(경신)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조운기(趙雲紀)의 계
- 정언 조운기(趙雲紀)³⁰⁴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304) 조운기(1738~?): 본관 풍양(豐壤). 1785년(정조 9) 문과 급제. 부교리, 수찬 역임.

❖ 乾隆 五十年 乙巳 七月 十六日 癸亥

- 洪仁浩, 以司僕寺提調言啓曰, 濟州出來先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八十八匹內, 一匹到中路故失, 實納馬八十七匹, 禾毛色別單書入, 而貢獻事體, 何等嚴重? 今年所納馬匹, 體小駑劣, 比前尤甚, 事極駭然, 不可無警責, 當該封進牧使,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7월 16일(계해)

- 몸집이 작고 우둔한 말을 진상한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할 것을 아뢰는 사복시의 초기
- 홍인호(洪仁浩)가 사복시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에서 나온 선운 연례진상마(先運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흥구노태마(凶咎駑駘馬) 20필 도합 88필 가운데 1필은 도중에서 죽어 실제 바치는 말 87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공헌(貢獻)의 일의 체모가 얼마나 엄중한 것입니까? 금년에 바치는 마필은 몸집이 작고 우둔한 것이 전에 비해 더욱 심하니 일이 아주 놀랍습니다. 경책(警責)이 없을 수 없으니 해당 봉진(封進)목사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마필, 진상, 종중추고.

❖ 乾隆 五十年 乙巳 七月 十六日 癸亥

- 柳 炯, 以司僕寺提調言啓曰, 濟州出來後運歲貢馬二百匹內, 三匹船中故失, 三匹到中路故失, 二匹到衿川病留, 實納馬一百九十二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9년(1785) 을사년 7월 16일(계해)

- 제주(濟州)의 세공마(歲貢馬)에 대한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유강(柳炯)이 사복시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세공마(後運歲貢馬) 200필 가운데 3필은 배 안에서 죽고, 3필은 도중에서 죽고, 2필은 금천(衿川)에 도착하여 병들어 머물로 있어서 실제로 바치는 말 192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세공마, 별단.

❖ 乾隆 五十年 乙巳 七月 二十九日 丙子

- 吏曹口傳政事, 保寧縣監洪檢, 旌義縣監李甲龍相換.

❖ 정조 9년(1785) 을사년 7월 29일(병자)

□ 홍검(洪檢)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이조(吏曹)가 구전정사(口傳政事)하여 보령현감 홍검(洪檢)³⁰⁵과 정의현감(旌義縣監) 이갑룡(李甲龍)을 서로 바꾸었다.

△ 주제어: 이갑룡, 홍검, 정의현감.

305) 홍검(1721~?): 본관 남양(南陽). 자 성오(省吾). 1761년(영조 37) 문과 급제. 대사헌, 동지의금부사, 대사간 역임.

❖ 乾隆 五十年 乙巳 七月 二十九日 丙子

- 持平朴基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7월 29일(병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박기정(朴基正)의 계
- 지평 박기정(朴基正)³⁰⁶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306) 박기정(1748~?): 본관 순천(順天). 자 일여(一如). 1784년(정조 8) 문과 급제. 대사간, 영월부사, 병조참판 역임.

❖ 乾隆 五十年 乙巳 七月 三十日 丁丑

- 以保寧縣監洪檢相換單子，傳于安聖彬曰，外遷與特教外補，有異。出自憲長，爲水使屬官，不但如何，名以外遷，程途太近，銓官事，誠慨然。今於特教換差之後，以耽羅地方擬入，又甚太遠，舉措節節乖當。吏曹參判沈豐之爲先從重推考，此望筒，勿施。

❖ 정조 9년(1785) 을사년 7월 30일(정축)

- ☐ 보령현감 홍검(洪檢)의 상환단자(相換單子)에 대해, 이조참판 심풍지(沈豐之)를 종종 추고(從重推考)하고 이 망통(望筒)은 시행치 말라는 전교
- 보령현감 홍검(洪檢)을 서로 바꾸는 단자(單子)와 관련하여 안성빈(安聖彬)에게 전교하기를, “외직으로 천전(遷轉)되는 것과 특교(特教)로 외직에 보임(補任)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대사헌에서 나와서 수군절도사에 속한 관원이 된다는 것은 여하할 뿐만이 아니다. 명색이 외직으로 천전되는 것인데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 전관(銓官)의 일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금 특교로 바꾸어 차임(差任)한 뒤에 탐라 지방으로 의망(擬望)해 들었으니 또한 너무 거리가 멀다. 거조(舉措)가 하나하나가 어긋난다. 이조참판 심풍지(沈豐之)를 우선 종종추고(從重推考)하고 이 망통(望筒)³⁰⁷은 시행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보령현감, 홍검, 의망.

307) 망통(望筒): 삼망(三望)의 내용을 기록한 종이.

❖ 乾隆 五十年 乙巳 八月 一日 戊寅

- 持平朴基正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聖中之罪, 可勝誅哉. 包藏禍心, 主張凶論, 敢托不敢言之地, 倡出不忍聞之說, 作爲窩主, 慫慂徒黨故, 徐有臣·朴宗甲·李義駿輩, 從而和之, 交口讚引. 噫嘻, 痛矣. 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 而始事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且莫重義理, 倚托怪鬼輩, 欲售疑亂之計者, 究厥心腸, 與德師·載翰, 一串貫來者也. 不仕於先大王者, 卽先大王之逆臣, 先大王之逆臣, 卽殿下之逆臣, 豈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 而居謫以來, 小[少]不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經年爭執, 尙追王章, 窮凶之節, 無以嚴覈, 亂賊之徒, 無所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8월 1일(무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박기정(朴基正)의 계
- 지평 박기정(朴基正)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별할 수 있겠습니까? 화심(禍心)을 품고 흉론(凶論)을 주장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의탁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앞장서서 내어 와주(窩主)가 되어 도당(徒黨)을 종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유신(徐有臣)·박종갑(朴宗甲)·이의준(李義駿)의 무리가 따라서 화답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선대왕(先大王) 때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전하에게 벼슬하여 재주와 포부를 펼치려 했다는 말은 더욱더 흉악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한 막중한 의리를 괴귀(怪鬼)의 무리에게 맡겨 의심하여 소란을 피우려는 계책을 부리고자 한 것은 그 심보를 따져보면 이덕사

(李德師)·조재한(趙載翰)과 더불어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선대왕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로 바로 선대왕의 역신(逆臣)이고, 선대왕의 역신은 바로 전하의 역신인데, 어찌 잠시라도 천지 사이에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해를 넘겨 쟁집(爭執)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법을 면하고 있으니,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을 엄히 조사할 수 없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八月 三日 庚辰

- 持平朴基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8월 3일(경진)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박기정(朴基正)의 계
- 지평 박기정(朴基正)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八月 四日 辛巳

- 應教李敬一, 掌令姜垣, 持平朴基正, 校理李錫夏·金啓洛, 副校理李鼎運, 正言鄭致淳, 修撰趙濟魯·俞漢敬啓曰, …… 正言鄭致淳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噫嘻, 痛矣. 聖中之罪, 可勝誅哉? 倡邪說而作爲窩主, 結凶徒而交相吹噓, 暗地綢繆, 設計妖凶, 至於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究厥心腸, 實與德師·載翰輩, 一串貫來者也. 情迹既露, 負犯至重, 決不可一刻容貸, 而況渠居謫以來, 不思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久追王章, 輿情益激.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8월 4일(신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정치순(鄭致淳)의 계
- 응교 이경일(李敬一), 장령 강원(姜垣), 지평 박기원(朴基正), 교리 이석하(李錫夏)·김계락(金啓洛), 부교리 이정운(李鼎運), 정언 정치순(鄭致淳)³⁰⁸, 수찬 조제로(趙濟魯)·유한경(俞漢敬)³⁰⁹이 아뢰기를, <중략> 정언 정치순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筵席)에

308) 정치순(1742~1816): 본관 동래(東萊). 자 계문(季文).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309) 유한경(1734~1816): 본관 기계(杞溪). 자 여직(汝直).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의 무리와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오래도록 국법을 피하고 있어 여론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八月 五日 壬午

- 持平朴基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8월 5일(임오)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박기정(朴基正)의 계
- 지평 박기정(朴基正)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八月 五日 壬午

- 正言成種仁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8월 5일(임오)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성종인(成種仁)의 계
- 정언 성종인(成種仁)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八月 十日 丁亥

- 持平李羽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8월 10일(정해)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우진(李羽晉)의 계
- 지평 이우진(李羽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八月 十日 丁亥

- 正言柳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8월 10일(정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유경(柳畊)의 계
- 정언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八月 十一日 戊子

- 獻納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8월 11일(무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송전(宋銓)의 계
- 헌납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八月 十五日 壬辰

- 持平李羽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8월 15일(임진)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우진(李羽晉)의 계
- 지평 이우진(李羽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八月 十五日 壬辰

- 正言柳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8월 15일(임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유경(柳畊)의 계
- 정언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八月 二十一日 戊戌

- 金夢華, 以漢城府言啓曰, 昨年獻民數時, 濟州三邑民數, 未及上來故, 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草記蒙允矣. 今始上來, 獻民數冊中, 添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9년(1785) 을사년 8월 21일(무술)

- 제주(濟州) 삼읍 백성의 수를 첨록(添錄)하여 들이겠다는 한성부의 초기
- 김몽화(金夢華)³¹⁰가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작년 백성의 수를 바칠 때 제주(濟州) 삼읍 백성의 수가 미쳐 올라오지 않아서 그것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추후에 첨록(添錄)할 뜻으로 초기(草記)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지금 비로소 올라왔으니 백성의 수를 바치는 책 가운데 첨록하여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삼읍, 백성의 수, 첨록.

310) 김몽화(1723~1792): 본관 선산(善山). 자 성민(聖民). 호 칠암(七巖). 1754년(영조 30) 문과 급제. 저서 《칠암문집》.

❖ 乾隆 五十年 乙巳 八月 二十七日 甲辰

- 乙巳八月二十七日巳時，上御誠正閣. 晝講入侍時，知事徐有隣，特進官鄭好仁，參贊官柳燾，侍讀官李錫夏，檢討官兪漢敬，假注書洪義浩，記注官金健修，記事官尹行任，宗臣西清君煜，武臣李煜，以次進伏訖. …… 天行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 上曰，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8월 27일(갑진)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박천행(朴天行)의 계
- 을사년 8월 27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주장에 입시할 때 지사 서유린(徐有隣), 특진관 정호인(鄭好仁), 참찬관 유강(柳燾), 시독관 이석하(李錫夏), 검토관 유한경(兪漢敬), 가주서 홍의호(洪義浩),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윤행임(尹行任), 종신 서청군 이성(李煜), 무신 이욱(李煜)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박천행(朴天行)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八月 二十八日 乙巳

- 正言韓光植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8월 28일(을사)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한광식(韓光植)의 계
- 정언 한광식(韓光植)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九月 五日 辛亥

- 持平成種仁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第九件事, 亟停勿煩, …….

❖ 정조 9년(1785) 을사년 9월 5일(신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성종인(成種仁)의 계
- 지평 성종인(成種仁)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 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 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9건의 일은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九月 五日 辛亥

- 正言李錫夏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9월 5일(신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석하(李錫夏)의 계
- 정언 이석하(李錫夏)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九月 十日 丙辰

- 司諫兪彥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9월 10일(병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유언수(兪彦脩)의 계
- 사간 유언수(兪彦脩)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九月 十四日 庚申

- 掌令申禹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9월 14일(경신)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신우상(申禹相)의 계
- 장령 신우상(申禹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九月 十七日 癸亥

- 正言李羽晉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羽晉曰, 噫嘻, 痛矣. 聖中之罪, 可勝誅哉? 倡邪說而作爲窩主, 結凶徒而交相吹噓, 暗地綢繆, 設計妖凶, 至於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究厥心腸, 實與德師·載翰輩, 一串貫來者也. 情迹既露, 負犯至重, 決不可一刻容貸, 而況渠居謫以來, 不思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久道王章, 輿情益激,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9월 17일(계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우진(李羽晉)의 계

- 정언 이우진(李羽晉)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이우진이 아뢰기를, “아, 통탄스럽습니다.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사악한 말을 창도하여 소굴을 만들고, 흉도들과 결탁하여 서로 추천하며 암암리에 계획을 짜서 요망한 계책을 꾸며 감히 막중한 의리를 의심하여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연석(筵席)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그 속셈을 살펴보면 실로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의 무리와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고,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결코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는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오래도록 국법을 피하고 있어 여론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九月 二十日 丙寅

- 持平白師謹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聖中之罪, 可勝誅哉? 包藏禍心, 主張凶論, 敢托不敢言之地, 倡出不忍聞之說, 作爲窩主, 慫慂徒黨, 故徐有臣·朴宗甲·李義駿輩, 從而和之, 交口讚引, 噫嘻, 痛矣. 先大王朝十三年不着帽, 而始仕於殿下, 欲展蘊抱之說, 尤極萬萬凶慘, 且莫重義理倚托怪鬼輩, 欲售疑亂之計者, 究厥心腸, 與德師·載翰, 一串貫來者也, 不仕於先大王朝者, 卽先大王之逆臣, 先大王之逆臣, 卽殿下之逆臣, 豈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 而居謫以來, 小不畏縮, 乃敢聚會學徒, 通接官隸, 至登繡啓, 大臣筵白, 雖卽移配絕島, 而經年爭執, 尙追王章, 窮凶之節, 無以嚴覈, 亂賊之徒, 無所懲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9월 20일(병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백사근(白師謹)의 계
- 지평 백사근(白師謹)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노성중(盧聖中)의 죄를 이루다 별할 수 있겠습니까? 화심(禍心)을 품고 흉론(凶論)을 주장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의탁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앞장서서 내어 와주(窩主)가 되어 도당(徒黨)을 종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유신(徐有臣)·박종갑(朴宗甲)·이의준(李義駿)의 무리가 따라서 화답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선대왕(先大王) 때 13년 동안 모자를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전하에게 벼슬하여 재주와 포부를 펼치려 했다는 말은 더욱더 흉악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한 막중한 의리를 괴귀(怪鬼)의 무리에게 맡겨 의심하여 소란을 피우려는 계책을 부리고자 한 것은 그 심보를 따져보면 이덕사

(李德師)·조재한(趙載翰)과 더불어 한 께미에서 나온 자입니다. 선대왕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로 바로 선대왕의 역신(逆臣)이고, 선대왕의 역신은 바로 전하의 역신인데, 어찌 잠시라도 천지 사이에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적(居謫)한 이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학도(學徒)를 모으고 관례(官隸)와 통접(通接)하여 어사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비록 즉시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지만, 해를 넘겨 쟁집(爭執)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법을 면하고 있으니,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을 엄히 조사할 수 없어 난적(亂賊)의 무리가 두려워 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 정배된 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九月 二十日 丙寅

○ 乙巳九月二十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洪樂性, 知中樞府事具善復, 行刑曹判書李命植, 行工曹判書金華鎮, 行知敦寧鄭尙淳, 仁陵君李在協, 行戶曹判書趙琰, 漢城判尹鄭昌聖, 禮曹判書金履素, 行副司直鄭好仁, 江華留守嚴璫, 行副司直李柱國, 開城留守尹塾, 吏曹判書趙時俊, 校理李太亨, 正言李羽晉, 右承旨李祖承, 假注書李敬五, 事變假注書尹悌東, 記註官承膺祚, 記事官金鳳顯, 以次進伏訖. …… 羽晉進前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羽晉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9월 20일(병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우진(李羽晉)의 계

○ 을사년 9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좌의정 홍낙성(洪樂性),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형조판서 이명식(李命植), 행공조판서 김화진(金華鎮), 행지돈녕 정상순(鄭尙淳), 인릉군 이재협(李在協), 행호조판서 조준(趙琰), 한성판윤 정창성(鄭昌聖), 예조판서 김이소(金履素), 행부사직 정호인(鄭好仁), 강화유수 엄숙(嚴璫),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개성유수 윤숙(尹塾), 이조판서 조시준(趙時俊), 교리 이태형(李太亨), 정언 이우진(李羽晉), 우승지 이조승(李祖承),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사변가주서 윤제동(尹悌東),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우진이 앞으로 나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우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九月 二十六日 壬申

- 掌令宋景煥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9월 26일(임신)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송경환(宋景煥)의 계
- 장령 송경환(宋景煥)³¹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311) 송경환(?~?): 본관 진천(鎭川). 자 성서(星瑞). 호 나암(蘿菴). 1768년(영조 44) 문과 급제.

❖ 乾隆 五十年 乙巳 九月 二十七日 癸酉

- 掌令姜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9월 27일(계유)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강원(姜垣)의 계
- 장령 강원(姜垣)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九月 二十八日 甲戌

- 持平白師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9월 28일(갑술)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백사근(白師謹)의 계
- 지평 백사근(白師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月 十一日 丁亥

- 持平白師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0월 11일(정해)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백사근(白師謹)의 계
- 지평 백사근(白師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月 十一日 丁亥

- 獻納金東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0월 11일(정해)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김동연(金東淵) 등의 계
- 헌납 김동연(金東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月 十三日 己丑

- 掌令朴長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0월 13일(기축)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박장설(朴長謫)의 계
- 장령 박장설(朴長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月 十三日 己丑

- 正言成種仁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0월 13일(기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성종인(成種仁)의 계
- 정언 성종인(成種仁)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月 十四日 庚寅

- 獻納金東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門,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0월 14일(경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김동연(金東淵)의 계
- 헌납 김동연(金東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月 十五日 辛卯

- 掌令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0월 15일(신묘)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송전(宋銓)의 계
- 장령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月 十五日 辛卯

- 司諫安廷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0월 15일(신묘)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안정현(安廷玹)의 계
- 사간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月 十六日 壬辰

○ 乙巳十月十六日未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洪樂性, 行刑曹判書李命植, 行工曹判書金華鎮, 行副司直金魯鎮·仁陵君李在協, 行副司直鄭昌聖, 兵曹判書徐有隣, 行副司直鄭好仁·李柱國, 禮曹參判李文源, 吏曹參判沈豐之, 司諫安廷玪, 掌令宋銓, 持平韓商新, 校理李錫夏, 修撰申耆, 行都承旨金尙集, 右承旨趙興鎮, 假注書李敬五·朴蓍壽, 記注官金健修, 記事官李崑秀, 以次進伏訖. …… 銓·商新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銓等曰,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上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0월 16일(임진)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송전(宋銓) 등의 계

○ 을사년 10월 16일 미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좌의정 홍낙성(洪樂性), 행형조판서 이명식(李命植), 행공조판서 김화진(金華鎮), 행부사직 김노진(金魯鎮)·인능군 이재협(李在協), 행부사직 정창성(鄭昌聖), 병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행부사직 정호인(鄭好仁)·이주국(李柱國), 예조참판 이문원(李文源), 이조참판 심풍지(沈豐之), 사간 안정현(安廷玪), 장령 송전(宋銓), 지평 한상신(韓商新)³¹², 교리 이석하(李錫夏), 수찬 신기(申耆), 행도승지 김상집(金尙集), 우승지 조흥진(趙興鎮), 가주서 이경오(李敬五)·박기수(朴蓍壽),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이곤수(李崑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송전과 한상신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송전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312) 한상신(1758~?): 본관 청주(淸州). 정언, 지평 역임.

❖ 乾隆 五十年 乙巳 十月 二十日 丙申

- 執義朴聖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0월 20일(병신)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박성태(朴聖泰)의 계
- 집의 박성태(朴聖泰)³¹³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313) 박성태(1737~?): 본관 죽산(竹山). 자 성앙(聖昂).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 乾隆 五十年 乙巳 十月 二十四日 庚子

- 執義朴聖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0월 24일(경자)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박성태(朴聖泰)의 계
- 집의 박성태(朴聖泰)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月 二十四日 庚子

- 獻納金東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0월 24일(경자)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김동연(金東淵)의 계
- 헌납 김동연(金東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月 二十七日 癸卯

- 掌令權之彦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0월 27일(계묘)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권지언(權之彦)의 계
- 장령 권지언(權之彦)³¹⁴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314) 권지언(1720~?): 본관 안동(安東). 자 방혜(邦兮).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 乾隆 五十年 乙巳 十月 二十七日 癸卯

- 獻納李師濂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0월 27일(계묘)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이사렴(李師濂)의 계
- 헌납 이사렴(李師濂)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二日 戊申

- 乙巳十一月初二日辰時, 上詣景慕宮. 冬享大祭舉動入侍時, 行都承旨金尙集, 左承旨李亨元, 右承旨徐鼎修, 左副承旨趙興鎭, 右副承旨柳炯, 同副承旨尹尙東, 假注書李德鉉 · 尹悌東, 記注官金健修, 記事官金鳳顯 · 李崑秀 · 尹行任, 二提學吳載純, 二直提學朴祐源, 以次侍立訖. …… 上命書傳教曰, 昨見濟州牧使狀啓, 今年柑果, 結實數少, 奠獻外皆闕封云, 在前如此之時, 橘柚中他種果頒給, 已例既多. 明日當設柑製於泮宮, 俄於輦路, 召見祇迎泮儒, 亦有下教者, 大提學, 還宮後牌招, 進詣泮宮, 試取以來.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2일(무신)

- 감제(柑製) 실행과 관련하여 감과(柑果)가 전헌(奠獻) 외에 모두 봉진(封進)을 거르게 되었으니 전례에 따라 귤유(橘柚) 중 다른 종류로 나누어 주라는 전교
- 을사년 11월 2일 진시에 임금이 경모궁(景慕宮)으로 나아갔다. 동향대제 거동에 입시할 때 행도승지 김상집(金尙集), 좌승지 이양원(李亨元), 우승지 서정수(徐鼎修), 좌부승지 조흥진(趙興鎭), 우부승지 유강(柳炯), 동부승지 윤상동(尹尙東), 가주서 이덕현(李德鉉) · 윤제동(尹悌東),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김봉현(金鳳顯) · 이곤수(李崑秀) · 윤행임(尹行任), 이제학 오재순(吳載純), 이직제학 박우원(朴祐源)이 차례로 시립하였다. <중략> 임금이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어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를 보니 금년 감과(柑果)의 결실 수가 적어 전헌(奠獻) 외에는 모두 봉진(封進)을 거르게 되었다고 한다. 전에 이와 같은 때에는 귤유(橘柚) 중 다른 종류에 나누어 준 전례가 많이 있었다. 내일 성균관에서 감제(柑製)³¹⁵⁾를 실행해야 해서 조금 전에 연로(輦路)³¹⁶⁾에서 맞이하는 성균관 유생을 불러 만나보고는 또한 하교한 것이 있다. 대제학을 환궁한 후에 패초(牌招)하여 성균관에 나아가 시취(試取)하여 오게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감제, 시취.

315) 감제(柑製): 황감제(黃柑製). 매년 제주도에서 감귤을 진상하면 임금이 성균관과 사학(四學) 유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실시한 시험.

316) 연로(輦路): 임금이 거동[舉動]하는 길.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八日 甲寅

- 執義義安廷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8일(갑인)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안정현(安廷玆)의 계
- 집의 안정현(安廷玆)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八日 甲寅

- 獻納俞漢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8일(갑인)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유한경(俞漢敬)의 계
- 헌납 유한경(俞漢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九日 乙卯

- 執義安廷玹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9일(을묘)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안정현(安廷玹)의 계
- 집의 안정현(安廷玹)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十一日 丁巳

- 乙巳十一月十一日午時, 上御誠正閣. 大臣 · 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洪樂性 · 仁陵君李在協, 兵曹判書徐有隣, 禮曹判書金履素, 行副司直李柱國, 吏曹判書趙時俊, 行副司直徐有大 · 金思穆, 校理申耆, 行都承旨李聖圭, 右副承旨洪文泳, 假注書洪樂貞, 事變假注書張相吾, 記事官金鳳顯, 記注官金健修, 以次進伏訖. …… 樂性曰, 此濟州牧使尹得達狀啓也. 以爲今年穡事, 又未免歉, 賑餘民事, 實爲難支, 新舊還上, 一時竝督, 其勢未由, 舊還今姑停退, 今春移轉皮牟三千石, 亦爲停退, 待明年夏, 以本色收捧, 寺奴身貢米, 依還例, 每口二斗內減一斗, 男丁大同米, 每口五升內減一升, 各班除番米, 每名五斗內一斗停捧, 而凡干舉行等節, 固當登聞, 恭俟處分, 而候風往來之際, 動費屢朔, 故敢援前例, 蠲減停退等事, 姑先舉行, 事涉擅便, 極爲惶悚, 竝令廟堂稟旨, 分付矣. 本道[島]穡事, 又未免歉, 所請諸條, 便是應行之事. 至於移轉皮牟, 則遽然停退, 雖涉徑庭, 而先爲舉行, 從後狀聞, 既有已例, 竝依狀請施行之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11일(정사)

- 흥년이 든 제주(濟州)의 신구(新舊) 환상(還上)의 정퇴(停退) 등을 시행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좌의정 홍낙성(洪樂性)의 계
- 을사년 11월 11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상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좌의정 홍낙성(洪樂性) · 인능군 이재협(李在協), 병조판서 서유린(徐有隣), 예조판서 김이소(金履素),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이조판서 조시준(趙時俊), 행부사직 서유대(徐有大) · 김사목(金思穆), 교리 신기(申耆), 행도승지 이성규(李聖圭), 우부승지 홍문영(洪文泳), 가주서 홍낙정(洪樂貞), 사변가주서 장상오(張相吾), 기사관 김봉현(金鳳顯), 기주관 김건수(金健修)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홍낙성이 아뢰기를, “이것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윤득규(尹得達)의 장계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년 농사는 또한 흉작을 면치 못하였으니 진흙한 뒤의 백성들이 일이 실로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구(新舊) 환상(還上)을 일시에 모두 독촉하는 것은 형세상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구환(舊還)은 지금 일단 정퇴(停退)하고, 올 봄에 이전한 피모(皮牟) 3,000석 또한 정퇴하여 내년 여름을 기다려 본색(本色)³¹⁷으로 거둬들이겠습니다. 시노(寺

奴)의 신공미(身貢米)는 환례(還例)대로 1구(口)당 2말 안에서 1말을 감하고, 남정 대동미(大同米)는 1구당 5되 안에서 1되를 감하고, 각반 제번미(各班除番米)는 1명당 5말 안에서 1말을 정봉(停捧)³¹⁸하되, 무릇 거행에 관계되는 절차를 실로 마땅히 장계로 올려 공경히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만 바람을 기다려 왕래하는 데에 몇 개월이 소비되므로 감히 전례를 원용하여 견감하고 정퇴하는 등의 일을 우선 거행하였으니, 일을 마음대로 처리한 것이 지극히 황공합니다. 모두 의정부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본도(本島)의 농사 형편이 또한 흉작을 면치 못했으니 요청한 조항들은 곧 응당 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전한 피모의 경우는 갑자기 정퇴하는 것이 비록 크게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는 하나 먼저 거행하고 나중에 장계로 보고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모두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윤득규, 진휼, 환상, 정퇴.

317) 본색(本色): 조세(租稅)를 징수할 적에 미곡(米穀)으로 징수하는 것. 여기서는 환상을 본래 준 곡식으로 징수하는 것을 뜻함.

318) 정봉(停捧): 환곡(還穀) 등을 바로 걷지 않고 그 납부를 다음 해 추수 때까지로 기한을 물려주는 것을 말함.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十二日 戊午

- 持平李尙度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12일(무오)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이상도(李尙度)의 계
- 지평 이상도(李尙度)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十二日 戊午

- 獻納李壽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12일(무오)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이수함(李壽咸)의 계
- 헌납 이수함(李壽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十七日 癸亥

- 掌令申禹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17일(계해)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신우상(申禹相)의 계
- 장령 신우상(申禹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김수현, 노성중, 이보행,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十八日 甲子

- 濟州防禦使狀啓, 今十月朔薦新, 既不得準數封進, 進上又未免代封, 惶恐待罪事, 傳于李祖承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18일(갑자)

- 진상과 관련하여 올린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의 장계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의 장계에 금년 10월 천신(薦新)을 숫자대로 봉진(封進)할 수가 없어 진상을 또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바치게 됨을 면치 못하였으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한다고 한 일과 관련하여 이조승(李祖承)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진상, 대죄.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十八日 甲子

- 申大升, 以禮曹言啓曰, 卽伏見濟州牧使貢果薦新啓下狀本, 則去十月朔宗廟・景慕宮薦新柑子・唐金橘, 公私果園, 沒數摘取, 柑子爲一百七十箇, 唐金橘爲一百五十九箇, 而柑子則元數不足八十三箇, 唐金橘則元數不足一百二十八箇, 兩果元數, 皆爲不足, 自禮曹稟旨封進云矣. 在前如此之時, 多有減數薦進之規, 今亦依前例, 以此數爰, 推移薦進, 何如? 傳曰, 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18일(갑자)

- 원수(元數)에서 부족한 감자(柑子)와 당금귤(唐金橘)을 추이(推移)하여 천진(薦進)하게 하기를 요청하는 예조의 초기
- 신대승(申大升)³¹⁹⁾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공과천신(貢果薦新)에 대한 계하장본(啓下狀本)을 보니, 지난 10월 초하루에 종묘와 경모궁에 천신(薦新)하는 감자(柑子)와 당금귤(唐金橘)이 공사(公私) 과원에서 모두 따낸 것이 감자는 170개, 당금귤은 159개가 되는데, 감자는 원수(元數)에서 83개가 부족하고, 당금귤은 원수에서 128개가 부족하니, 두 과일의 원수가 모두 부족한 것에 대해 예조에서 품지(稟旨)하여 봉진(封進)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전에 이와 같을 때에는 숫자를 감하여 천진(薦進)³²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또한 전례대로 이 수효를 가지고 추이(推移)하여 천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감자, 당금귤, 천신.

319) 신대승(1746~1807): 본관 평산(平山). 1765년(영조 41) 무과 급제. 함경북도병마절도사, 어영대장, 충용사 역임.

320) 천진(薦進): 철 따라 나는 것을 진상함.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十八日 甲子

- 應教趙弘鎮, 副應教李敬一, 掌令朴長嵩, 獻納李壽咸, 校理申耆 · 曹允大, 副校理趙濟魯 · 李太亨, 副修撰成種仁啓曰, …… 獻納李壽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18일(갑자)

-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이수함(李壽咸)의 계
- 응교 조홍진(趙弘鎭), 부응교 이경일(李敬一), 장령 박장설(朴長嵩), 헌납 이수함(李壽咸), 교리 신기(申耆) · 조운대(曹允大), 부교리 조제로(趙濟魯) · 이태형(李太亨), 부수찬 성종인(成種仁)이 아뢰기를, <중략> 헌납 이수함(李壽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노성중,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二十日 丙寅

- 申大升, 以禮曹言啓曰, 今此冬至諸道方物, 開坐看品, 則俱爲無頃, 而其中濟州牧使所封世子宮方物織毛馬粧一部代, 結弓簾皮五張, 昨年七月冊禮後, 依啓下, 別單封進事, 知委矣. 同年冬至, 前牧使臣嚴思晩, 無端闕封, 故當該牧使, 從重推考, 闕封物種, 追後封進之意, 自臣曹草記啓稟, 而批旨內勿推, 各殿進上, 既命待明秋封進, 此亦不必追封, 以此知悉舉行可也事, 命下, 故其時, 一依聖教內辭意舉行之意移文, 而今番冬至, 又爲闕封, 事體所在, 誠極未安. 當該牧使尹得達, 從重推考, 當宮方物結弓簾皮五張, 急速封進之意, 更爲分付, 何如? 傳曰, 允. 勿推, 可也.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20일(병인)

- 세자궁에 봉진하는 결궁장피(結弓簾皮)를 봉진에서 빠뜨린 제주목사(濟州牧使) 윤득규(尹得達)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예조의 초기
- 신대승(申大升)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동지에 여러 도(道)에서 봉진(封進)하는 방물(方物)을 개좌(開坐)하여 간품(看品)하였더니 모두 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세자궁에 봉진하는 방물인 직모마장(織毛馬粧) 1부(部) 대신 결궁장피(結弓簾皮) 5장(張)은 작년 7월 책례(冊禮) 후에 계하(啓下)한 대로 별단(別單)으로 봉진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같은 해 동지에 전 제주목사 엄사만(嚴思晩)이 이유 없이 봉진에서 빠뜨렸으니 해당 목사를 종종추고(從重推考)하고, 봉진에서 빠진 물종을 추후에 봉진하는 뜻으로 신조(臣曹)에서 초기(草記)로 아뢰었는데, 비지(批旨)에서 추고하지 말고, 각전(各殿)의 진상은 내년 가을을 기다려 봉진하게 하였으니 이 또한 추봉(追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고 거행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 한결같이 성교(聖敎)의 내용대로 거행할 뜻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번 동지에도 봉진에서 빠뜨렸으니 일의 체모에 있어 실로 아주 온당치 못합니다. 해당 목사 윤득규(尹得達)를 종종추고하고, 해당 궁의 방물인 결궁장피 5장을 속히 봉진하도록 다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유희한다. 추고하지는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윤득규, 세자궁, 봉진, 추고.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二十日 丙寅

- 掌令朴長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大靜縣定配罪人聖中物故, 停啓.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20일(병인)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박장설(朴長髙)의 계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의 사망으로 계를 멈춤
- 장령 박장설(朴長髙)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의 사망으로 계(啓)를 멈췄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노성중, 사망.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二十日 丙寅

- 獻納李壽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大靜縣定配罪人聖中物故, 停啓.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20일(병인)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이수함(李壽咸)의 계와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의 사망으로 계를 멈춤
- 헌납 이수함(李壽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대정현 정배죄인 노성중(盧聖中)의 사망으로 계(啓)를 멈췄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노성중, 사망.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二十一日 丁卯

- 掌令朴長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第八件事, 亟停勿煩.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21일(정묘)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박장설(朴長嵩)의 계
- 장령 박장설(朴長嵩)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8사건은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二十一日 丁卯

- 獻納李壽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21일(정묘)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이수함(李壽咸)의 계
- 헌납 이수함(李壽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二十三日 己巳

○ 持平朴宗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23일(기사)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박종정(朴宗正)의 계

○ 지평 박종정(朴宗正)³²¹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321) 박종정(1755~?): 본관 반남(潘南). 자 사문(士文). 1778년(정조 2) 문과 급제.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二十三日 己巳

- 獻納李壽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23일(기사)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이수함(李壽咸)의 계
- 헌납 이수함(李壽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二十四日 庚午

- 獻納李壽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24일(경오)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이수함(李壽咸)의 계
- 헌납 이수함(李壽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二十六日 壬申

- 正言崔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26일(임신)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최烜(崔烜)의 계
- 정언 최烜(崔烜)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二十七日 癸酉

○ 持平朴宗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27일(계유)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박종정(朴宗正)의 계

○ 지평 박종정(朴宗正)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一月 二十九日 乙亥

- 正言申馥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1월 29일(을해)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신복(申馥)의 계
- 정언 신복(申馥)³²²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322) 신복(1753~?): 본관 안동(安東). 자 영백(英伯).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二月 一日 丙子

- 掌令姜世綸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2월 1일(병자)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강세운(姜世綸)의 계
- 장령 강세운(姜世綸)³²³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일종의 이익을 탐하는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정상(情狀)을 그가 이미 명백하게 공초(供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도배(島配)하여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323) 강세운(1761~1842): 본관 진주(晉州). 대사간, 병조참판 역임.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二月 一日 丙子

- 獻納洪樂淵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2월 1일(병자)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홍낙연(洪樂淵)의 계
- 헌납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못한 환관으로서 사대부와 결탁하여 끝내 흉적(凶賊)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극히 흉악한 말은, 감히 난역(亂逆)의 마음을 몰래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면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을 여론이 모두 분개해 하고 있으니,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二月 二日 丁丑

- 濟州牧使狀啓, 宗廟薦新小橘, 既不得準數封進, 進上小橘, 至於闕封之境, 其在事體, 不勝惶恐待罪事, 傳于徐鼎修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9년(1785) 을사년 12월 2일(정축)

- ☐ 소귤(小橘) 봉진(封進)과 관련하여 올린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종묘에 천신(薦新)하는 소귤(小橘)을 숫자에 맞게 봉진(封進)할 수가 없어 진상하는 소귤을 봉진에서 빠뜨리게 되었으니, 그 일의 체모에 있어 황공함을 견딜 수 없어 대죄(待罪)한다고 한 일과 관련하여 서정수(徐鼎修)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소귤, 봉진, 대죄.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二月 二日 丁丑

- 金翊休,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貢果薦新狀, 則今十二月令宗廟・景慕宮薦新乳柑元數三百六箇內, 公私果園, 沒數摘取, 則數不過七十五箇, 自本曹稟旨封進云矣. 依前例以此數爰推移, 當日薦進, 而宗廟薦新洞庭橘, 則依數封進, 故當日一體薦進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9년(1785) 을사년 12월 2일(정축)

- 원수(元數)에서 부족한 유감(乳柑)과 숫자대로 봉진한 동정굴(洞庭橘)을 모두 천진(薦進)하게 하기를 요청하는 예조의 초기
- 김익휴(金翊休)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공과천신장(貢果薦新狀)을 보니, 이번 12월령 종묘와 경모궁에 천신하는 유감(乳柑)이 원수(元數) 306개 가운데 공사(公私) 과원에서 모두 따낸 것이 75개에 불과하여 본조(本曹)에서 품지(稟旨)하여 봉진(封進)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전례대로 이 수효로 추이(推移)하여 당일 봉진하게 하고, 종묘에 천신하는 동정굴(洞庭橘)은 숫자대로 봉진하였으니 당일 일체 천진(薦進)하게 하는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유감, 동정굴, 천신.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二月 二日 丁丑

- 金翊休, 以漢城府言啓曰, 今此乙巳年獻民數時京中八道元戶口摠數抄錄入啓, 而濟州三邑民數, 迄未上來, 海島遲速, 未可預料, 故京外已磨勘戶口摠數, 爲先入錄, 濟州三邑, 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9년(1785) 을사년 12월 2일(정축)

- 을사년 경중(京中) 및 8도의 원호(元戶) 인구총수를 초록(抄錄)하여 입계하면서 제주(濟州) 삼읍은 추후에 첨록(添錄)하겠다는 한성부의 초기
- 김익휴(金翊休)가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을사년에 백성의 숫자를 바칠 때 경중(京中) 및 8도의 원호(元戶) 인구총수를 초록(抄錄)하여 입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주(濟州) 삼읍 백성의 숫자는 지금까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섬에서 언제 올라올지 헤아릴 수 없으니, 경외(京外)의 이미 마감한 호구총수를 우선 입록(入錄)하고, 제주 삼읍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추후에 첨록(添錄)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인구총수, 제주.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二月 十日 乙酉

○ 執義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2월 10일(을유)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이제만(李濟萬)의 계

○ 집의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二月 十日 乙酉

- 正言金履翼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2월 10일(을유)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김이익(金履翼)의 계
- 정언 김이익(金履翼)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二月 十一日 丙戌

○ 乙巳十二月十一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洪樂性,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司直李命植, 行工曹判書金華鎮, 行刑曹判書韓光會, 行司直金魯鎮, 仁陵君李在協, 行戶曹判書趙琰, 行司直鄭昌聖, 兵曹判書徐有隣, 禮曹判書金履素, 行副司直李在簡·李柱國, 吏曹判書趙時俊, 行副司直尹蕃東, 行都承旨金尙集, 刑曹參判李文源, 行副司直徐有大, 行左承旨朴祐源, 吏曹參判沈豐之, 行副司直金思穆, 執義李濟萬, 正言金履翼, 校理金啓洛, 副修撰吳泰賢, 左副承旨洪仁浩, 假注書李敬五, 事變假注書李宗烈, 記事官李崑秀·尹行任, 以次進伏訖. …… 濟萬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履翼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2월 11일(병술)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집의 이제만(李濟萬) 등의 계

○ 을사년 12월 11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좌의정 홍낙성(洪樂性),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사직 이명식(李命植), 행공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형조판서 한광회(韓光會), 행사직 김노진(金魯鎭), 인능군 이재협(李在協), 행호조판서 조준(趙琰), 행사직 정창성(鄭昌聖), 병조판서 서유린(徐有隣), 예조판서 김이소(金履素), 행부사직 이재간(李在簡)·이주국(李柱國), 이조판서 조시준(趙時俊), 행부사직 윤시동(尹蕃東), 행도승지 김상집(金尙集), 형조참판 이문원(李文源), 행부사직 서유대(徐有大), 행좌승지 박우원(朴祐源), 이조참판 심풍지(沈豐之), 행부사직 김사목(金思穆), 집의 이제만(李濟萬), 정언 김이익(金履翼)³²⁴, 교리 김계락(金啓洛), 부수찬 오태현(吳泰賢), 좌부승지 홍인호(洪仁浩),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사변가주서 이종렬(李宗烈),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제만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이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 노로 삼은

324) 김이익(1743~1830): 본관 안동(安東). 자 보숙(輔叔). 호 유와(牖窩). 이조참의, 대사간, 강화유수 역임.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二月 十六日 辛卯

- 乙巳十二月十六日午時，上御重熙堂。右承旨與詣臺臺臣同爲入侍時，行右承旨李漢豐，假注書李敬五，記事官金鳳顯·尹行任，持平洪義浩，以次進伏訖。上命臺臣進前。義浩進前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 정조 9년(1785) 을사년 12월 16일(신묘)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홍의호(洪義浩)의 계
- 을사년 12월 16일 오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우승지와 예대 대신이 함께 입시할 때 행우승지 이한풍(李漢豐), 가주서 이경오(李敬五),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윤행임(尹行任), 지평 홍의호(洪義浩)³²⁵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대신(臺臣)을 앞으로 나오도록 명했다. 홍의호가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325) 홍의호(1758~1826): 본관 풍산(豊山). 자 양중(養仲). 호 담녕(澹寧). 시호 정헌(正憲). 1784년 (정조 8) 문과 급제. 예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 역임.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二月 十八日 癸巳

- 李漢豐, 以義禁府言啓曰, 捕廳罪人煥九島配事, 命下, 而因臺啓, 不得舉行矣. 今則臺啓既已收殺, 罪人煥九, 全羅道靈巖郡楸子島島配, 以臺啓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2월 18일(계사)

- 죄인 송환구(宋煥九)를 추자도(楸子島)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
- 이한풍(李漢豐)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포도청 죄인 송환구(宋煥九)를 도배(島配)하라고 명을 내렸는데, 대계(臺啓)로 인하여 거행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계가 이미 마무리 되었으니, 죄인 송환구의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 도배(島配)하되, 대계의 내용으로 죄목을 갖추어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보내어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송환구, 추자도, 배소, 압송.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二月 十八日 癸巳

- 乙巳十二月十八日辰時，上御誠正閣。藥房入診入侍時，藥房都提調徐命善，提調徐有隣，行都承旨金尙集，假注書朴蓍壽，記注官金健修，記事官尹行任，閣臣李崑秀，以次進伏訖。……命善曰，濟州貢馬今年停退條，明年當爲封進。而明年乃是式年，應封之馬，當爲五百八十八匹，若以停退條二百八十八匹，一時封進，則其數合爲八百七十六匹，本州覓船之難，沿路喂養之弊，亦不可不念。預先稟旨後，始可知委，故敢此仰達矣。上曰，今年條，退捧再明年，可也。【出舉條】

❖ 정조 9년(1785) 을사년 12월 18일(계사)

- 제주(濟州) 공마(貢馬)의 금년 정퇴조(停退條)와 내년 식년조(式年條)를 동시에 봉진하게 될 때의 폐단을 아뢰는 서명선(徐命善)의 계
- 을사년 12월 18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에서 들어와 진맥하여 입시할 때 약방도제조 서명선(徐命善), 제조 서유린(徐有隣), 행도승지 김상집(金尙集), 가주서 박시수(朴蓍壽),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윤행임(尹行任), 각신 이곤수(李崑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명선이 아뢰기를, “제주(濟州) 공마(貢馬)의 금년 정퇴조(停退條)를 내년에 봉진(封進)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은 식년(式年)이기 때문에 응당 봉진해야 할 말이 588필이 되어 만약에 정퇴조 288필을 동시에 봉진하게 되면 그 수의 합이 876필이 되어 본주(本州)가 배를 구하는 어려움과 연로(沿路)에서 먹이는 폐단을 또한 염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리 품지(稟旨)한 뒤에 비로소 통지할 수 있기에 감히 이렇게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조는 내후년으로 물려서 바치게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 주제어: 공마, 정퇴조, 식년, 봉진, 폐단.

❖ 乾隆 五十年 乙巳 十二月 二十七日 壬寅

- 乙巳十二月二十七日辰時, 上御重熙堂. 都政入侍時, 行都承旨金尙集, 左承旨徐鼎修, 右承旨李祖承, 左副承旨洪仁浩, 右副承旨徐有成, 假注書朴師默·金復仁, 記事官李崑秀·尹行任, 檢校直閣李秉模, 吏曹判書趙時俊, 參判沈豐之, 參議李集斗, 假郎廳馬思人[馬思仁]·金倜泳, 兵曹判書徐有隣, 參判李文源, 參議柳誼, 參知李家煥, 正郎李羽晉·權儔·李遇濟, 佐郎金鳳顯·李東植·金致光, 以次進伏訖. …… 文養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9년(1785) 을사년 12월 27일(임인)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유문양(柳文養)의 계

- 을사년 12월 27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도목정사(都目政事)에 입시할 때 행도승지 김상집(金尙集), 좌승지 서정수(徐鼎修), 우승지 이조승(李祖承), 좌부승지 홍인호(洪仁浩), 우부승지 서유성(徐有成), 가주서 박사묵(朴師默)·김복인(金復仁),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 검교직각 이병모(李秉模), 이조판서 조시준(趙時俊), 참판 심풍지(沈豐之), 참의 이집두(李集斗), 가낭청 마사인(馬思仁)·김척영(金倜泳), 병조판서 서유린(徐有隣), 참판 이문원(李文源), 참의 유의(柳誼), 참지 이가환(李家煥), 정랑 이우진(李羽晉)·권빈(權儔)·이우제(李遇濟), 좌랑 김봉현(金鳳顯)·이동식(李東植)·김치광(金致光)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유문양(柳文養)³²⁶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326) 유문양(1743~?): 본관 전주(全州). 자 경로(景老). 1777년(정조 1) 문과 급제. 승지, 응교, 대사간 역임.

1786年

(정조 10)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一月 十日 乙卯

○ 掌令朴長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월 10일(을묘)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박장설(朴長嵩)의 계

○ 장령 박장설(朴長嵩)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一月 十日 乙卯

- 司諫姜儼, 獻納申禹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월 10일(을묘)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강인(姜儼) 등의 계
- 사간 강인(姜儼), 헌납 신우상(申禹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一月 十一日 丙辰

○ 掌令朴長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월 11일(병진)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박장설(朴長嵩)의 계

○ 장령 박장설(朴長嵩)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一月 十一日 丙辰

- 獻納申禹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월 11일(병진)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신우상(申禹相)의 계
- 헌납 신우상(申禹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一月 十四日 己未

○ 持平金啓洛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월 14일(기미)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김계락(金啓洛)의 계

○ 지평 김계락(金啓洛)³²⁷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327) 김계락(1753~1815): 본관 강릉(江陵). 자 경순(景淳). 시호 문정(文靖).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대사간, 한성부좌윤, 병조참판 역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一月 十四日 己未

- 獻納趙濟魯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월 14일(기미)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조제로(趙濟魯)의 계
- 헌납 조제로(趙濟魯)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一月 十五日 庚申

- 丙午正月十五日辰時，上御宣政殿。常參次對同爲入侍時，行都承旨李文源，行左承旨朴祐源，左副承旨柳誼，右副承旨李祖承，同副承旨金翊休，記事官金孝建，假注書金祖淳，記注官金健修，記事官金鳳顯，檢校直閣徐鼎修·徐龍輔，待教李崑秀，檢校待教尹行任，以次進伏訖。……有隣曰，各貢物元貢外上下之規，有遺在則遺在取用，有加用則加給其價者，自是法例，而至於太常·內膳兩寺濟州土貢榧子·菓古·牛毛等各種，從前停封與臭載之時，無論遺在之多寡，舉皆論報，輒許給代，一開其路，未免襲謬。昨年停封各種，引例屢報，請劃給代，故不得不照例磨鍊，或折半或三分之一上下，而從今以往，有遺在則遺在中，推移取用，有加用然後，始許給代，使遺在不爲虛簿，給代不至過濫，似合事宜，故敢此仰達矣。上曰，依爲之。【出舉條】時俊等奏，府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월 15일(경신)

- 태상시(太常寺)와 내섬시(內膳寺)에 봉진(封進)을 정지하거나 취재(臭載)하였을 때 지급하는 제주(濟州) 토공물(土貢物)의 급대(給代)에 대한 조처를 제안하는 서유린(徐有隣)의 계와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조시준(趙時俊) 등의 계
- 병오년 1월 15일 진시에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으로 나아갔다. 상참과 차대가 함께 입시할 때 행도승지 이문원(李文源), 행좌승지 박우원(朴祐源), 좌부승지 유의(柳誼), 우부승지 이조승(李祖承), 동부승지 김익휴(金翊休), 기사관 김효건(金孝建), 가주서 김조순(金祖淳),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김봉현(金鳳顯), 검교직각 서정수(徐鼎修)·서용보(徐龍輔), 대교 이곤수(李崑秀), 검교대교 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각 공물(貢物)을 원공(元貢) 외에 지급하는 규정은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남아있는 것을 가져다 쓰고, 가용(加用)할 것이 있으면 그 값을 더 지급하는 것이 본래 법례(法例)입니다. 그런데 태상시(太常寺)와 내섬시(內膳寺) 두 곳의 경우는 제주(濟州)의 토공(土貢)인 비자(榧子)·표고(菓古)·우모(牛毛) 등의 여러 종류를 전로부터 봉진(封進)을 정지하거나 취재(臭載)³²⁸⁾하였을 때, 남아있는 것의 많고 적음을 막론

328) 취재(臭載): 짐을 실은 배가 가라앉거나, 배가 제때 목적지에 닿지 못해 짐이 썩는 것을 뜻한다.

하고 모두 논보(論報)하면 번번이 급대(給代)를 허락하였고, 한번 그 길이 열리게 되니 그릇된 것을 답습하는 것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봉진을 정지한 여러 종류를 전례를 들어 여러 차례 보고하여 급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규례에 비추어 마련하여 혹은 절반을 혹은 3분의 1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남아있는 것 중에서 추이(推移)하여 가져다 쓰고, 가용할 것이 있는 연후에야 급대를 허락하여 남아있는 것이 빈 장부가 되지 않게 하고, 급대를 지나치게 많게 하지 않는 것이 일의 마땅함에 합당할 듯합니다. 때문에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조시준(趙時俊) 등이 아뢰고,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토공, 태상시, 내섬시,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一月 十六日 辛酉

- 掌令韓晩裕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월 16일(신유)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홍만유(韓晩裕)의 계
- 장령 홍만유(韓晩裕)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一月 十八日 癸亥

- 正言李羽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월 18일(계해)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우진(李羽晉)의 계
- 정언 이우진(李羽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一月 二十三日 戊辰

- 正言柳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월 23일(무진)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유경(柳畊)의 계
- 정언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一月 二十四日 己巳

○ 掌令韓晩裕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월 24일(기사)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한만유(韓晩裕)의 계

○ 장령 한만유(韓晩裕)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一月 二十五日 庚午

- 李祖承, 以備邊司言啓曰, 北京回還漂民, 全羅道濟州人李應春等十一人, 康津人朴直健一人, 縣次替送, 纔已上來. 故使本司郎廳詳細問情後, 所供辭緣, 別單書入, 而今無留置更問之事. 下去時分付沿路各道, 使之善爲饋食, 所騎刷馬次次替給之意, 亦爲分付, 何如? 傳曰, 許多民命之生還, 極爲奇幸, 分付賑廳, 優給糧資. 仍令嚴飭沿路, 次次給糧, 處付各該地方〈官〉.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월 25일(경오)

- 북경(北京)에서 돌아온 표류민(漂流民)들에 대한 진휼을 청하는 비변사의 초기
- 이조승(李祖承)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북경(北京)에서 돌아온 표류민(漂流民)으로 전라도 제주인(濟州人) 이응춘(李應春) 등 11인, 강진인 박직건(朴直健) 1인이 현에서 차례 차례 교대하며 보내어 이제 막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본사(本司) 낭청으로 하여금 자세히 문정(問情)한 뒤에 공술한 내용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였고 지금은 남겨두어 다시 문정할 일이 없습니다. 돌아갈 때 연로(沿路)의 각 도(道)에 분부하여 음식을 잘 먹이도록 하고, 타고 가는 썰마(刷馬)를 차례대로 교대하여 보내라는 뜻을 또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허다한 백성의 목숨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매우 다행한 일이다. 진휼청에 분부하여 양식과 노자를 넉넉하게 지급하게 하고, 이어서 연로에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차례대로 식량을 지급하라고 해당 지방에 교부(交付)하라.”라고 하였다.³²⁹⁾

△ 주제어: 제주인, 표류민, 이응춘, 진휼.

329)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10년 1월 29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一月 二十七日 壬申

- 李祖承, 以賑恤廳言啓曰, 因傳教, 北京回還漂民全羅道濟州人李應春等十一人, 康津人朴直健一人合十二人, 回還糧資各米三斗式從優題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월 27일(임신)

- 북경(北京)에서 돌아온 표류민(漂流民)들에게 쌀 3말씩을 제급(題給)하겠다는 진휼청의 초기
- 이조승(李祖承)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전교로 인하여 북경(北京)에서 살아 돌아온 표류민(漂流民) 전라도 제주인(濟州人) 이응춘(李應春) 등 11인, 강진인 박직건(朴直健) 1인 합 12인에게 돌아갈 때의 양식과 노자로 쌀 3말씩을 넉넉하게 제급(題給)³³⁰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인, 표류민, 이응춘, 진휼.

330) 제급(題給): 관에서 내주라고 지시하는 문서를 써서 주는 것.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十一日 乙酉

- 李敬一, 以義禁府言啓曰, 議啓判付內, …… 李昌順, 濟州牧爲奴, …… 命下矣. …… 李昌順, 全羅道濟州牧爲奴, …… 而已判付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 敢啓. 傳曰, 知道. 沿路別定將率[卒]押送, 及到配後, 嚴加防戢等事, 卿等, 取見刑曹草記批旨, 申飭各該道臣處, 都事及羅將下去時, 沿路萬一作弊, 當廉問重繩, 亦自本道, 各別禁飭之意, 卽爲行會, 可也.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11일(을유)

- 이창순(李昌順)을 제주목(濟州牧)의 노(奴)로 삼아 배소(配所)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초기
- 이경일(李敬一)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의계(議啓)³³¹⁾를 판부(判付)한 내용에 〈중략〉 이창순(李昌順)을 제주목(濟州牧)의 노(奴)로 삼으라고 〈중략〉 명을 내렸습니다. 〈중략〉 이창순을 전라도 제주목의 노로 삼고 〈중략〉 이미 판부한 내용으로 죄목을 갖추어 규례대로 본부(本府)의 나장을 보내어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뜻을 〈중략〉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연로(沿路)에서 별도로 장졸을 정하여 압송하고, 배소에 도착한 뒤에 엄히 방지하는 등의 일을 경들은 형조의 초기(草記)에 대한 비지(批旨)를 가져다 보고 각 해당 관찰사에게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라. 도사와 나장이 내려갈 때 연로에서 만에 하나 폐단을 일으키면 마땅히 엄문(廉問)하여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또한 본도(本道)에서 각 별히 금칙(禁飭)하는 뜻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창순, 제주목, 배소, 압송.

331) 의계(議啓): 임금이 명령한 일을 신하들이 의논하여 상주(上奏)하는 것.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十一日 乙酉

- 義禁府啓目, 以鞫廳議啓, 判付知道. 此獄根柢, 惟在德夏, 而德夏既已物故, 泰守·漢敬, 亦伏結案取服, 效忠杖斃, 到今, 別無更覈之處, 宜卽分等酌決, 議啓論列, 大體俱有意見, 竝依此施行. …… 李昌順濟州牧爲奴,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11일(을유)

- 이창순(李昌順)을 제주목(濟州牧)의 노(奴)로 삼겠다는 의금부의 계목
- 의금부가 올린 계목(啓目)에, “국청(鞫廳)에서 올린 의계(議啓)에 대해 판부(判付)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옥사의 근저는 오직 우덕하(禹德夏)인데 우덕하는 이미 물고되었고, 이태수(李泰守)와 유한경(劉漢敬) 또한 결안(結案)을 자백받았으며, 손효충(孫效忠)은 장형(杖刑)으로 죽어서 지금은 별도로 다시 조사할 곳이 없으니, 즉시 등급을 나누어 참작하여 처벌하되, 의계에 논열(論列)한 것이 대체로 모두 일리가 있으니 모두 이대로 시행하게 하십시오. <중략> 이창순(李昌順)을 제주목(濟州牧)에 노(奴)로 삼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략>.

△ 주제어: 이창순, 제주목.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十二日 丙戌

- 以全羅監司狀啓，靈巖郡漂到異國船問情事，傳于李敬一曰，柔遠人交隣國之誼，竝姑舍，是恕視其萬死餘喘，匍匐來泊，不惟不卽來告，乃反極力逐送，若無更泊楸<子>島之舉，則皆將全船湮沒於大洋，黑山島屯長輩所爲，萬萬駭痛，彼人以我國紀綱，將以爲如何乎？令道臣，查出屯長姓名，星火捉來，各別嚴刑取招狀聞，該別將，不可罷拿而止，本道陸地定配，地方官亦豈可只令拿處？爲先罷黜，仍令該府拿問嚴處，漂人到泊，前後何限，而黑山島屯長，則恣意驅逐，楸子島屯長則輕先出送，俱是前所未聞之舉，而始不能察飭，又不知警動，狀辭論勘，太涉竝軟，此道伯之如是矇然，曾所不料，監司李在學爲先越俸一等，後勿如是之意，令廟堂措辭，嚴飭行會，政官待明朝牌招開政，守令·邊將之代，各別擇差下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12일(병술)

- 영암군(靈巖郡)에 표도(漂到)한 이국선(異國船)의 처리를 잘못된 추자도(楸子島) 둔장(屯長) 등을 제대로 논감(論勘)하지 못한 전라감사 이재학(李在學)을 월봉(越俸)하라는 등의 전교
- 전라감사의 장계에 영암군(靈巖郡)에 표도(漂到)한 이국선(異國船)을 문정(問情)한 일에 관하여 이경일(李敬一)에게 전교하기를, “먼 지방의 사람을 회유하고 이웃 나라와 교제하는 정의(情誼)를 모두 잠시 그만두더라도 이는 만 번 죽었다가 살아남은 목숨을 팔시하는 것이다. 기다시피 들어와 정박한 것을 즉시 와서 보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극력으로 쫓아 보냈으니, 만약에 추자도(楸子島)에 다시 정박하는 일이 없었다면 모두 장차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대양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흑산도(黑山島) 둔장(屯長)들의 소행이 정말로 통탄스럽다. 저들이 우리나라의 기강을 가지고 장차 무어라 여기겠는가? 감사로 하여금 둔장의 성명을 조사해 내고 성화같이 잡아와서 각별히 엄형을 가하여 공초(供招)를 받아서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해당 별장(別將)을 파직하여 잡아다 신문하는 데에 그칠 수가 없다. 본도(本道) 육지에 정배하라. 지방관 또한 어찌 나처(拿處)³³²⁾만 하겠는가? 우선 파출(罷黜)하고 이어서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신

332) 나처(拿處):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치함.

문하여 엄치 처단하게 하라. 표류인이 정박한 것이 전후로 얼마나 많았는데, 흑산도 둔장은 멋대로 쫓아냈고, 추자도 둔장은 경솔하게 먼저 내보냈으니 모두가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처음에는 살펴 신척하지 못했고, 또 경각심을 알지도 몰랐다. 장계에서 논감(論勘)³³³⁾한 것이 너무 모두가 가볍다. 이 감사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줄은 일찍이 생각하지도 못했었다. 감사 이재학(李在學)을 우선 월봉(越俸) 1등³³⁴⁾하고, 이후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의정부로 하여금 글을 지어 엄히 단단히 타일러 통보하게 하라. 정관(政官)은 내일 아침을 기다려 패초(牌招)하여 개정(開政)하고 수령과 변장의 후임은 각별히 가려서 차임하여 보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³³⁵⁾

△ 주제어: 이국선, 표도, 추자도, 둔장.

333) 논감(論勘): 죄의 경중을 따져서 판정함.

334) 월봉(越俸) 1등: 등(等)은 1개월로, 녹봉 1개월분을 건너뛰고 지급하지 않는 벌.

335)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10년 2월 12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十二日 丙戌

- 掌令洪樂恒, 持平宋煥德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12일(병술)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홍낙항(洪樂恒)의 계
- 장령 홍낙항(洪樂恒)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十二日 丙戌

- 大司諫朴天行, 司諫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12일(병술)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박천행(朴天行) 등의 계
- 대사간 박천행(朴天行), 사간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十三日 丁亥

- 掌令洪樂恒, 持平宋煥德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13일(정해)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홍낙항(洪樂恒) 등의 계
- 장령 홍낙항(洪樂恒), 지평 송환덕(宋煥德)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十三日 丁亥

- 大司諫朴天行, 司諫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13일(정해)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대사간 박천행(朴天行) 등의 계
- 대사간 박천행(朴天行), 사간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十三日 丁亥

- 丙午二月十三日卯時，上御重熙堂。左承旨入侍時，左承旨徐鼎修，假注書金祖淳，記事官金鳳顯·李崑秀，以次進伏。上曰，兵曹判書入侍。賤臣承命出，與徐有隣偕入進伏。有隣曰，頃因訓練僉正李潤集所懷，楸子島別將變通事批旨，有令兵曹，以有根着伶俐解事人差送事，嚴飭諸道之命，旋因全羅監司異國船漂到時，本島別將及地方官請罪狀啓，特下傳教，如有募民峙穀之道，島將陞作實別將，似合事宜，令廟堂，論理草記稟處事，命下矣。本島以彈丸小島，處於大洋，逆孽之竄配居多，漂船之來泊頻仍，防守之道，檢察之方，不輕而重，則本郡將校差遣，事面極涉苟簡，及今變通，在所不已，而若欲置實別將，略備官長體貌，則地方之爲幾何，其他設倉募民之道，不可不詳探後舉行，分付道臣，別遣摘奸，利害便否，論理狀聞後，更爲稟處，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13일(정해)

- 추자도(楸子島)에 별장(別將)을 변통하는 일에 대해 별도로 적간(摘奸)한 뒤에 장계로 보고하여 품처(稟處)하기를 청하는 병조판서 서유린(徐有隣)의 계
- 병오년 2월 13일 묘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좌승지가 입시할 때 좌승지 서정수(徐鼎修), 가주서 김조순(金祖淳),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이곤수(李崑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판서를 입시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가 서유린(徐有隣)과 함께 들어와 엎드렸다. 서유린이 아뢰기를, “지난번 훈련원 첨정 이윤집(李潤集)의 소회(所懷)로 인하여 추자도(楸子島) 별장(別將)을 변통하는 일에 대한 비지(批旨)에 병조로 하여금 근본이 착실하고 영리하며 사리에 밝은 사람으로 차송(差送)하도록 제도(諸道)에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곧바로 전라감사가 이국선(異國船)이 표도(漂到)했을 때 본도(本島)의 별장과 지방관의 죄를 청하는 장계로 인하여 특별히 전교를 내려, ‘만약에 백성을 모집하고 곡식을 비축할 방도가 있다면 섬의 별장을 승진시켜 실별장(實別將)으로 삼는 것이 일의 마땅함에 합당할 것 같으니 의정부로 하여금 이치를 논하여 초기(草記)로 품처하게 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본도는 탄환같이 작은 섬으로 대양에 처해 있어서 역적들이 찬배(竄配)되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표류한 배의 정박이 빈번한 곳이라 방수(防守)하는 방법과 검찰(檢察)하는 방법을 가벼이 해서는 안되고 신중해야 하

니 본군(本郡)의 장교를 차견(差遣)하는 것은 일의 체모에 있어 매우 구차합니다. 지금에 이르러 변통하는 것은 부득이 해서인데, 만약에 실별장을 두고자 한다면 관장(官長)의 체모를 대략 갖추어야 할 것이니, 지방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그 밖에 창고를 설치하고 백성을 모으는 방법을 자세히 살핀 뒤에 거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관찰사에게 분부하여 별도로 적간(摘奸)하는 사람을 파견하여 이로움과 해로움, 편리와 불편함을 이치를 논하여 장계로 보고한 뒤 다시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원대로 하라.”라고 하였다.³³⁶⁾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추자도, 별장, 변통, 실별장.

336)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10년 2월 13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十五日 己丑

- 丙午二月十五日酉時, 上御重熙堂. 承旨入侍時, 左副承旨趙衍德, 假注書金祖淳, 記注官金健修, 記事官李崑秀, 以次進伏訖. 上命承旨讀公事. 衍德讀訖, 以濟州牧使唐柚子進上船隻淹傷事狀啓, 命書傳教曰, 一船人物, 雖免淹沒, 此外船隻之無事到泊, 有未可知, 貢果之中路臭載, 猶屬餘事, 自該牧, 各別搜訪諸船去就, 詳探狀聞事, 回諭. 以濟州牧使藿船致敗人物淹死狀啓, 命書傳教曰, 纔以橘船漂失事, 有措辭下諭, 而際見本牧狀本, 藿船致敗, 人物致傷, 至於十人之多, 聞極驚慘, 不能慎風發送之罪, 在所難免, 該牧使推考, 致死人原恤典外, 身役米布, 竝蕩減, 以示朝家矜念之意. 仍令嚴飭, 期於搜拯, 待畢拯, 形止狀聞事, 竝令廟堂, 措辭行會. 衍德書訖. 命退, 承史以次退出.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15일(기축)

- 바다에 침몰하여 상(傷)한 당유자(唐柚子) 진상선의 행방을 자세히 탐문하여 장계로 보고하도록 회유(回諭)하라는 전교와 미역 실은 배가 침몰하여 죽은 이들에 대해恤典(恤典)하라는 傳教
- 병오년 2월 15일 유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승지가 입시할 때 좌부승지 조연덕(趙衍德), 가주서 김조순(金祖淳), 기주관 김건수(金健修), 기사관 이곤수(李崑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승지에게 명하여 공사(公事)를 읽게 했다. 조연덕이 읽기를 마쳤다.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당유자(唐柚子) 진상선이 바다에 침몰하여 상(傷)한 일로 올린 장계에 대해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한 척의 배에 탄 사람은 비록 익사를 면했지만 이 밖의 배가 무사히 정박했는지 알 수 없다. 공과(貢果)가 중도에서 썩고 상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에 속한다. 해당 목(牧)에서 각별히 배들이 간 곳을 자세히 탐문하여 장계로 보고하도록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제주목사가 미역을 실은 배가 침몰하여 사람들이 익사한 것을 보고한 장계에 대해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³³⁷⁾, “방금 굴을 실은 배가 표류한 일로 글을 지어 하유하였는데, 이제 본목(本牧)의 장본(狀本)을 보니, 미역을 실은 배가 침몰하여 사람이 상한 것이 10인에 이른다고 한다. 들으니 대단히 놀랍고 참담하다. 바람을 신중히 살피지 않고 떠나보낸 죄를

337)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10년 2월 1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면하기 어려운 바가 있다. 해당 목사를 추고(推考)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원래의 흘전(恤典) 외에 신역(身役)의 미포(米布)를 모두 탕감하여 조정이 불쌍이 여기고 염려하는 뜻을 보여주도록 하라. 이어서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기필코 시신을 찾아내어 건지고, 그 상황의 전말을 장계로 보고하고, 아울러 의정부로 하여금 글을 지어 통보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조연덕이 쓰기를 마쳤다. 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 나왔다.

△ 주제어: 당유자, 진상선, 미역, 침물, 익사, 흘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十八日 壬辰

○ 持平洪聖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18일(임진)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홍성연(洪聖淵)의 계

○ 지평 홍성연(洪聖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十八日 壬辰

- 司諫兪彥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18일(임진)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유언수(兪彦脩)의 계
- 사간 유언수(兪彦脩)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十九日 癸巳

○ 持平洪聖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19일(계사)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홍성연(洪聖淵)의 계

○ 지평 홍성연(洪聖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十九日 癸巳

- 司諫兪彥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19일(계사)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유언수(兪彦脩)의 계
- 사간 유언수(兪彦脩)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二十一日 乙未

- 徐龍輔, 以備邊司言啓曰, 卽見全羅監司李在學狀啓, 則以爲異國人四名, 漂到於靈巖郡楸子島鼠浦里前洋, 而詳細問情, 則俱是大清國登州府榮城縣捕魚私船之漂流者, 而同類九人, 捕魚次登船, 五人下陸喫飯, 四人守網中流, 忽遇西風, 果爲漂流, 船雙破傷, 願從旱路還鄉云, 而移接公廨一節, 待朝家處分爲辭矣. 今此漂人等, 留住間善爲移接於該邑公廨, 船隻旣已破傷, 依其願旱路還送, 而衣袴自右水營, 已爲造給, 供饋禁雜人等節, 纔因特教行會, 則今不必更爲指揮. 護送一款, 不容少緩, 分付所經各道道帥臣處, 定差員以刷馬, 次次交替, 領來京城, 轉致灣府, 以爲入送鳳城之地, 上京時, 沿路禁雜人看護供饋等事, 各別嚴飭, 以示朝家優恤之意. 物件中可以運致者, 亦以刷馬替運, 卜重難運者, 依例從厚折價以給. 至於破傷船隻, 彼人所見處, 亦令依例燒火. 漢學譯官一人, 令該院擇定, 給馬下送, 更爲問情後, 與差員眼同領來. 咨文, 令槐院預爲撰出, 別定禁軍騎撥, 下送于灣府, 使之傳給鳳城將處, 以爲轉致北京之地, 何如? 傳曰, 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21일(을미)

- 표도(漂到)한 이국인을 요청에 따라 육로로 환송하는 방법에 대한 비변사의 초기
- 서용보(徐龍輔)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전라감사 이재학(李在學)의 장계를 보니, ‘이국인(異國人) 4명이 영암군 추자도(楸子島) 서포리(鼠浦里) 앞 바다에 표도(漂到)하여 상세하게 문정(問情)했더니, 모두가 대청국(大清國)의 등주부(登州府) 영성현(榮城縣)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선(私船)이 표류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9인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에 올랐는데, 5인은 육지에 내려 밥을 먹고 4인은 그물을 지키며 바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서풍을 만나 표류하여 배가 부서졌으니 육로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공해(公廨)로 옮기는 일에 대해 조정의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표도인들은 머무르는 동안에 해당 읍의 공해로 잘 옮기고, 배는 이미 부서졌으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육로로 돌려보내되, 의복은 우수영에서 이미 만들어 지급하였고, 음식을 제공하고 잡인을 금하는 등의 일은 이제 막 특교(特教)로 인하여 통보하였으니, 지금은 다시 지휘할 필요는 없습니다. 호송하는 일은 조금도 늦추지 말고 경로에 있는 각 도(道)의 도수신(道帥臣)³³⁸에게 차원(差員)을 정하여 쇄마(刷馬)로 차례 차례 교대하여 경성(京城)으로 데려오게 했다가 의주부(灣府)로

옮겨서 봉성(鳳城)으로 들여보내게 하십시오. 상경할 때 연로(沿路)에 잡인을 금하고 돌보아 살피고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일은 각별히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조정에서 넉넉히 구휼하는 뜻을 보이십시오. 물건 중에 운반해 갈 수 있는 것은 또한 쇠마로 교대하며 옮기고, 무거워서 운반하기 어려운 것은 규례대로 후하게 값을 매겨 지급하십시오. 부서진 배인 경우는 또한 규례대로 불태우게 하십시오. 한학(漢學) 역관 1인을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가려 정하여 말을 주어 내려보내어 다시 문정하게 한 후 차원과 동행하여 데리고 오게 하십시오. 자문(咨文)³³⁹⁾은 승문원에서 미리 지어두게 했다가 별도 금군을 정하여 기발(騎撥)로 의주부로 내려보내어 봉성장(鳳城將)에게 전달하여 북경(北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³⁴⁰⁾

△ 주제어: 이국인, 추자도, 표도, 육로, 환송.

338) 도수신(道帥臣): 관찰사, 병마사(兵馬使),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의 총칭.

339) 자문(咨文): 국왕이 중국의 외교 관련 관부와 주고받은 외교 문서의 서식.

340)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10년 2월 21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二十二日 丙申

○ 丙午二月二十二日辰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鄭存謙，判中樞府事徐命善，兼工曹判書具善復，行禮曹判書李在協，行戶曹判書趙琰，行右參贊鄭昌聖，行副司直徐有寧·金履素·鄭好仁·徐有慶·徐浩修，刑曹判書李在簡，行副司直李柱國，開城留守尹塾，行副司直趙時俊，行都承旨金尙集，行副司直徐有大，刑曹參判洪秀輔，兵曹參判蔡弘履，吏曹參判李秉模，行副司直沈豐之，執義曹允大，掌令李鼎運，正言李羽晉，校理柳孟養，副修撰李尙度，右副承旨趙衍德，假注書金祖淳，事變假注書李儒修，記事官李崑秀·尹行任，以次進伏。……羽晉奏院前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出學條】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22일(병신)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이우진(李羽晉)의 계

○ 병오년 2월 22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판증추부사 서명선(徐命善), 겸공조판서 구선복(具善復), 행예조판서 이재협(李在協), 행호조판주 조준(趙琰), 행우참찬 정창성(鄭昌聖), 행부사직 서유녕(徐有寧)·김이소(金履素)·정호인(鄭好仁)·서유경(徐有慶)·서호수(徐浩修), 형조판서 이재간(李在簡),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개성유수 윤숙(尹塾), 행부사직 조시준(趙時俊), 행도승지 김상집(金尙集), 행부사직 서유대(徐有大), 형조참판 홍수보(洪秀輔), 병조참판 채홍리(蔡弘履), 이조참판 이병모(李秉模), 행부사직 심풍지(沈豐之), 집의 조운대(曹允大), 장령 이정운(李鼎運), 정언 이우진(李羽晉), 교리 유맹양(柳孟養), 부수찬 이상도(李尙度), 우부승지 조연덕(趙衍德), 가주서 김조순(金祖淳), 사변가주서 이유수(李儒修),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우진이 사간원의 전계(前啓)를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二十三日 丁酉

- 李敬一, 以義禁府言啓曰, 全羅監司李在學狀啓, 據刑曹粘目內, 濟州牧使尹得達, 移本府處之事, 允下矣. 尹得達時在任所云. 依例發遣府書吏, 交代後拿來, 何如? 傳曰, 數遞可悶, 爲先從重推考, 可也.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23일(정유)

- 제주목사(濟州牧使) 윤득규(尹得達)를 잡아오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초기
- 이경일(李敬一)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감사 이재학(李在學)의 장계로 형조의 점목(粘目)³⁴¹⁾에 의거하여 제주목사 윤득규(尹得達)를 본부(本府)로 옮겨 와서 처치할 것에 대해 윤허를 내렸습니다. 윤득규는 지금 임소(任所)에 있다고 합니다. 규례대로 본부의 서리를 보내어 후임자와 교대한 후에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자주 체차(遞差)하는 것이 걱정스러우니 우선 종중추고(從重推考) 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윤득규, 종중추고.

341) 점목(粘目): 서류에 덧붙인 절목(節目)·사목(事目)·조목(條目) 등을 이르는 말.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二十四日 戊戌

- 金尙集, 以司饗院監膳提調意啓曰, 濟州牧所封貢果各品, 自十五運至十八運, 今日來到本院, 而開櫃看品, 則所封物種, 多數腐爛, 大殿進上山橘三百箇內, 腐爛爲一百三十箇. 唐柚子四十箇內, 腐爛爲二十六箇. 山橘二千八百二十箇內, 腐爛爲一千七十五箇. 王大妃殿進上山橘一千四百四十箇內, 腐爛爲五百八十五箇. 惠慶宮進上山橘一千四百四十箇內, 腐爛爲四百三十六箇. 中宮殿進上山橘一千四百箇內, 腐爛爲四百十箇. 世子宮進上山橘一千四百箇內, 腐爛爲六百九十箇. 雖是越海之物, 進上事體, 何等至重, 而腐爛之數, 如是夥然, 循例捧入, 極爲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仍爲捧入.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24일(무술)

-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封進)한 공과(貢果)의 다수가 썩어 문드러져 봉입(捧入)하기 매우 온당치 않으니, 어떻게 할지 여쭙는 사옹원의 초기
- 김상집(金尙集)이 사옹원 감선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封進)하는 공과(貢果) 각품(各品)이 15운(運)에서 18운까지 오늘 본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고 간품(看品)해 보니 봉진한 물종 다수가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대전(大殿)에 진상하는 금귤(金橘) 300개 가운데 썩어 문드러진 것이 130개, 당유자(唐柚子) 40개 가운데 썩어 문드러진 것이 26개, 산귤(山橘) 2,820개 가운데 썩어 문드러진 것이 1,075개. 왕대비전(王大妃殿)에 진상하는 산귤 1,440개 가운데 썩어 문드러진 것이 585개, 혜경궁(惠慶宮)에 진상하는 산귤 1,440개 가운데 썩어 문드러진 것이 436개, 중궁전(中宮殿)에 진상하는 산귤 1,400개 가운데 썩어 문드러진 것이 410개, 세자궁(世子宮)에 진상하는 산귤 1,400개 가운데 썩어 문드러진 것이 690개입니다. 비록 이것이 바다를 건너온 물건이라고는 하지만 진상하는 일의 체모는 얼마나 지극히 중한 것입니까? 썩어 문드러진 것의 수가 이와 같이 많으니 관례에 따라 봉입(捧入)하는 것이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로 봉입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공과, 진상.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二十六日 庚子

- 有政. 吏批, 判書金魯鎮進, 參判李秉模進, 參議金宇鎮牌不進, 右副承旨趙衍德進.
…… 洪繼善爲大靜縣監.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26일(경자)

- ☐ 홍계선(洪繼善)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김노진(金魯鎭)이 나왔고, 참판 이병모(李秉模)가 나왔고, 참의 김우진(金宇鎭)은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우부승지 조연덕(趙衍德)이 나왔다. <중략> 홍계선(洪繼善)³⁴²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 주제어: 홍계선, 대정현감.

342) 홍계선(?~?): 대정현감(재임: 1786. 4.~1787. 11.), 홍양현감 역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二十六日 庚子

○ 持平洪聖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26일(경자)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홍성연(洪聖淵)의 계

○ 지평 홍성연(洪聖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二十六日 庚子

- 正言金載翼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26일(경자)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김재익(金載翼)의 계
- 정언 김재익(金載翼)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二十七日 辛丑

- 李敬一, 以司饗院監膳提調意啓曰, 濟州牧所封二月令進上, 今日來到本院, 而開櫃看品, 則各殿所封物種中, 青橘, 舉皆糜爛色變, 雖是越海之物, 莫重進上, 循例捧入, 極涉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仍爲捧入.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27일(신축)

-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封進)한 물종 중 청귤(靑橘)이 대부분 썩어 문드러져 봉입(捧入)하기 매우 온당치 않으니, 어떻게 할지 여쭙는 사옹원의 초기
- 이경일(李敬一)이 사옹원 감선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封進)하는 2월령 진상이 오늘 본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고 간품(看品)해 보니 각전(各殿)에 봉진(封進)하는 물종 중에 청귤(靑橘)이 대부분 썩어 문드러져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바다를 건너온 물건이라고는 하지만 막중한 진상이기에 관례에 따라 봉입(捧入)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로 봉입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청귤, 진상.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二十七日 辛丑

- 李敬一, 以奉常寺提調意啓曰, 濟州封進來三月令宗廟薦新青橘來到, 臣進詣看品, 則元數二百七十箇, 舉皆腐傷, 箇箇色變, 故多般淨洗, 而若多洗則至於皮脫, 小洗則變色猶復如前. 雖欲擇封, 不但無一箇可擇, 又生腐臭, 不得已全數退送. 薦獻物種, 何等至重, 而不謹封進, 有此全退, 莫重薦進, 至於闕封之境, 事未前聞, 亦極驚駭, 當該封進官濟州牧使尹得達爲先罷職, 其罪狀, 令攸司稟處, 何如? 傳曰, 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27일(신축)

- 천신(薦新)하는 청귤(靑橘)이 썩은 것과 관련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 윤득규(尹得逵)의 파직을 요청하는 봉상시의 초기
- 이경일(李敬一)이 봉상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봉진(封進)하는 다음달 3월령 종묘에 천신(薦新)하는 청귤(靑橘)이 도착하여 신이 나아가 간품(看品)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수(元數) 270개가 모두 썩어 상하여 하나하나가 색이 변해 있었기 때문에 다반(多般)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씻어 내면 껍질이 벗겨지고, 조금 씻어내면 색이 변하여 전과 같이 색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려서 봉입(封入)하려 해도 한 개도 가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썩어서 냄새가 나서 부득이 모두를 물려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헌(薦獻)하는 물종이 얼마나 지극히 중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봉진을 삼가지 않고 이처럼 모두를 물려 보내게 되어 막중한 천진(薦進)을 빠드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고, 또한 지극히 놀랍습니다. 해당 봉진관 제주목사(濟州牧使) 윤득규(尹得逵)를 우선 파직하고 그 죄상을 담당 관사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청귤, 봉진, 제주목사, 윤득규, 파직.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二十八日 壬寅

- 趙衍德, 以義禁府言啓曰, 奉常寺啓辭內, 濟州牧使尹得達爲先罷職, 其罪狀, 令攸司稟處事, 允下矣. 尹得達時在任所, 依例發遣府書吏, 交代後拿來, 何如? 傳曰, 待待命拿囚.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28일(임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윤득규(尹得達)를 잡아오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초기
- 조연덕(趙衍德)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봉사시의 계사(啓辭)에서 제주목사(濟州牧使) 윤득규(尹得達)을 우선 파직하고, 그 죄상을 담당 관사로 하여금 품치 하도록 한 일에 대해 윤허를 내렸습니다. 윤득규가 지금 임소에 있으니 규례대로 본부(本府) 서리를 보내어 신임 목사와 교대한 후에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명(待命)³⁴³을 기다려 잡아다 가두어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윤득규, 파직.

343) 대명(待命): 관원이 과실이 있을 때 처분의 명령을 기다림.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二十八日 壬寅

- 趙衍德, 以義禁府言啓曰, 因濟州牧使尹得達狀啓刑曹粘目內, 大靜前縣監朴尙春, 移本府處之事, 允下矣. 朴尙春時在任所云. 依例發遣府羅將, 交代後拿來, 何如? 傳曰, 待命拿囚.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28일(임인)

-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상춘(朴尙春)을 잡아오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초기
- 조연덕(趙衍德)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윤득규(尹得逵)의 장계에 대한 형조의 점목(粘目)으로 인하여,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상춘(朴尙春)을 본부(本府)로 옮겨 처리하도록 윤허를 내렸습니다. 박상춘이 지금 임소에 있으니 규례대로 본부 나장을 보내어 신임 현감과 교대한 후에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명(待命)을 기다려 잡아다 가두어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박상춘.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二十九日 癸卯

○ 備邊司, 以李命俊爲濟州牧使.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29일(계묘)

□ 이명준(李命俊)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비변사에서 이명준(李命俊)³⁴⁴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 주제어: 이명준, 제주목사.

344) 이명준(?~?): 제주목사(재임: 1786. 4.~1788. 3.) 역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二十九日 癸卯

- 以濟州牧使望單子，傳于趙尙鎮曰，堂堂廟堂之尊，加之受點文書事體，何如？而似此薄薄紙，所見誠不似，況濡墨輒潑，艱辛莫甚，取考久遠單子紙品，可也。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29일(계묘)

- 제주목사(濟州牧使) 망단자(望單子)의 품질과 관련하여 오래된 단자의 지품(紙品)을 가져다 살펴보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망단자(望單子)에 대해 조상진(趙尙鎭)에게 전교하기를, “당당한 의금부의 존귀함에 견주어 낙점을 받은 문서의 사체(事體)가 어떠한가? 이와 같이 얇디얇은 종이는 보는 것이 실로 변변치 못하다. 하물며 먹을 묻히면 번번히 배어 나오니 어려움이 막심하다. 오래된 단자의 지품(紙品)을 가져다 살펴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망단자, 지품.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二十九日 癸卯

- 沈豐之, 以禮曹言啓曰, 上年冬至, 濟州牧使尹得達闕封世子宮方物織毛馬粧一部代結弓獐皮五張, 及今丙午年正朝方物大殿封進弓帑筒箇四部, 結弓獐皮十五張等物, 今始上來, 依例看品內入, 而世子宮方物織毛馬粧一部, 則待冠禮封進事, 依判付啓下知委矣. 今又該牧使誤認封進, 事當還爲下送, 而亦涉有弊, 依例一體看品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29일(계묘)

-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잘못 알아서 봉진(封進)한 세자궁 방물 일체를 꺾 안으로 들이겠다는 예조의 초기
- 심풍지(沈豐之)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지난해 동지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윤득규(尹得逵)가 봉진(封進)에서 빠뜨린 세자궁 방물 직모마장(織毛馬粧) 1부(部) 대신 결궁장피(結弓獐皮) 5장과 금번 병오년 정조(正朝) 방물로 대전(大殿)에 봉진하는 궁대(弓帑)와 통개(筒箇) 4부, 결궁장피 15장 등의 물품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규례대로 간품(看品)하여 꺾 안으로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세자궁 방물 모직마장 1부는 관례(冠禮)를 기다려 봉진하도록 판부(判付)에 계하(啓下)한 대로 통보했습니다. 지금 또 해당 목사가 잘못 알아서 봉진하였습니다. 일의 처리상 마땅히 내려보내야 하겠지만 또한 폐단이 있을 것이니 규례대로 일체 간품하여 꺾 안으로 들이는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봉진, 세자궁, 방물, 직모마장.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二十九日 癸卯

- 沈豐之, 以禮曹言啓曰, 觀此濟州幼學高鳳禎等上言, 則其矣始祖高乙那與良·夫兩乙那, 踴出於漢挈山之毛興穴, 而高乙那雖統爲主於三邑之地, 良乙那爲臣, 夫乙那爲民矣. 其後良氏子孫, 不告於官, 以高夫兩姓, 敢自易位於耽羅誌, 良反居上, 高反居中, 故先王朝辛未年, 高厚翊爲名人, 駕前上言, 至下釐正之命, 其時牧使臣鄭彥儒, 先後自別之意回啓, 而尙未有稟處之舉, 未卽蒙釐正之典, 及今釐正位次事, 令該曹稟處矣. 其所爲先, 雖有所據, 海上島俗, 有難臆斷, 令該牧使, 前後事實, 更爲詳查論理狀聞後稟處, 何如? 傳曰, 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29일(계묘)

- 고을나(高乙那)와 양을나(良乙那)의 위치(位次)에 대해 제주목사(濟州牧使)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초기
- 심풍지(沈豐之)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 제주(濟州) 유학 고봉정(高鳳禎) 등의 상언(上言)을 보니, 그의 시조 고을나(高乙那)가 양(良)·부(夫) 두 을나와 함께 한라산의 모흥혈(毛興穴)에서 솟아 나왔고, 고을나가 비록 삼읍에서 통솔하여 우두머리가 되어 양을나를 신하로 삼고, 부을나를 백성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 양씨의 자손이 관에 고하지 않고 고·부 양성(兩姓)을 가지고 탐라지(耽羅誌)에서 감히 위치(位次)를 바꾸어 양(良)이 도리어 거상(居上)이 되고, 고(高)가 도리어 거중(居中)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선왕조 신미년에 고후익(高厚翊)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거동할 때 수레 앞에서 글을 올려 바로 잡으라는 명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목사 정언유(鄭彦儒)³⁴⁵가 앞뒤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뜻으로 회계(回啓)하였지만 품처하는 일이 없어서 즉시 바로 잡는 은전을 입지 못하였기에 지금 위치를 바로 잡도록 해조(曹稟)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먼저가 되는 것이 비록 근거할 바가 있지만 섬의 풍속은 억측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목사로 하여금 전후의 사실을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게 한 뒤에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 위치.

345) 정언유(1687~1764): 본관 동래(東萊). 자 임종(林宗). 호 오현(迂軒). 1721년(경종 1) 문과 급제. 제주목사(재임: 1749. 10.~1751. 8. 파직) 역임. 영해부사, 호조참판 역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二十九日 癸卯

- 丙午二月二十九日辰時，上御誠正閣。抄啓文臣課講入侍時，行都承旨沈豐之，右副承旨李夔，記事官金孝建，記注官承膺祚，記事官金鳳顯，以次進伏訖。……存謙曰，濟州牧使薦望，以左承旨李亨元，首擬以入矣。今聞其親年已過七十云，改擬以入，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29일(계묘)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천망(薦望)에 수망(首望)으로 의망(擬望)된 이형원(李亨元)의 부모가 70세가 넘었으니 의망을 고쳐서 들이기를 청하는 정존겸(鄭存謙)의 계
- 병오년 2월 29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초계문신(抄啓文臣)의 과강(課講)에 입시할 때 행도승지 심풍지(沈豐之), 우부승지 이기(李夔), 기사관 김효건(金孝建),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정존겸(鄭存謙)이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천망(薦望)에 좌승지 이형원(李亨元)을 수망(首望)으로 의망(擬望)하여 들였습니다. 지금 들으니 그의 부모가 이미 70세가 넘었다고 하니, 의망을 고쳐서 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 주제어: 제주목사, 천망, 이형원, 수망.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二月 三十日 甲辰

○ 掌令柳孟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2월 30일(갑진)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유맹양(柳孟養)의 계

○ 장령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三月 三日 丁未

- 有政. 吏批, 判書金魯鎮進, 參判李秉模進, 參議未差, 右副承旨趙衍德進. …… 濟州牧使單李命俊,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3월 3일(정미)

- ☐ 이명준(李命俊)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단부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김노진(金魯鎭)이 나왔고, 참판 이병모(李秉模)가 나왔고, 참의는 아직 차정(差定)하지 않았고, 우부승지 조연덕(趙衍德)이 나왔다.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이명준(李命俊)을 단부(單付)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이명준.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三月 四日 戊申

- 以濟州牧使啓本，老人歲饌題給事，傳于沈豐之曰，耽羅，古所稱壽域，而所管三邑，幅員與元戶，不下於關東·海西之半。觀此狀本，抄報之數，兩邑各只二人，大靜一邑，亦不舉論，事甚可訝，更爲詳探，俾無一人遺漏之弊。曾經實職人，年八十以上，士庶年九十以上，曾有加資之命，亦卽詳查抄啓。每歲首加抄一款，亦依新定式馳聞事，回諭。

❖ 정조 10년(1786) 병오년 3월 4일(무신)

- 노인들에게 세찬(歲饌)을 제급(題給)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주(濟州) 삼읍에서 보고한 수가 너무 적으니 다시 상세히 탐문하게 하라는 등의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계본에 노인들에게 세찬(歲饌)을 제급(題給)하는 일과 관련하여 심풍지(沈豐之)에게 전교하기를, “탐라(耽羅)는 옛날에 이른바 장수하는 지역으로, 관할하는 삼읍의 넓이와 원호(元戶)가 관동(關東)과 해서(海西)의 절반에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 장본(狀本)을 보니 뽑아 보고한 수가 두 읍은 각각 2인 뿐이고, 대정(大靜) 한 읍은 또한 거론한 것이 없다. 일이 매우 의아하다. 다시 상세히 탐문하여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 실직을 지냈던 사람으로 80세 이상인 자와 사서인(士庶人)으로 90세 이상인 자는 일찍이 가자(加資)하는 명이 있었다. 또한 즉시 상세히 조사하여 초계(抄啓)하라. 정월마다 추가로 더 가려뽑는 한 조목도 새로운 정식(定式)에 의거하여 속히 보고하도록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노인, 세찬, 제급, 장수, 가자.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三月 六日 庚戌

- 以濟州牧使啓本, 山屯馬摠數成籍事, 傳于趙衍德曰, 近來牧場, 未見驟牝之效, 今見狀本, 剩數此多, 此等之人, 合有激勸之道. 山馬監牧官金慶林, 特爲加資, 仍令察任事, 自本寺回諭.

❖ 정조 10년(1786) 병오년 3월 6일(경술)

- 말의 번식에 기여한 산마감목관 김경림(金慶林)을 특별히 가자(加資)하고 그대로 직임을 살피도록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계본에 산둔마(山屯馬) 총수에 대해 성적(成籍)³⁴⁶한 일과 관련하여 조연덕(趙衍德)에게 전교하기를, “근래 목장이 말의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지금 장본(狀本)을 보니 남는 수가 이렇게 많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마땅히 격려하고 권장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산마감목관 김경림(金慶林)을 특별히 가자(加資)하고 그대로 직임을 살피도록 본시(本寺)에서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산둔마, 산마감목관, 김경림.

346) 성적(成籍): 대장(臺帳)을 만들. 원안(原案)을 만들.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三月 六日 庚戌

- 趙衍德, 以備邊司言啓曰, 靈巖楸子島漂漢人, 不日當上來矣. 入京後, 接置于南別宮, 別定禁軍一人, 兩捕廳軍官各一人, 領率衛軍捕軍, 各別防守. 供饋等節, 着實舉行. 從前漂人之入京後, 所着衣服, 每有更爲造給之事, 令各該司考例舉行. 本司郎廳一員, 解事各差備譯官, 亦爲定送, 依例更爲問情, 姑留數三日後, 令領來譯官, 仍爲領送鳳城, 而定差員, 次次領往事, 分付各該道臣, 亦令義州府, 預先馳通于城將處, 以爲渡江後護送之地, 何如? 傳曰, 各別嚴飭, 斯速領付, 可也.

❖ 정조 10년(1786) 병오년 3월 6일(경술)

□ 추자도(楸子島)에 표도(漂到)한 한인(漢人)의 처리에 대한 비변사의 초기

- 조연덕(趙衍德)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영암 추자도(楸子島)에 표도(漂到)한 한인(漢人)이 며칠 내로 올라올 것입니다. 서울에 들어온 후에는 남별궁(南別宮)에 접치(接置)하고, 금군(禁軍) 1인과 두 포도청의 군관 각 1인을 별도로 정하여 위군(衛軍)과 포군(捕軍)을 거느리고 각별히 방수(防守)하도록 하며,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일은 착실히 거행하게 하십시오. 종전에 표도한 사람이 서울에 들어온 후에는 입는 의복을 매번 만들어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전례를 살펴 거행하게 하십시오. 본사(本司) 낭청 1원과 사리에 밝은 각 차비역관(差備譯官)을 또한 정해 보내서 규례대로 다시 문정(問情)하고, 일단 수삼 일을 머물게 한 뒤 데리고 온 역관으로 하여금 그대로 봉성(鳳城)으로 영송(領送)하게 하되, 차원(差員)을 정하여 차례대로 데리고 가도록 각 해당 관찰사에게 분부하고, 또한 의주부(義州府)로 하여금 미리 성장(城將)에게 급히 통보하여 강을 건넌 후에 호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각별히 엄히 단단히 타일러 속히 거느리고 가서 넘겨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³⁴⁷⁾

△ 주제어: 추자도, 표도, 한인.

347)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10년 3월 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三月 七日 辛亥

○ 掌令柳孟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3월 7일(신해)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장령 유맹양(柳孟養)의 계

○ 장령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三月 七日 辛亥

- 司諫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3월 7일(신해)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이제만(李濟萬)의 계
- 사간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三月 九日 癸丑

- 李亨元, 以漢城府言啓曰, 昨年獻民數時, 濟州三邑民數, 未及上來, 故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草記蒙允矣. 今始上來獻民數冊中, 添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3월 9일(계축)

- 제주(濟州) 삼읍 백성의 수를 첨록(添錄)하여 들이겠다는 한성부의 초기
- 이형원(李亨元)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작년 백성의 수를 바칠 때 제주(濟州) 삼읍 백성의 수가 미쳐 올라오지 않아서 그것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추 후에 첨록(添錄)할 뜻으로 초기(草記)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지금 비로소 올라왔으니 백성의 수를 바치는 책 가운데 첨록하여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삼읍, 백성의 수, 첨록.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三月 十日 甲寅

○ 丙午三月初十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議政鄭存謙, 行司直金華鎮·李命植, 行吏曹判書金魯鎮, 行禮曹判書李在協, 行戶曹判書趙琰, 行右參贊鄭昌聖, 兵曹判書徐有隣, 行司直金履素·徐有寧, 刑曹判書李在簡, 行副司直李柱國·趙時俊, 工曹參判尹蓍東, 刑曹參判洪秀輔, 行都承旨沈豐之, 禮曹參判金思穆, 司諫李濟萬, 獻納李師濂, 正言金載翼, 掌令柳孟養·權世規, 持平洪聖淵, 校理申馥, 修撰成種仁, 右副承旨李夔, 假注書金祖淳, 事變假注書金膺著, 記注官承膺祚·金健修, 以次進伏訖. …… 濟萬等奏院前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出學條】

❖ 정조 10년(1786) 병오년 3월 10일(갑인)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사간 이제만(李濟萬)의 계

○ 병오년 3월 1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행사직 김화진(金華鎮)·이명식(李命植), 행이조판서 김노진(金魯鎮), 행예조판서 이재협(李在協), 행호조판서 조준(趙琰), 행우참찬 정창성(鄭昌聖), 병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행사직 김이소(金履素)·서유녕(徐有寧), 형조판서 이재간(李在簡),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조시준(趙時俊), 공조참판 윤시동(尹蓍東), 형조참판 홍수보(洪秀輔), 행도승지 심풍지(沈豐之), 예조참판 김사목(金思穆), 사간 이제만(李濟萬), 헌납 이사렴(李師濂), 정언 김재익(金載翼), 장령 유맹양(柳孟養)·권세규(權世規), 지평 홍성연(洪聖淵), 교리 신복(申馥), 수찬 성종인(成種仁), 우부승지 이기(李夔), 가주서 김조순(金祖淳), 사변가주서 김응시(金膺著), 기주관 승응조(承膺祚)·김건수(金健修)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제만 등이 사간원의 전계(前啓)를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三月 十一日 乙卯

- 李夔啓曰, 因兵曹啓目, 安州牧使, 以安北縣監降號, 大靜縣監所佩兵符, 失火燒燼, 兩邑兵符, 令本院改造下送事, 允下矣. 兵符既已新造, 安北縣監, 大靜縣監所佩兵符, 各有一隻, 監營及所管鎮營分上各左二隻, 定禁軍下送, 舊兵符收聚上送, 以爲燒火事, 平安監司, 全羅監司處, 下諭, 何如? 傳曰, 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3월 11일(을묘)

- ☐ 대정현감(大靜縣監) 등의 병부(兵符)가 새로 만들어졌으니 금군(禁軍)을 내려보내어 구 병부를 거두어 모아 불태우도록 전라감사 등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청하는 이기(李夔)의 계
-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병조의 계목(啓目)으로 인하여 안주목사가 안북현감으로 읍호가 강등되었고, 대정현감(大靜縣監)이 차는 병부(兵符)가 화재로 불에 타버렸으니 두 읍의 병부를 본원(本院)으로 하여금 개조(改造)하여 내려보내도록 윤허를 내렸습니다. 병부가 이미 새로 만들어져서 안북현감과 대정현감이 차는 병부를 각각 1척(隻)을 가지고 있고, 감영 및 주관하는 진영(鎭營)이 각 좌부(左符) 2척을 나누어 올려보냈으니, 금군(禁軍)을 정하여 내려보내어 구 병부를 거두어 모아 올려 보내 불태우도록 평안감사와 전라감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병부.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三月 十二日 丙辰

- 李泰永, 以備邊司言啓曰, 今日靈巖楸子島漂人入來後, 使本司郎廳及譯官問情, 則與領來譯官鄭思玄問情時問答, 別無異同. 故正書入啓, 而漂人則留一宿後, 明日發送之意, 敢啓. 傳曰, 嚴飭沿路, 着意供饋, 優給糧資, 各別禁雜人, 可也.

❖ 정조 10년(1786) 병오년 3월 12일(병진)

- 추자도(楸子島)에 표도(漂到)한 사람에 대한 문정(問情) 결과 거느리고 온 역관이 문정할 때의 문답과 다름이 없으니 하룻밤을 묵게 한 뒤에 발송(發送)하겠다는 비변사의 초기
- 이태영(李泰永)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오늘 영암 추자도(楸子島)에 표도(漂到)한 사람이 들어온 뒤 본사(本司) 낭청 및 역관으로 하여금 문정(問情)하게 하였더니, 거느리고 온 역관 정사현(鄭思玄)이 문정할 때의 문답과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정서(正書)하여 입계(入啓)합니다. 그리고 표도한 사람은 하룻밤을 묵게 한 뒤에 내일 발송(發送)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연로(沿路)에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고, 신경써서 음식을 제공하라. 양식과 노자를 넉넉히 주고, 각별히 잡인을 금하게 하라.”라고 하였다.³⁴⁸⁾

△ 주제어: 추자도, 표도, 발송.

348)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10년 3월 11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三月 十二日 丙辰

- 丙午三月十二日辰時, 上詣春塘臺. 武科重試殿試入侍時, 行都承旨沈豐之, 左承旨李亨元, 左副承旨趙衍德, 右副承旨李夔, 同副承旨李泰永, 假注書金祖淳, 記事官金孝建, 記注官承膺祚·金健修, 直閣鄭大容, 待教李崑秀, 考官行判中樞府事徐命善, 兵曹判書徐有隣, 行副司直李敬懋, 參考官行副司直洪明浩, 行副護軍李潤禧·孫相龍, 都摠經歷李元植, 訓練僉正李潤集, 丹楓亭分所考官行判中樞府事李福源,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副司直李柱國, 行副護軍李明運, 參考官行副司直李喆模, 行副護軍任屹, 都摠經歷李亨敬, 以次侍立. …… 獻納李師濂, 正言沈銖等進前, 奏府前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出學條】

❖ 정조 10년(1786) 병오년 3월 12일(병진)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헌납 이사렴(李師濂) 등의 계
- 병오년 3월 12일 진시에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으로 나아갔다. 무과 증시전시(重試殿試)에 입시할 때 행도승지 심풍지(沈豐之), 좌승지 이형원(李亨元), 좌부승지 조연덕(趙衍德), 우부승지 이기(李夔), 동부승지 이태영(李泰永), 가주서 김조순(金祖淳), 기사관 김효건(金孝建), 기주관 승응조(承膺祚)·김건수(金健修), 직각 정대용(鄭大容), 대교 이곤수(李崑秀), 고관 행판중추부사 서명선(徐命善), 병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행부사직 이경무(李敬懋), 참고관 행부사직 홍명호(洪明浩), 행부호군 이운희(李潤禧)·손상룡(孫相龍), 도총경력 이원식(李元植), 훈련첨정 이윤집(李潤集), 단풍정분소고관 행판중추부사 이복원(李福源), 행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행부호군 이명운(李明運), 참고관 행부사직 이철모(李喆模), 행부호군 임흘(任屹), 도총경력 이형경(李亨敬)이 차례로 시립(侍立)하였다. <중략> 헌납 이사렴(李師濂), 정언 심수(沈銖)³⁴⁹⁾ 등이 앞으로 나와 사헌부의 전계(前啓)를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349) 심수(1743~?): 본관 청송(靑松). 자 사적(士積).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三月 十四日 戊午

○ 持平吳翼煥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3월 14일(무오)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지평 오익환(吳翼煥)의 계

○ 지평 오익환(吳翼煥)³⁵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350) 오익환(1754~1797): 본관 보성(寶城). 자 봉약(鵬若). 호 경산(耕山). 1777년(정조 1) 문과 급제. 실록낭청, 병조정랑, 장령 역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三月 十四日 戊午

- 正言沈銖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3월 14일(무오)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심수(沈銖)의 계
- 정언 심수(沈銖)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三月 十六日 庚申

- 正言金載翼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3월 16일(경신)

- ☐ 김수현(金壽賢)의 처벌을 요청하는 정언 김재익(金載翼)의 계
- 정언 김재익(金載翼)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법률대로 처단해 주십시오. <하락>”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국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二日 乙亥

- 持平韓商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亟寢文載質·李昌順·李昌京·宋斗一·金命卜·洪達洙等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嚴問, 鉤得因, 快正王法.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2일(을해)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처단하라는 지평 한상신(韓商新)의 계
- 지평 한상신(韓商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문재질(文載質)·이창순(李昌順)·이창경(李昌京)·송두일(宋斗一)·김명복(金命卜)·홍달수(洪達洙) 등을 참작하여 처결하라는 명을 속히 정지하고,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히 형문하여 원인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한상신.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二日 乙亥

- 正言姜世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司諫朴廣源, 時在京畿長湍地. 請斯速乘駟上來事下諭. 答院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2일(을해)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강세륜(姜世綸)의 계
- 정언 강세륜(姜世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사간 박광원(朴廣源)이 지금 경기 장단(長湍)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강세륜.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四日 丁丑

- 備忘記, 濟州牧使李命峻下直, 長弓一張, 長箭一部, 片箭一部, 筒兒一箇賜給.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4일(정축)

- 하직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峻)에게 장궁(長弓) 등을 하사한 비망기
- 비망기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峻)³⁵¹⁾이 하직하였으니 장궁(長弓) 1장(張), 장전(長箭) 1부(部), 편전(片箭) 1부, 통아(筒兒) 1개를 사급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명준, 비망기.

351) 이명준(?~?): 본관 전주(全州). 제주목사(재임: 1786. 4.~1788. 3.) 역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四日 丁丑

- 掌令魚錫齡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請亟寢文載質·李昌順·李昌京·宋斗一·金命卜·洪達洙等酌處之命，仍令王府，設鞫嚴問，鉤得根因，決正王法. 答(答)曰，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4일(정축)

- 김수현(金壽賢) 등의 처단을 건의한 장령 어석령(魚錫齡)의 계
- 장령 어석령(魚錫齡)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문재질(文載質)·이창순(李昌順)·이창경(李昌京)·송두일(宋斗一)·김명복(金命卜)·홍달수(洪達洙) 등을 참작하여 처형하라는 명을 속히 정지하고, 그대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형문하고 근본 원인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어석령.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四日 丁丑

- 正言姜世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請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4일(정축)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강세륜(姜世綸)의 계
- 정언 강세륜(姜世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청컨대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에게 조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국법에 따라 시원하게 처형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강세륜.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四日 丁丑

- 丙午四月初四日辰時，上御春塘臺。右副承旨與下直守令入侍時，右副承旨洪仁浩，假注書金祖淳，記注官承膺祚·崔達翰，濟州牧使李命俊，以次進伏訖。上曰，本來治績，固所稔聞，而島俗素稱難治，下去之後，須悉心撫摩，俾紓予南顧之憂也。何日當發行乎？命俊曰，今日欲爲離程矣。上曰，承旨宣諭。仁浩讀宣諭帖訖。命書傳教曰，左副承旨聞有實恙，許遞，前望單子入之，待下批牌招察任。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4일(정축)

- 대신이 입시하는 자리에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이 하직함
- 병오년 4월 초4일 진시에 임금이 춘당대에 나아갔다. 우부승지가 하직하는 수령과 함께 입시했을 때 우부승지 홍인호(洪仁浩), 가주서 김조순(金祖淳), 기주관 승응조(承膺祚)·최규한(崔達翰),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래 치적은 익히 들어왔으나 섬의 풍속이 본디 다스리기 어려우니 내려간 후 마음을 다해 무마하여 남쪽 지역을 돌보아야 하는 내 근심을 풀어지게 하라. 언제 출발하는가?”라고 하였다. 이명준이 말하기를, “오늘 떠나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는 선유(宣諭)하라.”라고 하였다. 홍인호가 선유첩(宣諭帖)을 다 읽자 적을 것을 명하고 전교하기를, “좌부승지 실제 병이 있다고 들었으니 교체를 허락하고, 전망단자(前望單子)를 들어서 비답이 내리기를 기다려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라.”라고 하였다. 물러날 것을 명하자, 여러 대신들이 차례로 물러 나왔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명준, 하직.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五日 戊寅

- 丙午四月初五日辰時，上御誠正閣。朝講入侍時，領經筵鄭存謙，知經筵李在協，特進官鄭好仁·李秉鼎，參贊官徐有成，侍讀官申馥，檢討官洪義浩，大司諫林蓍喆，持平韓商新，假注書金祖淳，記注官承膺祚，記事官尹行任，以次進伏訖。……商新等奏府前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出學條】……蓍喆等奏院前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出學條】…….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5일(무인)

- ☐ 조강에 입시한 자리에서 지평 한상신(韓商新) 등이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고 건의함
- 병오년 4월 초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조강에 입시했을 때 영경연(領經筵) 정존겸(鄭存謙), 지경연(知經筵) 이재협(李在協), 특진관 정호인(鄭好仁)·이병정(李秉鼎), 참찬관 서유성(徐有成), 시독관 신복(申馥), 검토회 홍의호(洪義浩), 대사간 임시철(林蓍喆), 지평 한상신(韓商新), 거주서 김조순(金祖淳),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한상신 등이 부계(府啓)를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중략> 임시철 등이 원계(院啓)를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八日 辛巳

- 執義俞彦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亟寢文載質·李昌順·李昌京·宋斗一·金命卜·洪達洙等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嚴問, 鉤得根因, 夫正王法, 新除授持平朴行淳, 時在忠清道沔川地, 請斯速乘駟上來事下諭. 答府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8일(신사)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집의 유언수(俞彦脩)의 계
- 집의 유언수(俞彦脩)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문재질(文載質)·이창순(李昌順)·이창경(李昌京)·송두일(宋斗一)·김명복(金命卜)·홍달수(洪達洙) 등을 참작하여 처형하라는 명을 속히 정지하고, 그대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형문하고 근본 원인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새로 제수한 지평 박행순(朴行淳)이 지금 충청도 면천(沔川)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八日 辛巳

- 獻納申禹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正言宋煥德, 時在忠清道清州地, 請斯速乘駟上來事下諭. 答院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8일(신사)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신우상(申禹相)의 계
- 헌납 신우상(申禹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형문하고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정언 송환덕(宋煥德)이 지금 충청도 청주(淸州)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신우상.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十二日 乙酉

- 以濟州牧使狀啓，人物滄死事，傳于趙衍德曰，滄死之數，若是夥然，聞甚驚惻，特令該牧使勿拘常格，妻孥另加顧恤，更令新牧使浦邊設祭，祭文令道伯撰送，滄死人等，如有身役半布，一竝蕩減事，令廟堂分付.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12일(을유)

- 사람들이 빠져 죽었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대한 처리 내용을 전교함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장계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은 일을 보고하였다. 조연덕(趙衍德)에게 전교하기를, “물에 빠져 죽은 수(數)가 이렇게 많다니 듣고 매우 놀랐다. 특별히 제주목사로 하여금 일반적인 규례에 얽매이지 말고 처자를 특별히 돌아보고 구휼하라. 또 신임 목사로 하여금 바닷가에 제사를 차리고 제문(祭文)을 목사가 지어서 보내게 하라. 빠져 죽은 사람들의 신역 반포(身役半布) 같은 것은 모두 탕감하도록 의정부로 하여금 분부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신역 반포, 조연덕.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十五日 戊子

- 全羅前水使鄭觀采狀啓內, 今此楸子島漂到人, 既是異國人物, 則先爲問情後, 護送節次, 當爲按例舉行, 同島別將金汝俊, 不過以該群差送一土校, 不知邊情之體重, 恣意出送於近陸內地, 言念邊情, 誠萬萬驚駭. 身爲主鎮, 若有一分察飾之道, 則豈有此駭妄之舉? 其罪狀, 令攸司稟處.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15일(무자)

- ☐ 전 전라도 수군절도사 정관채(鄭觀采)가 추자도(楸子島)에 표류해 온 사람들을 심문하고 호송하는 절차에 대해 보고한 장계
- 전 전라수군절도사 정관채(鄭觀采)가 장계하기를, “지금 표류하여 추자도(楸子島)에 온 사람은 이국(異國) 사람이니 우선 사정을 심문한 후 호송 절차는 마땅히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섬의 별장 김여준(金汝俊)은 해당 무리를 차송(差送)하는 일개 토교(土校)에 불과하니, 변방 정세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 마음대로 가까운 육지의 내지(內地)로 내보냈습니다. 변방 사정에 생각이 미치니 참으로 놀랍고 해괴합니다. 주진(主鎭)된 사람으로 만약 조금이라도 살폈다면 어찌 이런 해괴망측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김여준, 정관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十六日 己丑

- 持平金遇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亟寢文載質·李昌順·李昌京·宋斗一·金命卜·洪達洙等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嚴問, 鉤得根因, 快正王法. 新除授持平尹載命, 時在京畿富平地, 司諫院獻納許啞, 時在振威地, 正言韓用龜, 時在黃海道白川地, 請竝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府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16일(기축)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지평 김우국(金遇國)의 계
- 지평 김우국(金遇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문재질(文載質)·이창순(李昌順)·이창경(李昌京)·송두일(宋斗一)·김명복(金命卜)·홍달수(洪達洙) 등을 참작하여 처형하라는 명을 속히 정지하고, 그대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형문하고 근본 원인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새로 제수한 지평 윤재명(尹載命)이 지금 경기도 부평(富平) 땅에 있고, 사간원 헌납 허질(許啞)은 지금 진위(振威) 땅에 있으며, 정언 한용귀(韓用龜)는 지금 황해도 배천(白川)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는 일은 아뢰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우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十七日 庚寅

- 持平金遇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亟寢文載質·李昌順·宋斗一·金命福·洪達洙等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嚴問, 鉤得根因, 決正<王>法.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17일(경인)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지평 김우국(金遇國)의 계
- 지평 김우국(金遇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문재질(文載質)·이창순(李昌順)·이창경(李昌京)·송두일(宋斗一)·김명복(金命福)·홍달수(洪達洙) 등을 참작하여 처형하라는 명을 속히 정지하고, 그대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형문하고 근본 원인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우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十九日 壬辰

- 持平金遇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亟寢文載質·李昌順·李昌京·宋斗一·金命卜·洪達洙等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嚴問, 鉤得根因, 決正王法.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19일(임진)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지평 김우국(金遇國)의 계
- 지평 김우국(金遇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문재질(文載質)·이창순(李昌順)·이창경(李昌京)·송두일(宋斗一)·김명복(金命卜)·홍달수(洪達洙) 등을 참작하여 처형하라는 명을 속히 정지하고, 그대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형문하고 근본 원인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우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二十日 癸巳

- 丙午四月二十日卯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鄭存謙，行知中樞府事具善復，行吏曹判書李命植，行禮曹判書李在協，行兵曹判書鄭昌聖，行副司直徐有隣・徐有寧，戶曹判書趙時俊，工曹參判尹蓍東，行都承旨金尙集，行副司直李邦一，兵曹參判蔡弘履，大司諫朴天衡，執義趙弘鎮，掌令魚錫齡，持平金遇國，副校理沈晉賢，副修撰李羽晉，左承旨李時秀，假注書李宗烈，事變假注書任希鐸，記注官承膺祚，記事官李崑秀，以次進伏訖。…… 弘鎮等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天衡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鞠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20일(계사)

- 대신을 인견한 자리에서 사헌부, 사간원이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고 건의함
- 병오년 4월 20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행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 이조판서 이명식(李命植), 행 예조판서 이재협(李在協), 행 병조판서 정창성(鄭昌聖), 행 부사직 서유린(徐有隣)・서유녕(徐有寧), 호조판서 조시준(趙時俊), 공조참판 윤시동(尹蓍東), 행 도승지 김상집(金尙集), 행 부사직 이방일(李邦一), 병조참판 채홍리(蔡弘履), 대사간 박천형(朴天衡), 집의 조홍진(趙弘鎮), 장령 어석령(魚錫齡), 지평 김우국(金遇國), 부교리 심진현(沈晉賢), 부수찬 이우진(李羽晉), 좌승지 이시수(李時秀), 가주서 이종렬(李宗烈), 사변가주서 임희탁(任希鐸),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조홍진 등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박천형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홍진, 박천형.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二十一日 甲午

- 丙午四月二十一日辰時, 上御誠正閣. 晝講, 詣臺臺臣同爲入侍時, 知事鄭昌聖, 特進官尹蓍東, 參贊官李頤祥, 侍讀官沈晉賢, 檢討官李羽晉, 假注書尹悌東, 記注官承膺祚, 記事官尹行任, 大司諫朴天衡, 執義趙弘鎮, 掌令魚錫齡, 持平金遇國, 正言韓用龜, 宗臣西春君燁, 武臣李達秀, 以次進伏訖. …… 弘鎮等進前奏府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天衡等, 更爲進前奏院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21일(갑오)

- ☐ 주강에 입시한 자리에서 사헌부, 사간원이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고 건의함
- 병오년 4월 21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주강에 예대대신이 함께 입시했을 때 지사 정창성(鄭昌聖), 특진관 윤시동(尹蓍東), 참찬관 이이상(李頤祥), 시독관 심진현(沈晉賢), 검토관 이우진(李羽晉), 가주서 윤제동(尹悌東),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윤행임(尹行任), 대사간 박천형(朴天衡), 집의 조홍진(趙弘鎮), 장령 어석령(魚錫齡), 지평 김우국(金遇國), 정언 한용귀(韓用龜), 종신(宗臣) 서춘군(西春君) 엽(燁), 무신 이달수(李達秀)가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조홍진 등이 나아가 부계(府啓)를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박천형 등이 다시 나아가 원계(院啓)를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홍진, 박천형.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二十二日 乙未

- 掌令魚錫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亟寢文載質·李昌順·李昌京·宋斗一·金命卜·洪達洙等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嚴問, 鉤得根因, 夫正王法. 新除授掌令成種仁, 時在京畿高陽地,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府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22일(을미)

-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어석령(魚錫齡)의 계
- 장령 어석령(魚錫齡)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문재질(文載質)·이창순(李昌順)·이창경(李昌京)·송두일(宋斗一)·김명복(金命卜)·홍달수(洪達洙) 등을 참작하여 처형하라는 명을 속히 정지하고, 그대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형문하고 근본 원인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 새로 제수한 장령 성종인(成種仁)이 지금 경기도 고양(高陽)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어석령.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二十二日 乙未

- 正言韓用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獻納李師濂, 時在京畿交河地, 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院曰, 不允. …… 請下諭事, 依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22일(을미)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한용귀(韓用龜)가의 계
- 정언 한용귀(韓用龜)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헌납 이사렴(李師濂)이 지금 경기도 교하(交河)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중략> 하유하라고 청한 것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한용귀.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二十三日 丙申

- 持平洪聖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熙川郡定配罪人白師闇, 亟施島配之典. 答府曰, 不允. 白師闇事, 依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23일(병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지평 홍성연(洪聖淵)의 계
- 지평 홍성연(洪聖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희천군(熙川郡)에 정배된 죄인 백사은(白師闇)에게 조속히 도배(島配)하는 규정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백사은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홍성연.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二十三日 丙申

- 正言韓用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熙川郡定配罪人白師闇, 亟施島配之典. 答院曰, 不允. 白師闇事, 依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23일(병신)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한용귀(韓用龜)의 계
- 정언 한용귀(韓用龜)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희천군(熙川郡)에 정배된 죄인 백사은(白師闇)에게 조속히 도배(島配)하는 규정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백사은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한용귀.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二十四日 丁酉

- 持平金遇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亟寢文載質·李昌順·李昌京·宋斗一·金命卜·洪達洙等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嚴問, 鉤得根因, 決正王法.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24일(정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지평 김우국(金遇國)의 계
- 지평 김우국(金遇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문재질(文載質)·이창순(李昌順)·이창경(李昌京)·송두일(宋斗一)·김명복(金命卜)·홍달수(洪達洙) 등을 참작하여 처형하라는 명을 속히 정지하고, 그대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형문하고 근본 원인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우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二十四日 丁酉

- 正言柳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還發配所罪人宋迪中, 亟令王府, 拿來嚴鞫, 期於得情.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24일(정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유경(柳畊)의 계
- 정언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배소로 떠난 죄인 송적중(宋迪中)에 대해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붙잡아 와서 엄히 국문하여 사정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하소서.” 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유경.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二十六日 己亥

- 掌令魚錫齡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請亟寢文載質·李昌順·李昌京·宋斗一·金命卜·洪達洙等酌處之命，仍令王府，設鞫嚴問，鉤得根因，快正王法. 答府曰，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26일(기해)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어석령(魚錫齡)의 계
- 장령 어석령(魚錫齡)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문재질(文載質)·이창순(李昌順)·이창경(李昌京)·송두일(宋斗一)·김명복(金命卜)·홍달수(洪達洙) 등을 참작하여 처형하라는 명을 속히 정지하고, 그대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형문하고 근본 원인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어석령.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二十六日 己亥

- 正言柳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還發配所罪人宋迪中, 亟令王府, 拿來嚴鞫, 期於得情.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26일(기해)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유경(柳畊)의 계
- 정언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배소로 떠난 죄인 송적중(宋迪中)에 대해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붙잡아 와서 엄히 국문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유경.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二十七日 庚子

- 掌令魚錫齡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請訓練大將具善復，亟施譴削之典，其時兵曹正郎柳畊，亦施譴責之罰. 答府曰，不允. 訓將具善復事，其時委折，令兵判查問該營以啓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27일(경자)

-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어석령(魚錫齡)의 계
- 장령 어석령(魚錫齡)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훈련대장 구선복(具善復)에게 조속히 견책하여 사직하는 벌을 시행하고, 그 당시 병조정랑 유경(柳畊) 또한 견책하는 벌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훈련대장 구선복의 일은 그 당시의 곡절을 병조판서로 하여금 해영(該營)을 조사 심문하여 아뢰게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어석령.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二十七日 庚子

- 正言韓用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還發配所罪人宋迪中, 亟令王府, 拿來嚴鞫, 期於得情.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27일(경자)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한용귀(韓用龜)의 계
- 정언 한용귀(韓用龜)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배소로 떠난 죄인 송적중(宋迪中)에 대해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붙잡아 와서 엄히 국문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한용귀.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二十八日 辛丑

- 持平洪聖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亟寢文載質·李昌順·李昌京·宋斗一·金命卜·洪達洙等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鞫嚴問, 鉤得根因, 決正王法.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28일(신축)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대로 처단하라는 지평 홍성연(洪聖淵)의 계
- 지평 홍성연(洪聖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문재질(文載質)·이창순(李昌順)·이창경(李昌京)·송두일(宋斗一)·김명복(金命卜)·홍달수(洪達洙) 등을 참작하여 처형하라는 명을 속히 정지하고, 그대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형문하고 근본 원인을 알아내게 하여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홍성연.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四月 二十八日 辛丑

- 正言韓用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還發配所罪人宋迪中, 亟令王府, 拿來嚴鞠, 期於得情.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4월 28일(신축)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한용귀(韓用龜)의 계
- 정언 한용귀(韓用龜)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배소로 떠난 죄인 송적중(宋迪中)에 대해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붙잡아 와서 엄히 국문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한용귀.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五月 一日 癸卯

- 持平金遇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5월 1일(계묘)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지평 김우국(金遇國)의 계
- 지평 김우국(金遇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우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五月 一日 癸卯

- 正言韓用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還發配所罪人宋迪中, 亟令王府, 拿來嚴鞫, 期於得情.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5월 1일(계묘)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한용귀(韓用龜)의 계
- 정언 한용귀(韓用龜)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배소로 떠난 죄인 송적중(宋迪中)에 대해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붙잡아 와서 엄히 국문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한용귀.

❖ 乾隆五十一年 丙午 五月 二日 甲辰

- 掌令魚錫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5월 2일(갑진)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어석령(魚錫齡)의 계
- 장령 어석령(魚錫齡)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어석령.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五月 二日 甲辰

- 正言韓用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還發配所罪人宋迪中, 亟令王府, 拿來嚴鞫, 期於得情.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5월 2일(갑진)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한용귀(韓用龜)의 계
- 정언 한용귀(韓用龜)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배소로 떠난 죄인 송적중(宋迪中)에 대해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붙잡아 와서 엄히 국문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한용귀.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五月 二十七日 己巳

○ 以濟州牧使老職人抄啓事狀啓, 傳于沈豐之曰, 今日政下批.

❖ 정조 10년(1786) 병오년 5월 27일(기사)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노직인(老職人)을 초계(抄啓)하는 일로 장계를 올림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노직인(老職人)을 초계(抄啓)하는 일로 장계를 올렸다. 심풍지(沈豐之)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정사에서 하비(下批)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노직인, 심풍지.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五月 二十七日 己巳

- 執義李延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5월 27일(기사)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집의 이연급(李延伋)의 계
- 집의 이연급(李延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연급.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五月 二十七日 己巳

- 獻納申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請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鞠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5월 27일(기사)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신기(申耆)의 계
- 헌납 신기(申耆)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청컨대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신기.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六月 一日 癸酉

- 持平韓商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新除授執義洪宗薰, 時在忠清道忠州地.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府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6월 1일(계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지평 한상신(韓商新)의 계
- 지평 한상신(韓商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집의 홍종신(洪宗薰)이 지금 충청도 충주(忠州)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한상신.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六月 一日 癸酉

- 獻納洪樂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正言崔守忱, 時在全羅道興陽地.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院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6월 1일(계유)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홍낙연(洪樂淵)의 계
- 헌납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정언 최수침(崔守忱)이 지금 전라도 흥양(興陽)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홍낙연.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六月 二日 甲戌

- 禁府啓目, 大靜前縣監朴尙春原情云云. 問目內辭緣, 泛稱遲晚, 刑推得情, 何如? 判付啓, 以公罪, 今日內草記照律爲良如教.

❖ 정조 10년(1786) 병오년 6월 2일(갑술)

-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상춘(朴尙春)을 형추하라고 건의한 의금부의 계목
- 의금부의 계목(啓目)에,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상춘(朴尙春)의 원정(原情)에 운운(云云) 하였습니다. 문목(問目) 안의 내용에 대해 범범하게 지만(遲晚)이라 하였으니 형추하여 실정을 캐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계목에 대해 판부(判付)하기를, “공죄(公罪)로 시행하여 금일 안으로 초기(草記)를 조율(照律)하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박상춘, 지만.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六月 二日 甲戌

- 李謙彬, 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朴尙春原情公事判付內, 以公罪, 今日內草記照律事, 命下矣. 朴尙春, 濟州前牧使尹得達狀啓內, 兵部印信, 乃是守令身邊須與不離之物, 雖已深夜蒼黃之中, 既已避身, 則莫重印信兵符, 不能救出, 致有此灰燼之境, 誠甚駭然, 罪取考律文, 則大明律棄毀制書印信條有曰, 誤毀, 遺失符驗印信者, 杖九十徒二年半, 大典通編雜令條有曰, 王府決杖者, 代以金贖云矣. 朴尙春, 杖九十徒二年半, 以公罪收贖, 放送, 何如? 傳曰, 允. 如有功議, 各減一等.

❖ 정조 10년(1786) 병오년 6월 2일(갑술)

□ 죄인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상춘(朴尙春)에 대한 의금부의 보고

- 이겸빈(李謙彬)이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현재 수감되어 있는 죄인 박상춘(朴尙春)의 원정(原情) 공사(公事)에 대한 판부(判付)에, ‘공죄(公罪)로 시행하여 금일 안으로 초기(草記)를 조율(照律)하라.’라고 명하였습니다. 박상춘은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윤득규(尹得逵)³⁵²의 장계에, ‘병부인신(兵部印信)은 수령이 신변에서 잠시라도 떨어뜨릴 수 없는 물건입니다. 비록 이미 깊은밤 어쩔 줄 모르는 와중이었더라도 이미 피신해 있었으니 무엇보다 중요한 인신(印信)과 병부(兵符)를 구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잣더미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죄는 율문(律文)을 상고해보니 《대명률》〈기궤제서인신조(棄毀制書印信條)〉에 이르기를, 부험(符驗)이나 인신을 착오로 훼손하거나 유실한 자는 장(杖) 90, 도(徒) 2년 반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전통편》〈잡령조(雜令條)〉에는, 의금부에서 장을 쳐야 할 죄는 속전(贖錢)으로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박상춘을 장 90, 도 2년 반으로 하고 공죄로 시행하여 속전을 거두고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만약 공의(功議)³⁵³에 해당하면 각 1등을 감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대정현감, 박상춘, 윤득규, 공죄, 인신.

352) 윤득규(?~?): 제주목사(재임: 1785. 5.~1786. 4.) 역임

353) 공의(功議): 공신이나 그 자손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감하여 주는 규정.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六月 二日 甲戌

- 禁府啓目, 濟州前牧使尹得達原情云云. 問目內辭緣, 泛稱遲晚, 所當請刑是白乎矣, 曾經閩帥, 勿爲請刑, 載在大典道通, 議處, 何如? 判付啓, 分揀放送爲良如教.

❖ 정조 10년(1786) 병오년 6월 2일(갑술)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윤득규(尹得逵)의 처리 방안에 대한 의금부의 계목
- 의금부의 계목(啓目)에,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윤득규(尹得逵)가 이러니 저러니 원정(原情)하면서 문목(問目) 안의 내용에 대해 범범하게 지만(遲晚)이라 하였으니 형추를 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일찍이 곤수(閩帥)를 역임한 자에게는 형추를 청하지 않는 것이 《대전도통(大典道通)》에 실려 있으니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계목에 대해 판부(判付)하기를, “분간하여 풀어주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윤득규, 곤수.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六月 三日 乙亥

- 金思穆啓曰, 濟州前牧使尹得達有旨祇受狀啓後錄老人, 前已下批矣. 時牧使李命俊, 又爲抄啓而依數疊錄, 無一加抄, 所當請推還送, 而矇然入啓, 至有下批之命, 臣之不察, 已極惶悚, 而該牧使之不能審慎, 有此後錄謄啓之舉, 事極駭然, 從重推考, 原狀本勿施, 何如? 傳曰, 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6월 3일(을해)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올린 장계를 시행하지 말아달라고 청하는 김사목(金思穆)의 계
- 김사목(金思穆)이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윤득규(尹得逵)가 유지(有旨)를 수령한 사실을 보고하는 장계(狀啓)에 후록(後錄)한 노인(老人)은 전에 이미 하비(下批)하셨습니다. 지금 목사 이명준(李命俊)이 또 초계(抄啓)하여 수량대로 중복 수록하고 한 사람도 추가로 추려내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추고를 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몽매하게 입계(入啓)하여 하비하는 명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불찰이 이미 지극히 황송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해당 목사가 능히 신중히 살피지 못하고 이렇게 후록을 베껴 계를 올린 것은 일이 지극히 놀랍습니다. 종중추고하여 원래의 장계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윤득규, 이명준, 김사목.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六月 三日 乙亥

- 丙午六月初三日辰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鄭存謙，行吏曹判書李命植，行司直金華鎮·金魯鎮·仁陵君李在協，行禮曹判書鄭一祥，行兵曹判書鄭昌聖，行副司直徐有寧·金履素·鄭好仁，左參贊徐有慶，右參贊李埤，行副司直李柱國，判尹金尙集，行副司直李邦一，左尹徐有大，行副司直洪秀輔，副校理尹翊東，副修撰姜彝正，掌令李太亨，持平韓商新，獻納洪聖淵，正言宋煥德，同副承旨李集斗，記事官金孝建，假注書金祖淳，記事官李崑秀·尹行任，以次進伏訖。…… 太亨等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出舉條】【措語見上】……。

❖ 정조 10년(1786) 병오년 6월 3일(을해)

- 대신을 인견한 자리에서 장령 이태형(李太亨) 등이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고 건의함
- 병오년 6월 초3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행 이조판서 이명식(李命植), 행 사직 김화진(金華鎭)·김노진(金魯鎭)·인릉군(仁陵君) 이재협(李在協), 행 예조판서 정일상(鄭一祥), 행 병조판서 정창성(鄭昌聖), 행 부사직 서유령(徐有寧)·김이소(金履素)·정호인(鄭好仁), 좌참찬 서유경(徐有慶), 우참찬 이갑(李埤), 행 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판윤 김상집(金尙集), 행 부사직 이방일(李邦一), 좌윤 서유대(徐有大), 행 부사직 홍수보(洪秀輔), 부교리 윤익동(尹翊東), 부수찬 강이정(姜彝正), 장령 이태형(李太亨), 지평 한상신(韓商新), 헌납 홍성연(洪聖淵), 정언 송환덕(宋煥德), 동부승지 이집두(李集斗), 기사관 김효건(金孝建), 가주서 김조순(金祖淳),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이태형 등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태형.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六月 五日 丁丑

- 掌令李太亨啓曰, 謂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議藥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 亟令王府, 設鞫得情, 夫正典刑.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6월 5일(정축)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이태형(李太亨)의 계
- 장령 이태형(李太亨)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약을 의논한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희인(李喜仁)·윤경행(尹敬行) 등을 속히 의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고 전형(典刑)에 따라 시원하게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태형.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六月 五日 丁丑

- 獻納洪樂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直宿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 亟令王府, 設鞫得情, 決正典刑. 答院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10년(1786) 병오년 6월 5일(정축)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홍낙연(洪樂淵)의 계
- 헌납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직속한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희인(李喜仁)·윤경행(尹敬行) 등을 속히 의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고 전형(典刑)에 따라 시원하게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홍낙연.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六月 六日 戊寅

- 持平韓商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議藥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 亟令王府, 設鞫得情, 夫正典刑.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6월 6일(무인)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지평 한상신(韓商新)의 계
- 지평 한상신(韓商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약을 의논한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희인(李喜仁)·윤경행(尹敬行) 등을 속히 의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고 전형(典刑)에 따라 시원하게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한상신.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六月 六日 戊寅

- 獻納洪樂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直宿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典刑.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6월 6일(무인)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홍낙연(洪樂淵)의 계
- 헌납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직속한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희인(李喜仁)·윤경행(尹敬行) 등을 속히 의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고 전형(典刑)에 따라 시원하게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홍낙연.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六月 十一日 癸未

- 丙午六月十一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 · 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鄭存謙, 行副司直金華鎮, 行刑曹判書金魯鎮, 行副司直鄭一祥, 行兵曹判書鄭昌聖, 行副司直李性源, 行副司直徐有隣, 行副司直李在簡, 知敦寧金履素, 行副司直鄭好仁, 左參贊徐有慶, 右參贊李垺, 行副司直徐有寧, 行副司直李柱國, 禮曹判書尹蓍東, 漢城判尹金尙集, 行副司直李邦一, 漢城左尹徐有大, 行副司直洪秀輔, 禮曹參判李秉模, 行都承旨沈豐之, 左承旨權讖, 記事官金孝建, 假注書尹光顏, 記注官承膺祚, 記事官李崑秀, 副校理尹翊東, 正言金熙朝, 以次進伏訖. …… 熙朝進前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俯, 設鞫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6월 11일(계미)

- 대신을 인견한 자리에서 정언 김희조(金熙朝)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고 건의함
- 병오년 6월 11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대신 · 비변사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행 부사직 김화진(金華鎭), 행 형조판서 김노진(金魯鎭), 행 부사직 정일상(鄭一祥), 행 병조판서 정창성(鄭昌聖), 행 부사직 이성원(李性源), 행 부사직 서유린(徐有隣), 행 부사직 이재간(李在簡), 지돈녕 김이소(金履素), 행 부사직 정호인(鄭好仁), 좌참찬 서유경(徐有慶), 우참찬 이갑(李垺), 행 부사직 서유녕(徐有寧), 행 부사직 이주국(李柱國), 예조판서 윤시동(尹蓍東), 한성부 판윤 김상집(金尙集), 행 부사직 이방일(李邦一), 한성 좌윤 서유대(徐有大), 행 부사직 홍수보(洪秀輔), 예조참판 이병모(李秉模), 행 도승지 심풍지(沈豐之), 좌승지 권엄(權讖), 기사관 김효건(金孝建), 가주서 윤광안(尹光顏),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이곤수(李崑秀), 부교리 윤익동(尹翊東), 정언 김희조(金熙朝)가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김희조가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희조.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六月 十三日 乙酉

- 正言金熙朝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直宿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 亟令王府, 設鞠得情, 快正典刑.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6월 13일(을유)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김희조(金熙朝)의 계
- 정언 김희조(金熙朝)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직속한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희인(李喜仁)·윤경행(尹敬行) 등을 속히 의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고 전형(典刑)에 따라 시원하게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희조.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六月 十四日 丙戌

- 掌令李太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議藥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 竝令王府, 設鞫得情, 夫正典刑.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6월 14일(병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장령 이태형(李太亨)의 계
- 장령 이태형(李太亨)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약을 의논한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희인(李喜仁)·윤경행(尹敬行) 등을 모두 속히 의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고 전형(典刑)에 따라 시원하게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태형.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六月 十四日 丙戌

- 正言金熙朝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直宿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 亟令王府, 設鞫得情, 夫正典刑.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6월 14일(병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김희조(金熙朝)의 계
- 정언 김희조(金熙朝)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직속한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희인(李喜仁)·윤경행(尹敬行) 등을 속히 의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고 전형(典刑)에 따라 시원하게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희조.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六月 二十九日 辛丑

- 丙午六月二十九日，上御熙政堂。親臨都政入侍時。【一行漏落】假注書李宗烈，【數字漏落】吏曹判書兪彥鎬，參判沈豐之，兵曹判書鄭昌聖，參判尹尙東，參議李亨元，以次進伏。…… 昌聖曰，初仕別取才中，嶺南與濟州·松都人，未免見漏，居首外其餘窠闕，毋論矢數之入格與否，從便均排，何如？上曰，依爲之。…….

❖ 정조 10년(1786) 병오년 6월 29일(신축)

- 병조판서 정창성(鄭昌聖)이 초사 별취재에서 누락된 제주(濟州) 등 지역의 사람을 빈 벼슬자리에 균등하게 배분할 것을 건의함
- 병오년 6월 29일, 임금이 회정당으로 나아갔다. 도목정사에 친림(親臨)하는 자리에 입시켰을 때, 【1행 누락】가주서 이종렬(李宗烈), 【여러 글자 누락】. 이조판서 유언호(兪彦鎬), 참판 심풍지(沈豐之), 병조판서 정창성(鄭昌聖), 참판 윤상동(尹尙東), 참의 이형원(李亨元)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정창성이 말하기를, “초사(初仕) 별취재(別取才) 중 영남과 제주(濟州)·송도(松都) 사람은 누락되었습니다. 1등 외에 그 나머지 벼슬의 빈자리는 시수(矢數)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편리한 대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초사 별취재, 정창성.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十二日 癸丑

- 持平宋民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議藥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 亟令王府, 設鞫得情, 夫正典刑.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12일(계축)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지평 송민재(宋民載)의 계
- 지평 송민재(宋民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약을 의논한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희인(李喜仁)·윤경행(尹敬行) 등을 모두 속히 의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고 전형(典刑)에 따라 시원하게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송민재.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十二日 癸丑

- 正言韓商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直宿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 亟令王府, 設鞠得情, 快正典刑.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12일(계축)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한상신(韓商新)의 계
- 정언 한상신(韓商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직속한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희인(李喜仁)·윤경행(尹敬行) 등을 속히 의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고 전형(典刑)에 따라 시원하게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한상신.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十三日 甲寅

- 執義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議藥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 亟令王府, 設鞫得情, 夫正典刑.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13일(갑인)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집의 이사조(李思祚)의 계
- 집의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약을 의논한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희인(李喜仁)·윤경행(尹敬行) 등을 모두 속히 의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고 전형(典刑)에 따라 시원하게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사조.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十三日 甲寅

- 正言鄭晚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直宿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 亟令王府, 設鞠得情, 快正典刑.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13일(갑인)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정만석(鄭晚錫)의 계
- 정언 정만석(鄭晚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직속한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희인(李喜仁)·윤경행(尹敬行) 등을 속히 의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고 전형(典刑)에 따라 시원하게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정만석.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十四日 乙卯

- 持平徐有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議藥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典刑.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14일(을묘)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지평 서유련(徐有鍊)의 계
- 지평 서유련(徐有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약을 의논한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희인(李喜仁)·윤경행(尹敬行) 등을 모두 속히 의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고 전형(典刑)에 따라 시원하게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서유련.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十四日 乙卯

- 獻納李壽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直宿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典刑.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14일(을묘)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이수함(李壽咸)의 계
- 헌납 이수함(李壽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직속한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희인(李喜仁)·윤경행(尹敬行) 등을 속히 의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고 전형(典刑)에 따라 시원하게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수함.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十五日 丙辰

- 持平徐有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法處斷. …… 請議藥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典刑.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15일(병진)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지평 서유련(徐有鍊)의 계
- 지평 서유련(徐有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약을 의논한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희인(李喜仁)·윤경행(尹敬行) 등을 모두 속히 의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고 전형(典刑)에 따라 시원하게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서유련.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十五日 丙辰

- 正言韓商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直宿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典刑.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15일(병진)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한상신(韓商新)의 계
- 정언 한상신(韓商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직속한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희인(李喜仁)·윤경행(尹敬行) 등을 속히 의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고 전형(典刑)에 따라 시원하게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한상신.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十六日 丁巳

- 持平任長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議藥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 亟令王府, 設鞠得情, 快正典刑.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16일(정사)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지평 임장원(任長源)의 계
- 지평 임장원(任長源)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약을 의논한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희인(李喜仁)·윤경행(尹敬行) 등을 모두 속히 의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고 전형(典刑)에 따라 시원하게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임장원.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十六日 丁巳

- 獻納柳協基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直宿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典刑.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16일(정사)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유협기(柳協基)의 계
- 헌납 유협기(柳協基)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직속한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희인(李喜仁)·윤경행(尹敬行) 등을 속히 의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고 전형(典刑)에 따라 시원하게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유협기.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十七日 戊午

- 執義俞彦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17일(무오)

-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올문대로 처단하라는 집의 유언수(俞彦脩)의 계
- 집의 유언수(俞彦脩)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하익룡, 유언수.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十七日 戊午

- 獻納柳協基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直宿醫官李廷楫·李喜仁·尹敬行等,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典刑.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17일(무오)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유협기(柳協基)의 계
- 헌납 유협기(柳協基)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직속한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희인(李喜仁)·윤경행(尹敬行) 등을 속히 의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고 전형(典刑)에 따라 시원하게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유협기.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十八日 己未

- 持平張至冕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正言金熙采〈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18일(기미)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장지면(張至冕) 등의 계
- 지평 장지면(張至冕)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언 김희채(金熙采)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장지면, 김희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十九日 庚申

- 司諫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機張〈縣〉竄配罪人李東馨, 亟令王府, 設鞫得情.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19일(경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사간 이제만(李濟萬)의 계
- 사간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기장현(機張縣)에 정배된 죄인 이동형(李東馨)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제만.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二十日 辛酉

- 掌令朴行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獻納洪樂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機張縣竄配罪人李東馨, 亟令王府, 設鞫得情.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20일(신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박행순(朴行淳) 등의 계
- 장령 박행순(朴行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헌납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기장현(機張縣)에 찬배된 죄인 이동형(李東馨)을 조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행순, 홍낙연.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二十一日 壬戌

- 持平鄭來百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機張縣竄配罪人李東馨, 亟令王府, 設鞫嚴問. 答府曰, 不允. 獻納洪樂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機張縣竄配罪人李東馨, 亟令王府, 設鞫得情.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21일(임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정내백(鄭來百) 등의 계
- 지평 정내백(鄭來百)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기장현(機張縣)에 찬배된 죄인 이동형(李東馨)을 조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헌납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기장현(機張縣)에 찬배된 죄인 이동형을 조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정내백, 홍낙연.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二十二日 癸亥

- 執義李師濂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請機張縣竄配罪人李東馨，亟令王府，設鞫嚴問. 答府曰，不允. 司諫李濟萬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 …… 〈請〉機張縣竄配罪人李東馨，亟令王府，設鞫得情. 答院曰，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22일(계해)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집의 이사람(李師濂) 등의 계
- 집의 이사람(李師濂)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기장현(機張縣)에 찬배된 죄인 이동형(李東馨)을 조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사간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기장현(機張縣)에 찬배된 죄인 이동형을 조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사람, 이제만.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二十三日 甲子

- 掌令朴行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機張縣竄配罪人李東馨, 亟令王府, 設鞫嚴問.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23일(갑자)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박행순(朴行淳)의 계
- 장령 박행순(朴行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기장현(機張縣)에 찬배된 죄인 이동형(李東馨)을 조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행순.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二十三日 甲子

- 獻納洪樂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機張縣竄配罪人李東馨, 亟令王府, 設鞫嚴問.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23일(갑자)

-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헌납 홍낙연(洪樂淵)의 계
- 헌납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기장현(機張縣)에 찬배된 죄인 이동형(李東馨)을 조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홍낙연.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二十四日 乙丑

- 持平鄭來百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機張縣竄配罪人李東馨, 設鞫嚴問.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24일(을축)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정내백(鄭來百)의 계
- 지평 정내백(鄭來百)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기장현(機張縣)에 찬배된 죄인 이동형(李東馨)을 조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정내백.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二十四日 乙丑

- 司諫李濟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機張縣竄配罪人李東馨, 設鞠嚴問.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24일(을축)

-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사간 이제만(李濟萬)의 계
- 사간 이제만(李濟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기장현(機張縣)에 찬배된 죄인 이동형(李東馨)을 조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제만.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二十五日 丙寅

- 執義李師濂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請機張縣竄配罪人李東馨，亟令王府，設鞫嚴問. 答府曰，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25일(병인)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집의 이사람(李師濂)의 계
- 집의 이사람(李師濂)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기장현(機張縣)에 찬배된 죄인 이동형(李東馨)을 조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사람.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二十五日 丙寅

- 大司諫趙城鎮, 正言金熙采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機張縣竄配罪人李東馨, 亟令王府, 設鞠嚴問.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25일(병인)

-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대사간 조성진(趙城鎮)의 계
- 대사간 조성진(趙城鎮), 정언 김희채(金熙采)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기장현(機張縣)에 찬배된 죄인 이동형(李東馨)을 조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성진, 김희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二十六日 丁卯

- 掌令朴行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機張縣竄配罪人李東馨, 亟令王府, 設鞫嚴問.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26일(정묘)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박행순(朴行淳)의 계
- 장령 박행순(朴行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기장현(機張縣)에 찬배된 죄인 이동형(李東馨)을 조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행순.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七月 二十六日 丁卯

- 獻納洪樂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機張縣竄配罪人李東馨, 亟令王府, 設鞫嚴問.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7월 26일(정묘)

-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헌납 홍낙연(洪樂淵)의 계
- 헌납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기장현(機張縣)에 찬배된 죄인 이동형(李東馨)을 조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홍낙연.

❖ 乾隆 五十一年 丙午 閏七月 四日 乙亥

- 李祖承, 以墓所都監都提調意啓曰, 卽者濟州民人三十名, 來願付役矣. 自願軍勿許, 既有特教, 故前後自願付役者, 一例不許, 而至於島民之涉海遠赴, 勢難自下退送, 姑令留待, 以俟處分之意, 敢啓. 傳曰, 知道. 曾於丙申年, 因山赴役後, 慰諭渠輩後, 勿涉海遠赴矣, 今又有此來赴, 自願軍雖勿許赴, 爲難強令虛還, 特付一日之役, 待畢役入送, 則當依庚子·丁丑·庚戌·丙申等年例, 招問疾苦, 仍饋酒果, 給回糧資, 令該房該廳考例等待, 可也.

❖ 정조 10년(1786) 병오년 윤7월 4일(을해)

- 부역을 자원해서 바다를 건너 온 제주(濟州) 민인 30명의 처리에 대한 묘소도감의 계
- 이조승(李祖承)이 묘소도감 제조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지금 제주(濟州) 민인 30명이 와서 부역(付役)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원군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특교(特敎)가 있으므로 전후로 부역을 자원한 자는 한결같이 불허하였습니다. 하지만 섬 백성들이 바다 건너 멀리 왔으니 형세상 스스로 물리쳐 보내기 어렵습니다. 잠시 머무르게 하고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일찍이 병신년[1776, 영조 52년]에 산역(山役)에 동원되어 부역한 후 그 무리를 위유(慰諭)하고 바다 건너 멀리 오지 말도록 하였다. 지금 다시 이렇게 왔으니 자원군(自願軍)은 비록 허용하지 않으나 강제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기는 어려우니, 특별히 1일 동안 부역하게 하고 역(役)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내면 된다. 경자년·정축년·경술년·병신년 등의 사례에 따라 불러다 어려운 점을 묻고 주과(酒果)를 대접하고 돌아갈 식량과 노자를 지급하라. 해방(該房)과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민인, 부역, 산역, 자원군.

❖ 乾隆 五十一年 丙午 閏七月 五日 丙子

- 丙午閏七月初五日酉時，上御重熙堂。承旨入侍時，右承旨趙興鎮，假注書金祖淳，記事官李崑秀·尹行任，以次進伏訖。上曰，濟州自願赴役民人等處，雖有饋酒之命，當自內辦下，戶曹則勿爲待令事，分付。…….

❖ 정조 10년(1786) 병오년 윤7월 5일(병자)

- 임금이 제주(濟州)에서 부역을 자원해 온 민인들에게 술을 대접하도록 명함
- 병오년 윤7월 초5일 유시(酉時)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승지가 입시했을 때 우의정 조흥진(趙興鎭), 가주서 김조순(金祖淳),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에서 부역을 자원하여 온 민인들에게 비록 술을 대접하라는 명을 내렸으나 마땅히 안에서 마련하여 내려주고, 호조는 대령하지 말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민인, 부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閏七月 六日 丁丑

- 李泰永, 以墓所都監都提調意啓曰, 濟州民人許赴一日之役, 待畢役入送事, 命下矣. 臣等以傳教辭意, 一一曉諭, 俾海陬子來之民, 咸知我聖上柔遠之盛德, 而只今初五, 一日領付於補土之役後, 依下教入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윤7월 6일(정축)

- 부역을 자원해서 바다를 건너 온 제주(濟州) 민인 30명을 1일 동안 보토(補土) 작업에 투입한 후 돌려보내겠다는 묘소도감의 계
- 이태영(李泰永)이 묘소도감 제조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 민인에게 1일 동안의 부역을 허락하고 부역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려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저희는 전교(傳敎)하신 뜻을 일일이 효유(曉諭)하여 바다 끝에서 오는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성상(聖上)이 위로하고 보호해주는 성덕(盛德)을 알게 하였습니다. 지금 초5일이니 1일 동안 보토(補土)하는 작업에 부역하게 한 후 하교하신 대로 돌려보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민인, 부역, 이태영.

❖ 乾隆 五十一年 丙午 閏七月 六日 丁丑

- 李泰永,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牧使尹得達遞任, 進上馬三匹, 大靜前縣監朴尙春遞任, 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윤7월 6일(정축)

- 체임된 제주목사(濟州牧使), 대정현감(大靜縣監)의 체임 진상마가 올라왔다는 사복시의 계
- 이태영(李泰永)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윤득규(尹得達)의 체임진상마 3필,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상춘(朴尙春)의 체임진상마 2필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은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고, 예(例)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대정현감, 체임 진상마. 윤득규, 박상춘.

❖ 乾隆 五十一年 丙午 閏七月 六日 丁丑

- 李泰永,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別御乘馬二十匹, 歲貢馬二百匹, 凶咎馬十匹, 合二百九十八匹內, 三匹船中故失, 二匹到咸悅故失, 實納馬二百九十三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윤7월 6일(정축)

- 제주(濟州)에서 진상한 말에 대해 보고하고 별단을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보고
- 이태영(李泰永)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와서 먼저 운송된 연례진상마 8필, 삼명일진상마 60필, 별어승마(別御乘馬) 20필, 세공마(歲貢馬) 200필, 흉구마(凶咎馬) 10필, 합 298필 중 3필은 배 안에서 고실(故失), 2필은 함열(咸悅)에 도착한 후 고실되어 실제 납부한 말은 293필입니다.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진상마, 세공마, 이태영.

❖ 乾隆 五十一年 丙午 閏七月 六日 丁丑

- 丙午閏七月初六日辰時，上御瑤華堂。魂宮都監堂郎，禮葬都監都廳入侍時，魂宮都監堂上徐有隣·尹蓍東，郎廳洪義榮·具膺·李晚秀，禮葬都監都廳李鼎運，左承旨李亨元，記事官金孝建，事變假注書尹光顏，記事官李崑秀·尹行任，以次進伏訖。…… 上曰，濟州赴役民人等，使之來待於通化門外。…… 上曰，濟州民人等，今番則不爲召見，以所下祭物頒饋後，令惠廳各給回糧三斗，承旨以此意，招致慰諭後，使之出通化門外，舉哀而去，好矣。…….

❖ 정조 10년(1786) 병오년 윤7월 6일(정축)

- 자원하여 부역하러 온 제주(濟州) 민인들에 대한 대접 및 송환 방안에 대해 임금이 전교를 내림
- 병오년 윤7월 초6일 진시에 임금이 요화당(瑤華堂)으로 나아갔다. 혼궁도감당랑, 예장도감도청이 입시했을 때 혼궁도감당상 서유린(徐有隣)·윤시동(尹蓍東), 낭청 홍의영(洪義榮)·구응(具膺)·이만수(李晚秀), 예장도감 도청 이정운(李鼎運), 좌승지 이형원(李亨元), 기사관 김효건(金孝建), 사변가주서 윤광안(尹光顏),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에서 부역하러 온 민인들을 통화문 밖에 와서 대령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 민인들에 대해 이번에는 불러서 보지는 않을 것이니, 내려준 제물(祭物)을 나누어 먹인 후, 혜청(惠廳)으로 하여금 각각 회량(回糧) 3두(斗)를 주도록 하라. 승지가 이러한 뜻으로 불러다 위유(慰諭)한 후에 통화문 밖으로 나가서 거애(擧哀)하고 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민인, 부역, 회량, 거애.

❖ 乾隆 五十一年 丙午 閏七月 七日 戊寅

- 李祖承,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慶林, 乙巳丙午兩年條封進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윤7월 7일(무인)

□ 제주(濟州)에서 봉진한 말 2필에 대한 사복시의 보고

- 이조승(李祖承)이 사복시 일 · 이 제조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제주산마감목관(濟州山馬監牧官) 김경림(金慶林)이 을사 · 병오 양년조(兩年條)로 봉진(封進)한 말 2필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전례(前例)대로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산마감목관, 김경림, 봉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閏七月 七日 戊寅

- 李祖承,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差備進上馬八十匹, 山屯馬二百匹, 驚駘馬十匹, 合二百九十匹內, 七匹到中路故失, 一匹到陽智病留, 實納馬二百八十二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윤7월 7일(무인)

- 제주(濟州)에서 세공(歲貢)한 말의 실제 수효와 상황에 대한 사복시의 보고
- 이조승(李祖承)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와서 나중에 운송된 차비(差備) 진상마 80필, 산둔마(山屯馬) 200필, 노태마(驚駘馬) 10필, 합 290필 중 7필은 도중에 고실(故失)되고, 1필은 양지(陽智)에 도착하여 병이 나서 머물렀으므로 실제 납부한 말은 282필입니다.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진상마, 이조승.

❖ 乾隆 五十一年 丙午 閏七月 十日 辛巳

- 丙午閏七月初十日卯時，上御重熙堂。右承旨入侍時，右承旨徐鼎修，假注書金祖淳，記事官李崑秀·尹行任，原任提學徐有防，以次進伏訖。…… 上曰，江華·濟州·平壤民人，既許赴役，此亦當用一視之典矣。有防曰，聞濟州民人，卽國馬領來之漢，上京留住者，已月餘云矣。上曰，左承旨不爲仕進耶？鼎修曰，然矣。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10년(1786) 병오년 윤7월 10일(신사)

- 임금이 부역에 참여한 제주(濟州) 민인의 처우에 대해 대신들과 논의함
- 병오년 윤7월 초10일 묘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우승지가 입시했을 때 우승지 서정수(徐鼎修), 가주서 김조순(金祖淳),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 원임 제학 서유방(徐有防)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강화(江華)·제주(濟州)·평양(平壤) 민인에 대해 이미 부역을 허용했는데 이 또한 마땅히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전례를 써야 한다.”라고 하였다. 서유방이 말하기를, “들으니 제주 민인은 국마(國馬)를 받아서 온 놈으로 상경하여 머무른 지 이미 한 달이 넘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좌승지는 출근하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서정수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물러날 것을 명하자 모든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 나왔다.

△ 주제어: 제주 민인, 국마, 부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八月 九日 己酉

- 掌令鄭景祚·李翼晉, 持平沈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新除授執義姜彝正, 時在忠清道公山地, 請斯速乘駟上來事下諭. 答院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8월 9일(기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정경조(鄭景祚) 등의 계
- 장령 정경조(鄭景祚)·이익진(李翼晉), 지평 심협(沈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집의 강이정(姜彝正)이 지금 충청도 공산(公山)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심협.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八月 九日 己酉

- 大司諫李義行, 司諫鄭萬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亟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8월 9일(기유)

-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대사간 이의행(李義行) 등의 계
- 대사간 이의행(李義行), 사간 정만시(鄭萬始)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조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의행, 정만시.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八月 二十三日 癸亥

- 持平李羽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8월 23일(계해)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이우진(李羽晉)의 계
- 지평 이우진(李羽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우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八月 二十三日 癸亥

- 正言嚴思憲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機張縣竄配罪人李東馨, 亟令王府, 設鞫得情. 答院曰, 不允. 李東馨事, 已諭府啓, 此非不允者, 惟觀朝象處之, 爾等以待處分.

❖ 정조 10년(1786) 병오년 8월 23일(계해)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정언 엄사헌(嚴思憲)의 계
- 정언 엄사헌(嚴思憲)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기장현(機張縣)에 찬배된 죄인 이동형(李東馨)을 조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이동형의 일은 이미 사헌부의 계(啓)에 하유하였다. 이는 윤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직 조상(朝象)을 보고 처리할 것이다. 너희는 처분을 기다려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엄사헌.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八月 二十七日 丁卯

- 以濟州牧使狀啓，烏賊魚過限封進，而品甚薄劣，色亦不潤，惶恐待罪事，傳于徐滢修曰，勿待罪事，回諭。

❖ 정조 10년(1786) 병오년 8월 27일(정묘)

- ☐ 품질 나쁜 물품을 봉진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대죄하지 말라는 전교를 내림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장계로 오징어[烏賊魚]를 기한을 지나 봉진하여 품질이 매우 열악하며, 색도 윤기가 없으니 황공하여 대죄한다고 하였다. 서형수(徐滢修)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오적어, 서형수.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八月 二十七日 丁卯

- 持平李羽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新除授掌令崔烜, 時在忠清道燕岐地, 請斯速乘駟上來事下諭. 答府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8월 27일(정묘)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이우진(李羽晉)의 계
- 지평 이우진(李羽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장령 최환(崔烜)이 지금 충청도 연기(燕岐)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우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八月 二十七日 丁卯

- 正言嚴思憲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大司諫洪明浩, 時在忠清道鎭川地, 司諫李思祚, 時在京畿通津地, 獻納金光岳, 時在豐德地, 請玆斯速乘駟上來事下諭. 答院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8월 27일(정묘)

-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정언 엄사헌(嚴思憲)의 계
- 정언 엄사헌(嚴思憲)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대사간 홍명호(洪明浩)가 지금 충청도 진천(鎭川) 땅에 있고, 사간 이사조(李思祚)는 지금 경기 통진(通津) 땅에 있으며, 헌납 김광악(金光岳)은 지금 풍덕(豐德)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 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엄사헌.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九月 八日 戊寅

- 以濟州領運進上, 民人高順昌上言, 傳于李頤祥曰, 已有下教, 詳考實蹟, 後日登對時稟處.

❖ 정조 10년(1786) 병오년 9월 8일(무인)

- 제주(濟州)의 진상에 대한 고순창(高順昌)의 상언에 대해 전교를 내림
- 제주(濟州)의 진상(進上) 영운(領運)에 대한 민인 고순창(高順昌)의 상언에 대해 이이상(李頤祥)에게 전교하기를, “이미 하교한 바 있다. 실적(實蹟)을 상세히 살펴보고 후일 등대(登對)할 때 품처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진상, 고순창.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九月 八日 戊寅

- 丙午九月初八日辰時，上御重熙堂。左副承旨入侍時，左副承旨趙衍德，假注書金祖淳，記事官李崑秀·尹行任，以次進伏訖。……又命書傳教曰，弘文提學，待明朝牌招。有隣曰，依下教，招問上言濟州民人高順昌等六人，則所告內以爲，各司進上，甘藷·榧子·藁古·軍箭木·螺鈿等物種上納次，閏七月二十三日，自本牧離發，無弊越海，而八月二十六日，到忠清道息島前洋，猝遇暴風，所乘船隻爲急浪所打傷，幾至湔沒之境，幸逢京江居崔元成所乘船隻，進上物種及船中六人，元成極力移載於渠船，本船則仍爲漂失矣。進上物種之無弊上納，船格六人之賴以得活，莫非元成拯救之致，則施賞典，以爲激勸之地云矣。果如上言內辭緣，則進上物種，船格六人之移載救活，崔元成事，雖涉可尙，而事非四件，已極猥屑，且地方公文，既無可據，則船隻之符同作奸，難保其必無，所當移送秋曹，查實處之，而島中愚氓，不足深責，今姑參酌，上言則勿施，何如？上曰，事係拯活人命，既聞之後，不可仍置，令本道查啓，可也。【出學條】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10년(1786) 병오년 9월 8일(무인)

- 진상을 운송한 제주(濟州)의 고창순(高順昌) 등을 초문(招問)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비변사 당상 서유린(徐有隣)의 계
- 병오년 9월 초8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좌부승지가 입시켰을 때 좌부승지 조연덕(趙衍德), 가주서 김조순(金祖淳),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또 쓸 것을 명하고 전교하기를, “홍문제학을 내일 아침에 패초(牌招)하라.”라고 하였다. 서유린(徐有隣)이 말하기를, “하교하신 대로 상언한 제주(濟州) 민인 고창순(高順昌) 등 6인을 초문(招問)하였습니다. 그들이 고하기를, ‘각사(各司)에 진상할 감곽(甘藷)·비자(榧子)·표고(藁古)·군전목(軍箭木)·나전(螺鈿) 등의 물종을 상납하기 위해 윤7월 23일에 제주목을 출발하였습니다. 별일 없이 바다를 건너 8월 26일에 충청도 식도(息島) 앞바다에 당도했는데 갑자기 폭풍을 만나, 타고 있던 배가 급랑에 휩쓸려 타상(打傷)을 입었습니다. 거의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러 다행히 경강(京江)에 사는 최원성(崔元成)이 탄 배를 만났습니다. 진상 물종 및 배에 있던 6인은 최원성과 협력하여 그 배에 옮겨 실었고, 본 배는 그대로 떠내려가 잃어버렸습니다

다. 진상할 물종을 탈없이 상납한 것, 배에 탄 6인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최원성이 구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전(賞典)을 베풀어 격려하고 권장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상언의 사연과 같다면, 진상 물종과 배에 탄 6인을 옮겨 신고 살려낸 최성원의 일은 비록 가상하나 일이 4건이 아니니 몹시 외람합니다. 또 지방의 공문으로 증거 삼을 것이 없어 배들 끼리 한데 얹혀 간계(奸計)를 꾸미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으니 의당 형조(刑曹)에 이송(移送)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하게 하고, 섬 안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깊이 꾸짖을 일이 못되니 이번에는 참작하고 상언은 시행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인명을 구해 낸 일인데 이미 듣고서는 그대로 둘 수 없다. 본도(本道)에서 조사하여 장계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³⁵⁴⁾ 【거조(學條)를 냄】 물러날 것을 명하자 모든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 주제어: 제주 민인, 고창순, 진상, 최원성.

354) 《비변사등록》 1786년(정조 10) 9월 10일 기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九月 十三日 癸未

- 執義李壽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鞠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9월 13일(계미)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집의 이수함(李壽咸)의 계
- 집의 이수함(李壽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수함.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九月 二十日 庚寅

- 以京畿監司狀啓，楸子島定配罪人中官李允默押送事，傳于孟至大曰，尤甚邑勿定配所，已有許施。本島如在尤甚，以隣近稍實邑，更定配所，嚴禁雜人事，自本道卽爲文移該道，舉行形止，仍令該道伯狀聞事，回諭。

❖ 정조 10년(1786) 병오년 9월 20일(경인)

-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이윤묵(李允默)의 압송에 관한 전교
- 경기감사가 장계로 추자도(楸子島)에 정배된 죄인 중관(中官) 이윤묵(李允默)을 압송하는 일에 대해 보고하였다. 맹지대(孟至大)에게 전교하기를, “우심읍(尤甚邑)을 배소(配所)로 정하지 않는 것을 이미 허락하였다. 본 섬이 만약 우심(尤甚)에 해당한다면 인근 초실읍(稍實邑)으로 다시 배소를 정하고 잡인(雜人)을 엄금하도록 본도(本道)로부터 즉시 해당(該道)로 이문(移文)하고, 거행 형지(形止)를 해도 관찰사로 하여금 장계로 보고하게 하도록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이윤묵, 우심읍, 초실읍, 맹지대.

❖ 乾隆 五十一年 丙午 九月 二十九日 己亥

- 以全羅監司狀啓，罪人李允默楸子島仍定配所事，傳于洪義榮曰，島中多庶孽，以本郡陸地中更定配所，發飭防守事，回諭。

❖ 정조 10년(1786) 병오년 9월 29일(기해)

- ☐ 죄인 이윤묵(李允默)의 배소를 추자도(楸子島)에서 육지로 옮기라고 전교함
- 전라감사가 장계로 죄인 이윤묵(李允默)의 배소를 추자도(楸子島)로 그대로 정한 일을 보고하였다. 홍의영(洪義榮)에게 전교하기를, “섬 안에 서열(庶孽)이 많으니 본군(本郡) 육지 중에서 다시 배소를 정하고 칙지를 보내 방수(防守)하도록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이윤묵, 배소, 홍의영.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月 五日 乙巳

○ 丙午十月初五日辰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左議政李福源，知中樞府事具善復，行兵曹判書李命植，行司直金華鎮，左參贊金魯鎮，右參贊李在協，行戶曹判書鄭一祥，行司直鄭昌聖，行副司直李性源，吏曹判書俞彥鎬，禮曹判書徐有隣，行副司直李柱國·徐有大，行都承旨李秉模，漢城右尹沈豐之，行副司直金思穆，校理李晴，同副承旨朴天衡，假注書朴著壽，事變假注書李德鉉，記事官李崑秀·尹行任，以次進伏訖。…… 福源曰，前因武兼金貴澤所懷，耽羅移粟時土產雜物，移納于羅州濟民倉便否，令道臣往復該牧，論理狀聞之意，有所行會矣。卽見全羅監司沈頤之狀啓，則枚舉三邑牒報以爲，駕海之路，經過七山險洋，多有臭載之患，故一島民情，皆願移納於羅州，且濟民倉，近因糶糴於各邑，百餘間倉舍，一併空虛，羅鋪元穀之散在各邑者，雖盡數移儲，亦無狹窄之慮，在官家無創始之難，在島民免涉險之危，依該牧所願，涼藿分俵，除却湖西九邑，換定羅州附近，以爲分數俵賣之地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經涉險洋，不但臭載之可惜，實關民命之安危，三邑論報，皆以移納爲便，道臣狀聞亦以依施爲請，其在軫念之道，宜無持難之事。而羅里鋪設置既久，規模已成，變通之舉，恐難容易，且羅州附近，皆屬歉荒，創設之初，似多不便，更令道臣，詳問便否於羅州諸邑，參量事勢，論理狀聞後，稟處，何如？上曰，曾經道伯，各陳所見，可也。左參贊金魯鎮曰，羅鋪濟倉，均爲耽羅救荒之備，而雜物船運，既有遠近便否之別，則以此移彼，恐無創設難易之可言。且湖西九郡之散賣，亦爲越他境貽民弊之端，羅州以下諸邑民情，如不以爲難便，則依狀請移屬濟倉，似爲兩便，俄於賓廳，亦以此酬酢於大臣矣。行戶曹判書鄭一祥曰，羅里鋪倉，蓋爲接濟耽羅而設也，而島民間多臭載之患，至有移納之願。湖西九郡，若無所害，羅州近邑，皆以爲便，則移屬於濟民倉，似無所妨。禮曹判書徐有隣曰，羅鋪穀物，散在各邑，臨陂·羅州，別無異同，湖西九郡所受涼藿，羅州等附近邑，若皆願受，不以爲苦，則取便移設，有利無害。此一款，更令道臣，詳探物情後舉行，恐合事宜矣。上曰，依爲之。【出學條】……。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0월 5일(을사)

- ☐ 탐라(耽羅) 곡속(穀粟)을 나주 제민창으로 옮겨 납부할 것을 청하는 김귀택(金貴澤)의 소회에 대해 논의함
- 병오년 10월 초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좌의정 이복원(李福源),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 행 병조판서 이명식(李命植), 행 사직 김화진(金華鎭), 좌참찬 김노진(金魯鎭), 우참찬 이재협(李在協), 행 호조판서 정일상(鄭一祥), 행 사직 정창성(鄭昌聖), 행 부사직 이성원(李性源), 이조판서 유언호(兪彦鎬), 예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행 부사직 이주국(李柱國)·서유대(徐有大), 행 도승지 이병모(李秉模), 한성 우윤 심풍지(沈豐之), 행 부사직 김사목(金思穆), 교리 이청(李晴), 동부승지 박천형(朴天衡), 가주서 박시수(朴蓍壽), 사변가주서 이덕현(李德鉉), 기사관 이곤수(李崑秀)·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아가 앞드렸다. <중략> 이복원이 말하기를, “전에 무겸(武兼) 김귀택(金貴澤)이 소회를 말함으로 인하여 탐라(耽羅)에 곡속(穀粟)을 옮길 때 토산(土產) 잡물(雜物)을 나주(羅州) 제민창(濟民倉)에 옮겨 납부하는 것이 편한지 여부를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해목(該牧)과 문서 왕복을 통하여 이치를 따져 장문(狀聞)하도록 통보(通報)한 바 있습니다. 이미 전라감사 심이지(沈頤之)의 장계를 보니, 삼읍의 첩보(牒報)를 날날이 거론하고 ‘바다를 건너는 길이 일곱 산과 험한 바다를 지나야 하므로 물건이 손상될 염려가 많으므로 온 섬의 백성들은 모두 나주에 옮겨 납부하기를 원하고, 또 제민창은 요즈음 각읍에 조적(糶糴)하기 때문에 1백여 칸이 넘는 창사(倉舍)가 모두 비어 있고, 나리포(羅里舖) 원곡(元穀)도 각 읍에 산재해 있는 것을 전부 옮겨 넣는다 해도 역시 자리가 좁을 염려가 없습니다. 관가(官家)에는 창시(創始)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도민에게는 험한 바다를 건너는 위험을 면할 수 있으니 해목(該牧)에서 바라는 대로 갯랑과 미역등을 나누어 줄 때 호서 9읍을 제외하고는 나주 부근으로 바꾸어 정해서 수량을 나누어 표매(倭賣)하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분부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험한 바다를 건너는 것은 비단 물품이 손상(損傷)되는 것이 아까울 뿐 아니라 실지로 백성들의 목숨의安危(安危)에 관계되는 만큼 삼읍의 논보(論報)는 모두 옮겨 납부하는 것이 편하다 하였고 도신의 장문도 역시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니 진념(軫念)하시는 뜻에는 어려울 일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나리포를 설치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규모도 이미 짜여 있는데 변통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나주 부근은 모두 흥년이 들어 처음 창설할 때 불편한 일이 많을 듯하니 다시 도신으로 하여금 나주 등 제읍(諸邑)에 상세히 편부(便否)를 물어 사세(事勢)를 참작하여 이치를 따져 장문하게 한 다음에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찌기 도백(道伯)을 지낸 사람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함이 옳다.”라고 하였다. 좌참찬 김노진이 말하기를, “나리포와 제민창은 모두 탐라의 재황(災荒)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잡물을 배로 옮기는데 이미 원근(遠近)과 편부의 구별이 있으니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데는 창설(創設)이나 난이(難易)에 대하여는 말할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호서 9군(郡)의 발매(發賣)는 역시 다른 경계를 넘는 것이므로 민폐를 끼칠 발단(發端)이 되고 나주 이하의 민정(民情)이 불편함이 없다면 장청(狀請)에 따라 제민창(濟民倉)에 소속시키는 것이 양쪽 모두 편리할 듯하여 별안간 빈청(賓廳)에서도 이 일로 대신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행 호조판서 정일상이 말하기를, “나리포창은 대개 탐라에 접제(接濟)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도민 사이에 물건이 손상될 염려가 많아 옮겨 납부하기를 원하게 되었는데, 호서 9군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나주 근처 읍이 모두 편리한 만큼 제민창에 이속(移屬)하는 것은 방해(妨害)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예조판서 서유린이 말하기를, “나리포 곡물은 각읍에 산재해 있어 임피(臨陂)·나주와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호서 9군에서 받는 갯량과 미역을 나주 부근 읍에서 모두 받기를 원한다면 고생스럽지 않으니 편리한 것을 취하여 옮겨 설치하면 일익은 있어도 피해는 없을 것이니, 다시 도신으로 하여금 물정을 상세하게 탐지(探知)한 뒤에 거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³⁵⁵⁾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탐라, 조적, 나리포, 김귀택, 나주, 심이지.

355) 《비변사등록》 1786년(정조 10) 10월 6일 기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月 十三日 癸丑

- 持平金遇國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王法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新除授司諫院正言權坪, 時在京畿楊州地,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府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0월 13일(계축)

-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김우국(金遇國)의 계
- 지평 김우국(金遇國)이 아뢰기를, “하찮은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활발하게 내통한 정황은 그가 이미 공초에서 분명히 밝혔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참작하여 처단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데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새로 제수한 사간원 정언 권평(權坪)이 지금 경기 양주(楊州)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는 일은 아뢰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우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月 十四日 甲寅

- 持平金遇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還寢李魯春絶島安置之命,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答府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0월 14일(갑인)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김우국(金遇國)의 계
- 지평 김우국(金遇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이노춘(李魯春)을 절도(絶島)에 안치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형문하고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우국.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月 十五日 乙卯

- 掌令李庚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還寢李魯春絶島安置之命, 亟令王府, 該鞠嚴問, 期〈於〉得情.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0월 15일(을묘)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이경운(李庚運)의 계
- 장령 이경운(李庚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이노춘(李魯春)을 절도(絶島)에 안치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형문하고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경운.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月 十六日 丙辰

- 執義朴廣源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請還寢李魯春絕島安置之命，亟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 答曰，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0월 16일(병진)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집의 박광원(朴廣源)의 계
- 집의 박광원(朴廣源)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이노춘(李魯春)을 절도(絶島)에 안치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형문하고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광원.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月 十八日 戊午

- 執義俞彦脩, 掌令鄭景祚, 持平朴宗正 · 鄭來百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新除授掌令金星甲, 時在全羅道南原地, 司諫院司諫李身晦, 時在全州地, 獻納盧廷良, 時在南原地, 正言李廷烈, 時在京畿安山地, 請竝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府曰, 不允. 末端事, 亟停勿煩. 下諭事, 依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0월 18일(무오)

-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집의 유언수(俞彦脩) 등의 계
- 집의 유언수(俞彦脩), 장령 정경조(鄭景祚), 지평 박종정(朴宗正) · 정내백(鄭來百)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사간원 장령 김성갑(金星甲)이 전라도 남원(南原) 땅에 있고, 사간원 사간 이신회(李身晦)는 지금 전주(全州) 땅에 있으며, 헌납 노정량(盧廷良)은 지금 남원(南原) 땅에 있으며, 정언 이정렬(李廷烈)은 지금 경기 안산(安山)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의 일은 번거롭게 하지 말고 속히 정지하라. 하유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유언수.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月 十九日 己未

- 持平鄭來百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削版罪人金字鎭爲先施以絕島安置之典. 答府曰, 不允. 末端事, 亟停勿煩.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0월 19일(기미)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정내백(鄭來百)의 계
- 지평 정내백(鄭來百)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사판(仕版)에서 삭거한 죄인 김우진(金字鎭)에게 절도에 안치하는 벌을 우선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의 일은 번거롭게 하지 말고 속히 정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정내백.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月 二十日 庚申

- 持平朴宗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削版罪人金字鎭爲先施以絕島安置之典. 答府曰, 不允. 末端事, 亟停勿煩.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0월 20일(경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박종정(朴宗正)의 계
- 지평 박종정(朴宗正)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사판(仕版)에서 삭거한 죄인 김우진(金字鎭)에게 절도에 안치하는 벌을 우선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의 일은 번거롭게 하지 말고 속히 정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종정.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月 二十一日 辛酉

○ 丙午十月二十一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李福源, 右議政金煜, 行司直金華鎮, 右參贊金魯鎮, 行戶曹判書鄭一祥, 行刑曹判書鄭昌聖, 行副司直李性源, 禮曹判書徐有隣, 行副司直徐有寧, 兵曹判書金履素, 行副司直徐浩修, 吏曹判書李在簡, 工曹判書趙時浚, 行副司直徐有大, 吏曹參判李秉模, 行都承旨沈豐之, 江華留守趙鼎鎮, 執義俞彥脩, 副校理趙雲紀, 右承旨柳誼, 假注書金祖淳, 事變假注書李德鉉, 記事官尹行任·李相璜, 以次進伏訖. …… 彥脩奏府前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0월 21일(신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대신들과 논의함

○ 병오년 10월 21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비변사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좌의정 이복원(李福源), 우의정 김익(金煜), 행 사직 김화진(金華鎮), 우참찬 김노진(金魯鎮), 행 호조판서 정일상(鄭一祥), 행 형조판서 정창성(鄭昌聖), 행 부사직 이성원(李性源), 예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행 부사직 서유녕(徐有寧), 병조판서 김이소(金履素), 행 부사직 서호수(徐浩修), 이조판서 이재간(李在簡), 공조판서 조시준(趙時浚), 행 부사직 서유대(徐有大), 이조참판 이병모(李秉模), 행 도승지 심풍지(沈豐之), 강화유수 조정진(趙鼎鎮), 집의 유언수(俞彦脩), 부교리 조운기(趙雲紀), 우승지 유의(柳誼), 가주서 김조순(金祖淳), 사변가주서 이덕현(李德鉉), 기사관 윤행임(尹行任)·이상황(李相璜)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유언수가 부계(府啓)를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유언수.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一月 三日 癸酉

- 以濟州牧使狀啓，旌義縣監，限麥秋仍任，令該曹稟處事，傳于朴天衡曰，依狀請施行事，回諭.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1월 3일(계유)

- ☐ 정의현감(旌義縣監)을 유임시켜 달라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장계로 정의현감(旌義縣監)을 보리 수확이 끝날 때까지 그 대로 유임시키도록 행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달라고 보고하였다. 박천형(朴天衡)에게 전교하기를,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정의현감, 박천형.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一月 四日 甲戌

- 濟州防禦使狀啓, 九月朔所封烏賊魚, 以槌鰻代封, 惶恐待罪事, 傳于徐龍輔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1월 4일(갑술)

- 9월 초하루에 봉진할 오징어[烏賊魚]를 추복(槌鰻)으로 대신하게 되어 대죄한다는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의 장계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가 장계로 9월 초하루에 봉진할 오징어[烏賊魚]를 추복[槌鰻]으로 대신 봉진하게 되니 황공하여 대죄한다고 하였다. 서용보(徐龍輔)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오징어, 전복, 서용보.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一月 六日 丙子

- 李東郁,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使李命俊, 啓本內, 濟州前判官金再郁, 大靜前縣監朴尙春等, 令該府, 照律勘處事, 啓下矣. 金再郁·朴尙春等, 今方待命, 卽爲拿囚之意, 敢啓. 傳曰, 保放後, 開坐時捧供.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1월 6일(병자)

-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재욱(金再郁)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상춘(朴尙春)의 처리에 대한 의금부의 계
- 이동욱(李東郁)이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의 계본(啓本)에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재욱(金再郁),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상춘(朴尙春) 등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올문을 참조하여 감처(勘處)하라고 계하(啓下)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재욱·박상춘 등은 지금 명을 기다리게 하고 즉시 잡아 가두라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보방(保放) 후 개좌(開坐)할 때에 공초를 받으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대정현감, 김재욱, 박상춘, 제주목사, 이명준.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一月 九日 己卯

- 有政. 吏批, 判書李在簡進, 參判未差, 參議李集斗病, 行右承旨黃昇源進. 以李秉模爲吏曹參判, …… 高廷煥爲重林察訪, 旌義縣監李甲龍仍任事, 承傳.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1월 9일(기묘)

- ☐ 정사에서 정의현감(旌義縣監) 이갑룡(李甲龍)을 유임시키라는 전교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이재간(李在簡)은 나왔고, 참판은 차출하지 않았고, 참의 이집두(李集斗)는 병(病) 중이며, 행 우승지 황승원(黃昇源)은 나왔다. 이병모(李秉模)를 이조참판으로 삼고, <중략> 고정환(高廷煥)을 중림찰방(重林察訪)으로 삼고, 정의현감(旌義縣監) 이갑룡(李甲龍)을 유임시키라는 전교를 받들었다.

△ 주제어: 정의현감, 이갑룡, 이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一月 十一日 辛巳

- 丙午十一月十一日辰時，上御熙政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右承旨洪仁浩，假注書洪樂貞，事變假注書張錫胤，記事官尹行任·李相璜，領議政金致仁，左議政李福源，右議政金煜，行戶曹判書鄭一祥，行刑曹判書鄭昌聖，禮曹判書徐有隣，行副司直徐有慶·李柱國，工曹判書趙時俊，開城留守尹蕃東，行副司直徐有大，吏曹參判李秉模，江華留守趙鼎鎮，副校理洪聖淵，正言韓商新，以次進伏訖。……致仁曰，此濟州牧使李命俊，災實分等狀啓也。以爲三邑穡事，俱未免歉，大靜爲稍實，本州爲之次，旌義爲尤甚，而賙賑一款，姑不舉論。將觀開春民情，追後狀聞計料，而男丁大同米，每口五升，全數蠲減，畚租尤甚處折半，之次三分一代捧。各寺奴婢身貢米，依近例二斗內，減一斗，旌義縣尤甚十二里還上折半代捧，舊還則新還尙難准捧，一時竝督，行之不得，姑爲停止。軍兵操鍊，姑令停退，待明春從附近哨司操鍊，凡諸舉行等節，固當登聞，恭俟處分。而候風往來之際，動費數朔，故敢援前例，先此舉行，事涉擅便，誠極惶悚，竝令廟堂稟處矣。大同蠲減，尤甚處代捧身貢米減捧，舊還停止，軍兵操鍊停退等事，自前先行後狀聞，例也，今無稟處之事，三邑分等，依狀請施行，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1월 11일(신사)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를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보고함
- 병오년 11월 11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으로 나아갔다. 대신·비변사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우승지 홍인호(洪仁浩), 가주서 홍낙정(洪樂貞), 사변가주서 장석윤(張錫胤), 기사관 윤행임(尹行任)·이상황(李相璜),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좌의정 이복원(李福源), 우의정 김익(金煜), 행 호조판서 정일상(鄭一祥), 행 형조판서 정창성(鄭昌聖), 예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행 부사직 서유경(徐有慶)·이주국(李柱國), 공조판서 조시준(趙時俊), 개성유수 윤시동(尹蕃東), 행 부사직 서유대(徐有大), 이조참판 이병모(李秉模), 강화유수 조정진(趙鼎鎮), 부교리 홍성연(洪聖淵), 정언 한상신(韓商新)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김치인이 말하기를, “이는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입니다. 장계에 말하기를, ‘삼읍(邑)의 농사는 모두 흉년을 면치 못하여 대정(大靜)은

초실(稍實), 본읍(本邑)은 지차(之次), 정의(旌義)는 우심(尤甚)으로 매겼습니다. 진휼(賑恤)에 대한 일은 아직 거론하지 않고 앞으로 봄을 맞아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추후에 장문(狀聞)할 계획입니다. 남정(男丁) 대동미(大同米)는 매구(每口) 5승(升)을 전수(全數) 감면하고, 답조(畝租)는 우심한 곳은 절반, 지차는 3분의 1을 대봉(代捧)하고, 각 시노비(寺奴婢) 신공미(身貢米)는 근례에 따라 2두(斗) 중에 1두를 감면하고, 정의현(旌義縣)의 우심(尤甚) 12리(里)의 환자(還上)는 절반을 대봉(代捧)하고, 묵은 환자는 새 환자도 아직 제대로 받기 어려운데 일시에 아울러 독촉하면 거행할 수 없으므로 우선 중지하고, 군병(軍兵) 조련(操鍊)은 우선 연기하여 내년 봄을 기다려 가까운 초사(哨舍)에서 조련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거행 절차는 마땅히 장문을 올리고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데 바람 철에 왕래하는데에 몇 달을 허비하게 되므로 감히 전례를 원용(援用)하여 이처럼 먼저 거행하게 되어 마음대로 처리한 일이 참으로 몹시 황공합니다. 아울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하였습니다. 대동(大同)을 감면하고, 우심처에는 대봉하게 하고, 신공미(身貢米)를 줄여 받고, 묵은 환자는 중지하고, 군병 조련을 연기하는 등의 일은 전부터 먼저 거행하고 뒤에 장문하는 것이 예(例)이므로 지금은 품처할 일이 없습니다. 삼읍의 분등은 장계로 청한 내용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뉘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³⁵⁶⁾ 【거조(舉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정의현, 재실분등, 대정, 초실, 지차, 우심.

356) 《비변사등록》 1786년(정조 10) 11월 12일 기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一月 十七日 丁亥

- 掌令成鼎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新除授執義姜彝正, 時在忠清道公山地, 請斯速乘駟上來事下諭. 答府曰, 不允. 下諭事依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1월 17일(정해)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성정진(成鼎鎭)의 계
- 장령 성정진(成鼎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집의 강이정(姜彝正)이 지금 충청도 공산(公山)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정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一月 十七日 丁亥

- 正言韓商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還發配所罪人宋迪中, 亟令王府, 拿來嚴鞫, 期於得情.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1월 17일(정해)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한상신(韓商新)의 계
- 정언 한상신(韓商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배소로 떠난 죄인 송적중(宋迪中)에 대해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붙잡아 와서 엄히 국문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한상신.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一月 二十四日 甲午

- 又啓目，濟州前判官金再郁，大靜前縣監朴尙春，原情云云。問目內辭緣，泛稱遲晚，竝只刑推得情，何如？判付啓。除刑推，議處爲良如教。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1월 24일(갑오)

-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재욱(金再郁)，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상춘(朴尙春)의 형추를 청하는 의금부의 계목
- 또 계목(啓目)에，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재욱(金再郁)，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상춘(朴尙春)이 이러니 저러니 원정(原情)하면서 문목(問目) 안의 내용에 대해 범범하게 지만(遲晚)이라 하였으니 모두 형추하여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계목에 대해 판부(判付)하기를， “형추하지 말고 의논하여 처리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대정현감, 김재욱, 박상춘.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一月 二十九日 己亥

- 義禁府照目, …… 又照目, 濟州前判官金再郁, 大靜前縣監朴尙春等矣, 國穀典守, 法意至重是白去乙, 金再郁段, 倉色輩作奸虛錄之數, 至於一百九十餘石, 之多, 而矇不覺察. 朴尙春段, 營吏所逋四十餘石, 既已抄送於營倉, 則雖非渠所知是如爲白乎乃, 司倉穀三十餘石之倉色幻弄, 不能覺察, 事極矇然, 竝只以此照律罪. 金再郁·朴尙春段, 各杖一百收贖, 告身盡行追奪, 竝只私罪奉教. 依允. 朴尙春乙良, 功減一等爲良如教.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1월 29일(기해)

-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재욱(金再郁),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상춘(朴尙春)에 대한 조율(照律) 등의 문제로 올린 의금부의 조목(照目)
- 의금부 조목(照目)에, 〈중략〉 또 조목에,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재욱(金再郁),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상춘(朴尙春) 등은 국곡(國穀)을 전수(典守)하는 법의(法意)가 매우 중요한데, 김재욱은 창색(倉色) 무리가 간교를 부려 허록(虛錄)한 수가 190여 석(石)이나 되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박상춘은 영리(營吏)가 포함한 40여 석을 이미 영창(營倉)에 뽑아 보냈으니 그가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사창곡(司倉穀) 30여석의 창색(倉色)을 희롱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일이 매우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니 모두 이로써 올문에 비추어 죄를 주어야 합니다. 김재욱·박상춘은 각각 장(杖) 1백에 속전을 거두고, 고신(告身)은 모두 추탈(追奪)하고, 아울러 다만 사죄(私罪)를 봉교(奉教)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아뢰대로 하라고 윤허하고, 박상춘은 공로를 참작하여 한 등급을 낮추어 처벌하라고 전교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대정현감, 박상춘, 김재욱, 사창곡.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二月 二日 辛丑

- 持平鄭晩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壽賢, 依律處斷. …… 請削板罪人金字鎭爲先施以絕島安置之典. 答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2월 2일(신축)

-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정만석(鄭晩錫)의 계
- 지평 정만석(鄭晩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사판(仕版)에서 삭거한 죄인 김우진(金字鎭)에게 절도에 안치하는 벌을 우선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정만석.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二月 二日 辛丑

- 正言韓商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還發配所罪人宋迪中, 亟令王府, 拿來嚴問, 期於得情. 答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2월 2일(신축)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한상신(韓商新)의 계
- 정언 한상신(韓商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배소로 떠난 죄인 송적중(宋迪中)에 대해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붙잡아 와서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한상신.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二月 三日 壬寅

- 趙尙鎮, 以漢城府言啓曰, 今此丙午年獻民數時, 京中及八道元戶人口摠數, 抄錄入啓, 而濟州三邑民數, 姑未上來, 海島遲速, 不可預料, 故京外已磨勘戶口摠數, 爲先入錄, 濟州三邑, 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2월 3일(임인)

- 병오년 민수(民數) 보고에서 빠진 제주(濟州) 삼읍을 추후에 보고하겠다는 한성부의 계
- 조상진(趙尙鎭)이 한성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금번 병오년 민수(民數)를 바칠 때 서울 및 8도의 원호(元戶) 인구총수를 초록(抄錄)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濟州) 삼읍의 민수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니 바다 건너 섬이라 느리고 빠르고를 미리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외(京外)의 이미 마감한 호구총수(戶口摠數)를 우선 입록(入錄)하고 제주 삼읍은 올라오기를 기다려 추후에 추가로 기록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뢴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민수, 호구총수, 원호.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二月 七日 丙午

- 濟州牧使狀啓, 莫重薦新及當朔進上橘果, 愆期惶恐待罪事, 傳于李集斗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2월 7일(병오)

-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천신과 진상의 부실에 대한 대죄를 표하는 장계를 올림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장계로, 무엇보다 중요한 천신(薦新)과 초하루 진상(進上)으로 올릴 귤과(橘果)가 시일을 어긴 것을 황공하게 여기며 대죄한다고 하였다. 이 집두(李集斗)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천신, 진상, 귤과.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二月 十日 己酉

- 趙衍德, 以鞠廳言啓曰, 卽伏見判付下者, 有罪人金字鎮大靜縣圍籬安置之命矣. 臣等相顧驚惑, 誠莫曉其何故也. 字鎮之千罪萬惡, 豈可至今容息於覆載之間, …… 雖以天地之德, 好生之仁, 姑許其戴頭, 而三尺至嚴, 不可撓屈, 字鎮之生出獄門, 萬萬無是理, 臣等寧被慢命之誅? 決不敢奉行, 亟收成命, 仍令捧結案正法, 何如? 答曰, 酌處意在, 卿等退去, 原傳教頒布, 然後中外可以知其罪惡, 卽爲騰送政院, 可也.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2월 10일(기유)

- ☐ 김우진(金字鎭)을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하라고 명한 것에 대한 국청(鞠廳)의 초기
- 조연덕(趙衍德)이 국청(鞠廳)의 말로써 아뢰기를, “지금 판부(判付)해 주신 것을 보았는데, 죄인 김우진(金字鎭)을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돌아보며 놀라고 당황했으며, 참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김우진의 천만 가지 죄악이 어찌 천지간에 숨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중략〉 비록 천지간의 무한한 덕과 살리기를 좋아하는 인덕으로 잠시 머리를 들도록 허락하였으나, 국법이 지엄하니 굽힐 수 없습니다. 김우진이 살아서 옥문을 나서는 것은 결코 이치에 맞지 않으니, 저희들이 차라리 왕명을 소홀히 한 처벌을 받을지라도 결단코 감히 받들어 이행하지 못하겠습니다. 빨리 명을 회수하고 결안(結案)을 받아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참작하여 처리한 것은 그 뜻이 있으니, 경들은 물러가도록 하라. 원래의 전교를 반포해야만 안팎에서 그의 죄악을 알 것이니, 즉시 베껴서 승정원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위리안치, 김우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二月 十日 己酉

- 李集斗, 以義禁府言啓曰, 卽接南部成冊, 則大逆不道罪人善復應坐諸人, 查出以來矣. 妾成梅全羅道濟州牧爲婢, 妾順伊羅州牧智島爲婢, 妾阿只連伊靈光郡荏子島爲婢, 妾小淑興陽縣呂島爲婢, 子婦一任慶尙道巨濟府爲婢, 子之妾昆玉咸鏡道茂山府爲婢, 庶子好石年十, 庶子重石年五, 俱以年未滿免絞, 好石靈巖郡楸子島爲奴, 重石康津縣古今島爲奴, 孫錫和羅州牧黑山島爲奴, 庶孫道也知珍島郡金甲島爲奴, 庶弟善德濟州牧大靜縣爲奴, 庶姪信謙南海縣安置, 庶姪寬謙會寧府安置, 竝令刑曹, 押送于各其配所, 子以謙所當緣坐處絞, 而渠之逆節, 今方究覈, 待究竟舉行, 庶母貞伊年六十二, 依律文免坐, 何如? 傳曰, 允. 次次發配, 其中男丁, 出給畿營, 別定將校起送, 仍令沿路諸道監司, 境內替授, 定營校押付, 善德不可輕配, 姑令仍囚, 拘留營門, 可也.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2월 10일(기유)

- 죄인 구선복(具善復)과 연좌된 이들을 제주목(濟州牧) 등 여러 고을 노비로 삼는 내용으로 보고한 의금부의 초기(草記)
- 이집두(李集斗)가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지금 남부성책(南部成冊)을 보니 대역무도한 죄인 구선복(具善復)의 응좌(應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온 것입니다. 첩(妾) 성매(成梅)는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의 비(婢)로 삼고, 첩 순이(順伊)는 나주목(羅州牧) 지도(智島)의 비로 삼고, 첩 아지연이(阿只連伊)는 영광군(靈光郡) 임자도(荏子島)의 비로 삼고, 첩 소숙(小淑)은 흥양현(興陽縣) 여도(呂島)의 비로 삼고, 며느리 일임(一任)은 경상도 거제부(巨濟府)의 비로 삼고, 아들의 첩 곤옥(昆玉)은 함경도 무산부(茂山府)의 비로 삼습니다. 서자(庶子) 호석(好石)은 10세, 서자 중석(重石)은 5세로 모두 나이가 차지 않아 교형을 면합니다. 호석은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의 노(奴)로 삼으며, 중석은 강진현(康津縣) 고금도(古今島)의 노로 삼습니다. 손자 석화(錫和)는 나주목(羅州牧) 흑산도(黑山島)의 노가 되고, 서손(庶孫) 도야지(道也知)는 진도군(珍島郡) 금갑도(金甲島)의 노가 되며, 서제(庶弟) 선덕(善德)은 제주목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습니다. 서질(庶姪) 신겸(信謙)은 남해현(南海縣)에 안치하고, 서질 관겸(寬謙)은 회령부(會寧府)에 안치합니다. 모두 형조로 하여금 각각의 배소로 압송하게 하고, 아들 이겸(以謙)은 연좌에 해당하여 교형에 처할 것이나 그의 역절(逆節)을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 조사를 마치기를 기다려 거행하겠습니다. 서모(庶母) 정이(貞伊)는 62세로 율문에 따라 연좌를 면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차례차례 배소로 출발하라. 그중 남정(男丁)을 경기감영에 내주어 따로 장교를 정해 기송(起送)하고, 그대로 연로(沿路) 여러 도(道)의 관찰사로 하여금 구역 내에서 바꾸어 제수하게 하고, 영교(營校)를 정해 압송하여 부치라. 구선덕(具善德)은 가볍게 찬배할 수 없으니 우선 그대로 가두어 영문(營門)에 억류해 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추자도, 구선복, 응좌.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二月 十日 己酉

- 洪義榮,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大逆不道罪人善復妾成梅全羅道濟州牧, 妾順伊羅州牧智島, 妾阿只連<伊>靈光郡荏子島, 妾小淑興陽縣呂島, 子婦一任慶尙道巨濟府, 子之妾昆玉咸鏡道茂山府竝爲婢, 庶子好石全羅道靈巖郡楸子島, 庶子重石康津縣古今島, 孫錫和羅州牧黑山島, 庶孫道也知珍島郡金甲島竝爲奴, 庶姪信謙慶尙道南海縣, 庶姪寬謙咸鏡道會寧府, 竝流三千里安置, 令刑曹押送, 而次次發配, 其中男丁, 出付畿營, 別定將校押送, 仍令諸道監司, 境內替授, 定營校押付事, 命下矣. 依傳教, 罪人等竝次次發配, 而其中罪人好石, 則臺啓方以處絞爲請, 姑爲仍囚, 錫和·道也知·信謙·寬謙等四名, 分付畿營及沿路各道道臣, 別定營校, 着意押付事, 一體發關分付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2월 10일(기유)

□ 죄인 구선복(具善復)과 응좌된 이들의 처리에 대한 형조의 초기

- 홍의영(洪義榮)이 형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의금부의 계사(啓辭)에 따라 대역무도한 죄인 구선복(具善復)의 첩 성매(成梅)는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첩 순이(順伊)는 나주목(羅州牧) 지도(智島), 첩 아지련이(阿只連伊)는 영광군(靈光郡) 임자도(荏子島), 첩 소숙(小淑)은 흥양현(興陽縣) 여도(呂島), 며느리 일임(一任)은 경상도 거제부(巨濟府), 아들의 첩 곤옥(昆玉)은 함경도 무산부(茂山府)의 비(婢)로 모두 삼습니다. 서자(庶子) 호석(好石)은 전라도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 서자 중석(重石)은 강진현(康津縣) 고금도(古今島), 손자 석화(錫和)는 나주목(羅州牧) 흑산도(黑山島), 서손(庶孫) 도야지(道也知)는 진도군(珍島郡) 금갑도(金甲島)에서 모두 노(奴)가 됩니다. 서질(庶姪) 신겸(信謙)은 경상도 남해현(南海縣), 서질 관겸(寬謙)은 함경도 회령부(會寧府)로 모두 유(流) 3천리하고 안치합니다. 형조로 하여금 압송하게 하고 차례차례 배소로 출발하되, 그중 남정(男丁)을 경기감영에 내주어 따로 장교를 정해 압송하고, 그대로 여러 도(道)의 관찰사로 하여금 구역 내에서 교체하여 제수하게 하며 영교(營校)를 정해서 압송하여 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전교에 따라 죄인들을 모두 차례로 배소로 출발하겠습니다. 그중 죄인 호석은 대계(臺啓)로 교형에 처하라는 청이 있었으니 우선 그대로 수감하고, 석화·도야지·신겸·관겸 등 4명은 경기감영 및 연로의 각 도 관찰사에게 분부하

여 영교를 따로 정해 압송해 보내는 일을 일체 관문을 발하여 분부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추자도, 구선복.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二月 十一日 庚戌

- 趙英鎭, 以義禁府言啓曰, 罪人宇鎭, 濟州牧大靜縣減死圍籬安置, 罪人以謙用法, 今日內舉行事, 命下矣. 臣等新叨獄官, 雖未參鞠, 第以判付所下言之, 宇鎭之千罪萬惡, 莫非覆載間晷刻難容之劇逆, 【二行刀割】當一一嚴鞠, 快正王法, 決不可遽施酌處, 以謙則復賊窮凶情節, 卽古今之所未有, 渠以其父之子, 凶謀僭計, 無不同參, 則亦宜一體嚴問, 究覆逆節, 不當只施隨坐之律, 臣等雖被重誅, 有不可舉行之意, 敢啓. 答曰, 斯速舉行.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2월 11일(경술)

□ 김우진(金字鎭)과 구이겸(具以謙)의 형 집행에 관한 의금부의 초기

- 조영진(趙英鎭)이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죄인 김우진(金字鎭)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 사형을 감하고 위리안치하고, 죄인 구이겸(具以謙)의 형 집행을 당일에 거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저희는 새로 제수된 옥관(獄官)으로 비록 국청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판부(判付)하신 내용으로 말하자면 김우진의 천만가지 죄악은 천지간에 잠시도 용서할 수 없는 극악한 반역입니다. 【2행이 도할(刀割)됨】 마땅히 일일이 엄히 국문하여 시원하게 국법대로 처결해야지 결코 참작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구이겸은 역적 구선복이 극도로 흉악한 행위를 한 자로서 고금에도 없는데, 그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흉악하고 참혹한 계략에 모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니 또한 마땅히 일체를 엄히 국문하여 역절(逆節)을 밝혀내야 하며, 따라서 참여한 법만 시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들이 비록 중한 처벌을 받을지라도 거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김우진, 위리안치, 구이겸.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二月 十六日 乙卯

- 大司憲金憲, 執義兪彥脩, 掌令姜忱 · 李永穆, 持平任長源 · 張至冕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九字刀割】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2월 16일(을묘)

-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대사헌 김희(金憲) 등의 계
- 대사헌 김희(金憲), 집의 유언수(兪彦脩), 장령 강침(姜忱) · 이영목(李永穆), 지평 임장원(任長源) · 장지면(張至冕)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9자가 도할(刀割)됨】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二月 十六日 乙卯

- 行大司諫李聖圭, 正言韓光植·李泰賢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獻納盧廷良, 時在全羅道南原地, 請斯速乘駟上來事下諭. 答院曰, 不允. 【四字刀割】 下諭事, 依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2월 16일(을묘)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행대사간 이성규(李聖圭) 등의 계
- 행대사간 이성규(李聖圭), 정언 한광식(韓光植)·이태현(李泰賢)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헌납 노정량(盧廷良)이 지금 전라도 남원(南原)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4자가 도할(刀割)됨】 하유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二月 十七日 丙辰

- 持平張至冕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九字刀割】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2월 17일(병진)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장지면(張至冕)의 계
- 지평 장지면(張至冕)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9자가 도할(刀割)됨】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장지면.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二月 十七日 丙辰

- 正言李泰賢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請寧鎮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施王章. 【一行刀割】 答院曰, 不允.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2월 17일(병진)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이태현(李泰賢)의 계
- 정언 이태현(李泰賢)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김영진(金寧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대로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1행이 도할(刀割)됨】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태현.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二月 十八日 丁巳

- 持平任長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罪人寧鎮,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一行刀割】答府曰, 不允. 【三行刀割】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2월 18일(정사)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임장원(任長源)의 계
- 지평 임장원(任長源)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죄인 김영진(金寧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대로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1행이 도할(刀割)됨】 사헌부에 답하기를, “운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3행이 도할(刀割)됨】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임장원.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二月 十八日 丁巳

- 正言韓光植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寧鎮亟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施王章. 【一行四字刀割】 答院曰, 不允. 【三行刀割】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2월 18일(정사)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한광식(韓光植)의 계
- 정언 한광식(韓光植)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김영진(金寧鎭)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대로 처벌하소서.”라고 하였다. 【1행 4자가 도할(刀割)됨】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3행이 도할(刀割)됨】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한광식.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二月 二十一日 庚申

- 持平尹翊東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請還寢李魯春絶島安置之命,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措辭見上】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2월 21일(경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윤익동(尹翊東)의 계
- 지평 윤익동(尹翊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 청컨대 이노춘(李魯春)을 절도(絶島)에 안치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형문하고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윤익동.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二月 二十一日 庚申

- 正言趙鎮宅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 …… 請還發配所罪人宋迪中，亟令王府，拿來嚴鞫，期於得情. 【措辭見上】 …….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2월 21일(경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조진택(趙鎭宅)의 계
- 정언 조진택(趙鎭宅)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중략> 청컨대 배소로 떠난 죄인 송적중(宋迪中)에 대해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붙잡아 와서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진택.

❖ 乾隆 五十一年 丙午 十二月 二十六日 乙丑

- 金魯永, 以刑曹言啓曰, 卽接左右捕盜廳移文, 則罪人明謙子壽億年未滿, 爲先發配, 庶侄屢郎, 發配次分付刑曹, …… 罪人屢郎名字, 當初該府成冊中, 以黃伊報來, 故竝與壽億, 各定配所, 黃伊慶尙道鎭海縣, 壽億濟州牧旌義縣, 竝爲奴定配事, 草記未及蒙允, 故姑不得舉行矣. 今仍該廳關文, 壽億·黃伊等, 依前配所, 先爲押送, …… 竝定配所, 卽爲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0년(1786) 병오년 12월 26일(을축)

- ☐ 구명겸(具明謙)의 아들 수억(壽億) 등을 정의현(旌義縣) 배소로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형조에서 올린 초기
- 김노영(金魯永)이 형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막 좌우포도청 이문(移文)을 보니 죄인 구명겸(具明謙)의 아들 수억(壽億)이 나이가 차지 않았으니 우선 배소로 보낼 것, 서질(庶侄) 누랑(屢郎)을 배소로 보내기 위해 형조에 분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략> 죄인 누랑의 이름은 당초 해부(該府) 성책(成冊) 중 황이(黃伊)로 보고되어 왔으므로 수억과 각기 배소가 정해져 황이는 경상도 진해현(鎭海縣)으로, 수억은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으로 모두 노로 삼아 정배하라는 일이었으나 초기(草記)가 윤택받지 못해 아직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대로 해청(該廳)의 관문(關文)대로 수억·황이 등을 이전의 배소로 우선 압송하고, <중략> 모두 배소를 정해 즉시 압송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정의현, 구명겸, 수억.

역주

문숙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오창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발췌

고수미	제주대학교 박사 수료
노우정	제주대학교 박사 수료

교정·교열

임승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김우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양미혜	제주대학교 박사과정

제주역사 자료총서 30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VIII

- 正祖代(1782~1786) (上) -

발행인 김완병

발행일 2025년 9월 일

발행처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시 임항로 278
www.jst.re.kr

기획 임승희·김우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제작 제주콤

ISBN : 979-11-994020-0-3 (93900)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